



1968년도



Zurcher Acuna, Harry 주 San Jose(코스타리카) 명예총영사 임명, 1968.5.28.

| 68-001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중남미과/총무과

MF번호 A-5/1/1~18(18p)

1. 최경록 주멕시코대사는 겸임국 코스타리카 방문 시 동국 정부가 수도 산호세 주재 한국 명예총영사 후보로 추천한 법조인 아리 주르헤르를 면담하고 적격이라고 보고하여 외무부가 내부 절차를 거쳐 임명함.
2. 이에 앞서 외무부는 다른 인사를 산호세 주재 명예총영사로 임명하였으나 본인 사정으로 교체가 불가해진 경위가 있음.

68-002

Andreasen, A. C. Holger 주 Copenhagen(덴마크) 명예총영사 해임, 1968.6.9.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총무과/구주과

MF번호 A-5/2/1~15(15p)

1. 주스웨덴대사관은 검임국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주재 홀가 안드레아센 명예총영사가 사망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조전발송과 훈장추서를 건의함.
2. 외무부는 최규하 외무장관 명의 조전을 타전하고 내부절차를 거쳐 서훈을 결정한 다음 훈장을 보냄.

Enderica Espinoza, Gonzalo 주 Guayaquil(에콰도르) 명예총영사 임명, 1968.10.21.

| 68-003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중남미과/총무과

MF번호 A-5/4/1~12(12p)



1. 1968.10월 외무부는 주칠레대사의 추천에 따라 관할국인 에콰도르 과이킬 시 주재 명예총영사로 지역유력인사인 곤잘로 에스피노사를 임명함.
2. 명예총영사는 영사, 통상, 문화, 과학, 교육 등의 분야에서 외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됨.

68-004

김이배 주 San Salvador(엘살바도르) 명예총영사 임명, 1968.7.1.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미주과/총무과

MF번호 A-5/5/1~40(40p)

1. 1968.7월 외무부는 주멕시코대사가 관할국인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 주재 명예총영사 후보로 추천한 김이배 엘살바도르 대통령 특별고문을 임명함.
2. 김 명예총영사는 1961년부터 중미에 거주하며 한국과의 교역증진을 위해 활동함.

Sullivan, C. E. 주 Valleta(몰타) 명예총영사 임명, 1968.10.21.

| 68-005 |

생산연도 1965-68

생 산 과 총무과/서구2과

MF번호 A-5/6/1~44(44p)



1. 이형근 주영국대사는 신임장 제정을 위한 검임국 몰타 방문 결과보고서에서 수도 발레타에 명예 총영사관 설치를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주영국대사가 추천한 기업인 C. E. 설리번 씨를 명예총영사로 임명함.
3. 외무부는 명예총영사관 설치 목적으로 유엔대책을 위한 현지 활동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68-006

Hasanain, Matook A. 주 Jeddah(사우디아라비아) 명예총영사 임명, 1968.1.15.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중동과/총무과

MF번호 A-5/7/1~23(23p)

1. 정부는 주터키대사의 건의에 따라 1968.1.15. Matook A. Hasanain을 주젯다(사우디아라비아) 명예총영사로 임명하고, 1968.4.3. 주터키대사가 젯다를 방문, 동인에게 명예영사 인가장을 수교함.
2. 주터키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1968.4.18. 주젯다 명예총영사관이 개설됨.
3. 본 문서철은 Hasanain 명예총영사 이력서, 주젯다 명예총영사관 개설보고서(사우디아라비아 외무 차관면담, 젯다 주재 외교단 접촉, Hasanain 명예총영사의 건의사항) 등을 수록함.

Mayer, Albert R. 주 Montreux(스위스) 명예총영사 임명(1966.4.1.) 및 해임(1968.12.6.)

| 68-007 |

생산연도 1964-68

생 산 과 총무과/구주과

MF번호 A-5/8/1~33(33p)



1. 정부는 1966.4.1. Albert R. Mayer를 주Montreux 명예총영사로 임명하고, 명예총영사관을 1966.6.23. 개설함. 동인은 1968.12.6. 노환으로 별세하였는바, 우리 정부는 동일자로 동인의 명예총영사직을 면하는 조치를 취함.
2. 본 문서철은 Mayer 명예총영사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 보고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음.

68-008

Coleman, James J. 주 New Orleans(미국) 명예총영사 임명, 1968.7.8.



생산연도 1968

생산과 북미과/총무과

MF번호 A-5/9/1~79(79p)

1. 주미국대사는 New Orleans의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저명한 법률가이며 사업가인 James Julian Coleman을 주뉴올리언스 한국명예총영사로 임명할 것을 1968.6.7. 외무부에 건의함.
 - Victor H. Schro 뉴올리언스 시장은 주미국대사에게 Coleman을 한국명예총영사 적격자로 추천함.
2. 외무부는 상기 명예총영사 임명이 대미통상 및 우호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며 효과적이고 광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는데 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뉴올리언스 주재 명예총영사로 임명하는 내부 방침을 1968.6월 결정함.
 - 명예총영사의 직무관할 구역은 Louisiana주의 뉴올리언스시 권역으로 함(주미국대사관은 Louisiana주 전역을 관할 구역으로 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외무부는 명예영사의 관할구역은 주재 도시에 한정하는 것이 관례상 타당하다고 판단).
3. 주미국대사는 명예영사 인선 시 한 지역에 있어서 유력한 인사라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당한 주변지역에 있어서도 잘 알려진 인사를 인선할 필요가 있으며, Coleman의 경우 루이지애나주 뿐만 아니라 알라바마주와 미시시피주에도 영향력이 있고 그 지방의 지도적 인물과도 친교가 많은 만큼 3개주를 관할 구역으로 하여 줄 것을 6.28. 외무부에 건의함.
4. 외무부는 대통령령 제2400호(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뉴올리언스 명예총영사는 주재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인 주휴스턴총영사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현행 법령상 명예영사의 관할구역은 제한된 영사업무 위임구역임을 7.3.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그러나 명예영사의 광범위한 활동을 억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총영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인근지역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도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있음.
5. 외무부는 Coleman이 1968.7.8.자로 뉴올리언스 주재 명예총영사로 임명되었음을 주미국대사 및 주휴스턴총영사에게 각각 통보하면서 명예총영사에 대하여 정부에서 임명장을 별도로 수여하지는 않으나 영사위임장을 발급, 송부 예정이므로 취임선서를 행하고 미 국무성에 임명통고를 하여 영사인가장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함.

정보라 주 Chicago(미국) 명예총영사 해임, 1968.5.31.

| 68-009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과/총무과

MF번호 A-6/14/1~5(5p)



외무부장관은 1968.5.31. 정보라 주시카고 명예총영사에 대한 해임발령을 재가함.

68-010

Olano B, Virgilio A. 주 Bogota(콜롬비아) 명예총영사 임명, 1967.10.20.



생산연도 1965-68

생 산 과 미주과/총무과

MF번호 A-4/3/1~20(20p)

정부는 주브라질대사의 건의에 따라 1967.10.20. 겸임국인 콜롬비아 보고타와 페루 리마 주재 명예총영사를 임명함.

1. 주보고타 명예총영사

- 성명: Virgilio A. Olano B.
- 관할지역: 콜롬비아 공화국 전역

2. 주리마 명예총영사

- 성명: Joaquin Vargas Figallo
- 관할지역: 페루 공화국 전역

주재관(국방무관) 파견 - 브라질

| 68-011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A-5/10/1~12(12p)



1. 국방부는 1968.4.6. 외무부에 대해 남미주 지역에 대한 군사외교강화 및 전략정보 수집을 위해 상주 무관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남미지역 상주 무관부 설치 필요 여부와 설치할 경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중 가장 적합한 대상국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타진해 옴.
2. 외무부는 주브라질 및 주아르헨티나 대사와 협의 후 1968.6.7. 아래 이유로 브라질이 가장 적합한 대상국이라고 회신함.
 - 군사력 면에서 남미 최강국
 - 당시 서울에 상주공관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며 외교관계 수립이 가장 오래된 국가
 - 교통, 통신의 중심으로서 타국 검임도 용이

68-012

주재관(국방무관) 파견 - 말레이시아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인사계/서남아과

MF번호 A-5/11/1~11(11p)

1967.12.1. 주말레이시아대사는 국방부의 무관 교체 요청에 따라 주재국 정부에 신임 무관 김의향 대령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하였으며, 1968.1.15. 주재국 정부로부터 신임 무관에 대한 아그레망을 접수함.

대사파견 - 브라질

| 68-013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1과/중남미과

MF번호 B-10/2/1~29(29p)



1. 정부는 장창국 전 육군대장을 주브라질대사로 내정하고 현지공관을 경유하여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동의를 받음.
2. 장 대사는 아르투르 실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실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앞 서한으로 신임장 접수 사실을 확인함.

68-014

대사파견 - 보츠와나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과/아중동과

MF번호 B-10/3/1~67(67p)

1. 정부는 보츠와나와의 수교 추진과 동시에 임윤명 주케냐대사를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주영국 보츠와나대사관을 경유하여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동의를 받음.
2. 정부는 국교수립과 겸임공관 설치를 위한 국내절차(국무회의 결의 등)를 거쳐 임 대사를 보츠와나 겸임대사로 정식 발령함.
3. 보츠와나에 출장한 김 대사는 쾨트 카시어 대통령 권한대행(대통령 와병 중)에게 신임장을 제정 하였으며 요인들과의 면담에서 양국관계 증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대사파견 - 볼리비아

| 68-015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10/4/1~31(31p)



1. 정부는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를 볼리비아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을 경유하여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동의를 받음.
2. 볼리비아를 방문한 김 대사는 바리엔토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정부요인 면담 기회에 문화, 통상협정 체결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68-016

대사파견 - 덴마크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과/복구담당관

MF번호 B-10/6/1~22(22p)

1. 주스웨덴대사관은 주스웨덴 덴마크대사관이 1967.11.24.자 공한을 통해 우리 정부가 주스웨덴 강문봉 대사를 주덴마크대사로 임명하는데 대해 동의함을 알려왔다고 보고함.
2. 정부는 1968.1.24.자로 강문봉 대사를 주덴마크 겸임대사로 발령하고, 강문봉 대사는 1968.4.18. 덴마크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에콰도르

| 68-017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10/8/1~22(22p)



1. 1968.4월 윤주영 주칠레대사는 관할국인 에콰도르에 겸임대사 임명 및 아그레망 요청 서한을 전달함.

- 1968.4.19. 아그레망 접수

2. 윤주영 대사는 1968.7.11. Gomez 에콰도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8-018

대사파견 - 가봉



생산연도 1965-68

생산과 의전1과/인사계/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B-10/10/1~36(36p)

1. 주프랑스대사관은 가봉 정부가 주프랑스 가봉대사관 공한(1966.6.21.자) 및 가봉 외무성 공한(1966.7.4.자)을 통해 우리 정부가 주프랑스 이수영 대사를 주가봉대사로 임명하는데 대해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해왔다고 1966.7.12. 외무부에 보고함.
2. 정부는 1966.7.8.자로 주프랑스 이수영 대사를 주가봉공화국 겸임대사로 발령했고, 이수영 대사는 1968.2.9. 가봉공화국 봉고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그리스

| 68-019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과/구주과

MF번호 B-10/12/1~31(31p)



1. 1967.10.17. 외무부는 유재흥 주이탈리아대사에 대해 겸임국 그리스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토록 지시함.
 - 1967.11월 그리스 정부는 유재흥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발급
2. 1968.1월 외무부는 주이탈리아대사의 건의에 따라 그리스의 국내사정이 유동적이므로 신임장 제정 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함.
3. 1968.6월 정부는 유재흥 대사에 대한 신임장을 발급하였으며, 유 대사는 8.13. 국왕 섭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8-020

대사파견 - 과테말라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10/13/1~34(34p)

1. 정부는 1967.12.15. 최경록 주멕시코대사를 주과테말라대사로 겸임 발령하였으며, 최경록 대사는 1968.5.27. Julio Cesar Mendez Montenegro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최경록 대사는 신임장 제정에 즈음하여 아래 요지의 겸임국 출장보고를 제출함.
 - 대통령에게 상호 우호적인 유대를 강조함.
 - 외무장관은 유엔에서의 한국지지를 언약하고 문화협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언급함.
 - 경제부차관은 우리 농업 기술자 파견을 요청함.

대사파견 - 제네바

| 68-021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과

MF번호 B-10/14/1~13(13p)



1. 정부는 박동진 대사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로 내정하고 최규하 외무장관 명의의 우탄트 유엔사무 총장 앞 임명통지서를 작성함.
2. 박 대사는 P. 스피넬리 유엔 유럽사무소장에게 임명통지서를 제정하였고 스피넬리 소장은 최규하 외무장관 앞 서한으로 접수사실을 확인함.

68-022

대사파견 - 온두라스



생산연도 1967-68

생산과 의전1과/중미담당관

MF번호 B-10/15/1~36(36p)

1. 정부는 최경록 주멕시코대사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자메이카, 니카라과, 온두라스의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아그레망을 신청하여 동의를 얻음.
2. 최 대사는 겸임국에 대한 신임장 제정을 위해 3회에 걸친 순방계획을 세웠으며 1차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를 방문하고 신임장을 제정함.
3. 온두라스 방문시 최 대사는 정부요인들과 양국관계 증진방안에 관해 의견 교환함.

대사파견 - 아이슬란드

| 68-023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계/구아과

MF번호 B-10/16/1~26(26p)



1. 정부는 강문봉 주스웨덴대사를 아이슬란드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주스웨덴대사관을 경유하여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동의를 얻음.
2. 아이슬란드를 방문한 강 대사는 아스케이르 아스케이르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오찬에 참석함.
3. 강 대사와 정부 요인들과의 면담에서는 명예총영사 상호 임명문제 등이 논의됨.

68-024

대사파견 - 코트디보르



생산연도 1965-68

생 산 과 의전과/서아프리카과

MF번호 B-10/17/1~69(69p)

1. 정부는 최완복 대사를 초대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 상주대사로 내정하고 주프랑스 대사관을 경유하여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최 대사는 필릭스 유고-보이그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정부는 제2대 코티트부아르 상주대사로 강춘희 주독일대사관 공사를 내정하고 현지공관을 경유하여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강 대사는 필릭스 유고-보이그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자메이카

| 68-025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10/18/1~26(26p)



1. 최경록 주멕시코대사는 겸임국인 자메이카와 도미니카를 연이어 방문하고 클리포드 캠벨 총독과 호르케 빌리게르 대통령에게 각각 신임장을 제정함.
 - 자메이카에 대한 신임장은 영국여왕 앞 명의
2. 최 대사는 양국 정부 요인들과의 면담에서 관계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 교환함.

68-026

대사파견 - 라이베리아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의전과/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B-10/19/1~29(29p)

1. 정부는 강춘희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를 라이베리아 겸임대사로 임명하고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을 경유하여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동의를 받음.
2. 강 대사는 라이베리아를 방문하여 윌리엄 투브만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라이베리아 정부요인들 면담 시 강 대사는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 시 지지를 요청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라이베리아측은 한국 의사 증파를 요청함.

대사파견 - 몰타

| 68-027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과/구주과

MF번호 B-10/20/1~28(28p)



1. 정부는 주영국대사관의 1967.10.18.자 몰타 외무성 앞 공한을 통해 배의환 주영국대사를 주몰타 겸임대사로 임명하는데 대한 사전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몰타 외무성은 1967.12.4.자 주영국 대사관 앞 공한에서 1968.1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신임장 제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여 사실상 사전 동의를 부여했음을 시사함.
2. 정부는 1968.1.1.자로 배의환 주영국대사를 주몰타 겸임대사로 발령하고, 배의환 대사는 1968.1.24. Maurice Dorman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8-028

대사파견 - 노르웨이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과/복구담당관

MF번호 B-10/21/1~25(25p)

1. 주스웨덴대사관은 1967.10.23.자 노르웨이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해 주스웨덴 강문봉 대사를 주노르웨이 겸임대사로 임명하는데 대해 사전 동의 부여를 요청하였으며, 노르웨이 외무부는 1967.11.8.자 주노르웨이대사관 앞 공한에서 강 대사 임명에 동의함.
2. 정부는 1967.12.15.자로 주스웨덴 강문봉 대사를 주노르웨이 겸임대사로 발령하였으며, 강문봉 대사는 1968.1.23. Olav 노르웨이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니카라과

| 68-029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10/22/1~31(31p)



1. 주멕시코대사관은 니카라과 정부가 외무장관의 공한을 통해 최경록 대사의 주니카라과 겸임대사 임명에 동의하였다고 1967.8.25. 외무부에 보고함.
2. 정부는 1967.12.15.자로 주멕시코 최경록 대사를 주니카라과 겸임대사로 발령하였으며, 최경록 대사는 1968.4.25. Anastasio Somoza Debayle 니카라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8-030

대사파견 - 니제르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0/23/1~41(41p)

1.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관은 니제 외무성이 1968.4.2.자 공한을 통해 강춘희 주코트디부아르대사의 주니제르 겸임대사 임명에 동의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정부는 1968.5.6.자로 강춘희 주코트디부아르대사를 주니제르 겸임대사로 발령하였으며, 강춘희 대사는 1968.7.5. Diori Hamani 니제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파라과이

| 68-031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1과/중남미과
 MF번호 B-10/24/1~30(30p)



1. 정부는 1967.10.25.자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의 파라과이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김동성 주아르헨티나 대사의 주파라과이 겸임대사 임명에 대한 파라과이 정부의 사전 동의 부여를 요청하였으며, 파라과이 정부는 1968.3.6.자 주아르헨티나 파라과이대사관의 우리 공관 앞 공한을 통해 김동성 대사의 주파라과이대사 임명에 동의한다고 통보함.
2. 정부는 1968.5.9.자로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를 파라과이 주재 겸임대사로 발령했고, 김동성 대사는 1968.6.21. 파라과이 공화국 Alfredo Stroesener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8-032

대사파견 - 파나마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10/25/1~31(31p)

1. 정부는 주멕시코대사관의 1967.8.7.자 파나마 정부 앞 공한을 통해 최경록 주멕시코대사를 주파나마 겸임대사로 임명하는데 대해 파나마 정부의 사전 동의 부여를 요청하였으며, 파나마 정부는 1967.12.12.자 주멕시코대사관 앞 공한에서 최경록 대사 임명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사전 동의 부여를 알려옴.
2. 정부는 1968.1.13.자로 주멕시코 최경록 대사를 파나마 주재 겸임대사로 임명하였으며, 최경록 대사는 같은 해 6.3. Marcos A. Robles 파나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토고

| 68-033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0/26/1~37(37p)



1. 정부는 1968.7.16. 강춘희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를 주토고공화국대사로 겸임 발령하였으며, 강춘희 대사는 1968.11.22. Etienne Eyadema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강춘희 대사는 신임장 제정에 즈음한 겸임국 출장보고를 통해 기술원조계획에 따른 의사파견, 신축성 있는 겸임국 출장, 엽연초 및 아동복 수출 가능성 검토 등을 건의함.

| 68-034 |

대사파견 - 태국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계

MF번호 B-10/27/1~52(52p)

1. 정부는 1968.2.17. 한표욱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주태국대사로 발령하였으며, 한표욱 대사는 1968.4.6. Bhumibol Adulyadej 태국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태국 왕실 측 사정으로 한 대사의 신임장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4.8.~9. 예정된 우리 외무장관의 태국방문에 따르는 각종 외교행사의 주최자와 관련한 의전상의 문제가 본부 관련 부서 간에 논란이 되었으나, 신임장제정이 외무장관 방문 직전에 이루어짐.

대사파견 - 부르키나파소(구 오투볼타)

| 68-035 |

생산연도 1968
 생산과 의전과/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B-10/28/1~51(51p)



1. 정부는 1968.7.16. 강춘희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를 주부르키나파소(구 오투볼타) 대사로 겸임 발령하였으며, 강 대사는 10.25. Sangoule Lamizana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강 대사는 신임장제정에 즈음한 겸임국 출장보고에서 아래 요지의 관찰사항을 보고함.
 - 코트디부아르는 우리의 원조실적과 원조제약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임.
 - 북한의 원조에 대해 아직 미련을 갖고 있음.
 -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에 있어 다소 우리 입장을 더 지지할 것 같은 인상을 받았으나 동시 초청안에 대하여는 태도변경 여부가 불투명함.

68-036

대사파견 - 우루과이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0/29/1~56(56p)

1. 정부는 1967.1.13.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를 주우루과이대사로 겸임 발령하였으며, 김 대사는 3.13. Jorge Pacheco Areco 우루과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정부는 1967.7.16. 최문경 주뉴욕총영사를 초대 주우루과이 상주대사로 발령하였으며, 최 대사는 12.20. Areco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베네수엘라

| 68-037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의전과/남미담당관
 MF번호 B-10/30/1~7(7p)



정부는 1968.2.17. 장창국 주브라질대사를 주베네수엘라대사로 겸임발령하고, 주브라질대사에게 아그레망을 신청하도록 지시함.

68-038

대사파견 - 오스트리아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2007-2/26/1~65(65p)

1. 정부는 유양수 주필리핀대사를 초대 오스트리아 상주대사로 내정하고 현지공관을 경유하여 아그레망을 신청함.
2. 정부는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공관장 인사를 일괄 처리하기 위해 1967.7월 중의 아그레망 부여를 희망하였으나 현지공관은 휴가시즌으로 최종결재권자인 대통령이 부재중임을 들어 지연이 불가피함을 보고했고 결국 9월에 아그레망이 부여됨.

대사파견 - 다호메이

| 68-039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과

MF번호 B-9/3/1~30(30p)



1. 정부는 최완복 주코트티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를 베냉(구 다호메이)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현지공관을 경유하여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동의를 얻음.
2. 최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한 자리에서 크리스토프 소글로 다호메이 대통령은 한국 농업기술자와 의사의 파견을 희망함.

68-040

대사파견 - 멕시코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1과/중미담당관
 MF번호 B-9/15/1~64(64p)

1. 정부는 최경록 대사를 주멕시코대사로 내정하고 현지공관을 경유하여 아그레망을 신청하여 동의를 받음.
2. 최 대사는 구스타보 디아즈 올다즈 멕시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최 대사는 멕시코 올림픽 개최가 임박했음을 들어 9개 겸임국에 대한 신임장 제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무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겸임국 방문계획을 보고했으나 외무부는 국내 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계획수립을 보류하도록 지시함.

대사부임 - 아르헨티나

| 68-041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10/31/1~58(58p)



1. 아르헨티나 정부는 주한 상주공관 철수 이후 첫 주한 겸임대사로 후안 마르틴 주일본대사를 내정하고 아그레망을 신청하여 정부가 이에 동의함.
2. 마르틴 대사는 신임장 제정을 위한 방한 기회에 무역 분야 종사 민간 인사들과의 면담과 산업시설 시찰일정 주선을 요청함.

68-042

대사부임 - 호주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의전과/서남아과/대양주담당관

MF번호 B-10/32/1~42(42p)

1. 호주 정부는 알란 루미즈 주태국대사를 주한대사로 내정하고 아그레망을 신청하여 우리 정부가 이를 부여함.
2. 루미즈 대사는 한국 부임 후 유엔한국위원회(언커크) 의장을 맡기로 내정되어 있음.

대사부임 - 일본

| 68-043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0/37/1~52(52p)



1. 일본 정부는 1968.4.1.자 주일본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폴란드 주재 일본대사인 가나야마 마사히데 (金山政英)를 한국 주재 대사로 임명하는데 대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부여를 요청함.
2. 우리 정부는 1968.4.15. 사전 동의를 부여하였으며, 가나야마 마사히데 대사는 1968.7.24. 박정희 대통령에게 히로히토 일본 천황의 신임장을 제정함.

68-044

대사부임 - 말레이시아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0/38/1~39(39p)

1.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67.5.1.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Tun Lim Yew Hock 말레이시아 외무성 특수업무담당 차관보를 주한대사로 임명하는데 대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부여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5.15. Tun Lim Yew Hock의 주한대사 임명에 대해 동의함.
2.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1967.12.11.자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의 공한을 통해 Tun Lim Yew Hock의 주한 대사 임명에 대한 사전 동의 요청을 철회하면서, 스리랑카(구 실론) 주재 Bahadun bin Haji Hassan 고등판무관을 주한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사전 동의 부여를 요청함.
3. 우리 정부는 1967.12.29. Bahadun bin Haji Hassan 고등판무관의 주한대사 임명에 동의하였으며, 동 대사는 1968.4.24. 박정희 대통령에게 Yang di-Pertuan Agong 말레이시아 국왕의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네덜란드

| 68-045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의전과/서구1과

MF번호 B-10/39/1~44(44p)



1. 주일본 네덜란드대사관의 de Vries 참사관은 1969.4.17. 주일본대사관의 안광호 공사를 방문, 자국 정부의 훈령임을 전제하면서 Jonkheer J. Q. Bas Baker를 주한대사로 임명하는데 대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부여를 요청함.
 - 주일본 네덜란드대사관은 1968.5.7. 정식 공한을 통해 사전동의 부여를 우리 정부에 요청함.
2. 우리 정부는 1968.5.11. Bas Baker 대사의 주한대사 임명에 대해 사전 동의를 부여하였으며, 동 대사는 같은 해 11.19. 네덜란드의 Queen Juliana 여왕의 신임장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정함.

68-046

대사부임 - 니카라과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계

MF번호 B-10/40/1~42(42p)

1. 주멕시코대사관은 겸임국인 니카라과의 외무장관이 1968.6.21.자 공한으로 Carlos Manuel Perez Alonso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는데 대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부여를 요청해왔다고 1968.7.1. 외무부에 보고함.
2. 니카라과 정부의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는 1968.7.12.자로 동 대사 임명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동 대사는 1968.10.29. Anastasio Somoza Debayle 대통령의 신임장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정함.

대사부임 - 필리핀

| 68-047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의전1과/동남아담당관

MF번호 B-10/41/1~41(41p)



1. 필리핀 외무부는 1968.2.8.자 주필리핀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Benjamin T. Tirona를 주한대사로 임명하는데 대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부여를 요청함.
2. 우리 정부는 1968.3.5.자로 Benjamin T. Tirona씨의 주한대사 임명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동 대사는 1968.5.10. Marcos 대통령의 신임장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정함.

68-048

대사부임 - 태국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0/42/1~47(47p)

우리 정부는 1967.8.3. 태국 정부로부터 Chote Klongvicha 태국 국방연구원 부원장을 주한 대사로 임명하는데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받고 8.18.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Chote 대사는 1968.2.1.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멕시코

| 68-049 |

생산연도 1962-68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9/32/1~83(83p)



1. 우리 정부는 1960년대 초 멕시코의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문제에 대해 멕시코측이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소극적 입장을 취함에 따라, 1963.5월 주멕시코대사에 대해 주일 멕시코대사가 우리나라를 겸임하는 방안을 적극 교섭토록 지시함.
2. 1966.2월 오천석 주멕시코대사의 Flores 외무장관 면담 시 동 장관은 그해 실시 예정인 주일 멕시코대사 교체 시에 신임대사가 한국을 겸임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함.
3. 우리 정부는 1966.12월 멕시코 정부로부터 Francisco A. de Icaza 신임 주일대사에 대한 주한 겸임대사 임명동의 요청을 받고, 12.22.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de Icaza 대사는 1967.3.27.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8-050

영사위임장 발급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특전과

MF번호 B-10/43/1~53(53p)

정부는 1968년 아래 재외공관 영사들에 대해 영사위임장을 발급함.

- 홍 천 주량군총영사관 영사
- 김윤희 주시모노세키영사관 부영사
- 백준기 주오사카총영사관 영사
- 강철구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영사
- 유영복 주일본대사관 부영사
- 김이배 주산살바도르 명예총영사
- 조동석 주홍콩총영사관 영사
- 정규섭 주뉴욕총영사관 총영사
- 한유동 주자카르타총영사관 총영사
- 서경석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영사
- 홍명선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영사
- 이광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영사

국괘남 주한 페루 명예영사 접수, 1968.7.24.

| 68-051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B-10/44/1~13(13p)



1. 페루 정부는 1968.3.12. 국괘남을 주한 명예영사로 임명하고 주일본 페루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대해 영사인가장 발급을 요청함.
2. 우리 정부는 동건에 대해 페루 정부로부터 아무런 사전협의와 통보가 없었으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7.24. 인가장을 발급함.
 - 국괘남의 사회적 재정적 능력
 - 가까운 시일 내 주한 페루 상주공관 설치 가능성
 - 우리의 주리마 명예총영사 임명 추진

68-05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관련문제



생산연도 1968
 생산과 국제연합과
 MF번호 C-24/1/1~95(95p)

1. 1960년대 후반 국제사회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인종차별 규탄동향
 - 유엔총회에서는 1967.12.13. 및 1968.6.12. 남아공의 인종차별과 남아공과의 교역국들을 규탄하고 교역단절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함.
 - 1968.9월 알제리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연합기구 정치위원회 회의는 한국을 포함한 14개 서방국가들이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권을 계속지원하고 유엔결의 실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함.
2. 한편 상공부는 대 남아공 수출확대를 위해 관민혼성 통상사절단 파견, 기존 KOTRA 사무소 보강, 양국 업계간 교류확대, 총영사관 또는 무역대표부 설치검토 등을 추진하였는바, 외무부는 1968.5월 및 6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함. 상공부는 대 남아공 수출 확대 노력은 계속하되 남아공 주재 KOTRA의 명칭을 민간상사명으로 변경하기로 함.
 - 국제사회의 남아공 인종차별 규탄 및 교역단절 움직임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끼칠 영향(아프리카국가들의 반발)
 - 북한의 악용 가능성
3. KOTRA는 1968.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만국무역박람회에 남아공을 초청하였다가 당시 국제적 상황과 관련한 외무부의 요청을 고려하여 남아공 측에게 불참을 종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남아공 측이 불만을 표시함.
 - 1968.10월 주영국 남아공대사가 우리 주영국대사에게 유감을 표시한데 이어 1968.11월 Vorster 남아공 수상이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내 재차 유감을 포함.
 - 우리 정부는 1968.12월 주영국대사가 남아공 대사를 면담하여 우리측 사정을 해명토록 하였으며,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남아공에 대해 불편을 끼치게 된 우리의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이 같은 일이 양국간 독특한 우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희망함.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 68-053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24/2/1~36(36p)



1968.1.20. 구미국 아중동과가 작성한 “아프리카 중립제국에 대한 외교강화책” 보고서

1. 목표

- 비동맹 아프리카 제국들에 대한 북한의 침투 저지
-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지지기반 확대

2. 결론

- 외교강화책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나 장기적인 투자
- 현상유지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적극적 진취적 조치 필요
 - 콩고 킌사사 상주공관 설치
 -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감비아, 카메룬, 니제르, 베냉(구 다호메이) 등지에 의사파견
 - 유력인사 초청
 - 겸임대사, 관할대사의 현지출장 확대
 - 본부 아중동 지역 담당 기구의 확장

68-054

미끼 다께오(三木武夫) 일본외상 국회연설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과
 MF번호 C-24/3/1~16(16p)

미끼 일본 외상은 1968.1.27.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일본의 외교정책에 관해 아래와 같이 연설함.

1. 외교의 기본노선

- 섬나라, 좁은 국토, 빈약한 부존자원, 대륙과의 인접 등이 일본의 외교환경
- 이런 환경이 제시하는 일본의 선택은 고립주의는 안되며 세계 속에서 살길을 찾는 무역입국과 선린외교
- 이것이 실패한 과거의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

2. 주요사안별 정책

-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의 반환을 위해 미국과 적극 교섭
-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한 월남전 해결을 위해 노력
 - 미국과 월맹 사이의 불신 완화를 중재
- 북한에 의한 미군함정 나포사건의 평화적 해결 위해 노력
- 동남아에 대한 경협을 강화하고 APEC 발전을 위해 노력
 - 아시아제국과 태평양제국의 연대를 강화
- 소련과의 우호관계 수립과 영토문제 해결 위해 노력
-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남북격차 해소 위해 노력

3. 정부와 국민이 함께 생각해야할 외교문제

- 일본 국내의 일각에 일본의 안보를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핵무장은 일본의 안보 노력에 역행
- 핵무장은 안되지만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필요
- 미일동맹을 축으로 삼고 지역공존의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

한·이집트 정무일반

| 68-055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24/4/1~6(6p)



1. 주카이로총영사는 1968.10.3. 개천절에 이집트 낫셀 대통령이 대통령실 시종장(Chamberlain)을 총영사관에 파견하여 축하인사를 보내 왔다고 보고함.
2. 이에 대해 외무부는 동 사례가 통례인지 파격적인지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주카이로총영사는 공관 개설이래 선례가 없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에 대한 각별한 우의 표시로 평가된다고 보고함.

68-056

한·이스라엘 정무일반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24/6/1~30(30p)

1. 1967~68년에 걸쳐 이스라엘 정부가 제의하고 한국 정부가 대응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특허권 출원문제

- 이스라엘이 특허권의 상호출원에 관한 협정체결을 제의
- 한국은 이스라엘의 기술과 자본이 도입되는 효과가 있으나 아랍세계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와 북한이 유엔 등에서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하여 교섭을 추진하되 비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

● 국제회의 참석문제

-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개최되는 개도국 보건정책 담당 책임자 회의에 보사부장관을 초청
- 한국은 비정치적 성격의 다자회의라서 참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교육프로그램 참석문제

- 이스라엘이 성인교육과 소비자교육을 위한 훈련생 등의 파견을 요청
- 한국은 안전상의 문제를 검토하여 파견이 무방할 것으로 판단

2. 팔레스타인 난민 식량지원 문제

- 주유엔대사는 유엔사무총장과 세계식량기구(FAO) 사무총장의 팔레스타인 난민 식량원조 요청을 보고 하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건의함.
- 그러나 외무부 본부는 국제기구를 통하는 것보다 요르단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유엔대책 상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함.

경계수역 설정과 관련된 한·일간의 해군 사격훈련 실시 통보문제

| 68-057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C-24/7/1~114(114p)



1. 1966.10월 한국의 해군함정이 대마도 인근 수역에서 사격훈련 중에 발사한 포탄이 일본어선 주위에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외무성이 한국 정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함.
2. 외무부가 사실관계를 문의한데 대해 해군당국은 해상 사격훈련을 위해 설정한 “경계수역”이 공해에 해당하며 사전경고 등의 안전조치도 충분히 취했다고 알려와 외무부가 이를 일본 정부에 전함.
 - 한국해군이 설정한 “경계수역”의 일부가 한일어업협정상의 일본전관수역과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나 어업과 무관한 공해상의 활동은 제한받지 않음.
3. 그러나 해군이 사전에 공고한 다음, 다시 같은 수역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재차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함.
 - 일본 정부는 공해상의 사격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일본어선의 조업상황을 고려한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
 -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둔 사전공고, 한국 경비정의 해당수역 파견 등
4. 이에 따라 외무부가 주관하고 국방부, 해군본부, 교통부, 수산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열리고 아래와 같은 방침을 결정함.
 - 사격훈련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해군의 입장에 따라 일본 어업전관수역을 “경계수역”에서 제외
 - 사격훈련은 2주일 전에 공고
5. 일본 정부는 주한미군의 해상 사격훈련 계획도 사전에 알려주기를 요청하여 한국 정부가 그 취지를 주한미군 당국에 전함.

68-058

한·몰타 정무일반



생산연도 1965-66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24/8/1~6(6p)

1. 주영국대사는 겸임국 몰타의 국경일(9.21.)에 즈음하여 국경일 행사 참석과 정세파악 목적으로 외무부에 출장을 건의함.
 - 대사는 국경일 행사 참석이 신임장 제정을 위한 방문 당시 몰타정부 당국자들의 요청이었음을 강조
2. 이와는 별도로 주영국대사는 몰타정부가 자국 국가원수의 공식명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Elizabeth the Second, Queen of Malta & of Her other Realms of Territories, Head of the Commonwealth

한·뉴질랜드 정무일반

| 68-059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24/9/1~24(24p)



1. 주일본 뉴질랜드대사관(한국겸임)은 주일본 한국대사관을 경유하여 뉴질랜드령 쿡크도에서 좌초한 한국어선(제5통화호)을 조기에 되거시키고 근래 반복되고 있는 영해침범과 불법조업의 재발을 방지해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이런 사실을 수산청에 알리고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조치의 강구를 의뢰하였으며 수산청은 해당 수산회사들에 이를 통보하고 경위보고와 대책수립을 지시함.
3. 외무부는 위의 조치결과를 주일본대사관을 경유하여 뉴질랜드 정부에 알림.

68-060

이동환 주호주대사 겸임국 뉴질랜드 출장, 1968.6.25.-29.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24/11/1~16(16p)

이동환 주호주대사는 1968.6.25.~29.까지 뉴질랜드를 방문함. 동 대사는 뉴질랜드 방문 기간 중 6.27. 거행된 뉴질랜드 국회개원식에 참석함.

국교수립 - 보츠와나, 1968.4.18.

| 68-061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24/12/1~107(107p)

1. 외무부는 1966.3.5. 주영국대사에게 1966.9.30. 독립하는 보츠와나 및 10.4. 독립하는 레소토의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과의 관계 등을 조사, 보고할 것을 지시함.
2. 외무부는 1966.6.24. 주영국대사에게 우리 정부가 두 나라를 독립과 동시에 승인할 예정이므로 런던 주재 두 나라 대표와 접촉하여 국교수립에 관해 교섭하도록 지시하고, 교섭조건은 이 두 나라 주재대사는 주케냐대사가 겸임하며, 두 나라가 북한과 수교하지 않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훈령함.
3. 주영국대사는 1966.8.4. 외무부에 우리정부 희망을 영국 외무성에 통보하고(두 나라에 대한 외교 관계는 두 나라가 독립할 때까지 영국이 담당), 이를 두 나라에게 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하면서, 두 나라에 대한 남아공의 영향력이 강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남아공과의 관계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 1966.9.30. 개최된 국무회의는 동일자로 독립하는 보츠와나를 정식 승인하기로 의결
4. 주유엔대사는 1966.10.14. 개최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보츠와나와 레소토의 유엔가입을 토의할 예정이므로, 유엔총회에서 두 나라의 한국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주영국대사에게 이들 나라와의 수교교섭을 훈령해 줄 것을 1966.10.13. 외무부에 건의함.
 - 유엔총회는 10.17. 두 나라의 유엔가입 승인함.
5. 주영국대사는 우리정부의 보츠와나 독립축전에 대한 보츠와나 대통령의 1966.11.7.자 서한을 접수했음을 1966.12.9. 외무부에 보고함.
6. 주영국대사는 영국 외무성이 보츠와나와 레소토가 한국과의 수교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을 알려왔다고 1967.3.7. 외무부에 보고함.
7. 1968.4.26. 외무부는 주케냐대사관 요청에 따라 주영국대사관의 보츠와나와의 수교교섭 경위를 설명함.
8. 1967.4.22. 외무부는 주영국대사관 앞 전문을 통해 런던 주재 보츠와나 고등판무관의 문의(주보츠와나 한국대사관의 성격 및 지위)에 대해, 주보츠와나 한국대사는 주케냐한국대사가 겸임하며, 상주대사관 설치에 예산사정을 보아가며 검토 예정이라고 회신함.



9. 1968.1.23. 주영국대사관은 런던 주재 보츠와나 고등판무관에게 임윤영 주케냐대사의 이력서를 제공하였으며, Seretse Khama, K.B.E. 보츠와나 대통령은 1968.3.28. 임윤영 대사의 주보츠와나 겸임 대사 임명에 동의함.
10. 1968.4.18. 국무회의는 보츠와나공화국과의 정식외교관계수립 및 주보츠와나 겸임공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대통령 결재를 득함.

국교수립 - 가이아나, 1968.6.13.

| 68-062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C-24/13/1~82(82p)

1. 1967.1.19. 우리정부는 1966.5.26. 독립한 가이아나 정부와 외교관계 수립을 교섭하기로 결정함. 동시에 우리정부가 승인한 바 있는 트리니다드토바고(1962.8.31. 승인) 및 바베이도스(1966.11.30. 승인)에 대해서도 외교관계 수립 교섭을 결정함.
2. 정부는 상기 방침을 미국, 영국, 유엔,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주재 우리 공관에 통보하고, 가이아나 측과의 직접 교섭은 주미국대사관에서 행하되 여타 공관에서도 수교교섭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훈령함.
3. 1967.5.11. John Carter 주미국 가이아나 대사는 우리 주미국대사에게 한국정부의 국교수립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통보해 옴. 이에 따라, 1967.5.23. 개최된 국무회의는 가이아나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의결함.
4. 한·가이아나 양국은 각각의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공동성명서 문안과 발표 시기에 대해 교섭을 시작함.
 - 양측은 “양국 간 국제친선, 협력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면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라는 요지의 문구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가이아나 측이 “현재로서는 주한 대사를 임명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여, 문안합의에 시일이 걸림 (가이아나 측은 여사한 문구는 일본 등 여타국과의 공동성명서에서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
5. 양측은 수차례 접촉을 통해 “양국정부는 양국 간 국제친선, 협력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면서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다.”라는 문구에 합의하고, 양국은 1968.6.13. 서울과 Georgetown(가이아나 수도)에서 공동 발표함.
6. 본 문서철은 카리브 해역 3개국(트리니다드토바고,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개관, 가이아나국 개관, 가이아나국과의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국무회의 의결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음.

68-063

국교수립 - 스와질란드, 1968.11.19.



생산연도 1966-68
 생산과 아중동과
 MF번호 C-24/14/1~21(21p)

1. 1968.1월 우리정부는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란드 등 영국보호령의 독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토록 주영국, 주케냐 대사관에 훈령함.
2. 상기 훈령에 따라 주영국, 주케냐 대사관은 레소토 1968.10.5.경, 스와질란드 1968년말, 보츠와나 1968.9.30.을 목표로 독립 추진 중이라고 3개국의 동향을 외무부에 보고함.
3. 1968.9월 우리정부는 스와질란드 왕국을 승인하고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함. 양국은 1968.9.27. 외교관계 수립에 정식 합의하고, 1968.11.19.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양국 수도에서 발표함.
4. 본 문서철은 스와질란드왕국과의 정식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국무회의 의결사항(1968.11.12.자),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 스와질란드왕국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 건의에 대한 대통령 재가문 등을 수록하고 있음.

한국 원양어업기지에 대한 영사권 위임 문제

| 68-06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통상국

MF번호 C-24/15/1~9(9p)



1. 한국수산개발공사는 1968.10.21.자 공문을 통해 우리의 원양어업기지 강화를 위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주요어장기지에 영사관 설치 또는 수산공사 기지장에게 영사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해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동 요청에 대해 영사관 설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려할 것이며, 영사권 위임은 영사권의 남용우려, 본부의 통괄 불가능, 주재국 당국과 교섭능력 및 영사업무에 관한 지식 불충분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회신함.
 - 기지장과 관할공관 간 유기적인 협조, 선원증 또는 여권유효기간의 2년단위로 연장, 사건발생 시 관할 공관의 신속한 개입 등 개선방안을 제시함.

68-065

재외공관 설치계획 - 콩고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24/16/1~9(9p)

1. 정부는 1965년 이래 콩고민주공화국(킨샤사)에 주프랑스대사를 겸임대사로 파견하여 양국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동국 대통령의 상주대사 파견 요청 및 유엔에서의 동국 지지 확보 등을 고려하여 상주공관 설치를 검토함.
2. 본 문서철은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상주공관설치 필요성 검토(1968.10월), 우리정부의 해외공관 설치 계획(1968.10월) 등을 수록하고 있음.

재외공관 설치계획 - 카메룬, [1969.3.1.]

| 68-066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24/17/1~19(19p)



1. 외무부는 1967.3월 주카메룬 상주대사관 설치를 검토함.

2. 신설 필요성

- 중앙아프리카지역 상주공관 설치로 주프랑스대사관의 아프리카 겸임(10개국) 업무부담 경감
- 카메룬은 인구, 면적, 산업, 교통, 외교 면에서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중심
-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상품수출시장 개척 및 우리 어선단 보호

68-067

주이란대사관 관할구역 변경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24/18/1~8(8p)

1968.10월 주이란대사는 북예멘 및 남예멘에 대한 관할을 주카이로총영사관 또는 주터키 대사관(사우디아라비아 겸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하였으나, 외무부는 현 법령대로 유지할 것을 지시함.

재외공관 설치 - 주Islamabad총영사관(파키스탄), 1968.4.18.

| 68-068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24/19/1~141(141p)

1. 우리정부는 파키스탄의 국제적 영향력, 유엔에서의 지지유지, 경제 및 문화교류 확대 가능성, 북한의 무역사무소 설치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파키스탄과의 관계수립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교섭을 전개함.
 - 1960.11월부터 주인도대표부를 통해 국교수립 교섭시작
 - 1966.11월 최규하 주말레이시아대사가 콜롬보플랜회의에서 파키스탄 대통령 및 외무차관에게 관계수립 희망을 전달하였고 파키스탄 외무차관은 무역사무소 설치를 제의
 - 1967.8월 동남아 친선 및 경제협력 사절단(단장: 김동조 주일본대사) 방문 교섭 후, 동경에서 양국 주일본대사관 간 교섭진행
2. 1968.1월 파키스탄 정부는 주일 파키스탄대사관 공한을 통해 “라왈핀디”에 한국 총영사관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통보해 옴.
 - 파키스탄 측은 총영사관 설치는 법적 또는 사실상 국가승인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영사인가장을 발급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함.
3. 외무부 내에서 영사인가장 불발급 문제, 영사관 소재지 문제(우리측은 이슬라마바드를 희망)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영사인가장 문제는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짓고, 소재지 문제는 파키스탄 측과의 협의를 거쳐 1968.4.18. 이슬라마바드로 변경함.
4. 영사관계 수립사실 공표시기와 관련, 당초 우리정부는 조속한 발표를 위해 1968.2.22. 우리측이 단독발표기로 하였다가 파키스탄측 입장을 고려하여 공동발표를 추진하였으나, 북한이 2.20. 북한과 파키스탄 간의 영사관계 수립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우리측도 파키스탄 측의 양해 하에 2.28. 단독 발표함.
5. 우리정부는 2.28. 김기준 외무부 중남미과장을 주이슬라마바드 영사로 임명하였으며 김 영사는 4.15. 현지 부임함.

68-069

재외공관 설치 - 주Tunis총영사관(튀니지), 1968.10.1.



생산연도 1968
 생산과 아중동과
 MF번호 C-24/20/1~30(30p)

1. 외무부는 1968.6.10. 튀니지와외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우선 영사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함.
 - 조속한 시일 내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장차 대사관으로 승격
2. 우리정부는 1968.7.20. 동년 8월 중으로 주튀니지총영사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함.
3. 황남자 영사는 1968.9.20. 튀니지 외무성에 영사위임장 제출, 9.21. 영사인가장을 받음.
4. 황 영사는 1968.10월 개인적인 자격으로 총영사 임명절차를 생략하고 총영사관을 바로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튀니지 외무성 아시아·아랍국장 등과 협의하였고 튀니지 측이 동 방안에 합의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하였으나, 외무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식국교 수립 및 대사관 승격에 관해 문서합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주재국 정부에 확인토록 지시함.

주미대사관 및 총영사관 관할구역 변경

| 68-070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24/21/1~28(28p)



1. 1967.4월 북미지역공관 통상진흥회의 및 11월 대미수출회의에서 휴스턴과 시카고에 총영사관을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외무부에 건의함.
2. 1968.4.26. 재외공관의명칭·위치·관할구역에관한건(대통령령 제2070호)을 개정하여 주시카고 총영사관과 휴스턴총영사관을 신설하고 관련 공관의 관할구역을 조정함.
 - 개정 전 변경사항을 미국 정부에 통보, 동의를 요청함.

68-071

재외공관 설치 - 주Chicago·Houston총영사관(미국), 1968.6.1.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24/22/1~148(148p)

1. 1967.4월 개최된 북미지역공관 통상진흥회의에서 시장개척을 위해 시카고와 휴스턴에 총영사관을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외무부에 건의함.
 - 4월 현재 미국 주재 총영사관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임.
2. 외무부는 주미국대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 교통, 인구, 교민분포 등을 검토하여 시카고와 휴스턴에 총영사관을 설치키로 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음.
 - 시카고총영사관은 미시간 등 11개주, 휴스턴총영사관은 텍사스 등 9개주를 관할
3. 외무부는 2개 총영사관 및 주카메룬대사관 신설계획에 따라 공관 수, 직급별 공관직원 수를 반영하여 공관직제를 개정함.

재외공관 설치계획 -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 68-07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24/23/1~35(35p)

1. 1968.8월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를 방문한 한국의 친선사절단과 면담한 말릭 조로메 외무장관은 북한의 외교적 접근공세를 막을 명분으로 필요하다면서 상주공관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함.
 - 사절단이 예방한 생골 라미자나 대통령도 농업, 제조업, 자원개발 분야 원조를 요청
2. 사절단은 외무부에 북한공관 설치를 막기 위해 상주공관을 설치할 것을 건의함.

68-073

중남미지역 재외공관 관할구역 변경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24/24/1~31(31p)

1. 대통령령 제3395호로 주브라질대사관 및 주칠레대사관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1968.3.12.부로 시행됨.
2. 관할구역의 변경에 의해서 주브라질대사관이 트리니다드토바고,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및 바베이도스를, 주칠레대사관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페루를 관할하게 됨.
3. 페루 정부는 주칠레 한국대사의 페루 검임에 대해, 페루가 칠레와 모든 면에서 경합하는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칠레대사가 주페루대사를 검임하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외무부 본부는 페루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주브라질대사가 검임토록 법적절차를 취할 예정임을 주칠레대사에게 통보함.

재외공관 설치계획 - 주SaoPaulo총영사관(브라질)

| 68-074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미주과

MF번호 C-36/31/1~24(24p)



외무부는 1966~68년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상파울로총영사관 설치문제를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함.

- 대사관 소재지(리오 데 자네이로)와의 원격성
- 효과적인 교민 지도 및 보호

68-075

주한공관 폐쇄 - 아르헨티나, 1968.3.6.(일본 검임)



생산연도 1967-68
 생산과 중남미과
 MF번호 C-24/25/1~53(53p)

1. 1967.9월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은 외무성 건물신축 및 예산절감을 위해 주한 대사관 등 16개 재외공관을 폐쇄할 것이라고 비공식으로 언급함.
2. 우리정부가 주아르헨티나대사를 통해 폐쇄저지 교섭을 벌였으나, 1968.2월 주일본 아르헨티나대사는 신임 주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우리정부에 요청해 옴.
3. 우리정부는 외무부장관의 친서 전달, 외무부장관 및 구미국장의 주한 대사 면담 등을 통해 폐쇄방침 재고를 요청하는 한편, 차선책으로 주한 대리대사 잔류 등을 주아르헨티나대사를 통해 아르헨티나 측에 요청함.
4. 1968.3.6.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은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주한 대사관 폐쇄결정을 최종 통보함.

주한공관 설치 - 인도네시아, 1968.6.1.(총영사급)

| 68-076 |



생산연도 1962-68
 생산과 동남아2과
 MF번호 C-24/26/1~80(80p)

1. 1962.7월 주일본대사는 주일본 인도네시아대사 면담결과,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와의 영사관계 수립을 원칙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1963.11월 주일본대사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우리측의 영사관계 수립제외에 이의가 없다는 통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기본입장을 타진하도록 주일본대사에 지시함.
3. 1964.5월 외무부는 주일본대사에게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인도네시아와는 영사관계를 수립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인도네시아측의 기본입장을 타진하도록 재지시함.
4. 1964.7월 주일본대사관은 주한 총영사관 설치를 제안하는 인도네시아측 공한을 접수함.
5. 1965.6월 주필리핀 인도네시아대사는 주필리핀 우리대사에게 동인이 우리측 요청에 따라 자국 외상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번복을 요청하였으나 동 외상은 번복할 수 없으며 남한과의 대사관 교환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전언하였음을 보고함.
6. 1966.11월 외무차관은 인도네시아 외상특사인 Maroef 의원과의 면담에서 주한 인도네시아 총영사관 설치를 희망하지만, 설치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고 양국관계 강화의 방법이라고 언급함.
7. 1968.5월 Sukamto Sajidiman 신임 주한 인도네시아 총영사가 부임함.

68-077

주한공관 설치 - 네덜란드, 1968.12.24.(대리대사급)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C-24/27/1~20(20p)

1968.2.23. 도쿄 상주 주한 네덜란드 대사대리는 외무부에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와 도쿄 주재 대리대사(Charge d'affaires ad interim) 임명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12.24. I. Van Verkade가 대사대리(도쿄 상주)로 부임함.

주한공관 설치 - 스웨덴, 1968.11.24.(상무관)

| 68-07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24/28/1~27(27p)



1. 1968.6월 스웨덴 외무성은 주스웨덴대사에게 9월초에 주한공관이 설치되고 상무관이 부임할 것이라고 언급함.
2. 우리정부는 스웨덴 정부가 겸임대사 또는 대리대사(Charge d'affaires a. i.) 형태로라도 주한대사관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스웨덴 측은 예산 및 국회동의절차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함.
3. 주일 스웨덴대사관은 1968.9.5. K. B. Ericsson을 주한 상무관으로 임명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68-079

ASEAN(동남아국가연합) 창설 및 제2차 각료회의



생산연도 1967-68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C-24/30/1~168(168p)

1. 1967.8월 외무부 아주국 작성 “동남아국가연합개황” 보고서 요지

● 설립경위

- 1967.4.9. Malik 인도네시아 외상이 Khoman 태국 외상에게 설립취지를 설명, 협조를 구한 후 5개국 간에 비공식 협의가 진행됨.
- Malik 외상은 국내정세 불안정을 이유로 Khoman 외상이 협의를 주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Khoman 외상은 인도네시아 신정권을 자유주의권으로 포섭하려는 의도에서 협력기로 함.
-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처음에는 기존 ASA와의 관계를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Malik 외상은 버마, 캄보디아에도 참여를 타진하였으나, 이들은 비동맹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보임.
- 방콕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간의 5개국 외무장관회의는 1967.8.8. 동남아국가연합(ASEAN) 창설에 합의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함.

● ASEAN의 성격

- 지역의 연대적 결속 과시
- 회원국들은 평등한 협조자
- 지역국가 간의 상호이해, 선린, 협력을 통한 평화, 자유, 사회정의 및 경제적 복지 실현
- 외국의 간섭 배제
- 동 기구의 목적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 모든 동남아국가에 문호개방

● ASEAN의 기구

- 각료회의, 상임위원회, 각종 전문분야 위원회, 각 회원국별 사무국 등

● 전망

- 경제, 사회, 문화 면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여 정치 및 군사적 성격을 배제하고 있으나, 향후 정치(반공)적인 색채가 강한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2. 1968.8월 제2차 각료회의 회의결과 요지(인도네시아 정부 ASEAN 사무국 작성)

● 제1차 각료회의 이후 5회의 상임위원회 개최

● 전문분야별 임시위원회 개최

● 공동성명 요지

- 1차 연례보고서 채택
- 각종 분야별 작업계획 승인
- Joint Fund를 포함한 사업예산 검토를 위한 임시위원회 설립
- 식품, 민간항공, 교통, 해운 등 분야별 상임위원회 설립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각료회의, 제3차. Canberra, 1968.7.30.-8.1. 전3권 V.1 기본문서철

| 68-080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24/31/1~292(292p)



1. 정부는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스팍 각료회의에 최규하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경제기획원 관계자를 파견기로 결정함.
 - 회원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월남, 대만(구 자유중국)
 - 옵서버 참가국은 라오스
2. 정부는 회의에서 아스팍의 기능강화를 목표로 강령채택을 주도키로 하고 회원국 주재공관을 통해 아래 7개 항을 강령초안으로 사전에 제시하고 구체화를 위한 상설 현장연구위원회 설치를 제의함.
 - 주권과 독립의 존중, 영토보전의 보장
 - 평화, 자유, 정의의 실현
 -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유지를 위한 공동책임
 - 안보, 질서, 진보가 보장되는 지역복지사회 실현
 - 공동운명 의식과 지역적 연대 의식에 입각한 아태지역 이니시어티브 권장
 - 공동체 건설을 위해 자본, 물자, 기술, 인원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
3. 정부는 위의 강령에 대한 각국의 반응과 함께 주요사안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면서, 태국 등이 추진하는 아스팍 정상회의 개최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하되 충분한 사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 입장이 엇갈리는 안보문제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하되 군사동맹으로의 발전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함.
 - 이에 앞서 박정희 대통령은 최규하 외무장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아스팍 정상회의 개최목적이 불분명하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천명
4. 상기 강령 초안에 대해 다른 회원국은 호의 내지 중립적이었으나 일본은 군사적 색채가 드러난다는 것과 공동체구상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 일본은 각료회의에서의 군사문제 논의에도 강력히 반대

68-081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각료회의, 제3차, Canberra, 1968.7.30.-8.1. 전3권 V.2 공동성명서 및 연설문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24/32/1~409(409p)

1. 제3차 아스팍 각료회의는 아래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함.

- 창설 이래 회원국 간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협력과 이해증진을 평가
- 한국이 제안한 헌정 제정 위한 강령 7개항 채택
 - 주권과 독립의 존중, 영토보전의 보장
 - 평화, 자유, 정의의 실현
 -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유지를 위한 공동책임
 - 안보, 질서, 진보가 보장되는 지역복지사회 실현
 - 공동운명 의식과 지역적 연대의식에 입각한 아태지역 이니셔티브 권장
 - 공동체 건설을 위한 자본, 물자, 기술, 인원의 자유로운 흐름 촉진
- 헌정연구를 위한 상설 위원회 설치
-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문화센터 설립
 - 서울에 설치
- 역내 경제협력을 위해 식량비료기술 센터, 경제조정 센터, 경제협력방안논의 상설위원회 설치 방안 등 검토
- 핵개발에 대한 우려, 비핵보유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강구 필요성 천명
- 월남 분쟁의 평화적 해결 희망
- 아스팍 가입문호 개방원칙 재천명
- 제4차 각료회의의 도쿄 개최 계획

2. 본회의에서 최규하 한국 수석대표는 아래 요지로 기초연설을 함.

- 헌정 제정 위한 강령 7개항 제안
- 중국(PRC)의 핵무기 개발, 월남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인식강화와 지역평화, 자유, 번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강조
- 1.21사태, 푸에블로호 납치 등 북한의 도발 규탄
- 한국의 “일면건설, 일면 자주국방” 정책 소개
- 월남전의 명예로운 평화로의 종결 촉구
- 공동시장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강화 제의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각료회의, 제3차. Canberra, 1968.7.30.-8.1. 전3권 V.3 회의문서철

| 68-082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25/1/1~268(268p)



1. 각국 수석대표(한국제외)의 기조연설(및 축사) 가운데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음.

- J. G. 고튼 호주 총리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실질협력관계와 이해증진을 위한 아스팍의 기여 평가
- P. M. C. 해스력 호주 외무장관
 - 중국(PRC)의 핵개발과 지역안정 파괴활동선동 비판
- 미끼 다케오 일본외상
 - 아스팍은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기구로 발전해야하며 군사적, 정치적 기구화에 반대
- 모하메드 조하리 말레이시아 교육장관
 - 지역안보의 중요성 인식과 아스팍 사업의 구체화 필요
- L. R. 애덤스-슈나이더 뉴질랜드 공보장관
 - 역내 이해 증진 위한 방송문화 교류 제의
- 나르시소 라모스 필리핀 외무장관
 - 개발과 협력을 위한 효과적, 조직적 계획 필요
- 타낫 코만 태국 외무장관
 - 아스팍 프로젝트의 구체화와 지역안보문제 논의 필요
- 트란 찬 탄 월남 외무장관
 - 월남전 추이, 파리평화회담의 담보상태 설명
- 웨이 타오 밍 대만(구 자유중국) 외교부장
 - 중국의 핵개발은 지역 내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

2. 박정희 대통령은 그간의 아스팍 발전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내용의 축전을 각료 회의에 발송함.

68-083

ASPAC 상설위원회(1967-68년도) 제5-9차. Canberra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25/2/1~152(152p)

1. 제5차 상설위원회(1968.2.16.)

- 지역정세, 한국의 사회문화센터 설립제의, 제3차 각료이사회 일자(1968.7.30.~8.1.) 및 의제, 칠레의 옵서버 참가문제 등
- 사회문화센터 관련, 경비·사업·사무국, 회원국의 재정기여(의무분담금 또는 자발적 분담금 여부) 등 협정문안 검토

2. 제6차 상설위원회(1968.3.27.)

- 지역정세, 한국의 사회문화센터 설립제의, 제3차 각료이사회 일자 및 의제
- 사회문화센터 관련, 대만 기여금(20,000달러) 발표, 일본의 수정안(한국이 운영비에 기여금을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등 협정문 검토
- 사회문화센터 기여금 관련 일본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회의 개최기로 결정

3. ASPAC 실무자회의(1968.4.26.)

- 사회문화센터 협정문에 대한 일본 수정안 협의 및 각료이사회에 보고키로 함

4. 제7차 상설위원회(1968.5.6.)

- 지역정세, 사회문화센터, 제3차 각료이사회 의제 및 의전(좌석배치, 연설순서 등)
- 사회문화센터 관련, 협정문안 최종합의 및 각료이사회 보고 결정, 기여금 문제는 미합의

5. 제8차 상설위원회(1968.5.29.)

- 지역정세, 사회문화센터, 제3차 각료이사회 의제 검토
- 사회문화센터 관련, 센터가입조건(전 회원국 동의), 센터근무 한국인의 면책특권 제한 문제, 한국의 사업비 자발적 기여 문제 등), 일부 회원국의 기여금 공표(일본 62,000달러, 호주 35,000달러, 태국 10,000달러, 필리핀 10,000달러), 라오스의 동 센터 불참문제

6. 제9차 상설위원회(1968.7.1.)

- 지역정세, 사회문화센터, 옵서버참가 교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등), 식량비료기술센터: 대만(구 자유중국) 제안, 제4차 각료이사회 주최국(일본)
- ASPAC 3개년 예산안 검토, 일부회원국 기여금 공표(월남 3,000달러, 뉴질랜드 4,000달러)

ASPAC 상설위원회(1968-69년도) 제1-2차. 동경

| 68-08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25/3/1~144(144p)

1. 도쿄에서 1968년도에 개최된 ASPAC 상설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차 상설위원회(1968.9.10.)

- ASPAC의 성격(전원일치제, open door policy, 군사동맹 아님, 회원국 확대문제 등)
- 식량비료센터: 대만(구 자유중국) 제의, 경제조정센터(태국 제의)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 지역정세 의견교환
- ASPAC 사회문화센터 제1차 집행위원회 개최 결과 설명(한국)
 - ※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간 사바 영유권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거론되지 않음.

● 제2차 상설위원회(1968.11.12.)

- 국제기구에서의 협력문제(9월 상설위원회 이후 ASPAC 회원국들은 Conference of Non-Nuclear-Countries, UNCTAD, ICAO, IAEA, FAO, Colombo Plan, IPFC 등 국제기구에서 상호 협의함)
- 지역정세 의견교환: 월남정세, 중국(구 중공)대표권 문제,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 싱가포르·인도네시아·버마에 대한 ASPAC 회원국 확대 문제
- 소위원회의 활동보고(식량비료기술센터 전문가회의 소집 검토, 동 센터설립에 관한 계획서)
- 제4차 각료회의(주최국 일본은 1969.6.10.~12. 기간을 제시)

2. 본 문서철에는 상기 관련 자료 이외에 1969년도에 도쿄에서 개최된 상설위원회의 보고서(영문), 한국대표단의 참가보고서(국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68-085

ASPAC 상설위원회 소위원회(1968-69년도) 제1-5차. 동경



생산연도 1968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C-25/4/1~108(108p)

대만(구 자유중국)이 ASPAC 상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식량비료기술센터 설립을 검토하는 ASPAC 상설위원회 소위원회(5차례, 도쿄 개최)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소위원회 제1차 회의(1968.10.3.)

- 제안된 프로젝트 처리 업무 계획(하기 문제들을 논의해 나가기로 함.)
- 식량비료기술센터 설립(여타 국제기구와 중복 회피, 전 회원국의 참여 등 가이드라인 작성 논의, 제안국인 대만과 의장국인 일본이 구체안 작성 후 논의하기로 함.)
- 경제조정센터(태국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접수 후 논의하기로 함.)
- 각종 제안의 평가 및 처리(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전 회원국의 공동 이익, 상임위 토의 후 이사회에 회부)

2. 소위원회 제2차 회의(1968.10.29.)

- 제1차 소위원회 토의 결과를 채택

3. 소위원회 제3차 회의(1968.11.28.)

- ASPAC 식량비료기술센터 설립 전문가회의 소집(1969.2월), 센터의 기능(조사 및 실험에 한정), 여타 국제기구와 중복 회피 문제, 센터 설립을 위한 향후 추진 일정

4. 소위원회 제4차 회의(1968.12.4.)

- ASPAC 식량비료기술센터 설립 문제(소위원회 작업일정, 동 센터의 여타 국제기구와 중복문제 등 핵심 사항 논의, 동 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뉴질랜드 측 제안 검토)

5. 소위원회 제5차 회의(1968.12.19.)

- ASPAC 식량비료센터 설립을 위한 전문가회의 지침서(Terms of Reference) 검토
 - 센터의 기능, 이행사업의 성격, 여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시범사업의 절차 및 비용, 사무국장 및 전문직의 자격요건, 센터의 규모 및 구성 등

Wolfe, J. R. M. ASPAC 관계인사 방한, 1968.6.23.-26.

| 68-08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25/5/1-12(12p)



ASPAC 기술자 등록처 사무국장인 J. R. M. Wolfe는 우리나라의 실태조사를 위해 1968. 6.23.~26.간 방한하여 외무부, 과학기술처, 경제기획원 등 정부부처와 , 경제단체, 연구소 등을 방문함.

68-087

ASPAC 사회문화센터 규정자료철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25/6/1~131(131p)

1968년도에 생산된 ASPAC 사회문화센터의 규정자료철(영문)로 집행위원회 절차규정, 직원 복무규정 초안, 1968.11.20. 이사회에서 채택된 직원복무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ASPAC 사회문화센터 사무총장 임명

| 68-08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문화교류과

MF번호 C-25/7/1~19(19p)



외무부는 1968.9월 서울에서 개최된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에 즈음하여 동 센터 초대 사무국장에 강병규 중앙대 교수를 임명함.

68-089

ASPAC 사회문화센터 설립경위 및 계획서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C-25/8/1~124(124p)

1. 1968.7월 개최될 제3차 ASPAC 각료회의를 앞두고 동 회의에서 ASPAC 사회문화센터 설치안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외무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함.
 - 사무실 임차 및 비품구입 경비
 - 사무국장 임명 전 실무준비 가능여부
 - 이에 관한 회원국들과의 사전협의 실시
2. 제3차 ASPAC 각료회의에서 사회문화센터 설치안이 통과된 후 국내 관계부처간 준비회의를 거쳐 1968.11월 집행위 교체대표회의를 열고 다음 사항을 토의함.
 - 1968~69년 센터 사업계획안
 - 1968~69년 센터 운영비 예산요구서
 - 센터 조직규정 등

ASPAC 사회문화센터 재무규정

| 68-09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C-25/9/1~81(81p)



1. 1968년중 검토된 ASPAC 사회문화센터 재무규정의 초안 및 최종안

2. 최종안 특기사항

- 회기는 매년 7.1.부터 익년 6.30.까지로 함.
- 사무국장은 사업계획에 의거 연간 예산안을 수립하여 센터 집행위원회에 매 회기 시작 90일 전 까지 제출하며, 집행위원회는 매 회기 시작 30일 전 까지 예산안을 채택하여야함.
- 회원국들에게는 회기 첫째날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함.
- 매 회기 종료 후 6개월간 지출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회기로 이월됨.
- 센터의 운영을 위해 General Fund 및 Special Fund를 설립함.
-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Fund를 투자할 수 있음.

68-091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의사규칙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공보문화과/동남아과
 MF번호 C-25/10/1~127(127p)

1. ASPAC 회원국들이 서명하여 1968.8.1. 발효된 ASPAC 사회문화센터의 집행위원회 의사규칙안과 이와 관련된 지침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사규칙안의 주요 내용

- 회원국 및 회의 참가, 정기회의, 의제, 이사회 임원, 사무국장 임명, 이사회 위원회 및 작업반, 사무국장, 회의 시 사용언어, 회의 진행, 투표, 의사규칙의 정지 및 수정

● 센터에 부여될 지위, 특권, 면제 및 면책

- 법인격 부여, 외교사절에 부여하는 특권 및 무관세 수입 향유(한국인 제외), 건물, 문서의 불가침, 센터 국제직원(한국인 포함)의 법적절차로부터의 면제

- 센터, 동 센터의 자산, 소득, 운영비, 거래는 관세와 제세로부터 면제

● 각종 제안과 프로젝트의 채택과 이행에 관한 지침

- 자발적 참여, 자발적 기여, 이행, 주최국 경비부담, 참가국 경비부담

2. 본 문서철에는 상기 자료 이외에 ASPAC 사회문화센터의 의사규칙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서(미국의 양자 교육문화 교류에 관한 정관 또는 절차,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미국과 우루과이 간 교육교류 위원회 정관) 등도 수록되어 있음.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1~2차. 서울

| 68-092 |



생산연도 1968

생산과 공보문화과

MF번호 C-25/11/1~100(100p)

1968년 서울에서 개최된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제1~2차 임시회의와 관련된 외무부장관의 대통령 보고 사항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집행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 개최 준비 보고(1968.9.26.)

- 1968.10.4.~5. 양일 간 서울에서 개최
- 토의 잠정의제
 - 센터 기구 토의, 승인 / 센터 인사규정 및 규칙(안) 토의, 승인 / 센터 전문직 직원 자격기준 심의, 결정 / 센터 재무 규정안 토의, 채택 / 사무국장의 센터설치를 위한 제반준비사항의 진척보고 청취

2. 집행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 결과 보고(1968.10.7.)

- 센터기구 채택(사무국장 포함 전문직원 7명, 현직고용원 15명)
- 전문직 직원의 의무, 책임 및 자격기준 채택 / 인사규정 채택 / 재무규정 채택 / 현직고용원 규정 등은 보완 후 차기 회의에 보고
- 사무국장의 각종 보고 청취
- 차기회의(11.20.경)
- 언론보도문 채택

3. 집행위원회 제2차 임시회의 개최 준비 보고(1968.11.6.)

- 1968.11.20.~21. 양일 간 서울에서 개최
- 잠정의제
 - 센터직원 복무규정 및 규칙(안) 채택 / 전문직 직원 여행 및 이전관계 규칙(안) 채택 / 센터조직규정 채택 / 센터의 1969년 사업개요 및 예산(안) 승인 / 1970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 전문직 직원 임명에 관한 사무국장 보고 청취 / 일반직원의 임명 및 급여에 관한 사무국장 보고 청취

4. 집행위원회 제2차 임시회의 개최 결과 보고(1968.11.25.)

- 인사규정 채택 / 전문직 직원 여행 및 이전관계 규칙 채택 / 1969년 사업개요 및 예산 승인(42,725달러), 전문직 직원 모집에 관한 사무국장 보고 청취(Hongo Tameo 일본인 사무차장 임명 건은 차기 회의로 보류) / 일반직 직원 선발에 관한 사무국장 보고(15명 중 8명 선발) / 1970년 사업계획검토(16개 사업, 400,000달러)

5. 본 문서철에는 ASPAC 사회문화센터의 Hongo Tameo 일본인 사무차장 후보자 이력서, 1969년도 사업계획서, 회의개최통보 공한, 사회문화센터 기구도, 사무국장 및 전문직 직원의 급여표 등도 수록되어 있음.

68-093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3차. 서울, 1968.12.16.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C-25/12/1~52(52p)

1. 서울에서 1968.12월 개최된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제3차 임시회의 준비 및 개최결과와 관련된 외무부장관의 대통령 보고 사항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집행위원회 제3차 임시회의 개최 준비 보고(1968.12.10.)
 - 개최일자: 1968.12.16. 서울
 - 잠정의제: 센터 전문직원 임명, 센터의 FY1969년(1968.7.1.~1969.6.30.), 예산요구서 심의, 승인
- 집행위원회 제3차 임시회의 개최 결과 보고(1968.12.17.)
 - FY69 행정예산 편성에 관한 한국정부와 센터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 청취 (총액 147,960달러를 109,252달러로 편성하고 불용액 38,708달러는 이월)
 - 전문직 임명동의: Hongo Tameo 일본인 사무차장, Kung Chiu-Chuan 대만(구 자유중국)인 행정관, Morakot Wonnawong 태국인 사회문화부 차석
 - FY69 센터 총예산 승인(행정비 및 운영비로 219,091달러 승인, 불용액 73,343달러 이월)

2. 기타 본 문서철에 수록된 관련 자료

-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제3차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언론 발표문(국문, 영문)
- Provisional Summary Records
- 강병규 사무국장의 건의로 임명된 전문직원 3명의 이력서 등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1차. 서울, 1968.9.6.-7.

| 68-09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C-25/13/1~336(336p)



1. 정부는 1968.8.7. ASPAC 9개 회원국에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1차 회의(1968.9.6.~7.) 소집을 통보함.
 - 잠정의제: 집행위원회 의사규칙 채택, 센터 조직 검토 및 채택, 직원복무규정 검토, 전문직원의 의무, 책임, 자격요건 검토, 전문직의 봉급규모 검토, 센터 재정규정 검토, 사무국장 임명 등
2. 정부는 1968.8.9.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1차 회의 우리나라 대표단을 임명함.
 - 대표 외무부 장관 최규하, 교체대표 외무부 차관 진필식
3.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 회의 일정: 1968.9.6.~7. 9개 회원국 참가
 - 집행위원회 의사규칙 채택 및 센터조직, 직원 복무규정, 전문직원의 의무, 책임, 자격요건, 전문직 봉급 규모, 재정규정 등 검토
 - 강병규 사무국장 임명 승인
 - 1968.10.4.~5. 임시회의 개최 결정
 - 회의결과 보도문(1968.9.7.) 발표
4. 1968.10.12. 외무부는 ASPAC 사회문화센터 측에 공한을 보내 제1차 회의 개최에 따른 경비가 총 777,000원 인바, 이중에 278,000원은 한국 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며 498,534원은 사회문화센터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함.
5. ASPAC 사회문화센터는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1차 회의 결과 보고서 및 토의기록을 회원국들에게 배포하고 이들의 코멘트를 접수해서 반영한 최종본을 발행함.
6. 기타 본 문서철에 수록된 자료
 - 강병규 사무국장 임명장, 사무국장 이력서, 참가자 명단, 동남아친선 및 경제사절단(단장 백두진)의 보고서(라오스의 ASPAC 사회문화센터 참가의사 확인), 정기회의 제1차 회의 결과 보고서 및 토의기록
 - 회원국 주재 우리나라 공관의 참가교섭(수석대표 명단 등) 결과 보고서 등

68-095

신생독립국 승인 - 모리셔스, 1968.3.12.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C-25/14/1~20(20p)

1. 정부는 1968.3.12.자로 영국통치로부터 독립하는 신생 독립국 모리셔스를 동일자로 승인함.

● 국무회의는 1968.3.18. 모리셔스 승인을 의결

2. 본 문서철에는 모리셔스 개황, 약사, 각국 태도(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모리셔스를 독립과 함께 승인)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신생독립국 승인 - 나우루, 1968.3.26.

| 68-096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25/15/1~47(47p)



1. 정부는 1968.1.31. 호주, 뉴질랜드 및 영국의 공동신탁통치로부터 독립한 나우루공화국을 1968.3.26. 승인함.
 - 이 승인은 1968.3.26. 최규하 외무부장관의 나우루공화국 국가평의회위원장 앞 공한으로 주호주대사관을 통해 나우루측에 전달됨.
2. 본 문서철에는 나우루공화국 승인에 관한 1968.3.15.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재가한 문서 및 나우루 공화국 개황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68-097

신정부 승인 - 페루, 1968.10.22.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25/16/1~38(38p)

1. 페루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1968.10.3. 신정부를 수립함.
2. 페루를 검임하는 주브라질대사관은 각국이 신정부를 승인하는 추세를 지켜본 후 승인시기를 결정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의 페루 담당부서도 쿠데타에 대한 국민적 지지여부가 불투명하고 쿠데타 이유 중 하나가 미국계 석유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불만이어서 미국이 신정부를 조기에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함.
3. 그러나 주유엔대표부는 유엔대책을 위해 필요하다며 조기승인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10.22.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페루 신정부를 승인함.

신생독립국 승인 - 스와질란드, 1968.9.6.

| 68-09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C-25/17/1~11(11p)



1. 1968.3월 주케냐대사관은 영국의 보호령 스와질란드가 같은 해 9월 독립할 예정이며 영국과 자치 정부 간 협상의 쟁점은 영국이 보유한 광산개발권의 향방이며 자치정부가 별도 보상조치(재정 원조와 투자)를 요구하여 난항이 예상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정부는 9.6. 스와질란드가 독립한 당일에 즉각 승인하고 주유엔대표부를 경유하여 스와질란드 정부에 통보함.

68-099

신생독립국 승인 - 남예멘, 1967.12.15.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20/8/1~115(115p)

1. 우리정부는 영국이 아라비아반도 남부 지역의 보호령과 식민지를 통합하여 1967.11.30. “남아라비아 연방”(남예멘 인민공화국)으로 독립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에 앞서 국가승인에 관한 미국, 일본 등의 주요국가와 아랍제국의 방침을 확인토록 현지공관에 지시함.
2. 이러한 조치는 해당지역에서 내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는바, 종주국 영국과 아랍 제국은 즉각 승인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다른 국가들은 당분간 관망하려는 자세임을 확인하고 우리정부도 시간을 두고 지켜본 후 추후 결정기로 함.
3. 그러나 1967.12월 중순 미국, 프랑스, 독일(서독) 등의 주요국가와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남예멘 인민공화국을 승인함에 따라 우리정부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가승인조치를 취함.

재한일본인 유골인도

| 68-100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C-25/18/1~13(13p)



1.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해방 당시 한국에 보관 중이던 일본인 유골 소재확인에 관한 일본 민원인의 진정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현지 민간단체 진정

- 사단법인 후쿠오카 갱생회는 해방 직후 한국에서 사망한 일본인 야마모토 아사코의 유골이 전북 이리 소재 사찰에 보관되었으나 이후 그 자리에 세워진 기독교 교회에 유골이 계속 보관되고 있는지를 문의
- 외무부는 내무부에 사실관계 확인 의뢰

● 일본인 손자 진정

- 해방 당시 부산 소재 사찰에 보관 중이던 일본인 오다 한지로의 유골이 계속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손자 오다 이츠오가 문의

2. 한편, 대한불교 달마회는 서울시내 소재 정토종계 사찰에서 발굴한 일본인 유골 2천주를 보관 중이라고 외무부에 알려옴.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V.1 사전준비철



생산연도 1968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C1-19/2/1~396(396p), Re-25/10/1~18(18p)

1.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개최시기와 관련하여 일본측이 1968.8.27.~28. 양일로 하되 8.29.은 예비일로 유보할 것을 7.2. 제안하여 왔는바, 우리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일측과의 절충을 거쳐 회의 일정을 8.27.~29.간 서울 개최로 확정함.
2. 7.12. 우리정부는 제2차 각료회의에서 양국관계 일반 및 국제정세의 검토, 재일한국인에 관한 일반문제, 재일한국인의 교육에 관한 문제, 양국의 경제 정세 및 경제협력, 무역, 농림·수산, 교통·운수를 우리측 의제안으로 하여 일측과 절충할 것을 결정함.
 - 의제에 따라 참석 각료의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일한국인 문제와 관련된 협의를 위하여 일측 법무, 문교 양 각료도 참가하도록 교섭하기로 함.
3. 7.26.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은 한국측이 법무 및 문교 각료 참석을 원하고 있으나 종전 각료회의가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어 왔고 법무나 문교 각료가 토의할 문제가 각료회의에서 논의되어야만 될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한국측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함.
 - 일측은 재일한국인 관련 문제는 정식의제가 아니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
4. 진필식 외무차관은 8.1. 가나야마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측의 법무, 문교 양 각료 참석문제에 대하여 양측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재일한국인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
5. 박정희 대통령은 8.2. 청와대에서 개최된 한·일 정기각료회의 대책 협의 시 재일한국인 문제를 의제에 올릴 필요가 없으며 실질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준비를 추진할 것을 지시함.
6. 우리정부는 일측 참가 각료 범위를 종전과 같이 외무, 대장, 농림, 통상산업, 운수 대신 및 국무대신(경제기획청장관)으로 하고, 의제안에서 재일한국인 문제를 독립된 의제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동 사항은 협정 시행에 관련된 것이며, 양국관계 일반의 검토에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 관심사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국관계 일반 검토 시 북송문제, 재사할린교포의 귀환 문제 등 현안과 같이 토의할 것을 일측에 제의하도록 8.9. 주일본대사에게 훈령함. 일본 외무성은 8.10. 우리측 제안에 대하여 동의함.
7. 외무부가 8.15. 작성한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 임할 기본방침 자료 중 기본방향
 - 양국의 일반관계를 고차적 견지에서 검토 협의하여 금후 양국관계를 정립
 -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인식시키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등 공동관심사의 긴밀한 협조
 - 양국관계의 균형과 조화가 있는 발전을 위해 경제면에서의 협력과 동시에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문제, 북송 등 북한과의 접촉 등에 대해 일측의 성의 있는 조치 촉구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V.2 본회의철

| 68-10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1-19/2/1~396(396p), Re-25/11/1~6(6p)

1. 박정희 대통령은 1968.8.28.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 참석한 미끼 외상 등 일본측 대표와 면담하였는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박 대통령

-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이 경제협력에 관한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나라민은 한·일국교정상화후의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함. 문제의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은 일본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임.
- 한국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확대, 보세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대담한 문호개방, 한국 물품의 수입 등에 대하여 일측이 적극성과 결단성으로 임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함.

● 미끼 외상

- 금번 회담에서 쌍방이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박 대통령이 문의한데 대하여 기본적인 문제에 큰 차이는 없으나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 일본이 협력 할 수 있는 정도, 범위에 문제점이 있음.
- 한국의 제2차 5개년계획에 있어 공공투자, 농어촌 발전에 주력을 두고 있는 것은 적절한 계획으로서 일본도 협력하고자 함.

2. 8.29. 정기각료회의 폐회 시 채택된 공동공유니케 중 아시아·태평양정세 관련 주요 내용

- 한국의 안정과 번영이 일본에 중대한 영향이 있음을 인정하며,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양국공통의 목표임을 확인하고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양국이 계속 협조 노력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봄.
- 한국측은 1.21사태 등 북한의 위협 증대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일본측은 한국정부와 국민이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면서 안전의 확보와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함.
- 월남 문제에 관한 파리회담에 주목하며 명예로운 평화달성을 희망함.
- 국제연합 등 제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확인하며 한국통일을 위한 국제연합의 제반노력에 대한 계속 협력에 합의함.
-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교육 및 생활향상을 위한 관계당국간 회담의 조속 개최에 합의함. 재사할린 한국인의 조속 귀환문제에 대하여 일본측은 될 수 있는 한 협력을 표명함.
- 한국측이 재일한국인의 복송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를 표명한데 대하여 일본측은 소위 칼카타협정이 종료되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함.

3. 본 문서철에는 공동공유니케 작성을 위한 양측간 교섭 경위, 각료회의 회의록 등 관련자료가 수록 되어 있음.

68-103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V.3 사전준비자료철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Re-25/12/1~261(261p)

외무부는 제2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를 앞두고 외무부 소관 의제에 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 부내실국과 주일본대사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바, 이에 따라 정리된 “기본입장”은 아래와 같음.

1. 기본방향

- 아시아의 평화, 안전, 번영을 위한 한·일 협의체제 강화
- 한일관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과 재일한국인 권익향상 추구

2. 정세평가

- 북한의 도발 격화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한 인식 촉진
- 아스팍 중심의 아태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협조강화 필요성 강조

3. 재일한국인 권익 향상

- 원활한 협정영주권 부여를 위한 노력 촉구
- 한국학교에 대한 정식학교 인가 요청
- 교포사회가 신청한 15개 신용조합 설립 조기허가 및 장래 교포은행 설립 허용 요청

4. 원폭피해자 구호

- 한국 거주 원폭피해자 7천여 명에 대한 치료 지원

5. 문화재 반환

- 일본국내 민간소장 문화재 반환을 위한 노력 촉구

6. 일-북한 관계

-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고려하여 북한과의 직·간접 접촉 자제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V.5 사안별 실무자회의철

| 68-10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1과/재무부

MF번호 C1-20/1/1~186(186p)

1. 제2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를 앞두고 양국정부는 각종 사전실무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

- 수산청장 회의(1968.4.17.~20. 도쿄, 김재식 수산청장과 히사무네 다케시 수산청장관)
 - 양측은 국교정상화 당시 합의한 어업협력자금 중 일부를 연안 중·양식 사업을 위한 기자재 도입에 사용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
 - 양측은 해태(김)교역에 관한 합의의 조기추진에도 합의
- 투자, 관세분야 협의(7월 도쿄 및 서울, 양윤세 경제기획원 투자관 등과 무라이 대장성 국제금융국장 등)
 - 한국은 상업차관으로 12개 사업 8천만달러 제공, 차관조건 완화, 관세인하 등을 요청
 - 일본은 조세협정 조기체결, 공업소유권 보장 희망
- 관세분야 교섭(1968.8.15.~17. 도쿄, 심의환 상공부 상역국장 등과 일본 외무성, 대장성, 통산성, 농수산성 관계자)
 - 한국은 케네디 라운드 양허품목 관세인하, 쿠파 완화, 위탁가공품 관세인하 등을 요청
- 조세분야 협의 등(8월초, 일본 대장성 주세국장과 특허청 장관 방한)
 - 이중과세 방지, 공업소유권 문제 등 협의

2. 비경제분야에 관해서는 주일본대사관이 창구가 되어 일본정부와 협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법무부와 교육부 관계자도 방일하여 협의에 참가하고 아래와 같은 문제를 논의함.

- 재일한국인 협정영주권 부여절차 간소화, 강제퇴거 완화, 재입국허가제도 개선
- 재일한국학교 졸업생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자격 부여

68-105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V.6 관계부처 협조철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1과/재무부
MF번호 C1-20/2/1~922(922p)

1. 제2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를 앞두고 경제기획원은 아래와 같이 경제현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입장을 수렴하고 기본대책을 수립함.

- 협의대상 부처
 -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부, 상공부, 건설부, 교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 취급분야
 - 수출: 관세장벽, 비관세 장벽, 쿼터
 - 경제협력: 차관, 산업협력, 기술협력, 합작투자
 - 제도정비: 조세, 관세, 해운, 지적소유권, 이중과세방지
- 점검사항
 - 제1차 각료회의 후속조치 현황
 - 주요현안에 관한 입장
 - 주요현안에 관한 일본정부 입장
 - 대책

2. 외무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아래 사항을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함.

- 한일 정부 간 사전 실무협의 개최 계획
- 각료회의 운영계획
 - 전체회의와 개별회의 구성
 - 공동성명 초안 작성
- 비경제분야 현안 입장 수렴(재일한국인 법적지위와 교육문제 등)

3. 또한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로부터도 관세 및 비관세장벽, 차관 도입, 합작, 공업소유권, 기술협력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한·미 외무장관회담. Wellington(뉴질랜드) 1968.4.4.

| 68-10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Re-26/3/1~235(235p)

1.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월남전 참전 7개국 외상회의를 계기로 1968.4.4. 개최된 최규하 외무장관과 D. Rusk 미 국무장관 간 한·미 외무장관회담의 주요 논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1968.1.21. 북한무장공비 서울침입 분석
- 북한의 군사력 강화
- 미국의 추가 군사 원조
- 한국전 참전 16개국 공동선언의 재확인 문제
- 한미 방위조약의 보완(북한의 대남 공격의 경우 미국이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 또는 각서)

2. 본 문서철에는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위한 아래 내용의 준비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 웰링턴 한미외무장관 회담자료(국문, 영문)
 - 주요요지: 대미교섭 기본입장, 안전보장문제(한미방위조약의 행정적 보완, 대한추가군원, 한미국방장관 회담개최, 참전16개국 공동성명 재확인, 푸에블로사건 처리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한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타진, 경제협력문제(미국의 수입제한 입법 저지, 수입부가세 및 수출보상제도 신설 저지, Kennedy Round 관세인하 조기실시)
- 대미교섭자료(영문)
- 미국-필리핀 간 방위조약 중 미국의 commitment 관련 조사
 - 1954.9.7. Dulles 미 국무장관이 Garcia 필리핀 부통령 겸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한 중 관련 구절
 - "If the Philippines is attacked, the United States would act immediately."
- 우리 측이 준비한 한미 외무장관회담 합의록 초안(영문) 및 Memorandum 안(영문)
- 월남 협상에 임함에 있어 대미교섭 복안(국문, 영문)
 - 미국의 한국 및 극동에서 disengagement 최대제지, 한국군원 지속과 증가, 북한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제지, 중국(구 중공)의 핵공격에 대한 보장, 아·태 공동방위체제 재정비 등
- 한국 방위상의 문제점(국문, 영문) (대한민국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성)
 - 북한정세 분석, 육·해·공군 한국군 증강계획, 향토예비군 무장, 한국군병력 수준, 1억달러 추가 군사 원조 계획
 - 부록 1: 한국군 증강계획, 부록 2: 연차별 증강 시행계획

68-107

월남참전 7개국 외상회의, 제2차. Wellington(뉴질랜드) 1968.4.4.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2과/미주과

MF번호 Re-17/3/1~293(293p)

1. 외무부는 1968.1월 주호주대사에게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과 외무장관들 간에 월남 참전국 외상회의 개최 및 우리의 참가 필요성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뉴질랜드 정부의 월남 참전국 외상회의 개최 계획과 우리나라 초청여부를 타진토록 지시함.
2. 뉴질랜드 정부는 68.2.11. 우리정부에 참석여부를 공식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68.2.12.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초청 수락의사를 뉴질랜드에 통보함.
3. 외무부는 68.3월 동 외상회의 기본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 월남 문제와 북한의 위협에 처한 한국의 방위문제를 결부시켜 마닐라 정상협의체제가 한국에 기여토록 함.
 - 마닐라 정상협의체제의 범위를 월남전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형태의 공산침략에 대처할 실질적인 지역적 집단방위체제로 발전시킴.
 - 월남전 수행 관련 월남 정부의 주체성을 강조
4. 박정희 대통령은 상기 기본전략 브리핑 시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지시함.
 -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지역 내 공산침략 방어를 위해 사전대비가 중요하며 한국의 국방력 증강이 긴요함을 강조할 것
 - 제2차 월남전 참전 정상회의 개최문제 거론 시 월남전 해결을 위한 새로운 묘안이 없으면 정상회의는 무의미하며 개최 경우에도 외상회의 등 사전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할 것
5. 외무부는 1968.3.18. 관련 재외공관에 대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아·태 지역 집단안보 체제를 검토할 것을 희망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7개국이 월남에서와 같은 공동보조 결의를 표명하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되도록 주재국에 교섭할 것을 지시함.
 - 미국 국무부(하비브 월남담당 부차관보)는 68.3.12. 우리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외상회의에서는 아·태 권내의 집단안보체제 문제는 검토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함.
6. 1968.4.4. 웰링턴에서 개최된 월남 참전국 외상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우리나라에서는 최규하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월남, 미국, 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참전 7개국이 참석).
 - 회의 개최목적이 월남전의 효율적 수행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전반의 안전문제도 검토한다는데 합의



- 7개국 협의체제의 지속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정례적인 협의의 기반을 강화
- 월남 방위와 관련하여 월남정부의 자주성 강조(공산측의 연립정부 수립론 배격)
- 존슨 대통령의 북폭 중지결정으로 평화에 대한 책임은 월맹에 있음을 확인
- 우리나라는 공동성명에 한국 조항을 포함시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이러한 침략행위가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관심사임을 확인

월남참전국 공보실무자회의. Washington D.C.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1-18/8/1~129(129p)

1. 사이공에서 1967.7.18. 개최된 제2차 월남 참전 7개국 대사급 회의는 참전국 간 참전관련 홍보 자료 및 홍보수행계획 등의 교환과 조정을 목적으로 공보실무자회의를 워싱턴에 설치하기로 함.
2. 주미국 월남대사관에서 7차례의 월남 참전국 공보실무자회의가 개최 되었는데,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차 회의(1967.8.28.)
 - 참전국의 홍보 관련 정보교환, 각국의 자주성 존중, 홍보 대상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 월남전 참전 공헌 및 업적의 적극 홍보 방안
 - 제2차 회의(1967.9.1.)
 - 참전국의 유엔대표부 및 월남 주재 특파원을 홍보면에서 활용하는 방안
 - 미국은 참전국 고위인사의 연설 활용, 참전국 외교관들의 월남 시찰, 참전국 관리들의 주요국 배치 등을 담은 Project Proposal을 제안함.
 - 제3차 회의(1967.9.11.)
 - 미국 제안에 대해 한국은 원칙적 찬성 입장이나, 기타 참전국들은 아직 검토를 마치지 않아 추후 토의하기로 함.
 - 제4차 회의(1967.9.21.)
 - 참전국의 총리, 외상 등 고위관리의 참전 홍보 연설은 마닐라 정상회의 1주년이 되는 10월말까지 시행
 - 미국이 제안한 Project Proposal은 각국 시행을 강화하는 선에서 일단락하기로 함.
 - 미국은 참전국 외상의 유엔연설을 촬영 배포하겠다고 제안, 참가자 전원이 동의함.
 - 제5차 회의(1967.10.11.)
 - 한국은 월남군의 전투수행을 평가함으로써 사기를 양양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태국은 월남전 배경, 연합국의 어려움, 월남전의 성격(내란이 아니고 국가 간 전쟁), 참전국의 참전 목적 홍보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Working Paper를 제출함.
 - 제6차 회의(1967.10.23.)
 - 태국의 Working Paper를 반영한 월남전 홍보 참고자료를 배포하기로 함.
 - 제7차 회의(1967.12.6.)
 - 태국이 제안한 참전국 대표로 구성되는 유세반 구성 및 미국 내 순회를 결정함.
 - 한국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한국인 연사명단(김동조 대사, 김용식 대사, 양유찬 대사, 전상진 공사, 김보성 공보관장)을 통보함.
 - 첫 유세는 1968.1월 중순경으로 정함. 미국이외의 지역 유세에 대해서 미국에서 실시 해본 후 결과를 보고 시행하기로 함.

총영사회의 – 미국. Washington, D.C., 1968.9.16. 및 12.6.

| 68-109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1-20/6/1~94(94p), Re~26/5/1-8(8p)

1. 주미총영사회의가 대미수출진흥확대회의에 이어 1968.9.16. 주미국대사관에서 개최됨.
 - 참석 공관: 주미국대사관, 주뉴욕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시카고총영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등 6개 공관
 - 회의 진행
 - 각 공관의 영사 업무 보고, 공보사업 및 장학사무 현황 설명(대사관)
 - 정무과의 현황 브리핑: 23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전망, 월남문제, 푸에블로 및 북한문제, 미국 선거 전망
 - 영사 사무에 관한 토의: 교포여권 및 여권갱신 발급의 신속화, 기한이 지난 무효여권 소지자의 일시귀국 문제 등 민원사무 처리, 명예영사관 설치 후보지에 대한 명예총영사 후보자 물색 결과 등
 - 대정부 건의사항
 - 미국 영주권 소지 재미교포에게 주일본대사가 교포여권을 발급하는 것과 같이 주미국대사의 교포여권 발급 권한 부여
 - 군 전문의 및 군 법무관 등 군요원에 대한 여권 발급 시 체미 예정기간에 맞춘 여권발급 또는 공관장의 판단에 의한 현지에서의 여권기간 연장 조치
 - 계약기간이 종료된 파독광부에 대하여 이주허가 취득 시 2년간 여권기간 연장
 - AID, UN 등 초청으로 내미하는 관용여권 발급시 유효기간의 1, 2개월 여유 있는 발급
2. 주미총영사회의가 주미통상진흥확대회의(12.5.)에 이어 12.6. 외무부장관 주재 하에 주미국대사 및 미국 주재 6개 지역 총영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박준규 국회의무위원장, 최경록 주멕시코대사 및 장상문 청와대 비서관이 참관함.
 - 동 회의는 장관 훈시와 장관에 대한 주미국대사관 및 6개 총영사관 현황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 공관 운영 일반, 영사관계 사항, 장학관계 사항 등에 대한 토의가 행해짐.
 - 건의사항
 - 현행 각종 주재관 규제관계 법령을 외교일원화 원칙에 입각한 재정비 검토
 - 장학 및 문화, 공보 관계 직원의 각 공관에서의 증원 배치
 - 불요불급한 해외여행 단속에 관한 지시에 포함된 초청장 및 재정보증서에 대한 일체 확인 불허 지시의 재검토
 - 주시카고총영사관 및 주휴스턴총영사관에 대한 1969년도 교민보조비 배정 등
 - 외무부 본부는 동 회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미관계 중요교섭 참고사항 자료를 작성함.
 - 동남아 및 아프리카 제국에 대한 한·미 공동 개발문제,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관한 부채 탕감문제, 대일본관계(일본과 북한간의 접촉봉쇄), 아시아·태평양 이사회(ASPAC) 발전을 위한 미국의 적극지원 요청, 한·미상호방위조약 보완문제

공관장회의 - 구·아중동. Rome, 1968.7.12.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1-20/7/1~167(167p)

1. 구·아중동 공관장회의(1968.7.12. 로마 힐튼호텔 회의실)

2. 참석자

- 외무부 본부: 진필식 외무차관(회의 주재), 최호중 통상 제2국장
- 구주지역: 주이탈리아대사, 주프랑스대사, 주제네바대사, 주영국대사, 주오스트리아대사, 주스위스대사, 주벨기에대사, 주서독대사, 주스웨덴대사, 주함브르크총영사
- 아중동지역: 주모로코대사, 주우간다대사, 주에티오피아대사, 주케냐대사,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 코스트)대사, 주터키대사, 주이란대사, 주카이로총영사

3. 주요토의사항

- 일반정세 및 현안문제, 제23차 유엔대책, 일반행정사항

4. 지역별 주요현안

- 구주지역: 사증면제협정, 북한진출 저지문제, 동서관계에 관한 관찰보고
- 중동지역: 쿠웨이트 및 레바논과의 외교관계 수립, 사우디아라비아의 Faisal 왕 방한 초청, 요르단 후세인 왕 방한 초청
- 아프리카지역: 공보활동 강화, 북한진출 저지, 기술원조 방안 검토, 선원·의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민간업자의 진출방안

5. 외무차관의 공관장회의 시 주요 언급 내용

- 제23차 유엔총회와 관련, 각 공관별로 활동을 강화할 것.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지지하여 달라고 요청할 때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 납득시키기 바람.
- 외국원수의 방한초청은 예산문제보다도 대통령의 연중 스케줄에 의해 고려되어야 함.
- 친선사절단은 동부 및 서부 아프리카,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중동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 파견할 예정임.
- 아랍-이스라엘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본부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각 재외공관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른 한국외교의 방향에 관하여 건의하기 바람.
- 각 재외공관은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바, 본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외교의 장소가 되는 관저의 개선 문제임. 1년에 1~2개 공관의 건물을 구매 또는 장기계약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공관장회의 - 동남아. Bangkok, 1968.4.9.

| 68-111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1-20/8/1~55(55p)

동남아시아 수출진흥회의 및 공관장회의가 최규하 외무부장관 주재 하에 1968.4.8.~9.간 방콕의 에라완 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참석범위

-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 주필리핀대사, 주말레이시아대사, 주태국대사, 주호주대사, 주홍콩총영사, 주랑군총영사, 주뉴델리총영사, 주자카르타총영사
- 방콕, 사이공, 자카르타, 홍콩, 싱가포르 및 시드니 주재 무역관장
- 외무부 본부, 상공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관계관 등

2. 주요 토의사항

- 1968년도 경제외교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실천방안의 협의
- 1968년도 수출목표 5억달러 달성을 위한 대 동남아시아 수출진흥책 강구
-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방안의 협의
- 기타 현지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애로점의 파악 및 그 대책 모색

3. 수출진흥회의(4.8.)

- 각 공관 및 무역관별 보고 후 회의종합 기록과 결의문 채택

4. 공관장회의(4.9. 공관장만 참석)

- 외무부장관은 월남 참전국외상회의의 성과 및 우리나라의 대 월남 지원 문제 등을 설명하고 1.21사태에 따르는 금후 외교활동의 방향과 지침에 관해 설명함.
- 최 장관은 4.4. 웰링톤에서 개최된 제2차 월남 참전국 외상회의의 참석, 귀로에 방콕에 도착함.
- 각 공관장들은 주재국 정세, 1971년까지 영국군의 스즈즈 이동 철수 후의 동 지역방위 문제에 관련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역할, 제3차 ASPAC 각료회의에 대한 각국의 동향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함.

5. 기타 활동 사항

-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회의의 전인 4.9. 오전 전 공관장을 대동, 타남 태국수상을 예방, 동남아 재외공관장회의를 방콕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해 태국정부의 후의에 사의를 표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ASPAC이 사회, 경제, 문화면을 통하여 더욱 결속, 발전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태국간의 기존 유대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타남 수상은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 태국군에 막사를 지어준데 감사의 뜻을 표한 후, 아시아 국가들이 모인 ASPAC이 더욱 발전하고 강화되어 기타 지역에 대하여 발언권이 강화되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태국과 한국간의 우호관계 증진을 희망함.
- 태국정부는 ASPAC 사회문화센터 서울 설치에 약1만달러의 기여금 제공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함.

68-112

박정희 대통령 호주·뉴질랜드 방문, 1968.9.15.-23. 전5권 V.1 기본 문서철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남아1과/의전과

MF번호 C-26/1/1~279(279p)

1. 1966.10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월남전 참전국 정상회의 시 호주 및 뉴질랜드 정상외 우리 대통령에 대한 방문초청을 수락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1967.7월 박정희 대통령의 1968.3월경 양국 공식방문을 제안함.
 - 이에 대한 양국의 원칙적인 수락의사를 통보 받고 구체사항을 교섭하였는바, 뉴질랜드 방문시기,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부, 대형기 착륙이 불가능한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 이동시 뉴질랜드측 공군기 사용문제 등이 주요 현안이었음.
2. 1968년 봄 월남전 참전국 정상회의가 계획됨에 따라 우리정부는 1967.11월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1968년 가을 방문계획을 양국과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1968.9월 중 방문일정에 합의함.
 - 호주: 68.9.16.~19.
 - 뉴질랜드: 68.9.19.~23.
 - 당초 우리측은 9.22.까지 일정으로 제안하였으나 뉴질랜드측이 농촌방문을 위한 1일 추가를 제의하여 우리측이 이를 수락함.
3. 의전사항 협의과정에서의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음.
 -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우리측 희망대로 하지 않기로 함.
 - 뉴질랜드 웰링턴 공항에 대형기 이착륙이 불가능함에 따라 인근 Ohakea 공군기지에 임차전용기(B-707)를 착륙시키고 뉴질랜드측 공군기로 웰링턴으로 이동하기로 함.
4. 정상회담 의제로 주호주대사는 시드니 총영사관 설치, 뉴질랜드 1인 공관설치 등을 건의하였으나, 시기 문제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다음과 같은 의제가 결정됨.
 - 양국공동사항: ASPAC에서의 협조, 월남전 참전국 정상회의에서의 협력, 한국전 참전 16개국 공동성명 정서의 재확인, 유엔에서의 협력 등
 - 호주: IECOK를 통한 협조, 합작투자·차관 도입, 기술협력, 호주 광산개발 합작투자, 파푸아뉴기니 산림 개발, 호주산 소 수입 등
 - 뉴질랜드: IECOK 가입, 어업 합작투자, 젓소 수입, 낙농기술협력 등

박정희 대통령 호주·뉴질랜드 방문, 1968.9.15.-23. 전5권 V.2 의전

| 68-113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남아1과/의전과

MF번호 C-26/2/1~541(541p)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1968.9.15.~23.간 호주·뉴질랜드 방문과 관련하여 검토, 수립된 의전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항공기 임차

- World Airways, PANAM 등 검토 후 Northwest 항공의 B-707기를 임차기로 함.

2. 경유지 홍콩 의전사항

- 본대가 홍콩에 10시간 체류함에 따라 홍콩정청과 경호문제를 긴밀 협의함.
- 대통령일행은 페닌술라 호텔에서 휴식
- 주한대사들의 건의 및 외국의 관례 조사 후 최종 순간에 박근혜 영애가 수행원에 추가됨(비공식 수행원 서열 1위).

3. 호주 의전사항

- 각종의전절차, 경호사항이 협의, 검토 되었는바, 영연방국가의 특성상 수상과 총독 관련 의전사항, 각종행사시 복장문제 등이 중점 협의됨.

4. 뉴질랜드 의전사항

- 웰링턴 도착 시 양측의 복장, 소형기로 이동해야하는 웰링턴 및 낙농시찰지 이동시 수행원의 탑승항공기 배정 문제 등이 특기사항임.
- 협의과정에서 양측간 교환된 영문서한에서 우리측은 State Visit, 뉴질랜드측은 Official Visit 라고 언급 하였으나, 최종적인 공동성명서는 state visit라고 언급

5. 서사모아 의전사항

- 박 대통령 일행의 우리 원양어선단 격려 및 휴식을 위한 서사모아 경유를 위하여 서사모아 당국과 의전사항을 협의함.

6. 의전안내

- 수행원들에게 각종 행사 절차 및 준비사항에 관하여 공지함.

68-114

박정희 대통령 호주·뉴질랜드 방문, 1968.9.15.-23. 전5권 V.3 연설문 및 공동성명서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남아1과/의전과

MF번호 C-26/3/1-279(279p)

1. 1968.9.19. 한·호 양국 정상은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호주 정부는 북한무장공비 침투사건에 주목하고 그러한 침략행위는 한반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데 의견 일치
 - 호주가 1953 참전 16개국 선언의 서명국임을 상기
- 양국은 파리 평화회담에서의 월맹의 태도에 유감을 표시하고 월남을 지원함에 있어 연합국과의 협의하에 역할을 다할 것임을 재확인
- ASPAC 협력체제의 지역유대강화에 만족하고 사회문화센터 1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데 만족
- 파푸아뉴기니 산림개발, 양국간 항공로 개설 등 경제협력의 중요성 인식
- 한국의 한발 지원을 위해 호주가 콜롬보 계획을 통해 소맥을 지원한데 대해 한국측이 사의 표명

2. 1968.9.23. 한·뉴질랜드 양국정상은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뉴질랜드 정부는 1.21. 북한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을 좌절시킨데 만족을 표시하고 북한의 도발행위는 한반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데 의견 일치
 - 뉴질랜드는 1953년 참전 16개국 공동선언을 상기하고 한국의 침략대항 노력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
- 양국은 미-월맹간 예비회담의 조속하고 명예로운 해결을 희망하고 월맹이 미국의 축전제외에 불응한데 유감을 표시
- 뉴질랜드는 한국의 조속한 유엔가입에 대한 희망을 표명
- ASPAC 협력체제의 지역유대강화에 만족하고 사회문화센터를 서울에 설치한 한국의 노력에 만족
- 양국간 기업인교류, 항공로 개설, 항공협정 체결, 농업 및 수산 분야협력 등 경제협력 가능성 논의

3. 도착성명, 각종행사 연설문

박정희 대통령 호주·뉴질랜드 방문, 1968.9.15.-23. 전5권 V.4 자료 및 신문보고

| 68-115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남아1과/의전과

MF번호 C-26/4/1~123(123p)

1. 자료

- 박 대통령각하의 호주 및 뉴질랜드 공식방문의 의의(1968.9.13.)
- 호주, 뉴질랜드 방문에 따른 문제점
 - 대통령기 사용문제, 수행원 서열문제, 여유시간 활용문제 등
- “강가루”작전 피알 계획(초)
- 참전용사협회 보도자료
-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작성 수행원 안내서
- 호주, 뉴질랜드 교포 명단 등

2. 신문보도

- 순방지 주재공관의 언론보도 요지 보고
- 순방지의 언론보도 스크랩

68-116

박정희 대통령 호주·뉴질랜드 방문, 1968.9.15.-23. 전5권 V.5 타부처 및 협의사항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남아1과/의전과
MF번호 C-26/5/1~233(233p)

박정희 대통령의 호주·뉴질랜드 방문(1968.9.15.~23.)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는 다음과 같은 현안사항을 정상회담에서 협의해 줄 것을 희망함.

1. 호주

- 외무부(통상국, 아주국)
 - 기술연수생 파견, 자본도입, 특혜관세제도, 영업초·의류 등 시장개척, 기술이민 등
- 경제기획원
 - ASPAC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철광석·석탄 도입, 기술이민 추진, 축산기술협력 등
- 농림부
 - 호주근해 시험출어, 파푸아뉴기니 목림개발사업, 육류 수입금지 지역변경 등
- 상공부
 - 한국산 섬유직물 수입, 반덤핑 관세 납발 방지 등

2. 뉴질랜드

- 외무부(통상국)
 - 기술연수생 파견, 어업 합작투자, IECOK 참가문제, 1인 공관 설치 등
- 농림부
 - 임야조성을 위한 기술협력, 어업협력, 육가공기술협력 등
- 상공부
 - 한국산제품 수입촉구, 후진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등

박정희 대통령 미국 방문, 1968.4.17.-19.

전2권 V.1 기본 문서철

| 68-117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26/6/1~379(379p), Re-26/10/1-52(52p)

1. 1968.2.11. 한국을 방문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우리정부 관계자들과 면담한 사이러스 반스 미국 대통령 특사는 2.15.자 최규하 외무장관 앞 서한에서 향후 수년 내에 한국공군에 5개 팬텀 전투폭격기중대 제공, 100만 향토예비군에 대한 소총 및 장비 지급 등 국군전력강화에 관한 한국측의 요청을 존슨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함.
2. 외무부가 4.3. 작성한 한·미 현안문제에 관한 박대통령의 존슨 대통령 앞 친서안(국문, 영문)의 요점은 다음과 같음.
 - 국방력강화 문제
 - 북한의 전쟁준비와 도발행위로 인한 긴장상태
 - 반스 특사의 건의사항에 대한 미국정부의 조속한 조치 요구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행정적 보완
 - 한국의 자체방위능력 강화와 향군조직, 수도방위사 강화 필요성, 대간첩 작전능력 강화
 - 아시아·태평양 안전보장문제
 - SEATO의 약화, 영국군 철수, 중국(구 중공) 핵능력 성장
 - 아시아·태평양안전보장체제 강구 필요성, 한국의 아·태지역안보에의 공헌결의와 용의
 - 월남전 참전 16개국의 공동선언 재확립문제와 공동적 안전보장의 필요성
 - 경제력 배양
 - 미국 민간기업에 의한 직접투자, 공동투자의 필요성
 - 한·미 통상관계 확대와 미 보호무역 조치의 지양 요망
 - 월남전
 - 한국과 월남 안전의 불가분성
 - 공산세력에 대한 투쟁전략에 있어서 단호한 대응 및 압도적인 군사력만이 유효
 - 푸에블로호 사건
 - 판문점회담의 무성과 및 북한의 기만적 술책
3. 본 문서철에는 외무부가 한·미정상회담에 대비하여 4.13. 작성한 한·미간 현안문제에 관한 설명안 자료도 수록되어 있는바, 동 내용은 상기 존슨 대통령 앞 친서안과 대체로 동일함.

68-118

박정희 대통령 미국 방문, 1968.4.17.-19.

전2권 V.2 신문기사철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27/1/1~227(227p)

1. 박대통령 방미에 즈음한 국내언론 보도동향은 다음과 같음.

- 당초 4.7.~8.간의 호놀룰루 방문계획 보도
- 킹 목사 피살에 즈음한 미국사정으로 무기 연기된 사실 보도
- 4.17.~18. 호놀룰루 개최계획을 보도하고 회담을 전망
 - 미국은 한국군 월남 증파 요청
 - 한국은 국군 전력증강 요청
- 1, 2차 정상회담 결과 보도
 - 북한 재침시의 즉각 대응 합의
 - 국군현대화 합의
 - 국군 월남 증파 논의(추측)
- 박대통령 귀국성명 보도
 - 일면국방, 일면건설 의지
 - 한미결속의 중요성 강조
 - 안보를 위한 결의

2. 박대통령 방미결과에 대한 외국 언론의 보도 요지는 아래와 같음(재외공관 보고).

- 미국의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미국이 북한 남침시의 지원방침을 재확인하였으며 한국은 월남 참전국의 평화협상 참여를 요구함.
- 일본의 아사히: 푸에블로사건으로 고조되었던 한국 내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됨.
- 프랑스의 르몽드: 한국은 베트남 평화협상에 참전국이 모두 참석해야한다고 주장함.
-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월남전이 적당히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함.
- 영국의 더 타임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즉각 보복하겠다는 보장을 받으려고 함.
- 월맹 공산당 기관지: 한미정상회담은 월남전을 확산시키려는 기도임.

Selassie, Haile 이디오피아황제 방한, 1968.5.18.-21.

| 68-119 |

전2권 V.1 기본문서철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아중동과/의전과

MF번호 C-28/4/1~389(389p)



1. 대통령비서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6.5월 엄요섭 신임 주에티오피아대사 접견 시 어느 시기에 가서 셀라시에 황제를 방한 초청하는 것이 좋겠으며, 우선 외상이나 국무총리를 1966년 가을 경 초청해 보도록 지시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2. 1966~67년간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수차례에 걸쳐 외무부에 황제 방한 초청을 건의하였으나, 외무부는 국내선거, 외빈영접, 해외방문 등 국내사정으로 방한 접수가 어려우므로 당분간 방한 초청을 추진하지 말 것을 지시함.
 - 1967.10월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에티오피아 황제가 1968년 봄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를 순방할 계획이므로 동 기회에 황제의 방한초청을 재건의 하였는바, 외무부는 1969년 적당한 시기에 고려하겠다고 회신함.
3. 1968.1월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주재국 외상이 셀라시에 황제가 1968.4.29.부터 아시아 7개국을 순방할 것이며 한국에는 5.18.~20.간 체류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4. 외무부는 1968.2.1. 황제 방한 제의를 원칙적으로 수락기로 내정하였고, 1968.3.4.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식 결정함(방한기간은 에티오피아측 제의에 따라 5.21.까지로 연장).
5. 우리정부는 1968.3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영접위원회를 구성함.
6. 셀라시에 황제는 1968.5.18.~21. 방한함.
 - 공식수행원: 상원의장, 사위, 쇼아 도지사, 손녀, 외무장관, 내무장관 등 16명
 - 주요일정: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대통령 주치 만찬, 한국민속예술제 참관, 참전기념비 제막식, 명예 학위수여, 육사방문, 정상회담 등
 - 서훈교환: 양측은 무궁화대훈장(황제), 시바여왕훈장(대통령) 등을 포함, 수행원 및 관계 인사들의 훈장을 서훈
7. 양국 정상회담 요지(68.5.20.)
 - 황제 방한 계기 양국 간 유대 강화 희망
 - 북한의 도발상, 월남파병에 관한 의견 교환
 - 평화적 통일 방안, 대 중립국 외교 강화에 대한 의견 교환
 -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공조 방안 의견 교환
 - 에티오피아에 대한 의사, 교육자, 기술자 지원 문제 협의

68-120

Selassie, Haile 이디오피아황제 방한, 1968.5.18.-21. 전2권 V.2 자료철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아중동과/의전과

MF번호 C-28/5/1~208(208p)

1968.5.18.~21. 셀라시에 에티오피아 황제의 방한 관련 자료

1. 박정희 대통령과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간의 공동성명서(68.5.21.)

2. 연설문

- 셀라시에 황제 도착성명
- 박정희 대통령의 환영사
- 박정희 대통령의 만찬사
- 셀라시아 황제의 만찬사
- 박정희 대통령의 환송사
- 셀라시에 대통령의 작별인사

3. 자료

- 에티오피아 황제 방한 의의(68.2.26. 외무부)
- 에티오피아 황제 방한 초청에 대한 발표문(68.3.15. 외무부)
- 에티오피아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에티오피아 황제 방한 의의(68.5월, 외무부)
- 우리입장 설명요지(안)(68.5월, 외무부)
- 에티오피아 개관 및 자료(68.5월, 외무부)
- 대 에티오피아 경제통상 협력 관련 자료(68.4월, 통상국)
- 셀라시에 황제 아시아 순방보고(68.4~5월, 관련 재외공관)

Marcos, Ferdinand E. 필리핀 대통령방한 초청계획

| 68-121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28/6/1~25(25p)



1. 주필리핀대사는 주재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여 마르코스 대통령이 1968.2월 중의 한국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외무부의 방침을 문의하였으며, 곧이어 공식 초청의사를 전달할 것을 건의함.
2. 필리핀측은 주한 대사관을 경유하여 1968.9월로 예정된 박대통령의 호주 및 뉴질랜드 방문을 전후하여 필리핀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함. 이에 외무부는 우리 대통령이 이미 방문을 약속한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그 외 나라는 도저히 방문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1969년 봄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겠다는 의사와 함께 마르코스 대통령의 1968년 가을 방한을 1968.4월 제외함.
3. 필리핀 외무성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국내 정무상 1968년 중 방한은 곤란한 실정이라고 1968.6.10. 주필리핀대사관에 알려음.

68-122

Holyoake, Keith 뉴질랜드 수상 방한, 1968.10.18.-24.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28/8/1~143(143p)

1. 정부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콜롬보계획 회의(10.22.~24.)에 참석하는 케이드 홀리오크 뉴질랜드 총리의 공식 방한(10.18.~21.)을 초청함.

● 1968.9월 뉴질랜드를 방문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의사를 전한데 따른 것임.

2. 양국 정상은 회담결과(합의)를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으로 발표함.

● 낙농분야 협력

- 뉴질랜드가 한국에 시범낙농공장 건립
- 뉴질랜드 낙농기술자 파한
- 한국 낙농인력 뉴질랜드 연수
- 낙농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인하(검토)

● 임업분야 협력

- 뉴질랜드산 원목의 장기 수입

● 통상분야 협력

- 통상진흥 실무회의 조기 개최
- 각료회의 개최도 검토

● 외교안보

- 한반도 평화적 통일 위한 유엔노력 지지(뉴질랜드)
- 아태지역협력 강화노력 계속
- 월남 지원의지 및 참전국의 평화협상 참가원칙 재확인

3. 홀리오크 총리는 정상회담 이외에 정일권 총리 면담, 군부대, 울산 공업지대 시찰일정 등을 가졌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농학)를 받음.

최규하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68.12.3.-7.

| 68-123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Re-18/6/1~120(120p)



1. 최규하 외무장관은 1968.12.3.~7.간 방미하여 미국정부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수출진흥회의와 주미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는 계획을 추진함.
2. 외무부는 최 장관이 미국정부에 요청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한국군 현대화 공약 이행(사이러스 밴스 미국대통령 특사가 같은 해 2.15.자 외무장관 앞 서한에서 명시한 내용)
 - 팬텀 전폭기 공여
 - 예비군용 소화기 지원
 - 비정규전 수행능력 강화
 - 공항 2개 신설 및 기존공항 확장
 - 상호방위조약 보완(서면보장)
 - 북한 도발 시의 즉각적 반격
 - 핵무기에 의한 공격 시의 즉각적 대응
 - 기타 군사 원조 등
 - 소화기 및 탄약 공장 건설
 - 국방장관 회담 개최
 - 월남전 정책공조
 - 월남 독립보장
 - 평화협상에의 참전국 참가

Khoman, Thanat 태국 외무장관 방한, 1968.6.16.-21.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28/9/1~8(8p)

1. 외무부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학총장회의(IAUP)에 초청연사로 참석하는 타넛 코만 태국 외무장관을 최규하 외무장관의 빈객 자격으로 초청함.
2. 양국 외무장관 면담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 코만 장관이 1.21사태,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에 관해 문익한데 대해 최 장관은 1.21사태는 적화통일이 야욕인 북한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력신장을 방해하려는 의도였으며 푸에블로호 선원의 석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함.
 - 최 장관이 태국군 1개 사단의 월남 증파시기를 물은데 대해 코만 장관은 1968.7월 상순이 될 것이라고 함.
 - 코만 장관은 월남정부의 분열상황을 우려
 - 아스팍과 관련하여 최 장관은 사회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각국의 출연 추이를 설명하였으며 코만 장관은 각료회의 준비상황을 소개함.

Nyamweya, James 케냐 외무장관 방한, 1967.10.31.-11.3.

| 68-125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아중동과/의전과

MF번호 C-23/1/1~123(123p)

1. 주유엔대사가 유엔대책의 일환으로 제임스 나뫼야 케냐 외무장관의 방한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하여 성사됨.
 - 종래 케냐가 유엔토의에서 한국 지지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
 - 나뫼야 장관은 유엔총회 참석 후 귀로에 한국과 함께 일본, 대만(자유중국)을 방문
2. 나뫼야 장관은 방한 시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대통령 예방, 판문점, 부산, 울산 시찰, 육사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 외무장관회담에서 한국측은 유엔에서의 지지, 북한과의 관계발전 자제를 요청하였고 교역, 경제·기술 협력 증진을 제의
3. 이에 앞서 발표한 도착성명에서 나뫼야 장관은 사상적으로 대립하는 동서 양진영의 공존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아공의 인종차별을 비판함.

68-126

김성은 대통령 특별보좌관 일본 방문, 1968.7.19.-24.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27/3/1~11(11p)

김성은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1968.7.19.~24.까지 일본을 방문했으며, 김 보좌관은 방일 기간 중 요오와 공업, 고마쯔 제작소, 미쓰비시 중공업, 일특금속 등을 시찰함.

친선사절단 튀니지·리비아 방문, 1968.1.22.-2.1.

| 68-127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이중등과

MF번호 C-27/4/1~111(111p)

이수영 주프랑스대사는 1968.1.22.~2.1.간 튀니지 및 리비아를 친선사절단으로서 방문함. 정부는 친선사절단에 대하여 방문국의 고위지도층 접촉, 북한의 침투 경고, 유엔에서의 한국 지지, 외교관계 수립 교섭 등을 훈령하였는바, 동 방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튀니지 방문시 주요인사 언급 요지(1.22.~27.)

● Bourguiba 대통령

- 북한과는 외교관계든 총영사관 관계든 맺지 않을 것임. 한국과 외교관계 수립은 발표 시기(timing)의 문제임. 내년 1969.1월 이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되, 먼저 총영사관계로 시작하기를 제의함.

● Bourguiba Junior 외무장관

- 튀니지의 한국과 관계 부재는 튀니지가 서독이나 월남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동감함.
- 한국과 외교관계 수립은 시간문제임. 우선 총영사관을 개설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사관으로 격상시킬 것을 제의함. 북한이 총영사관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 없음.

● Khell 외무차관

- 튀니지는 비동맹 정책 때문에 남북한 문제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원하나, 튀니지는 한국의 입장에 동감(sympathy)임. 북한대표단과는 아무런 결론이 없을 것임. 한국의 월남 파병이나 미군의 한국주둔은 우려할 사항이 아님.

2. 리비아 방문 결과(1.27.~2.1.)

● 리비아 측의 사절단 방문에 대한 사전 동의에도 불구하고, 마침 리비아를 방문 중인 터키대통령의 일정과 겹쳐 리비아 고위인사 접촉은 실현되지 못함.

● 방문 기간 중 접촉한 리비아 주재 미국대사관 대사대리에 의하면 북한의 리비아 접촉은 없었다고 함.

● 리비아는 1952년 독립한 이래 폐쇄정책으로 대외정책에서는 극히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3. 친선사절단의 정부에 대한 주요 건의 사항

● 튀니지 측의 제안대로 우리가 총영사관을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는 방안의 적극 검토

● 북한의 아프리카 침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Task Force를 설치해서 북한의 접촉이 예상되는 리비아,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차드, 콩고, 세네갈 등에 대한 사절단 파견

친선 및 경제사절단 아주 순방, 1968.8.19.-9.11.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27/5/1~236(236p)

1. 정부는 1968.8.19.~9.11.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6개국에 친선 및 경제사절단(단장 백두진 국회의원)을 파견하면서 북한의 무장공비침투 등 침략성, 한국의 1차 5개년경제개발의 성공과 2차 5개년개발계획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유엔에서 한국문제 토의 시 한국 입장 지지 요청과 방문국과의 경제협력 및 통상진흥 문제를 논의할 것을 훈령하였는바, 동 사절단의 주요 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싱가포르(8.19.~22.)
 - 외무장관, 재무장관, 호주 고등판무관 면담과 항만, 주택, 공업단지 시찰
- 인도네시아(8.22.~25.)
 - Suharto 대통령, Sjaichu 국회의장, 외무장관, 농림장관, 재무장관, 무역성 장관 면담
- 라오스(8.25.~28.)
 - Vatthana 국왕, Phouma 외무 겸 국방장관, Champassak 재무장관, Saiguasith 경제장관, 법무장관, 교육장관 면담
- 미얀마(8.29.~30.)
 - U Thi Han 외무장관, 혁명위원회 위원 5명(무역, 공보문화, 광업, 외무경제기획) 면담
- 네팔(9.1.~4.)
 - Thapa 수상, Bista 외무장관, Singh 국회부의장, Basnaya 상공장관 면담
- 인도(9.4.~7.)
 - Gandhi 수상, Pant 국무장관, Singh 상무장관, Ram 인도상공회의소장 면담과 주요 언론 인터뷰
- 파키스탄(9.8.~11.)
 - Ayub Khan 대통령, Hassan 외무차관보, Doha 농림장관, Ahmed 상무차관 면담과 언론회견

2. 본 문서철에는 친선 및 경제 사절단에 대한 정부 훈령 및 구체적 임무, 주랑군총영사관이 작성한 동남아 친선 및 경제사절단 브리핑 자료(1968.8.29.), 동남아 친선 및 경제사절단 보고서(단장 백두진 의원), 백두진 단장이 8회에 걸쳐 방문지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방문지 인상 및 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써서 보낸 편지 보고서, 사절단 방문에 대한 각국의 언론보도 내용 등이 수록 되어 있음.

친선사절단 중동 순방, 1968.8.1.-31.

| 68-129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이중등과

MF번호 C-27/6/1~417(417p)

정부는 국회 외교분과 박준규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을 1968.8월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9개국에 파견하면서, 방문국과의 기존외교관계 강화 방안 협의, 국교수립(미수교국에 대해) 교섭,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설명,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 시 한국 입장 지지 요청, 경제 및 통상협력 증진 방안 논의 등을 훈령하였는바, 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란(8.1.~5.)
 - Pahlavi 국왕, Zahedi 외무장관 면담. 유엔에서 한국 지지 약속
- 레바논(8.5.~7.)
 - Yafi 수상, Asaad 국회의장 면담. 우리의 명예총영사관 설치 약속. 레바논 국회의장, 이슬람 교령 등 방한 초청과 KOTRA 설치 건의
- 요르단(8.8.~12.)
 - Jayousi 수상대리, Fifai 외무장관 면담. Baqaa 피난민 수용소시찰. 한국이 주이스라엘 공관을 설치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평가. 유엔에서 한국지지 호의적 검토 약속
- 쿠웨이트(8.14.~15.)
 - 수상대리, Al-Jaber 외무장관 면담. Kuwait Oil Company 시찰. 남북한 외교관계 수립 불원. 유엔 한국 문제 토의 시 결석 내지 기권. 명예총영사관 및 KOTRA 사무소 설치 건의
- 사우디아라비아(8.15.~18.)
 - Faisal 국왕, Sakkaf 외무담당 국무장관, Yamani 석유장관 면담. 유엔에서 한국 지지 약속. 한국의 월남 파병 평가. 문화교류 환영. 의사, 간호원, 기술자, 군사훈련관 파견문제 논의. Faisal 국왕초청 건의. 주 Jeddah 상주공관 및 KOTRA 사무소 설치 건의
- 통일아랍공화국(UAR)(8.20.~22.)
 - Anwar 외무부 정무담당 차관, Fawazy 외무담당 대통령고문 면담. 한국-UAR 문화협정 서명. 유엔 한국문제 토의시 중립 요청. 문화예술 사절단 파견과 Fawazy 방한 초청 건의
- 리비아(8.22.~25.)
 - Gaddafi 외무장관 면담, Al-Bakbak 경제차관, Benlamin 상공회의소장 면담. 정식 외교관계 수립 및 유엔에서 한국문제 지지 요청. KOTRA 사무소 설치, 경제사절단 파견 건의
- 튀니지(8.25.~28.)
 - Ladgham 수상, Bourguiba 외무장관 면담. 유엔에서 한국문제 토의 시 한국지지 표명 한국의 월남 파병 평가. 총영사관 설치 후 불원간 대사관 승격 호의적 검토 약속. 문화협정 체결 추진. 외무장관 방한 초청 건의
- 모로코(8.29.~30.)
 - Benhima 수상, Slaoui 외무장관 대리 면담. 유엔 한국문제 토의 시 한국지지 약속. 문화협정 체결 추진. Hassan 국왕 방한 초청 건의

68-130

친선사절단 중남미지역 순방, 1968.8.1.-24.



생산연도 1968
 생산과 중남미과/의전과
 MF번호 C-27/7/1~184(184p)

1. 정부는 1968.8월 김용식 주유엔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을 중남미 지역 5개국에 파견하면서, 방문국 주요인사 면담을 통해 친선유대관계 강화,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 설명, 월남 파병이유 설명, 제23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 시 남북한 동시초청 반대 등 한국 입장 지지 요청, 통상진흥 방안 협의 등을 훈령함.
2. 친선사절단의 방문국별 주요 활동 보고 내용
 - 자메이카(8.1.~6.)
 - Campbell 총독, Shearer 수상 겸 외무장관, Eldemire 후생장관 면담. 유엔에서 한국 지지 약속. 문화협정 체결 추진, 의료원 100명 파견 추진
 - 과테말라(8.6.~9.)
 - Montenegro 대통령, Catalan 외무당관, Duran 문화장관 면담. 유엔에서 한국 측에 동조. 겸임대사 파견 추진. 문화협정 체결 추진
 - 베네수엘라(8.16.~20.)
 - Leoni 대통령, Borges 외무장관 면담. 유엔에서 한국 지지 약속
 - 콜롬비아(8.20.~21.)
 - Restrepo 대통령, Michelsen 외무장관 면담. 유엔에서 한국 지지 약속
 - 페루(8.21.~24.)
 - Terry 대통령, Herculles de la Flor 수상 겸 외무장관 면담. UN에서 한국에 대한 태도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 어업기술협력 추진
3. 본 문서철에는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 친선사절단 파견 건의문, 친선사절단 파견에 관한 대통령 결재, 방문 일정, 훈령 및 대통령 친서, 중남미 친선사절단 보고서, 현지 언론보도 등이 첨부되어 있음.

친선사절단 동부아프리카 순방, 1968.8.1.-9.8.

| 68-131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이중등과

MF번호 C-27/8/1~258(258p)

1. 정부는 1968.8월 박동진 주제네바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을 동부 아프리카 지역 8개국에 파견하면서, 방문국 주요인사 면담을 통해 친선유대관계 강화,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 설명, 월남파병이유 설명, 제23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 시 남북한 동시초청 반대 등 한국 입장 지지 요청, 통상진흥 방안 협의 등을 훈령함.

2. 친선사절단의 방문국별 주요 활동 보고 내용

● 에티오피아(8.4.~6.)

- Sellassie 황제, Yodit 외무차관(유엔회의 참석예정) 면담. 남북동시초청안 찬성 예상

● 케냐(8.6.~9.)

- Kenatta 대통령, Kodhek 외무장관, Lugonzo 나이로비 시장 면담. 한국입장에 동정적 태도 표명. 케냐 간호원 훈련 등 기술협력 및 통상 증진 논의

● 우간다(8.9.~13.)

- 부통령, Babumba 외무담당 국무위원, Okae 경제개발기획장관 면담. 유엔에서 한국지지 가능성 희박. 소련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

● 르완다(8.13.~17.)

- Bagaragaz 외무장관. 유엔에서 한국지지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만 언급

● 콩고(킨샤사)(8.22.~25.)

- Umba-Di-Lutete 외무차관 면담. 한국문제 최대한 협조 약속. 상주공관 설치 건의

● 카메룬(8.27.~9.1.)

- Ahijo 대통령, Etoungou 외무장관, Tchoungui 외무부 사무총장 면담. 한국입장 찬성하나 남북한 동시 초청안에 반대 의사 없음을 표명. 주카메룬 상주대사 조속 임명 건의

● 가봉(9.2.~4.)

- Bongo 대통령, Mintsa 외무장관 대리 면담. 유엔에서 한국문제 계속적 지지 약속. 상주대사 파견 요청

● 차드(9.5.~8.)

- Tombalbaye 대통령, Sarria 외무장관 비서실장(23차 유엔총회 참석예정) 면담. 유엔에서 한국문제 토의 시 한국지지 의사 희박. 소련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임.

3. 동 사절단은 종합 관찰 보고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동서냉전에서 불개입 및 중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한국이 유엔에 과대한 의존과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유엔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남북한 동시 초청문제에 대해 한국의 반대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언급함.

친선사절단 서부아프리카 순방, 1968.8.1.-9.1.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27/9/1~284(284p)

1. 이수영 주프랑스대사는 제23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1968.8.1.~9.1.간 세네갈, 가나 등 서부 아프리카 8개국에 순방하면서 유엔에서의 우리나라 지지를 교섭함.

- 사절단의 일원으로 김승호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관 3등서기관이 수행

2. 동 사절단에 대한 정부의 훈령은 다음과 같음.

- 한국 통일문제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유엔헌장에 입각하여 평화통일을 성취하려하나 북한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
-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엔총회결의 195에 천명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므로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극동의 긴장완화에 기여
- 한국의 월남파병은 월남정부의 요청과 기본국제원리에 입각한 것이며 월남에서 진정한 평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
- 국경을 초월한 경제·기술협력이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의사파견 등 기술협력 제공 용의

3. 사절단 방문결과(종합보고서 요지)

- 세네갈(8.1.~5.)
 - 대통령대리(건설부장관)는 한국측의 통일 원칙을 이해, 생골 대통령의 한국지지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 표명, 대통령비서실장은 주세네갈 상주공관 설치 요망
- 시에라레온(8.5.~8.)
 - 수상 및 총독은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 희망, 외무장관은 한국측의 통한 원칙을 지지표명
- 라이베리아(8.8.~11.)
 - 대통령은 한국측 입장 계속 지지, 외무장관은 한국측 입장에 대한 지지 불변 표명
-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8.12.~15.)
 - 대통령은 물질적 원조 없이는 대한 태도 변경 불가능 입장
- 가나(8.15.~19.)
 - 외무장관은 심각하고 동정적으로 고려 예정 언급
- 토고(8.19.~22), 베냉(구 다호메이)(8.22.~27), 중앙아프리카(8.28.~31.)
 - 한국측 입장 계속지지 표명
- 사절단 관찰 및 건의사항
 - 방문국들은 우리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원조에 인색한 것을 무성의로 간주
 - 월남 파병에 문제를 제기한 나라는 없음
 -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 베냉에 상주대사 임명
 - 이미 합의된 의료지원 조속 시행(단 부르키나파소는 보류)

Vance, Cyrus R. 미국 대통령특사 1.21사태관련 방한, 1968.2.12.-15. 전2권 V.1 기본문서철

| 68-133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C21-1/7~7/7(fiche)/1~267(267p)



1. 외무부는 Johnson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Cyrus Vance 대통령특별보좌관의 1968.2.12.~15. 방한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수립함(1968.2.10.자 회담요강).

- 1.21. 북한 무장공비 남파 및 푸에블로호 피납사건 관련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강력 대처
- 한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도발 기회 불허
- 경제개발계획의 강력 추진, 사회 정치적 안정으로 대북 절대 우위 확보
- 푸에블로호 피납과 무장공비 남파 사건에 동일한 중요성 부여
- 푸에블로호 관련 판문점 회담 공개 및 한국대표 참여
 - 수석대표 회담 공개 불가시 북한의 재발방지 확약 확보
- 북한의 재도발 시 미국의 북한 응징 확약
- 북한에 대한 한미 공동 경고문 선언
- 북한의 전면 침공 시 양국군의 즉각적 반격

2. 박정희 대통령의 2.12. Vance 특사 접견 시 양측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박 대통령
 - 우리측은 정전협정을 준수하였으나 공산측은 도발을 계속함.
 - 공비 남파를 계기로 북한이 도발 못하도록 보장책을 취할 때가 옴.
 - 적의 공격 대상에 따라 상응하는 보복이 필요하며 청와대 피습은 단순 게릴라 습격이 아님.
 - 푸에블로호 사건도 협상실패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북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강력히 경고해야함.
 - 보복하지 않으면 북은 더 대답해지며, 보복을 하더라도 전쟁은 나지 않음.
 - 판문점 회담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좋으나 시한 내 타결이 안되면 해군력, 공군력으로 보복해야 함.
 - 판문점 협상 실패 시 미측이 취할 결의와 행동을 이 자리에 국한되는 비공개라도 표시해야 함.
- Vance 특사
 -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응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보복은 상황에 따라 수준을 달리 해야 하며 게릴라에 의한 청와대 피습과 평양 폭격은 다름.
 - 간접침략에는 신중히 대처해야 하며 보복은 현명한 방법이 아님.
 - 미국은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조속한 귀환을 이루는 방향으로 북과 협상하고, 공비남파 사건은 한국과 상호 토론, 검토한 후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임.



3. Vance 특사는 2.13. 정일권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미측은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 보복을 정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으며, 우리측은 행동 없는 미국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결의와 구체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최규하 외무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재발시 양국의 보복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동방위선언문(안)과 한국군 현대화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합의의사록(안)을 미측에 전달함.
4. Vance 특사의 2.14. 정일권 국무총리와의 2차 회담에서 미측은 우리측 제안에 대해 보복 관련 부분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저촉되며, 차년도 이후 군사원조는 예산규정상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의 도발 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응조치 협의, 연례국방회담 개최, 1억달러 대한추가군사원조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안)을 대안으로 제시함.
5. 박정희 대통령의 Vance 특사와의 2.15. 회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Vance 특사가 판문점 회담을 비밀로 하는데 한국이 이해하고, 북한 도발에 대해 한국군이 단독 과격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을 희망한데 대해, 박 대통령은 일단 불쾌감을 표시하였으나 이번에는 단독행동을 않겠으나 다음에는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단독행동을 불사하겠다고 언급함.
 - 박 대통령은 미측의 공동성명안에 대해 내용 없는 성명 발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Vance 특사가 Johnson 대통령 입장이 난처할 것이라고 부연함에 따라 발표에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함.
6. 2.15. 양국은 미국의 한국군 현대화 지원 및 한미 연례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Vance 특사는 최규하 외무장관 앞 비밀서한을 통해 팬텀기 제공, 공군 기지 건설, 수년간 군원수준 유지 등을 Johnson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약속함.
7. 2.29. 최규하 장관은 Vance 특사 방한 결과를 토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공산군의 한국 또는 주한 미군 공격 즉각 퇴치, 핵 공격에 대한 대응태세 구비 등을 포함하는 보완책을 Aide-Memoire로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달함.

Vance, Cyrus R. 미국 대통령특사 1.21사태관련 방한, 1968.2.12.-15. 전2권 V.2 자료철

| 68-13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C-22-1/1(fiche)/1~14(14p)



본 문서철은 1968년 1.21사태 관련 방한한 사이러스 밴스(Cyrus Vance) 미국 대통령 특사의 방한과 관련하여 1968.3.30. 외무부가 작성한 한·미 간 현안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에 관한 보고서인바, 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본입장

- 북한의 도발과 전면전 준비 억제를 위한 한·미간 효율적 공동 대응 조치 필요
- 한국 정부의 국방과 경제발전을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 중요

2. 안보문제

- 외침 시 미국의 즉각 대응을 요청하는 한국 정부의 2.29.자 비망록에 대한 미국의 조속 회신 촉구
- 2.15. 밴스 특사가 존슨 대통령에 건의한 한국에 대한 추가 긴급 군사원조 제공과 관련한 존슨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 촉구
- 양국간 장관급 국방회담의 조속 개최 요망
- 16개 참전국의 1953 합동정책선언(Joint Policy Declaration) 재확약
 - 현재 진행 중인 16개 참전국간 1953 합동정책선언 재확약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입할 것을 촉구
 - 16개국간 합의 불가시 공동성명 발표 후 개별적 한국정부 지지 선언 또는 개별적 합동정책 선언 확약 등 대안 모색

3. 푸에블로호 사건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

- 미국의 승무원 석방대가 지불 가능성에 우려
- 석방협상을 위한 군사정전위는 한국 참여하에 공개적으로 개최가 원칙이나 인도적 고려에 의한 비공개 회의에 불반대
- 미국 정부의 어떤 조치도 한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 필요

4. 한·미 정상회담

- 월남전 관련 협력, 한국의 국방력 강화, 경제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

5. 경제협력

- 미 의회 내 섬유, 철강, 석유류에 대한 보호주의적 입법 성향 억제
- 미국 정부의 달러화 유축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환급 및 수입세 제도 도입 계획 중단 촉구
- 케네디 라운드 관세인하 계획의 즉각적 시행 촉구

이효상 국회의장 터키 방문, 1968.7.23.-28.



생산연도 1967-68
 생산과 구주과
 MF번호 C-28/1/1~203(203p)

1. 이효상 국회의장은 Ferruh Bozbeyli 터키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1968.7.23.~28.간 터키를 공식 방문함.

2. 의전사항

- 방문일정 협의 과정에서 국회측은 터키측이 1959년 터키 국회의장 방문 시 제공되었던 국회연설, 훈장수여, 학위수여 등을 제공하지 않는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터키측은 관례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 방문단의 터키 방문 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방문을 계획하였으나 현지 주재 공관들의 건의로 포기하였으며, 대신 검토한 이란 경유도 현지 공관의 건의로 포기함.
- 9명의 공식수행원은 대부분 귀로에 각자 독자 일정으로 귀국하여 외무부 본부는 아시아, 유럽지역 16개 공관에 수행원 귀국일정을 지원하도록 지시함.
- 국회의장 일행은 귀로에 7.28.~8.8.간 홍콩, 동경, 삿포로, 후쿠오카, 오사카 등지를 경유함.

3. 실질사항

- 외무부는 터키 국회의장 면담 시 제 23차 유엔 총회에서의 협조문제(계속지지 요청, 통일결의안 공동 제안국 복귀), IPU에서의 협조(북한가입저지) 등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함.

인도 국회의원 방한계획

| 68-136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28/12/1~79(79p)



국회는 1966~68년간 다음과 같은 인도 국회 고위인사의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인도측 사정으로 취소됨.

1. Hukam Singh 하원의장(1966년)

- 비공식적으로는 초청 수락하였으나 공식 초청서한에 대해 미 회신

2. N. Sanjiva Reddy 하원의장(1968년)

- 비공식적으로 방한의사를 피력하였으나 공식적으로는 회신치 않음.

3. N. S. Mahida 하원해사위원회 위원장(1968년)

- 방한계획 수립 후 경유지에서 중도에 건강상 이유로 대만 및 한국 방문포기

4. B. Modhok 및 R. Singh 하원의원(1968년)

- 방한계획 수립 후 경유지(대만)에서 Modhok 의원 우리측의 2등 항공료 제공에 불만을 표시 방한 포기

68-137

시게무네 유우조오(重宗雄三) 일본 참의원의장일행 방한, 1968.9.24.~28.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28/13/1~41(41p)

1. 시게무네 유우조 일본 참의원 의장이 1968.9.24.~28. 여야 참의원 의원 3명과 함께 개인자격으로 방한하여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국립묘지 참배, 무역박람회 참관, 지방(대구, 경주, 부산)의 산업시설과 고적 방문일정을 가짐.
2. 북한은 9.26.자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시게무네 의장 일행의 방한이 미국에 의한 전쟁도발 음모의 일환이라고 비난함.

Laurel, Jose 필리핀 하원의장 방한, 1968.11.24.-28.

| 68-13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28/14/1~95(95p)



1. 주필리핀대사가 주재국의 상원의장 또는 하원의장의 방한초청을 건의한데 대해 국회는 호세 라우렐 하원의장을 이효상 국회의장 명의로 초청함.
2. 라우렐 의장은 방한 시 국회의장 면담 외에 국무총리와 외무장관 예방, 군부대 시찰, 부산과 울산의 산업시찰 일정을 가짐.
3. 이에 앞서 도착성명에서 라우렐 의장은 양국 간 우의를 강조하고 관계발전의 기여 의지를 밝힘.

68-139

Costanzo, Nelson 우루과이 하원의원 방한, 1968.9.17.-22.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28/15/1~35(35p)

1. 외무부는 북한이 우루과이에 통상사절단을 파견하고 국회의원을 방북 초청하는 등 외교공세를 펼침에 따라 대항조치로 유력 정치인을 방한 초청기로 하고 현지 공관에 인사 추천을 지시함.
2. 주우루과이대사관은 여당의 실력자인 아구스틴 카푸티 상원의원과 넬손 콘스탄조 하원의원을 추천하여 국회의장 명의로 이들을 초청하였으나 양인이 희망하는 일정이 맞지 않아 초청자 제시 일정에 동의한 콘스탄조 의원이 9.17.~22.간 방한하고, 카푸티 의원의 방한 시기는 재조정하게 됨.
3. 콘스탄조 의원은 방한 시 외무부, 경제기획원, 민주공화당을 방문하고 총리를 예방하였으며 부산을 시찰함.

한·일 국회의원 간담회, 제1차. 서울, 1968.6.6.-9.

| 68-14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C-28/16/1~263(263p)



1. 제1차 한·일 국회의원 간담회가 6.6.~9. 서울에서 개최됨.
 - 한국은 박준규 외무위원장 등 여야의원 20명, 일본은 가야 오키노리 중의원 의원 등 자민당 소속 중·참의원 의원 8명 참석
 - 간담회는 민주공화당의 차지철 의원이 주도하여 설립
2. 일본의원단은 간담회 참석 외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예방과 판문점, 군부대, 육사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3. 간담회에서는 사전에 합의한 4개 의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을 공동담화에 담아 발표함.
 - 안보
 - 한국측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양국이 반공을 위해 공동전선을 펼 필요성을 강조
 - 일본측은 한국의 방위노력을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고 일본국내 좌파동향을 소개
 - 경제협력
 - 한국측은 청구권 자금의 조기사용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일본측은 노력을 약속
 -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 한국측은 협정영주권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하고 일본측은 노력을 약속
4. 일본의원단은 사토 에이사쿠 총리 명의의 박정희 대통령 앞 친서를 휴대함.
 - 친서휴대는 차지철 의원이 사전에 일본측에 요청하여 이루어졌으며 간담회 개최의의를 평가하는 내용임.

68-141

Lourie, Arthur 이스라엘 외무차관보 방한, 1968.3.24.-27.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28/17/1~30(30p)

1. 아더 루리 이스라엘 외무부 차관보가 1968.3.24.~27. 방한하여 황호을 차관보와 면담하고 국방부, 농림부, 과학기술처를 방문함.
2. 외무부 면담에서 루리 차관보는 이스라엘에의 한국공관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아랍권을 인식하는 한국측은 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Amery, Julian 전 영국 항공장관 방한, 1968.11.20.-26.

| 68-14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C-28/18/1~64(64p)



1. 1968.4월 주영국대사는 주재국 보수당의 유력 정치인이며 전직 항공장관인 Julien Amery를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본부에 건의함.
2. Amery 전 장관은 외무차관의 초청으로 1968.11.20.~26. 방한하였으며, 외무차관, 공군참모총장, 국회 부의장 등을 예방함.

68-143

Bundy, William P. 미국 국무성 동부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차관보 방한, 1968.7.22.-24.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28/19/1~50(50p)

1. William Bundy 미국 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968.7.22.~24. 방한하여 박정희 대통령 및 우리 정부 고위 관리들과 월남사태 및 Johnson-티우 대통령 간 호놀룰루 회담 결과에 대해 협의함.
2. 7.23. 최규하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Bundy 차관보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음.
 - 월남군의 군비 증강, 사기 양양 등으로 군사정세는 연합군에 유리하게 전개됨.
 - 정치인의 단합, 키 부통령과의 불화 해소, 구 정권인사들에 대한 유화조치 등으로 월남 국내정세도 호전됨.
 - 티우 대통령이 월남-월맹 간 관계개선을 통한 통일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월남의 태도 변화로 인식됨.
 - 파리 예비접촉은 진전이 없으며 월남은 미-월맹 간 회담이 당분간 월남 불참하에 진행되는 점을 양해함.
 - 단쪽 문제에 대한 미·월남 양측 간 이견 존재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월맹측의 상응조치 없이는 단쪽은 고려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이 일치함.
 - 월맹은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이 국내 여론 등에 밀려 북쪽을 중지할 것이라고 오산하고 있음.

강춘희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중앙아프리카 독립 10주년 기념식 참석, 1968.11.30.-12.5.

| 68-14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C-28/2/1~13(13p)



1. 강춘희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중앙아프리카 독립 1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968.11.30.~12.5. 출장함.
2. 강 대사는 Bokassa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축하인사를 전달하였으며, Gouandjia 외상에게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지지를 요청하고 외무장관의 방한초청 의사를 전달함.

68-145

박정희 대통령 Holt, Harold 호주 수상 장례식 참석, 1967.12.20.-23.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22/8/1~97(97p)

1. 1967.12.17. Harold Holt 호주 수상이 익사한 것과 관련, 12.19. 우리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함.
 - 공식수행원: 외무장관, 비서실장, 경호실장, 의전비서관, 공보비서관, 외무부 의전실장
 - 추도식 주요외빈: 존슨 미국 대통령, 타놈 태국수상,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홀리오크 뉴질랜드 수상, 티우 월남 대통령 등
2. 박정희 대통령은 12.20.~23.간 호주를 방문하였으며, 12.22. 추도식 참석 행사 외에 존슨 대통령과의 오찬, 케윈 호주 수상, 뉴질랜드 수상, 티우 월남 대통령, 위틀람 호주 노동당 당수 등과 면담함.

북한·오스트리아 관계

| 68-14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6/1/1~12(12p)



1. 북한 민간통상사절단은 1968.7.22.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약 3주간 체류하면서 민간통상협정 개정 교섭을 갖고 지방 시찰 및 민간기업 방문 등 일정을 가짐.
2. 공진태 조선국제무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은 오스트리아 연방상업회의소측과 1960년에 체결된 민간통상협정 개정을 위해 협의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함.
 - 북 사절단은 8월 말 협의 종료를 위해 체코로부터 재입국하기로 하였으나 재입국하지 못함.
3. 8월 초 4명의 북한 기술자들이 오스트리아에 입국하여 상호 수출입 가능품목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함.
4. 주오스트리아대사는 북한의 진출 확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오스트리아와 민간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연방상업회의소 극동책임자를 방한 초청해 줄 것을 건의함.

| 68-147 |

북한·버마 관계



생산연도 1957-68
 생 산 과 동남아1과/정보1과
 MF번호 D-6/2/1~24(24p)

1. 북한은 1968.12.4.~18. 랑군에서 상품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와 관련 주랑군총영사는 다음과 같이 관찰 보고함.
 - 전시 품목이 빈약하고 관람인원도 적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전시 품목 보다는 김일성 사진 등 선전물이 많아 김일성 선전회 같다는 관람인도 있음.
 - 북한 총영사는 미얀마(구 버마) 농림성을 방문하여 트랙터의 신용 공여를 제의함.
2. 권희경 북한 외무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1969.7.30.~8.3. 미얀마를 방문함.

북한·덴마크 관계

| 68-14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6/3/1~9(9p)



주스웨덴대사는 1968.7월 정두환 소련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과의 통상관계 증진 목적으로 덴마크를 방문하려 하였으나 덴마크측이 공식면담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고 보고함.

- 주스웨덴대사는 북한과 북구제국과의 비공식 접촉은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북한·통일아랍공화국 관계



생산연도	1965-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D-6/4/1~46(46p)

주카이로총영사는 1966~68년간 주재국(통일아랍공화국: UAR)과 북한 간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북한 외무성 허석태 부상 방문(1966.8.23.~27.)
 - 한반도통일문제와 관련 UAR 외무성과 구체적 내용을 토의하지 않았으나 동 방문을 전후하여 이찬선 북한대사가 UAR 외무성에 7.21.자 북한의 한반도통일에 관한 비망록에 관해 설명함.
2. 북한 강양욱 부수상 방문(1968.2.2.~5. 및 2.10.~11.)
 - Nasser 대통령 예방(2.10.)
 - 강 부수상 방문에 즈음한 북한의 선전활동
 - 리셉션·영화관람회 등 북한군 창설 기념일 관련 선전활동
 - 아랍노동연맹의 푸에블로호 사건관련 북한지지 성명발표
3. 북한-UAR 무역의정서 서명(1968.3.18.)
 - UAR 무역대표국 국장과 북한 대사대리간 서명
 - 양국간 무역거래를 250만 영국 파운드르 설정
4. 북한 신임 대사 김용택 신임장 제정(1968.5.28.)
5. 북한 외무성 전근희 부상 방문(1968.8.24.~26.)
 - El Shafei 부통령 예방
 - Nasser 대통령 앞 김일성 친서 전달
6. 북한 영화 사절단 방문(1968.10월)
 - 북한 영화 사절단이 약 2주간 UAR에 체류하면서 영화관계자들과 기록영화 교환 문제를 논의하고 시중극장에서 영화주간을 개최하여 푸에플로 기록영화 등을 상영

북한·핀란드 관계

| 68-15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6/5/1~6(6p)



주스웨덴대사는 1968.10월 소련 주재 북한 대사 정동환의 핀란드 방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핀란드 외무성 공식성명

- 정동환 대사가 핀란드 실업계 인사와의 관계 수립 및 양국간 통상증진 가능성 협의 차 핀란드를 방문 하였으며, 대통령과 외상을 예방함.

2. 핀란드-북한 관계전망

- 북구제국의 한반도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대 북한 공식접촉도 회피하고 있으나, 비공식 접촉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경우에 따라 빈번해 질 우려도 있음.

주 Paris(프랑스) 북한 민간통상사무소 개설, 1968.9.25.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6/6/1~120(120p)

1. 북한 민간통상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주프랑스대사의 1968년 중 보고 및 건의 요지

- 북한 해외무역위원회는 1967.4월 프랑스 무역진흥공사와 북한의 파리주재 민간통상사무소 개설을 합의 하였고 이에 따라 1968.4월 동 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임.
 - 프랑스 정부가 설치를 허용한 것은 1966.5월 드골 대통령의 코시긴 수상 면담 시 소련측의 요청에 따른 것임(프랑스 외무성 관계관 언급내용).
- 동 사무소는 순수 민간사무소이며 주재원도 민간신분이고 국호와 국기를 사용할 수 없음.
 - 명칭: 북한대외무역위원회상주대표(Representation permanente du comite Coreen du Commerce Exterieur(Pyung-yang))
 - 정치적 승인은 아니며 전적으로 통상사무에만 종사하는 민간기관
- 국내외 언론의 문의 시 위와 같은 점을 강조함.
 - 외무부 및 국내관계 부처들은 통일된 언론 대응지침을 협의함.
- 앞으로 북한의 관계승격시도, 정치적 활동, 교민·유학생 포섭활동 등 악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사무소의 불법행위, 월권행위 등을 포착하여 사무소원 추방을 당면목표로 하되, 북측의 활동이 구체화 되는대로 소극적인 시정 및 대항조치를 강구해 나감.
- 프랑스 무역진흥공사는 북한 통상사무소 개설과 같은 시기에 평양에 민간통상사무소 설치를 허가할 예정임.
 - 4개의 프랑스 기업(Oliver)이 합작하여 Francor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동사 직원이 평양 주재
- 향후 대책으로 우리의 대불 교역확대, 프랑스 관계인사 방한초청, 통상사절단·세일즈맨단 파견, 직원 증원 등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68.4월 북한 민간통상사무소 공식 개설에 즈음하여 프랑스 정부에 아래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전달토록 지시함.

- 북한 통상사무소가 설치되어 북한 대표가 들어온데 유감임.
- 동 사무소는 설치목적 범위 내 활동에 국한하고 직원수는 최소화하고 국기계양, 국호사용 등 외교특권 향유와 정부기관 접촉은 불허 되어야함.

3. 북한 사무소는 개설 기념연회를 독립기념일인 9.9. 개최하려 하였으나 프랑스 정부가 외교공관이 아님을 이유로 불허함에 따라 9.22. 개최함.

북한·인도 관계

| 68-15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D-6/7/1~38(38p)



주뉴델리총영사는 1968년 중 북한-인도 관계에 관하여 외무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뉴델리 주재 북한 총영사가 7.18. 기자회견을 갖고 푸에블로호 사건과 관련한 선전 영화를 상영함.
 - 동 행사에는 120명의 외교단 및 인도 외무성 직원들이 참석
2. 9.9절 관련 인도·북한친선협회 인사 3인이 북한정권 20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북하였으며, 북한 총영사관은 9.7. 리셉션을 개최함(인도 외무성 의전장 및 차관보급 인사 등 참석).
3. 공산계 일간지 PATRIOT 지가 12.11. 모택동 밀사가 홍콩에서 박 대통령과 밀담하였다고 보도한데 대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반박 기사를 게재함.
4. 북한 무역사절단이 1968.12월 방문하여 인도측과 무역회담을 개최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함.

68-153

북한·이라크 관계



생산연도 1959-68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D-6/8/1~25(25p)

1. 1959~1968년간 북한이 이라크에 대해 취한 외교공세는 아래와 같음.

- 1959.7월 남일 부총리가 이라크 혁명기념일 참석을 위해 방문하여 북한 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하고 문화협정에 조인
 - 북한은 1961년에 무역대표부 설치
- 1965.6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한 미술전람회 개최
- 1965.10월 북한 기자대표단이 방문(단장: 김창준 “민주조선” 부주필)
- 1966.7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방문(단장: 강양욱 부의장)하여 총영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
- 1968.1~2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방문(단장: 강양욱 부의장)하여 대사급 외교관계로의 격상에 합의

2. 북한은 이라크를 아랍권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함.

북한·일본 관계: 외무성직원 간첩사건

| 68-15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D-6/10/1~5(5p)



1. 1967.11월 일본의 치안당국은 북한출신의 이재원을 외무성 기밀문서 반출혐의로 입건함.
 - 외무성 동구과 직원 야마모토 신고를 매수하여 재일교포 복송에 관한 기밀문서 입수
2. 1968.10월 도쿄지방법원은 공무원법 상의 업무상 횡령교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3. 이와 별도로 열린 재판에서 야마모토에게도 유죄가 선고됨.

| 68-155 |

북한·레바논 관계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D-6/11/1~21(21p)

1. 북한은 중동정세가 악화된 1967년 김일성 주석 명의의 전문을 레바논 대통령에게 타전한데 이어 주이집트대사를 방문시키는 등 레바논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함.
2. 주카이로총영사관은 외무부에 친서방국가인 레바논에 대한 북한진출을 막기 위한 대책수립을 건의하였으며, 주터키대사관도 한국 무역대표부 설치를 건의함.
 - 1968.1월 레바논을 관할하는 주터키대사관이 의뢰하여 레바논 외무장관과 면담한 현지 대만(구 자유중국)대사는 남북한이 레바논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데는 동의하나 남북한 어느 쪽과의 외교관계 수립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청취(주터키대사 보고)
3. 1968.2월 레바논 정부는 북한 무역대표부의 수도 베이루트 설치를 승인함.

북한·멕시코 관계

| 68-15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중미담당관

MF번호 D-6/12/1~11(11p)



1. 주멕시코대사는 주재국과 북한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1968.1월 북한 원양어선 백두산호가 긴급피난 목적으로 멕시코의 마자트란에 기항
 - 북한은 1968.10월 멕시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7월에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국제축구경기연맹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통고
2. 북한은 1964년과 1965년에 각각 무역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나 멕시코 정부가 거부한 바 있음.

| 68-157 |

북한·노르웨이 관계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6/13/1~6(6p)

1. 노르웨이를 검입하는 주스웨덴대사는 1968.5월 주소련 북한대사가 노르웨이 입국을 희망한데 대해 노르웨이 정부가 9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이와 관련하여 주스웨덴대사는 북구제국-북한 관계의 장래에 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북구제국이 유엔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유엔에 적극 협조하는한 북한이 수교 등을 요청 하여도 응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북구제국이 정경분리정책을 취하고 있어 북한이 경제교류를 내세워 접근하면 이를 피하지 않을 것임.
 - 또한 북구제국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월남전이 끝나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음.

북한·스웨덴 관계

| 68-15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6/14/1~9(9p)



1. 1968.8월 주스웨덴대사는 주재국 외무부로부터 6월에 정두환 주소련 북한대사가 입국하여 닐손 외무장관과 면담하고 교역확대와 수교를 희망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이 자리에서 주스웨덴대사는 북한대사 입국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북한인사가 입국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스웨덴 측은 확답을 유보
2.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유럽 주재 공관에 대해 소련, 루마니아 주재 북한대사가 관계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를 방문했던 사실을 알리면서 북한 외교관의 주재국 입국 또는 입국 시의 고위당국자 접촉을 저지하도록 지시함.

| 68-159 |

북한·미국 관계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북미1과

MF번호 D-6/15/1~13(13p)

1. 미국 정부가 1968.3월 북한을 포함한 일부 공산국가에 대한 여행자 제한조치를 완화한데 대해 우리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재고를 촉구함.
 - 이에 대해 미국 국무성은 중국(구 중공), 북한, 월맹, 쿠바를 여행제한 지역으로 규정하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나, 제한지역 여행자에 대한 여권취소 조치가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여권취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법안을 입법하고 있다고 답변함.
2. 플로리다 주립대학 조교인 Benjamin Page는 1968.7~8월 약 5주간 북한을 방문하였는데 미국 국무성이 동인을 면접한 바에 의하면, 동인은 북한의 실정에 대해 호의적 인상을 받았으며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함.
 - 국무성은 동인이 민간인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서 동인을 주목하고 있으나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함.
 - 국무성은 기자회견 또는 출판을 방지할 방법이 없으나 동인이 북한에 세뇌 당하였으므로 주요 신문사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관측함.
3. Page는 1968.9.4.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통일 방안지지, 외군철수 등 북한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

북한·남예멘 관계

| 68-16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등과

MF번호 D-6/16/1~23(23p)



1. 강양욱 북한 부수상은 1968.2.5.~7.간 남예멘을 방문함.

- 강양욱은 Al Shaby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남예멘 외무성은 1968.2.7. 성명서를 통해 남예멘과 북한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고 발표함.

2. 알사에르 남예멘 농업토지개혁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1968.7월 북한을 방문함.

- 7.31. 양국간 경제 및 기술원조 공여 협정을 체결함.
 - 북한이 남예멘에 농기계 수리공장, 트랙터 등 기계류, 직물류를 무상으로 지원
 - 북한이 남예멘의 유학생과 실습생을 전문기술자로 양성
 - 북한이 전문기술자를 남예멘에 파견

68-161

북한·프랑스 관계



생산연도 1967-68
 생산과 구주과
 MF번호 D-5/4/1~100(100p)

1. 1967.2월 북한의 국제무역진흥회 관계자로 구성된 통상사절단이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통상사무소 설치를 추진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외무부는 사실 관계 확인과 사실일 경우 이를 저지토록 주프랑스대사관에 지시함.
2. 주프랑스대사관이 확인을 요청한데 대해 프랑스 외무성은 통상사무소 개설 신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민간차원의 사무소로 간주하여 이를 허가할 의도임을 시사함.
3. 이에 따라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관과 주한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전했으나 1967.4월 프랑스 외무성은 아래와 같이 북한 통상사무소의 파리 상설을 허가하였다고 통고해옴.
 - 명칭: “조선무역위원회 상주 대표부(평양)”
 - 형식
 - 북한의 국제무역진흥회 부위원장과 프랑스 파리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서신교환으로 합의하고 프랑스 정부가 허가
 - 구성
 - 6~7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
 - 활동
 - 상거래가 목적이며 정치활동 불허
 - 외교특권도 불인정
 - 체류자격은 단기비자를 연장
2. 주프랑스대사관측은 민간자격인지 여부가 모호한 명칭을 문제 삼았으나 프랑스측은 “조선”은 어디까지나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다고 강조함.

북한·우루과이 관계

| 68-162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D12-1/3~3/3(fiche)/1~111(111p)



1. 1967.2월 외무부는 북한의 통상사절단이 우루과이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지 공관에 사실 관계를 확인을 지시하였으며, 공관은 3월 새 정부 출범 후 사절단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여 외무부가 입국저지를 지시함.
2. 1967.3월 주우루과이대사관은 새 정부 각료에 복수의 좌파 정치인이 포함된 점을 들어 소련 등 공산권과의 경제교류증진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함.
3. 주우루과이대사관과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우루과이와 북한의 관계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우루과이로부터의 수입을 늘릴 것을 건의함.

68-163

북한사절단 아프리카 순방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D-6/18/1~15(15p)

1. 1968.11월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관은 북한사절단이 니제르를 방문하고 대통령과 면담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의 사실관계 파악 지시에 따라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최상묵 주말리 북한대사가 김일성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니제르를 방문하여 디오리 대통령과 면담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희망한다는 대통령 발언이 성명으로 발표되었다고 보고함.
 - 북한사절단은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도 방문함.

북한사절단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1968.6.15.-8.1.

| 68-16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D-6/19/1~216(216p)



강양욱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대표단(총인원 9명)은 1968.6.15.~8.1. 동남아 및 서남아 5개국을 순방하였는바, 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캄보디아(6.15.~23.)

- 김일성의 친서를 시아누크 수상에게 전달하였으며, 시아누크는 김일성이 요청한 미군철수, 외세간섭 없는 한반도통일에 대한 전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함(주뉴델리총영사 보고).

2. 미얀마(구 버마)(6.23.~29., 7.8.~10.)

- 미얀마 혁명위 고위인사, 외무장관 및 외무성 간부 등 면담
- 미얀마측과 북한 상품전시회 랑군 개최계획, 미얀마 문화사절단의 북한 파견, 푸에블로호 사건, 유엔에서의 북한지원, 북한제 트랙터 판매 등 협의
- 주랑군총영사는 북한의 진출확대에 대비하여 우리의 민속문화 소개자료 활용, 버마 상품 수입확대, 경제사절단 파견 등 외무부에 건의

3. 싱가포르(6.29.~7.7.)

- 공산국가로서는 최초로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였으며, 싱가포르 대통령대리 주최 공식 만찬, 수상 주최 만찬, 싱 외상 접견 등 공식일정 외에는 주택개발이사회, 주룽 공업단지, TV 방송국, 국립병원, 부두 방문 등 주로 시찰 및 견학 일정으로 진행됨.
 - 동 방문은 이관유 수상의 68.1월 캄보디아 방문 시 시아누크의 설득에 의한 것으로 분석
- 수행원 중 싱가포르 주재 통상대표 박수건 및 외교부 국장 진중국은 싱가포르 외무성 의전장을 방문 하고 연내 대사관 설치를 타진하였으나 싱가포르측은 무역외 외교관계 수립은 적절치 않다고 답하였고, 대외무역성 부상 방태열은 싱가포르 재무차관과 무역증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주말레이시아대사 보고).
- 동 방문과 관련, 외무부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정부에 영향력 행사를 요청하였고, 북-싱가포르 관계에 대한 싱가포르측 실제 발언내용 상세와 각종 연회 및 행사에 우방국 대사 참석여부 및 참석 경위 등을 파악, 보고할 것을 관련 공관에 지시함.
- 주말레이시아대사는 동 방문이 싱가포르 사상 최초로 공산국가대표단의 국빈방문이었다는 점 외에 실질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함.

4. 파키스탄(7.11~26., 7.31~8.1.)

- 파키스탄 대통령, 국회의장, 외상을 면담하고 카시미르 문제에서의 파키스탄측 입장 지지와 제국주의 및 반미와 관련한 양국간 공감을 표명함.
- 다카대학, 치타공·상업지대, 주트 공장 등을 방문함.

5. 네팔(7.26.~31.)

- 보고내용 없음.

일본 주요대표단 북한 방문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D-6/20/1~37(37p)

1. 일본 사회당 야마모토 서기장은 1968.9월 북한 방문을 계획하였으나, 당 정기대회 시기와 중복되어 방북을 취소함.
2. 공산당 미야모토 서기장은 수행원 2명을 대동하고 1968.8.20.부터 약 10일간 방북함.
 - 동 방북 직전 우리정부는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인적왕래를 포함한 북한과의 접촉은 어떤 형태, 어떤 구실이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측에 전달함.
 - 미야모토 서기장은 마이니치신문에 방문인상 기사를 게재함.
 - 평양역에서의 김일성의 환대, 양측회담을 통한 마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공동연대, 반제국주의 공동전선 등에 대한 공감, 푸에블로호 사건은 당과 인민을 강화
 - 기차여행에서 본 북한의 녹화 사업, 저렴한 쌀값은 사회주의 농업의 탁월성 증명 등
3. 북한은 9.9. 독립기념일을 계기로 일본 주요언론사 기자들을 방북 초청하였으며, 일본 주요 신문사 기자단이 8월말~9월초에 걸쳐 약 3주간 방북함.
 - 이와 관련, 외무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에 대해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을 전달하고 방북저지를 요청하였으며 주일본대사를 통해 일 외무성에도 강력히 요청함.
 - 일 외무성은 기자들이 소련방문을 위해 여권발급을 요청하였으므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4. 방문기자들은 다음 요지의 기사를 게재함.
 - 아사히신문
 - 북한은 각 기념관에 중국(구 중공)에 관한 자료를 없애고 한국전을 북한 단독으로 수행한 것 같은 인상을 주려하는 등 자주성을 선전
 - 월맹, 베트남, 쿠바, 일본 공산당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기념식에 중국, 알바니아 대표는 보이지 않음.
 - 경제적 자립을 위해 경제건설에 힘쓰고 있으며 교육과 생산을 직결시킴.
 - 북한은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큰 것 같음.
 - 마이니치신문
 - 9년제 의무교육 및 대학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으로 주민생활은 안정된 인상을 줌.
 - 북한은 경제건설이 김일성의 지도와 자주사상의 승리라고 설명함.
 - 부수상 이주연은 북한 공산주의의 철저한 자주노선을 강조하였고, 푸에블로 승무원 석방설을 부인하고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면 길이 열린다고 언급함.
 - 요미우리신문
 - 북한은 자주노선에 의거, 자력으로 경제·정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인상을 줌.
 - 북한 각지는 전시색이 충만하고 주요기관에는 전시체제가 강화되어 있음.
 - 박물관에는 중국에 관한 언급이 없고 김일성의 지도력을 강조함.

북한 창건 20주년기념 경축연설

| 68-16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D-6/21/1~103(103p)



1968.9.12. 작성된 '소위 북한 창건 20주년에 즈음한 북한 수뇌부 연설전문' 제하의 북한 관련 자료집

1. 중앙경축대회에서의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장 최용건의 개회사(9.7.)
2. 중앙경축대회에서의 북한수상 김일성의 기념경축보고(9.7.)
3. 평양시 군중대회에서의 북한 제1부수상 김일의 연설(9.9.)
4. 내각 경축연회에서 김일성 연설(9.9.)

68-167

한·쿠바 정무일반



생산연도 1968
 생산과 중남미과
 MF번호 E-5/1/1~6(6p)

주미국대사는 1968.9월 쿠바 국적 미국인 Arturo Amrodriguez에 대한 관광사증 발급과 관련 외무부 지침을 문의하였는바,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감안, 사증발급을 승인함.

- 쿠바인이기는 하나 미국 영주권 소지자로 쿠바 공산주의로부터 도피한 자로 간주 가능
- 과거 동인에게 입국사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한국 여행 목적이 분명함.

일본·중국(구 중공) 관계

68-168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E-5/2/1~12(12p)

1. 1968.3월 작성된 일본과 중국(구 중공) 간의 민간 각서무역과 관련한 보고서(요지)

● 양국간 무역의 두 가지 방식

- 우호무역: 중국이 일본 상사중 우호상사를 지정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유리한 방식
- 각서무역: 종전의 LT무역으로서 1968.3월 양측의 공동성명에 의해 각서무역으로 바뀜. 민간 무역형태이나 사실상 정부양해하의 무역으로 일정기간 수출입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국교가 없는 양국간 접촉의 통로 역할도 함.

※ 1967년도 우호무역은 3억9천만달러, LT무역은 1억7천만달러(LT무역이 축소되는 추세)

● 1968년 각서무역 공동성명의 주요내용

- 중국측은 일중관계의 장애는 미국과 일본의 중국적시 정책이라고 하고 일측은 이에 대해 깊은 이해를 표시
- 중국측은 일중관계에서 정치3원칙과 정경분리원칙의 견지를 강조하고 일측은 이에 동의
- 약정기간은 1년, 무역규모는 약 1억달러, 중국쌀 수입량은 10~15만톤

● 평가

- 일측은 약정기한 3년을 원했으나 1년으로 되고 규모도 축소됨. 그러나 일측은 양측간 교류의 통로를 유지하였고, 중국측은 1년 단기 약정으로 사또 정권의 대중 정책 추이를 교량할 수 있게 됨.
- 정치3원칙, 정경불가분원칙에의 동의 등 중국의 정치적 의도가 수용된 것으로 논란이 있으나, 일본 정부 측은 정경분리 원칙은 불변이라고 언급함.
- 일본 정계, 민간에는 지지파, 반대파가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됨.

2. 주카이로총영사의 보고에 의하면, 1968.6월 카이로 주재 일본대사가 중국대사와 비밀회담을 갖고 일본이 중국을 승인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가질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를 일본 대사에게 확인한 바 사실무근임을 밝혔다고 함.

한국의 대월남 군사원조: 월남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에 수반하는 외교활동 및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자료)



생산연도 1965-68

생 산 과 동남아주과

MF번호 G4-1/5~5/5(fiche)/1~213(213p)

본 문서철에는 월남전 종결을 위한 평화협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외무부와 관련국가 주재 공관 간의 지시 및 보고 문서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1965.10월 존슨 미국대통령의 월맹 폭격중지 결정 관련

- 외무부가 이에 대한 주재국 반응 보고를 지시한데 대해, 주월남대사는 국회 등에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불만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주요 서방국가 주재 대사관은 환영하는 분위기를, 태국 등의 참전국 주재 대사관은 유보적인 반응을 보고

2. 1965.11월 베트남 대표가 개별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 평화협상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티유 월남 대통령의 국회연설 관련

- 외무부가 주재국 입장, 반응의 확인을 지시한데 대해, 주월남대사는 베트남은 협상 당사자일 수 없지만 월맹 대표단의 일원으로서의 참가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주미국대사는 미국정부가 월남 대표의 협상 참석을 낙관한다고 보고

3. 1968.11월 존슨 미국대통령의 월맹 폭격중지 결정 관련

- 주월남대사는 주재국 정부가 “월맹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참전국에 폭격을 재개할 권리가 있다.”고 한 최규하 외무장관의 회견내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그런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천명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외무부에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외무부는 이미 미국 정부에 그런 취지와 함께 월맹이 폭격중지를 악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회보

4. 월남 대표의 평화협상 참석문제에 관한 이후의 경위

- 주월남대사는 외무부에 미국이 베트남 대표가 정부대표임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에 관해 월남 정부의 양해를 얻었다고 보고
- 미국과 월남 정부가 월남 대표단의 평화협상 참석을 성명으로 발표하는데 이어 같은 날 한국 정부는 아래 내용의 성명을 발표
 - 월남의 협상참가 결정 환영
 - 월맹이 폭격중지를 악용할 경우의 대책 강구 필요

한국의 대월남 군사원조

| 68-17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주과

MF번호 Re-18/14/1~95(95p)

1. 한국-월남 정상 간 친서교환

- 1968.2월 베트남의 구정휴전기간 중 공세가 실패한 후 박정희 대통령은 티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격려
- 1968.4월 티유 대통령은 박대통령 앞 친서로 한국군 증파를 요청
 - 이에 앞서 티유 대통령은 신상철 한국대사를 불러 호놀룰루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군 증파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신도 박대통령에게 같은 취지의 친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

2. 외무부 아주국장은 “월남전 평화협상에 대한 기본입장 연구서”에서 파리평화협상 진행절차, 협상 의제 등을 소개하고 전쟁종결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피력함.

- 군사면
 - 한국군이 월남에서 철수함에 따라 한국군 병력실링을 초과하는 1개 사단 유지 여부에 대한 교섭 필요
 - 미국의 한국군 현대화 지원공약 이행 마무리 필요
 - 북한의 침투강화에 대한 대책강구 필요
- 경제면
 - 한국의 월남 전후복구사업 참여, 한국기술자의 계속적 취업을 위한 미국의 지원 필요
 - 월남으로부터는 한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우대, 한국인 기술자의 계속적 취업을 위한 협조확보 등 필요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문제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북아과
 MF번호 G-8/4/1~24(24p)

1. 1967.3월 일본의 월간 중앙공론에 게재된 “핵군축 평화외교 제창” 제하 기고문에서 와카이즈미 케이 교토 산업대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주일본대사관 보고).

- 극동정세 인식
 - 공산중국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극동 군사전략에 연결된 일본에 대한 중대한 위협
 - 우경적인 사토 에이사쿠 내각에 대한 중국의 강경자세도 불안요소
- 일본 정부 정책현황
 - 미국의 극동 군사전략에 적극 협조
 - 방위력의 질적, 양적 개선 추구(전투기, 미사일 등)
 - 경제협력을 통한 아시아 안보 기여 추구
- 일본 정부 정책전망
 - 공산중국 및 북한의 호전성을 감안하여 미국의 전략에 맞추기 위한 군사력 강화
 - 오키나와 반환은 미국이 군사기지(핵 포함)로서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위에서만 가능
 - 경제협력을 통한 지역안보 노력 계속

2. 일본 외무성 실무자는 1968.3월 제네바 군축위원회가 작성한 핵확산방지조약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주일본대사관 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설명함.

- 원칙적으로는 찬성이나 국제기구에 의한 핵사찰(핵보유국 포함) 강화조치가 필요

미국의 국방 관계

| 68-17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8/5/1~43(43p)

주미국대사관이 1968년에 외무부에 보고한 미국의 국방관계 자료는 다음과 같음.

1. 1968.8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밥 윌슨 의원(공화당)이 발표한 존슨 민주당 행정부의 군축 (대공미사일, 육군과 해군병력, 해군함정)에 대한 비난 성명
 - 소련이 동구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60억달러 상당의 군축은 부적절
 - 소련의 침략행위를 고무하지 않도록 현행 군사력의 유지 내지 강화가 바람직
2. 1968.9월 미국 상원 군사소위원회가 채택한 미국과 소련의 잠수함 전력 비교와 행정부에 대한 대책 건의 보고서 요지
 - 핵공격 잠수함 전력의 질적, 양적 재조정
 - 1970년 이후의 공격용 핵잠수함 건조계획 계속
 - 고속 잠수함 개발계획 유지
 - 첨단 잠수함 개발계획 조기 착수
3. 1968.10월 미국 상원 군사소위원회가 채택한 미국과 소련의 전술 공군력 비교와 행정부에 대한 대책 건의 보고서 요지
 - 소련 공군 예비전력 과소평가 경향 시정
 - 해군의 VFX, 공군의 FX 전술 공군력 강화 프로젝트 조기 착수
 - 1970년대 중반 실전배치 가능한 첨단공군기 개발

68-173

한·미 국방각료회담, 제1차. Washington, D.C., 1968.5.27.-28.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Re-19/8/1~125(125p)

1. 1968.5월 미국을 방문한 최영희 국방장관과 닛츠 국방차관 간의 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책에 관해 아래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짐.
 - 한국측이 한국군의 대응태세를 설명
 - 이에 대해 닛츠 차관은 한미공동작전 필요성, 대간첩작전 목적의 정보수집과 상황판단을 위한 협조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북한이 한국의 후방에서 부대편성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의를 제기
 - 회퍼 합참의장도 김일성의 도발 가능성 주장이 과도하다고 반론
 - 최영희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한 국민감정을 설명하고 정보 수집을 위한 공작원 복파 필요성에 언급
 - 미국측은 북한에 대한 보복이 아닌, 첩보수집이 목표라야 한다는 입장 표명
 - 한국측이 대간첩침투 대책을 설명하고 군사지원을 요청한데 대해 미국측은 그 목적을 위한 군사원조 사용에 동의
 - 미국측은 향토예비군을 통한 대책도 평가
2. 한국측은 1억달러 추가 군사원조의 조기 이행을 요청하고 미국측은 노력을 약속함.
3. 그밖에 한국측은 소화기 공장의 합작건설을 제의함.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현황

| 68-17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8/8/1~28(28p)



1. 미국은 1948년~1968.6월 총 74억달러를 한국에 원조함.
2. 원조내역은 경제원조 28.6억달러, 미국공법(PL)480호 농산물원조 9.2억달러, 군사원조 26.2억달러 등이었으며 경제원조의 구성은 무상 25.2억달러, 유상 3.4억달러임.

| 68-175 |

Brown각서 실천현황 보고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Re-20/3/1~39(39p)

Brown 각서의 군사면 및 경제면에서의 이행 실적은 다음과 같음.

1. 군사면(1968.6.30. 현재)

- 국군현대화
 - 장비도입 인가 370,100건 중 74% 도입, 미도입 부분 1968년 말까지 도입 완료 전망
- 파월 한국군 장비 및 재정지원
 - 장비 품목 903건 중 87% 도입, 재정지원 2,369.6백만원(1966~68년)
- 보충병력 장비제공 및 재정부담
 - 장비도입 인가 1,387품목 중 91% 도입, 재정지원 6,614.7백만원(1966~68년)
- 대간첩 능력개선: 장비도입 인가 69품목 중 69% 도입
- 조병창 확장: 미측이 건설비 약 300만달러 지원, 기타 소요 자금은 원화로 지원
- 통신시설: 월남주둔 한국군 전용 무선시설 제1단계 작업 1968.7월말경 완공 예정
- C-54 항공기 4대: 도입 완료
- 군복지시설: 숙소 251동 중 128동 공사 집행
- 파월군 해외근무 수당: 75,244천달러 수령(1966~68년)
- 사상자에 대한 보상: 5,745.4천달러 수령(1966~68년)

2. 경제면(1968.8.31. 현재)

- 국군증파에 따른 순추가 원화경비 부담: 총 10,560백만원(1966~68년)
- 군원기관 중단: 1966~68년 국방예산에서 35.9백만달러 절약
- 대월남 “자연공급 품목” 구입: 밀림화, 천막, 군용백 등
- 대월남 대반도 작전용 물자 구매: 25,874천달러(1966~68년)
- 대월남 민간인 진출
 - 현대건설, 대립산업 등 11개 업체가 각종 건설 공사에 진출
 - 1965~68년간 총 19,977명 인력송출
- 수출 진흥을 위한 기술원조: 중소기업훈련센터 등 24개 사업 중 4개 사업 교섭 중
- 개발차관
 - 차관협정 체결 16개사업(143,220천달러)중 포리에스텔공장(1,650천달러) 1968.3.20. 준공
 - 추가 요청 중소기업육성 및 원양어선 건조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한 30,000천달러 차관협정 1968년 중 협정체결
- Program Loan
 - 1965~68년 1차·2차 차관협정 체결분 10,000천달러 및 12,500천달러 전액 소진, 3차 차관 협정 체결분 10,000천달러 중 1968.8월 현재까지 2,434천달러 배정

Brown각서 이행에 관한 한·미 공동 실무작업반 보고

| 68-176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Re-20/2/1~172(172p)



1. 1967.9.6. 제1차 한미공동실무작업반 회의는 아래와 같이 개최됨.
 - 참가범위는 한국의 외무부, 국방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관계자, 미국의 대사관, 주한미군 관계자
 - 경제관계작업반과 군사관계작업반(군사위원회)을 편성하여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
2. 1967.9.12. 개최된 군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짐.
 - 각 소관 부서별로 협의를 진행한 다음, 합의·미합의 사항을 공동실무작업반에서 최종 검토키로 합의
 - 장비현대화 문제는 1966년도 지원 외에 1967년, 1968년도분도 함께 검토하며, 대간첩 장비지원 계획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는 총의를 수렴
3. 1967.11.8. 개최된 군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짐.
 - 미국은 장비현대화 기간을 1966년, 1967년, 1968년 회계년도로 국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1969년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한국입장을 수용
 - 한국군 추가파병에 따른 국내부대 창설에 관해 한국은 브라운각서 이전에 미국이 약속했던 3개 준 전투사단으로 할 것을 주장한데 대해 미국은 브라운각서 상의 1개 사단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합의에 실패
4. 1968.6.19. 채택된 공동실무작업반 제1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 장비현대화 진척도 44%, 보충병력 장비제공 진척도 96%, 대간첩작전능력 개선 진척도 육군 88.1%, 공군과 해병대 98.8%, 해군 1.6%
 - 기타 시설, 장비, 후생, 보상 조치 등 원활하게 추진 중

68-177

한국의 대미군원 교섭



생산연도 1968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Re-29/7/1~129(129p)

1. 1968.2월 외무부는 북한이 침략하는 경우, 미국의 즉각적인 반격을 보장하는 서면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요지의 비망록을 작성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에 수교하고 주미국대사관에도 통보하며 교섭을 지시함.
 -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공산침략에 대비하고 한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실질적 조치를 강구한다.
 - 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주한미군과 미국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산세력의 공격이 있는 경우 한국과의 공동노력으로 즉각 격퇴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 1968.12월 미국을 방문한 최규하 외무장관은 국무장관, 국방차관과 만나 북한의 도발이 늘어나고 있음을 들어 브라운 각서 등에 따른 장비현대화와 대간첩장비 도입의 촉진을 요청함.
 - 주한 미국대사관에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전달
3. 상기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한국군 월남 증파문제 협의를 위한 밴스 특사 방한 시 약속한 한국군 증강을 위해 1969년도 예산에 추가군사원조 1억달러를 계상함.

한·미 안보문제 관련자료

| 68-178 |

생산연도 1968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Re-30/1/1~99(99p)



외무부가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1968년 중 작성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현황과 문제점(국가안보회의 사무국이 작성한 자료에 대한 평가 형식)

- 미국의 군사적 개입절차 간소화
 - 미국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변경이 곤란
- 간접침략에 대한 보장
 - 정상공동성명 등을 통해 이미 보장 의지를 천명
- 한국방위책임의 명확화(미군 주둔목적 명시 등)
 - 조약체결목적이 명시되고 실제로 미군이 주둔하여 불필요하며, 상호주의에 대한 고려도 필요

2. 한국의 방위체제와 관련한 한미관계(방위체제 강화 위해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

-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보장
- 간접침략에 대한 방위조약 발동
- 피침시의 즉각적인 조치 보장
- 국방각료회의 연례화
- 핵공격에 대한 방위 보장
- 국군장비 현대화를 위한 브라운 각서 조기 이행

3. 월남전 종료 후의 안보정책도 검토하여 역내협력에 관해 정리한 실무의견

- 지역 공동안보의식의 형성과 공동방위체제 결성방안 검토
- 역내 경제기술협력 강화 및 역내 협력체 구성방안 검토

| 68-179 |

CENTO 관계철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G-8/12/1~11(11p)

1. 1967.7.27. 주터키대사는 터키, 이란, 파키스탄 정상이 테헤란에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이어 주터키대사는 3국 정상이 7.31. 회담하고 정상회담 연례화, 지역동맹기구(CENTO) 존속 결정,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철수 촉구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고 보고함.

SEATO 이사회, 제13차. Wellington, 1968.4.2.-3.

| 68-18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G-8/13/1~18(18p)



1. 1968.4.2.~3. 뉴질랜드의 웰링턴에서 개최된 동남아 조약기구(SEATO)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 공산세력의 월남, 라오스 등 동남아 침략 비난
 - 월남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국과 월남의 노력 지지
2. 동남아 조약기구 이사회에는 회원국인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대표와 옵서버 자격인 월남 대표가 참석함.

| 68-181 |

SOFA – 주한미군 Smallwood 상병의 한국 재판관할권 거부문제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8/15/1~139(139p)

1. Washington Post지는 한국여성 살인혐의로 한국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Smallwood 상병이 미국 지방법원에 SOFA의 위헌성을 제소하였다고 1968.4월 보도하면서, 한국 사법부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Smallwood는 사건이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한국법정에 재판 계류 중이나 동 협정은 미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헌임을 이유로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청구하였으나 1968.5월 기각됨.
2. 이에 관해 언론보도 등 국내 여론이 비등하자, 주한미군측은 1968.5월 동 기사내용이 사실무근 이라고 밝히고 한·미행정협정 공동위 미측대표 Friedman 중장의 우리측 대표(윤하정 외무부 구미국장)앞 공한을 통해 기사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SOFA 협정의 합헌성은 미국 정부가 방어할 것이며 주한미군은 동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함.
3. 외무부는 1968.5월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주미국대사에게 언론반박문 게재 등 외교적 조치를 지시하고 국내 주요언론에 한국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함.
4. Smallwood는 제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968.5월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Smallwood의 적부심에 대해 최종심사 판결시까지 신병을 인도치 말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1968.6월 항소 법원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함.
5. 윤하정 구미국장은 1968.6월 주한 미군변호인 Davis 대령을 초치하고 여사한 사건의 재발가능성의 우려를 표시하였는바, 미측은 한국측의 우려에 공감하나 주한 미장병의 개인적 송사는 막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임.
6. 서울형사지법은 68.7월 Smallwood 상병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함.
7. Washington Post지는 1968.7월 사설을 통해 미국군인이 미국과 상이한 재판제도 하에서 미국 헌법상의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고, 미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행사도 시정되어야한다고 지적함.
8. Washington Post지는 1968.9월 Smallwood가 미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고 보도함.

SOFA – 주한미군의 군표사용 금지교섭

| 68-18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Re-07-11/16/1~329(329p)



1. 우리정부는 한·미행정협정 제19조에 따라 주한미군 내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어온 미군군표(Military Payment Certificate)의 폐지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토하였고, 관계부처 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68.10월 미측에 폐지를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미측은 달러유출 방지와 국제수지 상황을 고려할 때 군표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군표의 환전불능으로 인해 미군물자 부정유통의 근원이 됨.
- 한국인이 획득한 외화가 공적외화 수입에 흡수되지 못함.
- 대외적으로 아직 군표사용이 불가피한 후진지역이라는 인상을 줌.

2. 우리정부는 1967.7월 본건 관련 양국 간 실무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미측은 한국이 외환자유화를 택하여 원화가 달러로 자유교환될 수 있어야 군표폐지가 가능하다고 대응함.

SOFA – 한·미 합동 밀수수사 관련문서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Re-07-11/2/1~72(72p)

1. 주한 미군 PX 물품의 암거래, 유출 및 도난과 관련하여 한·미행정협정 합동위원회 사무국이 1968.3월 작성한 주한미군사령관 등 관계관과 한국 정부의 부총리, 법무장관 등 고위인사들 및 실무자들 간의 협의 문건
 - 양측은 미군 PX와 관련한 불법행위들과 관련한 통계 등 정보를 교환하고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함.
 - 주한미군 재산과 관련한 범죄행위 수사를 담당하는 한국 검사들 명단도 교환됨.
2. 상기 범죄와 관련 행정협정 합동위원회가 68.6월 작성한 한·미 합동수사반 운영지침 보충지침
 - 미군은 한국 관세당국이 압수하는 물품이 한국 당국에 인도되도록 모든 지원을 하여야함.
 - 한국 정부가 압류한 물품 중 미군의 소유인 것은 미군에게 인도되어야함.
 - 한국 정부와 미군은 수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과 제출(범죄관련 물건의 압수와 인도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해야하며, 압수된 범죄관련 물건은 일정기간 내 반환될 수 있음.
 - 행정협정 비적용 인력으로부터 압수한 재산은 한국 당국이, 행정협정 적용 인력으로부터 압수한 재산은 미국 당국이 1차로 보관함.
 - 이견이 발생할 경우, 재무부 관세국장, 미8군 헌병사령관, 공군 보안경찰이 협의하고 해결이 불가능 하면 한·미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주한 외교관 및 준외교관 대우자의 주한미군 비세출자금 기관(PX) 사용 제한문제

| 68-184 |

생산연도 1963-68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2007-29/5/1~130(130p)



1. 주한 외교기관과 기관원들은 우리정부의 명백한 동의 없이 관례로 주한 미군 PX 및 미국대사관 commissary를 이용해 왔는데, 이와 관련한 특권남용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외무부는 1963.9월 주한 미국대사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전제로 주한 외교관의 미군 PX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으나 한·미행정협정 체결 시 까지 관망하자는 의견에 의해 시행이 보류됨.

- 일상식료품은 외무부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미국 대사관 commissary에서 구입 허용
 - 여타 물품은 외무부를 통해 면세 수입 허용
- commissary 사용은 한국관광공사의 외인판매소가 궤도에 오를때 까지 허용
- 관광공사 외인판매소의 제도 및 시설 개선

2. 한·미행정협정(SOFA) 교섭과정에서 PX 사용범위가 논의 되면서 1965.6월 주한 UNICEF 및 UNTAB 대표는 모든 주한 UN 기관원들의 PX 사용이 계속 가능토록 해줄 것을 요청함.

3. 1966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에 의거, 주한 외교기관원들은 우리정부가 미당국에 요청하지 않는 한 PX 등 사용권한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우리정부는 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전반(PX, commissary, 식당, 사교클럽, 극장, 도서관, 골프장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다음과 같은 시행방안을 수립함.

- 행정협정 발효(67.2월)와 동시 주한 외교관 및 국제연합 기관원에 대한 미군 PX 사용을 금지
 - 단 UNCURK, 유엔군묘지관리단, 중립국휴전감시지원단은 제외
- 특정조건하에서 commissary 사용을 잠정허용
- 관광공사의 외인판매소 확장 및 충실화
- 차량용 유류의 공급원활화 및 면세
- 외국산 연초 수입허가 및 면세
- 국산품 구입 시 면세
- 사전 승인 하 수입품 통관 및 면세

68-185

중립국 감시위원회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G-10/4/1~9(9p)

1. 1968.4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대표단은 중립국 감시위원단 탑승차량에 본국국기 게양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외무부에 요청함.
 - 1954년 유엔군사령부는 중립국 감시위원의 안전을 위해 본국국기 게양을 중지시킨바 있으나 북한의 도발이 늘어나면서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국기게양 허용을 요청함.
2. 외무부는 미수교국 중립국 감시위원의 경우 본래의 임무 수행을 위한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게양은 무방하나 정부대표가 아닌 만큼 비무장지대 밖에서의 게양은 불가하다고 회신함.
 - 수교국 중립국 감시위원은 임무수행이 목적인 경우 비무장지대 밖에서의 게양도 가능

이디오피아의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건립

| 68-18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G-10/5/1~29(29p)



1. 외무부는 1968.3월 유엔 한국 참전국 협회의 요청에 따라 동년 5월 춘천에서 개최될 에티오피아 참전기념비 제막식에 셀라시에 황제 참석문제에 대한 주재국 측의 입장을 문의하도록 주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지시함.
2. 1968.5월 외무부는 에티오피아 황제 영접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참전기념비 제막식 여행연습 (5.14.) 준비를 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함.

| 68-187 |

한국전쟁 전몰미군 추도기념비 건립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1과/북미2과

MF번호 G-10/6/1~111(111p)

1. 외무부는 한국전쟁 전몰 미군장병 추모비를 제작하여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2. 주미국대사관이 타진한데 대해 미국측은 장소관계로 묘지 내의 설치는 어렵다면서 알링턴 묘지 정문 밖, 호놀룰루 국립묘지, 기념교회 설립 방안 등을 제시하여 외무부는 첫 번째 방안을 계속 검토기로 함.

북한의 도발사건

| 68-18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0/7/1~56(56p)



1. 1968.8월 한국군은 육해공군 합동작전으로 제주도 남방 상륙을 기도한 북한 간첩선을 격침하고 12명 사살, 2명 생포의 전과를 올림.
2. 같은 해 11월에는 울진과 삼척에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소탕작전을 전개함.
3. 이를 두고 북한이 남한 유격대에 의한 봉기라고 흑색선전하자 정부는 사건의 전말을 소개하는 영문 자료를 작성하여 외신에 배포함.

| 68-189 |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제14차. 동경, 1968.7.31.-8.9.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G-11/7/1~34(34p)

1. 주일본대사관은 일본 공산당 계열 단체가 주관하여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에 월맹과 북한대표를 초청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하여 외무부가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강구를 지시함.
 - 북한 중앙방송도 북한대표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보도
2. 주일본대사관은 외무성과 법무성 관계자를 면담하고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실제로 주최측이 신청한데 대해 법무성은 “외교적 이유”를 들어 북한과 월맹 인사의 입국을 불허함.

핵무기 비보유국회의. Geneva, 1968.8.29.-9.28.

| 68-19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G-11/8/1~271(271p)

1. 우탄트 유엔사무총장 초청으로 개최가 추진된 핵무기 비보유국 회의에는 82개국이 참가하여 아래 의제를 다루기로 함.
 - 핵무기 비보유국 안전보장 방안
 - 핵무기 및 핵무장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 방안
2. 외무부는 전 재외공관에 동 회의에 대한 주재국의 평가, 회의참가 여부, 의제별 입장, 대표단 구성 계획 등을 보고토록 지시함. 또한, 외무부는 재외공관의 보고를 참고로 아래와 같은 정부 방침을 정하고 동 회의에 김용식 주유엔대사를 수석대표, 박동진 주제네바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파견키로 함.
 - 핵무기 비보유국 안전보장 논의에 적극 참여
 - 특히 중국(구 중공)의 핵전력이 한국의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염두에 두고 대처
 -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방안 강구에 적극 참여
 - 한국경제와 과학의 발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등
3. 한국 수석대표는 상기 방침을 반영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교체수석대표는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월남의 대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가리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유엔과 관련한 한국의 활동상을 열거하며 그 부당성을 지적함.
4. 회의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결과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그 이유는 동서 양진영이 대립한 가운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것임.

68-191

중국(구 중공)의 핵전력 개발



생산연도 1967-68
 생산과 북미2과/동북아2과
 MF번호 G-11/9/1~54(54p)

1. 1967.8월 미국 하원은 “중국(구 중공)의 핵무기가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제하로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채택함.
 - 1967.6월 중국이 단행한 제6차 핵실험은 최초의 메가톤급 수소폭탄이며 항공기 탑재가 가능할 정도로 소형화에 성공한 것
 - 1970년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다탄두(MRBM) 개발 전망
 - 1970년대 초반에는 중국의 핵전력이 미국에 대한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2. 1968.3월 외무부는 중국의 핵전력에 대한 대책 검토를 위해 주미국대사관에 미국의 미사일 요격망(ABM) 설치 계획을 파악토록 지시하였으며 주미국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미국 의회와 군부 일각에 소련의 핵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ABM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행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소극적이고 대량보복 능력에 역점을 둔다는 입장을 고수
 - 중국의 핵전력이 강화됨에 따라 ABM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는 착수

프랑스의 핵실험 실시

| 68-19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1/10/1~42(42p)



1. 1968.5~6월 외무부는 프랑스가 남태평양에서 핵실험을 계획함에 따라 수산청 등과 연락하여 현지조업 한국어선의 안전대책을 강구함.
2. 외무부는 프랑스의 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보상요구(조업기회 상실에 따른) 문제도 검토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와 많은 어선이 현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파악토록 해당공관에 지시함.
3. 프랑스는 7.7. 핵실험을 강행함.

68-193

유엔공채원리금 상환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0/1/1~9(9p)

1. 1968.1월 주유엔대표부는 한국은행 명의로 발행된 유엔공채의 원금 일부와 이자(합계 미화 20,304달러)를 동봉한 유엔사무총장의 공한을 외무부에 보내옴.
2. 외무부는 이를 한국은행에 전달함.

유엔총회, 제22차. New York, 1967.9.19.-12.19. 전3권

| 68-194 |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유엔과

MF번호 H-9/3/1~159(159p)



1. 외무부는 1967.9월 제22차 유엔총회 개최를 앞두고 아래와 같이 대책을 수립함.

- 국제정세 관련 고려
 - 중동사태와 북한의 친아랍 정책에 따른 대책 필요성
 - 아시아·아프리카 제국에 대한 북한의 외교공세에 따른 대책 필요성
- 공산권 의도 관련 고려
 - 남북한 동시초청, 유엔한국위원회(UNCURK) 철수제안 대응
- 목표
 - 남북 동시초청안 부결, 한국 단독초청안 가결, 통일결의안 가결
- 대책
 - 수교국 중심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지지 획득
 - 공동제안국 확대
 -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중남미 지역에 특사, 친선사절단, 경제사절단 파견

2. 총회결과, 상기 목표를 아래와 같이 달성함.

- 남북 동시초청안 부결
 - 찬성 37, 반대 50, 기권 24
- 한국 단독초청안 가결
 - 찬성 58, 반대 28, 기권 25
- 통일결의안 가결
 - 찬성 67, 반대 23, 기권 23

| 68-195 |

유엔총회, 제22차, New York, 1967.9.19.-12.19. 전3권

V.2 국가별 지지교섭 I : 아주·미주지역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유엔과

MF번호 H-9/4/1~406(406p)

1. 제22차 유엔총회를 앞둔 아주지역 국가별 대책은 아래와 같음.

- 남북 동시초청안, 한국 단독초청안, 통일 결의안에 대한 한국입장 지지 확보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호주
 - 싱가포르는 3개안에 기권하겠다는 방침 고수
- 중립노선에 따른 동시초청안 기권목표 설정(단독초청안, 통일결의안 지지가 전제)
 - 미얀마(구 버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 파키스탄은 유엔한국위원회(UNCURK) 잔류교섭도 병행
- 친공노선에 따른 동시초청안, 단독초청안, 통일결의안 기권목표 설정
 - 네팔, 인도

2. 제22차 유엔총회를 앞둔 미주지역 국가별 대책은 아래와 같음.

- 남북 동시초청안, 한국 단독초청안, 통일 결의안에 대한 한국입장 지지 확보
 - 캐나다,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도미니카,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브라질, 아이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과, 칠레
- 중립노선에 따른 동시초청안 기권목표 설정(단독초청안, 통일결의안 지지 전제)
 - 자메이카

유엔총회, 제22차. New York, 1967.9.19.-12.19. 전3권

| 68-196 |

V.3 국가별 지지교섭 II : 구주·중동·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유엔과

MF번호 H-9/5/1~358(358p)

1. 제22차 유엔총회를 앞둔 구주지역 국가별 대책은 아래와 같음.

- 남북 동시초청안, 한국 단독초청안, 통일 결의안에 대한 한국입장 지지 확보
 - 그리스, 네덜란드, 영국, 몰타, 벨기에, 스페인, 이태리, 터키, 포르투갈
- 중립노선에 따른 동시초청안 기권목표 설정(단독초청안, 통일결의안 지지가 전제)
 - 스웨덴은 단독초청안과 동시초청안에는 기권, 통일결의안에는 찬성한다는 입장 고수

2. 제22차 유엔총회를 앞둔 아중동지역 국가별 대책은 아래와 같음.

- 남북 동시초청안, 한국 단독초청안, 통일 결의안에 대한 한국입장 지지 확보
 - 모로코,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가나, 감비아, 니제르, 베냉, 레소토, 케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 카메룬,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차드, 말라위, 브룬디, 세네갈,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 중립노선에 따른 동시초청안 기권목표 설정(단독초청안, 통일결의안 지지가 전제)
 - 라이베리아, 잠비아
- 친공노선에 따른 동시초청안, 단독초청안, 통일결의안 기권목표 설정
 - 우간다, 에티오피아
- 기타(반서방 성향의 국가로서 우리정부의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 튀니지, 리비아, 요르단, 이집트, 쿠웨이트,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유엔총회, 제23차, New York, 1968.9.24.-12.21. 전4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0/2/1~167(167p)

1. 1968.1월 주미국대사관이 작성한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의 전망과 대책”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 개시 이후 한국지지표의 감소 현상 등 현황을 검토하고 유엔에서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함.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자동상정과 관련, 공산측이 23차 총회에서도 그들의 의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 예상되는바, 자동상정이 지양되면 공산측이 토의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됨.
- 공산측 기도를 봉쇄할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자동상정 방식이 유지될 수밖에 없음.
- 23차 총회에서는 지금까지의 기본정책을 유지하고, 초청문제, 통한결의안 내용 등은 22차 총회 시 수준을 답습하도록 적극 추진함.
- 유엔에서의 여건이 불리해져가는 추세에 비추어 국내적으로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논의에 대한 관심도를 낮춰야 하며 표결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계도해야함.

2. 1968.5월 외무부가 작성한 “제23차 유엔총회 기본대책안”

- 기본입장
 - 한국문제를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
- 기본방침
 - 대한민국대표 단독초청 하에 유엔의 기존 통한목표와 원칙을 재확인
 -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유엔군의 계속주둔 및 UNCURK의 계속적 활동을 촉구
 - 자동상정 지양조치의 시행에 관하여는 우방국과 협의 하에 신축성 있게 대처
- 세부대책
 - 한국문제 토의 시기는 회기 말에 가까운 11월 중순 이후로 미룸
 - 공산측의 분리 토의안 적극봉쇄
 - 결의안 내용 관련, 대표초청 결의안은 부득이한 경우 조건부 동시초청안의 선 까지 신축성있게 대처하고, 북한도발행위규탄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과 자동상정 지양조치의 시행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결의안 내용 조정 방안을 검토
 - 우방국과의 협조 대책, 득표교섭 대책, 예산지원, 공보대책 등

3. 1968.7월 국회의원, 언론인, 학자 등 참석 하에 “제23차 유엔총회에 대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바, 토의에서는 동시초청안 봉쇄는 장기적 견지에서 어려우므로 일단 현 방안을 유지하되 필요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4. 1968.10~12월간 뉴욕에서 개최된 주요 우방국과의 전략회의 일일보고

-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20여개국 참석
- 초청문제 토의 시기, 한국문제 토의 시기, 분리토의 저지 방안, 쿠바제의 한국문제 토의 종식안, 통한 결의안 내용 등에 관하여 기본 대응전략, 일일회의의 결과 분석 및 대응책, 의장단 및 각국 입장, 막후 교섭 및 발언 역할분담 등을 논의

유엔총회, 제23차. New York, 1968.9.24.-12.21. 전4권

V.2 국가별 지지교섭 I : 아주·미주지역

| 68-19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0/3/1~488(488p)



제23차 유엔총회 관련, 1968.9~12월간 아주 및 미주 지역 국가와의 지지교섭 현황

1. 네팔

- 네팔은 한국문제에 관해 동시초청안 찬성, 기타문제 기권 입장을 보여 옴.
- 우리정부는 주유엔대표부, 주뉴델리총영사관 등을 통해 교섭하였으나, 네팔정부는 1968.10월 주네팔 일본대사를 통해 금번에도 종래의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2.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입장지지를 서면으로 확인

3. 미얀마(구 버마)

- 1968.3월 외무부는 주랑군총영사에게 동시초청안에 찬성해온 미얀마의 입장 변경 교섭을 지시. 또한, 동년 8월 및 9월 주랑군총영사가 미얀마 외무성에 유엔에서의 한국지지를 요청하였으나, 현지 대표단과 교섭할 것을 제의함.
- 1968.6월 강량욱 북한인민최고회의 부위원장이 미얀마를 방문, 유엔에서의 북한지지를 요청
- 1968.9월 백두진 대통령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 및 경제사절단 방문 시 재차 교섭

4. 싱가포르

- 주말레이시아 고등판무관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는 종전과 같이 불개입 정책임을 재확인

5. 인도

- 인도 외무성측은 1968.9월 종전 입장의 변경 요인이 없다는 입장 표명

6. 인도네시아

- 한국측 수정안이 전년도보다 강화되어 태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 표명

7. 파키스탄

- 외무부는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에게 파키스탄측 입장 변화를 위해 집중 교섭토록 지시하였으나 파키스탄 외무성측은 1968.8월 작년과 같은 입장으로 임할 것이라고 함.



8. 니카라과

- 니카라과 정부는 동국 겸임대사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 제정 시 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우리 입장을 전폭 지지키로 결정함.

9. 칠레

- 외무부는 칠레측이 단독초청찬성, 동시초청반대 입장을 확인하였으나, 지지약속에도 불구하고 동시초청에 기권한 전례를 고려하여 칠레측 입장을 확보하는 교섭을 진행토록 주칠레대사에게 지시함.
- 칠레측 확약에도 불구하고 현지 대표단이 불투명한 입장을 취하자 주칠레대사가 주재국 외상에게 한국입장 지지 훈령의 재시달을 교섭하였는바, 칠레 현지 대표단은 본국정부 훈령의 접수를 확인함.

유엔총회, 제23차. New York, 1968.9.24.-12.21. 전4권

| 68-199 |

V.3 국가별 지지교섭 II : 구주·중동·동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0/4/1~408(408p)



제23차 유엔총회 관련, 1968.9~12월간 유럽, 중동,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지지교섭 현황

1. 모로코

- 중동친선사절단(단장 박준규)의 1968.8월 모로코 방문 시 호의적인 검토를 약속하였으며, 1968.9월 모로코 외무성측은 실질문제 결의안에 한국입장 지지 입장을 표명함.

2. 사우디아라비아

- 중동친선사절단의 1968.8월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사우디 국왕 및 외상은 유엔 총회에서 한국문제 관련 우리입장 지지를 언급함.
- 1968.11월 주유엔 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초청문제와 관련 표결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철회함.

4. 이란

- 남북한 동시초청안에 대해 이란이 견지해온 기권입장을 반대로 전환하기 위해 교섭함.

5. 이스라엘

- 1968.3월 이스라엘에 대한 겸임대사 파견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와 관련 중동국가의 입장변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됨.
- 1968.5월 외무부 구아국장은 유엔 한국문제에 대한 중동국가들의 입장악화에 대비하여, 조건부 동시초청안 제의 등 유엔전략의 일부 수정, 유엔 밖에서의 한반도 통일 노력의 병행 등 정책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비공식 보고서를 작성함.

6. 레소토

- 레소토는 한국문제에 대해 비교적 친한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제23차 총회에서 동시초청안에 대한 동국의 반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케냐대사를 통해 교섭하여 지지를 확보함.

7. 모리셔스

- 신생국가로서 1968년 유엔 가입국인 모리셔스의 지지 확보를 위해 동국과의 국교수립을 제의하고, 설탕 수입을 검토함.



8.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 황제의 방한 등을 계기로 우리측에 불리한 태도를 보여온 에티오피아의 입장호전을 위해 1968.8월 사절단 파견(단장 박동진 대사) 및 고위인사 연쇄 접촉 등을 통해 교섭한바, 에티오피아측은 일단 최선의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반응함.
- 에티오피아측은 황제 방한 시 공동성명에서 남아공 인종차별 문제를 반영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종전 입장 고수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우리측이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한 기본입장을 설명하는 등 교섭한 결과, 우리 입장 지지를 약속함.
 - 단, 동시초청 문제에 관하여는 종전 입장 유지

유엔총회, 제23차. New York, 1968.9.24.-12.21. 전4권

| 68-200 |

V.4 국가별 지지교섭 Ⅲ : 서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0/5/1~406(406p)



제23차 유엔총회 관련, 1968.9~12월간 서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지지교섭 현황

1. 니제르

- 한국문제 교섭의 일환으로 주유엔 니제르대사 부부가 우리측 초청으로 1968.6월 방한함.
-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는 1968.6월 니제르에 출장, 니제르 외상과 면담한 바, 동 외상은 원칙적인 문제로서의 우리입장 지지의사를 확인하였으나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 하겠다함.
- 1968.11월 주말리 북한대사가 니제르를 방문하고 유엔 대책을 협의한 것과 관련, 주코트디부아르대사가 말리에 출장, 국왕 및 미국대사 등 주요인사에게 확인한 바, 말리 측은 입장 변화 없다고 언급함.

2. 베냉(구 다호메이)

- 이수영 주프랑스대사를 단장으로하는 사절단이 1968.8월 베냉을 방문, 우리입장 지지를 교섭함.
- 북한 사절단도 같은 시기에 베냉 방문

3. 라이베리아

- 1968.9월 주코트디부아르대사의 신임장제정 방문 시 외무차관(외상대리)은 우리입장 지지 약속
- 북한 사절단은 1968.8월 라이베리아 방문

4.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 우리정부는 부르키나파소의 입장완화를 위하여 의사파견, 경제원조 등을 제의하고 상주공관 개설문제 등도 검토하였으며, 주코트디부아르대사의 부르키나파소 신임장제정 방문 시 대통령, 외상 등이 한국 문제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고려하여, 동시초청문제에 대하여 동국의 최소한 기존입장 유지(기권)를 위해 교섭함.
- 1968.11월 부르키나파소측은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한국입장 지지를 확인하였으나, 주유엔 부르키나파소 대사는 본국훈령 부재를 이유로 동시초청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부르키나파소의 입장변경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부르키나파소에 긴급출장하여 훈령이 시달될 때 까지 체류, 교섭토록 지시 하였으나, 미국 대사의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면담 후 부르키나파소측이 동시초청안에 기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출장은 취소됨.

5. 적도기니

- 신생국인 적도기니가 1968.10월 유엔에 가입함에 따라 주코트디부아르대사를 동국에 출장시켜 지지를 교섭함.
- 적도기니의 유엔회의 대표가 유학생임을 파악하고 동인의 뉴욕 체재기간 연장과 필요시 체재경비 부담을 제의토록 주유엔대사에 지시

68-201

중국(구 중공)의 유엔가입 추진(중국대표권 문제)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0/6/1~43(43p)

중국(구 중공)의 유엔가입 추진과 관련한 정세보고, 분석 및 언론보도 내용임.

1. 1968.1월 존슨 미국 국무차관은 상원외교위에서 대만(구 자유중국)을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국의 유엔가입에 찬성한다고 증언함.
2. 1968.9~11월 중국의 유엔가입과 관련한 결의안 내용, 토의결과 및 분석에서 외무부는 금번 토의 결과 중국대표권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2/3의 지지표가 필요한 실질문제로 보아야한다는 서방측의 입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중국의 유엔가입은 요원한 것으로 예측함.

유엔국제인권회의. Teheran, 1968.4.22.-5.13.

| 68-20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0/7/1~200(200p)

1. 정부는 1968.4.22.~5.13.간 테헤란에서 개최되는 유엔세계인권회의에 노석찬 주이란대사를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 박한상, 이영우 등 국회의원, 법무부 국장, 외무부 실무자 등 참석
- 외무부는 각종 인권문제에 대해 우방국과 공조하며, 우리나라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기회에 사할린 교포 송환문제, 재일교포 복송문제, 납북인사 인권문제 등을 제기하도록 훈령

2. 회의결과

- 회의벽두에 소련대표는 한국, 서독, 월남 등 분단국가들이 참가하고, 북한, 동독, 월맹 등이 불참한 것은 유엔의 차별정책의 결과라고 비난함.
 - 이에 대해 우리대표는 한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일 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낭비라고 반박함.
 - 소련대표의 집요한 문제제기로 신입장 위원회로 넘겨진 분단국 참가문제는 토의 후 표결에서 소련측이 일방적으로 패배함.
- 동 회의 시 주요 쟁점은 이스라엘 점령지 내 인권문제, 남아공의 인종차별, 아프리카 내 신식민주의 등임.
- 우리대표단은 일반적인 인권신장 결의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투표함.
 -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기권,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기권 또는 찬성
- 대표단은 아랍국가들의 공산권 동조 추세에 비추어 온건 아랍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교를 추진할 것을 건의함.

68-203

외기권탐색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Vienna, 1968.8.14.-27.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0/8/1~121(121p)

1. 정부는 1968.8.14.~27.간 비엔나에서 개최된 ‘외기권 탐색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회의’에 유양수 주오스트리아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 과학기술처에서 예산사정으로 대표단 파견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현지 공관원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
- 외무부는 공산측이 북한 불초청 관련 우리나라의 참가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것을 대표단에 지시

2. 주요논의 사항

-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 TV의 과학·기술적 측면
- 기상위성, 탐사로켓
- 네비게이션을 위한 위성사용, 데이터 수집 체계, 외시권 생의학 문제 등

3. 우리대표단은 회의참가 후 향후 회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참가를 건의함.

국제연합 한국협회

| 68-20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연합과/문화교류과
 MF번호 H-10/10/1~12(12p)



외무부 문화교류과가 1968.9월 작성한 한국외교협회에 대한 사회단체 등록증 발급을 건의하는 내부 결재 문건임.

68-205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총회, 제24차. Canberra, 1968.4.17.-30.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경제과

MF번호 1-22/1/1~354(354p)

1. 1968.3월 외무부 통상국이 작성한 제24차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총회 참가준비서

- 주요 사업개요, 역대개최국 의장단, 역대 대표단 명단, 의제, 의제설명, 준비계획 등 수록

2. 1968.5월 통상국이 작성한 제24차 ECAFE 총회 참가보고서

- 대표단: 수석대표 진필식 외무차관, 교체수석 이동환 주호주대사를 위시한 13명의 대표

● 참가목표

-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상 인식
- 각 회원국의 수출입 현황 정보 입수 및 경제기술협력 의견교환
- 북한, 월맹 등 가입문제와 관련한 공산측 획책 지지
- 이스라엘 가입문제는 적극 지지활동은 하지 않으나 표결에는 찬성

● 대표단 주요활동

- 소련대표는 한국, 월남, 대만(구 자유중국)의 대표권을 불법이라고 비난하였는데 우리대표는 한국이 한반도내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유엔결의에 의해 ECAFE에 참여하였다고 반박하고, 정치적 논의는 배제할 것을 지적
- 회의 주요의제의 논의에 적극참여하고 우리입장을 발표
- 우방국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 우의증진을 위해 노력
- 수석대표는 UPI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경제 발전상과 월남전 참전에 대해 설명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총회, 제2차. New Delhi, 1968.2.1.-3.29.

| 68-20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1-22/2/1~254(254p)



1. 정부는 1968.2.1.~3.29.간 뉴델리에서 개최된 UNCTAD 제2차 총회에 김정렴 상공부 장관을 수석대표, 문덕주 대사를 교체수석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2. 우리대표단은 2.15. 작성한 회의참가 중간보고서에서 회의동향 및 전망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개발문제 논의 동향
 - 개도국들은 제1차 UNCTAD 총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에 실망을 표시하고 알제리 현장에서 제기한 요구사항들을 수락할 것을 요구함.
 - 선진국들은 정부 대 정부 원조의 곤란성, 민간자본 유통, IDA 자금 증가 필요성, 후진국의 자체 개발 노력을 강조함.
 - 공산권 국가들은 서방국에 대하여는 무역증진 및 개발에 장애요소 제거를 요구하고, 공산측이 경제발전을 위해 최대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을 선전함.
 - 대표권 문제
 - 소련, 쿠바, 헝가리, 불가리아 등은 한국, 월남의 참석과 관련 대표권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우리대표단은 훈령에 의거 우리정부의 합법성 등을 들어 반박함.
 - 회의전망
 - 개발문제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대립이 지속될 것이나, 후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이 계속되면 선진국은 자신의 경제권, 국내공업에 필수적인 공업원료 등을 고려하여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양허 입장을 취할 수도 있으며, 자본면에서는 IDA 자금의 증액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임.
 - 후진국들은 경제통합의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는 국가들 간의 결속을 긴밀화할 가능성이 있음.
 - 수석대표 활동
 - 인도 대통령 및 수상, UNCTAD 사무총장, 일본 통상대신, 대만 경제부장관 등 면담

68-207

UNCTAD – TDB(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통상개발이사회) 제6-7차, Geneva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경제과

MF번호 I-22/3/1~67(67p)

1. 정부가 백인한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옵서버로 참석시킨 제6차 UNCTAD-TDB회의(1968.5.6.~7. 제네바)는 4개 위원회의 위원국을 선출하고 향후의 분과위원회 개최일정을 정함.
 - 4개 위원회는 상품, 제품, 무형무역, 해운 위원회
2. 정부가 이은택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을 옵서버로 참석시킨 제7차 UNCTAD-TDB회의(1968.9.2.~3.)는 UNCTAD 기구개혁과 작업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개도권의 제안에 선진권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진전이 없음.
 - 한국은 해운위원회 위원국 임기가 1968년말 만료됨에 따라 재선을 추구하고있으며 공산권의 반대발언이 있었으나 표결절차 없이 무난히 재선

UNCTAD 보충금융에 관한 정부간 그룹회의, 제4차. Geneva, 1968.10.21.-25.

| 68-20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경제과

MF번호 I-22/4/1~13(13p)



1. 정부는 1968.10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UNCTAD 보충금융에 관한 정부간 그룹회의에 이동익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을 옵서버로 참석시킴.
2. 회의에서는 제7차 UNCTAD 통상개발이사회 결정에 따라 선출된 12개 회원국이 회장단을 선출하였으며 IMF와 UNCTAD의 유사한 제도를 연계시키는 문제 등이 논의됨.

68-209

WFP - IGC(세계식량계획 정부간위원회) 제13-14차. Rome



생산연도 1967-68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2/5/1~448(448p)

1. 정부는 제13차 세계식량계획 정부간위원회(1968.4.17.~24. 로마)에 최종성 건설부 차관을 참석 시킴. 최 차관은 섬강유역 개발사업 등 기존 WFP 원조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동진강 간척 사업 등 4개 신규 사업에 대한 원조를 요청함.
 - 회의에서는 회원국의 수리, 간척, 하천유역 개발, 치수, 제방건설 사업 등이 다루어졌으며 WFP는 한국이 신청한 동진강 간척사업에 대한 승인을 약속
2. 정부는 제14차 세계식량계획 정부간위원회(1968.11.11.~16. 로마)에 박준하 주이탈리아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건설부와 경제기획원 관계자를 참석시켜 이미 승인된 WFP 사업(동진강 수리 간척 사업 등)의 조기집행과 신규 신청사업(김해 간척사업 등)의 조기승인을 추진함.
 - 회의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긴급원조 기준설정 문제가 논의되어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WFP와 FAO 사무총장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
 - 한국이 신청한 신규 사업도 연말까지 승인할 전망 제시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특별총회, 제3차. London, 1966.11.28.-30.

| 68-210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16/8/1~213(213p)



1. 정부는 1966.11.28~30. 런던에서 개최된 제3차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특별총회에 소상영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을 참석시킴.
2. “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문제를 논의한 회의에서는 해상안전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이 거의 그대로 채택됨.
 - 정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여객선 특별화재 안전수칙에 관해 다수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응

68-211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12차. Vienna, 1968.9.24.-30.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2/6/1~150(150p)

1. 정부는 1968.9.24.~30.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2차 IAEA 총회에 유양수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 이상수 원자력연구소 소장을 교체수석대표로 참석시킴.
2. 정부대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원자력 분야의 기술 원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 이사국 선출에 있어서는 지지를 요청한 이란, 베네수엘라, 싱가포르와 함께 아르헨티나, 이탈리아를 지지
3. 결과보고서에서 대표단은 회의에서 비확산조약(NPT)에 대한 관심이 각별히 높았음을 지적하면서 한국도 이에 참가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함.

UNESCO 총회, 제15차. Paris, 1968.10.15.-11.20.

| 68-21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2/9/1~166(166p)



1. 정부는 122개국 대표가 참석하는 제15차 유네스코(UNESCO) 총회에 이선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문교부,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와 국회의원 2명(윤천주, 이원우 의원)을 파견함.
2. 정부는 동 회의와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대표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그 방향으로 현장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정함(총회에 앞서 이뤄진 한국, 일본 등 10개 아시아 국가 유네스코 상주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아래 내용을 반영).
 - 아시아 지역이 국가 숫자에 비해 집행이사회 진출이 저조하여 현장개정 필요
 - 직선제의 현 방식은 구미 국가 등에 유리
 - 현재의 집행위원/회원국 비율: 구미 1/3, 공산권 1/3, 중남미 1/4, 아시아 1/6
 - 집행위원 수자를 30명에서 34명으로 늘리고 회원국 수에 비례하여 지역별로 할당하는 방향으로의 현장개정 추구
3. 한편 미국 정부는 우리정부에 총회에서 다뤄질 1969/70년 유네스코 예산(주요국 원조 포함)이 미국에게 과중한 부담을 요구한다면서 지난 회기 대비 증가율을 낮춰야한다는 미국입장에 동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지 재량권을 위임받은 대표단은 총회의 대세에 따라 반대함.
 - 미국의 계획은 대다수 회원국의 반대로 무산

| 68-213 |

IBE(국제교육국) 집행위원회, 제45차. Geneva, 1968.2.27.-28.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2/10/1~59(59p)

1. 정부는 53개국 대표가 참석하는 제45차 IBE 집행위원회에 한표욱 주제네바대사를 참석시킴.
 - IBE(국제교육국)는 회원국 사이의 교육 자료 및 정보의 교환을 통해 회원국의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국제기관
2. 정부는 주요의제인 유네스코와의 통합문제에 대해 IBE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전제로 찬성한다는 방침을 정함.
3. 집행위원회에서도 명칭 등 IBE의 독자성을 지키는 방향에서 통합을 추진키로 결정함.

IBE 이사회, 제33차. Geneva, 1968.7.11.-12.

| 68-21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2/11/1~127(127p)



1. 정부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4차 국제교육국(IBE) 이사회와 제31차 국제공교육 회의에 박희범 문교부 차관을 참석시킴.
2. IBE 이사회는 유네스코와의 통합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고 국제공교육 회의는 아래 의제를 정함.
 - 학교 커리큘럼에 국제적 이해를 위한 교육을 필수로 포함시키는 문제
 -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3. 정부는 국제공교육 회의에서 국제적 이해를 위한 한국의 교육현황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을 정함.

68-215

FAO 아시아 및 극동지역 총회, 제9차. Bangkok, 1968.11.4.-15.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3/1/1~405(405p)

1. 제9차 FAO 아시아·극동지역 총회에는 17개국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부는 진봉현 농림부 차관을 한국대표로 파견함.
2. 회의 의제별로 한국대표가 취한 입장 등은 아래와 같음.
 - 식량 및 농업개발 문제
 - 축산, 종자, 지하수 개발을 위한 FAO의 재정, 기술지원 요청
 - FAO 아시아·극동 지역기구 폐지 문제
 - 유엔 지역경제위원회 기능과의 중복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FAO 사무국 입장에 대해 양 기구의 기능이 다르다며 대다수 참가국이 반대하여 지역기구를 존치하기로 결정
 - FAO 이사국 선출방안 개선
 - 아시아·극동지역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지역 국가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회원국 숫자에 비례한 지역별 할당을 주장
3. 총회는 1969년 토지개량사업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기로 결정함.

FAO 수산위원회, 제3차. Rome, 1968.4.24.-30.

| 68-21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3/4/1~47(47p)



1. 정부는 제3차 FAO 수산위원회에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옵서버로 참석시킴.
2.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사항은 FAO 이사회에서 계속 논의키로 함.
 - 수산분야 국제협력 및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강화
 - 대책이 시급한 해역에서의 수산자원 관리 강화
 - 남서대서양 해역에서의 조업
 - 대서양에서의 참치 어획
 - 해양오염 대책 강화

| 68-217 |

FAO 아시아극동지역 농업통계위원회, 제2차. New Delhi, 1968.12.8.-16.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3/5/1~58(58p)

1. 정부는 제2차 FAO 아시아·극동지역 농업통계위원회에 이무제 농림부 조사통계과장과 농협 관계자 등을 파견함.
2. 회의에서는 농업통계, 특히 곡물손실, 비료효과, 가축, 코코넛, 황마 생산 등의 통계 작성방안을 개선하는 문제가 논의됨.

FAO 유지자원심의회, 제4차. Rome, 1968.12.2.-11.

| 68-21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3/6/1~102(102p)



1. 정부는 제4차 FAO 유지(油脂)자원심의회에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 시킴.
2. 유지의 생산, 가공, 소비, 무역 등에 관해 연구하고 자문하는 것이 가능한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결정과 논의가 이루어짐.
 - 개도국산 유지 수출에 대한 관세장벽 완화
 - 가격 안정화(하락방지) 방안 모색
 - 식량원조에 있어서의 개도국산 유지 사용 확대
 - 관련무역의 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강화
 - 자문위원회 설치문제에 관해서는 결정사항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정부 간 기구로 하자는 개도국 측과 심의회 산하에 설치하자는 선진국 측 주장이 평행선을 이루어 결론 도출에 실패

68-219

FAO 인도양수산위원회, 제1차. Rome, 1968.9.16.-21.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3/3/1~243(243p)

1. 정부는 제1차 FAO 인도양수산위원회에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시킴.
 - 인도양과 인접 해역에서의 어족자원 보호가 목적인 회의에는 23개 회원국 대표와 2개 옵서버 국가 대표가 참석
2. 한국의 참치잡이 원양어선이 인도양에 출어하여 관심이 높았던 회의에서는 어족자원 현황과 어획실태의 파악을 위한 방안이 논의됨.
3. 송 농무관은 회의참석 결과보고에서 앞으로의 논의추이가 한국의 인도양 참치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할 것을 건의함.

FAO/CCP 경질섬유단회의, 제3차. Rome, 1968.11.6.-8.

| 68-22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3/7/1~22(22p)



1. 정부는 제3차 FAO/CCP 경질(硬質)섬유연구단 자문위원회에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시킴.
2. 대마 등의 수요와 공급의 안정화, 생산방안 개선, 무역(쿼터 할당 포함)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 회의에서는 개도국들의 요청에 따라 수요증가에 맞추어 수입쿼터를 조정키로 함.
3. 한국은 필리핀산의 주요 수입국으로 동 회의에서의 논의동향에 관심을 가짐.

68-221

FFHC(기아해방운동) 아시아극동지역 총회, 제2차. Bangkok, 1968.11.1.-2.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3/8/1~193(193p)

1. 정부는 제2차 기아해방운동(FFHC) 아시아·극동지역 총회에 진봉현 농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농림부, FFHC 한국위원회 관계자 등을 참석시킴.
 - FFHC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활동의 일환으로 매 2년마다 총회 개최
 - Freedom From Hunger Campaign
2. 각국의 식량사정과 식량부족 타개정책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은 아래와 같이 한국의 현황을 소개함.
 - FFHC 한국위원회를 정부와 민간의 각 분야 대표로 구성하여 기능을 강화
 - 뉴질랜드, 호주, 독일(구 서독), 오스트리아 등과 협력사업을 실시
 - 각종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보급하여 계몽활동을 강화
 - 청소년 농촌봉사활동을 실시

IPFC(FAO 인도·태평양 수산위원회) 총회, 제13차. Brisbane(호주) 1968.10.14.-25.

| 68-22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3/9/1~121(121p)

정부는 1968.10.14.~25.간 호주 브리스번에서 개최된 FAO 인도태평양 수산위원회(IPFC)에 김인수 수산청 생산국장을 정부대표로 임명하고 다음과 같이 훈령함.

- 2개의 기술위원회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호주의 이사회 협정 수정제의에 대하여 회원국 지지 동향을 적절히 파악하여 이에 맞추어 대처
- 인도양 어업 위원회 문제는 우리의 참치 연승 어업의 진출 문제에 유리하도록 함.
- 트롤 어업 심포지움에서는 우리의 원양 진출 계획을 감안하여 호주·뉴질랜드 근해의 저어자원(低魚資源) 개발 가능성에 착안, 이에 관해 조사 파악
- 구로시오 합동조사는 우리의 수산개발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므로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반영

68-223

IRC(FAO 국제미곡위원회) 회의, 제11차. 동경, 1968.10.28.-11.2.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3/10/1~196(196p)

정부는 1968.10.28.~11.2. 도쿄에서 개최된 FAO 국제미곡위원회(IRC) 제11차 회의에 최현옥 농업진흥청 작물시험장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하였는바, 동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IRC의 3개 Working Party를 매 2년마다 개최함.
 - 답토양, 관개수 및 시비법에 관한 WP, 미곡 생산, 저장 및 가공에 관한 농공업 WP, 미곡 생산과 보호에 관한 WP
- IRC 회의는 3~4년 간격으로 개최함.
- 차기 회의부터 공용어로 스페인어 추가
- 우리 대표는 미곡 생산의 기술적, 경제적, 제도상의 고찰과 관련하여 건조 및 저장 시설, 수리시설, 저위생산지 개량, 품종개량, 지도사업, 재정 및 정책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10차 회의 권장 사항과 관련하여 미국 증산을 위한 품종의 선택, 시비법, 병충해 방제 및 제초, 가공 및 저장을 포함한 농공 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추진 등을 보고함.

ILO(국제노동기구) 아시아지역 회의, 제6차. 동경, 1968.9.2.-14.

| 68-224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3/14/1~17(17p)



1. 노동청은 1968.9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ILO(국제노동기구) 아시아지역 회의에 우리나라가 옵서버로 초청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1967.9월 외무부에 요청함.
 - 동 회의 참가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ILO 가입을 위한 사전교섭 실시
2. 이와 관련, 1968.1월 주제네바대사는 당시 ILO 집행위원회의 구성에 비추어 한국의 노동조합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의 참석을 유발할 우려도 있으므로 옵서버 참석 문제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ILO 가입교섭에 차질을 야기할 우려가 많다고 판단되어 아시아지역 회의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노동청에 통보함.

| 68-225 |

IOE(국제수역국) 총회, 제36차. Paris, 1968.5.13.-18.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4/1/1~96(96p)

정부는 1968.5.13.~18.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역국(OIE) 제36차 총회에 황영구 농림부 축산국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국제 동물위생 규정 초안에 대한 심의 및 승인, 회원국 간 수의 위생현황 및 가축 방역방법 등 의제 토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축방역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국과의 가축 교역 증진 및 축산물 수출 진흥에 기여

2. 주요 의제

- 국제 동물위생 법규 초안의 심의 및 개정
- 전염성 수포성 구염
- 말의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
- 양의 리켓치아 병 등

3. 우리대표 발언

- 국제 동물위생 규정 초안 심의와 관련, 우리나라의 가축방역 및 검역업무 실적에 대해 설명

IHO(국제수로기구) 동부아시아지역 수로위원회 창설준비 회의. 동경, 1968.10.7.-9.

68-226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4/2/1~34(34p)



정부는 1968.10.7.~9.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수로국(IHO) 아시아 지역 수로위원회 창설준비 회의에 교통부 전철웅 수로국장과 강호진 수로과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목적

- 동남아 지역으로의 국력 신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로 전문 기술정보 및 자료의 획득기반 구축
- 공동사업의 한국 유치로 한국 연안 수로측량 소요연한을 단축하고 관측 미 실시 지역의 해양관측으로 해양자원 개발의 촉진

2. 주요훈령

- 위원회 명칭을 동부아시아 수로위원회로 함.
- 위원회 정관에 인접국가 간 공동측량 및 조사 실시, 회원국 간 해도 원본을 복사방법으로 교환, 측량 기기의 공동사용 등을 포함시킴.
- 앞으로 개최될 정관 제정회의 협의 사항과 관련, 조속한 시일내 동해(공해상)의 공동조사 협의가 필요함을 주장
 - 공동 조사국: 한국, 일본
 - 조사대상: 종합적 수로측량, 종합적 해양관측, 지자기 관측, 중력관측
 - 조사기간: 1970년부터 5년간

68-227

IBWM(국제도량형국) 총회, 제13차. 속개회의. Paris, 1968.10.15.-17.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4/3/1~30(30p)

1. 정부는 1968.10.15.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도량형기구(IBWM) 제13차 총회 제6차 속개회의에 나원찬 주프랑스대사관 3등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2. 동 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무국 경비 증액안이 가결되어 제7, 8차 속개회의 개최는 취소됨.
 - 1969~72년간 사무국 최저 경비 및 사무국 발전을 위한 추가경비를 결정함.

AARRO(아시아·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 총회, 제3차. 서울, 1968.4.22.-29.

| 68-228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4/4/1~406(406p)



1. 뉴델리 소재 아시아·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AARRO)는 1966.12월 우리정부에 서울에서 개최될 동 기구 제3차 총회시기를 1968.1월에서 4월로 연기하는데 대한 의견을 문의한데 대해 우리정부가 동의함.
2. 1968.2월 우리정부는 농림부 주관으로 AARRO 총회 개최준비 위원회를 구성함.
3. 서울 총회 개최의 의의
 - 농촌재건, 농업기술협력 보다는 한국의 경제발전상 및 상품 소개, 정치외교적 측면의 이해·우의 증진, 경제협력관계 증진에 있음.
4. 외무부는 15개국의 대표단 참석 독려를 위해 교섭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하고 미수교국 대표의 입국 허용문제를 중앙정보부와 협의함.
5. 총회에 김영준 농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장예준 농림차관, 박근 외무부 방교국장, 주성규 농림부 농정국장 등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임명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중립국 적극외교 방침에 기여하고 우리의 농촌개발상, 경제개발상을 소개
 - 우리나라에 재정 부담이 돌아오지 않는한, 후진국들에 대한 원조사업에 각별한 관심
 - 차기 2년간 분담금 관련 가능한 현재선을 유지하고 대폭적 인상안은 저지토록 노력
 - 제1회 아·아 농업박람회 개최 건은 타국의 개최제외에 반대치 않으며, 우리나라의 참여 문제는 예산 확보를 조건으로 검토 가능성을 언급

68-229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 한국대표이사 임명



생산연도 1961-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4/5/1~34(34p)

본 문서철은 1961~67년간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이사회에 참석하는 한국대표이사 임명 및 교체에 관한 문서임.

- 1961.7월 함인영 상공부 공업국장(교체이사 이은복 한국생산성본부 이사장) 임명
- 1962.11월 박충훈 상공부차관 임명
- 1967.12월 김정렬 상공부장관 임명

APU 이사회, 제4차. Bangkok, 1968.8.6.-8.

| 68-23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4/7/1~116(116p)



1. 국회는 1968.8.6.~8.간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4차 아시아의원연맹(APU) 이사회에 김정열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2. 동 이사회에서 검토될 이사회 의 절차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외무부 간에 준비 회의가 개최되었는바, 일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이 제시됨.
3. 외무부는 주태국대사관과 일부 대표단 경유지 공관에 의전사항과 관련한 지시를 내림.

68-231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56차. Lima(페루)

1968.9.5.-13.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4/8/1~190(190p)

1. 국회는 1968.9.5.~13.간 리마에서 개최되는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 다음과 같은 대표단을 파견함.

- 단장: 박준규 국회 외무위원장
- 총회 부의장: 유진산 의원
- 이사: 정일형 의원
- 대표: 김재순, 이만섭 의원
- 윤주영 주칠레대사 등

2. 회의주요 의제 및 논의 결과

- 체코사태
 - 당초 의제에 없었으나 월남전과 관련하여 체코가 1967년부터 제출한 내정 불간섭안이 체코에게 역으로 작용, 소련의 체코 내정 개입문제가 논란이 되어 소련에 대한 비난 성명이 채택됨.
- 월남 재가입문제
 - 동서진영 간 격론 끝에 이사회에 월남 가입을 결정함.
- 이사회 의장선거
 - 프랑스 후보가 피선됨.
 - 1968.7월 주이란대사는 이란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건의하고 외무부 본부도 호의적 입장을 국회에 건의함.
- 집행위 선거
 - 인도, 페루, 카메룬이 피선됨.

IPU 이사회, 제102차. Dakar(세네갈), 1968.4.15.-21.

| 68-23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4/9/1~125(125p)



1. 국회는 1968.4.15.~21.간 다카에서 개최된 국제의원연맹(IPU) 제102차 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대표단을 파견함.
 - 단장: 김창근 의원
 - 대표: 고희문, 문태준 의원
 - 고문: 이수영 주프랑스대사
2. 1968.2월 주스위스대사는 금번 이사회의 우리나라 관련 핵심쟁점은 universality 문제, 근동사태, 사무총장 선출 등이라고 분석하고 특히 북한 등 공산국가들의 무조건 가입을 유도하는 universality 논의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건의함.
3. 외무부는 국회와 협조, 이사회 회원국 주재 공관에 대해 universality 논의 시 주재국 대표가 우리 입장을 지지하도록 아래와 같은 논리로 적극 교섭할 것을 지시하고 일부 대표는 대표단의 회의 참석차 경유 시 직접 접촉하여 교섭함.
 - 종래 IPU에서 체코,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이 공산권 미가입분단국의 가입신청을 즉각 심의하여 가입을 허용해야한다는 universality 원칙을 주장한데 대해 서방국가들은 국제적 규범 준수 등 자격 있는 국가들만이 가입 가능하다는 입장임.
 - 최근 북한의 도발 책동에서 보듯이 북한은 가입자격이 없으므로 가입을 저지해야함.
4. 1968.4월 미국 국무성 관계관은 금번 이사회에서 북구제국들이 미가입 분단국가들의 일괄가입을 제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동 제의를 표결에 부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표결에 가더라도 부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함.

68-233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37차. Teheran(이란), 1968.10.1.-8.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4/10/1~70(70p)

1. 정부는 제37차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에 장동식 내무부 치안국 수시지도과장 등을 파견함.
 - 회의에는 71개국 대표가 참석
2. 총포, 마약, 화폐위조 등의 단속, 관광객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짐.
 - 외국인 관광객의 총포구입에 관한 정보를 국적국가와 공유
 - 외국인 관광객 보호를 위해 관련 영업종사자에 대한 계도 강화
 - 외국인 범죄 단속, 예술작품 도난사건 수사를 위한 협조 강화
3. 한국대표단은 회의참석 결과보고에서 국제공조의 발전을 위해 인터폴과 한국파견 요원 증원을 요청하고 교섭할 것을 건의함.

도시연합기구 한국 가입추진

| 68-23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4/11/1~13(13p)



1. 내무부는 파리 소재 도시연합회로부터 한국의 가입을 요청받았다면서 기구현황의 파악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 도시연합회(United Towns Organization)
2. 외무부는 아래와 같은 기구현황을 내무부에 통보함.
 - 1957년 결성되어 44개국에 가입했으며 매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여 가입 도시 간의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함.
3. 내무부가 공산권 국가들(소련, 유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동독)이 회원국인 사실을 들어 가입이 무방한지를 문의한데 대하여 외무부는 문제없음을 회신함.

| 68-235 |

WACL(세계반공연맹) 제2차 총회 및 APACL(아시아민족 반공연맹) 제14차 회의. Saigon, 1968.12.16.-20.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I-24/12/1~157(157p)

1. 1968.12월 월남의 사이공에서 개최된 제2차 WACL 총회와 제14차 APACL 회의에 한국에서는 이응준 한국반공연맹 이사장 등이 참석함.
2. 54개국 대표가 참석한 WACL 총회에서는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이 채택됨.
 - 월남, 대만의 반공투쟁 지지
 - 소련의 침략성에 대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강화 촉구
 - 파리 평화협상에 대한 월남 대표의 주도적 참가와 베트남 대표 배제 촉구
3. 70개국 대표가 참석한 APACL 회의에서도 월남의 반공투쟁을 지지하고 파리 평화협상에 관한 월남의 입장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됨.
4.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반공연맹의 요청에 따라 WACL 총회에 그간의 기여를 평가하고 제2차 총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냄.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총회, 제5차. Kuala Lumpur, 1968.6.19.-27.

| 68-23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4/13/1~218(218p)



1. 정부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5차 동부지역 공공행정기구(EROPA) 총회에 이석재 총무처 장관(수석대표), 외무부, 내무부, 총무처 관계자와 국회의원 2명(김수한, 김용호 의원)을 파견함.
 - EROPA는 역내 각국의 행정발전을 목적으로 1958년 설립되어 한국 등 10개국이 가입했고 사무국은 마닐라에 소재
2. 회의에 임한 대표단은 제2차 아시아 외교관 훈련과정을 한국에 유치하고 재정지원을 확보하며 한국에 설립되어 있는 조직관리(Q&M)센터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을 얻는데 역점을 둠.
 - 총회에서 외교관 훈련과정 한국개최와 카네기재단을 통한 자금확보 방안 결정
3. 총회와 함께 열린 행정혁신 세미나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미국, 홍콩 대표가 자국의 행정개선 실적을 설명하고 각국의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함.

68-237

IIAS(국제행정학회의) 총회, 제14차. Dublin(아일랜드)

1968.9.3.-6.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4/14/1~36(36p)

1. 주영국대사관은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제14차 국제행정학회(IIAS) 총회 참가가 미수교국인 아일랜드와의 우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대표 파견을 건의함.
 - IIAS는 각국의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교류를 목적으로 1930년에 설립되었으며 사무국은 브뤼셀에 소재
 - 한국은 한국행정학회가 가입
2. 당초 정부대표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던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주영국대사관은 정부대표를 파견하는 국가현황과 대표의 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보고함.
 - 미국, 일본 등 23개국 이 민간대표와는 별도로 정부대표 파견
 - 정부대표는 장관급, 국회의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3. 이에 따라 한국도 개최국 아일랜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홍춘식 행정개혁조사위원회 위원(차관급)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4. 총회에서는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행정, 행정절차상의 국민권리 보호 등이 의제로 다루어짐.

FIG(국제측량기사연맹) 총회, 제12차. London, 1968.9.2.-12.

| 68-238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4/15/1~40(40p)



외무부는 1968.9월 런던에서 개최되는 국제측량기사연맹(FIG) 제12차 총회에 대한 옵서버 참가를 검토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함.

68-239

AEU(아시아전자연맹) 한국가입, 1968.4.3.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4/16/1~70(70p)

1. 정부는 1967.10.16.~21.간 도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전자공학회의에 오현위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김규한 이사, 이태구 이사를 파견함.
 - 참가목적: 앞으로 창설될 아시아전자연맹(AEU) 창설의 일익을 담당하여 북한의 가입 가능성을 배제함.
2. 외무부는 상기 아시아전자공학회의에서 채택된 아시아전자연맹 규약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1968.3월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송부함.

FID(국제도큐멘테이션연맹) 한국 가입검토

| 68-240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4/18/1~45(45p)

1. 우리정부는 1967.9.11.~23.간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 도큐멘테이션 연맹(FID) 총회에 손응용 한국과학기술 정보센터 이사를 대표로 파견함.
2. 1968.4월 과학기술처는 외무부에 우리나라의 FID 가입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 국제 도큐멘테이션 활동기관 간 유대강화
 - 과학기술 정보 교류의 증진 및 문헌 전문가의 상호 교류 훈련
 - 북한은 1967.9월 총회 시 가입
3. 1968.8월 외무부는 관련 재외공관, 중앙정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동 기구 가입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과학기술처에 회신함.
 - 현대 과학기술의 도입에 기여
 - 과학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 획득 및 전문가 교류 촉진
 - 북한과 공산국가들의 선전활동에 유의
 - 우리나라의 가입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

| 68-241 |

ICSW(국제사회복지이사회) 총회, 제14차. Helsinki, 1968.8.18.-24.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4/19/1~8(8p)

1. 보건사회부는 1968.8월 헬싱키에서 개최될 제14차 국제사회복지이사회 총회에 필리핀의 대학에서 초빙강의 중인 노창섭 교수를 파견하도록 외무부에 의뢰함.
2. 외무부 본부는 주필리핀대사관에 이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함.

한·영간의 대한민국에서의 주한영국군의 시설과 구역 및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 68-24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J-50/4/1~72(72p)



1. 1968.8월 주한 영국대사관은 한국주둔 영국군에게 “한·미 군대지위협정”을 준용한 대우를 공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정초안을 외무부에 제시함.
2. 외무부는 병력이 16명에 불과한 영국군에게 미군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초안을 작성키로 하고 영국 정부와의 사전조율에 착수함.
 - 그 일환으로 외무부는 주영국대사관을 통해 영국이 해외주둔 영국군의 지위에 관해 제3국과 체결한 협정을 수집

68-243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위한 검토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조약과/북미2과

MF번호 Re-32/19/1~42(42p)

1. 1968.2월 외무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보완하기 위해 1954.11월 서명한 한·미 합의의사록의 수정을 추진키로 하고 여기에 포함시킬 내용으로 아래 사항을 검토함.

- 공산군 침략시의 즉각적 반격
- 비정규군에 의한 도발시의 보복
- 1969~71년 회계연도 간 3억달러 이상의 추가 군사원조 제공
 - 팬텀 전투기 매년 2개 대대씩 총 6개 대대
 - 예비군 100만 명분 소화기(연도별로 40만, 30만, 30만 무장)
- 군사장비의 국내생산 촉진
- 미국 육, 해, 공군의 한국영토 및 주변 배치시 사전 협의
- 양국 외무, 국방장관 연석회의의 연례화

2.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미국과 필리핀의 공동방위체제가 미군의 즉각 개입을 전제한다는 관측이 있어 현지공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함.

한·미간의 구축함 2척 대여를 위한 각서교환, 1968.

| 68-24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0-88/3/1~99(99p)



1. 외무부는 1968.1월 국방부의 요청으로 1969.10월 미국으로부터 대여가 만료되는 해군함정 APD-82함의 대여기간 연장을 위한 협정안을 미측에 전달하고 1966.10월 우리측이 기요청한 DE-71 및 DE-72함의 대여기간 연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요청함.
2. 주한 미국대사관은 1968.4.22. 구축함 2척(DD-686 및 673)의 추가대여를 위한 협정체결을 외무부에 제안하였는바, 외무부는 협정안 검토 중 우리 해군이 동 함정 인수를 위해 미국에 이미 가 있고 4.26. 인수가 예정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미측이 제안한 협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함.
3. 동 협정안은 4.25. 대통령 재가, 4.26.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외무장관과 주한 미국대사 간 각서 교환 형태로 서명되고, 서명과 동시에 발효됨.
 - 1955.1.29. 한·미간 함정대여협정의 규정에 따라 대여
 - 대여기간은 인수일부터 5년

68-245

철도사업계획을 위한 한·IDA(국제부흥은행)간의 개발차관협정, 제2차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43/1/1~137(137p)

1. 외무부는 1968.1월 탄차 및 유조차 도입을 위한 국제부흥은행(IDA)과의 차관협정을 공포하는데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음.
 - 동 차관협정은 1967.10.31. 국무회의 의결, 12.18. 주미대사 서명을 거쳐 체결됨.
 - 차관 내용: 제2차 철도사업을 위한 총 1,100만달러의 차관
 - 탄차 600량 545.1만달러
 - 유조차 450량 476.5만달러 등
2. 동 협정은 1968.2.1. 관보게재로 공포됨.

한·ADB(아시아개발은행)간 경인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 68-24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0/5/1~124(124p)



1. 1968.9월 경제기획원은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 협정에 대한 공포 절차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1968.8월 국무회의 의결
 - 1968.9월 주필리핀대사와 ADB 총재 간에 서명
2. 외무부는 동 협정의 공포를 위해 68.10.7. 대통령 재가를 받음.
 - 1968.10.10. 관보에 게재, 공포

68-247



한·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 보증협정과 한·IFC(국제금융공사)간 협정 및 기타부속협정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조약1과

MF번호 J-50/6/1~334(334p)

1. 1968.2월 경제기획원은 외무부에 한국개발금융공사(KDFC)에 대한 AID, IBRD 차관 및 IFC 투자와 관련한 차관협정, 보증협정, 투자협정과 부대각서에 대한 비준 및 공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1967.11월 KDFC에 대한 IBRD 차관 및 IFC 투자에 관련 보증협정 및 원본회수협정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
 - 1967.12월 KDFC에 대한 AID 차관협정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
 - 1968.1.31. 주미국대사가 협정에 서명
2. 외무부는 1968.2.15. 상기 협정들의 공포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68.2.17. 공포

한·IDA(국제개발협회)간의 고속도로 타당성 및 기술조사를 위한 개발차관협정

| 68-24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0/7/1~70(70p)



1. 경제기획원은 1968.8월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제개발협회(IDA) 차관협정에 대한 비준 공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1968.7월 국무회의 의결 및 주미대사 서명
2. 1968.8월 외무부는 동 협정의 공포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얻음.
 - 1968.8.20. 관보 게재, 공포

68-249

한·미간의 제3차 AID 원자재 차관(Program Loan) 협정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0/10/1~92(92p)

1. 정부는 1968.2.24. 박충훈 경제기획원 장관과 헨리 콘스탄즈 주한 미국국제개발처(AID) 처장이 서명하고 국내절차를 거친 제3차 한미 AID 원자재 차관 협정을 3.20. 공포함.

- 원자재 차관은 1961년 한미 양국정부 간에 체결된 “경제원조 및 기술협력협정”에 근거

2. 차관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금액: 1,000만달러
- 목적: 공업, 농업, 육·해상 수송, 의료 등 분야의 기계류 및 부품 도입
- 조건
 -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0년, 연 2회 균등분할 상환
 - 금리는 거치기간 연 2%, 상환기간 연 2.5%

한·미(수출입은행)간의 인공위성 지구국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 68-25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0/8/1~274(274p)

1. 정부는 인공위성 지구국 건설을 위해 1968.1월 미국 수출입은행에 신청한 차관 도입 협정을 7.25. 체결하였으며 국회동의를 거쳐 9.2. 공포함. 차관의 내역 등은 아래와 같음.

● 금액: 368만달러

- 인공위성 지구국 건설용 기자재 도입을 위한 소요외자의 80% 상당

● 목적: 미국, 동남아 등과의 국제무선전화 회선 증가

● 조건

-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8년, 연 2회 균등분할 상환

- 금리는 연 6%

● 기타

- 당초 국가는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상환기간을 10년 등을 부과하였으나 미국 수출입은행의 거부로 무산

2. 또한 정부는 1968.11.7. 박충훈 경제기획원 장관과 헨리 콘스탄즈 주한 미국국제개발처(AID)처장이 서명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시설도입을 위한 아래 내역의 차관협정을 11.27. 공포함.

● 금액: 200만달러

● 목적: 과학기자재 도입

● 조건

-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0년, 연 2회 균등분할 상환

- 금리는 거치기간 연 2%, 상환기간 연 2.5%

68-251

한(체신부)·독(KFW)간의 통신망 확장을 위한 1967년 9월 14일자 재정차관협정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조약1과

MF번호 J-50/14/1~42(42p)

1. 1967.7월 체신부는 통신망 확장목적의 차관을 아래의 내역으로 독일에서 도입하기 위한 교섭을 외무부에 의뢰함.

- 금액: 3,760만마르크(940만달러)
- 상환기간: 20년(거치기간 3년 반 포함)
- 금리: 연 4%

2. 주독일대사관이 창구가 되어 이뤄진 교섭이 아래 내역으로 타결되어 9.14. 체신부 장관과 독일 재건은행(KFW) 대표가 서명한 다음, 소정의 절차를 거쳐 1968.3.20. 공포됨.

- 금액: 1,800만마르크(3년에 걸쳐 공여)
- 상환기간: 10년, 연 2회 균등분할 상환
- 금리: 연 6%
- 기타
 - 한국 금성사가 독일 지멘스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한국 정부와 독일 재건은행(KFW)이 뒷받침하는 형식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 68-25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담당관

MF번호 J-50/9/1~9(9p)



1. 1968.6월 미국 재무부는 주미국대사관에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 제9조에 따른 채무원본 2,056만달러에 대한 누적이자(기간: 1964.7월~1968.7월, 금액 746만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적립하도록 요청함.
2. 외무부는 이 사실을 재무부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재무부가 종래와 같이 채무탕감이 이루어지기 위한 외교교섭을 요청하여 외무부 본부가 이러한 사실을 주미국대사관에 전달함.

68-253

한(산업은행)·미간의 중기업 육성을 위한 AID 차관협정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0/11/1~123(123p)

1. 정부는 1968.6.26. 박충훈 경제기획원 장관과 콘스탄즈 주한 미국국제개발처(AID) 처장이 서명한 아래 내역의 중기업 육성목적 차관협정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7.15. 공포함.

- 금액: 1,500만달러
- 목적: 어업 분야 등에 종사하는 중기업 육성
- 조건
 -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0년, 연 2회 균등분할 상환
 - 금리는 거치기간 연 2%, 상환기간 연 2.5%

2. 위의 차관에 기초한 정부와 산업은행 간 전대조건, 산업은행의 실수요자에 대한 융자조건은 아래와 같음.

- 정부와 산업은행 간 전대조건
 -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12년, 금리 연 6%
- 산업은행의 실수요자에 대한 융자조건
 -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12년, 금리 연 10%

한·네덜란드간의 항공사진 측량사업에 관한 협정

| 68-254 |



생산연도 1965-68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J-51/4/1~350(350p)

1. 1965.9월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네덜란드를 방문한 경제사절단(단장: 박동묘)이 네덜란드 정부와 채택한 공동성명은 네덜란드가 한국의 항공사진 측량사업 지원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2. 이에 따라 1965.12월 한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전문가는 건설부와 논의하여 촬영대상으로 5개 지역을 선정함.
 - 서울-인천 종합개발지역, 아산-서산만 서해안 간척사업지역, 목포-영산강 일대 종합개발지역 등 3만 평방 킬로 메타
3. 1966.8월 전예용 건설부장관과 R. H. 반 굴리크 주한 네덜란드대사(일본상주)는 네덜란드가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를 공여하며 비용은 양측이 분담한다는 내용의 합의록을 작성하고 교환하여 사업이 시작됨.
4. 그러나 작업이 80%정도 진척된 시점에서 협정체결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결여한 사실이 드러나 재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결국 국회비준 절차를 피하는 방법으로 교환공문(구상서)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양국정부가 협의를 진행시킴.

68-255

한·태국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V.1 체결교섭철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조약과/통상1과

MF번호 J-51/2/1~214(214p)

1. 정부는 1966.2월 박정희 대통령의 태국 방문 당시 합의에 따라 항공협정 체결교섭을 추진키로 하고 3월에 초안을 태국에 제시함.
2. 이어 같은 해 7월 서울에서 열린 차관급 회담에서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함.
 - 한국의 김태동 교통부 차관, 태국의 수린 비세스쿨 교통부 차관이 교섭
 - 주요내용
 - 한국의 항공사는 서울-타이페이-홍콩-방콕 노선 취항
 - 태국의 항공사는 방콕-홍콩-타이페이-서울 노선 취항
 - 이원지점에 관해서는 협정에 명시하지 않고 추후 합의

한·태국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V.2 체결 및 공포철

| 68-256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조약과/통상1과

MF번호 J-51/3/1~315(315p)



1. 1966.7.21. 서울에서 가서명된 한·태국 항공협정의 정식서명을 위한 문구 수정작업이 국내부처의 의견수렴과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로 이루어짐.
2. 1967.7.8. 서울에서 최규하 외무장관과 유아트 뢰스리트 주한 태국대사가 정식서명하고 1968.3.5. 각서를 교환하여 협정이 발효됨.
3. 이후 양국정부가 지정한 항공사는 각각 주3회 운항을 신청함.

68-257

한·스웨덴간의 항공협정 교섭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J-51/5/1~64(64p)

1. 1967.5월 스웨덴 정부는 한국과의 항공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초안을 제시함.
2. 1968.5월 정부는 한국의 항공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점을 고려하여 자유화의 폭을 제한하고, 남북분단 상황과 관련하여 공산국가를 경유하거나 공산국가 상공을 비행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분명히 하기 위해 중계지점과 이원지점을 협정에 명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스웨덴에 제시함.
 - 자유화 제한은 지정 항공사를 단수로 하고, 항공기의 수용능력과 운항회수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 등을 포함

한·일간의 회수사증발급협정 체결교섭

| 68-25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J-51/6/1~103(103p)



1. 1968.2월 외무부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거론된 수출업계의 진정을 고려하여 일본과 회수사증 발급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이 제3국과 체결한 협정내용을 조사하고 각 부처의 입장도 수렴함.
2. 이미 문안을 작성 중이던 한·미간의 회수사증발급협정 초안을 기준으로 검토한 의견에서 경제부처는 발급대상 확대를 요청한 반면, 중앙정보부는 상호주의가 적용됨을 들어 위해요소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남발을 방지할 필요성을 제기함.

68-259

한·미간의 비이민사증발급 및 수수료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생산연도 1962-68

생 산 과 조약과/북미1과

MF번호 J-51/7/1~370(370p)

1. 1963.8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외무부에 대해 비이민 여권에 대한 사증발급사무 상호 완화를 제의함.
 - 내부 검토에서 외화획득 등 장점과 외국인 입국 및 관리사무상의 애로 사항이 제시되었으며, 단수여권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게 혜택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도 지적됨.
2. 주멕시코대사는 튜아나 지방 거주 교민의 미국 입국 시 일본, 멕시코 등 국가시민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 점을 시정해 줄 것을 1967.4월 건의하였으며, 주미대사는 근본적인 시정은 한·미 양국 사증협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양국간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을 체결할 것을 건의함.
3. 외무부는 내부검토 및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비이민 사증에 대해 사증발급 수수료 무료, 호혜주의에 의해 일정기간(대부분 4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을 골자로하는 우리측 안을 1967.7월 미측에 제시하였고 1967.10월 미측이 최종 수락함.
 - 협의과정에서 미측은 연예, 운동경기, 통과사증에 대해 복수사증발급, 유효기간 장기화 등을 수정제의 하여 우리측이 이를 수락함.
4. 미측은 1967.11월 상용(B-1 및 2)에 대해 무기한 사증발급을 비공식 제의 하였으나, 추후 재론키로 하였고, 주유엔대사의 제기에 의해 우리측이 제안한 주유엔대표부 직원에 대한 4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에 대해서는 미측이 동의함.
5. 1968.2.2. 국무회의 의결, 2.8. 대통령재가를 거쳐 3.28. 외무장관과 주한 미국대사간의 1인칭 정식공한의 교환형태로 서명되었으며, 4.27. 관보 게재 발효됨.
 - 최종검토 과정에서 법제처는 동 협정이 조약은 아니므로 국회 동의는 불요하나 출입국 관리법 규정과 상이한 내용이 있어 국내법의 보완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6. 시행과정에서 미측은 상용사증 입국 미국인이 국내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연 2회 정도 출국후 재입국하고 있으나 호혜주의에 의거 체류기간을 4년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 바, 법무부는 체류 기간과 사증유효기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증협정의 호혜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함.

한·스위스간의 주재외교관 및 영사관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68-260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조약과/구주과

MF번호 J-51/8/1~126(126p)



1. 스위스 외무성은 1966.7월 양국간 상주 외교관 및 영사에 대해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스위스대사관에 제의함.
2. 외무부는 국제회의의 참가 등 우리 외교관의 빈번한 스위스 출입을 고려하여 외교관 여권 소지자 전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교섭할 것을 1966.12월 주스위스대사에게 지시함.
 - 스위스측은 일반 외교관의 출입국은 스위스 외무성 권한 밖의 사항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3. 주스위스대사는 스위스측 주장대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외무부는 상주외교관에만 적용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우리측 입장을 스위스 측에 다시 교섭할 것을 1967.2월 주스위스대사에게 지시하였는바, 스위스 외무성은 공한을 통해 수락 불가 입장을 확인함.
4. 1967.10월 외무부는 우선 상주외교관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스위스 외무성과 교섭을 재개함.
 - 1968년초 협의과정에서 협정의 형식에 대해 스위스측은 스위스 당국과 한국 정부간 협정을 희망하였으나 우리측 주장대로 양국 당국 간 협정으로 수정하기로 합의 되었으며, 서명은 주스위스대사와 스위스 외무성 간의 각서교환의 형태로 하기로 함.
5. 최종 국내절차로서 외무부는 당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검토하였으나, 스위스의 주한 상주 공관이 없어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교관에만 해당되는 사항임을 이유로 법무부 양해 하에 양국 정부간 합의사항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68.7.4. 양국 간 각서교환으로 합의가 성립됨.

한·아르헨티나간의 문화협정



생산연도 1965-68
 생산과 조약과/홍보문화과
 MF번호 J-52/1/1~178(178p)

1.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65.2월 주재국 문화사법장관 예방 시 양국 간 문화협정 체결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측 협정안을 제시함.
2. 1966.2월 아르헨티나 외무성은 외상의 3월 방한을 계기로 문화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우리측에 협정안을 제시함.
3. 아르헨티나 정부는 정식 서명을 희망하였으나 우리측이 국내절차 완료에 시간이 부족하므로 가조인 할 것을 제의하였고 결국 아르헨티나 외상 방한 기간 중인 1966.3.17. 양국 외무장관 간에 가조인 됨.
4. 외무부는 1966.7월 외무장관의 남미 순방이 계획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협정에 정식서명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순방계획 취소로 인해 1966.7월~8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1966.11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1967.8.8. 주아르헨티나대사와 아르헨티나 외상 간에 서명됨.
5. 주요 내용
 - 양국간 문화기관의 상호교환 설치와 고등교육기관에 타국 문화역사 과정 상호 설치
 - 학자, 예술인 등의 상호교환, 출판, 방송의 교환보급
 - 학위, 자격증, 학위증명서 상호 인정
 - 상호 여행 장려
 - 공동위원회 설치

한·콜롬비아간의 문화협정

| 68-262 |



생산연도 1965-68
 생 산 과 조약과/공보문화과
 MF번호 J-52/2/1~174(174p)

1. 주브라질대사는 브라질 주재 콜롬비아 대사가 1965.3월 우리측이 제안한 양국간 문화협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내 왔다고 1965.11월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자구수정 외에 콜롬비아측 안을 수락한다고 1966.2월 통보하였으며 1966.5월 양국 간에 협정문이 합의됨.
3. 외무부는 1966.7월 외무장관의 남미순방 시 협정서명을 추진하였으나 순방연기로 인해 주브라질 대사가 서명키로 하였으며, 1966.7월~8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1967.7월 대통령 재가를 거쳐 67.7.27. 보고타에서 주브라질대사와 콜롬비아 외상 간에 서명됨.
4. 주요 내용
 - 양국간 문화기관의 상호교환 설치와 고등교육기관에 타국 문화역사 과정 상호 설치
 - 학자, 예술인 등의 상호교환, 출판, 방송의 교환보급
 - 학위, 자격증, 학위증명서 상호 인정
 - 상호 여행 장려

한·불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협정. 전2권 V.1 교섭철



생산연도 1959-68

생산과 조약1과/공보문화과/서구1과

MF번호 J-52/3/1~274(274p)

1. 정일권 주프랑스대사는 1959.6월 경무대 앞 보고를 통해 주재국 내 일본의 문화진흥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프랑스 양국 간에 문화교류 협정이 긴요하다고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는 문화협정 체결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주프랑스대사는 주재국 외무성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관계부처 검토에 수개월이 걸린다고 보고함.
2. 외무부가 1960.1월 협정초안을 작성하여, 부내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으며, 우리정부의 최종안이 62.10월 확정됨.
 - 우리측 안은 전형적인 양국간 문화협정을 토대로한 일반적 내용이었으며, 1962.11월 프랑스측에 제시됨.
3. 프랑스 정부는 1963.11월에 이르러서야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바, 프랑스측 안은 일반적인 양자 문화협정과는 다른 기술협력 등 여러 가지 특수한 내용을 포함함.
 - 일방적인 프랑스 문화 주입을 위한 기술협력
 - 불어 보급을 위한 기술자에 대한 일부경비 한국부담
 - 기술자 및 가족에 대한 국제기구 직원에 준하는 특혜 제공
4. 프랑스측 수정안에 대한 1964년 중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됨.
 - 문화협정과 기술협정을 분리하는 방안
 - 제3국과의 문화협정에 대한 나쁜 선례 제공
 - 일방적 불어주입교육 조항 삭제
 - 급여는 외환사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수익금·급여의 모국 송금, 물품의 무세 통관에 대해서는 일반적 협정의 범위내로 한정 필요
5. 1964~65년 초 양국 간 협의과정에서 양측의 수정제안이 수차례 교환되었으며 1965.6월 프랑스측이 우리측 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협정안이 일단 합의됨.
 - 일방적인 불어주입교육 인상을 주는 조항은 상호적인 표현으로 수정
 - 급여는 건별로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
 - 수익금·급여의 모국송금은 국내법 규정에 따라 허용
 - 문화기술협력에 소요될 자재의 수입은 UNESCO 규정에 준하여 상호면세
 - 개인의 용품, 가구 및 차량에 대한 면세 규정을 호혜적으로 수정

한·불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협정. 전2권 V.2 체결철

| 68-264 |



생산연도 1959-68

생 산 과 조약1과/공보문화과/서구1과

MF번호 J-52/4/1~437(437p)

1. 한·프랑스 간에 1965.5월 합의된 협정문을 토대로 1965.7월~8월간 협정문에 대한 양국합동 독회를 거쳐 협정문을 정리하고 1965.10월 이를 프랑스측에 최종 통보함.

- 협정문 본문 외에 물품의 면세 수입, 개인장비 및 차량의 면세 수입, 급여에 대한 면세, 파견 강사 및 가족을 위한 숙소확보 협조 등 4개의 부속서한을 교환키로 함.

2. 외무부는 1965.12월 협정안을 국무회의에 회부 의결하고, 체결과 공포에 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으며, 12.28. 외무부장관과 주한 프랑스대사가 협정문에 서명함.

3. 국회동의 문제와 관련, 외무부 방교국은 동 협정상 재정 부담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행정부의 단독권한 내의 일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불필요 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제처는 기술협정 부분은 재정적 부담을 전제로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4. 외무부는 1966.3월 국회에 협정의 비준 동의를 요청하였는바, 국회 외무위 심의과정에서 협정 1조3항의(“특히” 대한민국 정부는...프랑스어교수를 보장하는데 노력한다)라는 표현이 한국정부에 일방적 의무를 지우는 불평등 조항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어 국회심의회가 보류됨.

- 외무부는 “특히” 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의 각급 학교에서 불어교육을 보장하는데 노력한다는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1966.8월 외무부는 재협상을 전제로 비준동의안 철회를 검토하였으나 결국 이를 보류함.

5. 비준동의안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1967.7월 자동폐기 되었으나, 1968.4월 임시국회에 재상정되어 비준동의 되었으며, 5.8. 발효되고 5.10. 관보게재 공포 됨.

6. 주요 내용

- 양국간 언어, 문학, 문명의 교수를 촉진 및 훈련과정 조직과 강사 파견
- 문화기관 설치, 상호학위인정 검토, 장학금 지급
- 기술 및 행정요원 파견(기타 재정적 부담은 양국 공동 부담 원칙)
- 자료교환, 강연회 개최 등 기술보급 활동
- 본 협정목적에 위한 체류 및 통행의 편의
- 문화활동 수입의 송금자유, 문화협력 자재 구입에 대한 면세조치
- 협정시행을 위한 혼성위원회 구성 등

68-265

한·말레이시아간의 문화협정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조약과/공보문화과
 MF번호 J-44/12/1~32(32p)

1.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1965.9월 서명하고 12월 발효시킨 문화협정은 아래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후 교환각서로 정하도록 규정함.
 - 학위, 자격, 면허(의사 등), 학력증명의 상호인정 범위
 - 협정이 규정한 비상업적 물품수입에 대한 면세적용 범위
2. 이에 따라 외무부는 유관부처(문교부, 보사부, 공보부, 재무부, 과학기술처, 건설부)의 입장을 수렴한 각서초안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말레이시아 정부와 교섭하도록 현지공관에 지시함.
 - 문화교류를 위한 면세수입 대상물품
 -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간행물, 영화필름, 방송프로, 미술작품 등을 영사확인으로 면세
 - 학위, 자격 등의 상호인정
 - 상대국가에서 인정된 교수, 교사, 의사, 치과 의사, 약제사, 간호원, 기술자 등의 학위, 수료증, 증명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국의 것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

한·WHO(세계보건기구)간의 뇌염연구소사 사업계획

| 68-26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1/9/1~11(11p)



1. 세계보건기구는 1961.6월 한국정부와 체결한 기본협정에 따라 뇌염연구소사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협정(Agreement)”을 체결할 것을 정부에 제의함.
 - 대상사업, 비용, 기자재, 연구조사인력, 한국정부의 지원 등
2. 이를 검토한 외무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제의가 기본협정의 시행에 관한 것이며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협정” 대신, 사업계획서(Plan of Operation)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68-267

스칸디나비아 원조자금 중 미사용액의 사용에 관한 한·덴마크·노르웨이 및 스웨덴간의 협정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1/1/1~249(249p)

1.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지원에 관해 스칸디나비아 3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1956년 및 1964년에 체결한 협정이 1968.9월 말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미사용분 원조가 100만달러에 달해 그 처리를 위한 협정이 필요하게 됨.
2. 이를 위해 1968.4월 스칸디나비아 대표단이 방한하여 김도창 보사부 차관을 비롯한 보사부, 국립중앙의료원, 외무부 관계자들과 교섭하고 아래와 같은 협정내용에 합의하여 양국정부 승인절차를 거쳐 9.30. 각서를 교환하고 10.1. 발효됨.
 - 미사용분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시설, 장비, 약품을 위한 지원과 충청남도 지역 2개 병원의 사업을 위한 지원에 사용
 - 노르웨이 정부의 국제개발처가 창구가 되어 고문을 한국에 파견하고 한국 측과 미사용분 사용추이를 점검

한·아프리카제국(감비아·다호메이·니제르)간의 의료협력약정

| 68-26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동과/의전과

MF번호 J-52/8/1~9(9p)



1. 외무부는 1967년의 제22차 유엔총회에서 중국(구 중공)대표권 문제에 관해서는 대만(구 자유중국)을 지지한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가 한국문제에 관해서는 기권하거나 불참한데 따라 북한의 외교공세에 대처하고 유엔에서의 지지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의료지원을 추진키로 함.
2. 이에 따라 앞서 이뤄진 실무조사단 방문 시 의료협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감비아, 베냉(구 다호메이), 니제르에 각기 외과의 1명과 내과의 1명을 3년 기한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얻음.
 - 추가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카메룬, 콩고(킨샤사)에도 파견한다는 방침

68-269

한·통일아랍공화국간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공보문화과/조약과

MF번호 J-52/6/1~156(156p)

1. 1967.11월 통일아랍공화국(UAR)을 방문한 친선사절단(단장: 이성가 주터키대사)은 UAR 당국자들과 문화협정체결을 추진하며 한국이 먼저 초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함.
2. 외무부는 부내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주카이로 총영사관을 경유하여 UAR 정부에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주재국 정부와 교섭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총영사관은 북한과 단독으로 수교한 주재국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협정을 조기에 체결할 것을 건의함.
3. 외무부도 조기체결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문교부, 공보부, 법제처) 의견을 수렴한 내용으로 UAR 정부와 문안에 합의한 다음,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진행을 가속시켰으며, 정부가 전권특사로 파견한 박준규 국회 외무위원장은 1968.8.21. UAR 외무차관과 협정에 서명함.
 - 협정은 문화기관 설치, 학생과 교수의 교환방문, 장학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
4. 협정체결에 즈음하여 국내언론은 중립국과 아랍세계를 향한 외교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높이 평가함.

한·이디오피아간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 68-27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J-52/7/1~20(20p)



1. 외무부는 1968.5.18.~21. 예정된 하일레 셀라시에 에티오피아 대통령 방한 중에 문화협정체결 원칙에 합의한다는 목표로 부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함.
2. 양국정상은 회담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문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조기에 외교경로를 통해 교섭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3. 외무부는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을 경유하여 협정초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진행함.

68-271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한·미간의 협정. 전2권 V.1 교섭철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2/10/1~241(241p)

1. 1966.11월 미국 국무부가 한국-IAEA-미국 간의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초안을 제시하여 외무부는 관계부처의견 수렴을 거쳐 이에 동의하고 IAEA 사무국에도 이 사실을 통고하였음.
 - 협정내용은 핵물질, 장비, 시설의 관리와 관련한 통고, 등록, 감사,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
2. 그러나 1967.5월 IAEA 사무국이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다시 미국이 이에 대한 재수정의견을 제시하여 외무부가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최종안에 관한 국내절차를 진행시켰음.
 - IAEA 수정안은 재가공 공장의 안전조치에 관한 1967년 IAEA 이사회 결의를 반영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한·미간의 협정. 전2권 V.2 체결철

| 68-272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2/11/1~168(168p)



1. 1956.2.3. 체결된 한·미간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은 핵물질,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을 국제원자력기구가 담당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1966.9월 한·미·국제원자력기구 3자 간에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고,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1967.9월 한·미 양측이 3자 간 협정문 교섭을 거쳐 공동 상정한 협정안을 승인함.
2. 동 협정은 1967.12월 국무회의 의결 및 서명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68.1.5. 주오스트리아 대사, 미국 상주대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 공포됨.
3.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정체결의 의의
 - 안전조치의 적용 책임을 국제원자력기구가 부담함으로써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을 확인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
 - 우리나라의 원자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
 - 주요 내용
 - 목록에 등재된 물질·장비·시설은 등재기간 동안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기구는 군사적 목적 사용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적용할 의무를 짐.
 - 목록표는 양국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물질·장비·시설로 구성되며 양국은 신규 이전 물질을 기구에 통보
 - 목록표 상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는 안전조치 규정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기구는 비핵물질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에 대해 각 정부와 보조약정을 체결
 - 각국은 협정의무 수행 중 발생 비용을 부담

68-273

한·일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조약1과

MF번호 J-52/9/1~78(78p)

1. 한·일 양국은 1968.8월 개최된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상표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정부는 1968.11월 제2차 한·일 합동무역위원회에서 일본측의 성의, 특히 보세 가공 원자재 면세 문제에 대한 성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일측이 원하는 상표권 보호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함.
2. 한·일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은 1968.11.19.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11.20.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3. 주일본대사와 일본 외무차관 간 각서교환을 통해 발효됨.
3.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국 국민은 상호 타국의 영역내에서 상표권의 향유에 관하여 타국 국민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음.
 - 6개월 사전 서면 통보로 협정 종료

한(농림부)·월(농무성)간 [농업기술단파견] 연장협약

| 68-274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J-53/1/1~42(42p)



1. 한·월남 양국은 1967.10월 개최된 양국 농무차관 회의에서 68년에 이미 파월된 18명의 농수산 기술자에 추가로 17명의 기술자를 파견하기로 합의함.
2. 추가 기술자 파견과 관련한 신규 협정체결 등 월남 측의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68.1월 월남 측의 입장을 문의하였으며, 주월남대사는 당시 월남사태로 인해 실무진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월남측의 우리 기술자 증파와 관련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함.
3. 1968.4.10. 주월남대사관 이택근 공사와 Tow-That-Trinh 월남 농무장관은 기술자 17명 추가 (총 35명) 파견을 골자로 하는 1968년도 주월남 한국 농업기술단 협약서(기존협약서의 개정형태)에 서명함.

한·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조약과/통상1과
 MF번호 J-53/4/1~166(166p)

1. 1968.1월 주말레이시아대사는 한국이 연간 120만달러의 싱가포르 산 공산품을 수입한다는 조건으로 양국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1월 중 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하여 싱가포르 재무성측이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싱가포르측은 200만달러 수입은 확약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관측됨.
2. 우리정부는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1968.2월 윤석헌 주필리핀대사를 싱가포르에 파견하였는바, 윤 대사는 3.1.~16.간 싱가포르 재무차관과 수차례에 걸쳐 회담을 계속하면서 1968년도 싱 공산품 150만달러 구매를 제안하는 등 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호간에 수정안을 교환하였으나 싱가포르측의 경직된 태도로 타결되지 못함. 최종 단계에서의 양측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우리측
 - 1차년도-150만달러 더하기 68년과 66년 수출실적 차이의 1/2(이행불능액수의 50%는 기타산품 대체)
 - 2차년도-년도말에 협의 결정, 제1차년도 수준에 따르도록 노력
 - 싱측
 - 1차년도-150만달러 더하기 68년과 66년 수출실적 차이의 2/3(이행불능액의 10%만 기타산품으로 대체)
 - 2~3차년도-2년전 실적의 1/2 더하기 당해년과 66년 수출실적과의 차이의 2/3
 - 4차년도 이후-3차년도 말에 review 하되 싱 공산품 구매에 실질적 변화가 없어야 함.
3. 윤 대사는 우리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상 불가능한 보장을 요구(2차년도 이후 사항에 대한 보장)하는 등 싱가포르측의 협상태도가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무역협정 체결 교섭을 현 시점에서 방치하고 사실상 무기한 중지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4. 1968.6월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강양욱 부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을 앞두고 외무부는 무역협정의 타결을 위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에 측면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각국이 싱가포르 정권의 특성, 영향력 제약을 우려함에 따라 특별한 성과는 거두지 못함.
5. 1968.8월 백두진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무역사절단의 싱가포르 방문 시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통상대표부의 상호 설치에 지지를 표명하였고, 재무성 무역국 부국장도 대표부의 지위와 성격에 대해 정부 내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1968.12월 주말레이시아대사가 싱가포르 외무성 차관과의 통상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의 시 동 차관은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므로 추후 방침을 알려 주겠다고 언급함.

한·태국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교섭

| 68-27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3/5/1~79(79p)



1. 외무부는 1967.9월 정일권 국무총리의 태국 방문시 체결기로 합의한 태국과의 우호통상항해조약에 대해 1968.3월 검토에 착수함.
 - 이에 대해 교통부는 당시 협상진행 중인 일본과의 해운자유원칙 문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협상을 보류해 줄 것을 희망함.
2. 외무부는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을 모델로 한 조약초안을 작성, 1968.11월 관계부처에 의견을 구한바, 대부분의 부처가 초안에 동의함.

68-277

BWT(주월남 한국 보세창고) 운영절차에 관한 한·월남간의 협정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J-45/7/1~102(102p)

1. 1967.3월 개최된 한·월남 경제장관회담에서 양국은 양국간 교역 원활화를 위해 월남 내 한국 상품 보세창고를 조속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주월남대사를 통해 운영절차를 교섭함.
 - KOTRA가 보세창고 운영을 위해 정부 대행
 - 보세창고 반입물품은 사전에 일괄 승인
 - 관세는 보세창고 반출시 부과
 - KOTRA가 송장의 수취인 및 발행인이 됨.
2. 동 보세창고는 1967.6월 개관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월남측이 경제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사전일괄 승인제를 시행하지 않고 개별 승인요구로 물품반입이 계속 지연 되었는바, 우리정부는 주월남 대사를 통해 보세창고 운영절차에 관한 합의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교섭함.
3. 주월남대사는 조속한 타결이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상당기간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1967.10.4. 월남 상역성장관과 주월남 한국 보세창고 운영절차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는데, 외무부는 본건이 정부간 협정에 해당하는 조약사항으로서 국내 사전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협정문 발효조항에 “본국정부의 승인에 따라...”라는 구절을 추가하도록 지시함.

BWT(주월남 한국 보세창고) 운영절차에 관한 한·월남간의 협정 개정

| 68-27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J-53/6/1~7(7p)



1968.10월 주월남대사는 군납품에 대하여도 월남 내 한국 보세창고 운영절차에 관한 협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개정안을 주재국 정부에 제안하였다고 보고함.

68-279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



생산연도 1965-68
 생 산 과 조약1과
 MF번호 J-53/7/1~48(48p)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65.6월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7조에 의거 미국 공인회계사가 한국에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외무부에 문의함.
 - 이에 대해 재무부는 우리정부는 미국회계사의 자격을 인정하여 개업을 인가할 수 없으며 다만 미국인이 한국 내에서 미국인 회계사에게 미국과 관련된 한국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특별 위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2. 외무부는 1966.6월~1967.6월간 재무부가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8조 1항과 관련 의견을 문의한데 대하여, 외무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함.
 - 자격문제와 관련 제8조 1항 상단에 규정된 회계사는 한·미 양국의 법령에서 요구한 일정한 자격을 얻은 한·미 양 국민의 유자격 회계사를 의미
 - 제8조 후단에 규정된 업무는 미국국적 기업체 자체 내의 업무이며 미국법이 요구하는 사항 만을 지칭
 - 우리나라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회계사를 채용 또는 감사 위촉하는 문제는 국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허용
3. 1968.9월 문교부는 외국대학의 분교를 한국 내에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해 왔으며 외무부는 주요 선진국 공관에 외국의 사례 조사를 지시함.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시행상의 문제점

| 68-280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J-53/8/1~149(149p)

외무부는 1967.11월 효력만료 되는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에 대해 시행상의 문제점을 관계 부처로부터 조사한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시됨.

- 미국인은 한국 정부가 인가하지 않은 외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있어 국내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침해
- 미국 세입법상 한국과 동일한 면세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없어 집행상 애로가 많음.
- 미국측이 미국 보험회사에게 내국민 대우를 해줄 것을 강력 요청
- 우리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에 대해 특별한 제한 없이 단수 및 복수 재입국을 허가해 주고 있으나 미국은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만 재입국을 허가
- AID 차관사업, 기타 외국차관에 의한 기술용역사업이 외국(주로 미국) 기술진에 의해 시행

68-281

한·아일랜드간의 무역협정 체결검토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J-53/10/1~38(38p)

1. 외무부는 한국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만큼, 무역협정을 체결할 상대국은 GATT 비가입국을 원칙으로 하되 가입국과의 체결은 GATT 협정이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 한한다는 방침을 정함.
2. 외무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GATT에 가입한 아일랜드와의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일랜드의 무역정책, 관세제도에 관한 조사에 착수함.
 - 아일랜드를 검임하는 주영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

한·뉴질랜드간의 무역협정

| 68-282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45/5/1~180(180p)



1. 외무부는 1965년 중 여러 경로로 무역협정 체결을 제의했던 뉴질랜드 정부가 1966.4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일본상주)을 경유하여 초안을 제시함에 따라 부내의견을 수렴하고 교섭을 진행시킴.
2. 1966.5월 방한한 스콧트 주한 뉴질랜드대사와 전상진 외무부 경제차관보가 문안의 대강에 의견이 일치함에 따라 외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주일본대사관을 창구로 교섭하여 문안에 합의함.
3. 1966.6월 웰튼 뉴질랜드 관세장관이 아스팍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기회에 가서명하였으며, 양국 국내절차를 거친 다음, 1967.1월 스콧트 주한대사가 방한하여 정일권 국무총리 겸 외무장관과 정식서명하고 협정서를 교환함.
 - 무역협정은 최혜국 대우, 무차별대우 원칙 등을 규정

68-283

한·오스트리아간의 면직물 쿼타협정체결 검토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통상진흥과

MF번호 J-53/9/1~14(14p)

1. 외무부는 수출입 쿼터를 정한 오스트리아와의 연차 면직물 협정이 1967.9월말 만료됨에 따라 1967.10월~1968.9월간 유효한 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내 관련업계, 오스트리아 수입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함.
2. 상공부는 새 협정이 오스트리아와의 면직물 수출입추세를 반영하며 기본쿼터의 10%내에서 증감을 조정하고 미소진분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외무부에 전함.

한·이디오피아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 68-28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J-53/12/1~71(71p)

1. 외무부는 1968.5.18.~21. 하일레 셀라시에 에티오피아 황제의 방한을 앞두고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부내 의견을 수렴함.
2. 이 문제를 논의한 양국정상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조속히 외교경로를 통해 교섭키로 하고 그런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켜 발표함.
3. 이에 따라 준비에 나선 외무부는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 아래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재국이 제3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현황
 - 주재국이 한국에 수출하기를 희망하는 품목
 - 주재국의 무역관리와 관세제도 현황
4. 외무부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협정초안을 작성하고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 보내 에티오피아 정부에 제시하도록 지시함.
 - 협정 문안은 GATT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최혜국대우 조항을 원용한 내용

68-285

한·독간의 기술협력협정 시행약정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3/13/1~45(45p)

1. 외무부는 1967.5월 주한 독일대사관이 독일 정부의 기술원조 계획에 따라 실시될 시범 낙농장 건설에 관한 약정 체결을 제의하며 초안을 제시하여 검토에 착수함.

● 약정은 1966.9월 체결하고 다음해 2월 발효된 기술협력협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초안은 아래 내용을 포함

- 독일 전문가 한국파견 및 활동
- 한국 전문가 독일 파견과 훈련
- 시설, 가축 구입을 위한 자금공여
- 한국 정부에 희망하는 지원내용

2. 약정은 최규하 외무부 장관과 F. 페링 주한 독일대사의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됨.

조약법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제1차. Vienna, 1968.3.26.-5.24.

| 68-286 |

생산연도 1963-68

생 산 과 조약과/국제법규과

MF번호 J-60/11/1~355(355p)



1. 외무부는 1968.3~5월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조약법에 관한 제1차 유엔국제법위원회 회의에 유양수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본부와 대사관 직원 4명을 참석시킴.
 - 회의목적은 해양법에 관한 협약,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국제법의 법전화
 - 법전화의 내용은 조약체결과 발효, 적용, 해석, 개정, 무효, 종료 등에 관한 원칙, 규칙, 관행
2. 회의에 앞서 미국과 독일(서독) 정부는 주한 대사관을 통해 아래와 같이 회의에 임하는 자국의 입장을 외무부에 알리면서 이해와 협조를 기대함.
 - 미국입장은 유엔국제법위원회가 작성한 초안 가운데 분쟁해결절차 조문과 관련하여 강제적 해결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수정안을 포함
 - 독일입장은 일반적인 다자조약에 모든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의 초안이 독일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동독의 가입을 가능케 한다며 반대하면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
 - 외무부는 한국도 북한의 존재와 관련하여 독일과 같은 입장이라서 동조하기로 결정
3. 회의는 도합 83회 회합하여 75개 조문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분쟁해결절차 관련 조문(제62조) 등 컨센서스를 얻지 못한 부분은 차기(1969년) 회의로 넘기기로 함.
4. 회의가 끝난 다음의 검토에서 외무부는 조약에 관한 분쟁을 획일적으로 국제재판에 의해 해결할 목적으로 강제적 해결절차를 확립하려는 시도는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나 미국이 이와 다른 의견임을 고려하여 반대가 아닌, 기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함.

68-287

ILO 한국가입 추진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J-54/3/1~61(61p)

1. 1968.1월 노동청은 노동경제 면에서 국제유대 강화를 위하여 1968년 중에 필히 ILO 가입을 추진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가입에 필요한 득표 전망이 어둡고 공산측의 북한 동시가입 책동이 예상되는 상황 하에서는 가입 신청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1968.1월 보건사회부 장관과 노동청에 통보함.
3. 1968.6.5.~25.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 총회에 박동진 주제네바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옵서버 대표단이 참가하였는바,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인권유린, 소녀 및 부녀자 직업훈련, 기술협력, 무능노동자 고용 등에 관한 5개 결의안 채택
 - 유사 농업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관련 권고안 채택 등
 - 쿠바는 북한의 ILO 동시 가입을 주장
 - 일부 공산국은 월남 및 중동문제를 언급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 1967년 Geneva의정서 한국가입, 1968.6.18. 전2권 V.1 1967.

| 68-288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국제경제과/조약과

MF번호 J-54/5/1~253(253p)



1964.5.4.~1967.6.30.간 진행된 케네디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는 우리나라도 참가하였고 동 협상결과 채택된 최종의정서(Final Act)에 6.30. 서명함. 동 최종의정서에 의하면, 협상 참가국들은 8개의 부속의정서와 협정에 대해 협상참가국들이 국내 절차에 따라 수락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우리정부는 우선 관세양허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1967년)와 반덤핑 협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락에 필요한 검토를 진행함.

1. 케네디라운드 협상 전반

- GATT 주관 6번째 무역협상으로서 규모와 협상 방식면에서 획기적임.
- 공산품 관세 인하에서 탈피하여 11개 주요선진국은 모든 공산품에서 관세 50% 일괄인하, 농산물 및 비관세 장벽도 협상에 포함하여 포괄적인 무역장벽 완화를 도모함.
- 반덤핑, 화학, 곡물, 면직물 등 분야에서 별도 협정 또는 각서를 채택함.
- 우리나라는 수입비중이 작은 18개 품목을 양허하고 6만여 종이 관세양허 혜택을 받음.
- 우리나라는 공산품 수출비중이 60% 이상이고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1981년에는 80% 수준이 될 것이므로 선진국의 공산품 양허는 수출증대에 도움이 됨.

2. 반덤핑 협정

- 공산품 위주인 우리 수출품목은 염가로 수출되므로 선진국의 반덤핑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나, 본 협정의 취지가 덤핑 방지 보다는 반덤핑 조치를 엄격히 하자는데 있으므로 우리의 수출 증대에 기여함.
- 염가 수출은 우리 수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양되어야 하므로 협정가입이 크게 불리한 것은 아님.

3. 제네바 의정서(1967년)

- 우리의 관세양허 품목(18개)은 수입에 대한 영향과 관세수입 면에서 엄격히 선정한 것이며 관세 인하의 폭도 경미하여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은 적음.
- 주요 선진국들의 양허 품목은 우리나라의 이들 국가들에 대한 수출의 40.8%(66년 기준)에 달함.
- 주요 선진국들에게 24개 품목에 대해 특정요구(Specific Request)에 따른 양허를 확보하여 수출액 4,300만달러(66년 기준)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양허를 확보함.
- 선진국은 후진국에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고 관세인하의 조기 시행에도 합의함.

68-289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 1967년 Geneva의정서 한국가입, 1968.6.18. 전2권 V.2 1968.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국제경제과/조약과

MF번호 J-54/6/1~212(212p)

1. 정부내 검토결과 케네디라운드 무역협상 결과 중 관세인하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1967년)와 반덤핑 협정을 수락하기로 함에 따라 수락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이행함.
 - 케네디라운드 최종의정서에 따르면 제네바 의정서(1967년)은 1968.6.30.까지 수락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덤핑 협정은 수락 시한이 없음.
 - 제네바 의정서를 1967.12.1.까지 수락한 국가에게는 의정서가 1968.1.1. 발효되고 동일자로 관세인하가 개시되며, 그 이후 수락한 국가에게는 수락일자에 발효되고 1968.7.1. 관세 인하가 개시됨.
2. 1968.2월 외무부의 의견문의를 대해 재무부 및 상공부는 수락에 동의하였으며 법제처는 반덤핑 협정은 우리정부가 이미 가입한 GATT 6조의 세부절차를 정한 협정이며 헌법 규정상 조약도 아니므로 국회 동의 필요가 없으나 제네바 의정서는 관세양허 품목을 추가하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이에 따라, 외무부는 우선적으로 제네바 의정서에 대해서만 국내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3.19. 국무회의 의결, 5.2. 국회동의, 5.9. 서명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를 거쳐 6.18. 주제네바대사가 의정서에 서명하고 동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하였으며 7.1. 관세인하가 개시됨.

관세협력에 관한 3개협약 한국 가입

| 68-290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조약과/국제경제과
 MF번호 J-55/1/1~450(450p)

1. 1967.6월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브뤼셀 소재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에 대한 조기 가입을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무역 자유화 및 다양화와 무역량 증대에 대비
 - 세관 행정의 간소화와 국제적 통일화 도모
 - 세관 기술의 향상
2. 1967.7월 외무부는 재무부 및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세협력이사회 설립 협약과 동 기구의 기본 협약 중 관세 평가 협약 및 품목 분류 협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함.
 - 법제처는 3개의 협약이 국가의 재정 부담을 주거나 입법사항 또는 조약에 해당하는 협정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관세협력이사회(CCC) 설립에 관한 협약, 관세목적에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 관세율표상 품목의 분류를 위한 품목 분류에 관한 협약 등 3개 협약은 1967.10월 국무회의 의결, 1968.4월 국회 동의를 거쳐, 1968.7.2. 주벨기에대사가 벨기에 외무성에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1968.10.2.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함.

68-291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협약개정, 제1-2차



생산연도 1964-68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1과
 MF번호 J-48/4/1~142(142p)

1.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 협약 중 개정 조항에 대해, 1965.3월 국무회의 의결, 1965.4.29. 외무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앞 수락서 기탁 등의 절차를 거쳐 수락함.
 - 1964.9월 IMCO 제2차 특별총회에서 채택
 - 이사회 회원국을 13국에서 16국으로 증가
 - 지역대표제 도입

2. 1965.9월 IMCO 제4차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IMCO 협약 중 개정안을 채택하였는바, 정부는 1966.1월 국무회의 의결, 1967.1.5. 외무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앞 수락서 기탁 등의 절차를 거쳐 수락함.
 - 해사안전위원회 위원국을 14국에서 16국으로 증가
 - 10개국의 최대량 선박소유국 중에서 8개 위원국 선출
 - 그중 4개 위원국에 대한 지역대표제 도입

대륙붕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검토

| 68-292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48/5/1~150(150p)

1. 과학기술처는 1967.7월 외무부에 대해 인접국간 대륙붕 경계선,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 등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륙붕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함.
2. 경제과학심의회는 1967.7월 대륙붕협약 가입 및 대륙붕 개발 촉진 방안에 관한 정책안건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우리국토 면적의 2배(약 50만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륙붕의 개발이 시급
 - 1945년 트루만선언 등 다수국이 대륙붕 관할권 선언
 - 대륙붕협약은 대륙붕의 배타적 관할권 인정
 - 대륙붕 개발위원회 구성
 - 외무부는 협약가입 적극 추진 및 대륙붕 경계선 획정에 관한 문제 연구
3. 기획조정실은 1967.7월 경제과학심의회 의 대륙붕협약 가입 결정에 대한 이행상황을 외무부에 문의한바, 외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함.
 - 과학기술처 주최 관계부처 예비회의에서 협약가입 결정을 내렸으나 동 회의에 외무부는 불참
4. 1967.8월 외무부는 대륙붕 협약 가입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함.
 - 대륙붕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 우리의 대륙붕 선언에서 주장한 평화선내 영해 외적 대륙붕 상부수역에 미치는 권리와 수심 200미터에 이르는 대륙붕 이외의 대륙붕에 미치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 초래
 - 한·일 어업협정으로 이미 일부 완화된 평화선이 크게 무너져 국방상으로도 지금과 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대륙붕 협약은 공해자유의 원칙을 유보 없이 수락토록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우리나라의 영해 범위가 결정되어야 함.
 - 중국(구 공공)과 일본이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가입한다고 해도 경계선 획정이나 권리 주장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없고 소련과는 복잡한 관계를 초래
 - 우리의 대륙붕 개발문제는 법이론 상으로도 협약가입과 무관하게 추진 가능
5. 일본이 1968.6월 대륙붕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일본대사에게 가입목적 등을 파악토록 지시함.

1960년 해상에 있어서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5/3/1~368(368p)

1. 주영국대사는 1966.11월 IMCO 임시총회에서 채택된 “1960년도 해상인명안전 협약 중 개정안”에 대한 수락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1968.4월 개정안 수락을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으나 국회동의를 요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심의가 유보됨.
3. 외무부는 1968.10월 국무회의 심의를 재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동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함.
 - 개정안에 언급된 선박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예산조치 불요
 -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
 - 모(母)조약이 국회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헌법 56조 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됨.
4. 국무회의는 1968.11월 개정안 수락안을 의결함.
 - 단, 의결주문 중 “국회동의 불요”를 삭제
5. 1968.11월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1960년 국제협약의 제2장 개정”에 대한 수락과 공포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해사법에 의한 외교회의, 제12차 2회기. Brussels, 1968.2.19.-23.

| 68-29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55/4/1~80(80p)



정부는 1968.2월 벨기에에서 개최된 제12차 해사법 외교회의의 2회기에 정순근 주벨기에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 동 회의는 1967.5월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미결로 남은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협약 수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
- 주요 협의내용
 - 1924년 합의된 선주의 책임한계를 시대에 맞게 조정
 - 손실파손된 화물의 보상금액 기준
 - 선하증권에 대한 협약 적용범위 등

68-295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규약 한국가입, 1968.7.22.



생산연도 1963-68

생산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55/7/1~217(217p)

1. 외무부는 1965.2월 문교부의 요청에 의해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에 가입하기로 원칙결정하고 조약과에서 국내절차를 검토함.
 - 문화재 보존보수를 위한 전문가 협력 확보
 - 기술훈련 연수생 파견
 - 석굴암 보수 기술자 확보
2. 문교부는 1966.7월 및 1967.4월 외무부에 대해 가입절차 완료를 독촉하였으나, 1967.5월 외무부는 동 기구에의 가입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므로 국회동의를 요하며 국회소집일인 9월초 까지 국내절차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함.
3. 1968.1월 외무부는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동 연구센터 규약 가입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1968.2월 의결됨.
 - 분담금은 US\$361.20(UNESCO 분담금의 1%)
4. 국회는 1968.6월 동 연구센터 가입안을 의결하였으며 1968.7.22. 주프랑스대사가 UNESCO 사무차장에게 가입선언을 통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가입함.
5. 1969.4월 동 연구센터 총회에서 논의된 규약 개정안에 대해 외무부 조약과는 개정안이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함.

전시(戰時)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및 의정서

| 68-29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6/4/1~13(13p)



1. 독일(서독) 정부는 1967.8월 전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동 협약을 베를린 지역에도 적용한다고 선언함.
2. 이에 대해 1968.12월 소련,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구 백러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UNESCO에 항의하였으며, 영국, 미국, 독일이 반박함.

68-297

1967년 국제곡물협정 중의 소맥무역협약 한국가입, 1968.7.1.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6/5/1~355(355p)

1. 외무부는 1967.7월~8월간 34개 회원국과 구주공동체 대표가 참석하여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소맥 협정 교섭회의에 이규성 주이탈리아대사관 공사 등을 대표로 참석시켰으며 회의결과는 아래와 같음.

- 국제곡물협정 채택
- 소맥무역협약 채택
 - 내용
 - 현행협정(1962~67년) 대비 소맥가격 상승
 - 수입국에 대한 백분율(가격폭등시의 사전결정 최고가격 적용) 규정 신설
 - 발효 절차
 - 1967.10~11월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
 - 1968.6.15.까지 미국정부에 비준서 기탁
 - 1968.7.1. 발효

2. 외무부는 소맥협약 가입여부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입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동조 주미국대사에게 전권 위임장을 발급하여 서명케 하였으며,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

- 소맥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협약에 규정된 최고가격으로 일정량 구매 가능
- 식량원조 수혜국 지위 유지 가능
- 국제소맥시장에 관한 정보수집 가능

김동희 육군 탈영병 망명사건

| 68-29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과

MF번호 K-7/6/1~10(10p)



1. 1965.7월 부산지역 군부대를 탈영한 김동희 이병은 8월 일본밀항을 시도하다 쓰시마에서 체포되어 복역하던 중, 1967.1월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반자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일본사회당과 조총련은 북한으로의 망명을 허용하라는 캠페인을 벌임.
2. 1967.3월 소련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와 일본적십자사에 김이병을 석방하고 제3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청함. 이어 7월 후쿠오카 지방법원이 강제퇴거명령 효력의 일시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다른 밀항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촉구하였으나 1968.1월 일본 정부는 소련 선박 편으로 출국하는 것을 허용함.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아닌, 소련행을 원해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했다고 설명
3.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정식으로 항의함.

68-299

김진수 한국계미군 주일쿠바대사관 망명사건



생산연도 1967-68
 생산과 동북아주과
 MF번호 K-6/1/1~32(32p)

1. 1967.4.3. 미군 소속으로 월남에 파견되었다가 휴가차 일본에 들린 한국계 병사 김진수(미국명 케네스 그릭스) 일병이 도쿄의 쿠바대사관을 찾아 망명을 신청함.
 - 김진수는 미국인 가정에 양자로 입적하였으나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여권 소지
2. 일본 외무성은 위의 사실을 한국대사관에 알리면서 김진수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함.
 - 외무성측은 외국공관에 정치적 망명 비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미국 정부도 한국국적자라도 현역미군인 만큼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협의할 사항으로 보며 김진수를 미군 당국에 인도할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
3. 사건은 그동안 대외비로 다루어졌으나 4.14. 일본 언론이 쿠바대사관은 일본 정부의 인도요청을 거부하고 쿠바행 허용을 요구하였으며 일본 정부도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하였으며 일본 정부도 기자회견과 국회답변을 통해 이 사실과 일본 정부의 방침을 확인함.
4. 1968.1.11. 일본 언론은 김진수가 쿠바대사관에서 “도망”쳤으며 니가타 항에서 북송선에 승선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함.
 - 일본 외무성은 쿠바대사관으로부터 보도와 같은 취지(“도망”)의 연락이 있었다고 설명
 - 쿠바대사관도 김진수가 “대사관을 떠난 사실”을 공식 확인

일본 창가학회의 국내활동 문제

| 68-300 |



생산연도 1964-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L-10/2/1~44(44p)

1. 1963~68년 일본의 일련정종(一蓮正宗)계통 창가학회의 한국내 포교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함.
 - 1963.10월 창가학회가 발간하는 세이교(聖敎)신문은 한국에서의 포교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지부설치를 위해 간부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여 정부가 관심을 기울였음.
 - 1966.11월 창가학회의 정치기구 격인 공명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창가학회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문의하여 대사관이 외무부에 이를 보고하고 회신을 요청함.
 - 한국의 대법원이 창가학회의 활동을 제한한 정부의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는 제소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실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입장을 확인코자한 것
 - 외무부의 문의에 대해 문교부는 창가학회를 국수주의적, 배타적 집단으로 간주하고 반국가적, 반민족적 단체로 규정하여 포교를 막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회신
 - 1968.7월 공명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재일한국인 여성이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사건을 두고 한국 언론이 창가학회가 포교자금을 밀반입하려던 것이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항의하여 대사관이 외무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함.
 - 외무부의 문의에 대해 법무부는 창가학회와 무관한 사건임이 확인되었다고 회신
2. 공명당 소속 의원들은 주일본대사관과의 접촉과정에서 당 차원에서 한국과 교류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임.

| 68-301 |

독·한 협회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L-6/3/1~30(30p)

1. 한국과 독일(서독) 간에는 1965년과 1966년에 독·한 의원협회와 한·독 의원협회가 각각 의원 친선단체로 설립되었고, 1961년과 1966년에 한·독 협회와 독·한 협회가 각각 민간친선단체로 설립됨.
2. 1967년 소위 “동백림 간첩단 사건” 발생으로 양국관계가 경직되면서 독·한 협회의 기능도 중단 되었으나 1968.12월 구성된 새 회장단(회장은 레오 바그너 하원의원)은 다시 적극적으로 활동 하려는 의지를 보임.

한·칠레 문화협회

| 68-30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문화교류과

MF번호 L-6/2/1~41(41p)



1. 1968년 초 주칠레대사관은 그해 8.15행사에 즈음한 한국문화 소개행사와 한·칠레 문화협회 창립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5월 문화협회 발기인회의를 가짐.
2. 8.14. 개최된 문화협회 창립총회에는 각계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영화 감상회도 실시함.
 - 수도 산티아고 소재 현지 초등학교를 “한국학교”로 개칭하는 결연식도 거행

68-303

한·불 이중과세 해석문제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1/1/1~19(19p)

1. 1968.9월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한국에 출장하여 4개월간 활동한 프랑스인 기술자에게 프랑스의 소속사가 지급한 소득에 한국의 조세당국이 과세한 것이 양국이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공한을 외무부에 보내옴.
2. 외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데 대해 국세청은 소득이 한국에서의 근로로 발생한 것일 경우 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을 알려와 외무부는 공한으로 이 내용을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통보함.

한·일간의 서해안 개발협조

| 68-304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1/2/1~29(29p)

1. 1967.10~11월 한국측의 요청에 따라 방한한 일본 수산청 소속 전문가들이 서해안에서의 양식 사업 타당성을 조사함.
 - 아산, 서산지역 간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백합, 새우, 기타 어종이 대상
2. 이어 1968.6월 한국산업기술개발본부가 일본의 아시아 개발조사회와 합동으로 서해안 종합개발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정부도 경제원조 사업으로 일본에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의 검토에 나섬.

68-305

한·중 경제각료회담, 제4차. Taipei, 1968.7.27.-30. 전2권 V.1 사전준비철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경제협력과/재무부
MF번호 M-11/5/1~372(372p)

1. 제4차 한·중(대만) 경제각료회담 개최에 앞선 1968.2월 경제기획원은 회담의제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수렴함.
 - 외무, 재무, 농림, 상공, 건설, 교통부와 과학기술처 해당
2. 의제별로 수렴된 정부 입장은 아래와 같음.
 - 지역개발협력
 - 제3차 회담에서 합의된 사업 촉진
 - 미국계 회사 Allied Chemicals와 교섭중인 에틸렌 글리콜 등 석유화학제품의 교환 생산, 상호수출 사업 등
 - 통상교역 확대와 개선
 - 무역 역조시정을 위한 수출확대
 - 엽연초, 홍삼, 한약재 등
 - 선박, 화차
 - 농촌경제 개발경험 및 과학기술 개발경험 교환
 - 양송이, 채소, 속성재배, 낙농, 농가부업 분야 등
 - 과학기술요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와 중국 해당기관 간의 교류
 - 기타
 - 군수산업분야 협력 강화
 - 국제기구에서의 협조 강화
 - 해외시장 공동개발 촉진
3. 한편, 대통령 비서실은 각료회담 기회에 중국이 IBRD 차관으로 실시하는 철도차량 국제입찰에서 한국기업이 낙찰되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함.

한·중 경제각료회담, 제4차, Taipei, 1968.7.27.-30. 전2권 V.2 본회의철

| 68-30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경제협력과/재무부

MF번호 M-11/6/1~175(175p)

1. 제4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이 1968.7.27.부터 3일간 타이페이에서 개최됨. 한국에서는 박충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대만에서는 리퀴팅 경제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2. 양측 대표단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합의의사록으로 채택함.
 - 국제분업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DMT- 카프로락담 방식으로 석유화학과 기계공업 분야에서 폭넓게 협력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
 - 한국에서 대만으로의 수출목적으로 에틸렌 글리콜리 등 4개 품목, 대만에서 한국으로의 수출목적으로 에틸렌 디클로라이드 등 4개 품목 검토
 - 교역확대를 위해 상대국 수출상품에 배려
 - 한국산 대두, 맥주, 오징어, 엽연초, 한약재, 사과, 해태
 - 대만산 폴리에틸렌, 가성소다, 알루미늄판, 파인애플
 - 해외시장 공동개척을 위해 민간협의체 구성
 - 합판, 철강재, 섬유류, 비료 분야
 - 과학기술, 농업기술 요원 교류확대
 - 대만의 농업, 어업, 조림 전문가, 한국의 양잠, 수리 전문가 상호파견
 - 한국의 벚꽃필프공장 건설 지원 위해 대만기술자 파견
 - 기타
 - IBRD, IMF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조
 - 원양어업을 위한 상호지원(기지 제공 등)
 - 대만 철도차량 입찰에 있어서의 한국기업 배려

68-307

한·중 합동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서울, 1968.5.10.-11.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재무부

MF번호 M-11/7/1~43(43p)

1968.5월 한·대만(구 자유중국) 합동경제협력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됨. 수석대표로 홍재선 한국측 회장과 쿠첸푸 대만측 회장(대만 시멘트그룹 회장)이 참석하였는바, 양측이 제기한 의제와 내용은 아래와 같음(회의 결과는 공동성명으로 채택).

1. 한국

- 해외진출상의 협력
 - 선진국과의 교섭, 다자교섭
- 교역확대
 - 한국의 무역역조 시정, 농산물 수입쿼터 확대
- 기술협력
 - 과학기술인력, 농업전문가 교류 확대
- 지역경제협력
 - 동남아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협조

2. 대만

- 시장정보 교환과 과당경쟁 방지
 - 수출업자 간의 협의 메커니즘 구성
- 업종별 협조체제 구축
 - 방직, 시멘트, 합판, 제지, 철강 부문 등으로 구분
- 산업시찰 권장
- 기타
 - 미국산 원면 위탁가공 공동교섭, 미국의 면직물 수입쿼터 확대 위한 협조
 - 동남아 각국의 합판산업 개발에 대한 공동대책 강구

한·일 합동 [민간] 경제간담회, 제3차. 동경, 1968.2.13.-17.

| 68-30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1/8/1~62(62p)



1. 1968.2월 한국경제인연합회는 1968.2.13.~17.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3회 한·일 합동 민간 경제 간담회 참가와 관련한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2. 동 간담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 후 2.17. 공동성명을 채택함.
 - 경제협력 분과회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선박차관 제공
 - 일본의 한국 내 노동집약 분야 및 수출산업 분야 합작투자 촉진
 - 무역 분과회
 - 일본의 한국 김 수입
 - 수입자유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종가세 5% 인하
 - 무연탄, 토상흑연의 쿼타 철폐
 - 가공무역 촉진, 섬유 외 신분야(경공업 등) 개척
 - 일본 상품의 수입 수속 간소화 및 유통구조 개선
 - 한국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제도 존속 여부
 - 산업기술 분과회
 - 한국 기술연수생 훈련
 - 산업협력 촉진
 - 해외 공동투자

68-309

동남아 경제개발각료회의, 제3차. Singapore, 1968.4.9.-11.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1/9/1~125(125p)

1. 제3차 동남아 경제개발각료회의가 1968.4.9.~11. 싱가포르에서 개최됨. 동 회의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필리핀, 태국, 월남, 일본, 싱가포르 등의 회원국과 캄보디아, 호주, 스리랑카(구 세일론), 인도, 뉴질랜드, 파키스탄 등이 옵서버로 참가하였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어업개발 센터를 태국과 싱가포르에 설치키로 합의
 - 지역 운수·통신망 긴밀화를 위해 ADB에 지역교통 조사를 요청
 - ADB의 동남아 농업개발 기금 설치 추진 경위 설명
 - 1967.5월 도쿄에서 향만개발 세미나 개최
 - 일본은 각료회의의 상설위원회 설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실패
 - 필리핀은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관광개발 기술원조, 단체여행 편의확대, 입국수속 간소화 등을 제의
 - 태국은 산업개발을 위한 지역 내 협력 강화 제의
2. 동 회의 직후, 우리나라의 동남아 개발각료회의 옵서버 참가 문제가 외무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
 - 우리가 주도하는 ASPAC 약체화 우려
 - 한·일 쌍무 경험과의 상치 또는 중복문제
 - 일본의 반대 입장에 비추어 우리의 가입가능성이 희박한 점
 - 월남 개발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이해 상치문제 등
3. 1968.4.22. 개최된 경제외교조정위원회에서 외무부는 옵서버 참가는 각 부처간에 예의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가 주최한 ASPAC과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IECOK(대한국 국제경제협의회) 순회사절단 구주 순방, 1968.6.6.-[27.]

| 68-31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이중등과

MF번호 M-11/10/1~35(35p)



양윤세 경제기획원 투자진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국국제경제협의회(IECOK) 순회사절단은 1968.6월 유럽 6개국을 순방한바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스웨덴

- IECOK 옵서버 참가 가능성 시사
- 주요은행 대표단과 차관 및 직접 합작투자에 대해 협의
 - 10년 상환조건의 일반상업차관 가능성 확인
- 한국 경제 발전상 및 차관, 직접투자 수용 조건 설명
 - 스카니아파비스 사는 한국에 트럭 공장 건설 희망

2. 오스트리아

- 통상투자증진을 위한 민간사절단 교환 원칙 합의
- 고급기술자 파견 및 직업학교설립 등 기술협력 가능성 타진

3. 이탈리아

- 이탈리아 관계인사 접촉 결과, 대한 차관 공여한도는 109만달러로 추정
- 내각 불성립으로 불확실하나 차관한도 증액 및 차관조건 개선 문제는 호의적 고려 예상
- 이탈리아 민간업계의 투자의욕은 강하며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석유화학 분야에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사업제안서를 우리측에 보내도록 요청

68-311

한국의 대레소토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68
 생산과 아중동과
 MF번호 M-11/12/1~131(131p)

1. Jonathan 레소토 수상은 1966.12월 방한 시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짐차 기증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정부는 1967.12월 레소토에 짐차 2대를 기증하기로 결정함.
2. 외무부는 주뉴욕총영사관을 통해 동 차량을 구입, 운송하면서 화물의 수취인을 레소토 정부로 하기로 하였으나, 주케냐대사는 1968.2월 Jonathan 수상이 서한을 통해 기증차량을 집권당에서 사용코자하는 것이므로 화물수취인을 Jonathan 수상으로 해주도록 요청하였다고 보고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건의함.
3. 외무부는 주뉴욕총영사에게 화물수취인의 명의를 Jonathan 수상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가 다시 레소토 정부로 재변경 하였으며, 1968.4월 레소토로 선적됨.
4. 1968.5월 외무부는 주케냐대사를 짐차 기증식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주케냐대사는 기증일과 관련한 레소토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레소토측이 화물수취인이 Jonathan 수상으로 되어있는지 여부를 문의해 오며 따라 수취인 명의 변경을 본부에 강력 건의함.
5. 외무부는 선하증권의 수취인 변경이 어렵다는 주뉴욕총영사의 보고를 받고 주케냐대사에게 공한으로 수취인의 명의를 Jonathan 수상이며 기증품의 사용은 “at your disposal”이라고 전달하라고 지시함.
6. 이와 관련, 주케냐대사는 선하증권상 수취인이 Jonathan 수상으로 되어 있다는 공한을 발송하였는바, 외무부는 이는 본부지시와 어긋나는 것이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함. 이에 대해 주케냐대사는 수취인이 Jonathan 수상이라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으며 비록 실제 선하증권의 수취인이 다르더라도 수상이 이해할 것이며 현지공관에서 납득시킬 수 있다고 회신함.
7. 주케냐대사는 1968.6.18. 레소토 수상실에서 Jonathan 수상과 기증식을 가졌으며 기증식은 아무 문제없이 무사히 완료되고 외교적 성과도 거두었다고 보고함.
 - 주케냐대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레소토 정부에 짐차 2대를 기증했다고 하였으나 레소토 일간지는 Jonathan 수상에게 기증했다고 보도함.

한국의 대루안다 원조(무상원조)

| 68-31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M-11/13/1~28(28p)



1. 1968.3월 주우간다대사는 르완다 정부가 경제원조 없이는 신임장을 접수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함에 따라 외무부는 1968.4월 아프리카 순방 중이던 아중동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조사단의 여정을 연장하여 르완다에 파견함.
2. 의료조사단은 르완다 외무차관 및 보건장관과 신임장 제정 문제를 협의한바, 르완다측은 대통령의 출장 및 콩고와의 외교단절 등으로 신임장 접수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조사단은 르완다측에 우리의 의료단 파견은 정식국교 수립 후에 가능하므로 우리 대사의 신임장 접수를 촉구함.

68-313

스웨덴의 선박차관 도입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1/16/1~22(22p)

1. 대한해운공사는 수입 광물자원 수송을 위한 스웨덴 선박 도입을 위해 차관교섭을 벌였으나 스웨덴 정부가 구미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여 난항하자 외무부에 외교적 지원을 요청함.
 - 해운공사는 선박 담보 또는 한국외환은행 담보로의 대체를 희망
2. 외무부는 주스웨덴대사관에 위의 사실을 알리고 주재국 당국과 교섭하도록 지시함.

AID 차관 도입

| 68-314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2/1/1~217(217p)

1. 정부가 1968년 중에 도입이나 갱신을 목표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시킨 국제개발협력처(AID) 차관 사업은 아래와 같음.

- 잉여물자 재생수리 사업 계약 갱신
 - 1967.12월 만료되는 계약의 갱신을 희망하였으나 미국이 불응
- 원자력 발전 제1호기 건설 차관 도입
 - 약 1억달러 규모로서 미국은 AID 차관사업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
-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도입 차관 갱신
 - 사용 잔액 계속 사용문제로서 미국은 별개 사업을 제시하면 가능하다는 입장
- 중소기업 육성위한 차관 도입
 - 약 1,500만달러 규모
- 판유리 공장 확장 위한 차관 도입
 - 약 170만달러 규모
- 암모니아 공장 건설 위한 차관 도입
 - 약 1,000만달러 규모
- 신규 농업차관 도입
 - 약 3,500만달러 규모
- 과학기술연구소(KIST) 기술용역사업 2건 계약 수정
 - 미국의 Nathan Associates 및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와의 계약

2. 정부는 1969년 AID 차관 도입 추진대상으로 공업, 농업, 수산, 수송 분야 등의 9개 사업을 선정함.

68-315

대오스트리아 총주수력발전소 건설차관 도입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2/2/1~59(59p)

1. 1966.11월 오스트리아 정부는 자국기업(Elin-Union)이 총주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차관 1,000만달러를 공여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함.
2. 정부는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을 통해 차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측은 상환기간 15년, 금리 연 6%, 한국은행 지불보증 등의 조건을 제시함.
3. 1967.11월 정부는 일단 차관 도입을 추진키로 결정했으나 전체 소요외자 2,000만달러 가운데 절반을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도입하려던 계획이 난항함에 따라 발전소 착공시기를 1972년 이후로 미루고 오스트리아 차관 도입교섭도 보류함.

프랑스의 상업차관 도입

| 68-316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2/3/1~35(35p)

1. 정부는 1969년 중 프랑스로부터 아래와 같은 차관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현지공관을 창구로 프랑스 정부와 교섭함.

● 중소기업육성 목적

- 정부는 금액 2,000만달러, 1년 거치 8년 상환, 금리 연 5~5.5%, 차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사업 당 용자한도 각각 20만달러와 5~20만달러 등을 희망

● 선박도입 목적

- 한국의 미양유조선(주)이 유조선 2척, 화물선 4척을 도입하기 위한 차관 2,000만달러를 상업은행이 지불 보증하는 조건을 제시

● 화력발전소 건설 목적

- 한국전력이 계획한 호남화전 건설을 위해 6,800만달러 도입을 추진
- 프랑스측이 제시한 차관조건을 수정을 요구
 - 15%의 Down Payment 취소, 상환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2.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차관의 경우, 정부는 프랑스측이 수정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벨기에로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키로 함.

| 68-317 |

대이탈리아·프랑스 어업차관 도입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2/4/1~27(27p)

1. 1966.7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합동차관단이 방한하여 정부당국과 어업차관 공여문제를 논의함.
2. 1968.9월 정부는 어업차관 차주인 한국수산개발공사의 실적부진으로 차관상환이 어려워지자 주한 이탈리아, 프랑스 대사관을 창구로 양국 정부와 차관조건 수정문제를 협의함.
 - 상환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장기간 금리는 본래의 5.5%로 할 것을 제안

대독 영남화전 제2기 건설차관 도입

| 68-318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경제기획원

MF번호 M-12/6/1~281(281p)

1. 1966.5월 독일 수도 본에서 개최된 제2차 한·독 경제장관 회의에서 양측은 아래 3개 사업을 위한 차관을 독일이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함.
 - 한국전력이 사업주체인 영남화전 건설
 - 나일론 공장 건설
 - 카트로 락담 공장 건설
2. 1966.6월 정부는 주독일대사관을 경유하여 독일 정부에 영남화전 2,200만달러, 나일론 공장 208만달러, 카트로 락담 공장 1,180만달러의 재정차관 또는 장기상업차관을 신청함.
3. 독일 정부는 한국 측의 희망도 감안하여 영남화전을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하고 재정차관 7,000만 마르크, 장기상업차관 1,800만마르크를 3년 거치 20년 상환, 금리 연 3% 수준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함.
 -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뤼브케 독일대통령도 영남화전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
4. 정부는 1967.3월로 예정된 뤼브케 대통령 방한에 맞춘 기공식이 가능하도록 교섭을 조기에 타결키로 함.

68-319

대이탈리아 여수화전 건설차관 도입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2/7/1~31(31p)

1. 1967.3월 정부는 한국전력이 이탈리아의 GI그룹과 추진한 200메가와트 규모 여수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차관도입 계획을 승인하고, 국내전력 사정을 고려하여 이탈리아 정부의 차관공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교섭할 것을 현지 공관에 지시함.
2. 이탈리아 정부가 여수화전을 포함하여 한국이 요청한 3개 차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도록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 여수화전이 최우선이라고 통보함.
3. 이탈리아 정부는 1967.12월 여수화전 건설을 위한 차관을 승인함.
 - 미화 1,200만달러, 금리 6%, 거치 1년 후 10년 상환 조건

대일 대한조선공사 차관 도입

| 68-32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2/10/1~35(35p)



1. 1968.2월 정부는 1966.7월 대한조선공사가 일본의 미츠이물산과 합의한 선박 건조 및 수리를 위한 미화 220만달러 차관 도입계획을 승인함.
2. 외무부는 이를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여 차관 도입 절차를 진행시킴.

| 68-321 |

대일 어업협력 및 선박도입 자금 차관 도입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경제기획원

MF번호 M-12/8/1~41(41p)

1. 1968.2월 정부는 한일 어업협력 자금 미화 3,000만달러 중 미사용분 1,410만달러로 인천조선(주) 등 8개 기업의 어선과 기자재 도입 및 건조 사업을 지원키로 함.
2. 정부는 일본에 파견한 경제사절단을 통해 일본 정부와의 교섭을 진행시킴.

일본의 상업차관 도입

| 68-322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9/15/1~106(106p)



1. 1966.12월 정부는 한양전구(주)가 수출목적의 장식용 및 자동차용 전구공장 건설을 위해 신청한 일본 미츠이 물산으로부터의 미화 53만달러 차관도입 계획을 승인함.
2. 또한, 1967.2월에는 삼미공업(주)이 위생도기 공장건설을 위해 신청한 일본 야시마 무역(주)으로부터의 미화 330만달러 차관도입 계획을 승인함.
3. 정부는 위의 사실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여 차관도입 절차를 진행시킴.

대일 상업차관 도입



생산연도	1965-68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1/5~5/5(fiche)/1~306(306p)

1. 신진자동차공업 현금차관

- 1966.2월 재무부는 신진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가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 판매 주식회사와 체결한 250만 달러의 민간 상업차관에 대해 승인함.
 - 소형자동차의 국산화를 위한 생산시설 확장 및 운영자금
 - 이자 년 5.75%, 대외지불 수단에 의한 이자 및 원금 송금, 차관기간 35개월
- 일본 정부는 1966.4월 동 차관이 한·일간 기 합의된 “상업상의 민간 신용 제공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거한 “3억달러 이상”에 포함되며, 정부의 지불 보증과 채무 불이행 시 보증금을 대외지불 수단에 의한 송금 보장 등을 요구함.
- 이에 대해 1966.5월 외무부는 동 차관이 상환기간 3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3억달러 이상” 상업상 민간 신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경제기획원의 방침(1966.1월)에 배치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경제기획원에 요청하였는바, 경제기획원은 동 건은 국내 교통사정 완화를 위해 예외조치라고 외무부에 회신함.
 - 일본 대장성은 1966.6월 동 상업차관을 허가함.
- 1966.12월 경제기획원은 신진자동차 공업 주식회사가 일본 도요다 자동차 판매회사와 체결한 종합자동차 공장 건설을 위한 1천만달러 자본재 도입계약 및 기술도입 계약을 인가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하고 수출허가서 발급을 일본 정부와 교섭할 것을 요청함.
 - 종합자동차 제조 공장을 위한 5백만달러, 부품도입을 위한 2백만달러, 계열화 부품공장을 위한 3백만 달러 등 1천만달러(3년 거치 7년 상환, 이자 년 5.75%)
 - 1971년도에 14,400대 생산, 국산화는 소형차량 1969년도, 대중형은 71년도에 97% 달성
- 경제기획원은 상환 총원리금을 1천 255만달러로 확정, 선적전 도입 자본재에 대한 상공부 장관의 승인 등을 골자로 하는 계약변경을 조건으로 1968년 동 계약을 인가함.

2. 연안수송용 유조선 도입차관

- 1966.12월 경제기획원은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일본의 오오쿠라 상사로부터 연안수송용 유조선 도입을 위한 자본재 도입계약을 인가하였으므로 일본 측의 수출허가서 발급을 교섭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30만달러 규모의 유조선 건조 도입(상환기간 5년, 년 이자 5.75%)

3. 불도저 도입차관

- 1965.8월 조달청은 수해복구 사업용으로 우리나라 대성상사 등이 일본의 미츠비시 상사 등으로부터 200대(300만달러 규모)의 개간용 불도저를 긴급 도입하기로 하였으므로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우리 정부는 일측 요청에 따라 동 차관이 “3억달러 이상”의 범위에 포함된 것임을 확인함.

대독일 인력진출

| 68-32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경제기획원

MF번호 M-12/12/1~41(41p)

1. 경제기획원은 1966.5월 개최되는 제2차 한·독경제각료회의와 관련, 간호원 파견 문제에 대하여 하기 사항을 1966.4월 보건사회부에 문의함.
 - 현재 민간 베이스로 파독되는 간호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정부간 협정 체결 필요성
 - 파독 간호원 현황 및 추가 파독 가능성
 - 파독 항공료 부담 문제 등
2. 1966.6월 주독일대사는 인력파견 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독일의 석탄초과 생산으로 인한 독 정부의 광부수 축소 관련 통계조사가 끝나야 우리의 광부 재파견 필요성 확인 가능
 - 파독 광부 제1진 250명의 귀국관련, 독일 내 취업 희망자는 개별심사 승인
 - 앞으로 독일 탄광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독일 정부는 적극 협조 예정
 - 독일 내 간호원 부족현상으로 인해 간호원 증파를 환영하며 국가간 기본협정 체결도 환영
3. 1966.6월 주독일대사는 제7진 광부 파독과 관련 다음과 같이 보고함.
 - 130명을 6주내 고용
 - 제8진 130명 고용에 합의
 - 제7진에 대해 건강검진 재실시, 기생충 무보유 보장
4. 1966.9월 주독일대사는 간호원 파독과 관련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간호원 파견 협정체결 관련 업무는 한국 해외개발공사·독일 병원협회에서 전담
 - 병원계통 잡역부 파견에 대해 병원협회와 원칙 합의하였으나 최종적 가능성은 추후 통보
 - 남자 간호원 취업 가능

68-325

의료단 아프리카 파견



생산연도 1967-68
 생산과 아프리카과
 MF번호 M-12/13/1~43(43p)

1. 1967.5월 주케냐대사는 말라위 신임장 제정 후 동국 근무 한국인 의사에게 국산 의약품 및 의료 기기를 기증할 것을 건의함.
 - 1967.10월 보건사회부는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기증 의약품 및 기기 목록을 송부하였으나 외무부는 물량 확대를 요청하였고, 1967.12월 보건사회부는 새로운 기증목록을 보내옴.
2. 1968.1월 외무부는 동 기증품을 말라위로 보내기에는 주케냐대사의 신임장 제정 후 시일이 너무 많이 지연되어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우리 의료진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우간다에 기증(우간다 보건성을 경유 우리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기증)하기로 결정함.

한·일 어업협력: 한국의 북양어업진출에 대한 일본의 대응

| 68-326 |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M-12/15/1~219(219p)



1. 일본 정부의 외국어선 일본영해 어로 및 기항 제한 조치

- 1966.12월 일본 수산청 관계관은 일본 영해 내의 외국어선의 어로행위와 어획물의 양육, 매매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농림성령을 제정, 공포함.
 - 일본 수산청은 관련 법령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시급성을 이유로 성령 제정으로 변경
- 1967.2월 수산청장의 일본 수산청장 면담 시 일측은 상기 성령의 입법(외국인 어업규제법) 가능성을 시사함.
- 1967.3월 및 1967.5월 주일본대사는 일 수산청장과 농림대신을 면담하고,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양국간 어업협정에 따른 한국의 기존어업실적과 권익을 손상하고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입법 철회를 요구함.
 - 일측은 외국인 어업규제법이 소련의 어로 및 기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령시행에 있어 우리 어선의 기항에 지장을 초래치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
- 1967.7월 동 법안은 일 중의원을 통과하여 입법화 됨.
 - 외국인인 일본 수역에서 어업 금지
 - 외국어선은 피난 또는 인명안전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 기항 금지
 - 외국어선은 일본 수역에서 어획물을 적재, 적하 금지

2. 일본 선원의 외국어선 승선 금지 조치

- 1967.1월 일 언론은 한국 북양어업회사들이 일본인 어선원들을 북양어업 지도원으로 모집하고 있고 일본회사들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함. 한편 국내언론은 일본 정부가 북양어업 지도원의 승선계약을 막는 등 우리의 북양어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함.
- 1967.1월 주일본대사관은 일 외무성이 농림성의 요청에 의해 일본 선원의 외국어선 승선 금지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측은 미·일 조약에 의거 일본인 어업활동 규제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한국어선 승선금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보고함.
 - 또한 주일본대사관은 한국의 북양어업 진출에 대한 일본의 방해가 부당하다고 강조하였는바,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북양진출 전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북양자원 보호차원에서 연어 및 송어 어로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한국측이 일본 선원 모집을 삼가도록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희망함.
- 1967.2월 수산청장은 일 수산청장을 방문하고 한·일 간 어업협력에 반하여 승선제한이라는 일방조치를 취한 것은 유감이라고 하고 행정지도를 해결 가능한 일을 법령제정으로 여론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데 대해, 일측은 연어, 송어에 한해서만 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며 입법화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 1967.2월 일 농림성은 적도이북 태평양의 연어, 송어 어획 외국어선에 일본인의 승선을 금지하는 성령을 공포함.

한·일 민간어업합동위원회, 제2차. 동경, 1968.11.15.-16.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M-12/17/1~148(148p)

1. 1968.10.15.~16.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4회 한·일 민간어업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의서가 채택됨(우리측 단장 박상길 수협회장).
 - 해상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 국제 해상충돌 예방법에 의한 등화를 철저히 하도록 자국민을 지도함.
 - 해상사고의 신속 처리를 위해 상호 확인서 교환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업무협의회를 개최함.
 - 피해 어구의 손해사정 기준자료에 대한 변동 및 부가 사항은 매년 추가로 교환함.
 - 자국의 적용 수역에 출어하는 소형 어선에 정선 및 조난 신호기를 소지하도록 조치함.
 - 1968년 해상사고 미결건에 대하여 11월에 합동위원회를 개최함.
 - 정식의제 외 기타사항으로서 일측의 요청에 의해 전관수역(대마도 북서 해역)에의 상호 입어문제가 논의된바, 우리측은 일측 제안취지와 의견을 정부에 구신한다는 취지의 문서에 서명, 교환함.
2. 상기 제4회 협의회 합의에 따라 1968.11.15.~16.간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일 민간어업합동위원회에서는 1968년 중 미해결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 보상액 등 처리방안을 합의함(우리측 단장 박상길 수협회장).
3. 1968.12월 상기 제4차 협의회 기타사항 논의결과 채택된 전관수역 입어문제에 관한 합의문서가 논란이 된바, 수산청은 동 합의문서가 한·일어업협정의 근본취지에도 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일측의 입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일측의 교섭 또는 요청이 있더라도 일축하겠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보내옴.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제3차. 서울, 1968.6.13.-20.

| 68-32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M-12/18/1~153(153p)



1. 정부는 1968.6.13.~20.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 수산청 차장(수석대표), 외무부 아주국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2. 우리대표단에 대한 주요 훈령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
 - 지금까지의 자원조사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협정만료 이전에는 자원에 관한 평가가 가능한 방향으로 구체적인 토의 진행
 - 필요시 조사 지침 보완, 조사 기술 등 제안
 - 어선 충돌 사고 처리
 - 일본어선의 가해 행위의 증가로 인한 우리측 피해와 일측의 보상지연을 지적하고 일측의 구체적 설명 요구
 - 어선사고에 대한 일반적 취급방침 심의
 - 보다 강력한 행정지도로 조기해결 되도록 일측에 촉구
 - 가해선의 도피를 막기 위한 일측의 조치 요구
 - 일본 비어선에 의한 우리 어선 피해사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일측의 노력 촉구
 - 협정위반에 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을 심의하고 양국의 형량을 비교 검토

한·일 공동규제수역내 출어어선 지도 계몽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M-17/3/1~133(133p)

1. 대마도 근해 한·일공동규제수역 내 출어하는 우리 어선들의 일본 전관수역 침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측이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커짐.
2. 이와 관련, 1968.7월 해양경찰대, 수산청, 수협중앙회, 저인망협회 등 관련기관들은 우리 어선을 계몽하기 위한 회의에 대비한 자료를 작성한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단속 및 계몽 실적
 - 당해 어협에 대한 지도 강화
 - 어선의 표지 및 국적식별 도색 철저히행
 - 어선의 위치 및 어획량 보고 철저
 - 공동규제 수역 출어 어선에 대한 홍보 방송 시행
 - 위반 어선에 대한 행정조치
 - 단속공무원의 자질향상
 - 공동규제 수역내 어선 척수 통제
 - 감찰표지 부착 확인
 - 어선 내 제반 구비서류 비치

아시아 채소연구개발센터 설립회의. Taipei, 1968.8.14.-17.

| 68-33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재무부

MF번호 M-13/1/1~221(221p)

1. 1968.8월 대만(구 자유중국)정부는 아시아 채소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국제회의를 타이페이에서 개최하였으며, 정부는 최영경 농촌진흥청 연구조정관 등을 참석시킴.
 - 회의에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의 6개국과 미국, 아시아개발은행(ADB) 대표가 참석
2. 회의결과는 아래와 같음.
 - 아시아 채소개발센터 설립에 합의
 - 활동목표 설정
 - 채소생산과 시장에 관한 연구 및 참가국에 대한 결과 제공
 - 채소생산과 시장 관련분야 종사 인력에 대한 훈련 실시
 - 총 소요비용(750만달러) 분담결정
 - 미국 40, 대만 30, ADB 10, 기타 5%(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3. 한편,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시아 채소개발센터의 한국사무소 설치와 온대채소에 대한 연구도 센터의 기능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정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정 및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 문제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07-68/10/1~340(340p)

1. 정부는 1967년 유엔기구 등의 조사결과, 서해와 제주도 남쪽 해역 대륙붕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범정부 차원의 종합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대륙붕 협약 가입 등의 대외조치와 국내법제도의 정비 등 대내조치의 강구에 착수함.
2. 이와 관련하여 1968년 중반 상공부는 외무부에 동해, 서해, 남해에 3개의 대륙붕 개발 수역을 설정하기 위한 해저광물자원개발 법안을 보내오면서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요청함.
3.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입장을 수렴함.
 - 문제제기
 - “평화선”의 선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대륙붕 관련 주권을 손상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 평화선 외곽에 있어서도 국제대륙붕 협약이 인정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한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
 - 입장수렴
 - 평화선은 대륙붕에 관한 한국의 주권에 미치는 한계선으로서의 성격도 있어 평화선 일부를 확장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평화선 해역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4. 한편, 석유회사 걸프는 아래와 같이 서해와 남해 일대에 걸쳐 단일 협정구역을 설정하여 석유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제의서를 제출하여 정부가 동 내용을 검토함.
 - 걸프사 제의는 자사가 희망하는 해역에서의 석유탐사, 생산, 판매에 관한 배타적 권리행사, 탐사기간 10년, 최소의무지출경비 1,450만달러(1기 2년, 2기 3년, 3기 5년 등 10년에 걸쳐 분할지출), 생산 기간 40년(20년 연장가능), 권리사용료는 석유판매가의 1/8 등임.
 - 정부는 협정구역은 동, 서 남해에 3개 설치, 최소의무지출경비는 8년 동안에 지출, 생산기간은 30년 (10년 연장 가능) 등의 입장을 정립함.

각국의 GATT 가입

| 68-33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13/2/1~11(11p)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사무국은 1968.4.21.자로 아이슬란드가 정식 가입하였다고 회원국에 통보함.
2. 외무부는 이 사실을 재무부, 상공부 등에 알리고 최혜국 대우 등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해주도록 의뢰함.

| 68-333 |

GATT 총회, 제25차. Geneva, 1968.11.12.-29.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경제과
 MF번호 M-13/3/1~111(111p)

1. 정부는 1968.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5차 GATT 총회에 정일영 주스위스대사를 수석대표로 김원기 재무부 세정차관보 등 각 부처 관계자를 참석시킴.

- 한국은 1966년에 정식 가입

2. 회의에서는 공산품과 농산물 교역, 저개발국 무역 확대 등 통상확대, 잔존수입, 관세동맹과 자유 무역지대 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한국은 개도국의 일원이라는 입장에서 선진국에 의한 수입 제한조치 완화, 개도국 수출의 확대 필요성 등을 주장함.

- 한국대표는 선진국의 잔존수입제한 철폐, 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의 필요성에 언급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는 일본이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함.

3. 회의에서 중점 취급된 사안과 관련한 동향은 아래와 같음.

- 잔존수입 제한

- 뉴질랜드는 잔존수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 철폐계획을 제출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했으나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 국내경제, 사회적 제약을 들어 반대

- 면직물 교역

- 개도국들이 선진권의 수입제한 완화를 강력히 요구

-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 구주공동시장(EC),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 아랍 공동시장 등의 운영상황을 논의하는 가운데, 특히 미국이 구주공동시장의 배타적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제19차. 서울, 1968.10.8.-25. 전3권 V.1 기본문서

| 68-33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경제조사과

MF번호 M-13/4/1~242(242p)



1. 1968.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에 정부는 최규하 외무장관을 수석대표, 김기형 과학기술처 장관을 교체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상공, 문공부, 총무처 차관 등을 대표로 참석시킴.

● 콜롬보플랜 개요, 서울회의 참석범위 등

- 1950년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서울회의 개최시점에서의 회원국은 아태지역 24개국(서울 회의에는 캄보디아 1개국만 불참)
- UNDP, IBRD 등 9개 국제기구 대표도 참석

● 의제

- 회원국 경제발전상황 검토, 문제점 해결 및 상호협력 방안, 수출 진흥 대책

2. 정부가 준비한 회의일정은 아래와 같음.

● 10.22.

- 개회식(중앙청 대회의실)
 - 박정희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 참석

- 1차 본회의

● 10.23.

- 2차 본회의, 1차 비공식 각료회의

● 10.24.

- 3차~4차 본회의, 2차 비공식 각료회의

● 10.25.

- 3차 비공식 각료회의, 5차 본회의(폐회식)

● 10.26.~27.

- 지방시찰(부산, 울산, 대구)

3. 정부는 기념우표와 담배 발매도 추진함.

68-335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제19차. 서울, 1968.10.8.-25. 전3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경제조사과
MF번호 M-13/5/1~451(451p)

1. 제5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결과 1 - 공동성명(아래 요지)

- 농업개발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인식
- 공업생산의 증가가 농업생산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인식
- 회원국의 무역적자증가에 비추어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 세계 저개발국 인구의 대부분이 포함된 아시아지역에 대한 원조증가가 필요하다는 인식
- 경제개발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

2. 제5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결과 2 - 특별과제전문가회의 보고(각 회원국의 수출 진흥 정책을 검토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수출증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사안을 논의)

-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증진의 중요성
- 수출 진흥을 위한 정부의 통제와 자유방임의 효과
- 수출 진흥을 위한 장려제도
 - 금융, 인허가, 외환, 관세, 신용보증, 보험
- 수출 진흥 전문 인력 교육 및 훈련
- 민간부문에 의한 수출 진흥
 - 조직, 인원, 판매, 사절단 파견
- 수출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국제협약개선, 지역협력 분야 등

AEC(아시아공동시장) 창설계획

| 68-336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3/7/1~192(192p)

1. 1967.3월 경제과학심의회 사무국이 작성한 아시아공동시장(Asia Economic Community) 설립에 관한 예비검토
 - ASPAC 각료회의, 마닐라 정상회의, ADB 설립 등이 아시아 공동시장 설립 추구 필요성 제시
 - 일본의 선진국 주도 탈 ASPAC적인 공동체 구성 움직임에 대응, 개발도상 아시아 자유국가들의 경제적 유대 강화 필요
 - 천연자원 확보, 공산품 수출확대, 대일 일변도 상업차관 탈피 등 우리의 경제이익 부합
 - 관세장벽의 점진적 폐지, 무역량 제한의 점진적 폐지, 노동력·서비스·자본의 이동 원활화, 교통·통신의 공동정책 등 추구
 - 한국이 주도, 대만(구 자유중국), 월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구 버마) 등 참가. 미, 일, 호주 등 선진국과는 협조관계 설정
2. 1967.5월 및 1968.1월 외무부 통상국이 작성한 아시아공동시장 설치계획(1, 2차)
 - 지역적 경제적 통합을 지향하되 정치적 결속을 위한 노력과 가능한 분야로부터의 경제적 통합노력을 병행 추진
 - 회원국은 ASPAC을 토대로 하고, 미, 일, 호주 등 선진국은 지원국으로 참가
 - 아시아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공동시장 창설계획 선언
 - 15~20년 창설 준비 기간 중, 경제협력관련 ASPAC의 기합의 사항 추진, 경제계획 각료회의 개최, Sub-regional Economic Grouping 우선 추진, 관세장벽의 점진적 제거 및 관세동맹 체결, 해운동맹 체결, 교통통신 정책협조, 사증면제협정 체결, 경쟁정책 협조 등 이행
 - 무역면 협력은 한정된 자유화를 기반으로 특정 품목의 자유화, 비관세 장벽의 완화, 지역 결제기구 설치, 공동 연구 등을 추진
 - 경제협력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한정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정된 소비재 및 생산재의 원조, 용역의 무상지원 등을 포함
3. 1968.6월 경제기획원의 외무부안에 대한 검토의견
 - 단계적 목표설정 필요, ASPAC 경제공동체 지향
 - 일본의 지원국 지위 수락 가능성 희박 등 회원국 범위 명확화 필요
 - 20년 내 ASPAC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되 초기에는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 형태의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을 동시에 추진
 - 선진국 별 그룹으로 나누어, 선진국은 10년 내 자유무역지대 설립, 관세동맹 및 제한적 공동시장 추구하고 개도국은 15년 내 자유무역지역 완료 및 20년 내 선진국과의 경제통합을 추구 등

68-337

ADB 총회, 제1차. Manila, 1968.4.4.-6.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국제경제과

MF번호 M-13/8/1~97(97p)

1. 정부는 1968.4.3.~6.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제1차 총회에 서봉균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 서진수 한국은행 총재를 교체수석대표, 이재설 재무부 재정차관보를 임시대리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2. 회의 참가목적

- ADB 조직, 운영 및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
- 제1부 의장단으로 활동하며 지역 금융기구를 통한 주도적 기능 강화
- ADB 차관의 조속한 획득 추진
 - 경인고속국도 건설, 농어촌개발공사 기술전문가 지원사업, 카프로락탐 공장 건설 등

3. 회의 결과

- 우리나라 포함 32개국 참가
- 특별자금 기여국: 미국(2억달러), 일본(1억달러), 캐나다(2,500만달러), 덴마크(200만달러), 네덜란드(110만달러)
-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지역 간 무역증진을 위해 ADB를 결제기구로 할 것을 제안

IWC(국제소맥이사회) 제55차. London, 1968.11.18.-21.

| 68-33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13/9/1~7(7p)



1. 1968.11.18.~21.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소맥이사회(IWC) 제55차 회의에 주영국대사관 박상두 참사관이 대표로 참석함.
2. 회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 소맥 무역협약 비준과 관련, 사무국은 27개국이 비준하였다고 보고
 - 사무국은 수입국의 percentage undertaking 조속 확정을 요청
 - 수출국의 가격보고 의무 규정은 잠정적 규정으로 두기로 결정
 - 1967/1968년의 곡물수급 현황에 대한 문서 채택
 - 불어 및 스페인어 문서 작성 문제는 예산사정 검토 후 추후 논의

68-339

한·호주 통상진흥회담, 제1차. 서울, 1968.12.9.-13.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7/1/1~17(17p)

1. 1968.12월 서울에서 개최될 한·호주 통상진흥회담의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이 10.30.~31.간 서울에서 황호을 외무부 차관보와 W. G. Burns 호주 상공성 국제무역담당차관보 간에 개최됨.
2. 동 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본 회의 의제 잠정 합의
 - 호주의 대 후진국 특혜관세제도 관련, 우리 측은 수출유망 12개 품목(시멘트, 야구글로브, 종이제품, 면직물 등) 쿼타 증량과 5개 품목(합성섬유, 타이어, 콩치 통조림, 오징어 통조림, 모직물)의 품목추가를 요청
 - 본 회담은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서울에서 개최
 - 수석대표는 가급적 각료급으로 하되 추후 결정

한·뉴질랜드 통상진흥회담, 제1차. 서울, 1968.11.7.-8.

| 68-34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7/2/1~126(126p)



1. 1968.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11.7.~8. 서울에서 황호을 외무부 차관보와 Esterbrook-Smith 뉴질랜드 통상산업성 차관보 간에 한·뉴질랜드 통상진흥회담이 개최됨.
2. 회의 준비를 위해 11.4. 개최된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에서 우리측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뉴질랜드 측에 제의키로 결정함.
 - 통상확대, 무역협정, 지역협력 등 양국간 통상관계 검토
 - 관세, 비관세, 경제인 상호 교류 등 통상진흥 방안 협의
 - 축산 합작 투자 문제 등
3. 11.7.~8. 통상진흥회담 결과 채택된 합의요록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양국간 무역의 균형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민간경제인 교류를 권장
 - 한국은 수출관심품목 14개를 제시하고 특혜관세율의 우선적용, 수입허가제 완화를 요청하였으며 뉴질랜드 측은 호의적 고려를 약속
 - 한국 상품 소개를 위한 뉴질랜드 수입업자 및 대리점 선정에 협력
 - 10만 입방미터의 뉴산 원목 장기구입 계약조건에 대해 실무자급 협의 실시 합의
 - 농어촌 개발공사의 육가공 합작투자 계획을 뉴질랜드측이 검토 합의
 - 뉴질랜드측은 한국의 육류 및 낙농제품에 대한 고관세율에 관심 표명
 - 한국측은 양피 제혁 가공 합작투자 요청
 - 한국측은 한·뉴질랜드 공동성명에 언급된 기술원조와 합작투자 사업의 조기 이행을 요청
4. 11.19. 황호을 차관보는 Scott 주한 뉴질랜드대사와 한·뉴질랜드 공동성명서 및 통상진흥회담의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면담을 갖고, 기술협력, 육가공 합작투자, 원목장기 구매계약, 원모 수입, 뉴산 양육 및 낙농제품 대한 수출, 양피 제혁공장 합작투자 등에 관해 협의함.

68-341

한·미 상공장관회담, 제2차. Washington, D.C., 1968.7.15.-17.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7/3/1~12(12p)

1968.7.15.~17.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김정엽 상공부장관과 C. R. Smith 미국 상무장관 간의 한·미 상공장관 회담의 공동성명서(국·영문)

1. 한국측은 특정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미국의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함.
2. 한국측은 1968년도 무역확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희망을 표시함.
3. 미국측은 미공법 480 교섭과 관련 대체 원면에 관한 한국측의 견해를 전달하기로 함.
4. 미국의 대한 수출 관련 차별해상 운임의 추가 감액과 한국의 대미 수출 관련 BWT 거래의 이용 증가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함.
5. 한국측은 미국의 민간투자, 특히 석유화학, 제철 및 전력 분야의 대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함.
6. 미국측은 공업표준과 관련 상공부의 조치가 조기에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양국 관계기관 간의 협력 필요성에 합의함.

해외시장에서의 협력증진 및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작업반회의. 제1-2차

| 68-34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7/4/1~43(43p)



1. 1968.3월 대만(구 자유중국)정부는 주한 대만대사관을 통해 제6차 한·대만 무역회담의 합의에 따라 해외시장에서의 과당경쟁 방지와 상호 협조를 위한 공동작업반을 설치할 것을 우리측에 제의하였으며, 양측은 다음과 같은 운영방안에 합의함.
 - 분기별 1회 서울과 타이페이에서 개최
 - 회의 후 합의의사록 채택
 - 필요시 수시 특별회의 개최
2. 1968.7.12.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함.
 - 해외시장에서 공동발전 하기위해 조사, 정보교환, 자료수집에 착수
 - 향후 토의의제를 미리 결정, 참석자에게 통보
3. 1968.7.15.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함.
 - 해외시장에서의 정보교환, 공동행동 등 협력 증진과 과당경쟁 방지
 - 방직물, 합판, 철강재 등 특정품목의 공동해외시장 개발에 대해 연구 검토

한·인도 무역회담, 제2차. New Delhi, 1968.8.6.-8.



생산연도 1968
 생산과 통상1과
 MF번호 N-7/5/1~184(184p)

1. 외무부는 1968년 개최될 제2차 한·인도 무역회담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계부처와 검토, 협의함.
 - 수출유망품목 작성
 - 1964.4월 체결한 무역협정의 부표에 기재된 수출유망품목들이 그간의 수출입구조의 변화를 반영치 못하므로 새로운 품목표를 작성
 - 각서교환 형태의 무역협정을 정식협정으로 승격
 - 주인도대사관을 통해 인도정부와 협의한바, 인도측은 비동맹정책으로 인해 한국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는 정식협정을 체결 할 수 없다는 입장
 - 회담수석대표 수준
 - 주인도대사는 Jayal 상무성 차관보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우리측 수석대표를 차관보급으로 해줄 것을 건의
2. 1968.8.6.~8.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인도 무역회담에 외무부 황호을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주요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우리측은 1967년 인도로부터 수입한 탄차 및 유조차로 인해 무역역조가 심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인도측은 흑연, 중석, 비료 등과 같은 품목의 수입의사를 표명함.
 - 우리측은 48개 수출가능품목을 제시하였고 인도측이 이를 수용함.
 - 한·인도 무역협정의 부표도 동 품목으로 대체
 - 인도측 품목은 추후 제시
 - 우리의 가발수출 재료인 인도산 인모 수출가격에 대해 우리측이 현상유지를 요청하였으며 인도측은 당초 정부통제 불가한 사안이라고 하였으나 우리측 강력 요청으로 합의의사록에 인도측의 적의조치 사항으로 표현됨.
 - 인도의 수입절차가 번잡하여 수출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는 우리의 지적에 대해 인도측은 불편제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 인도측의 철로 수입요구에 대해 우리측은 인도가 우리제품 다량 수입을 약속하면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이라고 답변함.

한·일 무역회담, 제5차. 동경, 1968.5.7.-10.

| 68-34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N-7/6/1~44(44p)



1. 제5차 한·일 무역회담이 1968.5.7.~10.간 도쿄에서 개최됨.

● 수석대표: 심명원 외무부 통상국장, 쓰루미 일 외무성 국제경제국장

※ 우리측은 일측이 일본영화 수입문제, 주한 일본상사 과세문제, 통상항해조약 체결 교섭개시 문제, 우리의 특관세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사전에 중점 준비

2. 회의결과

● 의제채택

- 의제 중 기타문제에 속하는 “균형무역” 과 “밀무역”과 관련, 일측이 “균형”은 사용치 않고 “밀무역”은 “변칙무역”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의 강한 의견 제시로 양 의제를 그대로 채택하되 괄호로 표시하기로 함.

● 1차 상품 수출증대

- 우리의 1차 상품 수출에 대한 수입할당제, 고율관세 제거를 요구하였으나 일측은 수입 자유화 조치는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
- 개발수출과 관련, 우리측은 한우, 백합, 절임류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일측은 일본 상품과 경쟁하지 않는 품목에 한하여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함.

● 보세가공 무역촉진

- 우리측은 일본산 원자재를 가공하여 무환수출할 때 일측이 부가가치 뿐 아니라 원자재에도 과세하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일측은 경제, 정치, 사회적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

● 관세

- 우리측은 케네디 라운드 협상시 요구한 13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일괄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일측은 반대

● 일본상사 과세

- 일측은 주한 일본상사에 대한 과세 문제 및 공업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협정과 공업소유권에 관한 협정체결을 요구

68-345

한·노르웨이 [섬유]쿼타 회담, 1968.1.19.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7/7/1~6(6p)

1968.1.19. 제네바에서 서명된 한국과 노르웨이 간의 섬유쿼타에 관한 양해각서(Record of Understanding)의 초안

- 서명자: 한표욱 대사, S. CHR. Sommerfelt 대사
- 주요 내용
 - 노르웨이는 한국산 섬유 수입 관련 매년 합의될 쿼타량에 대해 자동 수입허가 발행
 - 1968년도 수입쿼타: 국제면화협정 규정 내 섬유 10만달러, 동 협정 규정 외 섬유 10만달러
 - 노르웨이는 국제면화협정 규정 내 섬유에 대하여 각서 부속서 A에 따라 매년 쿼타를 증량

대아프가니스탄 견직물 플랜트 수출

| 68-34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7/8/1~85(85p)



1. 1968.2월 승리기계제작소는 외무부에 대해 미수교국인 아프가니스탄의 Preet Testile 사에 대한 인조직물 플랜트 수출 허가를 요청함.
2. 주뉴델리총영사는 배창공업 주식회사가 Preet 사와 플랜트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공관의 확인을 요청해 왔으며 우리 회사 간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줄 것을 1968.8월 외무부에 건의함.
 - 1968.8월 배창공업 주식회사는 외무부에 대해 Preet 사에 대한 견직물 직조공장 플랜트 수출(약 130만달러 규모)에 대해 상공부의 중장기 연불수출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협조를 요청함.
3. 1968.9월 외무부는 경제기획원 및 상공부에 동 수출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추진 가능하지만 우리 업체간 경쟁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함.
 - 1968.9월 상공부는 배창공업사의 연불수출 계약허가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추진 가능하다고 회신함.

한·일 해운회담, 제1-3차



생산연도 1966-68
 생 산 과 통상진흥과/조약과
 MF번호 N-7/9/1~214(214p)

1. 한일양국은 1967~68년간 양국 해운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해운회담을 3회 개최함(한국의 교통부 해운국장, 일본의 운수성 해운국장이 수석대표).
2. 각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제1차 회의(1967.1.16.~18.)
 - 양국의 해운실정을 감안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해운협정을 체결토록 노력키로 합의
 - 민간해운업계 회담 개최를 지원키로 합의
 - 선박수출입에 있어 차별적 제한을 가하지 않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키로 합의(한국이 한일협정상의 선박차관에 따른 선박의 조기도입을 희망)
 - 제2차 회의(1967.7.31.~8.1.)
 - 일본은 해운협정의 조기체결을 위해 화물적취 문제를 포함하여 협정의 근간을 이룰 내용에 관해 축소 심의할 것을 제안하고 한국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대응
 - 한국은 선박차관의 조기시행을 촉구하고 일본은 호의적 고려를 약속(단, 일본은 해운협정체결 문제와 연계시킬 뜻을 시사)
 - 민간해운업계 회담 개최를 지원키로 합의
 - 제3차 회의(1968.11.13.~14.)
 - 해운협정 문안 심의를 위한 실무그룹 회의의 조기개최에 합의
 - 한국은 선박차관 3,000만달러의 조기소진을 요청하고 일본은 호의적 고려를 약속
3. 해운협정 체결문제에 대한 양측입장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화물적취자유”의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양국해운업계 경쟁력의 현저한 차이를 들어 “자국화물-자국선박우선” 원칙을 고수하였기 때문임.
4. 일본은 한국이 희망하는 항공협정 체결문제도 해운협정 체결문제에 연계시킴.

알제리 정세보고

| 68-348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O-25/1/1~18(18p)



1. 1968.1~3월에 걸쳐 주모로코대사관은 검임국인 알제리의 정세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967년 쿠데타 미수 이후 부메디엔 대통령이 군부통제 강화
- 이와 관련한 여론대책으로 대외정책에서 강경노선 채택 전망
- 대학생들의 반정부 시위 강화로 내정불안 계속

2. 1968.4월 주모로코대사관은 부메디엔 대통령에 대한 암살미수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함.

68-349

일본 정세보고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O-25/4/1~62(62p)

1. 주일본대사관은 1967.10월 주재국 외무성이 개최한 중근동 공관장 회의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중근동 공관장 회의는 매2년 마다 개최
- 이번 회의는 1967.6월 중동전쟁 이후의 정세를 검토하고 대책을 협의하는 것이 목적
- 회의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권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도출
 - 예: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철수를 촉구하되 이스라엘의 생존권도 인정

2. 주일본대사관은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동정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기자회견(1967.11.21.)
 - 월남전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 강조
 - (미국으로부터의) 오키나와, 오가사와라 반환교섭 진전상황 소개
- 국회시정연설(1968.1.27.)
 - 핵무기확산방지 조약 조기체결 촉구
 -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 확대 추구
 - 오키나와, 오가사와라 반환 조기 실현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대

말리 정세보고

| 68-35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등과

MF번호 O-25/5/1~57(57p)

1. 1967.11.23.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관은 관할국 말리에서의 쿠데타 발생을 보고함.
2. 외무부의 사태파악 지시에 대해 관련 공관은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주프랑스대사관
 - 무사 트레오르 중위 등 청년장교들이 쿠데타 주도
 - 군인과 민간인 14명으로 민족해방위원회 구성(위원장은 트레오르 중위)
 - 정치슬로건 등에 비추어 기존의 좌파노선을 더욱 강화할 전망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 신정부는 대외정책에 있어 동서 양 진영 사이에서 엄정중립을 지킬 것임을 시사
 - 근래 진출을 강화한 공산중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균형을 취할 전망
 - 주영국대사관
 - 쿠데타 주동자들이 축출한 정권의 사회주의 노선에 불만이었음에 비추어 중도로의 전환 가능성 농후

68-351

파키스탄 정세보고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O-25/6/1~25(25p)

1. 1968.8월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주재국 파키스탄 정세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정치

- 1958년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오른 아우브 칸은 직선제 도입 후 처음 치러진 1965년 선거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에 선출된 이래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여당의 뒷받침으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
- 국회 146 의석 중 여당인 회교연맹이 115석 점유

● 경제

- 1965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국민의 1/4이 종사하는 농업생산량이 연간 5% 증가하고 수출도 확대
- 공업발전은 방직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구

● 대외관계

-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는 물론, 소련의 원조확보를 위해서도 노력
- 1965년 전쟁을 치른 인도와의 관계는 캐시미르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악화
- 외교정책의 중심을 인도견제에 두어 정상외교 등을 펼치며 공산중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

2.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68.11월 서파키스탄의 중심지 라호르를 방문하여 지방정부 및 현지 경제계 지도자와 주재 외교단을 만남

페루 정세보고

| 68-35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남미담당관

MF번호 O-25/7/1~5(5p)

1. 1968.11월 주브라질대사관은 관할국인 페루의 군사정부가 동구공산권 국가 중 소련과 거리를 두는 루마니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함.
2. 또한 주브라질대사관은 군사정부가 정권의 안정을 위해 쿠데타에 비판적인 야당을 포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함.

| 68-353 |

태국 정세보고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O-25/8/1~92(92p)

1. 주태국대사는 1968.7월 주태국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새로 공포된 헌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바, 미국대사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곧 실시될 총선 이후 다음 총선시까지는 현 지도층이 계속 집권하며 주동세력은 군부임.
- 신정부 참여 예정 군인들은 예편하는 것이 좋다는 타늬 수상 등의 의견은 지배적 의견은 아님.
- 헌법 하의 정치활동과 언론의 자유로 인해 공산분자의 활동이 격화될 위험성에 대해 현 정부가 경계를 강화함.
- 앞으로 태국 언론이 자유분방해 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에 대한 논조도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음.

2. 1968.6.20. 공포된 태국 헌법 관련 자료

- 1968.7.1. 중앙정보부 작성 태국헌법 국문 번역본
- 태국 의회 사무국 작성 태국헌법의 태국어·영문 대역본

튀니지 정세보고

| 68-35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O-25/9/1~5(5p)



1968.10월 튀니지 외무성 영사과장은 주튀니지총영사관 영사가 주최한 만찬 시에 주튀니지 중국(구 중공)대사관의 폐쇄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대사관은 모택동 사상집 책자 분배에 전념하면서 대사관에 각종 인사를 초대하여 선전 책자를 배포함.
- 중국 대사가 외무성을 방문할 때는 언제나 공한을 소지하고 외상이나 차관에게 공한에 기록된 대로 튀니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비난함.
- 이에 대해 외상은 중국 대사 및 공관원 전체가 *persona non grata* 라고 선언함.
- 기술적으로 양국간 국교가 단절된 것은 아니나 중국대사관은 1967.9.27.자로 완전 폐쇄됨.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2과/북미1과

MF번호 O-25/10/1~363(363p)

1. 월남 평화 예비회담 개최 여부

- 1968.2.21. 외무부는 우 탄트 유엔사무총장의 존슨 미국 대통령 면담 시 미국의 북폭중지 문제와 관련한 논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주미국대사에게 지시함. 이에 대해 주미국대사는 존슨 대통령-사무총장 면담에서 새로운 논의내용은 없으며 하노이가 사무총장을 통하여 선전효과를 노렸다는 것이 미 국무부의 의견이라고 보고함.
- 그러나 우 탄트 사무총장은 2.24. 기자회견에서 북폭이 중지되면 회담이 수일 내에 개최 될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함.
- 주프랑스대사는 4.3. 존슨 대통령이 북폭중지를 위한 미·월맹간 예비회담을 5.10. 경 파리에서 개최 하자는 월맹측 제안을 수락하였다는 주재국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보고함.
- 1968.4월 주일본대사관은 월남정세와 관련 일본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고 중국(구 중공)의 영향력이 확대될 때 미국의 방위정책이 약화되면 당연히 일본의 자주 방위문제가 전면에서 부상할 것을 우려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함.

2. 1968.5월 이후 월남 평화 예비회담 동향

- 1968.5.3. 유엔사무총장은 미국과 월맹이 5.10.부터 파리에서 예비회담을 개최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함.
- 미 국무부 번디 차관보는 1968.5.8. 주미국대사와의 면담 시, 미국은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이며 북폭 중지에 대한 대가를 월맹측에 확인한 후 회담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함. 주미국대사가 실질문제 토의에 우리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본국 정부 입장을 전달한데 대해 현시점에서는 각 참전국 주재 미국대사가 회담 진전의 경과에 관해 설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연합국 대표가 실질토의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함.
- 1968.7월까지 개최된 15차례 회담에서 월맹측은 미국이 북폭 중지 및 제네바 협정 위반사실 시인 후 월남에서 철수할 것을 주장하고 남침을 부인하였으며, 미측은 북폭중지는 월맹의 상응조치가 있어야 하며, 완충지대의 부활, 라오스, 캄보디아 중립의 준수를 주장하여 진전을 이루지 못함.
- 진필식 외무차관은 1968.7.9. 프랑스 방문 시 해리만 미국대표와 면담한바, 동 대표는 미국의 기본 정책은 비무장지대를 원상으로 복구하고 베트남의 평화로운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으나 한국 휴전과 같이 군사적 면과 정치적 면으로 양분하여 2단계로 해결하는 방안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언급함.
- 존슨 대통령과 티우 대통령은 7.19.~20. 호놀룰루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의 월남전 소강상태는 하노이측의 새로운 공세를 위한 재집결로서 이를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고 선언함. 동 정상회담에서는 제한적인 북폭중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결정이 없었음.

월남전. 전2권 V.2 1968.8-12월

| 68-35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남아2과/북미1과

MF번호 O-25/11/1~231(231p)

1. 월남 평화 예비회담 경과

- 월맹측은 68.9.4. 제20차 회담에서 모든 외국군 철수, 미국의 NLF(월남민족자유전선) 승인, NLF와의 협상을 통한 월남 문제의 해결 등을 조건으로 강조함.
- 9.4. 월남 외무장관은 17도선 경계선 존중, 남북간 불간섭 등을 포함하는 평화안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안하였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함.
- 주프랑스대사는 10.15. Jordan 미 협상대표 면담 시 미·월맹 간 모종의 합의설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동 대표는 이를 부인함. 그러나 주프랑스대사는 1주일 내 협상 타결을 위한 중대한 조치가 있거나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시까지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 보고함.
- 10.16. 월남 외무장관은 주월남대사에게 미국과 월맹간에 미국의 북폭중지, 월맹의 휴전협정 조건 수락 및 월남에 대한 공격 중지, 북폭 중지 후 월남 대표의 휴전 참가 등 비공식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통보함.
- 10.18. 티우 월남 대통령은 주월남대사 면담에서 NFL은 월맹의 일원으로서만 협상에 참가 가능하고 독자 자격 부여는 불가능함을 강조함.
- 10.22. 번디 미 국무부 차관보는 주미국대사가 협상에 월남 및 NLF 참여시 우리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대해 참전국의 협상 직접 참여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고 답변함.
- 10.31. 존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북폭 중지를 발표함.
 - 11.1. 미국은 북폭을 중지함.
 - 11.6. 평화회담이 개최되며, 회담에서 월남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대표로서 대우 받으며 NLF 대표가 하노이 측과 동석하되 미국은 그들을 참가국 정부로서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음.
- 11.12. 티우 대통령은 주월남대사에게 미국이 월남 국경일에 자국 정부의 동의 없이 단폭을 발효하고 NFL 참여 문제에 관해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는 월남측의 요구를 무시하여 월남 시민들의 감정이 파괴되었다고 언급함.

2. 파리 평화회담 개최

- 11.6. 개시 예정이던 평화회담은 월남 대표의 불참으로 지연되던 중, 11.21. 미측은 NLF 지위문제 해결을 위해 two-side formula를 제안하고 이를 월남측이 수락함.
- 12.8. 키 월남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평화회담 대표단이 파리에 도착함.

68-357

남예멘 정세보고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O-25/12/1~16(16p)

주영국대사관은 남예멘 정세에 관해 1968년 중 주간정세 보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남예멘 국방장관은 군원요청을 위해 소련 방문(2월)
- 남예멘 당국은 군경 숙청을 단행(2월)
- 우파 및 좌파의 세력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3월 초순 NLF 총회에서 공산축출을 두둔하는 결의를 통과시켜 군부를 난처하게 함(4월).
- 남예멘 대통령은 국방상 등 4개 부처의 각료를 경질(4.20.)
- 소련군 함대 아덴항에 입항(6.25. 및 12.30.)
- 남예멘, 월맹과 외교관계 수립(7.29.)

로데시아[짐바브웨] 독립

| 68-358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O-25/13/1~16(16p)



1. 1967.10월~1968.11월간 주영국대사는 로데시아의 영국과의 독립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였는바, 최대 쟁점은 현지 흑인 거주자들에 대한 독립 후 정치적 참여 보장 등 요구사항을 현지 백인 정권이 수용하는 문제이며 당시로서는 로데시아 측의 입장이 경직되어 협상 전망이 어둡다고 평가함.
2. 1968.5월 유엔 안보이사회는 대 로데시아 무역금지 결의안을 채택함.
3. 1968.7월 주한 영국대사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로데시아 여권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공한을 외무부에 보내 옴.

미국 의회의원 한국 관계 발언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O-25/15/1~76(76p)

1. 주미국대사는 1967.8~12월간 의회 내 한국관계 발언 내용을 보고함(특기사항).
 - 한국 내 미 평화봉사단의 업적 찬양 및 파견 필요성 강조(Fred Harris 상원의원)
 - 한국은 월남파병, 기술자 파견, 군납 등으로 이득을 보고 있으나 참여 비중에 비추어 일본, 필리핀, 대만(구 자유중국) 보다 적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Mike Mensfield 상원의원)
 - AID 지출법안 심의 시 한국을 포함한 AID 수원국의 대월 철망제 수출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BAYH 조항을 비난(Zablocki 하원의원)
 - 월남 파병 한국군 관련 경비도 대한 원조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Otto Passman 하원의원)
 - 월남 파병 한국군을 미국의 용병이라고 주장(Eugene McCarthy 상원의원)
2. 미 상원 군사위는 1968.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2개 사단의 인적 및 물적 결함을 지적함 (Stennis 보고서).
 - 주한미군 제2사단은 작전력 결함, 중견 장교의 부족, 군사기술전문원 부족, 주요장비 및 부속품의 부족에 당면
 - 북한이 공산화 통일목표를 포기한 징후는 없으며 침략적 계획을 적극적으로 행동화 함.
 - 주한 미공군의 증강을 위한 한국내의 시설은 제약되어 있으며 추가 건설이 필요함.
 - 한국 공군은 육해군과 같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나 장비의 노후, 부속품 보급 및 유지에 어려움 봉착
3. 주미국대사는 Washington Post 지 Richard Holloran 도쿄 특파원의 1968.6월 중 보도내용을 보고함.
 - 북한은 한미가 국방장관회담, 호놀룰루 정상회담, 미군고위층 한국방문을 계기로 한국에서 새로운 전쟁을 음모한다고 비난함(6.5.).
 - 김종필 공화당 의장 사임은 한국 정부내 불화의 표시이며, 중산층의 정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 학생들은 부패로 인해 사태 격화 시 교란을 일으킬 수 있음(6.15.).
 - 한국 정부는 외신기자 등 언론에 대해 보도 관제를 강화함(6.27.).
 - 미 공군력 순환배치 계획에 따라 주한 미공군이 감축될 것이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항의할 가능성이 있음(6.30.).

FY68 미국의 추가 대외원조법

| 68-36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O-25/16/1~140(140p)

1. 1968.2월 Johnson 미국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안보를 위협 받고 있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군사원조 1억달러를 요청하는 교서를 의회에 제출함.
 - 추가원조는 항공기, 대공 화기, 해군 레이더, 초계선, 무기 등의 구입에 사용
2. 1968.5월 Johnson 대통령은 상기 대한 추가군원 1억달러를 포함한 68회계년도(FY68)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동 추경 예산안은 1968.7월 상·하 양원 본회의를 통과함.
3. 1968.11월 외무부는 국방부 및 상공부에 1.21. 사태에 따른 조치의 하나로서 미국정부가 주한 미군의 강화를 위하여 1억 4,400만달러의 68회계년도 추가예산을 통과시켰음을 통보함.
 - 공군기 증파 225기
 - 육군 주한기지 증강 4,180만달러
 - 공군 주한기지 증강 4,600만달러

68-361

FY69 미국의 대외원조법



생산연도 1968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O-25/17/1~349(349p)

1. 1968.2월 Johnson 대통령은 29억 6,100만달러 규모의 FY69 대외원조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 Gaud AID 처장의 하원 외교위 증언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대외원조의 기본원칙으로 자조, 국제수지 개선과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개도국 발전 등을 언급
 - 수원국가 수는 FY68의 64개국에서 55개국으로 조정
 - 한국은 수년간 농업, 공업, 교육 분야에서 현저한 발전을 이루고 인구증가율 감소, GDP 증가율은 1961년 이래 평균 8.5%
 - FY69 개발차관 4천만달러는 현재의 개발계획을 유지하는데 활용
 - FY69 지원원조 2.9천만달러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 도움이 됨.
2. 1968.6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3억 6,400만달러 규모의 FY69 의원 수권법안을 통과시킴.
 - 연방예산 감축 및 11월 중간선거와 관련한 의원 감축 불가피
 - 주미국대사는 의원예산이 20% 정도 삭감될 경우 대한원조 삭감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3. 1968.7월 미 하원 본회의는 19억 9,200만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상원 외무위, 본회의의 수정을 받았으며, 1968.9월 양원협의회에서 19억 7,400만달러 규모의 단일 수권법안을 통과시킴.
 - 미국 내 대외원조 삭감 분위기에 따라 국내에서도 대한원조 삭감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 바, 주미국 대사는 당초 대한원조 책정액은 7,090만달러(개발차관 4,000만달러, 지원원조 2,500만달러, 기술원조 590만달러), 군사원조 1억 6,000만달러 인데 외원지출액이 18억달러선으로 삭감 될 경우 군사원조는 별 영향이 없으나 경제원조는 4,000~5,000만달러 삭감될 것으로 예상함.
4. FY69 지출법안은 68.9~10월간 상하원 세출위원회 및 본회의의 조정을 거쳐 양원협의회에서 17억 5,600만달러 규모의 단일 지출법안이 합의됨.
 - 주미국대사는 대한 원조 내역이 경제원조 5,000만달러, 군사원조 1억 6,000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2차. 동경, 1968.11.5.-6.

| 68-36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P-6/2/1~34(34p)



1.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양국 실무자회의가 1968.11월 동경에서 개최되었는바, 한국측에서는 이선중 법무부 법무실장, 일측에서는 나까가와 스스무 법무성 입국관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2. 동 회의의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협정영주권자의 거주력 추인
 - 협정영주 신청자가 제1차 외국인 등록(1947)에는 누락되었으나 제2차 등록시 처음 등록하였을 경우에도 당해인이 전후에 입국했다는 의심이 없는 한 거주력 조사 없이 허가함.
 - 협정영주자의 재입국
 - 금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형벌 위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행목적, 범죄, 거주상황 등 사정을 감안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호의적으로 고려함.
 - 협정영주자의 가족의 강제퇴거
 - 가족구성 등 사정이 충분히 감안되어 인도적 견지에서 고려할 것이며 일반협정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의 동거를 위한 입국도 호의적 고려될 것이므로 정식으로 일본 입국할 것이 요망됨.
 - 출입국관리령에 의한 영주허가
 - 해방이후 1952.4.28.까지의 기간 중 일본 입국자는 일반영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1968.3월 이후에도 특별체류를 허가한 직후 일반영주를 허가하는 등 호의적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청 자격자는 신속히 신청할 것이 요망됨.

68-363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 (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교민과

MF번호 P-6/3/1~79(79p)

1. 1968.1월 재일거류민단은 1966.1월 발효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시행되지 않아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가 위협 받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
 - 협정영주권 취득자에게도 단기 체류 외국인에 적용하는 출입국관리령을 적용
 - 부모사망 등 인도적 사정으로 일시 본국 왕래시도 불법입국자로 간주 강제퇴거
 - 범죄력이 있는 자는 20년의 거주력이 있어도 강제퇴거
 - 1967.8월 법적지위 관련 양국 실무자 양해사항의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는데 분노
 - 일본 정부는 오히려 현행 출입국관리령을 강화할 움직임
2. 이와 관련, 1968.1월 주일본대사관은 일 법무성 고위관리들을 접촉하여, 1967.8월 회담요록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협정영주자의 재입국허가 및 가족의 강제퇴거 문제 등 민단 제기사항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함.
3. 1968.2월 외무부는 일본 주재 전 공관에 대해 일측의 1967.8월 양해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공고화, 협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영주권 신청 무드를 조성할 것을 지시함.

재일교민 북한송환. 전2권 V.1 1968.1-6월

| 68-364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교민과

MF번호 P11-1/9~9/9(fiche)/1~347(347p)



1. 일본과 북한의 적십자사는 1967.11.29.부터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교포복송 재개문제를 협의함. 양국 적십자사는 교포복송에 합의한 소위 “캘커타 협정”이 종료(유효기간: 1959.8월~1967.11월)된 후에도 아직 출국하지 못한 재일교포 1만 5천명의 송환문제를 논의 하였으나, 북한은 캘커타 협정 자체의 연장을 요구한데 반해 일본은 협정 연장 없이 미출국 교포를 송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여 1968.1.24. 회담이 결렬됨.
 - 회담 결렬 사실을 발표한 일본 정부의 기무라 관방장관은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희망하는 교포에 대하여는 다른 외국인들과 같은 방식의 북한행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
2. 이에 앞서 콜롬보에서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회담중지를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회담이 결렬된 후에도 일본 정부의 요로에 복송재개 불가 입장을 거듭 전함.
 - 당초, 회담타결이 임박했다는 일본 정부의 설명을 들은 우리정부는 소위 캘커타 협정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무처리”를 구실로 인도주의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비난하는 외무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함.
3. 콜롬보회담의 결렬로 일본 적십자사가 1968.2월 복송선의 출항지였던 니가타 주재 사무소를 폐쇄한 가운데 같은 해 6월 북한 적십자사는 니가타에서 회담을 재개할 것을 일본 적십자사에 제의함.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제의에 응하지 말 것을 촉구함.
 - 일본 언론은 잔여희망자 1만 5천명 송환문제만 논의한다는 전제하에 일본 측이 회담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우리정부가 그 가능성을 경계하여 외교경로로 반대 입장을 전달함.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교민과

MF번호 P12-1/5~5/5(fiche)/1~200(200p)

1. 일본 정부는 1968.7월부터 아래와 같이 북한과의 적십자사 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함.
 - 7.2. 사토 총리는 “인도주의에 대한 일본의 무성의”를 비난한 북한의 성명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북송을 계속할 필요성에 언급
 - 9.5. 미야모토 일본공산당 서기장이 내방하여 회담재개를 요청한데 대해 기무라 관방장관도 유연한 입장을 시사(기자회견에서의 언급)
 - 9.14. 야마모토 후생성 사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십자사의 중재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명
2.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회담재개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제네바 소재 국제적십자사와도 접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
3. 그러나 9.28. 오전 우시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엄민영 주일본대사를 초치하고 동일 오후 일본 적십자사가 회담개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통보하면서 북송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출국하지 못한 재일교포 북송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함. 엄 대사는 이러한 결정에 강력히 항의함.

재일한인 유골봉환

| 68-366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P15-1/1(fiche)/1~8(8p)



1. 1968.10.25. “태평양전쟁 한국인 전몰자 유골 봉환회”(회장: 강위종)는 거류민단, 한·일 정부 관계자와 유족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도쿄 소재 사찰 혼간지에서 한국인 전몰자 위령제를 가짐.
2. 외무부는 유골봉환이 지연되는 사태의 타개를 위해 일본 정부의 성의를 촉구하도록 주일본 대사관에 지시함.

68-367

재외국민 지도자문위원회



생산연도 1967-68
 생산과 재외국민과
 MF번호 P-6/6/1~30(30p)

1. 1968.9월 외무부는 정부방침에 따라 활동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1962년 이래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에 있던 자문조직 재외국민 지도위원회를 폐지시킴.
 - 당초 재외국민 지도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지도, 보호, 육성에 관한 외무부의 정책을 자문받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
2. 그러나 1968.12월 외무부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즈음하여 정책 자문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재구성키로 함.
 - 명칭: 재외국민 지도자문위원회
 - 자문사항: 재외국민 지위, 복지, 교육, 단체구성, 반공활동
 - 구성과 운영
 - 외무장관이 위원장
 - 20명 이내의 위원은 정부, 국회,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망라(임기 1년, 중임 인정)
 - 연1회 이상 회의 개최

사할린교포 귀환문제

| 68-368 |

생산연도 1967-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P-6/10/1~245(245p)



1. 1967.8월 재일거류민단은 사할린 귀환교포로 구성된 “사할린 억류 한국인회(회장: 박노학)”의 진정서를 첨부하여 사할린 잔류 교포의 송환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최규하 외무부장관 앞으로 보내옴.

- 사할린 억류 한국인회는 1967년 현재 사할린 잔류교포 수를 7,500명으로 추산

2. 이와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는 아래와 같이 활동함.

- 국회 외무위원회 대표단 활동

- 여야 의원 3명(정일형, 김정렬, 차지철 의원)이 일본을 방문하여 외상, 국방장관, 여당 요인, 일본적십자사 대표 등을 면담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사할린 교포의 귀환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고 일측은 검토를 약속

- 이어 외무위원회 대표단은 제네바를 방문하여 국제적십자사(ICRC) 책임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ICRC는 일본, 소련, 북한 적십자사와 접촉하겠다고 약속

- 정부활동

-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를 창구로 ICRC와 접촉하고 조사단 파견 문제 등을 협의(ICRC는 사할린 교포가 일본을 경유한 다음, 최종적으로 한국에 정착시킬 것인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
- 정부는 대통령재가를 거쳐 귀환교포가 원할 경우 일본 정부가 일본정착을 허용토록 하며, 일본에 귀환한 후 한국행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단, 일본 정부가 보상조치를 강구)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국 정부, 국제기관과 협의키로 결정
- 정부는 위의 방침을 ICRC와 일본 정부에 통고하고 협조를 요청
- ICRC는 일본 정부 입장도 타진 한 후 최종정착지를 한국으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만 나서겠다면서 한일 정부 간 합의의 선행을 요구
- 정부는 ICRC도 일본 정부에 성의를 촉구해 주도록 요청

68-369

일본내의 조선대학 인가문제



생산연도 1968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P17-1/2~2/2(fiche)/1~81(81p)

1. 조총련은 1968.2월부터 좌경인사인 미노베 도쿄도지사의 지원을 기대하며 조선대학 설립을 추진함.

● 도쿄에서의 대학설립 인가 여부는 도지사가 도쿄도 사학심의회 의견을 들어 결정

2. 우리정부는 조선대학 설립이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와 여당에 전하고 저지를 요청함.

3.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도쿄도 사학심의회가 보수계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노베 지사를 견제하는 의견을 낼 것이며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외국인학교 법안도 외국인 학교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함. 실제로 사학심의회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조선대학 설립에 유보적인 입장을 수렴하려 도지사에게 제출함.

● 반면, 진보성향의 대학교육자 대표들은 미노베 지사에게 설립을 인가하도록 진정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노베 지사가 인가를 결정하자 엄민영 주일본대사는 사토 총리를 방문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시정을 요구하였고, 사토 총리는 일본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노베 지사가 인가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요구를 실무적으로 검토시키겠다고 함.

5. 그러나 미노베 지사의 결정을 무산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던 외국인학교 법안이 폐안으로 처리되면서 조선대학 설립 인가는 결국 성립됨.

재일한인 북한 방문

| 68-370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P18-1/3~3/3(fiche)/1~93(93p)

1. 1968.7월 조총련은 북한건국 20주년 기념일(9.9.)에 대표단을 파견키로 하고 일본 법무성에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우리정부는 허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함.
 - 종래 일본 정부는 “미수교 국가와의 자유왕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조총련계 교포의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불허
2. 그러나 8월 법무성이 불허하자 조총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0월 도쿄지법은 합법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조선적)에 대하여는 북한을 일시 방문한 후의 재입국을 인정해야한다고 판시함.
3. 이에 따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조총련계 교포가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하자 우리정부는 서울과 도쿄의 외교경로를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했고 정부대변인과 여·야당 대변인도 반대성명을 발표함.
4. 그러나 일본 정부가 제기한 고법의 항소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자 12.18. 법무성은 조총련계 교포 8명에 대해 재입국을 허가함.
5.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고위급 외교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특히 유엔총회 참석 후 귀로 도쿄에 들리게 되어있던 최규하 외무장관에게 전문을 보내 박정희 대통령의 메시지임을 전제하고 “일본 정부의 조치는 간첩에게 한국침투 루트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사토 총리와 아이치 외상에게 항의하도록 지시함.
 - 외무장관의 일본 방문에 앞서 서울에서 정일권 총리가 가나야마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
6. 12.20. 최규하 장관으로부터 박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토 총리는 조총련계 교포의 방북이 성묘 등 인도적인 이유라서 재입국을 허가했으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여 재검토해보겠다고 함.
7. 이후 아이치 외상은 공개적으로 재입국 허가를 연기할 가능성을 시사함.

68-371

재일한인 강제퇴거(송환)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재외국민과/교민과/동북아주과

MF번호 Re-37/4/1~35(35p)

1.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에 따라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재일교포를 한국에 강제송환하고 밀항자도 강제 퇴거시킴.
 - 강제송환과 퇴거는 일본에서의 재판을 거쳐 주일 한국공관과의 연락 하에 이루어졌으며 대상자는 큐슈의 오무라 수용소를 거쳐 송환
2. 1968.5월 발생한 미성년자 “유인원” 밀항의 경우에는, 한국의 보호자가 일본당국에 진정하는 절차를 거쳐 강제 퇴거시키는 절차를 밟음.
 - 일본 국내법상 미성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강제퇴거 집행의 정지가 불가피하기 때문

주케냐 대사관저 구입

| 68-372 |

생산연도 1968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P-6/14/1~6(6p)



1. 1968.5월 주케냐대사관은 외국공관 설치와 외국기업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임차료가 급상승함을 들어 공관장 관저를 구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며 이를 건의함.
2. 주케냐대사관은 구입자금을 현지은행에서 빌리는 방안을 제시함.

68-373

주프랑스대사관 청사 매각



생산연도 1967-68

생산과 기획예산담당관

MF번호 P-8/20/1~54(54p)

1. 1967.1월 주프랑스대사관은 신청사 구입계약(미화 30만달러 소요)을 체결하고 외무부에 보고함.
2. 그러나 주거용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구청사 매각이 지연되어 경비가 이증으로 지출되는 상황이 길어지자 주재국 정부에 상업용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받고 매각을 추진함.



1969년도



명예영사 임명 및 직무범위 규정문제

| 69-001 |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구주1과

MF번호 A-6/2/1~38(38p)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규정문제에 관하여 외무부 및 재외공관이 검토 및 건의 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대외홍보 및 해외선전 거점 활용

- 1967~68년간 국무총리 지시로 명예영사를 대외홍보 및 해외선전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명예영사를 추가로 임명하는 계획이 검토되었으나, 명예영사 숫자의 과다성, 재외공관장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계획이 보류됨.

2. 명예영사 임무의 융통성

- 1968년 미주지역 수출진흥센터 회의 결과, 주미국대사관은 명예영사의 임무를 대통령령에 열거하는 것 보다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장이 상황 및 재량에 따라 융통성 있게 부여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함.
- 1969년 일부 미주지역 총영사관들은 명예영사에 영사확인 및 원산지 증명 발급 권한을 부여할 것을 건의함.
- 1969.12월 외무부는 실무선에서 미주지역 공관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나, 부내 최종 결재과정에서 건의안이 폐안됨.

69-002

명예영사 현황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총무과

MF번호 A-6/3/1~14(14p)

1. 1969.11.13. 외무부 구미국 구주과가 작성한 명예영사 활동보고 요약표

● Karl 주뮌헨(독일) 명예총영사 외 8명

- 명예총영사 경력, 주재지 정부 인사와의 교분, 활동사항(경제, 문화, 기타, 관할공관장의 평가) 포함

2. 1969.11.30. 명예(총)영사관 및 명예(총)영사 현황입(총 27개 지역 28명).

● 소재지, 국명, 명예(총)영사, 경유공관, 창설일자, 발령일자 포함

Bloomfield, B. Manfred 주 Montreal(캐나다) 명예총영사 임명, 1969.10.29.

| 69-003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총무과/북미1과

MF번호 A-6/4/1~30(30p)

1. 1969.1월 주캐나다대사는 통상진흥 및 영사업무 수행을 위해 Manfred Bloomfield 및 Maxwell Pascal을 주몬트리올 명예총영사 및 영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함.

- M. Bloomfield: 기업인
- M. Maxwell: 기업인

2. 외무부는 1969.10.29. 양인을 주몬트리올 명예총영사 및 영사로 각각 임명함.

69-004

Strand, Jorgen B. 주 Copenhagen(덴마크) 명예총영사 임명, 1968.11.15.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총무과/구주과

MF번호 A-5/3/1~19(19p)

1. 1968.9월 주스웨덴대사는 1968.6.9. 사망한 Andereasen 주코펜하겐 명예총영사의 후임으로 Jorgen Bekmand Strand(무역회사 전무이사)를 임명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1968.11.15. 동인을 주코펜하겐 명예총영사로 임명함.

Enderica Espinoza, Gonzalo 주 Guayaquil(에콰도르) 명예총영사 해임, 1969.12.13.

| 69-005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중남미과/총무과

MF번호 A-6/5/1~10(10p)



1. 1969.12월 주칠레대사는 Gonzalo Enderica Espinoza 주 Guayaquil(에콰도르) 명예영사가 공직 재직 시 범죄행위로 체포령이 내려졌으므로 동인을 명예영사직에서 조속 해임할 것을 건의함.
2. 1969.12.13. 외무부는 동인을 주 Guayaquil 명예영사에서 해면함.
3. 1969.12.15. 주칠레대사는 이를 에콰도르 정부 및 Espinoza에게 통보함.

69-006

Mango, Kamal H. 주 Amman(요르단)

명예총영사 임명, 1969.8.18.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A-6/6/1~52(52p)

1. 1969.7월 주터키대사는 겸임국 요르단과의 우호관계 강화 및 교역증진을 위하여 Camel K. Mango (기업인)를 주암만 명예총영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함.

● 통과 및 관광사증 발급권 부여

2. 외무부는 1969.8.18. 동인을 주암만 명예총영사로 임명함.

3. 주터키대사는 1969.9월 터키주재 요르단 대사관을 통해 요르단 정부에 영사인가장 발급을 요청함.

Dennis, C. Cecil, Jr. 주 Monrovia(라이베리아) 명예총영사 임명, 1969.8.20.

| 69-00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총무과

MF번호 A-6/7/1~34(34p)

1. 1969.2월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는 James T. Phillips Jr.(기업인, 전 농림부 차관)를 주몬로비아(라이베리아) 명예총영사로 임명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하였으나 동인이 라이베리아 농림부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1969.3월 C. Cecil Dennis Jr.(법조인)를 다시 건의함.
2. 외무부는 1969.8.20. Dennis Jr.를 주몬로비아 명예총영사에 임명함.

69-008

Bundoo – Williams, Josiah Horatio 주 Free Town (시에라리온) 명예총영사 임명, 1969.9.2.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총무과

MF번호 A-6/8/1~21(21p)

1. 정부는 1969.7월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의 시에라리온 출장 시 주프리타운 명예총영사관 설치를 제의하였으며, 시에라리온 정부는 1969.7.26.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보해 옴.
2.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시에라리온 정부가 추천한 Josiah Horatio Bundoo-Williams를 명예총영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1969.9.2. 동인을 주프리타운 명예총영사로 임명함.

Suarez Almeida, Virgilio 주 Las Palmas(스페인) 명예영사 임명, 1969.9.2.

| 69-009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총무과/구주과

MF번호 A-6/12/1~19(19p)

1. 1969.8월 주프랑스대사는 우리 어선단의 어획물 판매 및 보급의 원활화와 선원 복지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라스팔마스에 명예영사관을 설치하고 Virgilio Suarez Almeida(기업인)를 명예영사에 임명할 것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69.9.2. 동인을 주라스팔마스 명예영사로 임명함.

69-010

Mayer, Anna 주 Montreux(스위스)

명예총영사 임명, 1969.5.17.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총무과/구주과

MF번호 A-6/13/1~9(9p)

1969.5.17. 외무부는 Albert Mayer 전 명예총영사 사망 이후 공석이던 주Montreux(스위스) 명예총영사에 동인의 부인인 Anna Mayer를 임명함.

Dayton, George D. 주 Minneapolis(미국) 명예영사 임명, 1969.3.20.

| 69-011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북미과/총무과

MF번호 A-6/15/1~48(48p)

1. 1968.1월 주미국대사관은 미국 내 우리공관 미주재 지역에 23개의 명예영사관을 설치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명예영사관을 설치한다는 방침 하에 주미국대사와 협의한바, 1969.1월 주미국대사는 미네아폴리스, 시애틀, 포틀랜드 등 3개 지역을 선정, 건의함.
2. 1969.3.20. 외무부는 주시카고총영사의 건의로 George D. Dayton II.(기업인)를 주미네아폴리스 명예영사로 임명함.
3. 1969.12.18. 주미네아폴리스 명예영사관이 개관됨.

69-012

Kell, Raymond M. 주 Portland(미국)

명예영사 임명, 1969.3.20.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북미과/총무과

MF번호 A-6/16/1~64(64p)

1. 1968.1월 주미국대사관은 미국 내 우리공관 미주재 지역에 23개의 명예영사관을 설치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명예영사관을 설치한다는 방침하에 주미대사와 협의한바, 1969.1월 주미대사는 미네아폴리스, 시애틀, 포틀랜드 등 3개 지역을 선정, 건의함.
2. 1969.3.20. 외무부는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의 건의로 Raymond M. Kell(변호사)을 주포틀랜드 명예영사로 임명함.
3. 1969.6.30. 주포틀랜드 명예영사관이 개관됨.

McInnis, Merville W. 주 Seattle(미국) 명예영사 임명, 1969.3.20.

| 69-013 |



생산연도 1963-69

생 산 과 북미과/총무과

MF번호 A-6/17/1~79(79p)

1. 1963.12월 및 1965.8월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대학 서두수 교수는 유학생 보호를 위해 시애틀에 명예영사관을 설치할 것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각각 청원하였으며, 외무부는 현지 공관의 의견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 추후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회신함.
2. 1967년부터 외무부는 미국 서해안지역에 대한 통상증진 차원에서 시애틀 및 샌디에고에 명예영사관 설치 문제를 검토함.
3. 1968.1월 주미국대사관은 미국 내 우리공관 미주재 지역에 23개의 명예영사관을 설치할 것을 본부에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명예영사관을 설치한다는 방침하에 주미국대사와 협의한바, 1969.1월 주미국대사는 미네아폴리스, 시애틀, 포틀랜드 등 3개 지역을 선정, 건의함.
4. 1969.3.20. 외무부는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의 건의로 Merville W. McInnis(기업인, 무역회사 경영)를 주시애틀 명예영사로 임명함.
5. 1969.8.12. 주시애틀 명예영사관이 개관됨.

69-014

Veeder, Nicholas P. 주 St. Louis(미국) 명예영사 임명, 1969.5.17.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과/총무과

MF번호 A-6/19/1~30(30p)

1. 1969.3월 주미국대사는 우호관계 증진, 통상·투자 진흥 및 교민보호를 위하여 세인트루이스에 명예영사관을 설치할 것을 건의함.
2. 1969.5.17. 외무부는 주시카고총영사의 건의로 Nicholas P. Veeder(기업인, 제철회사 회장)를 주세인트루이스 명예영사에 임명함.
3. 1969.11.24. 주세인트루이스 명예영사관이 개관됨.

주 Montreux(스위스) 명예총영사 임명 및 해임

| 69-015 |



생산연도 1963-69
 생산과 총무과/구주과
 MF번호 2007-2/5/1~184(184p)

1. 1963.12월 문교부는 올림픽 업무 관련 우리나라에 적극 협력한 Albert Roman Mayer IOC 위원을 스위스 주재 명예영사로 임명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2. 1964년 초 주스위스대사는 Mayer를 스위스 Vaud 주 및 Valais 주를 관할하는 주Montreux 명예총영사로 임명하고 주제네바대표부에 영사업무를 부여하여 동 명예총영사를 감독하도록 할 것을 건의함.
3. 1964.11.1. 외무부는 Albert Roman Mayer를 주Montreux 명예총영사에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관할 지역을 Vaud 및 Valais 주로 하며 기타 지역은 주스위스대사관에서 계속 관할하기로 함.
 - 이와 관련, 스위스 정부가 명예총영사관과 대사관의 영사관할 구역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외무부는 명예영사의 임무와 관할은 파견국의 재량사항이나 스위스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여, 주Montreux 명예총영사 임명과 관할구역에 대하여 스위스 정부의 사전 동의를 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함.
 - 스위스 정부는 1965.12.17. 주Montreux 명예총영사 임명에 대한 동의 의사를 우리정부에 통보함.
4. 1966.3.24. 외무부는 Mayer를 주Montreux 명예총영사로 임명하였으며, 6.6. 스위스 정부의 영사인가장 발급을 거쳐, 6.23. 명예총영사관이 개관됨.
5. 1968.12.6. Mayer 명예총영사가 노환으로 사망하였으며, 동인은 12.16. 해임됨.
6. 1969.1월 주스위스대사는 Mayer에 대한 훈장수여, 주Montreux 명예총영사관 존속 및 Mayer씨 부인인 Anne Mayer의 명예총영사직 승계를 건의함.
7. 1969.5.17. 외무부는 Anne Mayer를 명예총영사에 임명함.

69-016

대사파견 - 카메룬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의전1과/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B-11/1/1~29(29p)

1. 1969.9월 주카메룬대사대리는 주재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상주대사 임명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임명이 지연될 경우 언제든지 북한과 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조속히 상주대사를 임명해 줄 것을 본부에 건의함.
2. 1969.9.9. 정부는 전상진 주미공사를 주카메룬 초대 상주대사로 내정하고 카메룬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 1969.10.4. 카메룬 정부의 아그레망 접수
3. 정부는 1969.10.23. 전상진 대사를 주카메룬대사로 발령하였으며, 11.5. 신임장을 발급함.
4. 전상진 대사는 1969.12.19. Ahidjo 카메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적도기네

| 69-01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과

MF번호 B-11/2/1~25(25p)



1. 정부는 1968.10.12. 독립한 적도기네에 강춘희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를 겸임 발령하기로 하고, 1969.2.17. 아그레망을 신청함.
2. 적도기네 정부는 1969.3.15. 아그레망을 발급하였으며, 정부는 1969.3.26. 강춘희 주코트디부아르 대사를 적도기네 주재 대사로 겸임 발령함.
3. 강춘희 대사는 1969.4.16.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발급 받았으나, 1969.5월 적도기네 정부는 갑자기 신임장 제정을 정지한다고 강 대사에게 통보함.
 - 강 대사는 북한의 방해 공작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등을 통한 측면지원을 건의함.

69-018

대사파견 - 이디오피아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과

MF번호 B-11/3/1~50(50p)

1. 정부는 주에티오피아대사로 내정된 장지량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 대한 아그레망을 1969.5.10. 에티오피아 정부에 요청함.
2. 에티오피아 정부는 1969.5.16. 장지량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발급하였으며, 정부는 1969.7.2. 장 대사를 주에티오피아대사로 임명함.
3. 장 대사는 1969.7.15.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았으며, 1969.9.17. 셀라씨에 에티오피아 황제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이스라엘

| 69-019 |



생산연도 1962-69

생 산 과 아중동과/의전과

MF번호 Re-22/14/1~47(47p), 2010-87/31/1~31(31p), B-11/4/1-204(204p)

1. 1962.6.22. 외무부는 주터키대사에게 아랍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이탈리아대사로 하여금 주이스라엘대사를 겸임케 할 예정이나, 아랍국가들과의 국교수립 추진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신임장 제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통보함.
2. 1965.11.1. 도쿄 주재 Shneerson 주한 이스라엘 겸임대사가 외무부장관을 예방, 주이스라엘 한국 겸임대사의 파견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예산상 형편으로 그러한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함.
3. 외무부는 1965.11.25. 대통령에게 상신한 이스라엘 주재 겸임대사의 파견문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겸임대사 파견 시 장점은 이스라엘과의 우호관계 증진,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등인데 반하여, 단점으로는 아랍 13개국의 북한 독무대화, 아랍제국과의 적대감 조성, 중립진영에 의한 우리나라의 유엔 내 고립 등이 예상되므로 이스라엘과 아랍제국간의 불화 및 적대관계가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에 대한 겸임대사 파견의 보류를 건의함.
4. Arbell 주한 이스라엘 대사대리는 1967.6.3. 외무부를 방문,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사절 파견을 요청하면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철수가 현재로서는 낭설이지만 그것이 사실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또한, Bartur 주한 이스라엘 겸임대사는 1967.6.30. 외무부 구미국장을 방문, 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외교사절 임명이 없음에 유감을 표하면서 조속한 외교사절의 파견을 요청함.
 - 1967.9.12. 주한 이스라엘 대사대리는 이스라엘에 대사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는 구상서를 외무부에 전달하였으며, 10.7. 외무차관과의 면담 시 금년도 유엔 총회 시 자국 정부가 종전과 같이 한국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고 말함.
5. 외무부는 1968년도 유엔 정치위원회 한국문제 토의 종료 직후인 11월 중 주이스라엘 겸임대사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아그레망 요청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1968.10.4. 재가를 득함.
 - 정부는 주이스라엘 겸임대사 임명에 따라 예상되는 아랍제국의 우리 외교에 대한 불리한 반응 또는 오해를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아랍친선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함.
6. 1969.3.15. 유재흥 주이탈리아대사는 주이스라엘대사로 겸임 발령되어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이 발급되었으며, 유 대사는 1969.4.28.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9-020

대사파견 - 몰디브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의전과/서남아과

MF번호 B-11/5/1~57(57p)

1. 정부는 1967.11.30. 우리나라와 외교관계 수립을 합의한 몰디브의 관할 공관을 주태국대사관으로 정하고 1968.6.4. 한표욱 주태국대사의 겸임대사 임명에 관한 아그레망을 몰디브 정부에 요청함.
 - 몰디브 정부는 1968.6.15. 한표욱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한표욱 대사는 1968.7.31.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았으나 몰디브 국명 및 국가원수가 변경됨에 따라 1969.1.16. 신임장을 재발급 받았으며, 1969.6.30. 나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필리핀

| 69-021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과

MF번호 B-11/6/1~33(33p)



1. 정부는 주필리핀대사로 내정된 김세련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아그레망을 1969.11.4. 필리핀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1969.11.25. 필리핀 정부로부터 김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 받음.
2. 김 대사는 1969.12.10.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고, 1969.12.17.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9-022

대사파견 - 페루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11/7/1~41(41p)

1. 1968.4.1. 윤주영 주칠레대사는 관할국인 페루에의 겸임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페루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페루 정부는 4.16. 칠레 주재 대사의 페루 겸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함.
2. 정부는 1968.9.11. 페루에 대한 관할 공관을 주칠레대사로부터 주브라질대사로 변경하고, 장창국 주브라질대사에 대한 겸임대사 아그레망을 페루정부에 요청하였으며, 페루 정부는 1969.3.24. 장 대사에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장창국 대사는 1969.5.13.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발급받고, 1969.7.9. Velasco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루안다

| 69-023 |



생산연도 1966-69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과

MF번호 B-11/8/1~30(30p)

1. 정부는 1966.6월 방 희 주우간다대사를 초대 주르완다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르완다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 르완다와는 1963.3.21.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
2. 르완다 정부는 1967.2.1. 방 희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1966.12.14.자로 기발급된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 날짜를 1967.2.6.로 수정 재발급함.
3. 방 희 대사의 신임장 제정은 우리측의 수차례 독촉과 무상원조 및 의료지원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르완다 정부의 비협조로 지연됨.
 - 방 희 대사의 후임인 이창희 대사의 1969.12.1.자 내정 결재문서에 의하면, 방 희 대사는 1969.6.10. 르완다정부에 신임장을 제정
4. 정부는 1969.12.1. 방 희 주우간다대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창희 대사를 주르완다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르완다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기로 함.

69-024

대사파견 - 시에라레온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과

MF번호 B-11/9/1~37(37p)

1. 1968.9.2. 강춘희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는 겸임국 시에라리온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았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강 대사는 1968.11.18.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부여 받았으며, 1969.2.10. 프리타운에서 Banja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스와질랜드

| 69-025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과
 MF번호 B-11/10/1~35(35p)



1. 1968.11.19. 정부는 새로 독립한 스와질랜드 왕국에 임윤영 주케냐대사를 겸임대사로 파견하기로 내정하였고, 스와질랜드 정부는 1968.11.29. 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박정희 대통령은 1969.1.22. 임윤영 대사에 대한 신임장을 발급함.

69-026

대사파견 - 튀니지



생산연도 1968-69
 생산과 의전과/인사과
 MF번호 B-11/11/1~93(93p)

1. 1968.10.1. 신설된 주튀니스총영사관의 황남자 영사는 1968.10.16.~23. 튀니지 외무차관 및 외무성 아시아국장 면담을 통해 튀니지 측과 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절차를 생략하고 1969년 초 대사가 바로 부임하며 12월 중 아그레망을 신청하기로 합의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정부는 1968.12.10. 안광호 주일본대사관 공사를 주튀니스총영사로 발령함.
3. 1969.1.25. 황 영사는 튀니지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신임 총영사의 현지 도착 후 아그레망 신청 등 본인의 대사 부임절차를 취하는 것은 의전관례에 어긋난다고 하였음을 보고하면서 신임 안 대사의 부임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외무부는 우선 안 총영사의 조속한 부임을 추진함.
4. 안광호 총영사는 1969.2.8. 현지 부임하였으며, 튀니지 외무성 요청에 따라 영사위임장을 먼저 제출하고 2.18. 영사인가장을 부여받음.
5. 1969.2.26. 정부는 안광호 신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하였으며, 튀니지 정부는 1969.3.13. 아그레망을 부여함.
6. 1969.3.26. 정부는 안광호 총영사를 주튀니지대사로 발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발급함.
7. 양국정부는 1969.3.31. 외교관계 수립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안광호 대사는 1969.4.10. Bourguiba 튀니지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아이티

| 69-027 |

생산연도 1964-6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중미과

MF번호 B-9/7/1~10(10p)



1. 1964.10.8. 정부는 주멕시코대사 교체에 따라, 오천석 신임대사의 겸임국 아이티에 대한 아그레망을 신청할 것을 주멕시코대사관에 지시함.
2. 1966.3월 오천석 대사는 아이티를 방문, 신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발급에 관한 진전 상황을 문의하였으며, 아이티 정부는 1967.7.11. 오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69-028

대사부임 - 이란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의전1과/중동담당관

MF번호 B-10/36/1~66(66p)

1. 1968.4.21. 이란 정부는 주일본대사로 내정된 Nouredic Kia 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아그레망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1968.5.15. Kia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정부는 Kia 대사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 제정일자로 1968.11.19.로 결정함.

대사부임 - 벨기에

| 69-029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1/12/1~69(69p)



1. 1968.8.26. 벨기에 정부는 Albert Hupperts 대사의 후임으로 Baron Fredegand Cogels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고자 우리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1968.10.2. Cogels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Cogels 대사는 1969.3.21.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Cogels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벨기에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주한 상주대사관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언급함.

69-030

대사부임 - 브라질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11/13/1~34(34p)

1. 1968.9.28. 브라질 정부는 Roberto Barthel-Rosa 대사의 후임으로 Milton Telles Ribeiro 주 대만 (구 자유중국)대사를 주한 대사로 임명하고자 우리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1968.10.14. Ribeiro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Ribeiro 대사는 1969.2.14.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콜롬비아

| 69-031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11/15/1~83(83p)



1. 1968.9월 Eduardo Restrepo del Corral 주일본 콜롬비아대사는 주일본대사에게 본인의 주한 겸임대사 부임에 대한 아그레망 발급을 구두로 요청함.
 - 동 대사는 콜롬비아 정부가 이미 우리정부에 아그레망을 공식 요청하여 우리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부는 콜롬비아 정부의 아그레망 신청이 없었으나 양국관계를 고려하여 구두 요청을 정식 요청으로 간주하고 아그레망 부여 절차를 취하기로 함.
 - 그 후 1968.11.25. 주칠레대사는 콜롬비아 정부가 11.13.자 공한으로 del Corral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함.
2. 정부는 1968.11.26. del Corral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동인은 1969.2.14.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9-032

대사부임 - 이디오피아



생산연도 1966-69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0/33/1~98(98p)

1. 정부는 1966~67년 주일본 에티오피아대사가 주한 대사를 겸임하는 형태로 주한 대사를 임명해 줄 것을 에티오피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1968.2.28. 에티오피아 정부는 Ephraim Borrou 주일본 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우리정부에 요청함.
2. 정부는 1968.3.12. Borrou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동 대사는 1968.5.10.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1969.11.11. Borrou 대사는 외무장관 앞 공한을 통해 동 일자로 주한 대사직에서의 이임을 통보함.

대사부임 - 프랑스

| 69-033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의전과/구주1과

MF번호 B-11/17/1~60(60p)



1. 1969.2.20. 프랑스 정부는 Frederic Max 주온두라스대사를 주한 대사로 임명하고자 우리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1969.3.5. 아그레망을 부여함.
2. Max 대사는 1969.6.9.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9-034

대사부임 - 가봉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의전1과/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B-11/18/1~70(70p)

1. 1968.7.2. 가봉 정부는 Joseph N'Goua 주대만(주 자유중국)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고자 우리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 1967.6.20. 우리정부는 가봉측의 요청으로 Ariste Issembe 주대만대사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한바 있으나, 동인은 신임장 제정 전에 주스페인대사로 전임됨.
2. 정부는 1968.7.8. N'Goua 대사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동인은 1969.2.14.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독일

| 69-035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의전과/서구1과

MF번호 B-11/19/1~54(54p)



1. 1969.6.30. 독일 정부는 Wilfried Sarrazin 주우간다대사를 주한 대사로 임명하고자 우리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1969.7.15. 동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Sarrazin 대사는 1969.9.16.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9-036

대사부임 - 이스라엘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의전과/아중동과

MF번호 B-11/21/1~48(48p)

1. 1969.5.20. 이스라엘 정부는 Yehuda Horam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국장대리를 주한 대사로 임명하고자 우리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 이스라엘은 1968.8.28. 주한 상주대사관을 설치하였으나, 이후 계속 대사대리를 임명해 왔으므로 Horam 대사는 초대 주한 상주대사임.
2. 정부는 1969.6.26. Horam 대사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동인은 1969.9.13.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이탈리아

| 69-03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의전과/서구1과
 MF번호 B-11/22/1~51(51p)



1. 1969.6.20. 이탈리아 정부는 Giuliano Bertuccioli(이탈리아 외무성 정무국 근무)를 주한 대사로 임명하고자 아그레망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1969.7.4. 아그레망을 부여함.
2. Bertuccioli 대사는 1969.10.21.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9-038

대사부임 - 말레이시아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1/23/1~49(49p)

1. 1968.11.6. 말레이시아 정부는 Hashim bin Sultan 주버마 대사를 주한 대사로 임명하고자 우리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1968.11.25. 아그레망을 부여함.
2. bin Sultan 대사는 1969.2.28.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뉴질랜드

| 69-039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의전과/동남아과
 MF번호 B-11/25/1~54(54p)



1. 1969.1.8. 뉴질랜드 정부는 Robert H. Wade 주영 뉴질랜드 부판무관을 주한 겸임대사(도쿄상주)로 임명하고자 우리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1969.1.25. 아그레망을 부여함.
2. Wade 대사는 1969.5.17.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9-040

대사부임 - 파라과이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11/26/1~41(41p)

1. 1968.2.29. 파라과이 정부는 Nicolas de Bari Flecha Torres 주일본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고자 우리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1968.4.10. 아그레망을 부여함.
- 2 Torres 대사는 1969.7.8.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Torres 대사는 초대 주한대사(도쿄 상주)임.

대사부임 - 스위스

| 69-041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서구과
 MF번호 B-11/27/1~6(6p)



1. 1969.3월 주일본 스위스대사관은 주일본 자국 대사관에 주한 스위스 대사관을 개설함에 따라 Max Leu가 주한 대사대리로 임명되어 6월 초에 부임할 것이라고 통보함.
2. 1969.5.31. 주일본대사는 Leu 신임 대사대리가 6.4.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고 본부에 보고함.

69-042

대사부임 - 영국



생산연도 1966-69

생산과 의전과/구주1과

MF번호 B-11/28/1~63(63p)

1. 1966.8.29. 영국 정부는 Ian C. Mackenzie 주스웨덴 참사관을 주한 대사로 임명하고자 우리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 정부는 1966.9.23. Mackenzie 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동인은 1967.2.16.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1968.8.29. 영국 정부는 내각 사무처에 파견 근무 중인 직업외교관 N. C. C. Trench를 주한 대사로 임명하고자 우리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 정부는 1968.9.16. Trench 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동인은 1967.3.14.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우루과이

| 69-043 |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의전1과/남미담당관

MF번호 B-11/29/1~50(50p)



1. 1967.6.30. 우루과이 정부는 Aurelio Pastori 주프랑스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도쿄 상주)로 임명하고자 우리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정부는 1967.7.26. Pastori 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1969.3.21.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1969.3.20. Pastori 대사는 최규하 외무장관 예방 시 주한 상주공관(영사관) 개설을 우루과이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함.

69-044

대사부임 - 월남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1/30/1~52(52p)

1. 1969.4.8. 월남 Thanh 외무장관은 주월남대사에게 보안사령관 및 주대만(구 자유중국) 대사를 역임한 Pham Xuan Chieu를 주한 대사에 임명하는데 대한 우리정부의 비공식 의견을 타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월남의 국내절차가 완료된 후 우리정부에 아그레망을 공식 신청해 줄 것을 월남 정부에 요청함.
2. 1969.5.12. 월남 정부는 상원 비공개 심의를 거쳐 Chieu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우리정부에 공식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1969.5.12. 아그레망을 부여함.
3. Chieu 대사는 1969.5.22.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베네수엘라

| 69-045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의전1과/중남미과
 MF번호 B-11/31/1~48(48p)



1. 1968.8.8. 베네수엘라 정부는 Jesus Manuel Perez Morales 주일본대사를 초대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고자 우리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정부는 1968.9.2. Morales 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동인은 1969.2.28.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69-046

대사부임 - 코스타리카



생산연도 1966-69

생산과 의전담당관/중미과

MF번호 B-8/31/1~17(17p)

1. 1966.8.23. 코스타리카 정부는 Federico Volio Gonzales 신임 주일대사를 초대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고자 우리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 코스타리카와는 1962.8.15. 수교에 합의하고, 우리정부는 1965.4.5. 오천석 주멕시코대사를 초대 겸임대사로 임명
2. 정부는 1966.9.27. Gonzales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나, 신임장을 제정치 않음.
3. 1969.9월 주멕시코대사가 겸임국 출장시 코스타리카 외무차관에게 신임장 제정을 독촉한바, 외무차관은 곧 신임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함.

대사부임 - 이스라엘

| 69-047 |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의전과/아중동과

MF번호 B-9/30/1~45(45p)

1. 1967.1.5. 이스라엘 정부는 Moshe Bartur 주일본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고자 우리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1967.1.24. 정부는 Bartur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동인은 1967.3.27.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1968.8.20. 외무부 구미국장은 9월 초 이임 예정인 Arbell 이스라엘 대사대리에게 주한 이스라엘 상주 대사관의 공백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양국관계에 관한 오해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속히 후임이 부임토록 해 줄 것을 요청함.
 - 8.19. Arbell 대사대리는 중동을 방문 중인 우리나라 친선사절단의 요르단 지지 발언에 대해 우리정부의 입장을 문의한 바 있음.
4. 외무부는 1969.7월 이임 인사차 방한하는 Bartur 대사에게 수교훈장 서훈을 검토함.

69-048

영사위임장 발급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특전과

MF번호 B-11/32/1~27(27p)

1969년 정부의 영사위임장 발급은 다음과 같음.

-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부영사 김용운(1969.1월)
- 주카이로 총영사관 부영사 강석규(1969.1월)
- 주미국대사관 총영사 김성구(1969.2.10.)
-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임도경(1969.3월)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영사 김재성(1969.3월)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부영사 권병현(1969.3월)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부영사 박명호(1969.3월)
- 주카이로총영사관 부영사 김종만(1969.3월)
-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김득보(1969.11월)
- 주홍콩총영사관 영사 김권식(1969.11월)
-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영사 전순규(1969.11월)
- 주오사카총영사관 영사 배금윤(1969.11월)
- 주랑군총영사관 부영사 명인세(1969.11월)
- 주자카르타총영사관 부영사 김흥수(1969.11월)
- 주마드리드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 Pedro Crespo de Lara(1969.11월)
- 주뱅쿠버총영사관 영사 김현진(1969.11월)
- 주몬트리올 명예총영사관 명예총영사 Bernard Bloomfield(1969.11월)
- 주몬트리올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 Maxwell Pascal(1969.11월)
- 주오사카총영사관 영사 이보형(1969.11월)

주한 오스트리아 명예영사 접수

| 69-049 |

생산연도 1965-69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2007-7/7/1~47(47p)



1. 1965.8.16. 오스트리아 정부는 서울에 주한 명예영사관을 설치하고 상사 주재원인 Karl F. W. Gabriel을 명예영사로 임명하는데 대한 우리정부의 동의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정부는 1966.1.21. 동인에 대한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2. 1968.12.20. 오스트리아 정부는 Gabriel 명예영사가 영구 귀국함에 따라 주한 명예영사관을 임시 폐쇄한다고 우리정부에 통보함.
3. 1969.3.19. 오스트리아 정부는 주한 기업인 Shoul N. Eisenberg를 주한 명예영사로 임명하는데 대한 우리정부의 사전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1969.4.22. 정부는 동의 의사를 통보함.
4. 1969.11.20. 오스트리아 정부는 동일자로 주한 명예영사관을 재개관한다고 우리정부에 통보함.

69-050

한종원 주한콜롬비아 명예영사 접수, 1969.2.6.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B-11/33/1~13(13p)

1. 1968.12.9. 콜롬비아 정부는 한종원 외국어대학 명예교수를 주한 명예영사로 임명하는데 대한 우리정부의 의견을 문의함.
2. 정부는 1969.2.6. 동의 의사를 콜롬비아 정부에 통보함.

왕상은 주한영국 명예부영사 접수, 1969.6.11.

| 69-051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B-11/34/1~15(15p)



1. 1969.5.13. 영국 정부는 우리정부에 대해 부산 상공회의소 부회장 왕상은을 부산 주재(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관할) 명예부영사로 임시 임명하였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승인(recognition)을 요청함.
2. 1969.6.11.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no objection)을 영국 정부에 통보함.

69-052

주재관(국방무관) 부임 - 프랑스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의전과/구주과

MF번호 B-11/37/1~12(12p)

프랑스 정부는 1969.8.11. Jean Anquetil 공군 중령을 주한 육·해군 무관으로 임명하고자 우리정부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1969.8.20.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no objection) 의사를 전달함.

주재관(국방무관) 부임 - 월남

| 69-053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1/36/1~8(8p)



월남 정부는 1969.4.1. Dao Trong Tuong 대령을 주한 무관으로 임명하고자 우리정부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1969.4.3. 이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함.

69-054

축·조전 관례 및 발송범위 재조정



생산연도 1964-69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1/35/1~92(92p)

외무부는 축·조전 및 위문전 발송기준과 발송범위 등을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재조정함.

1. 1964년

- 외무부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무총리실과 협의, 과거 대통령 및 국무총리 명의의 전문이 외무부장관 명의의 축·조전 및 위문전과 중복 발송되는 사례를 피하기 위해 발송 명의별 발송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1964년부터 시행함.

2. 1965년

- 1965.2월 및 12월 신규 수교 및 단교 국가의 발생에 따라 발송 대상을 조정함.
- 1965.10월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 명의 발송대상 조정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 문의에 대해, 외무부는 기존 기준의 유지가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에 축전 등을 보내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3. 1967~68년

- 1967.1월 신규 수교, 단교, 정세변동에 따라 발송 대상을 조정함.

4. 1969년

- 외무부 의전실은 1969.12월 연중 국제정세 변동과 우리 외교망 확장에 따르는 축전 발송 대상국 범위 조정을 위해 각 지역국의 자료를 취합함.

주한 외국공관 고용원 신분 및 대우문제

| 69-055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17/24/1~41(41p)



1. 1969.2월 외무부는 주한 외국공관에서 housemaid 나 private servant의 자격을 가진 고용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의 의무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대해 주재국의 관련 규정 및 방침을 조사 보고할 것을 지시함.
2. 이에 대해 25개 공관이 조사·보고하였는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없음.

69-056

한국의 외교정책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29/1/1~66(66p)

1969년 외무부가 작성한 “1969년의 우리외교”의 주요 목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리 외교가 처해있는 국제정세

- 국제정세 전망
- 한국에 미치는 영향 판단

2. 당면 주요 외교문제

- 안전보장외교
 - 안전보장 체제
 - 대미 교섭
 - 마닐라 정상회의
 - 지역적 집단방위체제 구상
- 경제외교
 - 1969년 경제외교 기본방향
 - 지역별 수출실적 및 할당액
 - 수출진흥 시책
 - 지역별 수출진흥 회의개최
 - 구주지역 1억달러 수출운동
 - 경제·통상 사절단 파견
- 외교전선에서의 북한과의 대결
 - 북한의 해외침투
 - 북한의 해외침투 기지와 우리의 국제적 지위 향상
- 월남 평화협상 및 전후 개발사업에의 참여
-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훈련
- 외무행정의 주요문제
 - 외무공무원법 제정
 - 기구개편
 - 재외공관건물 매입
 - ASPAC 사회문화센터 건물신축
 - 해외여행 규제문제

한국의 대일본정책

| 69-05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C-29/2/1~53(53p)

1. 1969.1월 국무총리실은 외무부에 국회 김상헌 의원 외 31명의 의원이 제출한 한·일 관계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부내 관련부서 및 정부 관련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1969.1.30.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답변서를 작성함.
 - 대일 정책의 기본방향은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공동번영을 기하는 동시에 지역의 안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며, 한·일간 조약 및 제 협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일본 정부의 조총련계 북한왕래 허가에 반대하며, 최근 일부 고령자 재입국 허가 발급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대일 특별교섭 사절단을 파견하여 교섭한 결과, 일본 정부는 동 건을 선례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함.
 - 일본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금번 사건이 “두개의 한국론”에서 연유되었다고 보지 않음.
 - 대일 무역역조 시정은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으나, 정부는 최근 대일 특별교섭단의 일측과의 구체적 시정방안 협의 등을 통해 역점을 두고 노력 중이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과 경제인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단·장기적 시정방안에 협력할 것으로 생각함.
 - 북한과의 무역에 관해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와 플랜트 수출에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음.
 - 정부는 재일동포의 복송을 반대하며 1967.11.12. 복송에 관한 캘커타 협정이 종료된 현시점에서 일본이 복송을 종료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 정부는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협정에 의한 영주권 취득 신청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고, 일측에 절차의 간소화 및 심사기준의 완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할 것임.
 - 국교 정상화 이후 미결 현안들은 외교 교섭을 통해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최근 대일 특별 교섭 사절단 파견을 통한 현안협의를 상당한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함.

69-058

미국의 대외정책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북미담당관

MF번호 C-29/4/1~43(43p)

1969년도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미국 상·하원의 의사록에 관한 내용임.

1. 상원 의사록(6.15. 및 6.19.)

- 미국의 대외 방위공약에 관한 결의안 관련 사항

2. 주미국대사관 보고(6.26.)

- 상원의 대외 방위공약에 관한 결의안 채택 및 행정부에 대한 영향

3. 하원 의사록(9.4., 9.9. 및 9.18.)

- 미국 내 New Federalism 현상 등 하원 토의 내용

한·미얀마(구 버마) 정무일반

| 69-059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C-29/5/1~10(10p)



1. 1969.7.1. 주랑군총영사는 부임인사를 위해 미얀마 외무장관을 예방한바, 면담요지는 다음과 같음.
 - 총영사가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한데 대해, 외무장관은 한국과의 협조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 총영사가 7월 북한 사절단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한데 대해, 외무장관은 미얀마의 입장에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명함.
2. 1969.10.22. 주랑군총영사는 1969.10.17. 기항한 대한해운공사 소속 제주호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보안 강화를 요청하고, 선장의 요청으로 선원수첩 기재사항을 변경하였다고 보고함.

69-060

한·이스라엘 정무일반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29/6/1~8(8p)

1. 1969.9월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은 9.6.부터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십자 총회에 팔레스타인 적신월사(Palestine Red Crescent Society)에 대한 옵서버 자격부여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을 외무부에 전달함.
2. 주이탈리아대사는 1969.9.16. 주이탈리아 이스라엘대사 주최 만찬회에서 만난 이스라엘 외무성 Erell 아주국장이 우리정부가 이스라엘에 방위상황 시찰을 위한 군사고위층을 파견하고 무관을 이스라엘에 상주시킬 것을 이스라엘측이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주일대사관 및 영사관 피습

| 69-061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29/7/1~52(52p)

1. 1969.9.15. “3선 개헌 반대 재일 한국청년학생 전국협의회” 소속 재일동포 학생 45명이 주일본 대사관에 난입하여 3선 개헌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됨.
 - 9.16.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주일본대사를 방문하여 일본정부의 유감을 전달하고 대사관 경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함.
 - 일본 경찰은 난동 학생들을 건조물 침입죄로 검거하였으며, 9.17.~18. 전원 석방함.
2. 1969.10.20. “국제주의 공산학생 동맹” 소속 학생 7명이 대사관에 난입하였는바, 이들은 반미, 반한, 3선 개헌반대, 박 정권 타도 등의 플래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유리창을 파손함.
 - 10.20. 아이치 일본 외상이 대사관을 방문하고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일본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함.
 - 동일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도 외무부를 방문하여 일본정부의 유감을 전달하고 대사관 직원 부상 및 기물 파손에 대한 배상 용의가 있으며 사또 수상도 본 사건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함.
 - 10.21. 우리정부는 동 사건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본정부의 사태 수습노력에 주목한다는 요지의 외무부 공보관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함.

69-062

한·파키스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동남아1과
 MF번호 C-29/8/1~23(23p)

1.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69.4.4.~9. 동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 지역을 방문하고 내무차관, 어업공사 사장, 투자개발공사 사장, 수출진흥청 차장, 주재 외교관, 언론인, 기업인 등을 면담하고 동파키스탄 지역 정세, 우리나라와의 관계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하였는데,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파키스탄과의 어업협력, 중공업 분야 원조 가능성, 무역확대 방안 협의
- 내무차관에 대해 북한의 허위성 설명
- 동파키스탄 정세 관찰
 - 경제 수준 빈약
 - 동파키스탄 분리 경향 증대
 - 인도 및 중국의 직접 개입 징후 없음
- 건의사항
 - 동파키스탄에 대한 독립공관 설치
 - 동파키스탄과의 정책적 경제관계 수립

2.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69.5.11.~14. 카라치를 방문, IOC 집행위원, 경제인, 종교인 등을 면담하고 한-파 양국 간 현안문제, 경험관계 등을 논의한바,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파키스탄 IOC 위원에 대해 올림픽에서의 북한의 호칭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함.
- 무역관계 인사들과 양국 간 바터 무역 협정 체결문제, 경제문화 협회 설치문제, 북한의 원조 공세에 대응한 선박연불 수출 방안, 어업협력문제 등을 협의함.

한·미 정무일반

| 69-063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29/9/1~13(13p)



본 문서철은 1969년 한·미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미국 고위인사 발언내용, 언론기사 등을 수록함.

1. 미국 국방장관의 상원군사위 증언(1969.3.19.)
 - 한반도의 평화는 위태로우며 북한은 우세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남침야욕을 노정
2. Us News and World Report 기사(1969.6.30.)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다대
3. 한국일보 기사(1969.9.23.)
 - 태평양지구 미군사령관의 북한 전면전 위협 대비 필요성 강조 인터뷰 기사
4. CSM 기사(1969.10.8.)
 -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직면
 - 한국은 미국의 특별한 배려 및 지원을 기대

69-064

한·월남 정무일반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29/10/1~17(17p)

1. 1969.6월 외무부는 사이공 시내 한국 요식업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주월남대사에게 지시함.
2. 1969.9월 주월남대사관은 월남 내 한국인 경영 사우나(steam bath) 현황 및 불건전 업소의 문제점 및 대응책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함.
3. 1969.11월 Thap 사이공 시의회 부의장이 방한하여 서울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를 협의함.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 겸임국 볼리비아 및 파라과이 출장, 1969.7.15.-23.

| 69-065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29/11/1~29(29p)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는 겸임국인 볼리비아 및 파라과이를 방문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볼리비아(1969.7.15.~20.)

- Victor Hoz de Villa 외무장관 면담
- De Villa 외무장관은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주한 겸임공관을 설치하고 문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언급함.
- 동 외무장관은 유엔 한국문제에 관한 협조요청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김동성 대사는 볼리비아가 우리의 농업 및 기술이민에 부적합하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파라과이(1969.7.20.~23.)

- Raul Sapena Pastor 외무장관 및 Burgada 외무성 문화국장 면담
- 파라과이측은 문화협정에 조속히 서명하겠다고 언급하고, 유엔 한국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함.

69-066

윤주영 주칠레대사 겸임국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 출장, 1969.6.2.-8.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29/12/1~31(31p)

윤주영 주칠레대사는 1969.6.2.~8. 겸임국 에콰도르 및 콜롬비아를 방문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에콰도르(1969.6.2.~4.)

- Valdivieso 외무장관 및 외무성 고위간부, Barreiro 상공장관, Saenz 주택은행 총지배인, Salez 건설 체신장관 등 면담
- 유엔 한국문제, 문화협정 체결, 기술협력 방안, 건설공사 참여, 커피·코코아·바나나 등 교역증대 문제 등 협의함.
- 윤주영 대사는 우리의 농·수산 기술제공 및 어업, 산업개발에 관한 기술협력 방안과 커피, 코코아, 바나나 등의 정책수입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콜롬비아(1969.6.4.~8.)

- Henae 외무장관 서리 및 외무성 고위간부, 농림성 고위간부 등 면담
- 유엔 한국 문제, 문화협정 체결, 농수산 분야 기술협력 등 논의함.
- 윤주영 대사는 한국 주간 행사, 참전 20주년 행사 등을 외무부에 건의함.

강문봉 주스웨덴대사 겸임국 덴마크 출장, 1969.6.4.-6.

| 69-06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29/13/1~13(13p)



강문봉 주스웨덴대사는 1969.6.4.~6. 겸임국 덴마크를 방문, Hartling 외상, 외무성 의전장, 경제협력 부장, 경제국장 서리 등을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상 방한 초청

-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장 전달에 대해 Hartling 외상은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방한하겠다고 언급함.

2. 유엔 한국 문제

- 유엔총회 남북한 동시초청 문제에 대한 덴마크의 기권에 유감을 표시한데 대해, 외상은 유엔총회에 앞선 북구제국 외상회의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협의하겠다고 언급함.

3. 북한의 침투 노력

- 공산권 주재 북한 대사의 덴마크 방문 기도에 대해 외상은 북한 대사를 공식적으로 접수하지는 않을 것이나 어떤 국민도 덴마크를 여행할 수 있다고 언급함.

4. 경제·통상 협력

- 덴마크의 의료기기 지원, 농업부문 기술협력 방안, 석유류 수입제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함.

69-068

강문봉 주스웨덴대사 겸임국 아이슬란드 출장, 1969.6.17.-18.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C-29/14/1~12(12p)

1. 강문봉 주스웨덴대사는 1969.6.17.~18. 겸임국 아이슬란드를 방문하였는바, 주요면담 인사는 다음과 같음.

- Eldjarn 대통령, Benediktsson 수상, Jonsson 외무차관, Asgeirsson 상무차관 등

2. 스웨덴측과의 주요협의 사항

-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 양국 간 통상관계 증진
- 명예 총영사 임명 문제 등

강춘희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 겸임국 라이베리아 출장, 1969.7.23.-27.

| 69-069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C-29/15/1~11(11p)

강춘희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 대사는 1969.7.23.~27. 겸임국 라이베리아를 방문함.

1. 주요일정

-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 국무장관 면담,상공장관 면담, 농림장관 방문 등

2. 주요 논의사항

- 유엔 한국문제에 관한 지지 요청
- 북한의 침투공작 및 도발행위 규탄
- 통상진흥 방안 협의
- 명예총영사 임명문제 협의
- 기술훈련 연수생 접수 문제 협의
- 한국의사 고용문제 협의
- 서부아프리카 친선사절단 방문일정 교섭

69-070

배익환 주영대사 겸임국 몰타 출장, 1969.9.17.-22.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29/16/1~8(8p)

배익환 주영국대사는 1969.9.17.~22. 겸임국 몰타를 방문함.

1. 주요일정

- 몰타 수상 및 총독 면담

2. 주요 협의사항

- 몰타 수상 방한 초청의사 전달
- 배익환 대사는 몰타 총독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

이성가 주터키대사 겸임국 사우디아라비아 출장, 1969.6.3.-10.

| 69-071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29/18/1~9(9p)

이성가 주터키대사는 1969.6.3.~10. 겸임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함.

1. 주요일정

- Faisal 국왕 예방, Sakkaf 외무장관, Hariri 젓다 상공회의소장 등 방문

2. 주요 협의사항

- 국왕에 대한 대통령 친서 전달
- 유엔 한국문제에 대한 지속적 지지 요청
- 동남아 우리 건설인력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사우디에 대한 건설 진출 희망 표시
- 북한의 도발 양상 설명

69-072

최경록 주멕시코대사 겸임국 출장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29/19/1~100(100p)

최경록 주멕시코대사는 1969년 겸임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를 방문함.

1. 엘살바도르(4.14.~17.)

- 외상은 유엔 한국문제 토의 관련, 한국 지지 확약
- 문교상은 문화협정 서명일자를 조속 제의할 것을 약속
- 수산업 협력 방안 논의

2. 온두라스(4.17.~20.)

- 유엔 한국문제에 관한 계속적 지지 확약
- 문화협정 서명일자 제의할 것을 약속
- 외상은 주한 겸임대사의 조속한 임명을 약속

3. 과테말라(4.20.~22.)

- 유엔 한국문제에 관한 계속적 지지 확인
-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사절단 파견 의사 표명

4. 니카라과(6.1.~5.)

- 유엔 한국문제에 관한 계속적 지지 확약
- 문화협정 후속조치로 인사교류 검토의사 표명
-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사절단 파견 의사 표명

5. 코스타리카(6.6.~9.)

- 유엔 한국문제에 관한 계속적 지지 확약
- 문화협정 서명에 대해 국회의 동의 획득노력 강화 약속
- 주한 겸임대사 파견 조치 약속

6. 파나마(6.9.~12.)

- 유엔 한국문제 관련, 외상은 한국 편에 들겠다고 언급



7. 아이티(7.7.~11.)

- 외상은 유엔 한국문제 관련 협조를 약속
- 최경록 대사에 대한 조속한 아그레망 발급을 요청

8. 도미니카공화국(7.12.~15.)

- 외상은 유엔 한국문제에 관한 계속적 지지를 약속
- 우리측의 문화협정의 조속한 발효요청에 대해, 국회통과 사실을 설명하고 신속한 공식통보를 약속
- 주일 도미니카 대사의 조속한 겸임 신임장 제정을 약속

9. 자메이카(7.16.~19.)

- 유엔 한국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에 이해표시

69-073

일본·미국 관계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동북아주과/북미1과
 MF번호 C-29/22/1~82(82p)

1. 중국(구 중공)문제에 관한 미·일 의원 간담회

- 1969.1.24. 미국 산타 바바라 개최
- 풀브라이트 상원의원, 케네디 상원의원, 맥카시 상원의원 등 참석
- 후지야마 의원(전 외상), 예자키 의원, 우스노미야 의원 등 참석
- 중국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유엔가입을 인정하고 미·일이 중국을 승인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
- 케네디 의원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만을 축출하고 태평양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
- 미측은 중국 주변국가로부터 일거에 철군하는 것은 위기를 초래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일측은 7함대와 핵병기를 포함한 육상 항공병력을 철수하는 것이 아시아 안보에 필요하다고 주장

2. 아시아 정세, 오키나와 문제에 관한 미·일 의원 간담회

- 1969.1.28.~31. 일본 동경 개최
- 케이스 상원의원, 스캇 상원의원, 피어슨 상원의원 등 참석
- 가와시마 의원, 마에스 의원, 후지야마 의원, 미끼 의원, 다나카 의원, 나까소네 의원 등 참석
- 중국문제 관련, 일본측은 봉쇄 및 고립 정책은 잘못된 것이며 중국을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하며, 7함대 철수를 주장
 - 미측은 중국과의 교류를 모색하고 있으나, 중국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으며 군사적 봉쇄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
- 오키나와 문제 관련, 미측은 극동의 안전보장을 무시한 오키나와 반환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

3. 사토 수상 미국 방문

- 사토 일본 수상은 1969.11.19.~21. 미국을 방문하고 11.21. 닉슨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
- 미국 국무부 그린 차관보의 공동성명에 대한 설명내용
 - 일본이 처음으로 아시아의 안전보장, 특히 한국의 안보에 이해관계를 공식 표명한 것은 고무적(일본이 한국에 대한 “출진”을 할 경우,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사전협의를 해야하며, 사토 수상이 NPC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협의에 응할 것임.)
 - 미·일 안보조약 지속의향을 처음으로 공식확인한 것을 중요하게 인식
 - 핵무기는 오키나와 반환 시 저장하지 않으나 비상시 재도입을 위한 협의의 권리를 유보함을 분명히 함.
 - 일본이 개도국 지원을 적극 강화할 것을 분명히 함.

미·일간 오키나와(沖繩) 반환문제, 전2권 V.1

| 69-074 |

1969.1-6월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C-29/20/1~289(289p)



1. 오키나와 반환문제에 대한 미·일간 예비협상 관련 우리정부 대응

- 1969년 봄 진행된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문제에 관한 예비협상에 대응하여, 우리정부는 오키나와의 영토적 귀속문제에 대하여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969.4월 중 외무장관의 주한 대사 면담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미·일 정부에 전달함.
 -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아시아 안전보장에 중요하고 이러한 군사적 가치를 저하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루어 져야함.
 - 미군기지의 가치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한국을 비롯한 지역 내 국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함.
- 1969.4월 외무부는 대만(구 자유중국), 필리핀, 호주, 태국, 월남의 주한 대사들을 통해 우리 입장을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협의함.
- 1969.5.22.~23. 방콕에서 개최된 월남 참전국 외상회의에서 최규하 외무장관은 기초연설을 통해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힘.

2. 일본 외상의 방미 시 미 국방장관과의 협의 내용

- 1969.11월 사토 일본 수상은 방미 준비를 위해 아이치 일본 외상이 1969.5.31.~6.6. 미국을 방문하고 로저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함.
 - 오키나와 반환문제와 관련 미측은 오키나와 군사기지를 최대한도로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일측은 1972년 까지 오키나와의 정치적 반환을 요구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안보를 위한 오키나와 기지의 중요성에 이해를 표시하고 군사기지 이용에 관해 최대한의 융통성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함.
 - 양측은 11월 사토 수상의 방미 시 동 문제를 종결짓기로 합의함.
- 동 회담결과 설명 시 미측은 우리정부에 대해 동 문제를 play down 해 줄 것을 요망함.

3. 1969.6월 ASPAC 각료회의 시, 최규하 외무장관은 아이치 외상과 회담에서 일본이 반환문제 교섭에서 한국의 안보유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69-075

미·일간 오키나와(沖繩) 반환문제, 전2권 V.2

1969.7-12월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C-29/21/1~239(239p)

1. 1969.11월 미·일 정상회담 대비 교섭

- 정부는 11월 미·일 정상회담 시 오키나와 반환문제 교섭에 대비하여, 미·일 양국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교섭을 진행함.
 -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1969.7.31. 로저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 면담 및 9.20. 월남전 참전국 외상회의 계기 면담 시에 미·일 간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1969.10.4. 주미국대사는 미 국무부 그린 차관보에게 우리측 입장을 다시 강조함.
 - 1969.10월말~11월초 외무부는 주한 미국 및 일본 대사관에 우리측 입장을 다시 전달하면서 미·일 정상회담 준비상황 및 공동성명 초안 사전 입수 가능성을 문의함.
 - 외무부 아주국장은 일측에 대해 오키나와로부터 핵무기 철수 및 일본 본토 기지와 동일한 지위 부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
 - 1969.11.5.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유엔총회 참석 계기, 로저스 미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우리 입장을 강조함.

2. 미·일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

- 닉슨 대통령과 사토 수상은 1969.11.19.~21. 3차례 회담 후 11.21.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오키나와 반환문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 극동정세 하에서 오키나와 미군의 중요한 역할 인정
 - 극동의 안보를 훼손하지 않고 1972년 중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
 - 미국의 오키나와 군사시설 유지에 의견일치
 - 미측은 미·일 안보조약상 상호협약제도에 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손상함이 없이 핵무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정책에 배치하지 않도록 오키나와 반환을 실시할 것을 약속
- 공동성명의 내용에 관한 외무부의 해석(1969.11.22. 대통령 보고사항)
 - 1972년 중 모든 시정권이 일본정부에 반환되나 미군기지는 계속 유지
 - 오키나와 반환 후에는 미·일 안보조약이 적용되므로 일본 영토 외의 미군의 작전활동을 위한 미군의 발진과 핵무기 등 주요장비의 반입은 사전협의 대상
 - 한국의 안보를 위한 발진은 형식상으로 사전협의의 대상이지만 실질면에서는 자유로운 기지의 사용이 보장됨.
- 1969.11.24. 가나야마 주한 일본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일 공동성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사토 수상은 지역안보를 위하여 아시아 내 미군 시설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식
 - 공동성명상 사전협의는 미군의 장비에 있어서의 중대한 변경도 대상이 되므로 결국 비상시에는 핵병기의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

국교수립 교섭 - 바베이도스

| 69-076 |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29/23/1~70(70p)



1. 정부는 1966.11월 독립한 바베이도스와의 국교수립을 위하여, 1967~68년 주영국, 주미국 대사를 통하여 교섭하였으나, 바베이도스 정부는 1967.9월 및 1968.5월 주브라질대사를 통하여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옴.
2. 정부는 1969년 들어 유엔대책의 일환으로 주영국, 주캐나다 대사를 통하여 수교교섭을 강화하였으나, 바베이도스 정부는 다시 1969.6월 주캐나다대사를 통하여 검토 중이라고 회신함.
3. 정부는 주브라질대사에게 1969.10월 가이아나 신임장 제정 출장기회에 바베이도스를 방문하여 수교교섭을 진행할 것을 지시함.

69-077

국교수립 교섭 - 아일랜드



생산연도 1962-69
 생 산 과 서구1과/통상2과
 MF번호 C-29/24/1~56(56p)

1. 정부는 1962년부터 주영국대사관을 통하여 아일랜드와의 국교교섭을 추진하였으나, 아일랜드 정부는 재정문제 및 분단국과의 불수교 방침 등을 이유로 소극적 반응을 보임.
2. 1966년부터 정부는 비상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외무부 지시에 따라 주영국 대사는 수차례 주영국 아일랜드 대사를 접촉하여 양국 간 겸임대사 교환을 제의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교관계 수립 원칙에만 합의하고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겸임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 하였으나 아일랜드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
3. 1967.12월 아일랜드정부는 주한 영국대사관이 자국민에 대한 영사보호임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우리정부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동의함.
4. 1968.11.22.~25. 주영국대사는 아일랜드를 방문, De Valera 대통령, Aiku 외무장관 등을 면담 하고 수교문제에 대해 협의한바, 아일랜드 측은 재정형편상 외교망 확장이 불가하며 우리의 일방적 신임장 제정 방안도 타국과의 형평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임
 - 단, 우리측의 통상협정 체결 제의에는 동의를 표시하고 협정예문 송부를 요청함.

국교수립 교섭 - 레바논

| 69-078 |



생산연도 1962-69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C-29/25/1~237(237p)

1. 1962.2월 주터키대사는 주터키 레바논 대사에게 공한을 통해 수교를 제의하였는바, 우리측의 수차례 독촉이 있는 후 레바논 대사는 1962.5월 본국 정부가 수교 여부 검토를 중단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1962.11월에는 우리정부가 주이스라엘 대사(상주 및 비상주)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서면보장을 해 줄 것을 요청함.
 - 우리정부는 구두보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2. 1963.9월 주유엔 레바논 공사는 레바논이 수교를 희망하며 주일본 대사가 겸임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주유엔대표부, 주미국대사관 등을 통해서도 수교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진전이 없었음.
3. 1966.11월 이동원 외무장관의 레바논 방문 시 레바논 측의 호의적 반응에 따라, 주프랑스, 주터키, 주일본 대사를 통해 교섭을 진행함.
4. 수교교섭 지연으로 우선 명예총영사를 임명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67.10월 주터키대사는 레바논 정부에 주베이루트 명예총영사관 개설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는바, 레바논 정부는 1968.1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무역대표부 설치를 허가할 용의가 있다고 통보함.
 - 1967.12월 레바논 정부는 북한에 대해 무역대표부 설치를 허가
5. 정부는 무역대표부 설치보다는 국교수립 또는 총영사관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1968.6월 주터키대사를 레바논에 파견하여 우리의 입장을 설명함.
6. 1968.8월 박준규 국회 외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레바논을 방문하여 수상을 면담 하고 국교수립 또는 영사관계 수립을 촉구한데 대해 레바논측은 명예영사관 설치문제에 조속한 결말이 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7. 1969.1월 주터키대사는 명예총영사 후보를 우리나라 무역대표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외무부는 명예영사관 설치를 계속 추진하도록 지시함.
 - 무역대표부는 관례상 준 외교기관으로서 대체로 그 지위를 접수국에서 결정하는데 동국 국민이 대표가 될 경우 일반상사의 에이전트와 대동소이할 것이며, 북한의 무역대표부의 지위와 비교할 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음.

69-079

국교수립 교섭 - 리비아



생산연도 1960-69
 생산과 마그레브담당관/통상3과
 MF번호 C-29/26/1~175(175p)

1. 정부는 정식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와의 외교관계수립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그 대상국가의 하나로서 리비아와의 국교수립을 추진키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외무부는 1960.7.12.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우리정부의 수교의사를 리비아측에 전달하고 반응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 홍성욱 주이탈리아대사대리는 1960.8.23. Muntasser 주이탈리아 리비아대사에게 한·리비아 양국간 외교관계수립을 구두로 제의함.
 - 주이탈리아대사는 1962.2.6. 이탈리아 주재 리비아대사관 Gashut 대사대리에게 재차 국교수립을 제의하고, 1962.3.6. 동 제의에 관한 공한을 수교함.
 - 그 후, 주이탈리아대사관은 이탈리아 주재 리비아대사관 관계자들을 수차례 접촉하여 리비아측의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리비아측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시기상조라는 소극적 반응을 보임.
2. 외무부는 아프리카지역 중립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장을 위하여 1963.2.15.~4.25. 다음과 같이 특별사절단을 파견함.
 - 파견목적
 - 정부의 1963년 기본시정방침에 따라 아프리카 중립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장
 - 제18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에 대비한 사전 교섭
 - 사절단 구성
 - 단장 이수영 주유엔대사, 단원 김창훈 2등서기관
 - 파견 대상국
 - 리비아, 모리타니아 등 12개국
 - 정부훈령
 - 방문대상국과의 수교교섭 부진을 타개하고 조속한 국교수립 성취를 위해 노력할 것
 - 제17차 유엔총회 시 한국문제 토의에 기권, 결석한 국가들이 제18차 총회에서는 우리입장을 지지하도록 노력할 것
 - 특사단장은 리비아 방문결과 외교관계 수립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리비아 Abbdyya 외무차관이 요청한 바에 따라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안하는 공한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65.7.16. 리비아가 친서방정책으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그간 중단되었던 외교교섭을 재개하도록 주모로코대사관에 지시하였으며, 주모로코대사는 1965.10.9. 모로코 주재 리비아대사에게 공한으로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을 재차 제의함. 그 이후 외무부는 1966.3월 주미국대사 및 1969.3월 주튀니지대사에게도 리비아와의 국교수립을 측면에서 교섭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리비아측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
4. 정부는 1969.9.1. 군사혁명으로 새로이 수립된 리비아 신정권을 1969.9.23. 승인함.

국교수립 교섭 - 네팔

| 69-080 |



생산연도 1969
 생산과 조약1과/동남아1과
 MF번호 C-29/27/1~189(189p)

1. 네팔과 북한은 1969.5.19. 통상 및 영사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동 합의를 5.20. 양측에서 동시에 공표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69.5.21. 최운상 주뉴델리총영사에게 네팔정부가 북한에 대한 영사관 또는 무역대표부 설치를 허가하지 말도록 적극 교섭하라고 지시함.
 - 최운상총영사는 1969.5.21.~30. 네팔에 출장하여 한국이 공관을 설치할 때 까지 네팔측이 영사관 또는 무역대표부 등 북한의 공관개설을 보류하도록 교섭함.
 - 이에 대해 네팔측은 한국과 먼저 영사관계 수립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1969.5.25. 네팔측이 작성한 영사관계 수립 협정안을 최운상 총영사에게 제시함.
 - 외무부는 1969.5.2. 최운상 총영사에게 네팔측이 제시한 협정안에 서명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네팔측이 국내절차상 서명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여 양측이 추후 서명일자를 결정하기로 합의함.
2. 한·네팔 양국은 협정문안을 일부 수정한 후 각각의 국내절차를 거쳐 1969.7.29. 카트만두에서 양측 대표가 서명하였으며, 외무부는 네팔과의 영사관계 수립사실을 1969.8.4. 국무회의에 보고함.
 - 동 협정안은 최운상 총영사가 서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최운상 총영사의 사정으로 한표욱 특사가 1969.7.27.~30. 네팔을 방문하여 서명함.
3. 참고사항
 - 1969.5.19. 네팔·북한 간 통상 및 영사관계수립 합의
 - 1969.7.10. 네팔·북한 간 영사관계수립협정 서명

69-081

국교수립 교섭 - 파키스탄



생산연도 1960-69
 생산과 서남아과
 MF번호 C-29/28/1~225(225p)

1. 정부는 1960.11월 주일본 파키스탄대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파키스탄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2개의 한국을 인정하려는 파키스탄의 태도와 우리 국내의 불안정으로 수교교섭이 진전되지 못함. 그 후 1961.8월 한국 친선사절단의 파키스탄 방문 시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한 결과 파키스탄측이 호의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외무부는 주일본대표부를 통하여 파키스탄과의 국교수립 교섭을 재개하였으나 파키스탄측에서 아직 국교수립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함.
2. 최덕신 외무장관은 1962.7.7. 파키스탄 Ali 외무장관 앞 서한을 통하여 한국과의 국교수립에 대한 호의적 고려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나, 1963.1.23. Ali 외상이 급서함.
3. 최규하 주말레이시아대사는 제17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차 1966.11.29.~12.5. 카라치를 방문하는 계기에 Khan 파키스탄 대통령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국 간 관계개선에 관해 논의한 바, Khan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함.
4. 정부는 1967.8월 동남아경협사절단의 파키스탄 방문 시에도 양국 간 영사관계 수립을 제의한 바, 파키스탄측은 동 제의에 대한 입장을 주일본 파키스탄대사관을 통하여 통보하겠다고 약속함. 이와 관련, 주일본 파키스탄대사관은 1968.1.15.자 공한을 통하여 파키스탄 정부가 한국 총영사관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통보해 왔으며, 정부는 1968.2.27.자 발표문을 통하여 파키스탄에 한국 총영사관을 개설키로 했다고 공표함.
5. 참고사항
 - 1968.4.22. 이슬라마바드에 한국 총영사관 개설
 - 1969.8.1. 카라치에 한국 무역사무소 개설
 - 1966.10. 파키스탄·북한 간 무역협정체결
 - 1967.9.11. 카라치에 북한 무역대표부 개설

국교수립 교섭 - 싱가포르, 전2권. V.1 1966.-67.

| 69-082 |



생산연도 1966-69
 생산과 동남아과/통상1과/조약과
 MF번호 C-30/1/1~280(280p)

1. 정부는 1966.3월 주말레이시아대사관(싱가포르 겸임)을 통하여 싱가포르측에 양국간 영사관계 수립 의사를 표명한 이래 싱가포르와의 교섭을 계속해 왔으나, 싱가포르측은 엄정중립 외교노선에 따라 북한의 존재를 고려하여 우리와의 영사관계 수립에 소극적 반응을 보임.
2.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66.11.28.~12.1. 카라치에서 개최된 Colombo Plan 자문회의 참석 계기에 싱가포르 외상을 면담한 바, 동 외상은 우선 양국간 통상대표부 교환을 희망하고 우리측에서 영사관계 수립을 서면으로 제의하면 신중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이에 따라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67.1.10. 주말레이시아 싱가포르대사에게 영사관계 수립을 제의하는 공한을 전달함.
3. 싱가포르 외상은 1967.4.13. 주말레이시아대사를 초치하여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에 이의가 없으나, 과도적 조치로서 우선 1단계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실상의 영사사무를 취급케 하고, 제2단계로서 한국이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여 통상 및 항공협정을 체결한 후 통상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의함.
4. 정부는 1967.7월 통상협정 체결에 앞서 무역업무와 영사업무를 동시에 취급하는 일반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싱가포르측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싱가포르측은 통상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대표부 설치를 요구하면서 한국측에서 경제사절단을 파견하면 통상협정과 항공협정의 동시 체결교섭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5. 이에 따라 정부는 윤석헌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을 1967.9.25.~11.2. 싱가포르에 파견하여 경제협력 및 무역협정 체결, 항공협정 체결 및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교섭을 하도록 하였으나, 양측 대표단은 협정문안에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해 1967.12월초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6. 참고사항
 - 북한 통상사절단은 1967.5.13. 싱가포르를 방문, 무역협정을 체결함.

69-083

국교수립 교섭 - 싱가포르, 전2권. V2 1968.-69.



생산연도 1966-69
 생 산 과 동남아과/통상1과/조약과
 MF번호 C-30/2/1~140(140p)

1. 한·싱가포르 양측은 한국경제사절단의 1967.9.25.~11.2. 싱가포르 방문 시 타결되지 못한 경제 협력 및 무역협정 문안에 합의하기 위해 계속 의견을 교환함. 싱가포르측은 남북한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한국이 일정량의 싱가포르 공산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문제를 협정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함.
2. 정부는 윤석헌 주필리핀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제교섭단을 1968.2.28.~3.16. 싱가포르에 파견하여 구매액수에 관해 협의하였으나 구매액수 조정에 합의를 보지 못함.
3. 정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싱가포르측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락할 수 없어 협정 체결을 위한 싱가포르와의 교섭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됨.
 - 우리나라는 자유경제체제 국가로서 의무적 수입을 국민에게 강제할 수 없음.
 - 싱가포르의 수출 공산품이 대부분 우리나라 수출 공산품과 중복됨.
 - 우리의 대싱가포르 수출품은 대부분 싱가포르를 중계항으로 하여 재수출되는 품목으로서 싱가포르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품에 대한 대응수입을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4. 외무부는 한·싱가포르 국교수립 차원에서 싱가포르와의 경제협력 및 무역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미국 및 호주 등의 측면지원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함.

국교수립 - 튀니지, 1969.3.31

| 69-084 |



생산연도 1960-69

생 산 과 이중동과

MF번호 C-30/3/1~260(260p)

1. 주이탈리아대사대리는 1960.9.21. 주이탈리아 튀니지대사대리에게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 하였으나 튀니지측으로부터 회답이 없었음. 주이탈리아대사는 1962.3.6. 주이탈리아 튀니지대사에게 양국 간 국교수립을 제의하는 공한을 정식 전달하였으나, 주이탈리아 튀니지대사관은 1962.5.8. 튀니지 현 정세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국교수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 공한을 보내음.
2. 정부는 아프리카 중립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장을 위한 특별사절단을 1963.2.15.~4.25. 아프리카 12개국에 파견하였는바, 동 사절단 단장인 이수영 주유엔대사는 튀니지 외무장관이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문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변하였으므로 튀니지의 민정이양 후에 다시 교섭하는 것이 좋겠다고 외무부에 건의하여, 국교수립 교섭은 일시 중단됨.
3. 그 후 튀니지 외교정책이 우경화하는 경향을 보여, 정부는 주모로코대사를 통하여 교섭을 재개 하였으며, 1965.9월 튀니지 외상이 우리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하며 비상주 외교사절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정보를 입수함. 이에 따라 정부는 1965.9.29. 비상주 외교사절 교환에 관한 외교관계 수립을 튀니지측에 정식 제의함.
4. 튀니지 정부는 1966.6.15. 우리측 제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에 있어 튀니지가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는 유보를 한국정부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정부는 튀니지측 요청을 수락하는 것은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튀니지측 유보에 대해 언급함이 없이 수교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튀니지측은 1967.4.22. 자국 공한(1966.6.15.자)에 대한 우리측 회신을 요청함.
5. 정부는 유보문제 해결을 위해 주프랑스대사를 튀니지에 파견하여 튀니지 대통령 및 외상과 직접 교섭토록 하였으며, 주프랑스대사는 1968.1.26. 튀니지 대통령을 방문함. 튀니지 대통령은 주프랑스 대사에게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동의하며, 1969.1월 이전에 한국대사관을 설치토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외교관계 수립에 앞서 한국총영사관을 튀니지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함. 이에 따라 양국은 1968.5.17. 영사관계수립에 합의하였으며, 정부는 1968.10.1. 튀니지에 총영사관을 설치함.
6. 총영사관 설치 후 정부는 영사관계를 외교관계로 승격하기 위한 문서상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튀니지측에 문의한 바, 튀니지측은 1968.11.1. 별도의 문서상 합의가 불필요하며 우리측에서 편리한 시기에 대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양측은 1969.3.31.자로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69-085

국교수립 교섭 - 트리니다드토바고



생산연도 1962-69
 생산과 중미과
 MF번호 C-30/4/1~106(106p)

1. 정부는 TNT(트리니다드토바고)가 1962.8.31. 영국으로부터 독립함에 따라 동일자로 TNT에 대한 국가승인을 부여하고, TNT와 외교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함.
2. 외무부는 1962.11.30.부터 TNT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하여 주미국, 주브라질, 주멕시코, 주영국 및 주유엔대사 등을 통하여 교섭함.
 - TNT 수상겸 외상은 1963.1.7.자 우리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하여 TNT 정부가 한국과의 수교문제를 여타 정부와의 수교문제와 함께 일괄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통보해 옴.
 - 그 이후 TNT와의 수교교섭은 1969년 말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함.
3. TNT와의 교섭과정에서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음.
 - 1967.12.1. H. Mohammed 주영국 TNT 1등서기관이 주영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본국정부 지시라면서 우리측이 제의한 외교관계 수립의 구체적 내용을 문의함. 이에 대해 주영국대사관은 양국정부가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면 우리측은 검임대사 파견을 고려중이라고 답변함.
 - 그 후, 1968.5.27. Mohammed 1등서기관이 주영국대사관에 전화하여 본국정부가 외교관계 수립을 검토 중이며,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겠다고 연락해 왔으나 그 이후 연락이 없음.

브루나이 영사 관할공관 지정

| 69-086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동남아담당관
 MF번호 C-30/5/1~31(31p)

1. 이화균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영사는 1968.3.5.~12. 브루나이에 출장하여 브루나이거주 동포실태를 파악하고, 외무부에 출장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당초 우리 동포의 브루나이 이주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시행되었던 까닭에 동포사회의 상호관계가 불미스럽게 발전되고,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에도 서로 경쟁이 심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많음.
 - 브루나이, 사바 및 사라와크에 거주하는 동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Jesselton에 상주영사를 파견하며, 상주영사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 2개월마다 순회영사를 파견함.
2. 갈흥기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69.10.22.~11.2. 사바주, 브루나이 및 사라와크에 출장하여 사바주 지사 방문 및 동포사회와 면담하고 출장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브루나이거주 교민들은 취업 또는 방문목적으로 출국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현지에 정착할 생각임으로 이민의 성격을 띠고 있음. 이들이 브루나이에서 2~3년간의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 문제 때문에 최장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지 못하는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해외이민에 준하는 특별고려를 할 필요가 있음.
 - 브루나이에는 207명의 동포가 체류하고 있으나 브루나이 정부관계자들은 우리나라 동포 현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브루나이거주 동포들의 권익보호 및 보호육성을 위하여 브루나이에 검임영사를 파견하는 것이 브루나이 정부측과의 접촉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3.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69.12.3. 브루나이 주재 검임영사관 설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현재 계획상으로 영국군이 1971년도에 브루나이에서 철수할 것으로 예상(브루나이의 외교·국방은 영국이 관장)됨.
 - 이 경우 브루나이가 독립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브루나이에 검임영사관을 설치함이 유익할 것임.

69-087

재외공관 설치 - 주Karachi출장소(파키스탄) 1969.8.1.



생산연도	1968-69
생산과	동남아1과
MF번호	C-30/7/1~55(55p)

1.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68.6.30.~7.2. 카라치를 방문하고, 카라치는 주재국 무역의 중심이며 북한은 카라치에 무역대표부를 두고 있으므로 카라치에 한국직원을 상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청와대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카라치 출장소설치에 대한 원칙승인을 얻은 후,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에 대하여 카라치에 공관 직원 1명을 장기체류시키는 형식으로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도록 1969.4.21. 지시함.
3.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카라치 사무실의 명칭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측과 협의한 결과, 주이슬라마바드 대한민국 총영사관 카라치 무역사무소(The Trade Office in Karachi of the Consulate-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slamabad)로 하도록 파키스탄측의 동의를 얻음.
 - 1963년 비엔나 영사협약에 따라 특권과 면제 부여
4.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1969.8.1. 카라치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고, 초대 소장으로 김기준 영사를 부임시킴.
5. 외무부는 개정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직제”와 신규 제정된 “재외공관의 분관 또는 임시 출장소 설치에 관한 예규”에 따라 1969.10.16. 카라치 무역사무소를 “주이슬라마바드 대한민국총영사관 카라치 출장소”로 명칭을 변경함.
 - 출장소의 대외명칭은 파키스탄측과 합의한대로 “The Trade Office in Karachi of the Consulate-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slamabad”로 사용
 -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카라치 직할(Federal Territory Karachi) 및 하이드라바드 도(Hyderabad Division)

주튀니지대사관 승격 및 관할구역 변경

69-088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30/8/1~8(8p)

1. 한국과 튀니지는 1966.6.15. 외교관계 수립에 원칙 합의함. 다만, 튀니지정부는 정식 외교관계 수립에 앞서 양국이 총영사관계를 수립하고 적당한 기회(1969년 초)에 이를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조치를 우리측에서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 짐.

- 1968.5.17. 양국 간 총영사관계 수립 합의
- 1968.10.1 주튀니지 한국총영사관 개설
- 1968.11.1. 튀니지측은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별도의 문서상 합의가 불필요하며, 우리측에서 편리한 시기에 대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2. 상기 튀니지측 입장 표명에 따라, 정부는 주튀니스총영사관을 1969.3.31.부로 주튀니지대사관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하고 외교관할 및 영사관할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 명칭: 주튀니지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 외교관할 및 영사관할 구역
 - 튀니시아 공화국
 - 리비아 왕국
 - 몰타
 - 싸이프러스 공화국

69-089

주한공관 설치 - 스위스, 1969.6.4.(대리대사급)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30/10/1~20(20p)

1. 스위스 정부는 1963.2.11.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주일본 스위스대사가 한국을 겸임하여 왔으며, 1965.10월부터 주한 명예영사를 서울에 상주시키고 있음.
2. 스위스 정부는 1969.3.17.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주한 스위스명예영사관을 승격시켜 한국에 대사대리급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해 옴.
3. 상기 결정에 따라 1969.6.4.자로 주한 스위스대사관이 개설되었으며, Max Leu가 대사대리로 부임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각료회의, 제4차. 가와나, 1969.6.9.-11. 전3권 V.1 기본문서철

| 69-090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30/12/1~378(378p)



1. 일본 정부는 1969.5.1. 가와나에서 1969.6.9.~11. 개최되는 제4차 ASPAC 각료회의에 최규하 외무부장관의 참석을 초청해 옴.
2. 정부는 동 각료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수석대표 최규하 외무부장관, 대표 엄민영 주일본대사, 강신조 경제기획원 경제조사 과장 등 10명
3. 동 각료회의 대표단이 회의결과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가국
 - 한국, 일본, 호주 등 11개국
 - 회의 성과
 -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는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침략 및 도발행위에 의해 조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상태는 지역안보에 영향을 가져온다는데 대해 깊은 관심 표명
 - 월남평화를 위한 파리협상의 성공을 희망하고 베트남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의 개발 필요성 인식
 - 미군 또는 영국군이 아시아지역으로부터 철수하는 경우에도, 회원국들이 자국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을 때 까지 역외 주요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 인정
 - ASPAC은 개방적 기구로서 ASPAC의 모든 사업은 지역 내 비회원국에도 개방된다는 원칙 확인
 - 전회원국이 식량비료기술센터 설치협정에 서명(센터는 타이베이에 설치)
 - 경제협력센터 설치계획안이 승인되어 협정작성을 위한 실무자회의 방콕개최 예정
4. 동 각료회의 대표단은 회의참석 후 다음과 같이 건의함.
 - ASPAC은 아태지역의 자유국들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 및 협의하는 기구로서 회원국 확대문제 및 문호개방 원칙 적용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며, 특히 공산국가의 ASPAC 참여는 적극 저지 필요

69-091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각료회의, 제4차. 가와나, 1969.6.9.-11. 전3권 V.2 공동성명서 및 연설문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30/13/1~406(406p)

본 문서철에는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제4차 각료회의관련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

1. 공동성명서(Joint Communique of the Fourth Ministerial Meeting of the Asian and Pacific Council) / June. 11. 1969. Kawana
2. 연설문
 - 최규하 외무장관
 - Thanat Khoman 태국 외상
 - Khir Johari 말레이시아 통상산업장관
 - 아이찌 일본 외상
 - Carlos Romulo 필리핀 외상
3. 최규하 외무장관의 일본 언론과의 기자회견 내용 전문
4. 국내언론 및 외신보도 자료
5. 참고자료
 - 아시아태평양이사회 제4차 각료회의 자료(1969.6.4. 외무부 아주국 작성)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각료회의, 제4차. 가와나, 1969.6.9.-11. 전3권 V.3 회의록

| 69-092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30/14/1~256(256p)



본 문서철에는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Asian and Pacific Council) 제4차 각료회의 토의록(Verbatim Record) 전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이사회 임시 의장(Gordon Freeth 호주 외상)의 공식 개회 연설, 이사회 의장 선출(Kiichi Aichi 일본 외상) 및 Eisaku Sato 일본 수상 개막 연설
2. 각국 수석대표 기조 연설
 - 최규하 외무장관은 ASPAC 역내 국가간 문화·종교·언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빈곤 및 문맹 퇴치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여 복지사회를 구축할 것을 강조함.
 - 기타 일본, 월남, 호주, 대만(구 자유중국) 등 8개국 연설
3. 지역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의제 7항)
 - 월남전 관련 파리 평화협상,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구 중공)과의 대화, 공비침투 등 북한의 도발적 활동, 공산권에 대한 봉쇄정책의 재조명 등
4. 상임위원회 보고서 검토
 - 최규하 외무장관은 ASPAC내 식량비료기술센터 및 경제협력센터 설치를 지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에 영향을 주는 문제 토의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를 희망함.
5. 제5차 ASPAC 각료회의 개최 계획
 - 지역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한 토의 계속, 국제회의에서의 역내 국가간 비공식협의 계속, ASPAC 경제협력센터 설치문제 검토, ASPAC 해운협력 계획 검토, 차기 각료회의 상임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 차기 각료회의는 뉴질랜드에서 개최기로 결정

69-093

ASPAC 상설위원회(1968-69년도)

제3-7차. 동경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31/1/1~257(257p)

본 문서철에는 아시아태평양위원회(ASPAC)의 1968 / 69년도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개최결과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개최 장소는 동경).

1. 제3차 회의 보고서(69.1.14.)

-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토의: 월남평화 문제, 중국(구 중공)의 핵실험, 한국에 대한 북한 무장공비 침투, 소련의 동남아 진출,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 및 한국문제 표결 등
- ASPAC 식량비료기술센터 및 경제협력센터 설치에 대한 토의 계속

2. 제4차 회의 보고서(69.2.19.)

- 중국(구 중공) 승인문제가 주요 토의 의제로서, 대만(구 자유중국)은 캐나다, 이태리 등의 중국승인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승인 저지를 위한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함. 한국대표는 한국전쟁때 중국은 유엔에 의해 침략자로 규정되었다고 상기 시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참석국 대표가 모두 중국승인 반대 입장을 표명

3. 제5차 회의 보고서(69.4.14.)

-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토의: 베트남 문제, 중·소 영토분쟁 및 소련의 동남아 진출 정책 등
- 국제회의에서의 비공식협의 및 ASPAC사업에 대해 토의

4. 제6차 회의 보고서(69.5.12.)

- 우리 대표는 EC-121 미정찰기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중국의 동향 및 소련의 동남아 진출 문제 등에 대한 토의 계속

5. 제7차 회의 보고서(69.5.26.)

- 식량비료기술센터 및 경제협력센터 설치에 관한 토의 계속
- 인도네시아의 ASPAC각료회의 참석 요청과 관련, 전회원국이 환영의사 표명

ASPAC 상설위원회(1969-70년도)

| 69-094 |

제1-4차. Wellington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31/2/1~235(235p)



본 문서철에는 아시아태평양위원회(ASPAC)의 1969 / 70년도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개최결과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개최 장소는 웰링턴).

1. 제1차 회의 보고서(69.7.30.)

- 국제회의에서의 회원국간 협력문제와 관련 뉴질랜드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함.
- 식량비료기술센터 설치와 관련 각국의 기여 의사 표명이 있었으며, 한국은 2만달러 기여를 서약함.
-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ASPAC 참여를 계속 교섭하기로 함.

2. 제2차 회의 보고서(69.9.3.)

- 우리 대표(주호주대사)는 제24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시 우리 입장 지지를 요청하고, 일본·호주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한국지지 입장을 표명함.
- 경제협력센터 설치 협정안 초안 작성을 위한 실무자회의 구성에 합의함.

3. 제3차 회의 보고서(69.10.7.)

-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토의: 닉슨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 중국(구 중공)의 서구 진영과의 접촉 동향, 소련의 동·서 양진영 공존 희망 등
- 공산측이 제안한 남북한 유엔 동시초청 제안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우리 입장을 지지기로 함.
- 경제협력센터 실치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12월 초에 방콕에서 개최기로 함.

4. 제4차 회의 보고서(69.11.12.)

-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토의: 닉슨 대통령의 월남문제에 관한 성명, 중·소 국경분쟁 등
- ASPAC 제8차 각료회의를 1970.8.17.~18. 뉴질랜드에서 개최기로 잠정 합의함.

69-095

ASPAC 상설위원회 소위원회(1968-69년도)

제6-18차. 동경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C-31/3/1~106(106p)

본 문서철에는 아시아태평양위원회(ASPAC)의 1968 / 69년도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소위원회(Sub-Committee) 회의 개최결과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개최지는 동경).

1. 제6차 회의(69.1.9.): 식량비료기술센터 설치 기본 계획 및 조건 채택
2. 제7차 회의(69.1.24.): 경제협력센터 설치관련 기능·조직 및 재정부담문제에 관한 태국의 제안 설명 청취
3. 제8차 회의(69.2.7.): 경제협력센터 설치관련 태국측 제안에 대해 토의
4. 제10차 회의(69.3.11.): 식량비료기술센터 설립에 관한 전문가회의 보고서 토의
5. 제11차 회의(69.3.25.): 사무국이 제출한 식량비료기술센터설치 협정안 토의
6. 제12차 회의(69.4.8.): 식량비료기술센터설치 협정안에 대한 토의 계속 및 경제협력센터 설치에 관한 태국 및 일본측 제안에 대해 토의
7. 제13차 회의(69.4.17.): 식량비료기술센터 및 경제협력센터 영문 명칭에 관한 토의
8. 제15차 회의(69.5.10.): 식량비료기술센터 및 경제협력센터 설치 추진 경과 청취
9. 제16차 회의(69.5.15.): ASPAC 각료회의에 제출할 상임위 보고서안 항목별 검토
10. 제17차 회의(69.5.22.): ASPAC 각료회의에 제출할 상임위 보고서안 항목별 검토 계속
11. 제18차 회의(69.6.15.): ASPAC 각료회의에 제출할 상임위 보고서안 항목별 검토 계속

ASPAC 세미나, 제1차. 서울, 1969.5.19.-23.

| 69-096 |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C-31/4/1~41(41p)



본 문서철에는 아시아태평양위원회(ASPAC)의 산하기관인 사회문화센터(Cultural and Social Center)가 주최한 제1차 ASPAC 세미나에 관한 내용임(ASPAC 사회문화센터는 서울에 소재).

1. 세미나 개요

- 기간 및 장소: 1969.5.19.~23. 서울 워커히
- 주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사회·문화협력 증진에 관한 계획의 연구 및 논의
- 참석자: ASPAC 회원국 정부관리, 학자 18명 및 지역외 전문가 4명

2. 세미나 참석자들은 세미나 종료후 다음 사항을 건의함.

- 지역내 학교에서 사용될 자료 준비 및 배포에 사회문화센터(이하 “센터”)가 필요한 역할 수행토록 요청
- 센터가 회원국간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교환 계획을 작성할 것을 요청
- 정보센터 또는 청산소(clearing house)의 역할에 대한 각국 정부의 검토 요청
- 지역내 장학사업 촉진을 위한 회원국 정부의 검토 필요
- 센터가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문화기관의 명단을 작성할 것을 요청

3. 본 문서철내 주요 자료

- 최규하 외무장관 개회사(1969.5.19. 서울)
- 강병규 사회문화센터 사무국장의 1970년도 사업계획 보고
- 제1차 ASPAC 세미나 결과보고서(Summary Report)

69-097

강병규 ASPAC 사회문화센터 사무국장 아주순방, 1969.2.27-4.19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31/5/1-31(31p)

1.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산하기관인 사회문화센터(Cultural and Social Center)의 강병규 사무국장이 ASPAC 당국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회원국을 순방한 내용임.

2. 순방국가 및 기간

- 월남 1969.2.28.~3.4., 태국 3.4.~10., 말레이시아 3.10.~15., 싱가포르(경유), 호주 3.17.~22., 뉴질랜드 3.23.~29., 대만(구 자유중국) 4.1.~6., 필리핀 4.6.~12., 일본 4.12.~19.

3. 강병규 사무국장의 순방 성과

- 회원국 외무·문교·공보 장관 등을 예방하여 사업계획을 협의·조정하였으며, 회원국들은 ASPAC 장학 제도 설립, 예술인단 교환·하계 선상(船上)대학 운영 등을 제안함.
- ASPAC에 대한 회원국들의 인식이 미흡하여 대학, 문예인 단체, 언론기관, 예술시설 등을 방문하여 센터의 역할에 대해 홍보함.
- 회원국 각 기관의 사회문화관련 자료수집 체계를 확립함.
- 회원국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을 “아스팍 장학금”이라 호칭하는데 합의하고, 센터가 회원국을 대신하여 장학금 공고와 주선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
- 역내 문화 및 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아스팍 문화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함.
- 동남아 교육각료회의, 아시아 신문재단 등 역내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기관과 센터간 횡적 협력방안을 강구함.
- 순방중 비공식 회합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상에 대해 홍보함.

Aguilar, Jorge M. ASPAC 관계인사 방한, 1969.11.24.-12.1.

| 69-098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31/6/1~33(33p)

1. 아시아태평양위원회(ASPAC) 전문가등록처(Registry)의 Jorge Aguilar 부국장이 ASPAC 회원국 순방계획에 따라 1968.11.24.~12.1. 방한함.
2. 동인은 방한 기간 중 외무부, 과학기술처, 농림부, 상공부, 건설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및 전경련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짐.

69-099

ASPAC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8-14차. 서울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C-31/8/1~209(209p)

1. 참석자: 회원국 대표(주한 대사관 관계관 참석)

- 회원국: 한국, 호주, 대만(구 자유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월남

2. 회의 개최일자

- 제8차 실무회의(1969.5.5.): 제1차 ASPAC세미나 개최 준비 현황 청취, 제4차 ASPAC 각료회의에 제출할 사무국장 보고서 검토
- 제9차 실무회의(1969.6.5.): ASPAC 계간지 발간 및 사업예산 배정 토의
- 제10차 실무회의(1969.6.24.): 사무국장의 제4차 ASPAC 각료회의 참석 보고 청취 및 1970년도 운영비 예산 심의
- 제12차 실무회의(1969.9.17.): 장학생 교환, 교육자 세미나관련 토의
- 제13차 실무회의(1969.10.3.): 사무국 연례 보고서 및 재정현황에 대한 청취, 센터 이사회 의장 선출 (최규하 외무장관)
- 제14차 실무회의(1969.12.17.): 197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사업비 138,000달러 계상), 1969년 연례보고서 초안 검토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4차. 서울, 1969.2.19.

| 69-100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C-31/9/1~98(98p)



1. 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1969.2.19. ASPAC 사회문화센터
2. 의장: 최규하 외무부장관
3. 참석자: 뉴질랜드대표를 제외한 회원국대표(주한 대사관 관계관) 전원 참석
 - 회원국: 한국, 호주, 대만(구 자유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월남
4. 주요 토의 의제 및 결과
 - 특별세미나(69.5.19.~23.) 개최준비에 관한 사무국장의 보고 청취
 - 세미나 개최관련 구체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실무그룹 또는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키로 함.
 - 세미나에 참석하는 각국 정부대표가 센터 사업계획의 우선순위에 관한 국별보고서를 제출토록 권고함.
 - 197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심의
 - 대부분의 위원들이 1970년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규모를 1969년도 예산 한도내에서 책정하자는 의견을 피력함.
 - 일부 위원들은 현단계에서는 센터의 기반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아스팍의 밤 축제 및 민속무용 제전” 등 사업은 우선순위를 낮출 것을 제의함.
 - 센터 전문직 직원에 대한 주택수당 지급여부는 추후 다시 토의키로 함.
 - 호주 및 필리핀이 추천한 인사를 각각 사회문화부장(P-4) 및 섭외 및 공보담당(P-3)으로 임명함.

69-101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5차. 서울, 1969.5.15.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C-31/10/1~165(165p)

1. 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1969.5.15. ASPAC 사회문화센터
2. 의장: 최규하 외무부장관
3. 참석자: 뉴질랜드대표를 제외한 회원국대표(주한 대사관 관계관) 전원 참석
 - 회원국: 한국, 호주, 대만(구 자유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월남
4. 주요 토의 의제 및 결과
 - 제1차 ASPAC 세미나 개최준비에 관한 사무국장의 최종 보고 청취
 - 회원국들은 세미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세미나 성공을 위한 협조를 약속
 - ASPAC 각료회의에 제출할 집행위원회 의장(한국 외무부장관)의 보고서 초안 검토
 - ASPAC 사무국에서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잠정적으로 채택하고, 1969.5.19.~23.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차 아스팍 세미나에 관한 내용을 추가
 - 69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서 심의
 - 서울의 주택난을 고려하여, 전문직 직원에 대한 주택수당 지급을 승인
 - 7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심의·채택
 - 회원국들은 대체로 1970년도에도 현년도 수준의 기여금 제공 의사를 밝혔으며, 구체적인 예산심의는 차기 회의로 연기 결정
5. 기타 자료: 제4차 임시회의 잠정 토의기록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6차. 서울, 1969.6.26.

| 69-102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C-31/11/1~151(151p)



1. 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1969.6.26. ASPAC 사회문화센터
2. 의장: 최규하 외무부장관
3. 참석자: 회원국대표(주한 대사관 관계관) 전원 참석
 - 회원국: 한국, 호주, 대만(구 자유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월남
4. 주요 토의 의제 및 결과
 - 197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 심의
 - 사무국장이 예산요구서(총액 \$224,710)에 대해 제안 설명
 - 회원국들에 대한 기여금 추가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부 항목의 예산 조정
 - 사무국장의 ASPAC 제4차 각료회의(1969.6.9.~11. 일본 가와나) 참석보고 청취
 - 각료회의가 성공적이었으며,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는 보고 청취
 - 제1차 아스팍 세미나 종료에 관한 사무국장 보고 청취
 - 센터의 1969년도 주요 사업으로서 회원국의 지원과 협조로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는 보고를 청취
 - 회계 감사관 임명: 사무국장이 후보자 2~3명을 추천하고, 차기 위원회에서 선정 예정
5. 기타 자료: 제5차 임시회의 잠정 토의기록

69-103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7차. 서울, 1969.8.6.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C-31/12/1~197(197p)

1. 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69.8.6. ASPAC 사회문화센터
2. 의장: 최규하 외무부장관
3. 참석자: 회원국대표(주한 대사관 관계관) 전원 참석
 - 회원국: 한국, 호주, 대만(구 자유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월남
4. 주요 토의 의제 및 결과
 - 1970년도 운영비 예산 심의·채택
 - 우리 정부에서 \$96,000을 공여할 것을 약속
 - 사무국이 요청한 일반직원 증원 문제는 추후 적절한 시기에 검토기로 합의
 - 1970년도 행정비 예산 심의·채택
 - 사무국이 요청한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예산안 채택
 - 1969년도 회계감사를 위하여 "Peat, Marwich & Co."를 회계감사관으로 임명
 - 센터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무국장 보고 청취
 - "ASPAC Quarterly"는 대중에게 알려질 때 까지 회원국 정부 또는 관계기관을 통해 배포기로 결정
5. 기타 자료: 제6차 임시회의 잠정 토의기록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2차. 서울, 1969.11.7.

| 69-104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C-31/13/1~124(124p)



1.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산하기관인 사회문화센터의 집행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가 1969.11.7. 서울에서 개최됨(ASPAC사회문화센터는 서울에 소재).
 - 한국, 호주, 대만(구 자유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월남 등 ASPAC 회원국 대표 전원이 참석함.
 - 우리나라는 의장인 최규하 외무부장관의 유엔총회 참석으로 진필식 외무차관이 대리 참석함.
2. 사회문화센터의 집행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협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무국 제출 센터운영에 관한 연차보고서·재정보고서 승인
 - 센터설치 1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사무국장의 보고 청취
 - 도서실 사서관 모집을 위한 경비 승인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장 최규하 외무장관 및 부의장 Loomes 주한 호주대사 재선
 - 1970년도 회원국 기여금의 확약 및 자금현황에 관한 보고
 - 호주와 대만 정부에서 당초의 추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확약(호주 9,378달러, 대만 5,000달러)
 - 일본정부 이미 확약한 62,000달러 지급
 - 우리정부는 1970년도 행정비로서 96,000달러 전액을 지급
 - 1971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구상
 - 센터 사무국이 1971년도(1970.7.1.~1971.6.30.) 사업계획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사회변동에 관한 연구, 언론인들의 교류증진 및 사회분야에서의 활동 등의 필요성을 제기함.
 - 위원 일동은 센터의 설치협정과 1969.5월의 제1차 세미나에서 권고로 채택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사업 규모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대신 성과가 나타나는 실질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에 치중하라는 의견을 제시함.

ASPAC 식량비료기술센터 설립경위 및 계획서



생산연도 1967-69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C-32/1/1~349(349p)

1. ASPAC 식량비료기술센터(Food and Fertilizer Technology Center) 설립이 추진된 경위는 다음과 같음.
 - 대만(구 자유중국)은 1966.6월 서울에서 개최된 ASPAC 제1차 각료회의에서 “식량 및 비료은행” 설치를 제안
 - 대만은 1967.2.6. 식량·비료은행과 농업기술 교환센터를 통합한 수정제안을 ASPAC 제5차 분과 위원회에 제출
2. ASPAC 회원국들은 대만측 수정제안을 토대로 상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동 센터 설치 협정문안에 대해 협의함.
3. 우리 정부는 비료 및 식량을 수년 내 자급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면에서의 혜택은 곧 없어질 것이며, 수출면에서의 혜택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동 센터설치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임.
4. ASPAC은 식량비료기술센터 설치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1969.2.23.~3.1. 타이베이에서 개최하여 동 센터 설립협정 초안에 대해 협의하였는바,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센터의 목적
 - 아태지역의 식량증산과 농민소득 증가를 위하여 화학비료 사용 및 현대식 농사법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경험의 회원국 간 교환
 - 센터의 기능
 - 식량증산에 관한 회원국 간 긴밀한 협조, 화학비료 응용을 통한 식량증산 정보 수집, 회원국의 식량 및 화학비료 생산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정보 교환, 회원국 노동자 훈련 및 전문가 세미나 개최, 회원국내 시범사업 시행 등
 - 센터의 기구 및 인원
 - 사무국에 기술담당과와 행정담당과 설치, 초창기에는 5명의 전문 직원 채용
 - 센터 예산: 주최국과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에 의한 부담

ASPAC 식량비료기술센터 집행위원회, 제1차. Taipei, 1969.12.2.

| 69-106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32/2/1~41(41p)



1. ASPAC 제4차 각료회의(1969.6.9.~11. 일본 가와나)는 ASPAC 식량비료기술센터를 설치키로 합의하고, 동 센터의 설치 협정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함.
2. 센터설립규정에 따라 집행위원회 제1차 회의가 1969.12.2, 타이베이에서 개최되어 ASPAC 회원국 대표(대만 주재 대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김 신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가 한국대표로 참석함.
3. 김 신 대사의 ASPAC 식량비료기술센터 집행위원회 참석에 따른 정부의 훈령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사무국장은 대만측이 지명하는 인물을 원칙적으로 지지함.
 - 집행위원회 working group 설립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함.
 - 센터 설립 협정문 부속서 guide principle에서 규정된 사무국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interim office의 설치에 이의 없음.
 - 1970.1.1. 센터 설립에 이의 없음.
 - 센터의 운영예산은 설립협정문에 부속된 guide principle에서 제시된 예산안을 예산편성의 기초로 할 것이며 규정된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는 제1차년도 기여금을 1970년도 정부 예산안에 15,000미달러를 계상하고 있는바 확정 되는대로 대만측에 정식 통보할 것임.
4. 집행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의장(대만) 및 부의장(대만주재 호주대사) 선출
 - 집행위원회 의사규칙 채택
 - 센터 사무국장(대만인 Mr. Chu) 선출
 - 센터 운영비
 - 대만 58,760미달러(행정비), 일본 30,000미달러, 한국 15,000미달러, 호주 13,600호주달러(약 15,000미달러), 뉴질랜드 10,000뉴질랜드달러(약 11,250미달러)
 -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월남은 미정
 - 센터 개관: 1970.4월 중순경
 - 집행위원회 Working Group 구성
 - 집행위원회 각국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 1명의 대표를 파견키로 함.

아랍 정상회담, 제5차. Rabat(모로코) 1969.12.21.-23.



생산연도 1967-69
 생산과 아중동과
 MF번호 C-32/3/1~172(172p)

1. 1967.12.9.~11. 카이로에서 개최된 아랍 외상회의는 제5차 아랍 정상회담을 1968.1월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기로 결정하였으나, 아랍연맹이사회는 중동문제 및 예멘사태에 대한 각국의 견해 차이로 동 정상회담 개최를 무기연기하기로 1968.1.8. 결정함.
2. 아랍연맹은 동 정상회담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모로코에 막후 교섭을 일임하였고, 모로코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다가, 1969.11.8.~11. 카이로에서 개최된 아랍방위이사회에서 제5차 아랍정상회담을 1969.1.21.~23.간 라바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3. 제5차 아랍정상회담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가국
 - 11개 아랍국가 정상 및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
 - 시리아, 이라크, 튀니지는 불참
 - 참가국들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공동성명서 내용에 합의를 보지 못해 성명서도 발표 되지 못하는 등 구체적 성과가 없음.
 - 비공개리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이 결정됨.
 - Yasser Arafat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 휘하 병력에 대한 재정지원 증대
 - 이집트에 4천만파운드 상당의 원조증액을 결정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리비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할 것을 약속함.

이슬람 정상회담, Rabat(모로코) 1969.9.22.-25.

| 69-108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이중등과

MF번호 C-32/4/1~43(43p)

1. 1969.8.21. 이스라엘군 점령 하에 있던 예루살렘 소재 Al-Aqsa 사원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소집된 아랍연맹외상회의는 이슬람정상회담 개최를 결의하고, 정상회담 개최준비를 모로코에 위임함. 이에 따라 모로코는 7개국 외상으로 구성된 이슬람정상회담 준비위원회(1969.9.8.~9. 라바트)를 소집하였으며, 준비위원회는 정상회담을 9.22.~24. 사이에 라바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2. 이슬람정상회의는 초청된 32개국 중 2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969.9.22.~25. 라바트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류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인 이슬람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보존할 것을 결의함.
 - 1969.8.21. 발생한 Al-Aqsa 사원의 화재는 6억 이슬람 신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동 화재가 이스라엘군의 점령 하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중동의 긴장을 조성하고 전세계 시민의 분노를 야기시켰다는 사실을 지적함.
 -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한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은 1967년 이전의 지위로 회복되어야한다고 주장함.
 -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강대국 및 국제기구에 대해 점령지역해방을 위한 지원을 요청함.
3. 주모로코대사관은 동 정상회의 개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외무부에 보고함.
 - 동 정상회의는 아랍 강경파가 의도했던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한 이슬람제국의 결속 보다는 이란,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온건파가 의도했던 종교적 결속 색채가 우세하여, 아랍계 이슬람제국 및 비아랍계 이슬람제국의 대결에서 비아랍계 이슬람제국이 승리한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정상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라크 및 시리아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이들 2개국은 정상회의 개최 전에 이란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한 국가승인을 취소하지 않으면 정상회의에 참석치 않겠다는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요구함.

69-109

OAU(아프리카 단결기구) 정상회담, 제6차. Addis Ababa (이디오피아) 1969.9.7.-10.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32/5/1~28(28p)

1969.9.7.~10.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12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정상회담 결과에 대하여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참가국

- 41개 회원국 중 39개국 참가(모리셔스 및 레소토 불참)

2. 결의 내용

- OAU의 1969~70년 예산(약 250만달러) 승인
- OAU Liberation Committee를 위한 특별기금 배정
- 아프리카 피난민에 관한 조약안 채택
- 남아공, 로데시아, 모잠비크, 앙골라 등 외국 지배 하에 있는 영토의 해방과 민족격리정책에 관한 결의문 채택
- Pan African News Agency 창설, 아프리카 상공회의소 연합회 구성 등 아프리카 지역내 협력강화를 위한 결의문 채택

신정부 승인에 대한 한국의 입장

| 69-110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C-32/6/1~31(31p)

1. 미 국무부는 1969.6월 탈헌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취득한 신정부 승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신정부 승인정책에 관해 문의하면서 특히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알려줄 것을 요청함.

- 한국정부가 “Estrada Doctrine”(정부가 아닌 국가만 승인)을 적용하는지 또는 승인에 관한 전통적 관행을 적용하는지 여부
- 한국정부가 ‘승인’과 ‘외교관계 유지’간에 구분을 두는지 여부
- 신정부 승인에 관한 한국정부의 기준은 무엇인지

2. 미국측 질의에 대한 우리 입장은 다음과 같음.

- 한국정부는 국가 또는 정부 승인에 관한 일반적 국제관행을 따름. 한국정부는 신생국가가 정당한 승인을 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국가를 승인함. 국가승인은 통상적으로 정부승인을 수반함. 신생정부가 탈헌법적인 방법으로 등장할 경우 승인에 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함.
- 한국정부는 ‘승인’과 ‘외교관계 유지’간에 명백한 구분을 둠. 국가 또는 정부승인이 반드시 외교관계 수립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의미에서 외교관계 단절이 반드시 문제되는 국가 또는 정부에 대한 승인철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님.
- 한국정부는 신정부에 대한 승인은 필수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입장임. 신정부 승인에 관한 기준은 효율적 영토 통치, 국가 조직의 보유, 정부의 권위에 대한 공공의 묵인과 더불어 국제적 의무 준수 의지, 국제법 원칙 및 규율을 준수할 의사 등 전통적 조건이 기준임. 이와 같은 일반적 고려 이외에 신정부의 정치적 성격 특히 북한에 대한 신정부의 입장이 결정적으로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됨.

3. 미 상원은 1969.9.25. 외국정부 승인에 관한 Cranston 결의안을 채택한 바, 동 결의안 제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목
 - A Resolution (S.RES.205) to set forth as an Expression of the Sense of the Senate a Basic Principle regarding the Recognition by the United States of Foreign Governments
- 결의 내용
 - 미국이 외국정부를 승인하고 외국정부와 외교대표를 교환하는 것은 미국이 그 외국정부의 형태, 이데올로기, 또는 정책을 인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 상원의 인식임.

69-111

신정부 승인 - 볼리비아, 1969.10.8.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32/7/1~22(22p)

1. 1969.10.4. 개최된 국무회의는 외무부장관이 제출한 ‘볼리비아 신정부 승인’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안건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볼리비아의 1969.9.16. 군사 쿠데타는 성공하고 신정권은 동국 전역을 유효히 장악하고 동국은 평온을 유지하고 있음.
 - 볼리비아 신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국제적 의무나 조약을 존중할 것으로 보임.
 - 1969.9.29. 현재 신정부 승인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2개국으로 소수이나 기타 우방국가들은 아직 관망상태이며, 미주기구(OAS)와의 협의가 있는 후 미국을 위시한 중남미 각국 정부가 신정부를 승인할 것으로 보임.
 - 볼리비아와 한국과의 관계 중 특히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와 관련하여 주유엔대사는 우리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신정부를 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1969.9.30. 건의함.
2. 최규하 외무장관은 1969.10.8.자 Soto 볼리비아 외무장관대리 앞 서한을 통하여 한국정부가 볼리비아 신정부를 승인함을 통보함.

신정부 승인 - 리비아, 1969.9.13.

| 69-112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32/8/1~32(32p)

1. 1969.9.12. 개최된 국무회의는 1969.9.1. 육군 쿠데타로 입헌군주국에서 공화국이 된 리비아 아랍공화국에 대하여 외무부장관이 상정한 ‘리비아아랍공화국정부 승인’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안건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우리의 신정부에 대한 기본정책은 신정부가 공산정권이 아닌 한 조속히 승인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있음.
- 리비아 혁명정권은 ‘자유, 사회주의, 아랍통합’을 혁명구호로 내세워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할 것으로 관측되나, 현재로서는 그 진로와 성격이 뚜렷하지 않음.
- 신정권은 성명을 통해 모든 국제공약을 준수하며,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과 대외정책에는 변동이 없음을 다짐함.
- 리비아는 세계 유수의 석유 생산국으로서,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며 경제는 주로 석유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됨.
- 1969.9.1. 신정부 수립 후 자국 석유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신정권을 승인하였으며, 미국 역시 군사적, 경제적 이유로 신정권을 승인함.
- 리비아는 막대한 석유자원과 유럽 제국 및 미국의 시설투자자와 개발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면적에 비하여 인력 부족을 느끼고 있는 바, 우리로서는 인력 수출 및 수출시장 개척의 여지가 있으므로, 리비아 신정권을 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2. 최규하 외무장관은 1969.9.13.자 리비아 신정부 외무장관 앞 전문으로 한국정부가 리비아 신정부를 승인함을 통보함.

69-113

신정부 승인 - 파키스탄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32/9/1~20(20p)

1. 파키스탄의 Yahya 장군은 전국적인 무정부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Ayub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태수습을 요망하여 왔으므로 1969.3.26. 계엄령을 선포하였다고 발표함.
2. 영국은 1969.3.26. BBC방송을 통하여 Ayub 대통령이 Yahya 장군에게 정권을 인계하였으므로 승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인도는 신정권과 관계개선을 희망한다고 발표하여 사실상의 승인조치를 취함.
3. Yahya 장군이 1969.3.31. 공식으로 파키스탄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이슬라마바드 총영사에게 파키스탄 외무성을 통하여 파키스탄 신정부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구두로 표명토록 지시함.
4.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Yahya 파키스탄 신임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앞으로 양국간 기존 우호관계 증진을 희망하는 우리 대통령의 친서를 Yahya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 하였는바, 동 건의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의 Yahya 대통령 앞 친서가 1969.6.3. 주이슬라마바드 총영사를 통하여 Yahya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됨.

재한일본인 귀환문제

| 69-114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25/19/1~30(30p)



법무부는 1945.8.15. 해방 전부터 거주해 오던 재한 영주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영구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절차를 1969.1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거류신고 및 등록절차를 필하여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가 영구 귀국을 희망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출국토록 조치함.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거주하여 온 자가 영구 귀국을 희망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출국권고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출국토록 함.

재한일본인 귀환문제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C-32/11/1~55(55p)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69.2.25.자 외무부 앞 비망록을 통하여, 한국에 영주하고 있는 일본인 및 일본계 한국인중 일본귀환을 희망하는 자가 많으므로, 그들의 귀환을 위해 한국정부가 협조(그들의 실태 조사, 외국인 등록을 필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벌금부과에 있어서의 특혜, 여권 발급·출국수속 등에 있어서의 호의적 조치 등)해 줄 것을 요청해 옴.
2. 외무부는 국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일본측 요청사항에 대한 우리측 비망록을 1969.7.9.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하였는바, 비망록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측 요청사항(특히 한국에 영주하고 있는 일본인 및 일본계 한국인의 현황 조사, 일부 해당자에 대한 벌금의 감액 또는 면제)은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요청함.
 - 일본측 요청사항은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고려될 것임.
 - 여행증명서는 필요한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귀국 희망자에게 발급될 것임.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 V.1 사전준비

| 69-116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경제협력과

MF번호 C1-21/1/1~377(377p)

1. 1969.5월 일본정부가 제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를 8월 도쿄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6.11. 도쿄에서 만난 최규하 외무장관과 아이치 기이치 외상이 8.26.~27. 일정에 합의함.

● 예비협회의 성격으로 무역 분야를 위시하여 별도의 실무회담을 갖기로 결정

2. 이후 외교경로를 통한 교섭으로 회의의 개요를 아래와 같이 정함.

● 참석범위

- 각료 6명: 경제기획원-경제기획청, 외무부-외무성, 재무부-대장성, 농림부-농림수산성, 상공부-통상산업성, 교통부-운수성 장관
- 대사, 국세청장, 수산청장

● 회의운영

- 전체회의, 개별각료회의
 - 공동성명 채택
- 합동기자회견

● 기타 일정

- 사토 에이사쿠 총리 예방
- 사토 에이사쿠 총리 주최 만찬

3. 각료회의 개최 결정에 앞서 사토 에이사쿠 총리와 정일권 국무총리가 한국 각료를 방일 초청하고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서한을 교환하는 형식절차를 밟음.

4. 한국측은 1969.7월 경제기획원에서 3회에 걸쳐 국장급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분야 의제별 대책을 수립함.

69-117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 V.2 의제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경제협력과

MF번호 C1-21/2/1~337(337p)

제3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 대비하여 경제기획원이 각 부처로부터 제2차 각료회의 합의 추진 현황, 문제점, 대처방안에 관한 입장을 취합하여 외무부에 일본 정부와의 교섭을 의뢰한 경제 분야 대책은 다음과 같음.

1. 경제협력

- 1967년 합의한 상업차관 2억달러 도입
- 1970년분 어업·선박차관 3천만달러 도입
 - 1965년 수교당시 합의한 어업·선박차관 1억 2천만달러의 일환
-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한 청구권 자금 사용
- 중과세방지협정 체결
- 투자조사단 파한
- 재일한국인 신용조합 인가
- 재일한국인 본국송금한도 증액

2. 무역

- 한국의 보세가공수출품 원자재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품목 확대
- 한국산 1, 2차 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3. 농수산물 수출

- 수입기간 철폐 등 해태(김) 교역방식 개선

4. 해운

- 신규 선박차관 5천만달러 도입
- 해운협정 체결교섭

5. 외무부는 정무분야에 관하여 하기 대책을 수립함.

- 안보
 - 한반도 및 국제정세 평가, 안보협력
- 양국현안
 - 재일한국인 영주권 취득 촉진, 처우개선(경제활동, 출입국, 교육), 사할린교포 귀환
 - 일본-북한 관계 발전 억제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 V.3 결과보고

| 69-118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경제협력과

MF번호 C1-21/3/1~485(485p)

제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참석자

● 한국

- 김학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최규하 외무, 황중률 재무, 조시형 농림, 김정렴 상공, 강서룡 교통부 장관, 엄민영 주일본대사, 이낙선 국세청장, 김재식 수산청장

● 일본

- 아이치 기이치 외무, 후쿠다 다케오 대장, 하세가와 시로 농수산, 오히라 마사요시 통상산업, 하라다 켄 운수상, 칸노 와타루 경제기획청 장관, 가나야마 마사히데 주한대사, 요시쿠니 지로 국세청 장관, 모리모토 오사무 수산청 장관

2. 각료회의 결과(전체회의 및 개별 각료회의)

● 양국관계 일반에 관한 합의

- 장기적 관점에서 호혜관계 발전 추구
-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협력
- 아시아태평양 이사회(ASPAC) 발전을 위해 협조
- 재일한국인의 교육과 생활향상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
- 재일한국인의 본국송금 한도 철폐: 귀국 시 지참금 한도 인상(1만달러 → 5만달러)

● 경제 분야에 관한 합의

- 한국의 종합제철공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일본조사단 파견
- 이중관세방지협정 체결 촉진
- 한국의 보세가공수출품에 대한 원자재 관세면제 대상품목 확대 적극검토
- 한국산 해태(김) 수입기간 철폐문제의 점진적 해결

3. 한국대표단은 8.26. 사토 에이사쿠 일본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한 협력을 요청함.

4. 각료회의를 전후하여 일본 언론도 종합제철공장 건설문제가 각료회의의 최대현안이라고 크게 보도함.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 V.4 자료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경제협력과
MF번호 C1-21/4/1~322(322p)

제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의 양국 주요인사 발언요지는 아래와 같음.

1. 개회인사

- 한국 수석대표(김학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 격동하는 아시아 정세 속에서 양국의 협력 중요
 - 한국의 경제발전과 방위력 증진을 위한 일본의 협력 필요
 - 교역의 확대균형, 경제협력 증진이 바람직
- 일본 수석대표(아이치 기이치 외상)
 - 양국 간 현안의 건설적인 해결과 다자관계 사안에 대한 이해증진 기대
 - 양국의 우호협력과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노력 희망

2. 전체회의에서의 경제분야에 관한 한국 수석대표 발언

- 일본 투자조사단 파한 요망
- 1백만 톤 생산규모 종합제철공장 건설지원 기대
- 기타 경제분야에 관한 한국입장 설명

3. 전체회의에서의 정무분야에 관한 최규하 외무장관 발언

-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처 현황
- 양국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지역평화를 위한 협력 기대

4. 폐회인사

- 한국 수석대표
 - 경제분야에서의 논의진전 평가(종합제철공장 건설, 이중과세방지, 무역, 농수산, 해운 분야 등)
- 일본 수석대표
 - 종합제철공장 건설문제 취급방안에 관한 건설적 합의 평가
 - 이중과세방지협정 추진합의 평가

5. 각료회의에 앞서 외무부는 각 부처와 주일대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한일 간 주요 현안 문제에 관한 아축 입장” 제목의 자료를 작성함.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 V.5 관계부처 협조

| 69-120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경제협력과

MF번호 C1-21/5/1~501(501p)

제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를 앞두고 각 부처가 작성하여 외무부에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음.

1. “일본조사단 보고서”(1969.5월 상공부 조사단 방일결과)

- 일본경제와 부문별 산업 현황
 - 노동집약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한국과의 협력필요성이 증대하였다고 평가
- 양국 간 무역현황과 분야별 대책(아래와 같은 대책을 건의)
 - 농수산, 섬유, 전자분야 개발수출
 - 섬유, 기계, 정밀산업분야의 합작투자와 제3국 시장 공동진출
 - 한국의 위탁가공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확대

2. “관세인하요구 자료”(1969.7월 및 8월 재무부 작성)

- 기본방향
 - 일본이 케네디 라운드에서 기본관세의 50%를 인하하지 않은 것을 50% 인하
- 대상품목
 - 농산물은 콩(소두), 인삼차, 생사, 견직물
 - 축산물은 돈육, 우유
 - 수산물은 해태(김), 한천, 해초, 성게 젓, 마른 오징어
 - 광·공산품은 텅스텐, 합판, 나일론사
 - 기타 한약재 등

3. 경제기획원은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1968년의 일본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1969년의 전망을 분석한 “일본경제의 동향” 제목의 자료를 작성함.

- 국민총생산, 무역, 국제수지, 대외원조, 통상산업 정책방향 등의 항목으로 구성

69-121

월남참전 7개국 외상회의(비공식) New York, 1969.9.20.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2과/북미2과

MF번호 Re-17/5/1~339(339p)

1. 미국은 1969.9월로 예정된 유엔총회에 즈음하여 여기에 참석하는 월남 참전 7개국 외무장관의 비공식 회의 개최를 추진함.

● 참전국은 월남, 미국, 한국,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2. 이에 따라 외무부는 미국, 월남 등 관련국가 주재공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참고하여 회의의 핵심의제인 파리평화협상과 참전국군 철군계획에 관해 아래와 같은 기본입장을 수립함.

- 참전국군의 철수와 월남군으로의 대체는 월맹의 상응하는 조치와 월남군 증강의 수반이 전제
- 라오스와 캄보디아로부터의 월맹군 철수 필요
- 참전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바람직

3. 뉴욕에서 9.20. 개최된 회의결과는 아래와 같음.

● 참석자(외무장관) 및 진행방식

- 홀리오크(뉴질랜드 총리 겸 외무장관), 최규하(한국), 로저스(미국), 탄(월남), 코만(태국), 로물로(필리핀), 프리드(호주)
- 로저스 국무장관이 원탁회의 형식으로 주재

● 회의내용

- 월남 대표단이 군사정세와 월남군 증강계획 추진현황 설명
 - 미군 철수계획에 따른 월남군 증강계획은 1971년 완료가 목표
- 미국 대표단이 월남전의 “베트남화” 계획 설명
 - 군사분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 사업
 - 참전국군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 최규하 장관은 상기 “2”의 한국입장을 표명
- 참전국 대표들은 “베트남화” 계획에 원칙적으로 찬성
 - 호주 등은 일정한 수준의 미군 유지 필요성 언급

월남참전 7개국 외상회의, 제3차, Bangkok, 1969.5.22. 전2권 V.1 기본문서철

| 69-122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Re-17/4/1~427(427p)

1. 1969.3월 태국의 코만 외무장관은 서한으로 동남아조약기구(SEATO) 각료이사회 5월 개최를 계기로 제3차 월남 참전 7개국 외무장관회의를 방콕에서 갖고자 한다면서 최규하 외무장관의 참석을 초청함.
2. 이에 따라 외무부는 경제기획원, 국방부, 중앙정보부, 주월남대사관과의 협의와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아래와 같은 입장을 수립함.
 - 파리평화협상
 - 월남 정부와 국민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연립정부 수립과 중립화 정책에 반대
 - 미군 철수는 월맹의 상응한 조치 수반이 전제
 - 모든 참전국의 월남문제 해결과정 참여 필요
 - 경제분야
 - 한국의 월남 전후복구사업 참여 희망
 - 기타
 - 오키나와의 일본반환은 미군기지 사용이 제한받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
3. 1969.5.22. 방콕에서 개최된 회의결과는 아래와 같음.
 - 참석자(외무장관)
 - 홀리오크(뉴질랜드 총리 겸 외무장관), 최규하(한국), 로저스(미국), 탄(월남), 코만(태국), 로몰로(필리핀), 프리드(호주)
 - 회의결과(공동성명)
 - 파리평화협상에 관한 미국과 월남 정부 입장 지지
 - 연립정부 수립 반대
 - 모든 외국군대의 동시철수 촉구
 - 월남 문제의 자주적, 평화적 해결 지지
 - 한국의 북한침략 저지노력 지지
4. 최규하 장관은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과 별도회담을 갖고 한국군 증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함.

69-123

월남참전 7개국 외상회의, 제3차. Bangkok, 1969.5.22. 전2권 V.2 자료철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1-22/2/1~335(335p)

제3차 월남 참전 7개국 외무장관회의에 앞서 여타 참전국은 미국과 월남 정부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사전에 전달해온 초안을 검토하여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이를 반영한 공동성명이 회의에서 채택되었는바, 동 회의에서의 주요국가 대표 연설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최규하 한국 외무장관

- 월남 정부와 국민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연립정부 수립과 중립화 정책에 반대
- 미군 철수는 월맹의 상응한 조치 수반이 전제
- 모든 참전국의 월남문제 해결과정 참여 필요
- 오키나와의 일본반환은 미군기지 사용이 제한받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
-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 지원 요망

2. 트란 찬 탄 월남 외무장관

- 월남의 민주화 노력 진전
- 인프라, 농촌 건설 등 국가재건 노력 순조
- 월남군에게 유리한 전황 전개
- 파리평화협상에 관한 기존입장 불변
 - 공산군 침략중지와 월맹군의 완전철수(라오스, 캄보디아 침투 월맹군 포함)
 - 공산군 침략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보장 필요

3. 고든 프리드 호주 외무장관

- 파리평화협상의 성공을 위해 군사적 압력 계속 필요
- 월남의 군사력 증강과 병행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강화 노력 불가결
- 월남으로부터의 모든 외국인 동시철수 필요
- 미군철수는 참전국군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공관장회의 - 구·아중동. 서울, 1969.3.21.

| 69-124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1-22/4/1~188(188p)

1. 참석 공관장(17명)

● 구주지역(9명)

- 주오스트리아, 독일(서독), 스웨덴,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위스, 벨기에 대사
-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 아중동 지역(8명)

- 주터키, 이란, 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 에티오피아, 모로코, 우간다 대사
- 주카이로, 튀니스 총영사

2. 전체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 제3차 수출진흥확대회의 참석
-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 공관장 회의
- 산업시찰(경인, 대구, 울산, 부산)

3. 공관장 회의 진행

● 장관 훈시

-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는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확보 노력 강화 필요
-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확대 노력 강화 필요

● 주요 사안에 대한 브리핑과 토의

- 북한의 침투현황과 대책
- 국제사회의 중국(구 중공) 승인 동향과 대책
- 파리평화협상과 대책
- 유엔한국문제 대책

4. 공관장들은 별도로 지역분과위원회를 열고 지역공동의 문제를 논의함.

공관장회의 - 동남아. 서울, 1969.4.18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1-22/5/1~124(124p)

1. 참석공관장(12명)

- 주일본, 호주, 대만(구 자유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월남 대사
- 주뉴델리, 이슬라마바드, 랑군, 홍콩, 자카르타 총영사

2. 전체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 제3차 수출진흥확대회의 참석
-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 공관장 회의
- 산업시찰(경인, 대구, 울산, 부산)

3. 공관장 회의 진행

- 장관 훈시
 -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는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확보 노력 강화 필요
 -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확대 노력 강화 필요
 - 아시아태평양 각료이사회(ASPAC) 활동 강화 필요
- 주요 사안에 대한 브리핑과 토의
 - 북한의 침투현황과 대책
 - 국제사회의 중국(구 중공) 승인 동향과 대책
 - 파리평화협상과 대책
 - 유엔한국문제와 대책
 - 오키나와 일본반환문제와 대책
 - 아시아태평양 각료이사회(ASPAC) 활동 강화 대책

4. 공관장회의에서는 김승규 주월남대사관 부대사가 월남 정세에 관해 별도로 보고하고 토의가 이루어짐.

한·일 협력위원회 총회, 제1차, 동경, 1969.2.12.-15.

| 69-126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C1-22/6/1~208(208p)



1. 개요

- 1965년 수교한 한일관계를 비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설립총회(제1차 총회)를 1969.2월 도쿄에서 개최
- 위원회는 양국의 정계, 재계, 학계, 문화계 인사를 망라하여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백두진 전 국무총리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 사전준비
 - 1968.11월 기시 전 총리가 이끈 일본측 발기인단이 방한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백두진 전 총리 등 한국측 발기인단과 위원회 설립계획에 합의

2. 제1차 총회 결과(1969.2.12.~2.15. 도쿄)

- 한국에서 67명, 일본에서 85명 참석
- 박정희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메시지 낭독
- 전체회의와 부회별 위원회 개최
 - 정치부회
 - 한국측 위원장: 백남익 공화당 정책위 의장
 - 일본측 위원장: 후나타 나카 중의원 의장
 - 경제부회
 - 한국측 위원장: 홍성하 금융통화위원
 - 일본측 위원장: 노다 코이치 참의원 의원
 - 문화부회
 - 한국측 위원장: 이선근 경희대 대학원장
 - 일본측 위원장: 우에무라 켄타로 과학기술진흥재단 부회장
- 공공성명 채택
 - 현안해결 촉진을 위한 국민차원의 이해증진 필요성 인식
 - 향후 협력위원회 회동을 통해 이를 위해 노력

3. 합동위원회 개최

- 양측은 1969년 5월과 11월 도쿄와 서울에서 각각 위원장을 비롯하여 양국대표 10여명이 참석하는 합동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무역역조 개선, 경제협력 증진, 교포복송, 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 등을 논의함.

박정희 대통령 미국 방문, 1969.8.20-25. 전3권

V.1 기본문서철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C-33/1/1-315(315p)

박정희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영부인 동반)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문제를 논의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방미 주요 일정

- 환영행사, 정상회담(2회, 단독), 닉슨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공동기자회견, 윌리엄 로저스 국무장관 내외 주최 오찬
- 교민간담회(조찬)
 - 숙소는 델 몬테 롯지 호텔

2. 정상회담 의제

- 한국안보와 미국의 지원
- 월남전
- 아태지역 정세
- 경제기술협력

3. 정상회담 결과(공동성명 요지)

-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양국정부 결의 재확인
- 한국의 향토예비군 무장을 미국이 지원
- 월남전의 평화적, 자주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고 양국이 긴밀히 협의키로 합의
- 한국의 경제, 과학기술 발전에 미국이 협력
 - 당초 미국은 공동성명 발표에 소극적이었으나 한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실현

4. 각료 별도회담

- 박정희 대통령을 수행한 최규하 외무장관, 임충식 국방장관이 합동으로 윌리엄 로저스 국무장관, 데이비드 패커드 국방차관과 회담
- 한국측이 안보협력을 요청하고 미국측이 지원을 약속
 - 한국군 증강, 대간첩작전 장비 보강, 향토예비군 무장 강화, 소화기 공장 설립
- 한국측이 경제기술협력 강화를 요청하고 미국측이 긍정적 검토를 약속
 - AID 차관사업 등

박정희 대통령 미국 방문, 1969.8.20.-25. 전3권

V.2 자료철

| 69-128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C-33/2/1~162(162p)



외무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공식방문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현안별로 현황, 문제점, 대책으로 구분한 자료와 대통령 발언 요지를 작성하고 일정별 연설문을 기초함.

1. 자료와 발언요지(“한미 간 중요문제와 정부입장” 제하)

- 한국의 장기적 안보문제
 - 군사차관, 대간첩작전 수행 장비, 군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
- 아시아 지역 안보문제
 - 지역안보체제 수립 필요성(한국안보를 위한 방향의 오키나와 미군기지 처리 포함)
- 월남전 문제
 - 미군철수대책 강구와 참전국 입장 반영 필요성
- 경제협력, 통상증진 문제
 - AID차관과 PL480호 농산물 증액, 경제기술협력, 투자분야 협력 필요성
- 유엔대책
 - 북한의 외교공세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

2. 일정별 연설문

- 환영행사
 - 한국, 월남 등 아시아 지역문제에 관한 의견교환 기대
- 국무장관 주최 오찬
 -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자립경제, 자주국방 실현
- 닉슨 대통령 주최 만찬
 - 아시아 자체의 노력과 미국의 지원을 통한 지역평화와 안정 기대

박정희 대통령 미국 방문, 1969.8.20.-25. 전3권

V.3 언론반응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C-33/3/1~172(172p)

1. 개요

-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에 즈음하여 한국, 미국, 제3국 언론은 이를 크게 취급하면서 양국 정상이 다른 한국과 아시아의 안보체제 논의에 중점을 두어 보도함.

2. 보도내용

● 한국 언론

- 방미 전에는 한국군 증강,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지위변경 문제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
- 방미 후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계속, 향토예비군 무장지원을 약속한 사실을 크게 보도하며 방미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 미국이 한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의향을 밝힌 사실도 강조
- 일부 언론은 아시아가 자립을 지향하는 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

● 미국 언론

-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등의 유력지는 미국이 한국방위공약을 재확인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

● 제3국 언론

- 독일 디 벨트는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지켜야한다.”는 닉슨 대통령의 슬로건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을 소개
- 독일 디 프레세는 박정희 대통령이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가 한국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에서 처리되기를 원한다고 보도
- 영국 더 타임스는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 이후의 미국의 안보정책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
- 프랑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멕시코 등도 한미 양국 정상이 베트남 전쟁 이후의 한국 안보 문제를 논의한데 의의가 있다고 분석

Nasiruddin, Tuanku I. 말레이시아 국왕 방한, 1969.4.29.-5.3.

| 69-130 |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과

MF번호 C-34/4/1~308(308p)

1. 개요

- 투안쿠 나시루딘 말레이시아 국왕이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함.

2. 방한 경위

- 1966.2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국왕 내외의 방한 초청
- 1968년 양국이 1969.9월~10월을 목표로 추진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측이 한국의 안보정세를 이유로 결정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무부가 주한대사를 통해 설득
- 이에 대해 압둘 라만 말레이시아 총리는 1968.12.14.자 정일권 총리 앞 서한에서 외교일정 때문에 방한계획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양해를 요망
- 1969.2월 말레이시아의 요청에 따른 협의를 거쳐 4.29.~5.3. 방한일정에 합의

3. 방한행사

- 박정희 대통령 내외와 국왕 내외가 교환 예방
- 박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과 만찬
 - 국왕 내외 주최 리셉션과 만찬
- 명예박사학위 수여(서울대), 민족예술제 관람, 육군사관학교 방문
- 지방 산업시설 시찰(부산, 울산)

4. 정상면담 결과(청와대 발표)

- 지역협력 증진과 양국관계 발전의지 확인
- 아시아 지역정세에 관한 공동의 관심사 논의

5. 외무장관 회담

- 4.30. 국왕을 수행한 옹육린 무임소장관과 최규하 외무장관이 회담
 - 국제정세, 월남전,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교환
 - 말레이시아측이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약속
 - 이미 체결된 문화협정 실천의 일환으로 유학생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

| 69-131 |

Hassan II 모로코 국왕 방한계획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34/5/1~7(7p)

1. 모로코 총리는 1968.8월 중동·북아프리카 친선사절단(단장: 박준규 국회 외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국왕 하산 2세의 1969년 봄 방한초청을 요청함.
2. 외무부는 온건노선의 모로코가 아랍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방한 초청키로 하고 현지공관장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의사를 전달함.

Diori Hamani 니제르 대통령 방한, 1969.10.27.-31.

| 69-132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의전과/아중동과
 MF번호 C-34/6/1~286(286p)



1. 개요

- 디오리 하마니 니제르 대통령이 방한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증진방안과 유엔에서의 협력문제를 논의함.
- 방한 경위
 - 우리정부는 1968년 하반기에 니제르를 겸임하는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관을 통해 디오리 하마니 대통령의 1969년 중 방한을 추진하여 일정 확정

2. 방한 일정

- 박정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농촌진흥청 방문, 명예박사학위 수여(서울대), 부산지방 산업시설 시찰, 육군사관학교 방문 등

3. 정상회담 결과(공동성명 요지)

- 니제르가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 통상협정 정식체결 추진
- 한국이 의료기자재, 의약품 지원
- 한국이 경제기술조사단 파견(농업, 도예산업, 광업 분야)

4. 외무장관 회담

- 최규하 외무장관은 디오리 대통령을 수행한 압두 시디코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위의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내용을 논의

69-133

Thieu, Nguyen Van 월남 대통령 방한, 1969.5.27.-30. 전3권 V.1 기본문서철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과

MF번호 C-34/7/1~392(392p)

1. 개요

- 구엔 반 티유 월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1969.5.27.~30.간 방한하여 월남전 대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키로 함.
- 수행원
 - 트란 찬 탄 외무, 구엔 반 비 국방, 아우 반 비엔 경제, 카오 반 탄 농림장관, 카 반 비엔 총참모장 등

2. 일정

- 정상회담(2회), 박대통령 주최 만찬과 티유 대통령 주최 만찬
- 월남 파병 장병 가족을 위한 티유 대통령 주최 리셉션
- 명예박사학위 수여(서울대), 민족예술제 관람
- 육군사관학교 방문, 지방 산업시설 시찰(부산, 울산)

3. 정상회담 결과(공동성명 요지)

- 아시아에서의 반공투쟁을 위한 결속, 아시아 지역협력 강화에 합의
- 월남 정부의 평화노력을 한국이 지지
- 참전국군 철수와 월맹군의 철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일치
- 분쟁해결과정에 대한 참전국 참여 필요성 공감
- 월남 경제재건을 위한 한국의 협력 추진

4. 각료 별도회담

- 외무장관 회담(최규하 외무장관과 트란 찬 탄 장관)
 - 월남전 수행을 위한 협력, 파리평화협상 대책 등 협의
- 경제장관 회담(티유 대통령 수행 경제각료와 박충훈 부총리, 황종률 재무, 이한림 건설, 조시형 농림, 정희섭 보사장관)
 - 한국의 수출, 건설진출, 합작투자 등 확대방안 논의
 -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원칙 합의

Thieu, Nguyen Van 월남 대통령 방한, 1969.5.27.-30.

전3권 V.2 자료철

| 69-134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과

MF번호 C-34/8/1~304(304p)



1. 외무부는 티유 월남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작성함.

● 협조부처

- 경제기획원, 재무부, 국방부, 농림부, 상공부, 보사부, 노동청

● 작성요령

- 현안별 현황, 문제점, 대책(예상되는 월남측 입장 포함)
- 새로 제기하기를 원하는 사안

● 분야별 항목

- 정치: 양국 간 유대강화, 월남전 해결 대책
- 경제: 월남 시장에 대한 무역, 기술, 인력진출에 있어서의 우선권 확보
- 사회: 병원건설 지원, 파견의료단 확충

2. 양국 정상이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의 연설요지는 아래와 같음.

● 도착성명과 환영사

- 공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기대(티유 대통령)
- 평화확립과 국가재건의 공동목표를 위한 협력 기대(박 대통령)

● 만찬사와 답사(박대통령 주최)

- 자주적 결단과 주체적 역량이 양국이 직면한 난관타개의 열쇠(박 대통령)
- 공동목표인 자유, 독립, 발전, 정의 위한 협조 기대(티유 대통령)

● 만찬사와 답사(티유 대통령 주최)

- 아시아와 세계의 안정과 안전을 위한 반공투쟁에서의 공동대처 희망(티유 대통령)
- 자유진영의 결속과 협력이 평화를 위한 열쇠(박 대통령)

69-135

Thieu, Nguyen Van 월남 대통령 방한, 1969.5.27.-30. 전3권 V.3 외국반응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과

MF번호 C-34/9/1~86(86p)

1. 개요

- 티유 월남 대통령의 방한에 관해 주요국가의 언론은 닉슨 미국 대통령의 미군철수와 평화정책에 한국과 월남이 유보적이며 “월남의 자결권”을 내세운다는 내용 등을 보도함.

2. 보도 내용

● 월남 언론

- 사이공 모이, 아주신보(중국어 신문) 등은 양국정상이 연정수립과 중립화를 거부하고 연합국 군대의 일방적 철수에 반대했다는 내용을 부각

● 미국 언론

-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UPI 등 유력사는 티유 대통령이 월남에의 연정 도입 구상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고 보도

● 일본 언론

- 닛케이 등 주요 신문은 티유 대통령이 다가올 닉슨 대통령과의 회담(미드웨이 개최 예정)을 앞두고 한국의 지지를 확보한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
- 일부 언론은 월남에 대한 경제 진출을 강화하려는데 한국의 목표가 있다고 관측

● 독일

- 디 벨트는 티유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강력한 후원자를 얻었다고 했으며, 디 프레세는 티유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연설에서 파리평화협상에 회의를 표명했다고 보도

● 영국

- 더 가디언은 양국 정상이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고 소개

● 프랑스

- 르몽드는 티유 대통령이 한국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닉슨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관측

Oliver, G. Borg 몰타 수상겸 외상 방한 초청계획

| 69-136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28/7/1~21(21p)



1. 1968.10월 주영국대사관은 관할국가인 몰타의 보르그 올리버 총리가 11월 일본, 중국(구 대만) 등을 순방하는 기회에 한국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이미 정해진 다른 외교일정 때문에 시기적으로 접수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1969년 중 서로 편리한 시기에 방한 초청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도록 주영국대사관에 지시함.

| 69-137 |

Jonathan, Leabua 레소토 수상 방한, 1969.8.31.-9.2.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의전과
 MF번호 C-34/10/1~150(150p)

1. 1969.2월 검임국 레소토 정부의 요청으로 현지에 출장한 주케냐대사를 면담한 레아부아 조나탄 총리는 자신이 5월 중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그 기회에 한국도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함.
2. 이에 따라 정일권 국무총리의 “개인자격 빈객”으로 초청하였으나 조나탄 총리의 외유일정 변경으로 무산되었으며, 외교경로를 통한 재조정을 거쳐 8.31.~9.2.간 방한하여 박정희 대통령, 정일권 국무총리, 최규하 외무장관과 면담함.
 - 조나탄 총리가 의사파견, 도자기 기술지원을 요청하여 한국측이 검토를 약속
 - 조나탄 총리는 유엔에서의 한국지지를 약속

진필식 외무차관 복구 및 스위스 순방, 1969.6.21.-7.7.

| 69-138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33/5/1~139(139p)



1. 개요

- 진필식 외무차관이 1969.6.23.~7.3.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를 방문하여 주요인사와 면담 하고 무역증진,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북한과의 관계발전 억제 등을 요청함.

2. 국가별 협의 결과(“개요”에 기술된 우리정부 입장 표명은 공통)

- 노르웨이(6.23.~6.25.)
 - 외무차관, 상공차관 면담
 -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조사단 파견원칙 합의
- 덴마크(6.25.~6.26.)
 - 외무부 정무국장, 상공장관 면담
 - 덴마크측이 한국산 면직물에 대한 수입쿼터 철폐문제 검토를 약속
- 스웨덴(6.26.~6.28.)
 - 외무 장·차관, 상공 장·차관 면담
 - 스웨덴측이 북한과의 수교불원 입장을 천명
- 스위스(6.28.~7.3.)
 - 외무 장·차관 면담
 - 스위스측이 북한 불인정 방침을 확인
 - ※ 진 차관은 스위스에서 제3차 운크타드 특혜문제 특별위원회에도 참석

- 3. 한편, 국내언론은 진 차관의 복구순방 목적이 경제협력의 확대와 북한의 이 지역진출을 저지하는데 있다고 보도함.

최규하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69.11.4.-21.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Re-26/14/1~33(33p)

1. 최규하 외무장관은 제2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1969.11.4.~21. 미국 방문 중 한국문제를 토의하는 제1위원회에서 11.11. 및 11.17. 두 차례 연설하였는바, 주요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위원회에서 한국 단독초청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감사함.
 - 유엔감시하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한반도 전역에 걸친 자유선거를 통해 한국을 통일하려는 유엔의 통일방식은 한국민의 의사에 부합함.
 - ‘북한만이 한국에서의 유일합법적인 국가’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한 19.12.12.자 유엔총회결의 195(Ⅲ)을 지적하면 충분함.
 - 1968.1.21.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기도 사건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는 1969년에도 계속 자행되고 있으며, 북한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력도발을 자행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유엔의 결의와 능력 시험
 - 소위 대한민국 ‘해방’을 위한 유리한 조건 구축
 -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 북한 동포들에게 위기감 조성
 - 북한은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위원들에 대한 입북 거부입장을 철회하여, UNCURK로 하여금 유엔결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해야 함.
 - 북한은 유엔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유엔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그 공백기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있음.
 - 대한민국은 유엔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통하여 한국동란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번영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한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업적은 UNCTAD 및 ECAFE와 같은 유엔경제기관에서 작성한 문서에서도 입증됨.
 - 제1위원회에서 공산측이 제출한 유엔군 철수안과 UNCURK 해체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함.
2. 최규하 장관은 방미 기간 중 유엔총회 참석 이외에도 Rogers 미 국무장관 등과의 면담 일정을 가짐.

Ardeshir Zahedi 이란 외무장관 방한, 1969.5.4.-8.

| 69-140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C-34/11/1~141(141p)



1. 이란의 아르데쉬르 자헤디 외무장관이 최규하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1969.5월 방한함.
 - 일정, 의제에 대한 논의와 우호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외교경로로 진행
2. 자헤디 장관은 5.4. 도착하여 외무장관 회담, 대통령과 국무총리 예방, 명예박사학위 수여(중앙대), 부총리 등 경제 각료 면담, 지방(부산, 울산) 산업시설과 전방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 후 5.8. 오후 출국함.
 - 외무장관 회담 후 우호조약 서명
3. 양국 외무장관은 5.8.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 한국측은 북한의 도발행위가 한국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가하는 위협을 설명
 - 이란측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유엔에서의 한국지지를 약속
 - 양측은 향후 문화협정,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

| 69-141 |

Sultan Mohammad Khan 파키스탄 외무차관보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34/12/1~11(11p)

1. 1969.11월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술탄 칸 주재국 외무부 차관보의 방한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 파키스탄이 한반도정책에 있어 북한에 경사된 점과 관련하여 대책의 일환으로 건의
2. 외무부는 외무차관 명의 초청을 추진하였으나 파키스탄 정부의 일정제시가 늦어져 1969년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1970년 예산 확정 후 재검토기로 함.

Habib Bourguiba, Jr. 튀니지 외무장관 방한, 1969.7.15.-18.

| 69-142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의전과
MF번호 C-35/1/1~293(293p)

1. 1969.5월 외무부는 주튀니지대사관 건의에 따라 아시아 순방계획의 일환으로 한국 방문도 희망하는 하비브 부르기바 외무장관을 공식 초청키로 함.
 - 방한에 앞서 문화협정,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체결교섭을 외교경로로 진행
2. 부르기바 장관은 인도, 파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를 거쳐 7.15. 한국에 도착하여 외무장관 회담, 대통령과 국무총리 예방, 부총리와 상공장관 면담, 명예박사학위 수여(경희대), 수도권 산업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 후 7.18. 출국함.
 - 외무장관 회담 후 문화협정,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고 통상협정에 가조인
3. 양국 외무장관은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 한국측은 북한의 도발행위가 한국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가하는 위협을 설명
 - 튀니지측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유엔에서의 한국지지를 약속
 - 양측은 경제, 통상, 기술 분야의 실질협력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정기 개최키로 합의

Rogers, William P.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69.7.31.-8.1.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북미담당관
 MF번호 C-35/2/1~372(372p)

1. 윌리엄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이 정일권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케 됨.
 - 로저스 장관은 방한에 앞서 도쿄에서 개최된 미·일 각료회담에 참석
2. 1969.7.31. 오후 도착한 로저스 장관은 차례로 외무장관 회담, 박정희 대통령 예방과 오찬, 정일권 국무총리 예방과 만찬, 전방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 후 8.1. 저녁 출국함.
3. 최규하 장관은 로저스 장관과 회담 후 현안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담은 2개의 각서를 수교함.
 - 각서 1
 - 한국 국내정세 설명
 - 군사원조 증액과 경제협력 확대 요청
 - 유엔 한국문제 대책으로서의 외교적 지원 요망
 - 월남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에서의 신중한 대처 당부
 - 미군 철수와 월맹군 철수의 연계 필요성 등
 - 오키나와 일본반환이 미군기지의 역할에 영향이 없어야할 당위성 지적
 - 아시아 지역안보체제 구축 필요성 강조
 - 정기 한·미 각료회담 개최 요청
 - 각서 2
 - 북한의 도발 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단호히 맞서려는 결의를 천명
4. 박정희 대통령의 8.1. 로저스 장관 접견 시 발언과 동 장관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베트남 평화협상
 - 박 대통령은 공산측에 대한 더 이상의 양보는 안 된다고 강조
 - 로저스 장관은 분명한 언급을 회피
 - 아시아 안보를 위한 일본의 역할
 - 박 대통령은 일본의 역할이 미진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보다 큰 기여가 필요하다고 지적
 - 로저스 장관은 일본국내에서 안보상의 역할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있다고 언급

김성은 대통령 특별보좌관 월남 방문, 1969.12.12.-15.

| 69-144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C-33/8/1~10(10p)



1. 1969.12월 월남을 방문한 김성은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티유 대통령, 키 부통령, 키엠 총리를 예방하고 비엔 총참모장 등 군부 지도자들과 면담함.
2. 상기 예방 및 면담 시 월남측 인사의 언급요지는 아래와 같음.
 - 티유 대통령
 - 미국과 국제사회의 여론에 비추어 미군의 감축이 불가피
 - 키 부통령
 - 전황을 낙관하며 미군철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안도
 - 키엠 총리
 - 월남 국내정세는 안정화의 방향
 - 비엔 총참모장
 - 월남군의 작전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

친선사절단 중남미지역 순방, 1969.8.8.-9.12.



생산연도 1969
 생산과 중남미과
 MF번호 C-33/9/1~353(353p)

외무부는 제24차 유엔총회 대책의 일환으로 1969.8월 중순부터 9월초에 걸쳐 최경록 주멕시코 대사와 장창국 주브라질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을 중미와 남미 지역에 파견하였는바, 사절단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중미지역(단장: 최경록 대사)

- 과테말라(8.8.~8.11.)
 - 몬테네그로 대통령, 모르 외무장관 면담
 -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약속
- 파나마(8.11.~8.14.)
 - 피니야 대통령, 타크 외무장관 면담
 -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약속
- 자메이카(9.3.~9.12.)
 - 캠벨 총독, 알렌 총리서리, 외무부 유엔대표 면담
 -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약속

2. 남미지역(단장: 장창국 대사)

- 베네수엘라(8.19.~8.25.)
 - 칼데라 대통령, 칼바니 외무장관 면담
 -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약속
- 가이아나(8.27.~8.29.)
 - 팔 외무장관 면담
 - 유엔에서의 한국지지에 호의적 반응(확약은 회피)
- 페루(8.30.~9.2.)
 - 알바라데 대통령, 하리아 외무장관 면담
 -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약속

특별사절단 일본 방문, 1969.1.18.-28.

| 69-146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Re-26/18/1~249(249p)



1. 개요

- 1969.1월 장기영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단장으로 경제기획원, 외무, 재무, 농림, 상공부 관계자로 구성된 특별사절단이 방일하여 일본 정부 주요인사들과 주요현안에 관해 협의함.

2. 면담인사

- 사토 총리, 아이치 외상, 후쿠다 대장상, 오히라 통상산업상, 사이고 법무상, 하세가와 농림상, 칸노 경제기획청 장관
- 장기영 단장은 사토 총리 예방 시 박정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사토 총리는 장 단장의 귀국에 앞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답서를 수교

3. 현안별 협의 결과

- 무역불균형 시정(총리, 외상, 대장상, 농림상 면담 시)
 - 한국측은 보세가공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면제 범위 확대와 한국이 수출하는 1차 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청
 - 일본측은 구체적인 반응 없이 검토를 약속
- 상업차관 도입 촉진(대장상, 경제기획청 장관 면담 시)
 - 한국측은 1967년에 합의한 2억달러 상업차관의 잔액 8천 6백만달러의 1969년 중 소진을 요청
 - 일본측은 협조 용의를 표명
- 한국의 농업정책 지원(통상산업상 면담 시)
 - 한국측은 지하수 개발조사단 파견, 가뭄대책을 위한 차관 공여를 요청
 - 일본측은 한국정부와의 협의를 약속
- 일본·북한 관계 발전 억제(총리, 외상, 법무상 면담 시)
 - 한국측은 조총련계 교포에 대한 재입국허가를 비판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
 - 일본측은 선례를 삼지 않겠다고 약속

69-147

이효상 국회의장 인도·파키스탄 방문계획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33/10/1~108(108p)

1. 국회는 이효상 국회의장이 1968.7월 터키를 공식 방문하는 기회에 귀로 인도, 파키스탄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함.
2. 이에 관해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한 결과 7.31.~8.4. 인도방문이 잠정 결정된 가운데, 국회가 일정을 조정하여 12월 마닐라 APU총회 참석을 전후한 시기에 인도 및 파키스탄 방문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였으나 시기 및 초청형식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성사되지 못함.

국회의원단 미국 방문, 1969.7.12.-17.

| 69-148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C-33/11/1~67(67p)



1. 1969.5월 메코맥 미국 하원의장은 이효상 국회의장 앞 서한으로 한국 국회의원단의 방미를 초청함.

- 3월 한국 국회가 미국 국회의원단을 방한초청한데 대한 답례

2. 이에 따라 장경순 부의장을 단장으로 여·야 의원 10명이 7.12.~7.17.간 방미하여 닉슨 대통령, 메코맥 의장, 모건 외교위원장 등 하원 지도자와 로저스 국무장관을 예방하고 케이프케네디 우주항공기지 등을 시찰함.

- 장경순 단장은 닉슨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 69-149 |

Aston, William J. 호주 하원의장 방한, 1969.6.16.-21.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35/3/1~48(48p)

1. 1969.6월 윌리엄 아스톤 호주 하원의장이 이효상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국회행사(방문, 연설, 만찬), 외무장관 면담과 만찬, 수도권과 지방(부산)의 산업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갖기로 함.
2. 정부는 아스톤 의장에게 1등 수교훈장을 서훈키로 함.

Uribe Vargas, Diego 콜롬비아 상원 외교분과위원장 방한, 1969.11.14.-19.

| 69-150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35/4/1~46(46p)



1. 외무부는 주칠레대사관의 건의에 따라 겸임국 콜롬비아의 디에고 바르가스 상원 외교분과위원장을 박준규 국회외무위원장 명의로 방한 초청함.
 - 한·콜롬비아 문화협회장인 바르가스 위원장 방한경비는 외무부가 부담
2. 1969.11.14. 도착한 바르가스 위원장은 국무총리, 국회부의장, 국회외무위원장, 외무차관 예방, 명예박사학위 수여(성균관대), 지방(부산)산업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 후 11.19. 출국함.
 - 국무총리 예방 시 국민훈장 무궁화장 서훈

| 69-151 |

Thajeb, Sjarief 인도네시아 국회부의장 방한, 1969.7.2.-5.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35/5/1~20(20p)

1. 국회는 1969.7월 초 한국을 비공식 방문하기를 희망한 샤리프 타제프 인도네시아 국회부의장을 정식으로 초청함.
2. 국회와 외무부는 7.2.~5.간 국회의장 예방, 국회부의장 주최 만찬, 외무장관 예방, 반공연맹이 사장 면담, 수도권 산업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주선함.

터어키 국회의원단 방한, 1969.1.31.-2.4.

| 69-152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35/6/1~45(45p)



1. 국회는 현지 대사관 건의에 따라 터키의 무스타파 굴지길 상원의원과 A. I. 크림리 하원의원을 박준규 외무위원장 명의로 방한 초청함.
 - 당초 1968.6월로 추진된 방한시기를 터키측 사정으로 1969.1월로 변경
 - 크림리 의원은 한·터키 친선위원회 간사, 굴지길 의원은 여당의 실력자
2. 양인은 1969.1.31. 도착하여 국회의장, 외무위원장, 국무총리,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군부대 시찰, 지방(부산, 울산)산업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 후 2.4. 출국함.

69-153

미국 하원의원단 방한, 1969.3.2.-7.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C-35/7/1~88(88p)

1. 칼 앨버트 민주당 원내총무 등 미국 하원의원단 22명이 이효상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1969.3월 방한함.

● 의원단 구성은 민주당 12명, 공화당 10명

2. 의원단은 방한 중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외무, 국방장관 예방과 국회연설(앨버트 단장), 유엔군 사령부, 판문점, 한국군과 미군 전방부대, 지방(부산, 울산) 산업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3. 앨버트 단장은 3.6. 국회에서 아래 요지로 연설함.

●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평가

● 한국을 미국원조의 성공사례로 만족

● 미국의 월남전 수행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

●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4. 앨버트 단장은 귀국 후 가진 회견에서 한국의 월남 참전을 평가하고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함.

IPU(국제의원연맹) 미국 대표단 방한, 1969.11.8.-10.

| 69-154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Re-26/22/1~10(10p), C-35/8/1~192(192p)



1. 1969.11월 미국의 IPU(국제의원연맹)대표단이 이효상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IPU총회(뉴델리 개최) 참석 후 귀로에 방한함. 대표단은 존 스파크만 상원의원을 단장으로 상원 7명, 하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의원이 부인을 동반함.

- 당초 국회는 IPU대표단과 상원의원단의 방한을 별개의 계획으로 동시에 추진하였으며 나중에 IPU대표단으로 일원화

2. 동 대표단은 11.8. 도착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예방, 유엔군 사령부, 한·미 전방부대 시찰, 국립묘지 참배 등의 일정을 가진 후 11.10. 출국함.

3. 외무부는 대표단과의 면담이 예정된 정부, 국회관계자를 위해 아래 요지 자료를 작성함.

- 안보관계
 -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의 군사적 노력과 미국의 지원 필요성
 - 군사원조 강화, 주한미군 계속 주둔 등
- 유엔관계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현황과 관련한 미국의 외교적 지원 필요성
- 경제관계
 - 통상, 경제, 기술협력 분야 지원 필요성
 - 한국산 섬유류에 대한 수입제한 억제, AID차관 증액, PL480 원조공여 계속, 투자 촉진 등

Caputi, Agustin 우루과이 상원의원 방한, 1969.2.15.-21.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35/9/1~34(34p)

1. 1969.2월 외무부는 해외유력인사 초청계획에 따라 우루과이의 아구스틴 카푸티 상원의원을 방한 초청함.
2. 2.15. 한국에 도착한 카푸티 의원은 대통령 예방, 외무장관, 경제기획원장관, 국회부의장 면담, 육군사관학교, 일선부대, 지방(부산, 울산)산업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 후 2.18. 출국함.
3. 위의 일정 가운데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대통령 예방
 -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한국의 대응에 관해 소개하고 우루과이 공산당의 위상에 대해 관심을 표명
 - 카푸티 의원은 우루과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
 - 외무장관 면담
 - 최규하 장관이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카푸티 의원은 귀국 후 우루과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약속

한·일 국회의원 간담회, 제2차. 동경, 1969.2.24.-25.

| 69-156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C-35/10/1~307(307p)



1. 개요

- 안보문제 등을 중심으로 양국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제2차 한·일 국회의원 간담회가 한국측 11명(차지철 의원 등), 일본측 38명(후나타 나카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69.2.24.~25. 도쿄에서 개최됨.

2. 내용

● 일정

- 개최식, 국제정세와 양국 안보 문제, 경제관계와 재일한국인 문제 등 3개 세션 간담회
- 사토 총리, 이시이 중의원 의장, 시게무네 참의원 의장 예방
- 육상자위대 동부방면 사령부, 방위대학 시찰

● 결과(공동성명 요지)

- 양국의 안전과 번영이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협력강화 필요성에 의견일치
- 무역불균형 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일치
-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와 처우 향상을 위한 일본의 노력, 한국국내 일본인 처의 처우 향상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일치
- 한국측은 오키나와 일본반환의 의의를 인정하면서 미군기지의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

3. 일본 언론은 간담회의 핵심의제는 오키나와 일본반환 문제였으며, 한국대표단은 미군기지의 장래에 관해 불안을 나타냈다고 보도함.

69-157

신태환 국토통일원장관 대만(구 중국) 방문, 1969.7.23.-27.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C-33/12/1~20(20p)

1.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가 신태환 국토통일원장관을 초청함.

● 대만의 “본토광복 기획조사위원회” 명의

2. 신 장관은 1969.7.23. 도착하여 부총통 예방, 본토정책을 다루는 부처 방문, 본토에 대한 선전 방송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 후 7.27. 귀국함.

손과(孫科) 대만(구 중국) 고시원장 방한, 1969.8.12.-26.

| 69-158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35/11/1~24(24p)



1. 1969.8월 대만(구 자유중국)의 쑨코(孫科) 고시원장이 혁명지도자 쑨얏셴(孫文)에 대한 공로훈장 수령과 김구 임시정부 주석 동상 제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함.
2. 이에 앞서 정부는 쑨얏셴의 유족이며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대리로 방한하는 동인을 정일권 국무총리 명의로 공식 초청키로 함.

| 69-159 |

Weiss, Karl G. 주 Munchen(독일) 명예 총영사 방한, 1969.10.29.-11.6.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총무과/서구담당관

MF번호 C-35/12/1~55(55p)

1. 칼 바이스 주원헌 명예총영사(직업은 변호사)가 김창원 신진자동차(주) 사장 초청으로 1969.10.29.~11.6. 방한함.
2. 외무부는 주독대사관의 건의에 따라 방한 기간 중 국무총리, 외무장관 등과의 면담일정을 주선함.

Diwarkar, R. R. 인도 간디평화재단의장 방한, 1969.12.10.-14.

| 69-160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35/13/1~33(33p)



1. 1969.2월 인도 간디 평화재단의 디와르카르 의장이 방한함.

- 외무부는 주뉴델리총영사관의 건의에 따라 인도의 유력인사인 의장 등 2명의 체한경비를 부담

2. 디와르카르 의장은 정일권 국무총리, 최규하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동국대학교에서 간디 사상에 관해 강연함.

3. 국내언론과의 회견에서 디와르카르 의장은 “비폭력이 끝난 오늘의 세계에 간디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함.

| 69-161 |

Eldemire, Herbert W. 자메이카 보건장관 방한, 1969.12.3.-9.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35/15/1~117(117p)

1. 1969.12월 허버트 엘드마이어 자메이카 보건장관이 한국의 보건사회부장관 초청으로 방한함(경비는 외무부 부담).
 - 엘드마이어 장관 방한은 주멕시코대사관(자메이카 겸임)이 한국인 의사 진출확대를 위해 건의하고 외무부도 유엔에서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코자 하여 실현
2. 방한 중 엘드마이어 장관은 국무총리, 외무, 보사장관 면담, 의료·제약시설 방문, 서울과 울산의 공장, 전방부대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보건사회부, 해외개발공사 관계자 면담에서 한국인 의사, 간호사 진출문제 협의
 - 1969.2월 현재 자메이카 진출 한국인 의사는 21명

de la Serna Y E., Luis 주 Madrid(스페인) 명예총영사 일행 방한, 1969.9.25.-29.

| 69-162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35/16/1~24(24p)



1. 1969.9월 루이스 델 라 세르나 주마드리드 명예총영사가 스페인 실업인단을 이끌고 방한함.
 - 일행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KOTRA를 방문하고 국내실업인단과 간담
2. 최규하 외무장관은 한·스페인 관계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여 명예총영사에게 훈장을 수여함.
 - 주프랑스대사관(스페인 겸임)이 서훈을 건의

69-163

Green, Marshall 미국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 차관보 방한, 1969.4.11.-13.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Re-26/28/1~50(50p)

1. 1969.4월 마셜 그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함.
2. 4.12. 그린 차관보를 접견한 최규하 외무장관은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관한 한국정부 입장을 담은 각서(아래 요지)를 수교함.
 - 도발대책
 - 월남전 축소로 예상되는 한국에 대한 공산세력 압력 강화에 대비할 예방조치 필요성
 - 한국군 전력유지를 위한 지원
 - 1억 6천만달러 수준 군사원조 계속
 - 향토예비군 장비 개선
 - 대간첩 작전능력 강화
 - 경제원조
 - AID원조 계속, 한국에의 투자 권장,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 억제 필요성
 - 월남 대책
 - 참전국의 평화협상 참석 필요성
 - 참전국의 전후복구사업 계속참여 필요성
 - 오키나와 미군기지
 - 한국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군기지 지위 유지 필요성
3. 4.12. 그린 차관보를 접견한 박정희 대통령도 위의 각서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미국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함.

강춘희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 Tubman, William V.S. 라이베리아 대통령 취임 25주년 기념식 참석, 1969.1.1.-7.

| 69-164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아중동과/의전과

MF번호 C-34/1/1~37(37p)

1. 1969.1월 정부는 강춘희 주코트디부아르대사(라이베리아 겸임)를 윌리엄 터브맨 라이베리아 대통령 취임 25주년 기념식에 정부대표로 파견함.
 - 라이베리아 정부가 파견을 요청
2. 라이베리아 체류 중 강 대사는 국무장관과 면담하고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현지 명예영사 임명, 한국인 의사 진출 문제 등을 협의함.

69-165

정일권 국무총리 Eisenhower, Dwight. D.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 참석, 1969.3.30.-4.8.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C-34/3/1~55(55p)

1. 정부는 1969.3.31. 워싱턴에서 개최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대통령 장례식에 정일권 총리를 파견함.
 - 드골 프랑스 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등 참석
2. 이에 앞서 박정희 대통령은 조위전문을 닉슨 대통령과 미망인에게 보냈으며 최규하 외무장관은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조문록에 서명함.
 - 정부는 장례식 당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였고 서울시는 시민문상소를 설치

북한·이탈리아 관계

| 69-166 |

생산연도 1968-69
 생산과 구주1과/경제협력과
 MF번호 D-6/9/1~21(21p)



1. 1969.1월 주이탈리아대사관이 이탈리아·북한 협회 등 북한관련 단체의 활동이 한·이탈리아 우호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데 대해 이탈리아 외무부는 정부가 공인한 단체가 아니라면서 적절한 조치를 약속함.
2. 또한, 주이탈리아대사관은 북한과의 인적교류를 주도하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69-167

북한·오스트리아 관계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7/1/1~45(45p)

1. 1969.11월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북한 민간통상사무소의 주재국 설치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경과

- 베이징 주재 오스트리아 통상대표부가 북한측과 통상사무소 개설문제 협의

● 대사관 조치

- 주재국 외무부, 상공회의소 등을 상대로 반대입장 전달

● 주재국 반응

- 북한과의 관계는 정경분리가 원칙

- 통상사무소 개설은 1960년 체결된 오스트리아·북한 통상협정에 근거한 것이며, 과거 사무소를 설치했던 북한이 사정상 일시 철회한 것이어서 재개설 허용이 불가피

2. 1969.12월 프라그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 직원 3명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상공회의소측과 1970년 초에 설치한다는데 합의하고 오스트리아 외무부도 이를 승인함.

북한·미얀마(구 버마) 관계

| 69-168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1과/정보과

MF번호 D-7/2/1~18(18p)



1. 1969.10월 주량군총영사관은 외무부에 주재국·북한관계 동향을 보고하는 가운데 북한대사관 직원들이 공식석상에서 한국공무원에게 폭언하는 사태가 빈발하여 주재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알려옴.
2. 또한, 총영사관은 주재국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외교단장의 측면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공관 자체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함.

| 69-169 |

북한·차드 관계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D-7/3/1~24(24p)

1. 1969.5월 차드와 북한이 공동성명으로 수교합의 사실을 발표함.
 - 북한의 김경련 대외경제위원장이 방문하여 대통령, 외무장관과 면담하고 발표
2. 외무부는 백선엽 주프랑스대사(차드 겸임)가 현지를 방문하여 수교를 저지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 프랑스 등에도 이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요청함.
3. 백선엽 대사와 면담한 차드의 바롬 외무장관은 경제원조 확보를 우선하는 외교정책에 따른 조치라며 북한과의 수교를 기정사실화함.

북한·이집트 관계

| 69-170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D-7/5/1~11(11p)



1. 북한은 1969.1월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2차 아랍 지지 세계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함.
 - 주카이로총영사관은 북한대표단이 대회에서 팔레스타인과 아랍세계의 대이스라엘 투쟁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외무부에 보고
2. 기타 주카이로 총영사관이 보고한 1969년 중 이집트·북한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2월 아랍·북한 친선협회(회장: 슈카이로 국회의장) 발족
 - 7월 알렉산드리아에서 북한지지 군중집회 개최
 - 9월 북한 건국기념일에 나세르 대통령 축전 발송
 - 9월 북한 친선사절단 방문(단장: 김신숙 김일성대학 교수)

69-171

북한·적도기네 관계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D-7/6/1~17(17p)

1. 1969.1월 적도기니와 북한은 대사급 수교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이만섭 주공고 북한대사가 방문하여 합의하고 공동성명 발표

2.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관은 9월에 북한사절단이 적도기니를 방문하여 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북한·핀란드 관계

| 69-172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7/1/1~48(48p)



1. 주스웨덴대사관(핀란드 겸임)은 1969.10월 북한대표단이 핀란드를 방문하여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헬싱키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개설 시기는 미정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 주스웨덴 핀란드대사관이 이러한 사실을 한국대사관에 통보

2. 주스웨덴대사관은 북한에 앞서 한국이 먼저 핀란드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69-173

북한·프랑스 관계



생산연도 1969
 생산과 구주과
 MF번호 D-7/8/1~7(7p)

1. 주프랑스대사관은 북한이 민간 통상사무소를 1967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1968년 양측 교역량이 전년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고 1969.2월 외무부에 보고함.
2. 주프랑스대사관은 1969.6월 북한 통상사무소의 인원교체, 1969.11월 북한 신임소장이 주최 사무소 개설 1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자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함.

북한·독일 관계

| 69-174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7/9/1~9(9p)



1. 1968.9월 주독일(구 서독)대사관은 주재국 외무부에 북한의 서유럽 진출기도에 관해 설명하고 독일에 대해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경우 사전에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약속을 받음.
2. 또한, 1969.9월 주독일대사관은 8.31.~9.1.간 동독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북한이 참가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공산권 외에 미국, 일본 등 41개국 참가

| 69-175 |

북한·인도 관계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D-7/10/1~64(64p)

1. 1968.12월 북한 무역사절단이 인도를 방문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함.
 - 주뉴델리총영사관은 친한파 의원들에게 국회에서 이를 문제 삼도록 의뢰
2. 그밖에 주뉴델리총영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1969년 중 인도·북한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2월 정승규 북한·인도 친선협회장 방문
 - 5월 북한 무역사절단 방문
 - 한유로 무역성 부국장(단장) 등 5명
 - 9월 인도 주재 소련대사관 공보원에서 북한 홍보사진전 개최
 - 인도 교육부 장관 참석

북한·일본 관계

| 69-176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D-7/11/1~48(48p)

1. 주일본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1969년 중 일본·북한관계 주요동향은 아래와 같음.

● 인적교류

- 9월 사회당 대표단 방북(단장: 야마하나 부위원장)

● 친북보도

- 12월 마이니치신문이 기획기사로 북한특집 게재

- 주일대사관은 친북적인 내용이 포함되는데 대해 외무성의 주의를 환기

● 우편교류

- 12월 일본 우정성이 북한행(소련 경유) 소포 접수 개시

• 그동안 접수하지 않던 방침을 변경

- 주일대사관의 “정치적 성격”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일본정부는 부인

2. 1969.12월 주일본대사관은 일본 출판사가 김일성 북한주석의 전기를 출판하고 재팬 타임즈가 광고를 게재한 사실과 관련하여 대남도발의 장본인 격인 인물의 전기를 취급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요청하는 공한을 외무성에 발송함.

● 대사관은 일본신문협회에 대하여도 출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광고게재 중지를 촉구

- 협회측은 “출판의 자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

69-177

북한·레바논 관계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D-7/12/1~6(6p)

1. 1969.8월 주카이로총영사관(레바논 겸임)은 레바논 친선사절단이 북한·레바논 친선협회 초청으로 방북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카이로총영사관은 여야 국회의원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귀국하면 북한 통상대표부의 레바논 내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도 서둘러 통상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건의함.

북한·모리셔스 관계

| 69-178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D-7/13/1~10(10p)



1. 1969.3월 주영국대사관(모리셔스 겸임)은 북한 사절단의 모리셔스 입국과 관련하여 텔로크 영국 주재 고등판무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즈음 추진 중이던 한·모리셔스 수교의 조기실현을 촉구함.
 - 고등판무관은 모리셔스가 북한과 수교할 의향이 없다고 공언
2. 1969.4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위의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알려옴.
 - 3월 모리셔스에 입국한 북한 인사는 박덕화 탄자니아 주재 대사 등이며 모리셔스 총리 등을 면담하고 수교를 요청하였으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데 실패

| 69-179 |

북한·네팔 관계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D-7/14/1~6(6p)

1. 1969.9.22.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알려온데 따라 북한이 9.19. 네팔에 총영사관을 개설 (리종현 총영사대리 임명)하였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함.

● 북한과 네팔은 1969.5월 영사관계 수립에 합의

2. 정부는 이에 앞서 7월 네팔과 영사관계 수립 협정에 서명하고 최운상 주뉴델리총영사를 수도 카트만두 주재 총영사로 겸임 발령함.

북한·네덜란드 관계

| 69-180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구주1과

MF번호 D-7/15/1~9(9p)



1. 1969.7.2. 주프랑스대사관은 북한 통상사절단(단장: 외교부 또는 무역부 차관)이 6.28. 네덜란드에 입국하여 무역당국 접촉, 항만시찰 등의 일정을 갖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주프랑스대사관 보고는 주프랑스 미국대사관이 제공한 정보에 따른 것

2. 이에 앞서 6.30. 주네덜란드대사대리가 북한 사절단이 입국하여 무역사무소 개설문제를 교섭하고 있다는 관측에 관해 문의한데 대해 루크마커 외무부 아주국장은 그 가능성을 부인함.

- 루크마커 국장은 사절단 입국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상업목적으로 입국하여 민간인을 접촉하는 일은 제한할 수 없으나 정부인사 접촉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69-181

북한·파키스탄 관계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동남아1과
 MF번호 D-7/16/1~106(106p)

1.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이 보고한 1968~69년 파키스탄-북한 관계동향은 아래와 같음.

- 1968.9.30.~10.15. 카라치에서 북한상품 전시회 개최
 - 기계류, 공구류, 섬유류 등
- 1969.1월 파키스탄-북한 바터무역협정 갱신 합의
 - 협정기간 2년(1969~70년), 왕복무역금액 960만달러
- 69.2월 북한의 주이슬라마바드 북한총영사 홍봉주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통혁당 사건” 재판결과를 비난
- 69.2월 북한 경제사절단 방문
 - 3년간 1만 톤의 북한산 대포 포탄 거래에 합의
- 69.5월 북한 기자단 카라치 방문
 - 현지 언론사 등을 방문하고 북한 홍보자료 전달
- 69.7월 북한 무역사절단 방문
 - 바터무역 품목변경 문제 협의(파키스탄산 광물·광석을 펄프재료 등으로 교체)
- 69.7월 북한 친선사절단(단장: 권희경 외교부 차관) 방문
 - 칸 파키스탄 대통령 예방, 주요부처 방문

2.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북한의 선전공세에 대해 요로 접촉, 공한 송부, 공관장(이규성 총영사) 회견, 홍보책자 배포 등의 방법으로 대처함.

- 1969.8월 대통령 특사(한표욱 대사)가 방문하여 칸 대통령 예방

북한·스웨덴 관계

| 69-182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구주1과
 MF번호 D-7/17/1~127(127p)



1. 주스웨덴대사관이 보고한 1969년 스웨덴-북한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5.16.~5.18. 민간단체인 스웨덴-월맹 위원회가 스톡홀름에서 개최한 회의에 북한 대표단 4명이 참석
 - 5월 북한이 스웨덴 정부에 공보관 설치 허가 신청
 - 외무부 본부 지시에 따라 저지 교섭을 벌인데 대해 스웨덴측은 공식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공보관 설치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 7월 스웨덴 공산당 대표단이 북한 방문
 - 7월 북한 통상사절단 방문
 - 스웨덴산 수력발전시설 수입문제 등 협의
 - 9월 스웨덴 공산당 대회에 북한 대표단 참석
 - 11월 북한 문화사절단 방문
 - 11월 스웨덴 국회 외교분과위원회는 공산당 의원이 제출한 북한 승인 동의안을 기각
2. 한편, 1969년 초 외무부는 스웨덴이 월맹을 승인하고 쿠바에도 접근하는 점과 관련하여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을 주목하고 현지공관을 통해 정보 수집 및 저지활동을 벌임.
 - 이에 대해 스웨덴정부는 월맹을 승인한 것은 파리평화협상 참석으로 월맹이 실체국가로 등장했기 때문이며, 북한의 경우는 유엔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69-183

북한·스위스 관계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남구담당관

MF번호 D-7/18/1~25(25p)

1. 1969.9월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KITPC) 대표단이 스위스를 방문하여 스위스 무역진흥협회와 취리히에 KITPC사무소를 설치키로 합의함.
2. 주스위스대사관이 KITPC사무소 설치에 반대한데 대해 스위스 외무부는 북한과 수교는 하지 않을 것이나 북한이 다른 유럽국가에 두고 있는 수준의 민간 무역사무소 설치는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북한·튀니지 관계

| 69-184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D-7/19/1~15(15p)



1. 주튀니지대사관은 북한대표단이 1969.6월 주재국을 방문하여 수교를 제의할 것이며, 튀니지정부는 이를 거부할 것이나 무역대표부 설치에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1969.5월 외무부에 보고함.
 - 현지 미국대사관이 제공한 정보에 따른 보고
2. 주튀니지대사가 한반도문제에 관한 유엔의 원칙, 북한의 도발행위 등을 들어 무역대표부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주재국 외무부 당국자는 동독이 튀니지에 설치한 수준의 무역대표부는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함.
 - 나중에 튀니지측이 북한대표단 접수를 거부하여 방문계획 무산

| 69-185 |

북한·영국 관계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D-7/20/1~6(6p)

1. 1969.7월 주영국대사관은 주재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인용하여 1967년 북한에 대한 영국의 수출은 약 2만 8천파운드, 수입은 약 52만 7천파운드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 북한과의 교역은 공산권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북한과의 공식 인적교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
2. 또한, 주영국대사관은 그동안 공산권과 교류하지 않던 아일랜드(겸임국) 정부가 경제사정 악화로 교류를 모색하는 가운데 북한이 원양어선 2척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고함.

북한사절단 아프리카 순방

| 69-186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D-7/21/1~56(56p)

1. 1969.4월 외무부 본부는 김경련 대외경제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아프리카를 순방한다는 일부 공관 보고와 외신보도에 따라 주프랑스대사관과 아프리카 주재 공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함.
 - 아프리카 주재공관은 주 튀니지, 모로코, 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대사관과 주카이로총영사관
2. 각 공관이 보고한 북한사절단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음(괄호 안은 방문기간).
 - 잠비아(4.7.~4.12.)와 외교관계 수립 합의
 - 수단(4.16.~4.21.)과 영사관계 수립 합의
 - 차드(5.2.~5.8.)와 외교관계 수립 합의
 - 니제르, 베냉(구 다호메이),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시에라리온을 방문하고 수교 등을 시도하였으나 무산
3. 한편, 4.13.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는 디오리 하냐니 니제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고 북한사절단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요청하였는바, 대통령은 “사실관계 확인”을 약속함.
 - 이에 따라 나중에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전화한 니제르 외무장관은 실무선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사절단 접수가 불가피하지만 공식일정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언명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요 각료들이 모두 사절단과 면담

| 69-187 |

일본 사회당사절단 북한 방문, 1969.9.27.-10.15.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D-7/22/1~9(9p)

1. 야마하나 부위원장(단장)을 비롯한 일본 사회당대표단이 1969.9.27. 부터 북한을 방문함.
 - 이에 앞서 일본정부에 방북불허를 요청했던 주일본대사관은 대표단 출국 직후 유감을 표명하는 공한을 수교
2. 10.15. 귀국하여 기자회견을 가진 야마하나 단장은 자신이 기자 교류를 제의한데 대해 북한이 상호주의 적용을 전제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힘.
3. 10.16.자 아사히신문은 위의 기자회견에서 야마하나 단장이 귀로에 대표단을 태우고 공해상을 향해하던 선박(화물선)을 한국의 경비정이 임검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보도함.

Podgorny, Nikolai 러시아(구 소련) 최고회의 의장 북한 방문, 1969.5.15.-19.

| 69-188 |

생산연도 1966-69

생 산 과 정보과

MF번호 D-6-24/2/1~8(8p)



1. 1969.5월 포드고르니 소련 최고회의 의장(국가원수)이 북한을 방문함.
2. 방문에 즈음하여 양측은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 사회주의진영의 군사적 결속 강화 필요성에 인식일치
 - 북한과 소련에 대한 미국의 군사정찰활동 비난
 - 미국의 한국군 증강조치 비난
 - 유엔한국위원회 해체, 주한미군 철수 요구
 - 세계적 차원의 군비통제, 신무기 금지 촉구

외교관등 직무수행 특수지침(대북한 및 기타 공산국가)



생산연도	1963-69
생산과	동구담당관/법무담당관
MF번호	E-4/1/1~58(58p)

1. 1966.8월 외무부는 내부검토와 외부자문을 거쳐 북한 및 공산진영과 관련된 해외주재 외교관의 공·사 활동준칙을 정한 “외교관 직무수행기본지침”을 수정 작성함.

- 북한 및 공산진영과 관련된 활동이 필요한 “특수지역 국가” 주재 외교관이 주 대상
 - “특수지역 국가”는 동서 양진영에 가담하지 않은 국가
- 1962년 최초 작성하고 1963년 개정된 지침을 수정

2. 수정 제정한 지침이 기존지침과 달라진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적용대상
 - 중립국 주재 외교관 → 전 재외공관 직원 및 가족
- 적용국가
 - 중립국 → 특수지역 국가
 - 특수지역 국가를 적성집단과 기타 공산국가로 구분
 - 적성집단은 북한, 중국(구 중공), 월맹
 - 특수지역 국가를 북한과의 수교국가와 미수교국가로 구분
- 활동구분
 - 공적, 사적 활동을 구분하지 않던 것을 구분
- 공산국가 대표기관과의 접촉
 - 완전무시, 회피 → 상황에 따라 공세적으로 활동
 - 특히, 적성집단 이외 공산국가와의 공적 접촉을 인정

일본·중국(구 중공) 관계

| 69-190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E-6/1/1~44(44p)



1. 주일본대사관이 보고한 1969년 중 일본-중국(구 중공) 관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 9.26. 교도통신사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집권 자민당의 가와시마 부총재(당 외교조사회장)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국제사회 복귀가 필요하며 일본이 이를 위해 이니셔티브를 취해야한다고 언급
- 12.15. 사토 총리는 미국-중국의 대사급 회담 재개에 즈음하여 일본도 중국과의 공식접촉을 기대한다고 발언
- 12.23. 일본-중국 민간어업협정 만료
 - 중국은 거듭된 일본의 재교섭 요청을 거부
- 12.23. 사토 총리는 민간어업협정 연장문제를 양국 정부차원에서 협의하기를 희망

2. 1969.12월 하순 일본 언론은 사토 총리가 중국과의 정부차원대화를 희망한 것은 기존의 정경분리 방침을 변경할 의향을 나타낸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1970년의 외교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함.

| 69-191 |

미국·중국(구 중공) 관계



생산연도 1963-69
 생 산 과 동북아2과/북미1과
 MF번호 E-6/2/1~384(384p)

1. 1963~68년 주미국대사관이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에 대한 존슨 행정부의 정책과 여론추이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한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존슨 행정부 전반기

- 존슨 대통령, 러스크 국무장관, 맥나마라 국방장관 등의 발언에 비추어 “중국 고립화” 정책을 바꾸지 않을 전망
 - 존슨 행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월남전 개입을 “침략행위”로 규정
- 반면, 조지 케난 등의 외교전문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의 주요 언론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

● 존슨 행정부 후반기

- 1966년부터 존슨 행정부가 중국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과도 별무
- 반면, 1966.3월 의회에서 증언한 스칼라피노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모겐소 시카고 대학 교수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주장

2. 주미국대사관은 1969.1월 출범한 닉슨 행정부가 그동안 중단상태에 있던 대사급 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무역제한조치를 완화 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함.

필리핀·소련 국교수립 교섭

| 69-192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E-6/3/1~16(16p)



1. 1969.11월 외무부는 주필리핀대사관의 보고 등을 근거로 필리핀과 소련이 수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함.
 -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끄는 필리핀정부는 1968년부터 “자주외교노선”을 표방하며 무역, 문화교류를 강화하는 등 공산권과의 관계개선 추구
2. 1969.12월 주필리핀대사관은 로물로 외무장관이 소련과 수교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외무부에 보고함.

69-193

국제회의 및 행사를 통한 동구권 교류 - 불가리아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E-6/5/1~13(13p)

1. 1969.3월 외무부는 국제민간관광기구(IUOTO)가 세계관광기구(WTO) 창설준비를 위해 불가리아에서 개최하는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관해 중앙정보부 입장을 문의함.
 - 중앙정보부는 불가리아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북한이 한국대표단 입국을 방해할 우려와 신변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
2. 1969.4월 외무부가 불가리아에서 개최되는 ILO세미나 참석문제에 관한 입장을 물은데 대해 중앙정보부는 신변안전에 대한 불가리아 당국의 약속을 전제로 찬성함.

국제회의 및 행사를 통한 동구권 교류 - 체코슬로바키아

| 69-194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E-6/6/1~9(9p)



1. 1969.2월 외무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6개월 예정으로 프라하에서 실시할 예정인 면역학·전염병 관련 훈련계획에 훈련생을 파견하는 문제에 관해 중앙정보부 입장을 문의함.
2. 중앙정보부는 체코슬로바키아 내정불안(소련군 대병력 주둔), 신변안전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함.

| 69-195 |

국제회의 및 행사를 통한 동구권 교류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동구담당관
 MF번호 E-6/7/1~9(9p)

1. 외무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69.5월에 주관하는 공산국가(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시찰 계획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 1969.3월 중앙정보부 입장을 문의함.
2. 중앙정보부는 공산국가 장기체류(43일)에 따른 신변안전위협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함.

동독의 Berlin(서백림) 통행 제한조치

| 69-196 |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E-6/8/1~150(150p)



1. 주독일(구 서독)대사관이 서독-서베를린 육로통행문제 추이에 관해 1967~69년 외무부에 보고한 요지는 아래와 같음.

● 1967년부터의 제한

- 동독은 서독 정부와 정당이 서베를린에서 정치적 행사를 갖는 것을 문제 삼아 육로 자유통행을 제한
 - 여권 및 통과사증 제출조건과 통행세 부과
- 서독 정부는 소련 당국자 접촉, 서방측 전승국(미국, 영국, 프랑스)과의 공조 등을 통해 제한철폐를 추구
 - 미국, 영국, 프랑스는 동독 국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3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자유통행 보장 요구 각서를 소련에 수교

● 1969.2월부터의 추가제한

- 서독이 동독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연방총회를 서베를린에서 개최기로 함에 따라 이에 반발한 동독이 추가로 화물운송을 제한

2. 주독일대사관은 서독이 동서독간의 무역, 경제교류가 동독에 가져다주는 이익을 통행제한 철폐를 위한 압력수단으로 구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함.

| 69-197 |

Nosavan, Phoumi 라오스 전 국방장관의 지원요청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G-12/2/1~16(16p)

1. 1968.12월 태국에 망명 중인 푸미 노사반 전 라오스 국방장관이 주태국대사를 면담하고 아래와 같이 요청함(주태국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
 - 태국이 라오스 남부의 호치민 루트에 대해 공격작전을 펴도록 태국정부를 설득
 - 작전이 실행될 경우 한국도 파병
2. 이에 대해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근거를 제시하면서 공식적으로 찬반을 밝히지 않은 채 접촉을 유지하도록 지시함.
 - 자신의 정계복귀를 위한 저의로 보이는 점
 - 태국과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현재의 라오스 정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점
 - 단, 노사반 전 장관이 우파인물이며 라오스 국내에 상당한 지지세력이 있는 점

대미 안전보장 외교강화를 위한 외무·국방관계관 협의회

| 69-198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2/3/1~20(20p)



1. 1969.2.28. 외무부는 미국에 대한 안보외교 강화방안을 협의하기 아래와 같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함.

● 참석자

- 정상문 대통령 외무·국방 담당 비서관
- 윤하정 외무부 구미국장
- 유병현 합참 작전기획국장
- 윤기우 국방부 기획국 정책과장

● 의제

- 군사원조 도입 촉진을 위한 정보교환 강화
- 지역안보체제 구축문제에 관한 검토작업 착수
- 한미 국방장관회담 실현을 위한 교섭방안

2. 상기 회의에서 외무·국방 관계부처 회의를 월 2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회합을 갖기로 합의함.

69-199

주월남 한국군 철수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동남아2과

MF번호 Re-18/15/1~29(29p)

1. 1969년 외무부는 파리평화협상이 본격화하고 월남 주둔 미군의 감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래 사항에 관한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함.

● 미군 철수 문제

- 공산군과의 상호감축이 전제라는 입장 견지

● 한국군 철수 문제

- 공산군과의 상호감축 실현, 월남 정부 요청,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이에 따라 철수하는 경우에도 경제 진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실시

● 한국군 안전대책

- 장비현대화 등을 추진

2. 1969.12.21.자 뉴욕타임스는 “현재로서는 한국군 철수계획이 없으며 파리평화협상의 진전에 따라 고려될 것”이라는 최규하 외무장관의 국회발언을 보도함.

한국의 대월남 군사원조

| 69-200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주과

MF번호 Re-18/16/1~131(131p)

1. 1969.3월 외무부는 미국이 월맹 폭격을 중지하고 파리평화협상을 본격화함에 즈음하여 정부 내에서 검토된 대책을 아래와 같이 미국, 월남 주재공관 등에 알리면서 교섭에 임하도록 지시함.

● 고려요소

- 전황, 월남 정세, 파리평화협상, 미군철수, 월남군 전력강화 전망 등

● 파리평화협상

- 참전국간 사전협의 원칙 관철

● 미국의 아시아 안보 공약

- 닉슨 행정부가 재천명토록 추진

● 월남전 수행

- 미군 철수계획에 관해 사전협의 요청
- 한국군 계속 주둔 및 전후복구사업 참여
- 한국군 장비 현대화 요청

● 한국군 철수시의 대책

- 보유 장비를 휴대하고 귀국
- 군사원조 강화 요청(공산군의 공격목표 전환 대비)

2. 국회 외무분과위원회 대표단은 1969.7.16.~19. 월남을 방문하고 티유 대통령 예방, 한국군 부대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차지철, 정일형, 김성은, 이동원 의원 등

69-201

태국주둔 미군 철수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1과/북미2과

MF번호 G-12/6/1~100(100p)

1. 미국 정부와 태국 정부는 1969.7월부터 태국 주둔 미군 철수문제를 논의하고 8월 공동성명으로 단계적 철수를 위한 협의계획을 발표함.
 - 1969.7월 현재 태국 주둔 미군은 약 4만 8천명
2. 9월 미국 정부는 제1진 6천명을 1970.7월까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미국의 국방관계

| 69-202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2/7/1~103(103p)

1969.6월 주미국대사관은 미국의 각계인사 45명이 작성한 “군사예산과 국가우선순위에 관한 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하였는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주요 작성자

- 존 갈브레이스 하버드 대학 교수, 한스 모겐소 시카고 대학 교수 등

2. 내용

- 의회에 대한 제언
 - 국방정책 검토위원회, 국가우선순위 검토위원회 설치
 - “국가기밀”의 범위축소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조치 강구
 - 청문회 활성화
- 국가안보의사 결정 계층에 관한 제언
 - 군사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계층을 다양화
- 월남전과 관련한 제언
 - 국론분열을 초래할 “제2의 월남 전쟁” 개입 불가
- 국방예산 등에 관한 제언
 - 국방비를 대폭 줄이고 병력 1백만 명 감축

3. 한편, 1969.8월 외무부는 내부문서에서 1970년 미국 국방예산 중 대외군사원조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가운데 한국에도 이것이 적용된 사실과 관련하여 그 대책으로 미국에 대한 증액 요청, 다자원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기술함.

69-203

미국의 대외군사원조 자료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2/8/1~52(52p)

1969.8월 외무부는 안보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부검토서를 작성함.

1. “월남군의 병력증강과 현대화를 위한 미국의 지원”

- 월남군 증강계획
 - 1969.6월 현재의 87만 명을 1971.6월 까지 101만 명으로 확충
- 미국의 지원
 - 병력증강 및 현대화를 위해 62억달러 지원

2 “1970년대의 아시아 정세 전망”

- 자유진영
 - 닉슨 행정부의 “분쟁의 비미국화 정책”이 불안정 초래 가능성
 - 미국이 동맹국들의 자위능력 강화를 추진
- 공산진영
 - 중소 대립 계속
 - 소련이 인도양 진출 기도

3. 한편, 1969.5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원조 백서”는 1970년 대외군사원조 배정액 434백만달러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214.3백만달러가 할당되었다고 밝힘.

미국의 대외방위 공약

| 69-204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2/9/1~70(70p)



1. 1969.4월 외무부는 미국 대통령의 대외공약에 의회승인을 조건부로 하려는 움직임이 풀브라이트 상원외교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 이와 같은 움직임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이에 따라 주미국대사관은 국무부, 의회 관계자 등을 폭넓게 접촉하고 관련동향을 수시로 외무부 본부에 보고
2. 6.25. 풀브라이트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이 상원에서 찬성 70표, 반대 16표로 채택됨.
 - 이에 관해 주미국대사관은 결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부의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의회의 영향력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69-205 |

안보관계 자료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2/10/1~92(92p)

1. 1969년 노재원 외무부 북미1과장은 국방대학원에서 “구미제국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사항에 관해 강의함.

- 외교관계 수립현황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현황
 - 남북한 대결외교 추이 등
- 경제외교 현황
 - 우방국, 중립국과의 경제·기술협력
 - 미국의 원조
- 군사협력 현황
 - 미국과의 협력과 군사원조
 - 지역안보체제 구축문제

2. 1969년 미국 의회에서 증언한 포터 주한 미국대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한미관계 추이, 한국의 발전상, 월남전 수행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 등을 설명하고 미국이 계속 한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현황

| 69-206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Re-20/5/1~40(40p)

1. 1969년 외무부는 미국의 군사원조와 관련한 교섭자료 목록을 아래 요지로 정리함.

- 밴스 국무장관 서한 중 미결사항
 - 팬텀기 6개 편대 제공
 - 향토예비군 무장 지원
 - 전투 비행장 4개 건설
 - 비정규전 대처능력 강화
- 군사원조의 적정수준 유지 및 추가 군사원조
 - 전투헬기 부대, 대공포 부대 강화
 - 해안침투 대비능력 향상
 - 구축함, 경비정 공여
 - 공중정계기 공여 등
- 소화기 공장 건설 지원
 - M16 및 탄약 제조
- 브라운 각서 이행문제
 -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지원: 3만 8천 품목, 6,152만달러
 - 월남 참전지원: 904개 품목, 880만달러
 - 국내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지원: 1,423개 품목, 2,473만달러

2. 1969.2월 외무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원조 물자의 항만처리 비용을 품목에 따라 어느 쪽이 부담할지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수시로 협의할 것을 제안하는 공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수교함.

- 이에 앞서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의 대외군사원조 원칙상 항만처리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한을 외무부에 송부

69-207

Brown각서 실천현황 보고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Re-20/4/1~46(46p)

1. 국방부는 1969.9월말 현재의 브라운 각서 이행현황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알려옴.

- 전체 진척도: 95%
- 분야별 진척도
 - 장비 현대화: 94%
 - 증설·창설부대 장비: 97~98%
 - 대간첩 작전장비: 92%
 - 조병창 확장, 통신시설, 항공기 공여, 복지시설: 100%

2. 1969.3.3. 국방부는 미국 의회에서 하원의원을 대상으로 아래 항목에 관해 실무브리핑을 실시함.

- 한국군 안보체제와 조직도
- 북한위협 현황
- 한국군의 비정규전 수행노력
- 한국군의 과제
- 미국의 군사원조 현황
- 한국군의 월남 참전 현황

한국의 대미군원 교섭

| 69-208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Re-20/6/1~202(202p)

1. 정부는 1970년도 미국의 군사원조에 관해 1968~69년간 아래와 같이 미국측과 교섭함.

- 1968.12월 외무부와 국방부의 장·차관이 추가군원 정식 요청
 -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비정규전 수행능력 향상 목적
 - 육해공군의 대간첩 작전장비 5천만달러 상당
- 1969.2월 주미국대사는 번디 국무부 차관보, 리버스 하원 국방위원장을 접촉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전반적인 군사원조삭감계획에 한국은 포함시키지 말도록 요청
 - 정상적 군사원조 1억 6천만달러 등
- 4월 주미국대사가 그린 국무부 차관보에게 추가 군사원조를 요청하는 각서를 수교
- 5월 닉슨 대통령을 예방한 박충훈 부총리가 군사원조에 대한 요청을 담은 박정희 대통령 친서를 전달
- 7월 최규하 외무장관이 방한한 로저스 국무장관에게 각서를 수교
 - 정상적 군사원조 유지와 추가원조 요청
 - 최 장관은 각각 9월, 11월 이뤄진 로저스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요청
- 12월 정일권 국무총리가 애그뉴 미국 부통령과 면담하고 한국측 입장을 전달

2. 위의 외교경로를 통한 교섭과 별도로 양국 국회의원단 교류 기회에도 군사원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함.

- 1969.2~11월간 양국의 국회의원단이 교류한 기회(8회)를 활용

주한미군 감축관계 발언 및 언론보도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2/15/1~118(118p)

1. 1969.5.13. 민주당 소속 스테판 영 상원의원이 의회에서 극동지역 긴장완화를 위해 월남 파병 한국군 철수에 즈음하여 주한미군을 철수하자고 발언함에 따라 외무부가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하여 미국인 전문가의 언론기고 등을 통해 반론을 제기함.
 - 영 의원은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월등히 능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고, 한국측은 북한의 도발상황을 들어 시기상조를 주장
2. 10.9. 일부 외신이 멜빈 레어드 미국 국방장관이 6월 하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하여 외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10.23. 최규하 외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감축불가 입장을 밝힘.
 - 최규하 장관은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에게 유엔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해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
3. 이후 미국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주한미군 감축설을 부인함.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20주년기념 각료이사회. Washington D. C., 1969.4.10.-11.

| 69-210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서구1과/안보과

MF번호 G-12/16/1~37(37p)

1. 외무부는 1969.4.10.~11.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20주년 기념 각료이사회 결과를 아래 항목에 따라 자료로 작성함.

- 각료이사회 결과
- NATO 개관
- NATO 전망
- 부록(각료이사회 연설문, 공동성명 등)

2. 각료이사회에서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한 공동성명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회원국 국민의 자유, 공통의 유산, 문명의 수호”라는 기구창설의 목적 견지
- 동서진영 간의 평화적, 호혜적 관계 모색
- 핵과 재래식 무기에 의한 방위력 증강 계속
- 서베를린의 안전, 자유통행 위한 노력 경주
- “독일국민의 자유결정과 유럽의 안보에 근거한다.”는 독일문제 해결원칙 재확인

69-211

CSCE(구주안전보장회의) Vienna, 1969.11.29.-12.1.



생산연도 1968-69
 생산과 구주과
 MF번호 G-12/17/1~116(116p)

1. 1969년 가칭 “전 구주 안전보장회의(CSCE)” 개최문제가 아래와 같이 다루어짐(주독일, 오스트리아, 영국대사관 보고).

- 바르샤바조약기구 제안
 - 10.31. 프라하 개최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전 구주 안전보장회의”를 1970년 상반기 헬싱키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유럽국가 간의 무력위협·사용 포기, 동서진영 간 경제, 화학, 기술협력 논의
- 북대서양조약기구 반응
 - 11.5.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검토하였으나 준비부족 등이 이유인 소극론이 대세
-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외교공세
 - 11.29.~12.1. 비엔나에서 “구주의 안전, 평화, 군축에 관한 회의” 개최
 - 25개국 대표 300여명 참가
- 기타
 - 12.5. 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이사회 개최 예정
 - “전 구주 안전보장회의” 개최문제에 대한 방침결정 전망

2. 외무부는 1969.11월 “전 구주 안전보장회의” 개최전망에 관해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함.

- 개최되는 경우 유럽평화문제를 논의할 계기 조성
- 공산진영의 의도가 서독의 핵무장 저지와 동구에 대한 미국 영향력 배제에 있어 전망 불투명
- 단, 서방진영도 동서대화의 문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점은 긍정적 요소

한국의 SEATO 가입 검토

| 69-212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북미2과

MF번호 G-12/20/1~47(47p)



1. 1969.10월 헤수스 바가스 동남아조약기구(SEATO) 사무총장의 방한에 즈음하여 이종욱 주태국 대사관 무관이 한국의 SEATO 가입문제에 관해 아래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함.
 - 한국이 가입하는 경우, 국위선양과 교류확대에 기여
 - 문제는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 등
 - 월남전 종결에 즈음한 국방외교의 새로운 방향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2. 반면, 외무부 구미국이 작성한 보고서는 영국, 프랑스 등의 이탈로 SEATO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들어 가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

69-213

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창설 구상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2/18/1~89(89p)

1. 1968.11.22. 정일권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공산진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월남 참전국을 중심으로 집단안보기구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함.

● 가칭 “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APATO)”

2. 1969년 초 외무부가 비공식적으로 반응을 타진한데 대해 미국은 관망적, 동남아는 유보적, 일본은 부정적 입장을 보임.

3. 일부 국내언론은 5월 방콕에서 개최될 월남 참전국 외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창설을 제의할 것이라고 보도함.

SEATO(동남아조약기구) 이사회, 제14차. Bangkok, 1969.5.20.-21.

| 69-214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G-12/19/1~107(107p)

1. 1969.5월로 예정된 제14차 동남아조약기구(SEATO)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외무부는 현지공관을 통해 기구의 존폐, 회원국 확대 문제에 대한 각국 입장을 확인함.
 - 태국, 필리핀 등은 기구의 존속, 여타 아시아 국가로의 가입문호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2. 제14차 동남아조약기구(SEATO) 이사회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공산침략에 대해 기구가 발휘하는 억제기능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한국이 회원국(월남)을 지원하는 것도 평가

SOFA(한·미간의 주한주둔군지위협정) 이행 관련사항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13/1/1~64(64p)

1. 1969년 주둔군 지위협정(SOFA) 이행에 관해 한·미 간에 협의된 내용

● 수로조사

- 1월 한미합동위원회에서 미국 해군의 한국연안 수로조사(공중촬영) 범위를 “전체 해안과 도서”로 확대키로 한 합의를 확인
- 이에 앞서 미국이 요청하고 외무부가 국방부와 교통부의 의견을 수렴
- 또한 외무부는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위의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항해지도 보완 작성을 위한 한미 합동 수로조사선 안전대책을 내무부와 협조하여 강구

● 폭발물 경고

- 미국측이 6월 미 해군 함정이 폭발 가능성이 있는 대형 로켓모터를 유실한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내무부와 협조하여 해당지역(울산) 주민의 주의를 환기

2. 1969.7월 외무부는 주한 태국군 장병들이 군수(PX)물자를 부정 유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단속하기 위해 주한 태국대사관과 협조하는 방안에 관해 법무부와 협의함.

- 유엔군의 일원인 주한 태국군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는 SOFA를 원용하여 적용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34-35차. 1968.- 69.

| 69-216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2-36/4/1~300(300p)

1. 1969.1.9. 개최 제34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결과(수석대표 한국측 윤하정 외무부 구미국장, 미국측 로버트 프리드먼 공군 중장)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과제부여 19건
 - 한국측: 경기도 인천시 지하 방공호 철거 등 7건
 - 미국측: 경기도 수원시 공군기지 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획득 등 12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건의 4건 승인
 - 한국측: 경기도 가평군 토지획득 해제 등 3건
 - 미국측: 경기도 파주읍 도로확장을 위한 토지획득 1건
-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 기록 승인
 - 미 육군당국과 외국기관 피고용자 단체 간의 양해각서
- 미국측의 초청계약 지명과 한국측의 확인 6건
 - Pacific Architecture & Engineers, Inc. 등

2. 1969.2.20. 개최 제35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과제부여 28건
 - 한국측: 경기도 파주군 초리면 토지획득 해제 등 5건
 - 미국측: 충청남도 대전시 공군기지 확장용 토지획득 등 23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건의 10건 승인
 - 한국측: 경기도 의정부시 건물수용 해제 등 3건
 - 미국측: 경기도 수원시 공군기지 확장용 토지획득 등 7건
-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에 대한 과제 부여
 - 한국의 구금시설로부터 미군을 가석방하는 경우의 형집행정지 절차
- 미국측의 초청계약 지명과 한국측의 확인 8건
 - The Vinnell Corp. 등

69-217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36-37차. 1968.- 69.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2-36/5/1~344(344p)

1. 1969.3.20. 개최 제36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결과(미국측 교체수석대표 말콤 메시 해군 대령이 회의주재)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과제부여 20건
 - 한국측: 서울 을지로 건물 수용해제 1건
 - 미국측: 강원도 춘성군 토지 임시사용 허가연장 등 19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건의 22건 승인
 - 한국측: 경기도 인천시 “캠프 유마” 철도 수용해제 등 7건
 - 미국측: 서울 한강 모래사장 임시이용허가 등 15 건
- 항공사진에 관한 서신교환 기록을 회의록에 포함
- 미국측의 초청계약 지명과 한국측의 확인 5건
 - Trans-Asia Engineering Co. 등

2. 1969.4.22. 개최 제37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결과(한국측 대표에 경제기획원 대표 추가)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과제부여 29건
 - 한국측: 충청남도 논산군 토지획득 해제 등 4건
 - 미국측: 전라북도 군산시 공군기지 확장용 토지획득 등 25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건의 23건 승인
 - 한국측: 서울 영등포구 토지 획득해제 등 2건
 - 미국측: 경기도 파주시 토지획득 등 21건
-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에 대한 건의
 - 주한미군의 항로 운항 회수 증가에 따른 출입국절차 개정
- 미국측의 초청계약 지명과 한국측의 확인 3건
 - The Vinnell Corp. 등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38-40차. 1969.

| 69-218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2-36/6/1~547(547p)

1. 1969.5.22. 개최 제38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결과(미국측 수석대표 로버트 스미스 공군 중장 취임)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과제부여 43건
 - 미국측: 전라북도 부안군 공군기지 토지확장 등 43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건의 20건 승인
 - 한국측: 충청남도 연무읍 토지 획득해제 등 4건
 - 미국측: 임진강 유역 제방지역 토지획득 등 16건
- 재무분과위원회 건의
 - 한국인 고용원 세금원천징수와 면세증명 문제
- 미국측의 초청계약 지명과 한국측의 확인 4건
 - Adrian Wilson & Associates 등

2. 1969.6.19. 개최 제39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과제부여 22건
 - 한국측: SAC-526 지역 건물 획득해제 등 5건
 - 미국측: 경기도 평택읍 토지획득 등 17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건의 28건 승인
 - 한국측: 경상북도 대구시 공군기지 건물 획득해제 등 4건
 - 미국측: 경기도 여주읍 토지 임시이용 허가 등 24건
- 한국측의 한국인 고용원 저축조합 형성 요청과 미국측의 승인
- 미국측의 초청계약 지명과 한국측의 확인 7건
 - The Vinnell Corp. 등

3. 1969.7.24. 개최 제40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과제부여 23건
 - 한국측: 경기도 인천시 토지 획득해제 등 3건
 - 미국측: 경기도 인천시 헬기장 용 토지획득 등 20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건의 35건 승인
 - 한국측: 강원도 삼척읍 공군기지 토지 획득해제 등 7건
 - 미국측: 경상남도 진해시 토지획득 등 28건
- 주한미군요원 세관검사지정 출입국 공항에 광주공항 포함
- 미국측의 초청계약 지명과 한국측의 확인 17건
 - Daniel, Mann, Johnson & Mendenhall 등

69-219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41-42차, 1969.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2-36/7/1~402(402p)

1. 1969.8.28. 개최 제41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과제부여 16건
 - 한국측: 국군의 날 행사시의 K16 비행장 사용 등 10건
 - 미국측: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토지획득 등 6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건의 19건 승인
 - 한국측: 서울 영등포구 소재 토지 획득해제 등 9건
 - 미국측: 경상북도 포항시 송유관 시설을 위한 토지획득 등 10건
- 노무분과위원회 건의
 - “노동쟁의가 합동위원회에 상정된 후 70일간 정상근무 방해금지”에서 규정한 70일의 기산시점을 서면 통보 시점으로 결정
- 미국측의 초청계약 지명과 한국측의 확인 4건
 - Barclay Overseas, Inc. 등

2. 1969.9.25. 개최 제42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과제부여 29건
 - 한국측: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토지 획득해제 등 10건
 - 미국측: 경기도 파주읍 토지획득 등 19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건의 21건 승인
 - 한국측: 서울 용산구 부설 전선 이동설치 등 11건
 - 미국측: 경상북도 대구시 공군기지 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획득 등 10건
-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합의 승인
 - 미군소유 화차에 대한 화물운송요율 할인
- 미국측의 초청계약 지명과 한국측의 확인 5건
 - Hawaiian Telephone Co. 등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43-45차. 1969.

| 69-220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2-37/1/1~335(335p)

1. 1969.10.23. 개최 제43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결과(제43~44차 회의 수석대표 등은 이전 회의와 동일)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과제부여 25건
 - 한국측: 경상북도 대구시 공군기지 시설 공동사용 등 5건
 - 미국측: 경기도 부평읍 소재 토지획득 등 20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건의 15건 승인
 - 한국측: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토지 획득해제 등 10건
 - 미국측: 경기도 양주군 토지 임시사용권 연장 등 5건
- 미국측의 초청계약 지명과 한국측의 확인 2건
 - Zurn Engineering 등

2. 1969.11.28. 개최 제44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과제부여 16건
 - 한국측: 강원도 춘천시 소재 토지 획득해제 등 3건
 - 미국측: 충청남도 서산군 소재 토지획득 등 13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건의 16건 승인
 - 한국측: 서울 용산구 설치 전신주 제거 등 6건
 - 미국측: 경기도 인천시 소재 토지 획득해제 등 10건
- 재무분과위원회 건의
 - 주한미군에 적용할 환율 결정
- 미국측의 초청계약 지명과 한국측의 확인 2건
 - Stole, Inc. 등

3. 1969.12.18. 개최 제45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결과(한국측 수석대표를 함영훈 외무부 구미국장으로 교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과제부여 13건
 - 한국측: 경상북도 대구시 공군기지 시설 공동사용 등 7건
 - 미국측: 경기도 시흥군 소재 토지획득 등 6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건의 3건 승인
 - 한국측: 서울 용산구 하수시설 설치 등 2건
 - 미국측: 서울 용산구 미군시설과 중복하여 설치된 한국시설 철거요청 1건
- 재무분과위원회 건의
 - 주한미군소속 “비세출자금 기관”이 탁송하는 화물에 대한 정보제공절차 결정
- 미국측의 초청계약 지명과 한국측의 확인 3건
 - Philcox Ford Corp. 등

69-221

SOFA-한·미 합동위원회 법률해석 문제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13/2/1~9(9p)

1. 1969.6월 내무부는 미군을 제외한 유엔군 소속 외국군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SOFA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외무부에 문의함.
 - 외무부는 1952.5월 한국정부와 유엔군 사령부(통합사령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특권면제와 편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회보
2. 1969.7월 외무부는 한미합동위원회 미국대표의 문의에 따라 대구에 신설되는 통합미군위안기관(USO)용 건물임차조건(5만달러 상당 한화 지불)과 해지조건(해지시점에서의 환율에 따라 5만달러 상당 한화 환불)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재무부에 문의함.
 - 재무부는 결제가 한화로 이루어지는 만큼 계약과 해지의 지불액이 같아야 한다고 회보

SOFA – 한·미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 69-222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13/4/1~39(39p)



1. 외무부는 1969년에 각 부처 인사발령에 맞추어 9회에 걸쳐 한·미국합동위원회 간사를 위촉함.
2. 1969년에 위촉이 있었던 부처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구미국), 경제기획원(경제기획국), 재무부(세제국, 관세국), 법무부(법무실, 검찰국), 국방부(기획국, 시설국), 내무부(치안국, 지방국), 상공부(상역국), 교통부(항공관리국, 육운국), 건설부(상하수도국), 노동청(중앙노동위원회, 직업안정국), 수산청(어업협력관실)

69-223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 1968.- 69.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2-0041/05/1~49(49p)

1. 한·미국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가 1968년에 취급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출입국 절차(4월)

- 신분 변경시의 사증신청 및 발급절차
- 출입국 절차의 미국측 초청계약자 가족에 대한 적용
- 공식대리인에 의한 출입국 절차 대행

● 미국측 초청계약자가 고용한 제3국 국적자에 대한 처우(10월)

- SOFA규정에 따른 신분증명서 보유자에 대한 SOFA상 입국자격 부여
- 입국 후의 체류허가와 등록에 관한 국내법 적용 면제
- 사증수수료 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국민에 대한 수수료 징수

2. 1969.2월 외무부는 한미합동위원회 미국대표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입국공항 추가지정을 추진함.

- 광주 공군기지를 군인, 군속, 초청계약자의 출입국 공항으로 추가
- 대구 공군기지를 군인, 군속, 초청계약자의 가족을 위한 출입국 공항으로 추가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 1969.

| 69-224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2-0041/06/1~13(13p)

1. 1969.4월 법무부는 주한미군 구성원이 한국에서 제대하기를 원할 경우 사전에 입국허가를 받고 신분변경 후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 SOFA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미국측의 주의를 환기해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신분변경 미통보자 24명 명단 첨부).
 - 외무부는 이 사실을 한·미국합동위원회 미국대표에게 통보하고 시정 요청
2. 1969.6.26. 재무부는 광주를 출입국 및 세관검사를 위한 출입국공항으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미국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함.

69-225

SOFA – 외기노조 퇴직금쟁의의 한·미 합동위원회 회부문제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Re-7/11/8/1~126(126p)

1. 1969.5월 노동청은 퇴직금을 둘러싼 주한미군과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간의 쟁의를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외무부에 의뢰함.

- 쟁의는 1968.8월에 신고되어 노동청이 조정을 계속하였으나 타협에 실패
- 쟁점은 사직자, 해직자에 대한 퇴직금에 적용하는 누진율
 - 노조측은 정년퇴직자와의 무차별, 미군당국은 차별을 주장하여 대립

2. 외무부는 미국측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1969.8월 한·미국합동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아래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짐.

- 사직자 퇴직금
 - 5~10년 근속자에 대해 0.5개월분씩, 11~15년 근속자에 대해 1.9개월분씩 증액하고, 25년 근속까지 퇴직금을 지정하며, 25년 근속 시 퇴직금 50개월분 지급
- 해직자 퇴직금
 - 15년 근속까지는 현행과 동일하나, 1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증액을 신설
- 기타
 - 노조측은 합의내용이 국내기업의 퇴직금 조건보다 유리함을 인정

SOFA – 주한미군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 69-226 |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Re-7/11/9/1~70(70p)

1. 1967.9월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에서 미국측은 주한미군 가족용 주택 추가건설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아래와 같이 요청함.
 - 용산기지 내에 추가 건설하는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거나 한국 민간기업의 건설을 한국정부가 자금조달 등을 통해 지원하고 주한미군에 일정기간 임대
2. 1967.12월 외무부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수렴함.
 - 기본원칙
 - 정부예산에 의한 건설과 공여는 불가하며 영리건설이 원칙
 - 다만, 한·미관계를 고려하여 소관부처가 원활한 영리건설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
 -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여 활용하는 방안(국방부)
 - 저리로 원화 또는 외화를 융자하는 방안(경제기획원, 재무부)
 - 자재도입에 면세를 적용하는 방안(재무부)
3. 1969.12월 미국측은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건설업체와도 회합을 갖고 사업계획을 검토함.

69-227

SOFA – 주한미군의 군표사용 금지교섭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Re-7/11/16/1~329(329p)

1. 1968.4월 외무부는 주한미군의 군표 사용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각국 주둔 미군의 군표사용실태를 아래와 같이 파악함.
 - 프랑스, 영국, 독일(구 서독), 터키, 태국, 필리핀, 자유중국(구 대만)에서는 미사용
 - 일본, 한국, 월남, 리비아에서 사용
2. 1968.7월 경제과학심의회는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군표 사용을 폐지키로 하여 외무부가 교섭에 나섰으나 미국측은 불법거래 등의 부작용은 해소하되 군표사용은 계속하겠다고 교섭제의에 응하지 않음.
3. 그러나 1973.10월 미국측이 군표사용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전해와 한국정부가 동의함.

SOFA –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차량의 도로사용료 면제문제

| 69-228 |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Re-7/12/7/1~125(125p)



1. 1969.9월 외무부는 SOFA 한미합동위원회 미국대표의 요청에 따라 주한미군의 비세출자금기관 소속 차량을 미군용 차량으로 간주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세해야한다는 입장을 건설부(한국 도로공사)와 서울시에 통보함.

- SOFA는 주한미군 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규정
- 미국측은 한국 도로당국의 편의를 위해 비세출자금기관 차량에 인식표(USFK VEHICLE-000) 부착

2. 그러나 1970년 초 서울시 등이 “비세출자금기관 소속 차량을 미군용 차량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해석으로 통행료를 징수함에 따라 외무부는 도로당국자 회의를 소집하고 “SOFA의 유권해석권한은 외무부에 있으며 비세출자금기관 소속 차량에 면세를 적용해야한다.”고 통보함.

- 외무부가 주재한 회의에 교통부, 건설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참석

69-229

판문점 관광 운용계획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4/13/1~8(8p)

1. 1969.6월 교통부는 관광목적으로 판문점을 개방할 수 있도록 유엔사령부측과 교섭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북한의 휴전선 침범에 따른 안전문제를 들어 개방에 반대한다고 회보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291-297차

| 69-230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14/14/1~224(224p)



1. 군사정전위원회 제291차 본회의(69.8.14.)

● 대표(이하 제297차 까지 동일)

- 유엔측: 아서 애덤스 미해병 소장 등
- 북한측: 이춘선 북한 인민군 소장 등

● 회의개요

- 유엔측, 4.23. 북한군 초소로부터의 발포사건 등 거론
- 북한측, 4.29.~30. F4 전폭기 1개 편대 한국반입 등 거론

2. 군사정전위원회 제292차 본회의(69.8.21.)

● 유엔측, 8.17. 유엔사 소속 비무장 헬기가 착오로 휴전선을 넘어 비행하다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체와 승무원 소환을 요구

- 데이비드 크로포드 대위 등 3명 탑승

● 북한측, 휴전선을 넘어와 격추시켰다면서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

3. 군사정전위원회 제293차 본회의(69.8.29.)

● 유엔측, 헬기 승무원의 근황설명과 송환요구

● 북한측, 휴전협정 위반 사과 요구

4. 군사정전위원회 제294차 본회의(69.9.4.) 개요는 제293차 회의와 같음.

5. 군사정전위원회 제295차 본회의(69.9.25.)

● 유엔측, 9.20. 비무장 지대 유엔군 초소에 대한 사격 등을 비난

● 북한측, 9.20. 유엔군측이 먼저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

6. 군사정전위원회 제296차 본회의(69.10.23.)

● 유엔측, 10.18. 북한군이 유엔군 차량을 매복 기습하여 4명을 살해했다고 비난

● 북한측, 유엔군 병사들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

7. 군사정전위원회 제297차 본회의(69.11.4.)

● 유엔측, 9.25. 한강 남쪽을 비행하던 미공군기를 북한측이 사격한 것 등을 비난

● 북한측, 10.23. 한국인 스파이 신진희가 북한에 침투했다는 것 등을 비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 제364-370차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14/15/1~151(151p)

1. 군사정전위원회 제364차 비서장 회의(69.4.1.)

● 대표(제365차도 동일)

- 유엔측: 존 루카스 미육군 대령 등
- 북한측: 한주경 북한 인민군 대령 등

● 회의개요

- 북한측, 3.6. 유엔사측이 비무장지대에 장비와 병력을 반입했다고 비난
- 유엔측, 3월중에 있었던 북한병사들의 완장 미착용 사례를 거론

2. 군사정전위원회 제365차 비서장 회의(69.8.27.)

- 북한측, 7.2. 유엔사측이 비무장지대에 장비와 병력을 반입했다고 비난
- 유엔측, 4.14.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진지를 구축했다고 비난

3. 군사정전위원회 제366차 비서장 회의(69.10.2.)

- 유엔측 대표를 모리스 제섭 미육군 대령으로 교체(제370차 회의 까지 동일)

4. 군사정전위원회 제367차 비서장 회의(69.11.5.)

- 북한측, 미국이 한국청년들을 베트남 전쟁에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
- 유엔측, 터키군의 6.25 참전 역사와 유엔결의 이행의지를 설명
 - 북한측이 터키군 장교의 회의참석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반론

5. 군사정전위원회 제368차 비서장 회의(69.12.12.)

- 북한측, 유엔측의 휴전협정 위반을 거론
- 유엔측, 공동일직장교의 연락체제 개선을 제안(서신 등의 즉각 접수·전달)

6. 군사정전위원회 제369차 비서장 회의(69.12.22.)

- 유엔측이 공동일직장교의 연락체제 개선을 다시 제안하고 북한측은 거부

7. 군사정전위원회 제370차 비서장 회의(69.12.30.)

- 유엔측, 북한이 억류중인 대한항공 YS-11기와 승무원의 송환 요구
- 북한측, 승무원(유병하, 최석민)의 자진월북이라고 주장

한국전쟁 전몰미군 추도기념비 건립

| 69-232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1과/북미2과

MF번호 G-14/16/1~18(18p)



1. 외무부는 1968년부터 외교경로를 통한 교섭으로 알링턴 국립묘지에 6.25 참전 기념비를 건립하여 기증하는 방안을 추진함.
2. 이에 대해 미국측 주관기관인 내무부가 의회승인절차 필요성과 국립묘지 공간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함에 따라 외무부는 알링턴 Memorial Drive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69-233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전8권

V.1 기본문서철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0/8/1~525(525p)

1. 북한이 1968.1.23. 푸에블로호를 납치한 후 미국이 취한 조치(주미국대사관 보고 등)
 - 1.23. 국무부 대변인이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납치”라며 비난하는 성명 발표
 - 같은 날 국방부도 83명이 승선한 푸에블로호의 납치경위 발표
 - 1.26. 미국의 요청으로 유엔 안보리 소집
 - 미국이 북한을 규탄하고 소련은 북한을 옹호
 - 미국은 서방국가들과 북한규탄 결의안 채택 추진
 - 1.26. 존슨 대통령이 북한을 비난
 - 존슨 대통령은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도 거론
 - 1.26. 존슨 대통령은 해·공군 예비군 1만 4천명 소집
2. 북한이 31명의 무장공비를 남파한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
 - 1.24.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협조 필요성을 강조한 각서를 미국에 수교
 - 1.25.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비난하는 외무장관 성명 발표
 - 1.26.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관한 외무장관명의 각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
 - 1.31. 미국이 두 사건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는 내용의 외무장관 담화 발표
 - 일부 외신이 미국이 푸에블로호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한 대응
 - 2.8.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1억달러 특별 군사원조 제공계획을 발표
 - 2.15. 주미국대사관이 박정희 대통령의 존슨 대통령 앞 친서를 국무부에 전달
3. 위의 과정에서 정부는 아래 사항을 중시하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 미국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
 - 유엔안보리에서의 토의 등
 - 미국이 북한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점
 - 북한을 유엔안보리에 초청해서는 안 된다는 점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전8권

| 69-234 |

V.2 판문점회담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1/9/1~447(447p)



1.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및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하여 1968년에 전개된 상황은 아래와 같음.

- 2.2. 미국무부는 푸에블로호 사건을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다루자는 북한의 제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2.2. 한국 정부는 판문점 회담에 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
 - 한국이 배제된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대좌하는 것을 우려
 - 푸에블로호 납치사건과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동등한 처리를 희망
 -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공개되어야하며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
- 2.8. 미국무부 대변인은 판문점 회담에 관해 대외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
 - 2.1.부터 비공개 회담 진행
 - 회담에 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
- 2.29. 북한은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작성하였다는 존슨 대통령 앞 서한을 공개
 - 버치 함장 등의 명의
 - 북한영해 침범사실을 인정하여 북한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내용
- 9.12. 푸에블로호 승무원 20명(버치 함장 포함)이 기자회견
 - 2월 북한이 공개한 서한과 같은 내용
- 12.22. 오전 미 국무부는 같은 날 오후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발표
 - 그동안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에서 총 28회 회담

2.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측은 미국 정부의 서면사과를 승무원 석방조건으로 제시하고 미국은 거부하여 대치가 장기화하였으나 결국 미국이 길버트 우드워드 소장 명의로 아래 요지의 서한을 전달하여 타결됨.

- 푸에블로호가 북한영해를 침범한 사실 사죄
- 미국함선의 영해침범 재발방지 약속

69-235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전8권 V.3 참전16개국의 한국방위결의 공동선언교섭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1/1/1~336(336p)

1. 외무부는 1968년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발생 후 외교경로를 통해 각국에 사건내용을 설명하고 북한을 규탄하도록 요청함.
2. 또한, 각 공관을 통해 현지 언론에 사건을 알리고 북한을 비난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함.
3. 외무부는 6.25 참전 16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모색함.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전8권

V.4 홍보활동 및 일본의 반응

| 69-236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1/2/1~199(199p)

1.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국무부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가운데 미국의 민간인이 승무원 석방교섭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이 있음.

● 미국 언론사 관련

- 7월 주미국대사관은 유력 방송사 MBS(Mutual Broadcast System)가 찰스 워렌 워싱턴 지국장을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외무부 본부에 보고
 - 국무부가 승무원 석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후원하며 제3국을 통해 북한 입국사증을 신청
- 외무부 본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데 대해 미국무부는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관여를 부인

● 재미교포 관련

-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들인 필립 안(미국 시민권자)이 조총련과 연락하며 북한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설득하여 만류

● 기타

- 전쟁포로 경험자 단체 대표(찰스 타운)등 미국의 민간인들이 개인자격으로 승무원 석방을 위한다며 북한 방문을 희망했으나 무산

2. 1968년 중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 및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에 관한 일본반응(주일본대사관 보고)

● 정부반응

- 사토 총리, 미키 외상 등이 국회발언에서 “신중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희망
 - 푸에블로호 사건만 거론하고 1.21 사건은 언급회피
- 외무부는 이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 제기

● 언론반응

- 사건 초기 북한주장을 한미주장과 같은 비중으로 소개
 - “1.21 사건은 자작극이며 푸에블로호 사건은 북한영해 침범 때문”이라는 주장
- 외무부는 외교경로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언론과의 직접접촉을 통해 시정 추구
- 2월 이후 일본 언론은 한국안보를 위한 한미 협력 추이를 집중 보도

69-237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전8권 V.5 홍보활동 및 각국반응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1/3/1~326(326p)

1. 외무부는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 및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발생에 즈음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사건진상을 각국에 알리고 북한을 규탄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함.

- 재외공관은 설명자료 배포, 서한 발송, 각서 수교, 정부요인 면담, 언론접촉 등을 통해 활동

2. 우리정부의 북한 규탄에 대한 각국 반응(공관 보고)

- 적극적 지지
 - 아시아: 대만(구 자유중국), 월남
- 호의적 반응
 - 아시아: 말레이시아
 - 중남미: 브라질,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 아프리카: 케냐
- 중립적 반응
 - 아시아: 미얀마(구 버마), 인도, 인도네시아
 - 유럽: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 아프리카: 모로코, 우간다

3. 중립적 반응을 보인 상기 국가들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이를 동서냉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경향을 보임.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전8권 V.6 사문회, 1969.1-5월

| 69-238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1/4/1~247(247p)

1. 미국 해군은 1969.1.20.~3.15. 로이드 부처 함장 등을 출석시키고 장성 5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디에고 해군기지에서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에 관한 사문회(Court of Inquiry)를 개최함.
2. 미국 언론이 보도한 부처 함장 등의 증언내용은 아래와 같음.
 - 통신장애 문제
 - 북한측에 푸에블로호가 발견된 후 주일 미해군사령부에 행동지침을 청혼코자 하였으나 통신장애(출력 미약)로 12~14시간 지연
 - 비밀보호 문제
 - 납치되기 전에 주요설비를 파괴하고자 했으나 이에 필요한 장비가 없어 실패
 - 주일 미해군사령부로부터 비밀문건을 파괴하라는 지시도 미접수
 - 저항과 구조 문제
 - 푸에블로호 주변 해상에 북한 함정이 출현하고 북한 전투기가 상공을 선회하는 가운데 구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프랭크 존슨 주일 미해군사령관 증언)
 - 납치를 예상하지 못했고 저항수단도 결여
 - 영해침범 문제
 - 북한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거리가 13.1마일로서 12마일 영해의 바깥쪽
 - 가혹행위, 강제고백
 - 북한 심문요원이 구타와 고문을 자행
 - 부처 함장은 승무원 보호를 위해 북한이 요구한대로 “고백”하고 자살을 기도
3. 사문회가 부처 함장의 군법재판 회부를 건의한데 대해 존 차펠 해군장관은 이를 각하하고 보직 대기 발령을 내림.
4. 1969.7월 하원 군사위원회 푸에블로호 소위원회는 존슨 주일 미해군사령관, 케롤 국방부 정보국장, 샤프 태평양지구 사령관에게 사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채택함.

69-239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전8권 V.7 자료집 I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1/5/1~276(276p)

1. 외무부가 1969년에 작성한 “북괴 무장공비 남파사건 및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에 관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조치(1968.1.21.~1968.12.23.)”의 주요 내용

- 1.22. 전 재외공관에 북괴 무장공비 남파사건을 알리고 홍보활동 착수
- 1.25. 미국정부에 한국방위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각서 수교
- 1.26. 주유엔대표부에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교섭지시
- 1.28. 주미국대사관에 미국과 북한의 직접 교섭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도록 지시
- 2.1. 주미국대사관과 주유엔대표부에 안보리가 북한을 초청하는데 반대할 것을 지시
- 2.12. 사이러스 밴스 미국대통령 특사가 방한하여 최규하 외무장관과 면담하고 박정희 대통령 예방
 - 2.15.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최규하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보충설명
- 3.15. 밴스 특사가 주미국대사에게 방한결과를 존슨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위를 설명
- 3.21. 판문점 미·북한 회담에 관한 입장을 각서로 미국정부에 전달
 - 유화적인 타협에 반대한다는 입장
- 3.23. 최규하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푸에블로호의 영해침범을 인정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
 - 북한이 판문점 회담에서 미국에 영해침범 인정 요구
- 4.16.~17. 박정희 대통령-존슨 대통령 정상회담 개최(호놀룰루)
- 5.27.~28.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워싱턴)

2. 외무부가 작성한 위의 자료에는 아래 항목의 부록을 수록함.

- 미국정부 동향
- 공산측 동향
- 판문점 회담
- 각국 언론계 반응
- 북한측의 휴전선 침범사건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전8권 V.8 자료집 II

| 69-240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1/6/1~203(203p)

1. 1969년 초 외무부가 정리한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 및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관련 자료집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사건일지

- 1968.1.21. 북한 무장공비 31명 침투에서 시작하여 12.23. 푸에블로호 승무원이 석방되기까지의 일지

● 문서집

- 미국정부에 수교한 각서와 비망록
 - 한국방위를 위한 지원 요청(1.24.)
 -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 강조(1.29.)
 -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의 동등한 처리 필요성 강조(2.2.)
 - 판문점 미·북한 회담에의 한국 참가 필요성 강조(2.5.)
- 2.15. 사이러스 밴스 미국대통령특사 방한시의 공동성명(박정희 대통령 면담 결과 등)
 -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양국의 단호한 대응의지 천명
 - 연내 양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 합의
- 공동성명을 해설한 최규하 외무장관의 언론 회견문
- 3.27. 최규하 외무장관과 존 스콧트 주한뉴질랜드 대사 면담록
 - 베트남 참전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이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거론하는데 뉴질랜드가 동의하는 내용

● 기타

- 한·미상호방위조약(1954.11.17. 발효)
- 한·미합의의사록(1954.11.17. 발효, 1955.8.12. 수정)
- 참전16개국 선언(1953.7.27. 발표)
- 판문점 회담 일지(1968.2.2. 제1차 회담부터 12.19. 제27차 회담까지)

2. 위의 자료집은 1968년 국내외 언론보도 스크랩도 수록함.

| 69-241 |

북한의 도발사건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6/6/1~85(85p)

1. 주문진 무장공비 침투 사건

- 대간첩대책본부는 '69.3.16. 강원도 주문진 어선통제소 경찰초소에 무장경비로 판단되는 괴한 수명이 출현하여 우리 경찰 및 예비군과 교전 끝에 해상으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금번 괴한 출현은 울진·삼척 지역에 침투한 공비사건에 비해 소규모라고 밝힘.
- 대간첩대책 본부는 '3.18. 우리측과의 교전에서 사살된 무장공비 시체 8구를 인양하였으며, 우리 경찰이 고무보트 1척과 무기 11정 등을 노획한 것으로 보아 상륙했던 무장공비 전원이 사살된 것으로 본다.'고 밝힘.

2. 미군 헬리콥터 피격 사건

- 유엔군사령부는 69.8.17. 미군 헬리콥터(3인승 OH-23) 1대가 DMZ 남방분계선 쪽으로 비행 훈련하던 중 '사격을 받고 추락한다.'는 무전을 끝으로 실종되었다고 발표함.
 - 북한 평양방송은 북한군이 북한영공을 침공한 미군 헬기를 격추시켰다고 보도
 - 군사정전위 미측대표는 기체 및 조종사 3명의 송환협의를 위한 정전위원회 소집 요구
- 8.29. 판문점 개최 군사정전위에서 북한측은 조종사 포함 2명은 중상이며 나머지 1명은 경상이라고 말하고, 미군이 스파이활동을 위하여 헬기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함.
- 그후 6차에 걸친 군사정전위 수석대표간 비공개회의를 통해 교섭한 결과 승무원 3명이 12.3. 판문점을 통해 석방됨. 석방에 앞서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 Adams 소장은 북한측이 제시한 소위 '사과문'과 승무원 신병인수증에 서명함.
 - Adams 소장은 별도성명을 통해 사과문상에 '범죄적 행위' 및 '북한 내 깊숙이 침투' 등 표현이 있으나 이는 북한측 주장을 시인한 것이 아니며, 승무원 석방확보라는 인도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
 - 외무부는 미측의 사과문 서명 및 부인 성명 발표가 Pueblo호 승무원 석방을 위하여 1968.12.23 유엔 군측 수석대표가 북한측이 제시한 소위 '사과문'에 서명한 후 이를 부인하는 선언을 한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평가
- 우리정부는 미측이 사과문 내용에 대한 부인성명을 함으로서 사과문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과문상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영공' 및 '주권'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는데 대해서는 미국정부의 공식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주한 미국대사관에 대해 문서를 통한 공식해명을 요청함.
 - 이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측은 Adams 소장이 사과문 서명직후 그 문서를 반박했고, 또한 인도적 취지에서 행한 사과문 서명이 대한민국이 한국의 유일합법정부라는 미국 입장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음을 강조(미측은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문서로 제시하는 데 대해서는 난색 표명)

북한의 도발현황, 1967.-69.

| 69-242 |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6/7/1~178(178p)



1. 정부는 재외공관에 북한의 휴전선 침투 및 휴전협정 위반 현황, 유엔군 및 한국군 피해상황, 후방 지역 간첩·공비 검거사실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송부,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적 만행을 규탄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조치함.

● 주요 침투사건

- 충남 서산 무장간첩사건(1968.11월), 울진 봉화 삼척 무장공비사건(1968.11월), 강원 북평 무장공비사건(1969.6월), 흑산도 간첩선침투사건(1969.6월), 전북 부안 무장공비사건(1969.6월) 등

2.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연례적으로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 북한침투상황에 관한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한국 대간첩작전본부와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로 함.

3. 본 문서철에 수록된 주요 자료

● North Korean Communists' Acts against the ROK in Viol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68.5.28. 외무부)

● 북한 도발행위에 대한 정부 각서(1969.6.24.)

● 북한 도발현황(69.10.30. 대간첩대책본부)

- 기본전략, 비정규전 능력, 대남공작활동 추세 및 현황, 공작전술 특징, 68/69년 주요사건 개요

●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장침투 현황(1969.10.31. 외무부 구미국)

- 니제르 대통령에 수교한 자료(국문 및 영문 번역본)

정찰기 EC - 121기 격추사건. 1969.4.15.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6/4/1~327(327p)

1. 미해군정찰기 피격 사건 경위

- 미해군정찰기(EC-121) 1기가 1969.4.15. 청진(淸津) 동남방 50~60리 지점에서 북한전투기의 추격을 받고 90~100리 지점에서 피추(동 정찰기는 비무장기로 승무원 31명이 탑승)
- 한·미·일 등이 구조작업에 착수한 결과, 4.16. 동 정찰기의 잔해로 보이는 물체들이 청진 동남방 약 100리 해상에서 발견되어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미국 국방부 발표)

2. 외무부는 4.16. 전재외공관에 피격 사건 관련 주재국정부의 동향 등을 파악, 보고토록 지시하는 한편 주미, 주일, 주유엔대사에게는 별도로 한반도 안전보장에 주는 영향에 관한 견해 및 대책을 보고토록 지시함. 또한,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4.17. '북한이 비무장 정찰기를 공해상공에서 격추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해적행위이며 이 지역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도발행위로서,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담화문을 발표함.

3. 박정희 대통령은 4.18. Porter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하여 미국의 조치계획을 청취하고, 미국이 금번 사건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면서, 금번 격추사건에 대해 미국이 Pueblo호 사건 처리에서와 같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북한이 오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이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후, 이러한 우려를 Nixon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 Porter 대사는 박대통령 견해에 동감하면서도, 금번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이 공습같은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구실을 주게 될 것인바, 미국은 월남전도 있고 하여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4. 박정희 대통령은 4.25. 기자회견을 통하여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며, 더 이상의 인내는 북한에게 더 큰 과오를 범하게 할 빌미를 주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또한, 박 대통령은 4.29. 닉슨대통령양 친서를 통해 한국군의 전력증강 필요성을 강조함(동 친서는 5.1. 박충훈 부총리가 닉슨 대통령과 면담, 직접 전달).

5. 미국 정부의 주요 조치 동향

- 4.17. 미국 항공모함 Bonnehomme Richard호가 필리핀에서 한국해안으로 이동
- 4.19. 닉슨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금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찰비행을 계속하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 4.21.~30.기간 중 23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제71기동함대가 정찰비행 보호임무를 수행하고, 한국에 전폭기 대대를 증강
- 5.8. 금번 사건을 유엔안보리에 제출

6. 본 문서철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주미국대사관 및 유엔대표부 등 재외공관의 사건 관련 보고, 외무부가 작성한 사건 관련 문서목록 및 분석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정찰기 EC - 121기 격추사건. 1969.4.15. 전2권 V.2 언론보도 및 주요국가 반응

| 69-244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16/5/1~255(255p)

본 문서철은 1969.4.15. 동해 해상을 비행하던 중 북한에 의하여 격추당한 미해군정찰기 (EC-121)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국내 언론, 미국 및 주요국 언론의 보도 기사와 북한의 반응 등을 수록하고 있음.

1. 국내언론

- 조선, 동아, 중앙, Korea Times 등 일간지

2. 미국언론

-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San Francisco Chronicle 등 일간지
- Time, Newsweek 등 주간지

3. 주요 국가 언론

- 독일 Die Welt, Frankfurt Allgemeine 등 일간지
- 영국 London Times, Telegraph, Guardian 등 일간지 및 주간지 The Observer
- 프랑스 Le Monde, Le Figaro, L'Aurore 등 일간지
- 일본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찌, 산케이 등 일간지

4. 북한의 반응

- 북한 중앙 제1방송 녹취록, 북한 민족보위상 명령 제24호, 모스크바방송 번역문 등

69-245

유엔 공채원리금 상환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1/1/1~8(8p)

1. 유엔사무총장은 우리정부가 구입한 유엔공채에 대한 제7차년도(1968.1.15.~69.1.15.) 이자 \$6,432 및 공채원금 일부 상환액 \$14,400 합계 \$20,832 액면수표를 1969.1.14. 주유엔대사에게 송부해 옴.
2. 주유엔대사는 상기 수표를 외무부에 송부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수표를 한국은행 계좌에 납입함.

북한의 대유엔 비망록

| 69-246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방 교 과

MF번호 H-11/2/1~15(15p)

제24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가 토의 되는데 대하여 북한은 1969.10.8. 비망록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평양 KCNA국제방송은 논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함.

- 미국은 유엔을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24차 유엔총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 및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해체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의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공화국')은 이와 같은 제의와 관련하여 1969.10.8. 비망록을 발표하였는바, 동 비망록에서 공화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UNCURK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공화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이 각각 병력을 10만명 또는 그 이하로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함.
- 공화국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관련 당사국간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유엔이 진정으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려면 소위 '한국문제'(Korean Question)에 대한 토의를 중단하여야 하며, UNCURK는 해체되어야 함.
- 또한, 한국문제가 유엔에서 토의될 경우 관련 당사자인 공화국의 참석이 당연히 허용되어야 함. 따라서 유엔은 지금까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채택된 모든 불법적인 결의들을 철회하여야 하며,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에 관한 불법적 토의를 영원히 종식시켜야 함.

유엔에서의 한국문제토의 등에 관한 북한 외무부 성명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1/3/1~43(43p)

1. 제24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단독 초청안이 가결(1969.10.30.)되고, 한국문제 토의에 대한 조건부 북한초청 결의안(11.17.)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북한은 동 결의안 통과를 비난하는 외교부 성명을 발표함.

● 북한 외교부 성명(11.19. 평양)

- 북한대표의 참가 없이 통과된 동 결의안을 배격하며 무효로 선언함.
- 미국의 침략도구인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해체되어야 함.
- 주한 미군은 철수하여야 함.
- 한반도문제는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해결 되어야 함.

2. 북한은 유엔총회의 상기 조건부 초청결의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외교부 성명 및 외상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북한이 한반도문제 토의에 당연히 초청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 외교부 성명(10.15. 평양) - 북한 요청으로 유엔문서로 배포

- 유엔총회에서 사회주의 국가들 주도로 '남북한 동시초청 결의안'이 제출된 데 대해 이를 환영함.
- 한반도문제 토의에 북한을 무조건 참가시켜야 함.

● 박성철 북한 외상의 만수대 기자회견(9.25. 평양)

- 미국은 북한의 참석 없이 불법적으로 유엔에 한반도문제 결의안을 상정시키고 있음.
- 북한 참석 없이 통과된 결의안은 원천무효임.

유엔총회, 제24차. New York, 1969.9.16.-12.17.

| 69-248 |

전6권 V.1 기본대책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1/4/1~366(366p)



1. 외무부는 1968년 제2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통한결의’(統韓決議)에 의해 그간 유엔총회에 연례적으로 자동상정 되던 한국문제 안건이 종전과 달리 재량상정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 1969.3.13. 대통령에게 보고함.

● 기본방침

- 한국문제의 재량상정제도 채택에 따라 능동적 입장에서 공산권의 활동을 봉쇄
- 우리측이 먼저 총회 안건을 제기하지 않고, 공산권 제기 시 대항 안건 제기 원칙
-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태 발생 시 유엔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하에 한국에 대한 집단안보 조치를 발동시킬 수 있는 기반을 공고화하고, 동 목표 달성을 위하여 유엔에서의 지지세력 상시 확보

● 전략대책

- 언커크대책(보고서 제출 여부, 내용, 시기, 제출대상 협의)
- 유엔사무총장과의 긴밀한 협조(언커크 보고서 처리문제 협의)
- 대미, 대우방국 협조대책(통한결의에 대한 공산권 반응, 공산권에서 안건제기시 대처방안 협조 등)

● 지지 확보 방안

- 지역외교 활동 강화(중립국 전담특사 순방 등)
- 유엔 현지 활동 강화(지역반 중심 득표활동 강화 등)

2. 외무부는 상기 대책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제24차 유엔총회대비 교섭지침’을 1969.3.21. 전 재외 공관에 송부하여 주재국에 대한 교섭지침으로 활용토록 함.

● 일반교섭지침

- 공산권 요청으로 한국문제가 토의되더라도 언커크 존속, 유엔군 계속주둔, 북한 초청 반대 등 우리의 기존 입장은 불변
- 따라서 대북한 압승유지를 위한 주재국의 지지확보에 최선의 노력 경주 필요

● 기타 지시사항

- 남북한 동시초청안에 대해서는 북한 지지세력이 증가하고 있음에 유의 필요
- 미수교국가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국교수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

3. 외무부는 제24차 유엔총회 참가에 앞서 미국, 캐나다 등 우방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산권이 한국문제를 의제로 상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공산권이 1969.8.15. 소위 ‘외군 철수안’과 ‘언커크 해체안’을 총회 토의안건으로 제출함에 따라 우리측도 한국문제를 총회에 제기하기로 결정함.

- 공산권은 상기 2개 안건이외에도 ‘통한문제 유엔토의 종식안’과 ‘남북한 동시 초청안’을 총회의제로 제기하였으나, 우리측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공산권이 제안한 4개 안건 모두 총회표결에서 부결됨.

69-249

유엔총회, 제24차. New York, 1969.9.16.-12.17. 전6권 V.2 종합보고서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1/5/1~159(159p)

제24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 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1970.2월 작성).

1. 한국문제와 관련된 제반 정세

- 북한의 도발 및 외교적 준동
 - 국내 무장공비 침투, 동해 공해상에서의 미국 정찰기 피추, 동남아 및 아프리카 제국에 대한 침투
- 유엔에서의 공산권 책동(한국문제 상정·토의)
- 미·소 협조기운의 심화(한국문제 토의관련 타협)
- 월남문제(정식안건으로 불상정, 총회 냉전 분위기 악화)
- “국제 안전보장 강화” 안건 및 보편성 문제(제25차 총회에서 재검토 결정)

2. 한국문제 상정 표결결과(찬성 / 반대 / 기권 / 결석) 및 분석 평가

- 남북한 동시초청안(55 / 40 / 27 / 4로 부결)
 - 아프리카에서 한국 지지세 강화, 반면 중남미에서는 약화
- 한국 단독초청안(65 / 31 / 26 / 4로 가결)
 - 남북한 동시초청 저지 원칙을 유지하되, 단독초청 지지확대 필요
- 외군 철수안(29 / 61 / 32 / 4로 부결)
 - 일부 중립국가들에 대한 외군철수 주장 침투 경계 필요
- 통한결의안(71 / 29 / 22 / 4로 가결)
 - 우리측에 대한 지지 감소 및 반대 증가
- UNCURK 해체안(30 / 65 / 27 / 4로 부결)
 - 해체안에 대한 지지증대 및 반대 감소경향 불변
- 통한문제 유엔토의 종식안(29 / 65 / 28 / 4로 부결)
 - 중립진영 국가들의 소극적 반응

3. 대표단 활동(미국 및 우방과의 협조)

- 제24차 총회는 제23차 총회에서 한국문제를 재량상정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첫번째 맞는 총회로서, 한국문제 자동상정시와는 달리 한국문제 상정여부에 관한 공산권측 의도분석, 재량상정에 따르는 새로운 상정절차 확인 등이 우방국과의 주요 협의내용

4. 정책 건의사항

- 차기 유엔총회 기본전략 조기 수립
- 우방 및 UNCURK와의 협조 강화

5. 첨부문서

- 채택·부결 결의안, 각국의 표결태도, 우리 대표단 연설문 등

유엔총회, 제24차. New York, 1969.9.16.-12.17. 전6권 V.3 국가별 지지교섭 I : 아주지역

| 69-250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1/6/1~419(419p)

1. 정부는 제24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의 연례적 자동상정 토의를 지양하며, 재량상정제도의 원칙에 따라 능동적 입장에서 공산권의 활동을 봉쇄한다는 원칙하에 지역외교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아시아지역 국가의 지지확보를 위해서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외교관계 수립: 몰디브에 겸임대사 파견
- 통상사절단 파견: 인도네시아, 네팔 등 10개국
- 기술협력 공여: 몰디브에 어업기술훈련 실시

2. 아시아지역 교섭대상 국가 및 교섭에 따른 주요 반응 및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네팔: 네팔정부 기본정책에 따른 중립적 입장
- 호주 및 뉴질랜드: 한국 적극지지 입장 불변
- 말레이시아: 종전대로 한국입장 지지
- 몰디브: 한국입장 지지 암시
- 미얀마(구 버마): 종전과 같이 남북한 동시초청 지지 입장
- 스리랑카: 한국입장에 호의적 반응
- 싱가포르: 비동맹중립 정책으로 소극적 태도
- 인도: 종전과 같이 기권 결정
- 인도네시아: 한국 지지여부에 대해 언급 회피, 종전과 같이 남북한 동시초청안 지지입장 표명하였으나 실제 표결 시 결석
- 태국: 한국입장 지지
- 파키스탄: 종전 입장 계속 견지
- 필리핀: 종전대로 한국입장 지지

3. 상기 교섭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 변화가 발생함.

- 네팔
 - 1969.5.20. 네팔-북한간 영사관계 수립(9.19. 카트만두에 북한 총영사관 개설)
 - 1969.7.29. 한국-네팔 영사관계 설립협정 서명
- 싱가포르
 - 1967.5월 싱가포르-북한간 무역협정 체결(1969.1.29. 싱가포르에 북한 무역대표부 설치)

유엔총회, 제24차. New York, 1969.9.16.-12.17. 전6권 V.4 국가별 지지교섭 II : 미주 및 구주지역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1/7/1~583(583p)

1. 정부는 제24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의 연례적인 자동상정 토의를 지양하며, 재량상정제도의 원칙에 따라 능동적 입장에서 공산권의 활동을 봉쇄한다는 원칙하에 지역외교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미주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외교관계 수립: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3개국
- 통상사절 및 특사 파견: 베네수엘라 등 10개국
- 의사 파견 등 기술협력 확대: 페루, 엘살바도르
- 유력인사 방한 초청: 페루, 우루과이

2. 각 지역별 교섭대상 국가 및 교섭에 따른 주요 반응 및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미주지역

- 가이아나(한국 단독초청안에 찬성, 남북한 동시초청안에 기권), 과테말라(한국입장지지 약속), 니카라과(한국입장지지 약속), 멕시코(남북한 동시초청안에 대해서는 제23차 총회시와 같이 기권, 한국 단독초청안에 대해 제23차 총회시에는 찬성하였으나 제24차 총회시 기권), 바베이도스(한국 단독초청안에 찬성하여 태도 호전, 남북한 동시초청안에는 기권하여 태도 후퇴), 베네수엘라(제23차 총회시 남북한 동시초청안에 기권하였으나, 제24차 총회시 반대로 태도 호전), 볼리비아(신정부 출범으로 반응 미확인), 브라질(제23차 총회와 동일한 입장), 아이티(기권할 것으로 예상), 에콰도르(남북한 동시초청안에 기권), 엘살바도르(한국입장 적극 지지), 온두라스(한국입장 지지), 우루과이(한국입장 적극 지지), 자메이카(한국입장 지지), 칠레(제23차 총회시와 같이 한국입장 지지 약속), 코스타리카(한국입장 계속 지지 약속), 콜롬비아(한국입장 지지), 트리니다드토바고(제23차 총회시와 같이 한국입장 지지 약속), 파나마(한국입장 계속 지지 약속), 페루(한국 단독초청안 및 남북한 동시초청안 모두 기권)

● 구주지역

-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남북한 동시초청안 기권 예상), 아이슬란드(한국입장 계속지지 약속), 그리스(한국입장 지지), 네덜란드(한국입장 지지), 독일(한국문제에 대한 가능한 최대의 지원 약속), 몰타(한국입장 계속지지), 벨기에(한국입장 지지), 사이프러스(한국입장 지지 예상), 이탈리아(한국입장 지지), 프랑스(한국입장 지지 약속)

3. 상기 교섭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 변화가 발생함.

- 1969.9.5. 우리나라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

유엔총회, 제24차. New York, 1969.9.16.-12.17. 전6권 V.5 국가별 지지교섭 Ⅲ: 중동 및 동아프리카지역

| 69-252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2/1/1~564(564p)

1. 정부는 제24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의 연례적 자동상정 토의를 지양하며, 재량상정제도의 원칙에 따라 능동적 입장에서 공산권의 활동을 봉쇄한다는 원칙하에 지역외교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중동 및 동부아프리카지역 국가의 지지확보를 위해서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 아프리카지역

- 기술협력: 시에라리온 등 10개국에 의사 파견
- 외교관계 수립 교섭: 적도기니, 모리셔스
- 통상사절단 파견: 동부아프리카 8개국, 서부아프리카 13개국

● 중동지역

- 유력인사 초청: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이란 외상
- 통상사절단 파견: 이집트 및 온건 아랍 7개국

2. 각 지역별 교섭대상 국가 및 교섭에 따른 주요 반응 및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중동지역

- 레바논(한국문제 기권 의사 표명), 리비아(남북한 동시초청안 찬성에서 기권으로 태도 변화 의사 표명), 모로코(한국 지지입장 불변), 사우디아라비아(한국입장 지지 약속), 요르단(남북한 동시초청안 찬성 예상), 이란(남북한 동시초청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하였으나 기권예상), 이스라엘(한국입장 지지), 이집트(남북한 동시 초청안 공동제안국 가담), 쿠웨이트(남북한 동시초청안 기권 의사 표명), 튀니지(한국입장 최대한 반영 약속)

● 동아프리카지역

- 레소토(한국입장지지 약속), 르완다(한국입장 적극 지지), 마다가스카르(한국입장 적극지지), 말라위(한국 입장 계속 지지), 모리셔스(공산권 결의안 반대에서 기권으로 태도 악화), 보츠와나(한국문제 표결시 결석), 우간다(총선의 투표방침과 변화 없음), 에티오피아(한국입장 지지를 약속하였으나, 남북한 동시 초청안에 찬성 예상), 잠비아(남북한 동시초청안에 찬성 예상), 케냐(남북한 동시초청안에 찬성 예상)

3. 상기 교섭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 변화가 발생함.

- 레바논에 한국통상대표부 설치 합의
- 1969.9.13. 한국정부, 리비아 혁명정부 승인

69-253

유엔총회, 제24차. New York, 1969.9.16.-12.17.

전6권 V.6 국가별 지지교섭 IV: 서아프리카지역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2/2/1~513(513p)

1. 정부는 제24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의 연례적 자동상정 토의를 지양하며, 재량상정제도의 원칙에 따라 능동적 입장에서 공산권의 활동을 봉쇄한다는 원칙하에 지역외교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서부아프리카지역 국가의 지지확보를 위해서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 기술협력: 시에라리온 등 10개국에 의사 파견
- 외교관계 수립 교섭: 적도 기니, 모리셔스
- 통상사절단 파견: 동부아프리카 8개국, 서부아프리카 13개국

2. 서부아프리카지역 교섭대상 국가 및 교섭에 따른 주요 반응 등 교섭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봉(한국입장 지지), 감비아(한국입장 지지), 나이지리아(한국 단독초청안에 반대), 니제르(한국입장 지지,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서는 난색 표명), 베냉(한국입장 적극 지지), 라이베리아(한국입장 지지), 세네갈(한국입장 지지), 시에라리온(남북한 동시초청안에 기권의사 표명), 부르키나파소(남북한 동시초청안에 기권의사 표명), 적도기니(한국 입장 지지 약속), 중앙아프리카(한국입장 지지에 소극적), 차드(남북한 동시초청안에 기권 예상), 카메룬(한국문제관련 기권 예상), 코트디부아르(한국입장 적극 지지), 콩고(남북한 동시초청안 기권에서 반대로 태도 호전), 토고(한국입장 계속 지지 약속)

3. 상기 교섭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 변화가 발생함.

- 1969.5.8. 차드-북한 간 외교관계 수립 발표

중국(주 중공)의 유엔가입추진(중국대표권문제)

| 69-254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2/3/1~236(236p)

프랑스가 1964.1월 서구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구 중공)을 승인한 이후 캐나다, 이탈리아 등의 중국과의 관계개선 움직임과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에 관한 각국의 동향에 관한 재외공관의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관련국가 동향

● 캐나다

- 1966년부터 중국 승인방침 표명, 1968년 Trudeau 수상 취임이후 중국 승인방침을 재확인하고 제3국에서 중국접촉, 대만(구 자유중국)정부와 별도로 중국 정부도 인정하는 “2개의 중국” 방식 적용을 희망하였으나,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대만과 단교 의사 표명

● 이탈리아

- 1969.1.24. 중국승인 결정, 국내정치상 압력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중국과 교섭 전개 방침

● 벨기에

- 이탈리아의 동향 관망 후 결정 방침

● 말레이시아

- 중국이 평화공존을 시행할 경우 중국과 관계개선 용의 표명

● 미국

- 중국측에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현재까지의 정책 고수 입장, 캐나다의 중국 승인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 표명

●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 서구국가의 중국과의 관계개선 동향에 관심 표명

2. 다수 국가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가운데 1969.11.11. 개최된 유엔총회 본회의는 중국 가입결의안을 부결(찬성48, 반대 56, 기권21, 결석1)시킴.

● 다수의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및 미국은 대만 지지, 영국, 프랑스는 중국지지, 이탈리아는 처음으로 기권

● 1968년 유엔총회 표결결과(찬성44, 반대58, 기권23, 결석1)와 비교할 때, 중국가입안에 대한 찬·반표 차이는 1968년 14표 차이에서 8표 차이로 급감

- 중국 가입결의안은 2/3 다수결 찬성을 요하는 사안

3. 대만 언론은 앞으로 중국 지지국가가 증가될 것이며, 대만을 지지했던 국가들은 기권으로 돌아 설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함.

국제인권의 해 기념행사



생산연도 1967-69
 생산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0/9/1~177(177p)

본 문서철은 유엔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각종 인권관련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1. 1967년

- 1967.10.9. 유엔사무총장은 각국이 12.10.에 “인권의 날” 기념행사를 가질 것을 권고함.
- 유엔은 1968년을 “국제 인권의 해”로 선포할 것을 결의하고, 각국에 대해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을 요청함.
- 유엔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1967.11월 “국제인권의 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 명의로 1968년을 국제인권의 해로 선포
 - 국제인권의 해 사업협의회 구성(위원장: 법무부 차관, 위원: 각부처 차관)
 - 세부 사업: 인권관련 국제협정 비준, 수사의 민주화, 기본적 인권에 관한 교육 등
- 외무부는 “국제 인권의 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권관련 국제협정 가입을 검토중임을 법무부에 통보함.
 - 노예제도 철폐에 관한 협정, 국제노동기구 제(諸)협정, 부녀자의 참정권에 관한 협정, 교육차별에 관한 유네스코 협정, 기타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정

2. 1968년

- 1968.1.15. 유엔사무총장은 제22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3.21.을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선포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
- 외무부는 우리정부가 1968.3.21. 실시한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행사 내용을 4.12. 유엔사무총장에게 송부함.

3. 1969년

- 외무부는 유엔 요청에 따라 “1968년 인권의 날 기념행사” 개최 내용을 1969.1.13. 유엔 사무총장에게 송부함.

UNCURK(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단) 전체회의

| 69-256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12/4/1~60(60p)

UNCURK가 개최한 1969년도 전체회의 내용 및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1차 전체회의(1969.3.7.~8. 서울) / 제2차 전체회의(1969.4.18.~19. 서울)

- 한국 내 사태 추이를 검토하고,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보고서 심의 완료

2. 유엔사무총장앞 UNCURK 제1차 보고서 제출(1969.5.23. 유엔 회원국에 공식 배포)

- 보고서 주요 내용

-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남북한 기본입장과 유엔 역할은 불변
- 1968년 여름 이래 최고조에 달한 군사분계선 이남의 사건은 UNCURK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나, 유엔의 한국 계속 잔류는 필요

- 동 보고서는 한국 안보문제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북한 무장공비의 서귀포 침입사건 및 울산, 삼척 침입사건 등 격증된 북한의 침투 행위 상세 수록

3. 제3차 전체회의(1969.6.16.~17. 삿포로)

- 휴전선 및 해안지역에서의 사건으로 인한 긴장 증가가 UNCURK 활동을 저해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한 양측의 자제를 요청

4. 제4차 전체회의(1969.9.5.~6. 서울)

- 제24차 유엔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심의 완료

5. 제24차 유엔총회에 보고서 제출(1969.10.7. 유엔 회원국에 공식 배포)

- 보고서 주요 내용

- 북한은 유엔의 권위와 권능 불인정
- 북한은 군사분계선 침투, 무장간첩 및 중무장 간첩선 침투 등 휴전협정 위반 계속
- 북한의 활동에 기인한 이 지역에서의 긴장 지속에 우려 표명
- 한국이 국방, 치안을 위한 자원소모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정진하고 있는 점 주시

69-257

국제연합 한국참전국협회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H-12/5/1~24(24p)

1. 국제연합 한국참전국협회(사무총장 지갑종)는 한국전쟁 제20주년과 월남전 참전 제5주년을 맞이하여 1970년도를 목표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함.
 - 위치: 서울특별시
 - 규모: 대지 5,000평, 건평 1,590평
 - 공사 예정기간: 69.6.25.~70.5.31.
 - 개관 예정일: 1970.6.25.
 - 공사비: 약 7억8천만원(건립기금은 국내외 협조)
2. 동 협회는 69.5.25. 회장단을 개선한 바, 신임 회장단은 다음과 같음.
 - 명예회장 정일권, 회장 김일환
 - 이사: 민기식, 박영준, 이맹기 등 5명
3. 동 협회는 상기 회장단 개선에 따라, 1969.5.27. 외무부에 동 단체에 대한 등록증을 갱신발급해 줄 것을 요청함.

UNCTAD 보충금융에 관한 정부간 그룹회의, 제5차. New York, 1969.6.23.-7.3.

| 69-258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경제과

MF번호 I-25/2/1~27(27p)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9.5.12.자 공한을 통하여 제5차 보충금융에 관한 정부간 그룹 회의(1969.6.23.~7.3. 뉴욕)가 개최됨을 외무부에 알려 오면서, 우리정부가 동 회의에 옵서버 파견을 희망할 경우 참가대표 이름을 6.9.까지 UNCTAD 사무국측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2. 동 회의에는 외무부 지시에 따라 주유엔대표부 이시영서기관이 옵서버로 참가하였으며, 회의 주요 토의 의제는 다음과 같음.
 - '합리적 기대'에 대한 정의 및 평가 방법
 - 개별 참가국가와 행정집행기관간 양해의 범위, 성격 및 수용도
 - 보충금융의 재정적 함의
 - 각국이 원조 집행을 위해 취하는 조치
 - 보충금융과 IMF 재정보전장치와의 관계

| 69-259 |

UNCTAD 특혜특별위원회, 제2-3차. Geneva, 1969.4.28.-5.2.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I-25/3/1~55(55p)

UNCTAD 특혜특별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 참가한 우리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2차 회의 참가보고서(69.4.28.~5.2. 제네바)

- 수석대표: 박동진 주제네바대사
- 회의 진행경과
 - 회의의 주요 토의는 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 설치를 위한 선진국의 작업현황 보고와 선진국·개도국간 협의기구 설치 문제에 집중
 - 특혜제도 설치를 위한 선진국의 작업현황 보고와 관련, 개도국은 선진국의 소극적 진전 보고를 비판하고, 선진국들은 특혜제도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
 - 선진국 및 개도국간 협의기구 설치문제와 관련, 협의기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선진국의 입장에 따라 회의는 난항을 거듭
 - 이에 따라, 선진국·개도국은 각 지역그룹 대표 2명씩으로 contact group을 구성하여 협의하고, 조속한 협의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신임장 위원회 보고
 - 신임장위원회 보고 시 쿠바대표가 중국(구 중공), 북한 및 월맹이 유일합법정부라고 발언하고, 소련대표가 지지
 - 우리대표는 한국이 유엔총회에 의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되어 왔다고 반박하고, 월남 및 대만(구 자유중국) 대표도 반박, 미국대표가 지지
- 회의 결과 평가
 - 특혜제도 설치 관건은 미국에 달려 있으나, 미국은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

2. 제3차 회의 참가보고서(1969.6.30.~7.18. 제네바)

- 우리나라 대표단에 대한 주요훈령 내용
 - 미국이 특혜 리스트를 조속 제출토록 촉구
 - 특혜품목 범위, 특혜관세 형태 등 선진국의 입장에 관한 정보 수집
 - 원산지규정 관련 보세가공수출에도 특혜관세제도가 적용되도록 노력
 - 선후진국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는 특혜품목 범위, 특혜관세 수준, safeguard문제, 특혜기간, 기존 특혜 및 역특혜 등

UNCTAD / 캐나다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69-260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I-29/9/1~17(17p)



본 문서철에는 캐나다가 OECD를 통하여 1969.11.14. UNCTAD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제도에 관한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 문서명: Tariff Preferences for Developing Countries, Documentation forwarded by O.E.C.D to UNCTAD, Annex 4, Submission by Canada

69-261

UNDP(유엔개발계획) 사업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수산청

MF번호 I-25/4/1~134(134p)

1. UNDP 원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음.

- FAO 극동지역 사무소 양어전문가 방한 초청
- UNDP 수산전문가단 관리인에 대한 수산청장 명의 감사장 수여
- UNDP 사업관련 현지 불입금 불입시 적용환율
- UNDP / SF 원조에 의한 사업 1/4분기 보고서 제출(원양어업기술훈련소, 중앙직업훈련소, 정밀기기센터 등)

2. 기타 첨부 자료

- UNDP / SF 단위사업 추진현황(1969.5.31, 과학기술처 국제협력국 작성)

Aquino, Francisco WFP(세계식량계획) 사무국장 방한, 1969.10.21.-27.

| 69-262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5/5/1~34(34p)



1. Aquino WFP(세계식량계획) 사무국장은 1969.5월 주이탈리아대사관에 제16차 WFP 정부간위원회 종료직후인 1969.10월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내 WFP사업추진에 관해 협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해 옴.
 - 항공요금은 WFP 부담, 한국은 국내 체재비 부담 희망
2. 경제기획원은 Aquino 사무국장의 방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WFP의 기여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국내 체재비 부담조건으로 동인에 대한 방한초청장(1969.8.25. 김학렬 부총리 명의)을 전달함.
3. Aquino 사무국장은 1969.10.21.~27.간 방한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을 가짐.
 - 예방: 총리, 경제부총리, 외무부장관, 건설부장관, 농림부장관
 - WFP 사업 시찰: 통진강 운하사업, 춘천 홍수통제사업, 삼척 도로건설공사

WFP – IGC(세계식량계획정부간위원회) 제15-16차. Rome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5/6/1-261(261p)

정부는 로마에서 개최된 WFP(세계식량계획) 제15차 및 제16차 정부간위원회(IGC)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15차 WFP-IGC 회의(1969.5.5.~13.)

● 대표단

- 수석대표: 박준하 주이탈리아대사관 공사
- 대표: 송주인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강홍구 경제기획원 서기관 등 3명

● 회의 결과

- WFP는 우리가 신청한 김해·금남지구 간척사업 승인(WFP지원액: 약 40만\$)
- 우리정부가 신청한 평택·금강지구 전천후 사업은 제16차 IGC회의시 상정키로 WFP 사무국과 교섭
- F. Aquino WFP 사무국장 방한초청의사 전달

● 건의사항

- WFP 원조사업 중 최대규모인 평택·금강지구 전천후사업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WFP 직원 방한 초청 등 최대한의 노력 경주

2. 제16차 WFP-IGC 회의(1969.10.13.~18.)

- 정부는 평택·금강지구 전천후사업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WFP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F. Aquino WFP 사무국장 방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표단을 파견키로 함.

- 수석대표: 박준하 주이탈리아대사관 공사
- 대표: 강홍구 경제기획원 서기관

● 대표단 회의참가 결과

- WFP 사무국은 비공식회담에서 우리나라의 WFP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설명
- WFP가 승인한 사업은 총 20개, 최대사업은 인도의 우유·낙농사업(5,500만\$)
- WFP 사업승인 절차 변경(회원국의 서면 의견회신 기간을 45일에서 21일로 단축)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총회, 제6차. London, 1969.10.15.-30.

| 69-264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5/7/1~238(238p)

1. 정부는 1969.10.15.~30. 런던에서 개최된 제6차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정부대표단을 임명함.

- 수석대표: 박 근 주영국공사
- 대표: 이종성 교통부 선박과장 등 2명
- 고문: 김재근 한국선급협회 회장

2. 주요 토의 의제

- 1960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수정안 심의 및 채택
- 국제해상유류재해오염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문제
- 해상 교통 및 여행 간소화
- 이사회 이사국 및 해상안전위원회 위원국 선출 등

3. 신임장위원회의 10.21. 총회 본회의 보고 시 불가리아 등 공산진영국가들이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함에 따라, 우리 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된 유일합법정부이며 공산진영의 상투적인 정치적 책동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반박함.

- 미국 등 한국 발언에 동조

4. IMCO 회원국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사국 선출관련, 10.21. 총회 본회의는 협약 제18조에 의거한 A, B, C그룹 이사국 각 6개국을 선출함.

- 우리대표단은 지지를 요청해 온 벨기에, 브라질, 인도 등을 모두 지지

5. 본 문서철에는 교통부 해운국이 작성한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 제6차 정기총회안이 수록되어 있음.

69-265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13차. Vienna, 1969.9.23.-29.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5/8/1~166(166p)

1. 정부는 1969.9.23.~29.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1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정부대표단을 임명함.

● 대표단

- 수석대표 유양수 주오스트리아대사, 교체수석대표 이상수 원자력연구소장

● 파견목적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리 정부의 활동상황 반영
- IAEA로부터 더 많은 원자력분야 기술원조 획득

2. 총회 결과

● 아일랜드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

● 공산권 국가들은 북한, 중국(구 중공), 월맹, 동독의 가입 필요성 강조

● 신규 이사국 선출: 우루과이, 헝가리, 나이지리아, 모로코, 파키스탄, 월남

● Sigvard Eki 사무총장의 재임을 만장일치로 승인

● 1970년도 예산안 승인(69년보다 8% 증가)

3. 우리 대표단 활동 상황 및 건의사항

● 우리나라는 IAEA 자발적 기여금으로 \$2,200(0.11%) 납부키로 서약

● 우리 대표단은 IAEA사무국과 20만 Curie 감마선 조사시설 설치, 저위생산지 개량사업 등에 관해 협의

● 건의 사항: 차기 회의 시 우리나라의 극동대표 이사국 출마 검토

WMO(세계기상기구) 전문위원회

| 69-266 |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2/7/1~108(108p)



정부대표단은 세계기상기구(WMO)산하 전문위원회 회의에 다음과 같이 참가하여 활동함.

1. 제3차 수문기상위원회 회의(68.9.6.~9.24. 제네바)

- 제3차 수문기상위원회는 당초 1968.4.17.~4.30.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기로 예정되었으나 브라질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1968.9.6.~9.24.간 제네바에서 개최
-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동 회의에 조희구 중앙관상대 기상기좌가 참석
- 토의 의제
 - World Water Balance 장기계획 검토
 - 수문 목적을 위한 기상예보 등

2. 제1차 아시아지역 기상통신회의(1968.12.5.~12.18. 뉴델리)

- 동 회의에는 최공천 주뉴델리총영사관 영사가 참석
- 회의 결과
 - 우리나라는 동경과 지역회선으로 연결(1971년 이전 지역회선 설치 권고)
 - 우리나라는 동경 기상통신센터의 관측자료 수집 책임지역에 포함

69-267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우주통신분야 국제협정에 관한 정부 전문가회의. Paris, 1969.12.2.-9.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5/9/1~35(35p)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우주통신분야 국제협정체결 추진의 일환으로 1969. 12.2.~9. 파리에서 개최한 회의와 관련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바, 동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 참가국(61개국) 및 회의개최 배경
- 일반토의
-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
- 위성TV방송 실시를 위한 행동: 불법적 사용으로 부터의 법적 보호 확보
- 위성통신 주파수 배정 관련 교육, 과학, 문화 요건에 관한 평가
- 결론(기본 원칙, UNESCO의 역할)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총회, 제15차. Rome, 1969.11.8.-27.

| 69-268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5/10/1~482(482p)

1. 정부는 1969.11.8.~27.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15차 FAO(식량농업기구) 총회에 다음과 같이 대표단을 파견함.
 - 대표단
 - 수석대표 진봉현 농림부차관
 - 대표 주성규 농림부 양정국장, 전용진 수산청 기획실장 등 6명
 - 파견 목적
 - FAO 5대 집중분야 및 농업개발을 위한 세계지도계획(IWP) 관련 각국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관계분야 발전에 기여
 - 우리의 이사국 입후보에 대비한 적극 교섭(여의치 않을 경우 입후보 철회 고려)
 - 우리의 WFP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재선을 위해 FAO 이사국들과 교섭
2. 정부는 우리나라가 제14차 총회에서 이사국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험에 비추어 제15차 총회에서 이사국에 입후보하는 데 신중을 기하였으나, 타국의 입후보 동향 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FAO 아시아·극동지역 이사국 입후보를 결정하고 정부대표단에 대해 아래 요지로 훈령함. 또한, 대표단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재홍 주이탈리아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임명함.
 - 각국 대표들과 접촉하여 우리의 이사국 당선을 위한 지지교섭 시행
 - 현지상황을 볼 때 우리의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외무부 본부에 의견 요청
3. 외무부는 전 재외공관에 우리의 입후보 결정 사실을 알리면서 주재국의 입후보 동향 파악 및 우리에게 대한 지지교섭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 정부는 FAO 이사국에 입후보한 타국 정부와도 상호 지지교섭 전개
 - 한편,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에서 지역내 로테이션 방안을 아시아·극동지역그룹에 제시하였으나 지역그룹 내 영향력이 강한 인도, 파키스탄이 강하게 반대
4. 11.25. 실시된 FAO총회 투표결과 우리나라는 낙선되고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구 실론)이 당선됨.

FAO 경질섬유에 관한 자문소위원회, 제4-5차. Rome



생산연도 196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5/11/1~180(180p)

1. 정부는 1969.4.10.~19. 로마에서 개최된 FAO(세계식량농업기구) 경질섬유에 관한 자문 소위원회 제4차 회의 및 경질섬유 제3차 심의회에 다음과 같이 대표단을 파견함.

● 정부대표

- 송주인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 회의참가 결과

- 회의 참가국: sisal과 henequen 생산국 및 수요국, 아바카의 생산국 및 수요국

- 회의는 sisal과 henequen에 대한 교역 및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고 토의 진행

- sisal과 henequen 가격관련, 중남미산과 아프리카산 간에 가격 차이를 두자는 제안이 논란 끝에 타결

2. FAO 경질섬유에 관한 CCP연구단 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가 1969.9.8.~13. 로마에서 개최됨.

● 동 회의에 우리정부는 대표를 파견치 않음.

3. FAO 사무국은 1969.11월 경질섬유 조사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교환을 위하여 우리측 통신원을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해 왔는바, 동 요청에 따라 우리정부는 차상구 한국제강공업협회 관계자를 우리측 통신원으로 통보함.

FAO 산림에 관한 특별위원회. Rome, 1969.3.25.-31.

| 69-270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6/1/1~30(30p)



1. FAO(세계식량농업기구)가 1969.3.25.~31. 로마에서 개최한 ‘산림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가 참석함.

● 정부대표

- 송주인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 훈령

- FAO 산림국을 임업부로 승격한다는 제안에 찬성

- 우리나라의 제8차 아·태 산림위원회 개최(1969.5월 서울) 준비상황 소개

2. 회의 결과

● FAO 기구개편에 따른 임업부 설치는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

● 아르헨티나, 그리스 및 소련이 1972년에 제7차 세계산림대회 개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1969.9월 개최 되는 제52차 FAO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기로 합의

69-271

FAO 상품문제위원회 미곡연구단회의, 제13차. Manila, 1969.3.20.-27.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6/2/1~334(334p)

1. 정부는 FAO(세계식량농업기구)가 1969.3.20.~27. 마닐라에서 개최하는 제13차 미곡연구단회의에 다음과 같이 대표단을 파견함.

- 대 표 단: 이득룡 농림부 식산차관보, 최현옥 농진청 연구관(사정상 불참)
- 파견목적: 미곡경제에 관한 국제정보 입수, 우리나라의 미곡현황 및 전망 홍보

2. 정부대표단에 대한 훈령은 다음과 같음.

- 국별 발표 시 우리나라의 미곡소비 절약 및 분식실천 운동으로 미곡 수입범위를 제한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것
- 우리나라가 미곡 수입국이므로, 국제미곡협정 체결문제 논의 시 수입국측에 유리하도록 노력할 것
- 주요 미곡 생산국의 품종개량 사업과 증산계획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것
- 다수 국가가 제14차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할 경우, 본국정부에 문의하여 회보할 것이라고 대응할 것

3. 정부대표단이 제출한 회의참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의 참가국: 한국, 미국, 일본, 필리핀, 월남 등 26개국, UNCTAD 등 국제기구
- 주요 토의 의제
 - 세계 미곡사정과 1969년 전망
 - 무역 촉진 방안(미곡등급 모형 개정 등)
 - 장기 추세 및 미곡 개발계획 검토: 다수확 품종
- 제14차 회의는 로마에서 개최(매2년마다 FAO 본부에서 개최가 관례)

FAO 수산위원회, 제4차. Rome, 1969.4.17.-23.

| 69-272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6/3/1~267(267p)



1. 정부는 1969.4.17.~23. 로마에서 개최된 FAO(세계식량농업기구) 수산위원회 제4차 회의에 아래와 같이 정부대표(읍서버)를 파견하고 훈령을 시달함.

● 정부대표

- 송주인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 훈령

- 우리나라의 1970년 수산 센서스 실시와 관련, FAO의 1970년 센서스 계획 파악
- Indicative World Plan 수산분야에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 검토
- 아프리카 연안 대서양 및 인도양에 출어하고 있는 우리나라 참치어선 및 저인망어선의 이해관계 검토
- 참치어업에 관한 토의 시 우리나라 참치어업 확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토의 유도
- 해양오염, 어선안전법, 수산훈련에 관한 자료 수집

3. 정부대표가 제출한 회의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규사업 일환으로 수산자료센터 설립 합의

● FAO사무국이 작성한 Indicative World Plan 수산분야 자료에 각국의 관심 및 토론이 집중되었으나, 자료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FAO 사무국이 보완키로 약속

● 어업자원의 global 규제에 관한 논의 관련, 원칙적으로 기존 국제기구와 관계국가간에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

● 사무국은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가 8개국의 비준서 기탁으로 효력을 발생하여 1969.10월경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

● 해양오염 가속화를 고려, FAO가 개입하여 '1954년 해양오염방지 협약' 개정 추진

● FAO 전 회원국에 수산위원회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

69-273

APFC(아시아태평양산림위원회) 제8차. 서울, 1969.5.1.-10.



생산연도 1966-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6/4/1~216(216p)

1. 우리정부는 APFC(아시아태평양산림위원회) 제6차 회의(1962년 홍콩)시 제8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의사를 표명하고, 1963.11.2. FAO 사무총장에게 제8차 회의 한국유치를 공식 제의함.
 - FAO사무총장은 1964.6.8. 우리나라 개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제8차 회의가 1968년에 개최되기를 희망함.
2. 우리정부는 FAO 사무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제8차 회의를 1968.10월중 개최기로 합의하였으나, 여타 회원국들의 사정 때문에 회의를 1969.5.1.~10월 개최기로 최종 합의하고 양측은 'FAO와 주최국간 책임분장에 관한 각서'에 서명함.
3. 정부는 APFC 제8차 회의에 참가할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하였으며, 재외 공관에 대해서는 회의 참가자에 대한 한국 입국사증 발급 등 편의를 제공토록 지시함.
 - 정부대표단
 - 수석대표 김영진 산림청장, 교체수석 현신규 서울대 농대 교수
 - 대표 산림청, 외무부, 한국합판공업협회 관계자 등 8명
 - 훈령
 - 우리나라의 산림현황 설명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조림의 산업화 문제에 대한 연구, 검토
 - 임업교육에 대한 제반 문제점 검토(우리나라 계획 수립에 참고)
4. 동 회의 개최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가국: 한국, 일본, 인도, 라오스 등 22개국 및 중국 등 10개 옵서버
 - 주요 토의 내용
 - 1965~68년 아태지역 산림개발 및 무역에 관심 표명
 - 회원국에 야생동물 및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강력 조치 촉구
 - 수원항양사업을 국가산림기관 통제 하에 둘 것을 제의
 - 우리 대표단은 대단히 조림, 임업실무자 교육 등을 위한 FAO의 지원을 요청

IPFC(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 연안어업 증식에 관한 실무단 회의, 제1차. Bangkok, 1969.12.13.-19.

| 69-274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6/6/1~45(45p)



FAO(세계식량농업기구)가 개최한 하기 산하위원회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가 참석함.

1. IPFC(연안증식어업에 관한 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 실무단 제1차 회의(1969.12.13.~19. 방콕)
 - 우리나라는 1950.1.19. IPFC에 가입
 - 상기 실무단 멤버로 지명된 김균현 수산청 증식과장이 FAO 초청에 의해 개인자격으로 동 회의에 참석함.
2. 수산통계에 관한 IPFC / IOFC 공동실무반 회의(1969.12.1.~5. 방콕)
 - 동 실무반회의는 수산개발 및 보호관련 국가계획 촉진 문제 등을 논의하며, 서학근 국립수산진흥원 자원조사과장이 FAO 초청에 의해 개인자격으로 동 회의에 참석함.

| 69-275 |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1차. Geneva, 1968.5.6.-26.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3/11/1~147(147p)

1. 정부는 WHO(세계보건기구) 제21차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대표단

- 수석대표 정희섭 보건사회부 장관, 교체수석대표 박동진 주제네바대사
- 대표 김택일 보사부 보건국장 등 3명

● 회의의제

- 1969년도 사업 및 예산 확정, WHO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사무총장 임명, 신규 가입국 가입 승인, 현장개정, 이사국선출(8개국) 등

2. WHO 제21차 총회 참석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의 WHO 가입 시도 또는 WHO 총회 초청문제 등에 유의하여 대처할 것
- 바레인의 WHO가입 신청은 지지하고, 동독의 가입신청은 반대할 것
- 현 사무총장 Candau의 재임명을 지지할 것
- WHO현장 개정관련, 총회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문제와 이사회 위원자격을 이사국대표로 임명하는 개정안을 지지할 것
- WHO 사무국이 책정한 우리나라의 분담금비율 0.11%가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3. WHO 제21차 총회 대표단이 제출한 총회 참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남예멘의 정회원국 가입 승인, 바레인의 준회원국 가입 승인, 동독의 정회원국 가입신청은 부결됨(찬성 19, 반대 57, 기권 27).
- 현 사무총장 M .G. Candau를 5년간 임기로 재임명 승인함.
- 1970년도 WHO예산은 1969년도 수준의 9% 증가안을 의결하고, 사업우선순위는 저개발국 지원에 치중하기로 함.
- 현장개정안은 심의과정에서 반대론이 우세해 집에 따라 개정안 제안국이 동 개정안을 철회함.
- 신규 이사국으로 8개국이 선출됨(벨기에, 레바논, 캐나다, 몽고, 칠레, 우간다, 자메이카, 영국).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2차. Boston, 1969.7.8.-28.

| 69-276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6/7/1~176(176p)

1. 정부는 1969.7.8.~28. 보스톤에서 개최되는 WHO(세계보건기구) 제22차 총회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대표단

- 수석대표 연하구 주유엔대표부 공사
- 대표 차윤근 보사부 의정국장 등 2명

● 회의의제

- 1970년도 사업 및 예산 확정, 1971년도 예산규모 심의, 신규회원국 가입 승인, 현장개정, 이사국 선출, 사무총장 임명계약 수정문제 등

2. WHO 제22차 총회 참석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의 WHO 가입 시도 또는 WHO 총회 초청문제 등에 유의하여 대처할 것
- 우리 대표단 연설을 통하여 WHO원조가 우리나라 보건발전에 현저히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는 동 원조를 유효히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
- 현재까지 신규 가입신청국은 없으나 공산권국가의 가입동향에 유의할 것
- WHO 사무국이 책정한 우리나라의 1970년도 부담금비율 0.11%가 상회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3. 우리대표단이 외무부에 제출한 총회 참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련, 몽고 및 쿠바 대표가 북한이 총회에 초청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우리 수석대표는 북한 초청 봉쇄발언을 하였으며, 미국, 우루과이, 대만(구 자유중국), 월남이 우리 입장에 동조함.
- 1970년도 WHO예산은 1969년도 대비 10% 증가 의결됨.
- 말라리아, 천연두 퇴치전략을 강화함.
- 신규 이사국으로 8개국에 3년 임기로 선출됨.
 - 알제리, 불가리아, 중앙아프리카, 사이프러스, 일본, 네팔, 미국,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4. 우리 수석대표는 총회에 참석중인 브룬디 보건장관과 별도 접촉하여 한국-브룬디 간 관계개선 가능성에 대해 타진함.

| 69-277 |

WHO 서태평양지역위원회, 제19차. Manila, 1968.10.1.-8.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3/12/1~79(79p)

1. 정부는 1968.10.1.~8.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WHO 서태평양지역위원회 제19차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대표단

- 수석대표 소장영 주필리핀대사관 공사, 대표 장경식 보사부 방역과장

● 회의의제

- 197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제20차 WHO총회 결의, 서태평양지역 장기 보건계획, 제18차 서태평양지역 총회 결의에 따른 사업실시 현황 등

2. 제19차 총회참석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 중국(구 중공)등의 WHO가입 또는 총회초청 문제가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임을 강조하고 이들의 기도를 저지할 것

● 우리가 제출한 1970년 정규사업 및 예산에 대한 WHO 지원 필요성을 강조할 것

● 우리나라 장기보건계획의 중요성을 감안, '장기 보건계획' 기술토의에 적극 참여할 것

3. 총회 참석 대표단이 외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70년도 사업예산은 약 530만\$, 주요사업 분야는 전염병관리, 동물보건 등임.

● 서태평양지역내 WHO의과대학 설치는 각국 예산부담문제로 부결됨.

● 지역위원회 연차 총회를 마닐라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경우, 경비초과분을 개최국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함.

4. 우리대표단은 다음의 2개 의제를 제19차 총회 의제로 제안하였으며, 서태평양지역위원회는 이를 총회 잠정의제에 포함시킴.

● Sanitary Measures for Water Supply

● The Role of Laboratory Services in Public Health Activities

WHO 서태평양지역위원회, 제20차. Manila, 1969.9.23.-30.

| 69-278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6/8/1~61(61p)

1. 정부는 1969.9.23.~30.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WHO 서태평양지역위원회 제20차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대표단

- 수석대표 이성희 국립보건연구원 훈련부장
- 대표 안세훈 주필리핀대사관 2등서기관

● 파견목적

- WHO 기술지원 및 장학사업 등 수혜사업 유치, 우리나라의 발전 상황 및 보건 상황 홍보

● 회의의제

- 국가 방역계획 및 조직에 관한 기술토의, 197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연차 보고서 검토, 지역과 관련된 WHO이사회 및 총회 결의사항 검토, 보건 분야의 기술적인 문제 토의 등

2. 제20차 총회참석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 중국(구 중공) 등의 WHO가입 또는 총회초청 문제가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임을 강조하고 이들의 기도를 저지할 것
- 우리가 요청한 사업이 1971년 사업계획에 가능한 많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
- 금번 총회의 '국가 방역계획 및 조직' 기술토의에 적극 참여할 것
- 대표단은 기초연설을 통하여 우리나라 보건분야 발전상황을 홍보하고, WHO의 기술지원이 우리나라 보건발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할 것

3. 본 문서철에는 다음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 WHO 서태평양지역위원회 보도자료: One Year of Work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of WHO (period 1968~69년)

국제사회복지관계 장관회의. New York, 1968.9.3.~12.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3/13/1~196(196p)

1.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결의 1140(XLI)에 따라 국제사회복지관계 장관회의가 1968.9.3.~12. 뉴욕에서 개최됨을 1967.12.13.자 공한으로 우리정부에 통보하면서 한국대표단의 참석을 요청함.
 - 동 회의에서는 국가개발에 있어서 사회복지 계획의 역할,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책임, 인력 수급 및 국제협력문제 등이 토의됨.
2. 정부는 동 장관회의에 파견하는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대표단
 - 수석대표 김도창 보사부차관, 교체수석대표 연하구 주유엔대표부 공사
 - 대표 이만갑 보사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 등
 - 파견목적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현황 및 계획 소개, 참가국 대표들과 국제협력 문제 협의
3. 동 장관회의 참석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개발 테두리 내에서의 사회복지 의제와 관련, 개발도상국의 공업화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사회개발계획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동 계획 시행을 위해 기술적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할 것
 -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책임 의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추진될 경제사회개발계획 등을 통해 사회,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단계적으로 추진중임을 소개할 것
 - 사회복지를 위한 인력대책 의제와 관련,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인력현황과 재훈련상황을 소개하고, 특히 재훈련을 위한 교육전문가지원이 절실함을 지적할 것
4. 동 장관회의 참석 대표단이 외무부에 제출한 회의참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가국
 - 87개국 및 24개 국제기구
 - 회의 결과
 - 국가개발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 확인
 - 개발의 최종목표는 사회진보, 생활향상 및 사회정의
 - 사회복지분야에서 국제연합의 주도적 기능 재확인
 - 제23차 유엔총회에 금번 장관회의 결의 및 건의 제출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제16차. 동경, 1969.10.1.-11.14.

| 69-280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6/9/1~370(370p)

1. 정부는 1969.10.1.~11.14. 도쿄에서 개최되는 UPU(만국우편연합) 제16차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 수석대표 최병권 체신부 우정국장, 교체수석대표 지성구 주일대사관 참사관, 대표 박래천 체신부 국제우편과장 등
2. 동 총회 참석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산권은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서독 등의 대표권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표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임을 강조하고 이들의 기도를 저지할 것(대만의 대표권문제에 대해서는 대만의 입장 적극지지)
 - 공산권은 중국(구 중공), 북한 등의 UPU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떤 주권 국가라도 가입선언서를 기탁함으로써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가입조항을 개정하는 제안을 하였던 바, 동 개정제안에 적극 반대할 것
 - 집행이사국 증가 제안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취할 것
 - 우리나라가 제안한 12개 UPU개정안 또는 결의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
3. 동 총회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33개국 회원국 참가, 약 1,200건의 제안사항 심의
 - 공산권이 제안한 비회원국 옵서버 초청안은 UPU헌장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결됨.
 - 어떤 국가라도 가입선언서를 기탁함으로써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공산권 제안은 부결됨.
 - 공산권의 한국, 대만, 서독 등의 대표권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서방국가들이 UPU가 정치 문제가 아닌 기술문제를 토의하는 장소임을 강조, 공산권 발언을 봉쇄함.
 - 인종차별정책을 취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UPU총회에서 축출시키자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안이 통과되어 남아공이 도쿄 총회에서 축출됨.
 - 유엔 회원국인 남아공을 UPU로부터 축출시키기는 안은 부결됨.
 - 포르투갈의 식민정책을 규탄하는 아랍·아프리카 제안은 통과됨.
 - UPU총회는 우편기술문제만을 토의하며, 정치문제 토의는 배제한다는 서방측 제안은 통과됨.
 - 기술원조 업무를 일원화하여 집행이사회로 통합조정기로 함.
 - 기타 우편물 증별 간소화, 기본요금 평균 30% 인상, 봉투규격 표준화 등에 합의함.



4. 우리대표단 활동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UPU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하기 4개 제안이 통과됨.
 - 소포배상금 인상, 소포 신서제도, 주소기재방법 개선 및 계산서 작성방법 일원화
- 특명전권위원으로 임명된 최병권 수석대표가 현장 최종의정서 등 5개 의정서에 서명
- 건의사항
 - 국제우편전문가 양성, CCFS(우편연구자문위원회) 이사국 입후보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총회, 제5차. Venice, 1969.4.14.-17.

| 69-281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7/1/1~193(193p)

1. 정부는 1969.4.14.~17. 베니스에서 개최되는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제5차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대표단

- 대표 이선근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이재현 주프랑스 공보관장

※ ICCROM는 문화재 보존 및 복구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문제에 관한 연구와 전문가 교환, 문헌발간, 이와 관련된 연구생 및 기술자 훈련 실시를 목적으로 1958.5.10. UNESCO 산하기관으로 창설(본부 로마)되었는바, 우리나라는 1968.7.22. 가입함.

2. 동 총회 참석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번 총회에서는 동 기구의 1969~70년 기본정책, 예산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므로 동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문화재 우수성 소개 등 국위선양에 최선을 다할 것

●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화재보존관련 문제에 대해 ICCROM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것
- 화강석 조각작품 및 건축물 풍화작용 방지문제, 목조건축 문화재 부식 방지문제, 서역 벽화 보수문제

3. 대표단이 외무부에 제출한 회의참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참가국: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30개국

● 전문가훈련을 위한 ICCROM 프로그램관련 한국에 대한 scholarship지원 교섭

● 이사국 선출: 스페인, 프랑스, 레바논, 일본,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서독

4. 본 문서철에는 ICCROM 발간 제5차 총회 문서(의사일정, 현장개정 초안, 이사회 보고서, 재정 보고서, 센터활동 계획 및 예산)가 수록되어 있음.

69-282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37차. Paris, 1969.5.19.-24.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7/2/1~123(123p)

1. 정부는 1969.5.19.~24. 파리에서 개최되는 IOE(국제수역사무국) 제37차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대표단

- 대표 한화섭 농림부 가축위생과장, 교체대표 주프랑스대사관 조기일 3등서기관

● 파견목적

- 소, 닭, 돼지 질병의 방역통제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기술협조 참여, 한국 수의사의 월남 진출문제 협의
 ※ IOE는 가축 질병 원인 연구 및 예방에 관한 자료 수집, 가축 보건분야 국제협약 체결 및 국내적 이행을 목적으로 1924.1.25. Paris에 설립된 국제기구인바, 우리나라는 1953.11.18. 가입함.

2. 동 총회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소 질병은 북한 및 만주지역에 만연되고 있으므로 총회참가를 통하여 이들 지역의 소 질병 발생 상황 정보 입수에 노력할 것
- 우리나라의 경우 닭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크므로, 닭의 급성전염병 근절 대책에 참고할 정보를 입수할 것
- 돼지콜레라 근절관련 일본이 개발한 백신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것
- 우리나라 수의사를 월남에 진출시키는 문제를 협의할 것

3. 대표단이 외무부에 제출한 회의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가국

-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등 64개국

● 총회 합의사항의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

- 호주와 가축통상 확대가 요망되고 있으나, 호주 일부지방에 우폐역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한국조사단이 현지 출장하여 방역검역 등 조사 필요
- 닭의 호흡기질환 관련 각국 보고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방법 연구 필요
- 총회에서 합의된 형광항체현미경법에 의한 돼지콜레라 진단방법은 필요 기구를 도입하여 각시, 군 가축 보건소에 배포, 활용 예정

IOE 아시아, 극동 및 오세아니아 지역회의. Canberra, 1969.10.20.-28.

| 69-283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7/3/1~26(26p)



1. IOE(국제수역사무국)은 FAO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아시아·극동 및 오세아니아지역회의가 1969. 10.20.~28. 캔버라에서 개최됨을 1969.5월 우리정부에 통보하면서 한국의 참석을 요청함.
2. 농림부는 가축 및 축산물 교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회의 참석이 필요하나 제반사정상 전문가파견이 어려우므로, 현지공관에서 대표를 파견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3.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박원철 주호주대사관 3등서기관이 회의에 참석하였는바, 동 회의 참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의 목적 및 의제
 - 가축 전염병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및 가축검역관련 국제협정 검토
 - 토의 의제
 - 우폐역, 라선균병, 진드기로 인한 질병, 우역, 구제역, 유산균증, 조류 백혈병과 마렉씨병 등 7종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 진단 및 방역
 - 참가국
 - 한국, 일본, 미국, 태국 등 15개국, IOE 및 FAO
 - 회의 결과
 - 아시아·극동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각각 지역특색에 맞는 백신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IOE 및 FAO가 재정지원을 하여 Animal Biologics Bank를 설립해 줄 것을 건의

69-284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 제6차. Paris, 1969.9.2.-13.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조약과

MF번호 1-27/4/1~225(225p)

1. 정부는 1969.9.2.~13. 파리에서 개최되는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제6차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대표단

- 수석대표 전철웅 교통부 수로국장, 대표 김형기 과학기술처 연구조정관 등 2명

● 파견목적

- 해양탐사관련 법적문제 등이 주요 의제이므로 우리나라의 연안 및 원양어업 진흥을 위하여 적극 참여
 ※ IOC는 해양의 과학적 조사·분석,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1961.6.10. UNESCO 산하기구로 창설되었는바, 우리나라는 창설과 동시 가입함.

2. 동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연안의 대륙붕 개발 및 탐사계획과 관련, 다음 사항을 제안하여 토의할 것

- 해양탐사관측센터를 동남아시아에 설치
 - 해양관측 조사기술의 통일과 자료 활용을 위하여 해양탐사훈련센터 설치
 - 대양별 조사위원회 구성과 동해 및 일본해의 지질 합동 조사

●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탐사, 개발에 필요한 장비, 훈련생 파견, 전문가 초청 등에 관한 IOC 기술 원조를 적극 교섭할 것

● 국제해양탐사 10년 계획과 해양자원조사 10년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것

3. 회의결과에 대한 대표단의 주요 보고 내용

● 루마니아대표가 북한, 중국(구 중공), 월맹의 IOC 가입을 요구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대만(구 자유중구) 및 월남이 반박하여 토론이 종료됨.

● 대표단은 총회에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 내에서 타국이 해양탐사를 하는 경우, 연안국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연안국은 그 동의를 거부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IOC당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동 결의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청훈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와의 협의를 거쳐 ‘IOC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나, 그 사유를 IOC당국에 제시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도록 훈령을 시달함.

IHD(국제수문학 10년에 관한 국제회의). Paris, 1969.12.8.-16.

| 69-285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7/5/1~71(71p)

1. 정부는 1969.12.8.~16. 파리에서 개최되는 IHD(국제수문학 10년에 관한 국제회의) 제5차년도 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대표단

- 대표 최규열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조사계획부 차장 등 2명

● 파견목적

- 1965년 이후 5년간의 IHD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후반기 5년간의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 교환

※ IHD는 물의 양적, 질적 특성 연구, 치수 및 이수 사업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64년 UNESCO 제13차 총회에서 채택됨.

2. 동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번 회의는 전반기 5년간의 IHD 사업평가, 후반기 5년간의 사업계획 수립 및 IHD사업 장기화 문제 등을 토의하는 국제회의이므로, 각 전문분야의 새로운 기술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 수문개발 사업 발전에 공헌할 것

● 우리나라의 수문개발사업과 IHD 활동현황 및 장래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여 우리의 발전상을 홍보할 것

● 우리나라가 IHD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시험유역조사(代表試驗流域調査)를 위한 IHD의 원조 획득에 노력할 것

각국의 AOPU(아시아·오세아니아우편연합) 가입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7/6/1~157(157p)

우리정부가 각국의 AOPU(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AOPU 헌장 제3조는 신규 가입 희망 국가는 가입신청서를 필리핀 정부에 제출하며, 필리핀 정부는 동 가입신청서를 각 회원국에 송부하여 승인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OPU는 1961.6월 마닐라에서 창설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창설 회원국임.

1. 라오스 가입

- 필리핀 정부는 라오스가 1968.3.25. AOPU 가입을 신청해 왔음을 통보하면서, 우리정부의 승인을 요청해 옴.
- 외무부는 체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미얀마의 가입을 승인키로 결정하고, 1968.6월 우리정부의 승인사실을 필리핀정부에 통보함.
- 필리핀 정부는 라오스의 가입신청과 관련, 한국, 태국, 대만(구 자유중국)이 승인하여 라오스가 1968.7.15.자로 AOPU 회원국이 되었음을 통보해 옴.

2. 일본 가입

- 필리핀 정부는 일본이 1968.6.20.자로 AOPU 가입을 신청해 왔음을 통보하면서, 우리정부의 승인을 요청해 옴.
- 외무부는 체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일본의 가입을 승인키로 결정하고, 1968.9.4. 우리정부의 승인사실을 필리핀정부에 통보함.
- 필리핀 정부는 일본이 1968.9.4.자로 AOPU 회원국이 되었음을 통보해 옴.

3. 호주 가입

- 필리핀 정부는 호주가 1968.12.18.자로 AOPU 가입을 신청해 왔음을 통보하면서, 우리정부의 승인을 요청해 옴.
- 외무부는 체신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호주의 가입을 승인키로 결정하고, 1969.3.13. 우리정부의 승인사실을 필리핀정부에 통보함.
- 필리핀 정부는 호주가 1969.5.1.자로 AOPU 회원국이 되었음을 통보해 옴.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의 영구적 제도설립을 위한 전권회의. Washington, D.C., 1969.2.24.-3.21.

| 69-287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I-27/7/1~98(98p)



1. 미 국무부는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컨소시움 설립을 위한 전권회의가 1969.2.24.~3.21. 워싱턴에서 개최됨을 1968.11.20.자 공한으로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하면서 각국 정부대표의 참가를 요청해 옴.
 - 동 회의 목적은 국제위성통신제도에 관한 INTELSAT의 보고 및 권고안 검토에 있으며, 최종합의사항에 대한 공식서명이 있게 되므로 각국이 정부대표의 서명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함.
2. 정부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석한 후 외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INTELSAT의 법적지위
 - agency형식을 선호하는 미국 견해와 국제법인체를 선호하는 유럽 국가와의 의견이 대립됨.
 - 구매정책
 - 전회원국에 공개입찰한다는 원칙에 대부분 동의하나, 구매에 응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위한 기술원조 등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 회원국 자격
 - 세계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공산권의 all state formula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서구권 입장이 대립됨.
 - INTELSAT 전권회의는 1969.5.20.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하며, 최종 회의는 1969.11.18. 재개하기로 결의함.
3. 참고사항
 -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제9조는 동 협정에 의거하여 창설된 세계상업위성 통신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영구히 존속시킬 것인가 여부 및 동 제도 집행을 위한 상설기관을 설치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미국정부로 하여금 동 검토를 위한 국제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IHO(국제수로기구) 동부아시아지역수로위원회 창설준비 회의 합의사항 이행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7/8/1~86(86p)

1. 교통부는 동부아시아지역 수로위원회 창설을 위한 준비회의(1968.10.7.~9. 동경)에서 채택된 '동부아시아지역 수로위원회 정관안'에 대하여 1969.2.1.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동 정관은 수로당국자가 가입토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간 협정으로 체결함이 금후 협정운용상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회보함.
2. 교통부는 동부아시아지역 수로위원회의 성격을 IHO(국제수로국)의 자문기관으로 해석하여 회원 자격을 동 지역 내 수로국장(水路局長)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1969.4.15.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해 옴.
 - 외무부는 동부아시아지역 수로위원회는 IHO의 자문기관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회원자격을 수로국장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회보함.
3. 한·일 공유해면에 관한 공동조사 실무자회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됨.
 - 1차 회의(1969.3.12.~14. 서울)
 - 대표: 전철용 교통부 수로국장, 마쓰자키 다꾸이찌 해상보안청 수로부장
 - 의제: 공동 해양관측 및 조사, 수로측량 자료 교환 및 공동측량, 해도복제협정의 효율적 운영, 근해에서의 사격훈련 통보, 기술자 훈련 및 교육
 - 2차 회의(1969.7.28.~31. 서울)
 - 대표: 강호진 교통부 수로과장, 쇼지 다이다토 해상보안청 해양과장
 - 의제: 한일 공동 해양관측 및 조사구역, 담당구역 설정

IUOTO(국제관설관광기구연맹) 총회, 제21차. Dublin(아일랜드), 1969.10.28.-11.5.

| 69-289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7/9/1~143(143p)

1. 정부는 1969.10.28.~11.5.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IUOTO(국제관설관광기구) 제21차 총회에 참석할 정부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정부대표단
 - 수석대표 윤호근 주스웨덴대사관 참사관, 대표 김완수 교통부 관광국장 등 2명
- 파견목적
 - IUOTO를 정부간 관광기구로 개편하는 문제 토의
 - ※ IUOTO는 WTO(세계관광기구)의 전신으로 우리나라는 1957.11월 가입함.

2. 동 총회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련을 위시한 공산측이 우리나라의 회의참가 자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방제국과 협조하여 반박할 것
- IUOTO 전권대표회의(1969.5.15.~28. 소피아)에서 IUOTO를 유엔체제내의 정부간 기구로 승격시키는 제안이 채택되고 회원자격은 공산권이 제안한 보편성원칙이 채택되었는바, 금번 총회에서 보편성원칙이 제기될 때는 우방제국과 협조하여 이를 배제할 것

3. 대표단의 회의결과에 대한 주요 보고 내용

- IUOTO를 유엔체제 내의 정부간 기구로 승격시키는 제안이 소피아 IUOTO 전권회의에서 채택되었으나 미국, 캐나다, 프랑스가 정부간 기구로 개편하는데 대하여 적극 반대해왔으며 유엔도 새로운 전문기구 설치를 회피하는 관계로 IUOTO 기구개편 문제는 유엔 체제 밖에서의 정부간 기구로 타협될 가능성이 농후함.
- IUOTO 헌장 개정문제는 신규 회원국 가입문제와 더불어 1970년 개최 예정인 IUOTO 임시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69-290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 제10차. Manila, 1969.4.29.-5.2.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7/10/1~66(66p)

1. 정부는 1969.4.29.~5.2.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제10차 이사회에 참석할 정부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정부대표단

- 수석대표 이철승 상공부차관, 대표 원용대 상공부 경공업과장 등 4명

● 파견목적

- 1970년 '아시아 생산성의 해' 관련 토의 참석, 회원국의 생산성향상운동 정보수집을 통해 우리나라 생산성 향상에 기여

2. 동 총회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PO 5개년 계획에 대한 우리나라의 계획을 발표할 것

● 1970년 '생산성의 해' 설정에 대비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할 것

●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지역기구 설치를 촉구할 것

● APO 직원에 대한 특권 및 면제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할 것

3. 회의결과에 대한 대표단의 주요 보고 내용

● APO 사업의 확대와 선진각국의 원조삭감을 계기로 회비 및 각종 부담금 50% 인상안이 제출되었으나 1970.2월 임시총회에서 재논의, 결정기로 합의함.

● APO 기구 개편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신임총장 취임 후 논의기로 합의함.

APO 이사회 한국대표이사 임명

| 69-291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7/11/1~6(6p)



정부는 1969.6.7. APO(아시아생산성기구)측에 우리측 이사를 아래와 같이 임명하였음을 통보함.

- APO 한국 대표 이사
 - 이철승 상공부차관
- APO 한국 교체대표 이사
 - 이은복 한국생산성본부 이사장

69-292

ICMMP(국제군진의약및약학위원회) 총회, 제19차. Dublin(아일랜드), 1969.9.29.-10.2.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31/13/1~31(31p)

1. 정부는 1969.9.29.~10.2.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ICMMP(국제군진의약및약학위원회) 제19차 총회에 참석할 정부대표를 아래와 같이 임명함.

● 정부대표

- 이대부 육군본부 의무감

● 파견목적

- 군진의약학의 발전에 관한 정보교환

※ ICMMP는 군관계 불구자와 부상자 구제 목적으로 1921년 브뤼셀에서 창설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45.10월 가입함.

2. 동 총회의 토의의제는 다음과 같음.

● 1969~71년 예산 및 회계감사

● 개도국에 대한 군사의료봉사 지원

● 장교 및 기타 군 관계자에 대한 위생,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

● ICMMP 창설 50주년 기념식

ICDO(국제민방위기구) 가입문제

| 69-293 |

생산연도 1966-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7/13/1~62(62p)



1. 대한적십자사는 보건사회부 요청으로 1964.3월 우리나라 대표기관 자격으로 ICDO(국제민방위기구, 제네바 소재)에 가입하였으며, 1964.5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ICDO 총회에서 집행이사로 피선됨.
2.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966.12.31.자 외무부장관 앞 공문을 통하여 “1966.10.17. ICDO헌장개정 으로 ICDO가 민간기구에서 정부간 기구로 변경” 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정부차원의 가입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해 옴.
3.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969.10.8.자 외무부장관 앞 공문을 통하여 ICDO관련 업무가 1969.9.25.부로 대한적십자사에서 내무부로 인계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우리정부가 주체가 되어 ICDO에 가입하는 절차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69-294

APU(아시아의원연맹) 총회, 제4차. Manila, 1968.12.2.-9.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4/6/1~184(184p)

1. 국회는 1968.12.2.~9.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4차 APU(아시아의원연맹) 총회에 다음 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 김동환, 조한백, 이매리, 조유희, 이준근, 이병욱, 송한철, 박기출, 이원엽 의원

2. 동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결의함.

- 월남 및 참전국의 평화유지 노력 지지
- 회원국 전문가의 pool이 될 아시아지역사회개발처의 조속한 설치
- 자본집중산업인 철강,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회원국간 긴밀한 협력
- 국제금융기관들이 개도국의 공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관정책 전환
- 개도국 공산품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
- 회원국간 해운 및 항공협력 증진
- 핵물질의 평화적 목적 사용
-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
- 회원국의 사회, 경제문제를 연구하는 아시아개발센터 설치

APU(아시아의원연맹) 총회, 제5차. Taipei, 1969.11.24.-28.

| 69-295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7/14/1~88(88p)

1. 국회는 1969.11.24.~28. 타이페이에서 개최되는 APU(아시아의원연맹) 제5차 총회에 다음 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 김동환 부의장, 김창근, 우흥구, 오학진, 이매리, 이병주, 박재우, 이우현, 김옥선, 김유택 의원

2. 동 총회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가국

-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월남, 말레이시아, 대만(구 자유중국) 등 9개 회원국
-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옵서버 3개국

- 김동환 부의장은 정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됨.

- 공동성명서에서 아시아 공동방위를 주장하는 대만과 이에 소극적인 인도네시아의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동 문구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타협됨.

3. 제5차 APU 총회에 관하여 타이페이 일간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함.

-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중대한 변화에 따라, 아시아국가 자신의 책임이 점차적으로 과중해 지고 또한 아시아 각국간 특히 아스팍(ASPAC) 지역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에 개최되는 제5차 APU 총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APU 회원국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APU 조직을 확대, 많은 회원국을 포용하여 회원국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공산주의에 의한 아시아 적화 저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논의하여야 함.

4. 우리나라 김창근 의원을 포함한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의원연맹(APU) 경제조사위원회 위원 7명을 태운 라오스 공군소속 항공기가 라오스로 가던 도중 태국 공군에 의해 강제 착륙당함.

- 외무부에서 사건경위를 파악한 바, 라오스 항공기가 지름길로 비행하기 위해 태국 영공을 횡단하였는데 태국 공군이 사전연락을 받은 바 없어 강제착륙시킨 것으로 판명됨. 라오스정부는 김창근 의원 등 탑승객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명함.

69-296

APU 이사회, 제6차. Manila, 1969.6.18.-19.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7/15/1~55(55p)

1. 국회는 1969.6.18.~19.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APU(아시아의원연맹) 제6차 이사회에 다음 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 김동환, 조윤형, 이매리, 박한상, 이원우, 박종태 의원

2. 동 이사회 결과는 다음과 같음.

- ADC(아시아개발센터) 본부 설치, 예산구조 및 회원국 분담금 문제 등은 미결사항으로 보류됨.
- 라오스 경제시찰단 파견문제는 우리 대표단장의 제안에 따라 타이페이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총회 이전에 파견하는 방향으로 대체적 의견 합의함.
- APU 창설 이래 옵서버로 참석하고 있는 호주의 가입문제는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결론을 얻는데 실패함.
- 현장개정위원회는 우리 대표단의 주장을 받아 들여 상설사무국 신설조항만을 삭제하고 현장개정안을 채택함.
- 제6차 APU 총회는 월남이 개최의사를 표명함.

IPU 이사회, 제104차. Vienna, 1969.4.7.-13.

| 69-29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8/1/1~191(191p)

1. 국회는 제102차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에서 회원국 가입조건으로 보편성원칙에 관한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공산권 국가들이 1969.4.7.~13.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104차 이사회에서 북한, 동독 등의 IPU 가입을 추진할 것에 대비하여 1969.2월 외무부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함.
 - 국회는 IPU 회원국 의원 앞 서한 발송 및 직접 접촉을 통하여 우리측 입장 지지를 요청함.
 - 외무부는 재외공관에 대해 보편성원칙 적용문제는 공산권이 북한, 동독 등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신규 가입문제는 현행 IPU 규약을 준수토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국회는 제104차 IPU 이사회에 박준규 의원, 정일형 의원, 김창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대표단을 파견함.
3. 제104차 이사회개최 직전에 보편성원칙 적용문제를 검토하는 working group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동 회의는 보편성원칙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서 신규 회원국 가입 문제는 현행 IPU 규약의 현상유지가 이루어짐.
4. 북한은 1969.2.15.자 김국헌 최고인민회의 서기장 명의로 IPU 가입신청 서한을 제출한 바 있으나, 제104차 IPU 이사회는 북한 가입문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북한측 서한을 정식 가입신청서로 볼 것이냐는 여부(즉, 집행위 의제로 채택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 표결한 결과, 반대 5, 찬성 4로 집행위 의제로 채택하지 않음.
5. 제104차 IPU 이사회는 중동위기, 무역분쟁 시 인권보장, 1968.4월 테헤란에서 개최된 국제인권 회의 업적지지 등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를 IPU 사무국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69-298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38차. Mexico City, 1969.10.13.-19.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8/2/1~38(38p)

1. 정부는 제38차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대표단

- 대표 안명수 내무부 경찰전문학교장, 보좌관 박영호 내무부 치안국 수사지도과

2. 동 총회 토의 의제는 다음과 같음.

● 신규 회원국 가입 승인(모리셔스, 말리)

● 1970년도 예산 및 분담금, 1969~70년 사업계획

● 경찰과 관광객 보호, 불법적 마약거래, 공중 해적, 조직적 밀수 퇴치 등

아시아사법회의, 제4차. Canberra(호주), 1970.4.6.-10.

| 69-299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32/2/1~9(9p)



1. 주한 호주대사관은 Asian Judicial Conference(아시아사법회의) 제4차 회의가 1970.4.6.~10. 캔버라에서 개최됨을 1969.8.11.자 공한으로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의 참석을 초청해 옴.
2. 대법원은 1969.8.30. 동 회의에 대법원장 내외가 참석함을 외무부에 통보해 왔으며, 외무부는 동 내용을 1969.10.4.자 공한으로 주한 호주대사관에 회신함.

69-300

WACL(세계반공연맹) 제3차 총회 및 APACL(아시아민족 반공연맹) 제15차 회의. Bangkok, 1969.12.3.-8.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8/3/1~47(47p)

1. 한국반공연맹은 1969.6.9.~11. 방콕에서 개최되는 WACL(세계반공연맹) 집행위원회 회의에 이응준 한국반공연맹 이사장이 참석함을 1969.5월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우리정부에서 제기할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문의해 옴.
 - 외무부는 북한의 침략적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이러한 내용이 공동성명 또는 회의록에 적절히 반영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 또한, 1969.5.22. 방콕에서 개최된 월남 참전국 외상회의에서 우리 외무부장관이 행한 연설문 사본과 북한 도발행위와 관련하여 우리정부가 유엔에 제공한 정부각서 사본도 참고로 제공함.
2. 한국반공연맹은 WACL 제3차 총회(1969.12.3.~5.)와 APACL(아시아민족반공연맹) 제15차 대회(1969.12.6.)가 방콕에서 개최되며, 양 회의에 이응준 한국반공연맹 이사장 등 대표단이 참석함을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동 대표단에 대한 지침을 알려줄 것을 요청해 옴.
 - 외무부는 월남 주둔 미군철수문제,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기구 설치문제, 오키나와 반환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참고로 통보함.
3. WACL 제3차 총회 대표단이 보고해 온 주요 회의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WACL 사무국내 모금위원회 설치
 - 한국에 청년기구 임시 사무국 설치
 - 20개 결의문 채택, 결의문 1호에 김일성 주석의 허위광고 규탄
 - 제4차 WACL 총회는 동경에서 개최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아시아 외교관 훈련과정, 제2차. 서울, 1969.7.5.-8.9.

| 69-301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8/47/1~235(235p)

1.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사무총장은 1968.4.2. 우리 외무장관 앞 서한을 송부, 제2차 아시아 외교관 훈련과정을 1968년 중 한국에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함.

● 제1차 과정: 필리핀에서 1967.7.21.~9.9. 실시

● 재정후원: Carnegie 국제평화재단, 유엔 등

※ EROPA는 지역 내 행정제도 및 경제적, 사회적 발전 도모 목적으로 1958.5월 마닐라에서 창설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62.10월 가입함.

2. 우리정부는 예산 및 강사 초빙 등 훈련을 위한 각종 준비문제를 검토한 후, 1968.5.23. 주필리핀 대사를 통하여 우리 정부가 제2차 아시아 외교관훈련 과정을 주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EROPA 사무총장에게 통보함.

3. 외교부, 총무처, 외교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외무부는 1969.7.2. 동 훈련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바, 훈련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간 및 장소: 1969.7.5.~8.9.(5주간) 외무부 외교연구원에서 실시

● 1969.7.5. 국무총리 참석 하에 개강식 거행

● 참가국 및 인원: 13개국 29명의 중견외교관 참석

- 국별 인원: 한국 6, 대만(구 자유중국) 3, 인도 1, 인도네시아 1, 이란 2, 일본 2, 요르단 1, 말레이시아 3, 네팔 2, 필리핀 3, 싱가포르 1, 태국 2, 월남 2

- 한국 참가자 6명: 외무부 3, 상공부 1, 총무처 1, 대한무역진흥공사 1

● 교수진

- 한국인 5인: 조순 서울상대 교수, 함병춘 연세대 교수 등

- 외국인 8인: 필리핀대학교 총장, 뉴욕주립대 교수 등

● 특강: 최규하 외무부장관, 김재원 국립박물관장

● 교과 내용 및 교육방법

- 국제법, 개발경제학, 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관계, 국제기구, 외무행정, 기술협력 및 지역협력에 관하여 강의, 회의, 토의 등의 방법으로 교육

4. 기타 자료

● 최규하 외무부장관의 수료식 폐회사

● EROPA/ A Preparation for the Second Asian Foreign Service Course(Republic of Korea)

EROPA 집행이사회, 제14차. Manila, 1969.9.25.-27.



생산연도 196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8/5/1~107(107p)

1. 정부는 1969.9.25.~27.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제14차 집행이사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대표단

- 수석대표 윤석현 주필리핀대사, 대표 동홍욱 총무처 행정관리국장 등 3명

● 파견목적

- 우리나라는 EROPA 집행이사국으로서 1969.7.5.~8.10. 서울에서 제2회 아시아 외교관 훈련과정을 주최함으로서 EROPA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집행이사회에서 제2차 외교관 훈련과정의 업적, 성과 및 문제점 검토에 적극 참가할 필요가 있음.

2. 우리대표단이 회의결과에 대해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가국

- 한국, 호주, 이란,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구 자유중국), 월남 등 9개국

● 결의사항

- 인도네시아를 11번째 EROPA 회원국으로 추천함으로서 차기 총회에서 정식 가입 결의키로 결정
 - 이사회는 제2차 아시아 외교관 훈련 과정을 서울에서 개최해 준 한국정부에 사의를 표명
 - 회원국 회비를 \$1,912에서 \$5,000으로 인상키로 결정
 - 제6차 총회 시 아시아에서의 인구성장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
 - 회원국 정부 내 National Committee 설치 문제를 차기 이사회에 제안키로 결정
 - EROPA의 재정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체의 가입추진 검토

● 건의사항

- 회원국 회비 인상안이 차기 총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외무부의 협조와 지원 필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제34차. Teheran, 1969.11.1.-13.

| 69-303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8/6/1~52(52p)

1. 상공부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회원국인 북한이 1969.11.1.~13. 테헤란에서 개최되는 IEC 제34차 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많으나 상공부는 예산사정상 대표 파견이 어려우므로 외무부 직원을 동 총회에 참석시켜 줄 것을 1969.6.5. 외무부에 요청함.
 - IEC는 각국 전기기술의 통일과 조정을 목적으로 1906년 런던에 설립(비정부간 국제기구)됨. 우리나라의 한국공업표준심의회는 1963.5.31. 가입하였고 북한의 전기기술위원회는 1963.11.16. 가입함.
2.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69.6.20. 주이란대사관에 주재국 관계당국을 접촉하여 북한에 대한 초청장 발급 여부 등 관련정보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주이란대사관은 영국 소재 IEC 사무국에서 북한을 포함한 회원국에 이미 초청장을 발급했다고 1969.7.11. 외무부에 보고함.
3. 주이란대사관은 북한의 참가 저지를 위해 이란 외무부를 수차례 접촉하여 북한대표단에 대한 비자발급 불허 등 입국거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란측은 IEC 회원인 북한에 대해 비자발급을 불허하는 것은 어려우며 또한 북한에 대한 비자발급 불허가 선례가 되어 각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측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함.
4. 외무부는 1969.8.1. 상공부에 주이란대사관의 보고내용을 통보하면서 동 회의에 북한대표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우리측의 유능한 전문가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상공부는 예산사정상 전문가파견이 어려우므로 주이란대사관 직원을 회의에 참석케 하여 정보를 수집해 줄 것을 1969.10.30. 외무부에 요청함.
 - 상공부 요청에 따라 외무부는 주이란대사관의 실태항 1등서기관 및 오임열 2등서기관을 동 회의에 참석하도록 조치함.
5. 주이란대사관은 1969.11.7. 회의참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북한은 회의참석을 결정하고 IEC 사무국에 북한대표단 명단까지 통보하였으나, 대표단 등록마감 전날인 1969.11.1 회의참가를 취소한다고 IEC 사무국에 통고함.
 - 금번 회의는 전기분야 30개부문에 관한 회의였으며, 세분화된 기술분야인만큼 대표단의 적극적인 회의 참여는 어려웠음.

69-304

IUGG(국제측지학·지구물리학연맹) 집행위원회. Madrid(스페인), 1969.9.13.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8/7/1~97(97p)

1. 과학기술처는 우리나라가 1960.3.15. 한국위원회 명의로 IUGG(국제측지학·지구물리학연맹)에 가입하였으나, 아직까지 국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동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IUGG 한국위원회 규정안을 작성하였음을 1969.6.10.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동 규정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동 규정안에 이견 없음을 통보함.

2. 과학기술처는 IUGG 집행위원회가 1969.9.13. 마드리드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과학기술처는 예산사정상 대표파견이 어려우므로 외무부에서 대표를 파견하여 회의진행 사항 등을 파악해 줄 것을 1969.6.13. 요청함.

● 외무부는 1969.6.24. 과학기술처에 동 회의에는 북한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북한간의 과학 대결 차원에서 우리나라 과학자 파견이 바람직하다고 회보하였으나, 과학기술처는 예산사정상 대표를 파견할 수 없음을 재차 외무부에 통보함.

3. 과학기술처는 1969.7.22. 알제리의 IUGG 가입신청에 대한 외무부의 입장을 문의하였는바, 외무부는 알제리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비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알제리의 IUGG 가입신청에 대해 기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1969.7.31. 회신함.

4. 기타 자료

-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연맹 규약
-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연맹 한국위원회 규정(안)

WEC(세계에너지회의) 한국가입, 1969.10.8.

| 69-305 |



생산연도 1966-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8/8/1~364(364p)

1. 우리나라의 WEC(세계에너지회의) 가입 경위

- 1966.3.5. 한국전력은 상공부 승인 하에 WPC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
- WPC(세계동력회의)는 1968.8월 모스크바 총회에서 WEC로 명칭을 변경함.
- 1966.10월 WPC 집행위원회는 한전 명의를 아닌 WPC 한국위원회 명의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함.
- 1967.5월 상공부는 WPC 한국위원회(대표: 한전 사장)를 구성하였으며, 동 위원회 명의로 WPC 가입을 추진함.
- 1969.10.8. WEC 총회에서 한국의 가입이 결정됨.

2. 한국위원회의 WEC 가입신청 시 제기된 지역적 관할 문제

- 1967.7월 WPC 사무국은 우리나라 국내위원회(Korea National Committee) 명칭 중 'Korea'가 불분명하다며 명칭 변경을 희망함.
- 1968.5월 한국위원회는 'Nation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명의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1968.7월 외무부는 1968.8월 집행위원회에서 가입이 실현되도록 교섭 할 것을 회원국 주재 공관에 시달함.
- 1969.2월 WEC 행정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지역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38선 이남이 지역적 한계임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함.
-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1969.3.24. 대한민국이 한반도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국위원회 위원장(한전 사장) 명의의 서한을 WEC에 제출하였으나, WEC 사무국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집행위원회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 1969.3.31. 정부는 'Nation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the energy interest in the Republic of Korea' 라는 내용의 statement를 WEC 사무국에 제출함.
- 1969.6.2. WEC 집행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가입신청을 찬성 31, 기권 9로 조건부 통과시키면서 공산권 국가들의 주장을 감안하여 60일 이내에 우리정부의 statement 내용을 보충하는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우리정부가 제출할 보충 statement에 대해 우리정부와 WEC 사무국 및 우방국 대표들 간에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사무국측은 '한전의 전력공급지역'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1969.7.23. '한국위원회는 한반도 북쪽 불법 집단의 점령으로 인해 군사분계선 이남을 관할'한다는 설명서를 사무국에 제출함.
- 이에 대해 WEC 사무국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1969.8월 외무부는 '한국위원회는 현재로서는 군사분계선 이남을 관할' 한다는 설명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함.

69-306

CISM(국제군인체육이사회) 총회, 제23차. Tunis(튀니지) 1968.12.2.-8.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4/17/1~72(72p)

1968년 중 CISM(국제군인체육이사회) 회의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음.

1. CISM 학술회

- 1968.5.6.~10. 프랑스 퐁텐블로 개최
- 학술회 참석자
 - 김종원 육군소령(국방부 CISM 한국대표), 최홍희 국제태권도 연맹총재, 김용채 대한태권도 협회장 등 5명
-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소개
 - 권재하 서독 주재 사범 등 6명

2. 제1차 CISM 집행위

- 1968.5.9.~12. 프랑스 퐁텐블로 개최
- 참석자
 - 김종원 육군소령(국방부 CISM 한국대표)
- 주요 논의사항
 - 동구 공산권 참가문제
 - 에티오피아 및 스위스 가입결정

3. 제2차 CISM 집행위

- 1968.8.12.~14. 벨기에 브뤼셀
- 참석자
 - 이강두 국방부 인사국 보건과장 등 2명
- 주요 논의사항
 - 공산권 참가문제 논의 연기
 - 태권도 경기종목 채택 문제 의제 상정

4. 제23차 CISM 총회

- 1968.12.2.~8. 튀니지 튀니스
- 참석자
 - 이경원 국방부 인사국장 등 2명
- 동구 공산권 참가문제 논의 보류

CISM(국제군인체육이사회) 총회, 제24차. Rome, 1969.11.23.-30.

| 69-30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8/9/1~50(50p)

1969년 중 CISM(국제군인체육이사회) 회의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제1차 CISM 집행위원회

- 1969.6.4.~9. 비엔나
- 참석자
 - 이주남 국방부 인사국 체육과장
- 주요 논의사항
 - 동구권 참가 문제
 - 신규가입국 문제

2. 제2차 CISM 집행위원회

- 1969.9.2.~6. 브뤼셀
- 참석자
 - 이재철 국방부 국제군인주무
- 주요 논의사항
 - 1970년도 행사계획 심의
 - 총회 준비

3. 제24차 CISM 총회

- 1969.11.23.~30. 로마
- 참석자
 - 고경영 국방부 인사국장 등 2명
- 주요 논의사항
 - 69년도 활동 실적 검토
 - 70년도 행사 계획 및 예산 심의

69-308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제68차. Warsaw(폴란드) 1969.6.6.-10.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1-28/10/1~217(217p)

1. 1968.10.8.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는 북한이 멕시코 대회에 North Korea 호칭으로 참가하면 차후부터 DPRK로 참가할 것을 허용한다고 결정함.
 - 장기영 IOC 위원은 한국이 North Korea 고수를 고집하면 한국에 대해서도 South Korea라는 호칭을 수용하라는 브런디지 위원장 및 상당수 위원들의 압력에 직면함.
 - 동 총회에서 대만(구 자유중국)을 ROC로, 동독을 DDR로 호칭하기로 결정함.
2. 북한이 IOC 결정에 반발하여 멕시코 대회 참가 선수단의 철수를 발표하자, 브런디지 위원장은 1968.10.14. DPRK 호칭 사용을 1968.11.1.부터 허가한다는 결정도 철회한다고 발표함. 이와 관련, 우리정부는 북한의 행태를 비난하고 북한 호칭 문제가 IOC 총회의 의제로 상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함.
3. 1969.2.1.~2. 로잔느에서 개최된 IOC 집행위원회는 1969.6월 와르소 총회 시 북한 호칭 문제를 상정하지 않고 1970년 암스테르담 총회 시 토의한다고 결정함.
 - 브런디지 위원장은 1969.3.24. 장기영 위원 앞 서한을 통해 북한 호칭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집행위 결정대로 바르샤바총회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4. 1969.6.6.~10. 바르샤바 개최 IOC 총회 관련 상황
 - 장기영 IOC 위원, 정월터 KOC 부위원장, 이원경 KOC 명예 사무총장 등이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함.
 - 우리측은 IOC 총회가 미수교국인 폴란드에서 개최됨을 감안하여 일본 정부에 신변보호, 통신시설 사용 등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일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임.
 - 6.7. IOC 총회 회의 중 과거 의사록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공산권 위원들의 주장으로 전격적으로 멕시코 시티 총회 의사록 해석문제를 논의하고, 동 총회 시 북한에 DPRK 호칭을 허락한 것은 조건부가 아닌 최종적 결정이라는 해석을 표결로 가결함으로써 북한에 DPRK 호칭을 공식 부여함.
 - 장기영 위원은 6.7. 북한 호칭문제가 의사록 채택 형태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며, 이 문제는 북한이 멕시코 대회에 North Korea로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후부터 DPRK로 변경한다는 것으로 북한이 불참한 이상 호칭변경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로잔느 집행위 결정대로 1970년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이를 정식 논의하기 위해 임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거부당함.
 - 장기영 위원은 6.7.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며, KOC도 민관식 위원장의 성명 및 브런디지 위원장 앞 서한을 통해 IOC 결정에 항의함.

ICRC(국제적십자회의) 총회, 제21차. Istanbul(터어키) 1969.9.6.-13.

| 69-309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8/11/1~286(286p)

1. 북송 재개 논의 저지 교섭

- 북한은 1967.12월 캄보디아 협정 종료 이전에 북송을 희망한 15,000명의 재일동포의 북송 재개를 위한 협의를 일측에 요청함.
 - 1959.8월 일본과 북한은 캄보디아 협정을 통해 북송에 합의하고 1967.11.12.까지 155차에 걸쳐 88,611명을 북송함.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는 북적의 요청으로 이스탄불 개최 ICRC 총회에 즈음하여 일적, 북적, ICRC간 3자 협의를 일측에 제의하였는바, 우리정부는 이를 ICRC에서의 북송문제 제기를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논리로 북송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3자간 접촉 및 ICRC 총회에서의 북송문제 논의를 저지하도록 재외공관에 시달함.
 - 재일동포의 96%가 남한 출신
 - 북한은 청년층의 북송만 희망
 - 북송선을 통해 전쟁물자 반입 등

2. 제21차 ICRC 총회 경과

- 1969.9.4.~13. 이스탄불
- 정부대표단
 - 이성기 주터키대사(수석대표), 박 근 주영공사, 명인세 외무부 사무관
-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 김학목 사무총장, 김연주 섭외부장, 박선규 충남지사장
- 북한 대표단은 입국사증은 발급 받았으나 회의에 불참하여 북송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북한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회의 종료 시까지 대비할 것을 대표단에 지시함.
- 우리 대표단은 ICRC 사무국에 사할린 교포 귀환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함.
- 미국은 전쟁포로의 보호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하여 채택됨.
 - 우리나라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
- 동 회의에 앞서 개최된 제30차 LRCC(국제적십자연맹) 이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집행위원국에 피선됨.

69-310

월남군 합동참모총장과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간의 군사실무약정서(한·월남 군사실무약정) 개정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J-57/2/1~41(41p)

주월남대사관은 1969.10.20. 주월 한국군 사령부에서 이건영 주월 한국군 부사령관과 짠 녹 탐 자유세계군사원조 실무회의 의장 간에 조인된 한·월 군사실무 개정 약정서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개정목적

- 한국의 대월남 정책 뒷받침
- 주월 한국군의 권익 신장

2. 주요 보완사항

- 부대 구성의 현실화 및 신축성 보장
- 임무의 포괄성
- 자유세계 군사원조위원회의 통제성 배제
- 자체 부담 경감 및 군사지원 보장
- 본국과의 통신지원 사항 신설
- 주월군 구성원의 권리·특권의 재확인
- 청구권 상호 포기

3. 주요 개정내용

- 전문을 신설하여 체제를 확립
- 부대구성의 복수화를 위한 총칙 개정
- 평정 및 재건 계획 지원을 위한 작전임무를 포함
- 주월사와 합참 간에 직통 통신 운영
- 구성원 뿐 아니라 주월군 자체에도 권리특권 인정

한·일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 69-311 |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7/3/1~113(113p)

1. 한·일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관련 교섭경위

- 1967.6.12.~15.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에서 일본 대표단은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함.
- 이에 대해 외무부 방교국은 협상 중인 이중과세 방지 협정과 별도로 취급할 성질의 협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
- 1968.8.27.~29. 제2차 한·일 각료회의에서 양국은 선박 및 항공기의 운수에 관한 상호면세 협정을 우선 체결하기로 합의함.
- 동 협정에 대해 외무부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하므로 등록지 주의 채택, 적용시기 지연 등 일부 기술적 사항을 협상을 통해 보완하기로 함.
 - 선박의 운수에 대한 면세는 우리 선박의 대일 취향으로 득하는 소득이 월등히 크며, 항공기의 경우에도 일본에 유리하나 묵시적으로 과세 보류 중이므로 과거 소득에 대해 과세 면제를 받는 효과는 있다고 분석
- 1969.3월초 수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우리측 관심 기술적 사항을 보완, 협정안에 합의함.
- 협정안은 1969.3.28. 국무회의 의결, 3.31. 대통령 재가, 4.1. 각서교환을 통해 동일자로 발효함.

2. 협정 주요내용

- 양국은 상대국에 등록된 선박·항공기가 자국에서 얻은 수입과 소득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를 면제
- 기업연합이나 공동기업의 경우 양국의 거주자나 법인에 의해 분배된 수입·소득에만 면세 적용
- 1969.4.1. 이후 과세연도, 과세기간,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소득에 적용

69-312

전천후농업용수개발차관을 위한 한·IBRD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보증협정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7/6/1~162(162p)

1969.5월 체결된 금강·평택 전천후농업용수개발차관을 위한 한·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 보증협정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 체결 및 발효 절차

- 1969.4.1.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 1969.5.23. 주미국대사와 IBRD 부총재 간에 협정 서명
- 1969.6.27. 협정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1969.7.1. 협정 공포
- 1969.7.7. 관보게재

2. 협정 주요내용

- 평택 및 금강 개간 경작을 위한 용수개발의 시설 건설, 자재 구매, 기술 용역에 관한 IBRD와 토지개량 조합 간의 차관협정을 한국정부가 보증하는 협정
 - 지급 보증, 차주에 대한 비용 제공, 세금 면제 등
- 차관 금액: 4,500만달러
- 차관 조건: 년 6.5%
- 상환기간: 7년 거치 30년 상환(거치기간 포함)

한·IBRD간의 제2차 개발금융회사계획사업을 위한 차관 지불보증 협정

| 69-313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1과

MF번호 J-57/7/1~175(175p)

1969.6월 체결된 한·IBRD(국제부흥개발은행) 간의 제2차 개발금융회사계획사업을 위한 차관 지불보증협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 체결 및 발효 절차

- 1969.6.3.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 1969.6.26. 주미국대사와 IBRD 부총재 간에 협정 서명
- 1969.7.28. 협정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1969.8.1. 협정 공포
- 1969.8.1. 관보게재

2. 협정 주요내용

-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KFDC)가 추진하는 투융자 민간기업 육성사업을 위한 IBRD의 차관 제공과 관련 양측 간의 차관협정을 한국정부가 보증하는 협정
 - 지급 보증, 차관목적 달성을 위한 협조 및 재정상태 자료 제출, 세금 면제 등
- 차관 금액: 2,000만달러
- 차관 조건: 년 6.5% 추정
- 상환기간: 3년 거치 15년 상환(거치기간 포함)

69-314

직업교육시설확충을 위한 한·IDA(국제개발협회)간의 개발용자 협정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1과

MF번호 J-57/8/1~105(105p)

1969.6월 체결된 우리정부와 IDA(국제개발협회) 간의 직업교육시설확충을 위한 개발용자 협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 체결 및 발효 절차

- 1969.5.27.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 1969.6.4. 주미국대사와 IDA 부총재 간에 협정 서명
- 1969.6.11. 협정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1969.6.11. 협정 공포
- 1969.6.20. 관보게재

2. 협정 주요내용

- 문교부가 추진하는 직업교육 시설확충 사업을 위한 IDA의 차관 제공과 관련한 양측 간의 개발용자 협정
- 용자 금액: 1,480만달러
- 용자 조건: 수수료 년 0.75%
- 상환기간: 10년 거치 50년 상환(거치기간 포함)

한·캐나다간 낙농차관에 관한 협정의 국내법적 효력문제

| 69-315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1과/경제협력과

MF번호 J-57/9/1~25(25p)



1967.9.15. 우리정부가 캐나다정부와 체결한 낙농차관협정의 면세조항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관련부처 간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재무부 및 농림부의 문제제기

- 1969.10.30. 재무부는 1967.9.15. 체결된 캐나다 정부와의 낙농차관 협정에 포함된 면세조항은 입법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동 협정에 대한 1967.3.8. 국회 동의를 그러한 의미의 동의인지에 대해 외무부의 법적 해석을 요청함.
- 1969.11.27. 농림부는 동 차관협정에 따른 기자재 도입에 대해 재무부가 면세를 허용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2. 경제기획원 및 외무부의 반응

- 1969.11.10.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에 대해 법제처 심의 여부, 면세조항에 대한 재무부와의 사전협의 여부, 국무회의 심의 전 국회동의 획득 이유, 국회 동의 시 대외적 채무 부담 및 입법 사항인 면세조항 포함이 국회동의 요청의 이유임을 명백히 하였는지 여부 등을 문의함.
- 1969.12.12. 경제기획원은 사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국회 동의, 체결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협정 체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이라는 입장을 회신함.
- 1969.12.18. 외무부는 재무부에 대해 경제기획원이 협정체결에 관한 구체사항을 밝히지 않아 국내법 상 정당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단 체결 공포된 협정이므로 대외적인 효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함.
 - 외무부는 내부적으로 외무부장관의 부서 결여, 국회 상임위 절차 미필, 서명자 신임장 부재 등을 감안할 때 경제기획원이 협정 체결에 대한 국회동의를 아닌 계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것이라는 의견을 경제기획원에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함.

한·미간의 암모니아센터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생산연도 1969
 생산과 조약과
 MF번호 J-57/12/1~139(139p)

1969.9.25. 체결된 우리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암모니아 센터 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 체결 및 발효 절차

- 1969.9.23.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 1969.9.25. 경제기획원장관, AID 처장 및 총주비료주식회사 사장 간에 협정 서명
- 1969.10.20. 협정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1969.10.20. 협정 공포
- 1969.10.23. 관보게재

2. 협정 주요내용

- 총주비료주식회사의 암모니아 센터 건설을 위한 AID 차관
- 차관 금액: 500만달러
- 차관 조건: 거치기관 중 2%, 상환기간 중 3%
- 상환 기간: 거치 10년, 상환 30년
- 전대 조건: 년리 8.75%, 3년 거치 15년 상환

한·미간의 제4차 AID 원자재차관(Program Loan) 협정

| 69-31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7/13/1~93(93p)



1969.6.5. 체결된 우리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기계류 및 부속품 도입을 위한 AID Program Loan협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 체결 및 발효 절차

- 1969.5.30.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 1969.6.5. 경제기획원장관, AID 처장 및 총주비료주식회사 사장 간에 협정 서명
- 1969.6.11. 협정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1969.6.11. 협정 공포
- 1969.6.20. 관보게재

2. 협정 주요내용

- 기계류 및 부속품 도입을 위한 AID program loan
- 차관 금액: 1,000만달러
- 차관 조건: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
- 상환 기간: 거치 10년, 상환 30년
- 전대 조건: L/C 개설시 10% 착수금 및 운임 10% 지급, 잔액은 연불(연불조건: 연리 5%, 연불 기간 2~7년)

69-318



한·미간의 A.N.Monomer 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생산연도 1969
 생산과 조약과
 MF번호 J-57/14/1-142(142p)

1969.10.8. 체결된 우리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단량체(monomer) 공장(A.N. Monomer 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 협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 체결 및 발효 절차

- 1969.10.8.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 1969.10.20. 경제기획원장관, AID 처장 및 동서석유화학주식회사 사장 간에 협정 서명
- 1969.11.14. 협정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1969.11.15. 협정 공포
- 1969.11.17. 관보게재

2. 협정 주요내용

- 충주비료주식회사와 미국 Skelly 석유회사 간의 합작투자에 의해 설립된 동서석유화학주식회사의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단량체(monomer) 공장의 건설을 위한 AID 차관
- 차관 금액: 500만달러(소요자금 2,030만달러의 일부)
- 차관 조건: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
- 상환 기간: 거치 10년, 상환 30년
- 전대 조건: 연리 8.75%, 3년 거치, 15년 상환

한·미(수출입은행)간의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시설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 69-319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7/11/1~95(95p)

1969.7.18. 우리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체결된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미국 수출입 은행 차관협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 체결 및 발효 절차

- 1969.7.1. 국무회의 의결
- 1969.7.2. 대통령 재가
- 1969.7.18. 주미국대사와 미국 수출입은행 총재 간에 협정 서명
- 1969.8.12. 협정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1969.8.12. 협정 공포
- 1969.8.13. 관보게재

2. 협정 주요내용

- 국내 주요 도시간 및 공업단지간 간선 마이크로웨이브 시외 통신망 확장을 위한 미국 수출입은행의 차관 협정
- 차관 금액: 261만달러
- 차관 조건: 년리 6%
- 상환기간: 8년(거치 완공 후 6개월)

69-320

한·태국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통상1과/조약과

MF번호 J-58/3/1~208(208p)

1. 정부는 대한항공의 동남아 노선 개설을 위해 1969.5월 한·월남 항공협상을 통해 서울-방콕 노선의 중간지점으로 사이공을 포함하기로 합의함.
2. 정부는 1969.7월 주태국대사관을 통해 태국정부에 양국간 항공협정 수정을 위한 협상 개최와 사이공을 중간지점에 포함하는 협정 개정을 비공식 제의함.
 - 이에 대해 태국정부는 일단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우리측이 사이공을 포함할 경우 태국 측은 동경 등 일본 내 일개 지점 포함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함.
3. 1969.9.5. 주태국대사관이 오사카 및 사이공 포함을 공식 제의한데 대해 태국측은 사이공 포함은 별 문제가 없으나 대한항공 취항 시까지 시간이 없으므로 항공회담을 통한 정식 협정개정 보다는 각서교환으로 일단 처리하되, 오사카 포함 문제는 새로운 문제이므로 추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제의함.
 -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오사카 포함 문제는 태국정부가 행정조치로 대한항공의 오사카 경유를 잠정 허용한다는 양해를 얻는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주태국대사에게 지시함.
4. 태국측은 1969.9.19. 한국측의 사이공 포함 대신 태국측의 ‘일본내 일개 지점(a point in Japan)’ 포함 및 오사카 문제 보류를 공한을 통해 공식 제의하였으며, 우리정부는 1969.9.24. 이를 수락하고, 국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수정각서 교환을 전제로 임시운항 허가를 태국 정부에 요청함.
5. 한·태 항공협정 개정안은 1969.9.25. 국무회의 의결, 10.1.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으며, 10.2. 주태국대사는 노선수정을 위한 각서교환 시까지 서울-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 노선의 임시운항을 허가한다는 9.30.자 태국정부의 공한을 접수하였다고 보고함.
6. 1969.11.17. 한표욱 주태국대사와 Khoman 태국 외상 명의의 양국 간 항공협정 개정에 관한 각서가 교환됨.
 - 한국측 지정항공사 항로를 서울-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으로 수정
 - 태국측 지정항공사 항로를 방콕-홍콩-타이페이-일본 내 일개 지점-서울로 수정

한·필리핀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V.1 교섭철

| 69-321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통상1과/조약과
 MF번호 J-58/1/1~369(369p)

1. 정부는 1968.5월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방콕 등과 이동(以東) 지역 간의 항공노선 연결을 위해 필리핀 정부에 항공운수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제의함.
 - 1968.10월 필리핀 정부는 양국 간 항공협정 초안을 제시함.
2. 한·필리핀 양국은 1969.3.17.~24.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필리핀 항공운수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가진 후 양측 수석대표가 합의문에 가서명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리측 대표
 - 윤석현 주필리핀대사(수석대표), 강호를 교통부 항공국장, 이정빈 외무부 조약과 서기관, 강종원 주필리핀 서기관, 조중건 대한항공 부사장(고문) 등
 - 필리핀측 대표
 - Busuego 외무성 대사, Ablan 민간항공국장 대리 등
 - 기본훈령
 - 서울-마닐라 간 중간 지점 1개 지정(가급적 타이베이), 최대한의 이원(以遠)지점 확보
 - 교섭경위
 - 협정문 초안이 국제적 표준 협정안에 따라 작성되었기 때문에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교섭과 수정이 주로 이루어 졌으며, 양측의 관심사항인 중간지점과 이원지점에 대하여는 향후 협의에 따르기로 함.
3. 1969.5.23. 국무회의는 협정안을 의결함.

69-322

한·필리핀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V.2 체결철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통상1과/조약과

MF번호 J-58/2/1~111(111p)

1969.3.24. 가서명된 한·필리핀 항공운수협정은 1969.7.22. 진필식 외무차관과 Busuego 필리핀 외무성 대사 간에 서명되었으며, 8.11. 각서교환으로 발효됨.

- 1969.5.31. 협정 서명 및 공포를 위한 대통령 재가
- 1969.7.22. 서울에서 진필식 외무차관과 Busuego 필리핀 외무성 대사간에 서명
- 1969.8.11. 마닐라에서 주필리핀 대사관과 필리핀 외무성간 각서 교환으로 협정 발효
- 1969.8.12. 협정 공포

한·일간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교섭

| 69-323 |



생산연도 1966-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7/5/1~196(196p)

1. 일본측은 1966.2.21. 한·일 어업공동위 회의 시 양국 간 해난구조와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안을 제시함.
 - 적용대상과 범위는 ‘선박’과 ‘영해 및 부근’, 긴급피난 시 사후 통보, 자국 해난선 구조를 위해 ‘통보’만으로 타국 영해 및 어업수역 진입
2. 외무부는 내부검토, 관계부처 협의 및 사례조사 후 다음과 같은 실무입장을 수립함.
 - 양국 간 어업협정 시행과 관련한 약정이므로 대상과 적용범위를 ‘어선’ 및 ‘어업관련 수역’으로 한정
 - 자국 해난선에 대한 ‘추적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진입가능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한
 - 긴급피난 시 원칙적으로 사전허가 또는 요건 강화
3. 양국 간 실무협의에서 주요쟁점 관련 의견대립으로 진전이 없었으며, 일본측은 1969.10월 한·일간 잠정해운협정(1950년 체결)의 제9조 해난구조에 관한 조항의 개정을 제안함.
 - 제9조 적용상 해난구조, 통고의 의무에 관한 ‘선박’은 어선과 기타 모든 선박을 포함
4. 이에 대해 1969.10월 외무부(방교국)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국 간 협의 중인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과 관련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일본 어선들이 긴급피난제도를 남용하여 우리어업을 위협할 우려 상존
 - 일측의 긴급피난 사유가 너무 개괄적이며 긴급피난 장소에 제한이 없어 남용 우려가 있고 현행 해운협정 규정과도 상치
 - 긴급피난의 경우 입항허가를 규정하지 않아 현행 해운협정상 규정에 상치

69-324

한·필리핀간의 군원에 의한 한국군의 필리핀 파견 피교육자 출입국 문제에 관한 각서교환 교섭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J-58/6/1~28(28p)

1. 1969.1월 국방부는 미국 군사고문단의 제의에 따라 한국군 피교육자에 대한 필리핀 클라크 미 공군 기지 출입을 간소화하기 위한 협정 체결을 필리핀 정부와 교섭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사원조의 일환으로 필리핀 내 미군기지에 공군 비행시험 및 해상구조 등에 관한 교육을 위해 교육생을 파견해 왔으나 제3국인의 클라크 공군기지 출입이 제한되어 일반 공항을 통해 출입국

2. 1969.2월 주필리핀대사는 필리핀정부와 미군기지 내 한국군 군사훈련 원칙 승인, 클라크 공군 기지를 통한 출입국 허용 및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사증 발급권 부여 등에 합의하고, 양국 간 각서교환 형태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함.

- 1969.3월 우리정부는 각서 초안을 필리핀 정부에 제시함.

한·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V.1 교섭철

| 69-325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과/구주과

MF번호 J-58/9/1~220(220p)

1. 1965.1월 주일본 스웨덴대사관은 우리정부에 사증 수수료 면제협정 체결을 제의함.
2. 1965.5월 외무부는 수수료 면제 외에 관용, 외교관 여권에 대한 사증면제를 교섭하도록 주일본 및 주스웨덴 대사관에 지시함.
3. 1967.7월 외무부가 노르웨이, 덴마크와도 동일 내용을 교섭하도록 관련 공관에 지시한데 대해, 상대국가들은 일부 여권에만 사증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스칸디나비아 5국(상기 3국 외에 핀란드, 아이슬란드)은 1957년 협약에 의해 공동사증 정책을 취한다고 설명함.
4. 1968.1월 정부는 60일 이상 체류 외국인에 대한 거주허가를 요하는 출입법 관리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하 체류자에 대한 사증면제(영리행위 불가), 60일 이상 체류자에 대한 사증 수수료 면제를 제의함.
5. 1968.3월 주일본 스칸디나비아 3국 대사관은 우리 주일본대사관에 대해 스칸디나비아 5국의 사증 규정 및 관례에 따라 90일 이하에 대한 사증면제를 제의하였으며, 이후 1년 이상 양측 간에 수차례 대안이 제시되는 등 입장 차이 조정을 위한 교섭이 전개됨.
6. 1969.7.23. 우리 주일본대사관과 주일본 스칸디나비아 3국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 하고 이를 각서교환 형태로 체결하기로 함.
 - 한국인은 90일 이하 사증 면제
 - 스칸디나비아 3국인은 60일 이하 사증 면제
 - 단, 스칸디나비아인은 간단한 거주신고 만으로 즉시 체류기간을 30일 연장한다는 양해각서 교환
 - 사증면제 입국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중사 불허
 - 입국 전 6개월간 체류기간은 사증 면제 기간 계산에 포함
 - 양측 간 각서교환으로 1969.10.1. 사증면제 협정 발효
 - 각서교환은 9월초 주일본 대사들 간에 시행

69-326

한·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V.2 체결철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과/구주과

MF번호 J-58/10/1~159(159p)

대한민국 정부와 스칸디나비아 3국(스웨덴, 노르웨이 및 덴마크) 정부 간의 사증면제 협정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음.

- 1969.8.23. 국무회의 의결
- 1969.8.25.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1969.9.5. 주일본대사, 주일본 노르웨이 대사, 주일본 덴마크 대사대리, 주일본 스웨덴 대사대리 간 각서교환
- 1969.10.1. 공포 및 발효

한·도미니카공화국간의 문화협정

| 69-327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조약과/공보문화과
 MF번호 J-59/1/1~94(94p)

1.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 간의 문화협정체결 및 발효 절차

- 1968.4월 최경록 주멕시코대사는 신임장 제정차 산토도밍고 출장 기회에 Amiama Tio 도미니카 외무 장관에게 문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며, 4.9. 신임장 제정 시 전권위임장 교환을 생략하고 즉석에서 외무장관과 문화협정에 서명함.
 - 외무부는 1965.2월 도미니카 및 니카라과와 문화협정 체결을 교섭하도록 주멕시코 및 브라질 대사에게 지시한 바 있음.
- 1968.8.21.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 1969.11.21. 발효
 - 1969.10.2. 주멕시코대사의 각서에 대해 10.22.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장관의 답신을 통한 각서교환 형태

2. 문화협정의 주요내용

- 고등교육기관에 타방의 문학, 역사에 관한 교수직 과정 설치 검토
- 문화, 예술, 기술 분야 상호 발전 촉진
 - 방송, 서적, 정기간행물의 교환 및 보급
 - 문학, 예술 작품의 번역 복제 장려
 - 학자 등 교환과 장학금 지급
 - 예술가 상호 방문
 - 예술행사
 - 체육분야 교환
- 학위, 자격증 인정방안 연구
- 관광 장려 등

69-328

한·통일아랍공화국간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공보문화과/조약과

MF번호 J-59/2/1~7(7p)

1. 1969.6월 외무부는 주카이로총영사에 대해 1968.8월 서명된 이집트(구 통일아랍공화국) 간의 문화협정의 발효에 관한 주재국의 입장을 파악할 것을 지시함.
2. 1969.11월 주카이로총영사는 협정안이 국회 상정을 대기 중이나 양국 간 정치적 관계와 관련한 정치적 이유로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고 관측하고, 비준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보다는 정세의 추이를 관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함.

한·이디오피아간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 69-329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J-59/3/1~9(9p)



1968.12월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주재국 외상과의 현안문제 협의 기회에 1968.9월 우리측이
외무성에 문화협정 초안을 제시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조속한 검토를 요청한바, '케테마' 외상은
1969년 초 문화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69-330

한·독간의 괴테학원 설립에 관한 협정



생산연도 1966-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9/4/1~348(348p)

1. 외무부는 1966년 초 독일측의 괴테학원(Goethe Institute) 설치 제의를 받고 법적 검토 및 외국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1966.10월 및 11월 주한 독일대사관과의 협의 시 독일측이 원하는 한·독 기술원조협정에 따른 대우 또는 평화봉사단에 준한 우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함.
2. 1967년 초 루프케 독일 대통령의 3월 방한을 앞두고 외무부는 양국 간 기술원조협정에 준하여 보수에 대한 면세, 자동차, 교재, 가구, 교육용구 도입에 대한 관세 면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으며, 추후 독일 외무성의 요청으로 의약품, 식품 등에 대하여도 관세를 면제하기로 동의함.
3. 양측은 루프케 대통령 방한 시 설립협정 서명을 위해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하였으며 1967.3.5. 양국 대통령은 괴테학원을 조속히 설치한다는 점에만 합의함.
4. 우리정부는 국회동의 필요성 여부에 정부 내 이견이 있었으나, 당시 재독 간첩사건으로 인해 경색된 양국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협정의 체결을 서둘렀으며 1967.8.1. 국무회의 의결, 8.4. 대통령 재가를 거쳐 9.8. 외무장관과 주한 독일대사 간 각서교환 형태로 설립협정을 체결함.
 - 독일정부도 8월 초 우리 대통령 재가 이후 상당기간 협정 서명을 주한대사에게 지시하지 않는 등 불만을 표시함.
5. 독일측은 1968.10월, 1969.1월 및 1969.6월 우리정부에 발효에 관한 교환 각서안을 제시하고 독촉을 하였으며 정부는 1969.6월 국회동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함. 설립협정은 1969.6월 대통령 재가, 1969.12.11. 국회 동의를 거쳐, 12.16. 외무장관과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발효함.
 - 학원용 자동차, 교재, 교육용구 등 물품에 대해 관세 및 공과금 면제
 - 직원 보수에 대한 면세 가구 및 자동차 1대 포함 개인용품에 대해 관세 및 부과금 면제
 - 개인용 의약품, 식품, 음료에 대한 수입세 면제

한·멕시코간의 문화협정

| 69-331 |



생산연도 1965-69
 생산과 조약1과/공보문화과
 MF번호 J-59/5/1~293(293p)

1. 한·멕시코 간 문화협정 체결 및 발효 절차

- 정부는 1965.2월 멕시코에 문화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초안을 제시함.
- 1965.10.27.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은 멕시코 출장 계기에 멕시코 외무성측과 우리 외무장관 방문 기회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 양국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이동원 외무장관의 멕시코 방문기회에 1965. 11.15. 외무부 장관 입회하에 오천석 주멕시코대사와 Fraga 멕시코 외무차관 간에 협정문이 가서명 됨.
- 1965.12.23. 국무회의 의결
- 1966.1.21. 대통령 재가
- 1966.4.29. 오천석 주멕시코대사와 Flores 외무장관 간에 서명
- 멕시코 대통령의 서명 지연으로 발효가 지연되다가 1969.3.17. 최규하 외무장관과 주한 멕시코대사 간에 협정 발효를 위한 각서 교환으로 발효됨.

2. 문화협정의 주요내용

- 문화, 관습 및 역사의 상호 이해 증진
 - 서적, 정기간행물의 교환 및 보급
 - 방송 매개물의 교환 및 보급
 - 문학, 과학 작품의 번역 복제 장려
 - 음악회, 연극, 무용 발표회
 - 비영리 필름의 교환 전시
- 고등교육기관에 타방의 문학, 역사에 관한 교수직 과정 설치 장려
- 상호 문화기관 설치
- 학위, 자격증 인정방안 연구 등

한·니카라과간의 문화협정



생산연도 1968-69
 생산과 조약과/공보문화과
 MF번호 J-59/6/1~86(86p)

1. 한·니카라과 간 문화협정 체결 및 발효 절차

- 1968.4월 최경록 주멕시코대사는 신임장 제정차 겸임국 니카라과 출장 중 니카라과 외무성측과 전권 위임장을 생략하기로 양해하고 1968.4.30. Guerrero 문교부 장관과 양국간 문화협정에 서명함.
 - 우선 스페인어 및 영어본에 서명하고, 한글본은 1968.6월 니카라과 문교부 장관이 서명
- 1968.8.6. 니카라과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주멕시코대사관에 통보함.
- 1968.8.21. 국무회의 의결
- 1969.1.21. 협정 발효를 위한 주멕시코대사 명의 공한을 니카라과 외무장관 앞으로 발송
- 1969.2.18. 니카라과 외무성은 2.20. 협정 발효를 알리는 공한을 주멕시코 대사관에 송부
- 1969.2.20. 공포 및 발효

2. 주요내용

- 고등교육기관에 타방의 문학, 역사에 관한 교수직 과정 설치 검토
- 문화, 예술, 기술 분야 상호 발전 촉진
 - 방송, 서적, 정기간행물의 교환 및 보급
 - 문학, 예술 작품의 번역 복제 장려
 - 학자 등 교환과 장학금 지급
 - 기자, 작가, 예술가 상호 방문
 - 예술행사
 - 체육분야 교류
- 학위, 자격증 인정방안 연구
- 문화기관 상호 설치
- 관광 장려 등

한·아르헨티나간의 문화협정

| 69-333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과/공보문화과

MF번호 J-64/7/1~35(35p)

1. 정부는 1966.8.8. 서명된 한·아르헨티나 간의 문화협정을 1966년 내에 발효시키기 위해 아르헨티나 측과 협의하였으나 아르헨티나측 사정으로 지연되다가 1969.12.5.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알리는 각서가 교환되고, 1970.1.4. 협정이 발효됨.

2. 문화협정의 주요내용

- 방송 프로그램, 서적, 정기 간행물 교환 및 전파
- 문학, 과학 및 예술 작품의 번역과 복제 장려
-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수, 의사 및 학생 교환
- 체육 교류
- 관광 장려
- 협정 수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69-334

한·콩고민주공화국간의 의료협력 약정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의전과

MF번호 J-59/7/1~15(15p)

외무부는 1969.8월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는 김정열 친선사절단장으로 하여금 동국과의 의료기술 협력에 관한 약정서에 서명토록 하는 외무부장관 명의의 전권위임장을 1969.7.28. 발급함.

한·미간의 안전조치적용협정 시행을 위한 보조약정

| 69-335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9/8/1~135(135p)

1.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1967.9.22. 동 이사회에서 승인된 우리나라, 미국, IAEA 간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3자협정의 규정에 따라 동 협정의 시행을 위한 보조협정을 체결할 것을 1967. 10.17. 우리정부에 제의함.
 -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3자협정에 의거, 한·미 양국은 상호간 핵물질 보유량에 대한 Inventory를 작성, 이를 IAEA에 통보하고 협정의 시행을 위해 IAEA와 우리정부간에 보조협정 체결을 요함.
2. 외무부는 별도 협정 체결은 불필요하므로 IAEA 사무총장과 외무장관 간 각서교환 형태로 처리하기로 하고, 1968.10.8. 우리측 각서를 IAEA에 전달함.
 - 이에 대해 IAEA는 보조약정 체결만으로 부족하며 한·미 양국의 Inventory가 IAEA에 제출되어야 보조약정이 최종 발효한다고 1968.11.7. 우리정부에 통보함.
3. IAEA 사무국은 1968.10월 미국 정부로부터 접수한 Inventory 상 누락된 사항이 있으나 이를 정식 보고로 접수한다고 1969.3.13. 우리정부에 통보함.

69-336

한·오스트리아간의 상표 및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9/9/1~10(10p)

1969.10월 외무부는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대해 중단상태에 있는 한·오스트리아 양국 간 특허권 및 상표권 보호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재개할 것을 지시함.

- 동 협정은 1962.2월 우리정부의 제안으로 교섭이 시작되어 1966.8월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으나 공관 신설로 인해 협상 중단상태

한·독간의 소맥수원 약정

| 69-33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9/10/1~138(138p)

1. 정부는 독일정부가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원조의 일환으로 소맥 6,000톤(이에 해당하는 소맥분)을 받기로 하였으며, 1969.8월 독일정부는 동 원조제공과 관련 우리정부에 대해 수원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함.

- 정부는 소맥 6,000톤에 해당하는 소맥분의 판매대전은 한·독 경협사업에 필요한 내자에 사용하고 수원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소맥분 판매대전에서 공제하기로 독일측과 원칙적으로 양해

2. 한·독일 간 소맥수원약정은 1969.12.5.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24. 외무장관과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

3. 주요내용

- 독일정부는 국제곡물약정 중 식량원조 협약의 범위 내에서 4,320톤의 소맥분(6,000톤의 소맥에 상당)을 제공
- FOB 조건으로 인도
- 소맥분 판매대전은 한·독 경제개발 사업을 위해 사용
- 수송비, 보험료 및 한국내 발생 비용은 한국정부 부담
- 기타 소맥분의 품질, 인도·선적 방법 등 조건 규정

69-338

평택 시범낙농목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한·뉴질랜드 간의 협정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59/11/1~94(94p)

1. 한·뉴질랜드 간 평택 시범낙농목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협정 교섭 경위

- 1968.9월 전두환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 시 양국 공동성명에서 뉴질랜드가 한국의 가축 시범농장 설립을 위한 기술원조를 제공하기로 함.
- 1968.12월 우리정부는 뉴질랜드 정부에 기술원조를 요청하였으며, 1969.3월 뉴질랜드 정부는 평택 목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해 향후 5년간 콜롬보 플랜에 의한 26만 뉴질랜드달러 상당의 원조 제공을 제의함.
- 1969.5월 양국 실무진은 협정안과 각서교환 형태의 체결에 합의함.
- 1969.5.16.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 1969.6.19. 외무부장관과 주한 뉴질랜드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협정체결 및 발효

2. 협정의 주요내용

- 뉴질랜드 정부는 평택 시범 낙농목장과 자문센터의 설치 운영에 협조
- 뉴질랜드의 기여금은 자국의 콜롬보 플랜 기금 중 26만 뉴질랜드달러로 총당
- 뉴질랜드 정부는 낙농관리인, 지도요원 및 전문가 제공
- 시범농장 가축, 장비, 부분품 등은 무관세 반입 및 내국세 면제
- 뉴질랜드 전문가는 콜롬보 플랜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다른 전문가와 동등한 대우

한·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 69-339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과/통상1과

MF번호 J-60/2/1~79(79p)

1. 정부는 1965.8월 싱가포르의 독립 직후부터 통상관계 수립 방침을 정하고, 경제협력 및 무역협정 체결, 항공협정 체결, 상주대표부 설치를 위한 교섭을 진행한 결과, 경제협력 및 무역협정에 따른 통상증진 방안에 관한 양해각서 이외에는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 짐.
 - 싱가포르 측은 양해각서를 통해 일정량의 싱가포르 산 공산품의 의무수입을 요구
2. 1969.1월 싱가포르 외무성은 대만(구 자유중국)에 대한 통상대표부 설치 허가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불만을 고려,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의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함.
3. 1969.7월 싱가포르 각의가 북한과 영사관계 수립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주싱가포르 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정부에 북한과 동일한 대우를 할 용의가 있으나 대응구매 형태로 싱가포르산 공산품 수입을 보장하는 무역협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4. 이에 대해, 정부는 싱가포르 입장 변경 교섭, 무역협정 체결, 합작투자, 연락사무소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함.

69-340

한·스페인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교섭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경제협력과/남구담당관

MF번호 J-60/3/1~19(19p)

1. 1968.11월 주프랑스대사는 검임국 스페인과의 통상증진을 위해, 통상사절단 파견, 상품전시회 참가,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 체결 등을 건의함.
 - 1968.11월 홍 일 주프랑스대사관 서기관이 스페인에 출장하여 스페인 상무장관 등을 접촉하고 양국 간 경제사절단 교환, 우리 상품전시회 개최, 무역협정 체결 등에 원칙 합의함.
2. 1968년말~69년초에 걸쳐 주프랑스대사관은 무역협정에 관한 기본자료로 스페인 경제 및 무역 통계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하고 스페인과의 통상증진에 대한 외무부 입장을 문의함.

한·태국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교섭

| 69-341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60/4/1~61(61p)

1. 1969년 중 우리정부는 태국과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을 위해 협정초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함.
2. 협정 초안에 대한 국내 관계부처들이 제기한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의 임대·점유,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내국민 대우(내무부)
 - 한·태국 양국 간 최혜국 대우 부여 여부가 당시 진행 중인 일본과의 해운잠정협정 협상에 미치는 영향 (교통부)
 - 입국·체류에 대한 내국법 적용 여부 관련, 상업 목적과 비상업 목적의 불구분(외무부 방교국)

69-342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60/5/1~18(18p)

1. 1969.10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1969.8.19. 발효한 개정 항공법이 1957년 비준된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7조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비망록을 외무부에 전달함.
 - 개정된 항공법은 항공운송 대리점 또는 취급업을 신고제에서 면허제로 변경하고 외국인에게는 면허권 불인정
2. 이에 대해 외무부(방교국)는 이는 국내법(항공법)이나 조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국내법 개정으로 인한 조약상 의무 위반의 문제이므로 조약 또는 국내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해석함.

한·멕시코간의 무역협정. 전2권 V.1 1963.-65.

| 69-343 |



생산연도 1963-69
 생 산 과 조약과/통상2과
 MF번호 J-59/13/1~182(182p)

1. 1963.5월 주멕시코대사는 멕시코 외무차관 면담 후, 멕시코의 대 북한 수교 저지 대책으로 멕시코산 면화수입 등 멕시코의 대한 무역에 대한 관심 제고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건의함.
2. 1964.6월 주멕시코대사관이 멕시코 정부에 무역협정 체결을 공식 제의한데 대해, 1964.8월 멕시코 외무성은 동 제의를 환영한다고 회신함
3. 1964.10월 주멕시코대사관은 최혜국 대우, 결제화폐(미국달러), 발효절차, 수출관심품목 목록 제시 등 협정의 기본원칙을 멕시코측에 제의함.
4. 1965.3월 멕시코 외무성은 협정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1965.4~11월간 양국간 협정문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위한 교섭이 진행됨.
5. 외무부는 1965.11월 외무부장관의 멕시코 방문 시에 무역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결제조항과 관련한 양국의 이견으로 인해 최종합의가 지연됨.
 - 정부는 우리 외환관리법 상 지정된 화폐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태환 가능한 화폐를 결제통화로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멕시코측은 결제통화를 통제하는 것 자체에 반대함.
 - 양측은 미국 달러를 결제통화로 명기하되 보유외화 배정 등에서 제3국과 동등한 대우를 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시간부족으로 외무장관 방문 시 서명이 이루어지지 못함.

한·멕시코간의 무역협정. 전2권 V.2 1966.-69.



생산연도 1963-69
 생산과 조약과/통상2과
 MF번호 J-59/14/1~242(242p)

1. 한·멕시코 간의 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1966년 초 우리정부의 독촉이 있을 후 멕시코정부는 1966.4월 무역협정 최종안을 제시함.
2. 우리정부는 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에 관한 국내절차에 관해 일부 수정을 거쳐 1966.7월 협정문안에 대한 최종 수락의사를 멕시코측에 통보하고 1966.8월 외무장관의 멕시코 방문 시 협정에 서명할 것을 희망함.
3. 외무부장관의 1966.8월 멕시코 방문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협정 서명도 연기되었으며, 1966.8.26.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66.12.12. 오천석 주멕시코대사와 Fraga 멕시코 외무차관 간에 협정문이 서명됨.
4. 동 협정은 멕시코측 사정으로 발효가 지연되다가 1969.3.17. 신임 주한 멕시코대사 신임장 제정 기회에 동 대사와 외무장관 간에 양해각서 교환으로 발효됨.
5. 협정의 주요내용
 - 관세, 조세, 과징금 및 동 부과방법, 수출입 규정 및 절차, 내국세 적용, 수입상품 판매, 구매, 배급 및 사용, 지불수단 통제방법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
 -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필요조치
 - 공동시장,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관련 조치에 대한 적용 면제
 - 거래결제 화폐로 미국 달러 지정
 - 안전, 공공질서, 무기, 전략물자, 국보의 보호, 금·은 및 주조원료의 수출입, 핵물질에 대한 적용면제

한·파키스탄간의 무역협정. 전2권 V.1 교섭철

| 69-345 |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조약과/통상1과

MF번호 J-53/2/1~241(241p)

1. 1967.8월 김동조 주일본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동남아 친선 및 경제협력 사절단은 파키스탄 방문 시 상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통상증진을 위해 무역협정 체결, 상품박람회 참가, 기업인 교류, 우리 총영사관 설치 등을 논의함.
 - 무역협정 관련, 파키스탄측은 구상무역 형태의 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였으나, 우리측은 이에 이견을 표시하였고, 파키스탄측은 시멘트, 요소비료, 면사, 유리제품, 라디오 부속품 등의 수입을 희망함.
2. 정부는 동남아 사절단의 건의에 따라, GATT 체약국으로서의 기본의무에 입각한 무역협정안을 준비하던 중, 1968.5월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무역협정 초안을 제시받음.
 - 동 협정초안은 양국 간 무역에 적용될 최혜국 대우, 예외조항 등 기본원칙과 양국의 수출관심 품목을 수록함.
3. 1968.8월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파키스탄측 초안을 감안한 4개의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1968.9월 파키스탄 상무부와의 교섭에 착수하여, 협정의 형태, 경제협력 포함 여부에 관해 최종 의견 조정을 거쳐 1968.10.4. 협정문에 가서명함.
 - 협정서명은 파키스탄 경제성 차관의 서울 콜롬보 회의 참석 후 10월 중순 경 시행하기로 합의함.

| 69-346 |

한·파키스탄간의 무역협정. 전2권 V.2 체결철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조약과/통상1과
 MF번호 J-53/3/1~160(160p)

1. 한·파키스탄 간 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 절차

- 1968.10.15. 국무회의 의결
- 1968.10.21. 외무부 차관과 Khan 파키스탄 경제성 차관 간에 서명 및 발효

2. 무역협정의 주요내용

- 부표에 기재된 수출관심 품목을 포함한 교역가능 품목의 무역증진을 위해 노력
- 교역에 대한 최혜국 대우
- 입학, 정박 중인 타방 선박에 대해 편의 제공
- 수출입 관련 결제는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또는 양국이 수락하는 태환성 통화
- 파키스탄 수출 품목
 - 피혁, 황마, 원면, 과일, 비누, 향수, 판유리, 선풍기, 전기모터, 자전거, 축전지, 학용품, 오일엔진, 안경테, 면직물 및 의류, 면사, 황마제품, 카펫트, 쌀, 차, 수공예품 등
- 한국 수출 품목
 - 어패류 통조림, 맥주, 생사, 흑연, 텅스텐 광, 석유제품, 식물성 유지, 인삼, 질소비료, 타이어, 합판, 직물, 유리제품, 철강봉, 동, 니켈, 농기계, 라디오, 자동차 부품, 양말, 의류 등

한·이집트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 69-347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통상정책과

MF번호 J-53/11/1~82(82p)



1. 1968.2월 주카이로총영사는 이집트와의 통상관계 강화 및 공식적 유대관계 설정을 위해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무역협정 체결 문제는 1962년부터 양국 간에 논의되었으나 이집트측이 구상무역 협정을 원칙으로 주장하여 교섭 중단된 바 있음.
2. 국내 관련부처의 소극적 입장에 따라 1968.4월 외무부는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통보하였으나, 주카이로총영사는 대 중립외교 강화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협정 체결을 재차 건의함.
3. 1968.5월 외무부는 GATT 체약국으로서의 최혜국 대우 규정 등 구상무역이 아닌 일반적 형태의 협정 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이집트측이 균형무역을 고집할 경우 구속력 없는 노력목표를 제시한다는 입장을 정립함.
 - 1968.8월 우리측 협정안을 이집트측에 제시
4. 1969.11월 주카이로총영사는 우리측 협정안이 의무교역 품목 및 액수와 구상무역에 의한 지불 방식이 결여되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집트측의 입장이므로 당분간 관망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69-348

한·FAO/WFP(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간의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의 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60/6/1~349(349p)

1. 1967.5월 FAO/WFP(식량농업기구/세계식량계획)는 우리정부에 대해 과거 개별 개발계획 프로젝트별 협정 체결 방식 대신에 기본협정을 수원국과 체결한 후 이에 의거하여 개별 운용협정을 교섭하기로 하였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우리나라와의 기본협정 체결을 제의함.

● 기본협정에는 원조의 요청과 합의에 관한 기본사항, 직원의 면제,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2. 외무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968.2월 WFP측과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조율을 위한 협의를 가졌으며, 동 한·FAO/WFP 간 협정은 1968.5.3. 외무차관과 주한 UNDP 대표대리 간 서명, 6.20. 국회 비준동의, 6.25. 대통령 비준을 거쳐 7.8. 발효함.

3. 주요내용

- 우리정부는 WFP의 개발사업 집행에 필요한 인원, 관사, 물자 및 운송수단 제공
- WFP는 우리항구에서 양곡 무상 인수
- WFP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원조를 얻을 경우 상호 협의
- WFP의 재산, 자금 및 직원 등에 대해 면제 부여
- 분쟁은 중재재판에 의해 해결 등

한·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간의 협정 개정추진

| 69-349 |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60/7/1~61(61p)



1. 1967.4월 주한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 대표는 1955.7.29. 보사부 차관과 UNICEF 대표 간에 체결된 UNICEF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UNICEF 기본협약 추가의정서가 적절히 서명되고 발효되었는지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문의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보사부에 조회 후, 동 의정서가 국내절차 미필로 발효되지 않았다고 회신함.
2. 1969.12월 UNICEF는 동 의정서의 기초로서 1950.3.25. 양측 간에 체결된 UNICEF 기본협정을 당시의 실정을 반영하여 개정할 것을 우리정부에 제의함.
 - 이에 대해, 외무부 방교국은 구호활동 기금의 부담주체, 우리정부의 배상대위 책임 조항의 삭제 등의 검토의견을 제시함.

69-350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와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를 신규당사자로 포함시키기 위한 수정기본협정의 개정



생산연도 1966-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60/8/1~92(92p)

1. 정부는 1958.6.19. UNDP(국제연합개발계획)의 전신인 UNTAB(국제연합기술원조처)와 원조 제공에 관한 수정기본협정을 체결함.
 - UNTAB은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계획을 위한 확대기술원조계획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대표하여 수원국들과 원조제공 절차, 수원국의 의무 등에 관해 기본협정을 체결함.
 - 동 수정기본협정은 1963.5.18. 개정되어 국제원자력기구와 만국우편연합을 신규당사자로 추가함.
2. 1965.11월 UNTAB는 신설 UNDP에 흡수되었으며, 1964.7월 및 1966.11월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및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가 각각 UNDP의 참여기구가 됨에 따라, UNIDO는 1968.8월 이들 신규참여기구를 수정기본협정의 당사자에 추가하기 위한 협정개정을 우리정부에 제의함.
3. 동 협정은 1969.3.1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69.4.4. 외무부장관과 UNDP 공동행정관 간 각서교환으로 발효함.

[1961.3.18.] 한·독간의 직업학교 설치에 관한 보충약정

| 69-351 |

생산연도 1966-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60/9/1~86(86p)



1. 1961.3.18. 한국과 독일 양국 정부는 인천 직업학교 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정의 연장을 위해 1965.3월 독일측이 보완약정 초안을 제시하였으나 1966년까지 동 학교의 국립화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함.
2. 1966.3월 독일측이 국립화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1966.6월 양측은 수정안을 교환하고 협의가 재개되었으며, 1969.8.8. 양측간 각서교환으로 보충약정이 체결·발효됨.
3. 보충약정의 주요내용
 - 독일인 감독관(director)은 1970.8.31. 교사 1인은 1970.8.31. 교사 1인은 1969.8.31.까지 임무수행
 - 독일정부의 교육장비 및 도구 추가 공급
 - 한국인 교사 독일 내 교육 등

| 69-352 |

한·미 석유협정 해석

생산연도 1965-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60/10/1~36(36p)

1. 상공부는 1964.3월 한·미 석유협정의 체결에 따라, 과거 한·미 석유운영협정의 당사자였던 KOSCO로부터 동사가 보유한 사유재산에 대해 환불해 줄 것을 요청 받고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1965.5월 외무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함.
 - KOSCO의 재산처리는 한·미 석유협정과는 무관하며, 1955.5월 체결된 한·미 석유운영협정에 관한 문제임.
 - KOSCO에서 환불 요구하는 재산은 계약자 직원의 사유재산 및 본 협정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재산으로서 한국정부에 환수되지 않는 재산인 것으로 간주되나 협정상 이에 대한 환불 의무는 없음.
2. 1969.4월 상공부는 한·미 석유협정 해석상 비상사태 시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는 한국영토 내 제품 또는 석유 취급·저장 시설에 대한 용역에 석유생산공장의 관리권이 포함되는지를 외무부에 문의함.
 - 1969.4월 외무부는 제공 대상에는 석유제품이나 석유의 취급·저장 시설의 사용만 포함되며 동 공장에 대한 관리권은 이관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

조약법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제2차. Vienna, 1969.4.9.-5.22.

| 69-353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국제법규과

MF번호 J-60/12/1~330(330p)

1. 제2차 조약법에 관한 국제연합회의가 1969.4.9.~5.22.간 비엔나에서 개최되어 1968.3월 개최된 제1차 회의 시 합의지 못한 주요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 1969.5.2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채택함.

- 관습상 시행되던 조약체결 절차, 효과 등을 일반 국제법으로 성문화하기 위한 회의(110개국 대표참가)
- 정부는 유양수 주오스트리아대사(수석대표), 이원호 주오스트리아 참사관, 조광제 외무부 조약과장, 이동익 조약과 사무관을 대표로 파견하였으며, 5.23 수석대표가 협약에 서명함.

2. 제2차 회의의 주요쟁점

- 조약에의 보편적 참여문제
 - 제1차 회의시 알제리 등 공산권은 조약에의 보편적 참여권리(universality)를 규정하는 소위 'all state formula'를 제안하였으나 서방국가들의 반대로 제2차 회의로 넘겨짐.
 - 제2차 회의에서도 공산권과 'UN formula'를 주장하는 우리나라 등 분단국 및 서방국가들의 강경대립으로 인해 합의되지 못하다가 유엔총회에 회부하는 선언문을 타협안을 채택하는 방안이 최종 합의됨(우리나라 등 분단국가들은 이에 기권).
- 조약의 무효, 종료 및 시행정지에 관한 분쟁의 강제절차에 의한 해결문제
 - 제1차 회의 시 서방국들은 조약의 무효, 종료 및 시행정지에 관한 분쟁에 대해 강제적 해결 절차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공산권의 반대로 합의되지 못하자 협약 전체에 대한 서명 거부를 시사하였으며, 이에 나이지리아 등 10개국은 이 문제를 보편적 참여문제와 결부시킨 package 안을 제시하고 양측을 설득하여 합의를 도출함.
-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의 인정 문제
 - 당사자 동의에 입각한 국제법 원칙을 주장하던 영국과 미국이 입장을 완화함에 따라 별 논란 없이 합의됨.

3. 우리 대표단 건의사항

- 유엔총회에서의 보편적 참여 문제에 대비한 우방국들과의 협조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속 비준
- 국제법 관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및 유엔 제6위원회 활동 참여
- 아·아 법률자문위원회 가입

4. 협약 서명 및 가입절차

- 1969.10.23. 대통령 재가
- 1969.11.27. 주오스트리아 대사가 협약에 서명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의견 문의 및 회신



생산연도 1965-69
 생산과 국제법규과
 MF번호 J-65/9/1~35(35p)

1. 재무부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주재 사무소에 대한 외국공관 취급 여부에 대해 1965.11월 외무부에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국제연합 전문기구는 우리 세법상 외국공관으로 취급되며 동 전문기구의 사업수행을 위해 설치한 기구 등도 외국공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함.
2. 서울시는 도로건설을 위한 교황청 대사관 부지 일부 수용 문제에 대한 의견을 1967.9월 외무부에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우리정부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이를 참작하는 것이 좋으며 동 협약 상 외국공관이 향유하는 불가침권으로 인해 강제 집행권이 행사될 수 없으므로 공관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3. 1969.2월 외무부는 주한 명예영사의 불체포 특권 향유여부에 대한 대검찰청의 검토 요청을 받고 일반 국제관습법규에 따르면 명예영사는 불체포 특권을 향유하지 않는다고 회신함.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절차 연구

| 69-355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73/9/1~59(59p)

1969.4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차 조약법에 관한 국제연합회의를 앞두고 동 회의 주요 쟁점인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절차와 관련한 외무부 실무진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1. 제1차 조약법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결과

- 제1차 회의에서 공산권이 주장하여 채택된 협약안 제62조는 유엔헌장 제33조에 열거된 수단을 분쟁 해결의 평화적 수단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규정으로 강제적 성격을 결여함.
- 선진국들이 제시한 13개국 안은 62조 수단으로 미해결 시 조정 및 중재재판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 하자는 안으로 이는 타협안으로 62조 bis로 채택되어 제2차 회의에서 논의 예정임.

2. 현존 분쟁해결 기구는 일반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결여함.

- 유엔의 법전화 산물인 해양법 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은 별도의 의정서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도모함.
-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의 동의에 입각함.
- 다수의 재판조약 또는 재판조항은 법률적 분쟁만을 재판에 의해 해결하려는 성향을 띠.

3. 조약법에 관한 협약상 분쟁해결 절차를 위한 각종 대안

- 협약안 자체에 강제적 해결조항 포함
-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채택
- 협약안 제5부 관련 분쟁과 기타 분쟁에 다른 분쟁해결 방식 적용

4. 건의사항

- 임의의정서 방식을 지지하고 타협안으로 13개국 안을 협약안에 포함하되 각국이 동 수용 여부를 유보 하는 방식

69-356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추진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J-60/13/1~26(26p)

1. 정부는 1969.6.4.~26.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3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주제네바대표부 직원을 옵서버 대표로 파견하고 회의 진행상황을 관찰함.

● 참가국: 121개 회원국 중 116개국 참가

● 우리대표 파견 목적

- ILO 가입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에 따라 대표를 파견하며, ILO 가입 신청은 않더라도 진행상황을 관찰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입 추진에 중요

2. 동 총회의 주요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구의 활동을 인력개발에 중점을 두되 인력개발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생활수준 및 소득수준의 실질적 증가를 위해 노력함.
- 농업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 검열자를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내용의 협약안을 채택함.
- 질병 시 노동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및 권고를 채택함.
- 유급휴가의 새로운 기준에 관한 초안을 채택함.
- 개도국의 최저임금 고정 문제에 관한 협약 및 권고 초안을 채택함.

[IMF] 총회결의 제22-8에 따라 준비된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제 조문에 대한 개정안 한국가입, 1969.7.28.

| 69-357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60/14/1~306(306p)



1. 재무부는 1967.9.29.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 채택된 SDR (특별인출권) 창출을 위한 IMF 협정 개정안(총회 결의 제22-8에 따라 준비된 IMF협정 개정안) 수락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취해 줄 것을 1968.6월 외무부에 요청함.
 - 금 매입 억제를 통한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에 기여
 - 우리나라 수출증대 및 외자유치 원활화에 기여
 - 대외지불 준비자산 증대
2. 동 협정 개정안은 1968.9.9.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1969.4.30. 국회 비준동의, 6.14. 수락서 기탁을 거쳐 1969.7.28.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함.
3. IMF 협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 SDR은 현존 준비자산 보충이 필요할 때에 대비한 IMF에 의해 창출된 신 준비자산이며 IMF는 이를 배분할 권한이 있음.
 - SDR의 1단위는 순금 0.888671그램의 가치를 가짐.
 - IMF 가맹국은 제반의무 수락과 이행에 관한 법적조치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기탁하여 SDR의 참가국이 됨. IMF의 총할당액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가맹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본 제도는 발효함.
 - 기타 SDR 배분 취소에 관한 원칙, 최초 배분시 고려사항, 배분 및 취소절차, SDR의 거래 방식 및 절차, 이자 및 수수료, 참가 종료 및 계정의 청산 등에 대해 규정함.

69-358

국제민간항공협약의 3개국어 정본에 관한 의정서 (Buenos Aires 의정서) 한국 가입, 1968.10.24.



생산연도 1965-69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55/2/1~445(445p)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1944년 체결된 국제민간협약에 대한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정본을 채택을 위한 총회 및 전권회의를 1968.9.3.~28.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함.
 - 정부는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수석대표), 김완수 교통부 항공국장, 권동만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서기관, 한효숙 교통부 주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 3개국어 정본에 관한 의정서 채택을 위한 전권회의는 1968.9.9.~20.간 개최됨.
2. 의정서 채택을 위한 전권회의는 1968.9.24.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우리 수석대표는 동일자로 유보 없이 서명하였고 동 의정서는 1968.10.24.자로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함.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의정서(제93조)

| 69-359 |

생산연도 1957-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61/1/1~19(19p)



정부는 1957년부터 1969년까지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개정조항 중 1947.6.1. 개정된 제93조 bis의 수락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동 개정조항의 내용, 수락국가, 발효일자 등에 관한 자료를 간헐적으로 수집함.

- 동 개정조항은 유엔 회원국 자격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 자격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1947.5.27. 채택되어 1961.3.20. 발효됨.

69-360

1960년 해상에 있어서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55/5/1~48(48p)

정부는 1968~69년간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가 1968.11.26. 채택한 1960년 해상에 있어서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검토함.

국제해상교통의 간소화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 69-361 |

생산연도 1966-69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61/2/1~54(54p)



정부는 1965.4.9.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회의에서 채택되고 1967.3.15. 발효한 국제 해상교통의 간소화에 관한 협약에 대한 가입 여부를 검토함.

- 1968.9월 IMCO 제5차 정기총회 결의에 따른 IMCO 사무국의 문의를 받고 진행한 내부검토에서 국내 관계부처들은 가입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69-362

1930년도 ILLC(국제적화흙수선협약) 폐기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J-61/3/1~24(24p)

정부는 1966.4.5. 채택된 1966년 ILLC(국제적화흙수선협약)가 1968.7.21. 발효함에 따라
 구 협약인 1930년 ILLC에 대한 폐기통고서를 제출함.

- 조선기술의 발달과 선박의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 협정 기탁국인 영국정부는 우리정부에 대해 신·구 협약의 중복 적용 회피를 위해 1969.7.21.까지
 구 협약 폐기통고서 제출을 요청
- 1969.7.3. 대통령 재가를 거쳐, 7.18. 폐기통고서 제출
 - 7.21. 발효 명시

1966년 적화흡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1969.10.10.

| 69-363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조약과/국제기구과
 MF번호 J-61/5/1~510(510p)



1.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의 초청으로 1930년 ILCC(국제적화흡수선협약)를 대체하는 신 협약 채택을 위한 국제회의가 1966.3.3.~4.5. 런던에서 개최되어 1966년 ILCC를 4.5. 채택함.

- 조선기술의 발달과 선박의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한 1930년 협약의 개정이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이형근 주영국대사(수석대표) 외 1인이 대표로 참석하여, 4.5. 수락을 조건으로 협정 안에 서명함.
 - 동 회의 시 공산권에 의해 북한 초청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우리대표단 및 우방국들의 반대로 무산됨.
- 동 협약은 1968.7.21. 발효함.
- 주요 개정내용
 - 150톤 미만이라도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에도 적용
 - 유조선과 화물선에 대해 길이에 대한 기준을 별도 결정
 - 기준 대상 선박을 365미터 까지 확대
 - 유조선 대형선박에 대해 적화능력을 증대

2. 협약체결 및 발효절차

- 1968.12.10. 국무회의 심의
- 1968.12.11. 대통령 재가
- 1969.6.20. 국회비준 동의
- 1969.7.10. 수락서 기탁
- 1969.10.10.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

69-364

1966년 적화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수정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61/6/1~31(31p)

1. 1968.11.26.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사무총장은 1966.4.5. 채택된 1966년 국제적화흘수선 협약의 서명원본상 오류의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1968.11.21.~25. 개최된 IMC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동 오류들을 편집상 오류로 취급할 것에 합의하였다고 우리정부에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조약과) 및 교통부는 사무국의 오류정정 방안에 이견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함.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Vienna, 1968.10.7.-11.8.

| 69-365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J-55/6/1~202(202p)



1.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연합회의가 1968.10.7.~11.8. 비엔나에서 개최되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과 도로표지 및 신호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함.

● 회의목적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규칙 개정
- 도로표지 및 신호기에 관한 국제규칙 개정
- 1949년 협약을 대치하는 새로운 협약 채택

● 회의대표

- 유양수 주오스트리아대사(수석대표), 이원호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 임제태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서기관, 박동언 내무부 교통계장

2. 1969.9월 정부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과 도로표지 및 신호기에 관한 협약에 대한 가입문제를 검토함.

| 69-366 |

UNESCO 헌장 개정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J-61/7/1~7(7p)

1969.11월 유네스코 사무국장은 중소국가들의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피선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유네스코 헌장을 개정하여 집행이사국 임기 및 선출방식을 변경하자는 스리랑카(구 세일론) 대표의 제안을 우리정부에 전달함.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69.4.4.

| 69-367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61/8/1~186(186p)



1.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체결 및 발효 절차

- 1967.12.19. 유엔총회 결의로 동 협정을 채택하고 동일자로 미국, 영국 및 소련을 기탁국으로 지정
- 1968.4.30. 대통령 재가를 거쳐, 5.9. 김동조 주미국대사가 협정에 서명
 - 한국의 서명이 미승인 국가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보의사 표시
- 1969.3.8. 국무회의 의결, 3.21. 대통령 비준
- 1969.4.4. 주미국대사관은 미 국무성에 비준서 기탁,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
 - 한국의 비준이 미승인 국가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보의사 표시

2. 협정의 주요내용

- 우주선원의 조난 정보를 입수한 체약국은 즉시 발사국 및 유엔사무총장에 통고
- 체약국은 우주선원이 조난 시 영역에 착륙한 경우 구조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
- 체약국은 영역 외 착륙한 우주선원에 대하여 탐색 및 구조 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경우 원조를 제공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가 체약국의 영역 또는 공해에 하강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체약국은 발사국 및 유엔사무총장에 통고
- 우주선원 또는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를 회수한 체약국은 발사국에 인도
- 구조 또는 회수 비용은 발사국이 부담

69-368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량 및 비료기술센터 설치협정 한국가입, 1969.6.11.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동남아1과/조약과

MF번호 J-61/9/1~400(400p)

1. 아·태지역 내 식량 및 비료 기술센터 설치협정 추진 경위

- 1966.6.16. ASPAC 각료회의는 대만(구 자유중국)이 제안한 식량 및 비료 은행 설치안을 상설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하도록 합의함.
 - 우리정부는 비료 및 식량 자급계획을 추진 중이므로 수입 면에서 혜택은 없으나 ASPAC 주도국으로서 소극적 지지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정립함.
- 1968.7.1. ASPAC 상설위원회에서 대만은 식량비료기술센터 설치안을 제안하였으며, 상설위원회는 9.10. 전담 소위원회를 설치함.
- 1969.5.26. 상설위원회에서 센터 설치협정이 합의되었으며, 이는 1969.6.9.~11. 일본 이토오 개최 ASPAC 각료회의에서 채택됨.
 - 6.11. 최규하 외무장관을 포함한 9개국이 설치협정에 서명하여 동일자로 협정이 발효함.

2. 식량비료기술센터 설치협정의 주요내용

- 센터의 소재지는 타이베이, 목적은 농업생산, 특히 화학비료와 현대적 영농방법의 적용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경험의 교환
- 식량증진 관련 회원국 간 협력 권장
- 화학비료를 통한 식량증산에 관한 기술정보 수집·배포
- 회원국의 식량 및 화학비료 생산현황과 능력에 관한 정보 수집·배포
- 시범사업과 농업실습
- 전문가를 위한 세미나 및 실습노동자 훈련·지도
- 회원국에 대한 기술자문
- 집행위, 사무국장, 직원으로 구성
- ASPAC 가맹국 및 옵서버에 회원자격 부여 등

한·일 대륙붕 분쟁

| 69-369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K-7/1/1~36(36p)

1. 정부는 대륙붕 개발을 위해 해저광물개발법안을 1969.4.11.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관계부처 실무검토를 거쳐 잠정 결정한 총 6개 대륙붕 개발구역 중 2개의 구역에 대해 1969.4.15. 걸프 오일과 석유탐사 및 생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4개 구역에 대해서도 칼텍스, 셸 등과 협약체결을 추진함.
2. 이와 관련, 일본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1969.4월 중 3차례에 걸쳐 해저광물개발법안의 입법 상황, 개발구역에 대한 경계선 설정 여부 및 범위, 일본의 자체 대륙붕 개발계획상 광구와의 중복여부 등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표명함.
 - 양국 간 연결된 대륙붕 경계에 대해 중간선 채택 여부 및 개발 대상에 생물자원 포함여부 등에 관심을 표명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우리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관계부처에 확인하겠다고 대응함.
3. 1969.6월 상공부는 외무부에 우리의 해저개발 구역 중 3개 구역의 일부 구역에 일본 석유회사가 외국과의 합작개발을 위해 일본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였음을 통보하면서, 개발구역 경합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주권적 권한을 갖는 대륙붕 개발구역의 경계선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함.

중·소 국경분쟁과 국경회담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정보과

MF번호 K-7/2/1~89(89p)

1969년에 작성된 중·소 국경분쟁에 관한 외무부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969.3.2. Damansky도(珍宝島)에서의 중·소 무력충돌 사건(1969.3.13. 외무부 정보문화국)

- 1969.3.2. 중국(구 중공)군 부대가 소련국경을 넘어 우수리강 중류 작은 모래섬인 Damansky도 소련 국경경비대에 총격을 가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으로 쌍방에 각 약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1860년 북경조약에 의해 청조가 우수리강 이동의 연해주를 러시아에 할양하였으나, 중국은 동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며 구체적 국경선 확정방법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Damansky도는 모래섬으로서 기존조약에 따르더라도 귀속에 관해 논쟁의 여지가 있음.
- 중·소 양국은 상호 비난하면서도 적극적인 군사대결의 인상을 주는 언사는 억제하고 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가까운 시일 내에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기 어려움.

2. 신강지역에서의 중·소 무력충돌 사건(1969.8.20. 외무부 정보문화국)

- 1969.8.13. 카자크스탄 자라나슈콜 동쪽 약 10Km 지점에서 중국군 수개 부대가 국경을 침범하여 소련 국경 경비대에 총격을 가하였으며 소련군의 대응조치로 격퇴되고 2명의 중국군이 억류됨.
- 중국측은 소련군이 먼저 신강자치구 유민현에 침범하여 중국 국경 경비대에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함.
- 1930년대 이래 신강지역은 중·소 공동관리 하에 있었으며 양국은 우라늄 등 광산개발을 위해 합작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으나, 중국은 다수의 한족을 이주시켜 카자크인과 지방민족의 세력 약화를 기도했고 소련도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인을 카자크스탄에 이주시킴.
- 1962년 6만명의 신강주민이 소련으로 도피한 것과 관련, 양측이 상호 비방하면서 대립한 이후 양국은 동 지역의 경계를 강화함.
- 양국은 시베리아, 몽고 및 신강으로 연결되는 국경 경비를 위해 함께 150만명 이상의 군대를 배치 하고 있으며, 쌍방의 국경분쟁 가능성은 잠재해 있으나, 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희박함.
- 양국 간 국경충돌은 대립을 격화시키고 북한 등 주변 위성국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동남아 및 자주세계의 안전에 기여할 것임.

3. 중·소 국경분쟁과 국경회담(1969.11.1. 외무부 정보문화국)

- 1969.9.11. 코시긴 수상의 제의로 10.20.부터 양국 간 국경회담이 진행 중임.
- 양국간 국경문제는 기본적인 상극의 이념대립이 지속되는 한 완전 해소될 수 없음.
- 양국 국경회담은 국경문제 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할 가능성이 있음.

필리핀·말레이시아간의 Sabah지역 분쟁

| 69-371 |



생산연도 1962-6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K-7/3/1~432(432p)

1. 1968.3월 사바에 불법 침입한 필리핀인들이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되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필리핀 코레히도 섬 특수부대가 사바 침투용이라고 공식 항의한 것과 관련, 필리핀 정부는 말레이시아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요청하고 외교적으로 공식 항의함.
 - 이 과정에서 1968.3월 주필리핀대사는 우리정부가 ASPAC의 테두리 내에서 중재를 시도 할 것을 건의 하였으나 외무부는 양국 간 미묘한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가 적극적 입장을 취하는데 대해 반대함.
2. 1968.3~5월 양국 간 양자회담 및 3자 중재를 위한 협의를 거쳐 1968.6.17.부터 방콕에서 양자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7.15. 말레이시아 측은 필리핀 측의 사바 영유권 주장은 법적, 정치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회담 종료를 선언함.
3. 1968.7월 이후 양국은 ASEAN,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대립하였으며, 8.28. 필리핀 하원이 말레이시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바 영유권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양국의 국내여론이 악화되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필리핀 주재 대사관의 철수, 양국 간 밀수방지 협정의 파기, 홍콩 주둔 영국 공군기의 사바 착륙 요청 등의 보복조치를 취함.
 - 1968.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콜롬보계획 자문위원회 필리핀 수석대표는 사바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본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기록으로 남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정부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동 회의에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지 말 것을 양국 정부에 요청함.
4. 1969.11월 양국은 상대국 주재 대사관을 철수시켰고 단교문제 까지 거론되었으며, 필리핀측의 제의 및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중재로 양자회담이 추진되었으나 말레이시아는 사바 영유권 문제는 의제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
5.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외상의 주선으로 1968.12.14. 필리핀 라모스 외상과 말레이시아 라자크 외상 간의 회담이 태국 방센에서 개최됨.
 - 동 회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외무부는 필리핀 정부가 사바에 대한 필리핀의 권리를 손상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대신 양국 간 관계정상화를 도모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함.
 - 참고사항
 - 1963.9월 사바는 영국에서 독립한 말레이시아 한 독립주로 편입되었는데 필리핀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을 부인하고 말레이시아와 단교함.
 - 1966.6.2.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사바 영유권 문제를 분리한 가운데 말레이시아와의 수교를 결정 함으로서 영유권 분쟁의 소지를 남김.

69-372

영국·스페인간의 Gibraltar 분쟁



생산연도 1967-69
 생산과 구주과
 MF번호 K-7/4/1~89(89p)

1. 영국에 대해 지브롤터의 반환을 요구해 오던 스페인 정부는 1967.4.12. 지브롤터 주변에 ICAO 협약 제9조를 원용하여 항공금지지역을 발표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ICAO(국제민항기구)에 회부함.
2. 1967.5.9. 스페인 정부는 우리정부에 대해 영국군 항공기의 지브롤터 영공 비행금지 조치와 관련, ICAO 논의에서 자국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양국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고 우리의 우방이므로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함.
3. 1967.9.10. 지브롤터 국민투표 결과 압도적 표차로 영국 지배하에 남을 것을 결정하였으나, 1967.12.19. 유엔총회는 지브롤터 주민에 의한 9.10. 국민투표가 기존 유엔 결의의 위반이며, 지브롤터의 식민지 상태 종식과 주민 이익의 보호에 관해 스페인 및 영국 정부가 지체없이 교섭을 시작할 것을 결의함.
4. 1968.5.6. 스페인 정부는 지브롤터로 통하는 국경지대의 통로를 모두 봉쇄함.
5. 1969.6월 영국 정부는 지브롤터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 지역을 스페인에 인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스페인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4,600명의 지브롤터 내 스페인 기술자들의 취업을 금지하고 지브롤터로 통하는 모든 육로를 완전히 폐쇄함.

AALCC(아·아 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0차. Karachi, 1969.1.21.-31.

| 69-373 |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K-7/5/1~126(126p)



1. AALCC(아·아 법률자문위원회) 제10차 총회가 1969.1.21.~31. 카라치에서 개최되었으며, 정부는 북한의 회의 참가 및 조약법 조약 협상 참여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동 회의에 처음으로 옵서버 대표단을 파견함.
 - 정부 대표로 최공천 주뉴델리영사, 유종하 주이슬라마바드영사, 이장춘 외무부 조약과 사무관이 참석함.
 - 북한은 사무국에 일차 문의만 하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음.
2. 우리정부의 관심사는 비엔나 조약법 조약 협상에서 논의 중인 모든 국가에 대한 다자조약 개방 방식 즉 universality와 관련한 all states formula가 채택되어 북한에게도 다자조약 문호가 개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는데, 동 회의에서는 all states 방식 대신 UN formula가 지지를 받음.
3. 회의 대표단은 중립국가들과 전문분야를 통한 유대 강화 및 북한에 대한 우위 선점을 위해 1970년 가나 총회에서 우리나라도 AALCC에 가입할 것을 본부에 건의함.

69-374

한·불 혼성위원회, 제1차. Paris, 1969.6.16.-18.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공보문화과/구주과
 MF번호 L-7/1/1~227(227p)

1. 정부는 1968.5.8. 발효된 한·프랑스 문화 및 기술협력협정의 시행을 위해 한·프랑스 혼성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1969.2월 프랑스 정부에 제의하였으며, 프랑스 정부의 동의로 제1차 혼성위원회가 1969. 6.16.~18. 파리에서 개최됨.

2. 동 회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석 대표

- 이수영 주프랑스대사(수석대표), 이윤희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최동열 문교부 국제교육과장, 윤승국 주프랑스공사 등 8명 참석
- Saint Mleux 외무성 문화국장, Husson 보좌관, Buccco-Ribaulat 기술협력과장 등 9명 참석

● 주요 논의사항

- 프랑스어 교육 전문가를 대학 등 관계기관(프랑스측은 정부기관 희망)에 두는 것에 합의
- \$1,008,000 규모의 한·프랑스 기술초급대학 설립을 위해 프랑스 기술자가 방한하여 조사하는데 합의
- 예술교류를 위한 공연장소 제공에 프랑스측이 난색을 표명
- 교육자, 기술자 및 전문가에 대한 내국세, 관세법상 특혜 제공 합의

● 문화 및 기술교류 계획서 주요내용

- 프랑스어 교사 5명 추가 파견
- 프랑스의 동양어 단과 대학내 한국어과 보강, 한국인 교수 1명 파견
- 프랑스의 언어, 문화·기술 분야 장학금 지급
- 프랑스어 사전 편찬 연구
- 프랑스의 한국 과·기분야 인사 4명 초청
- 한·프랑스 기술초급대학 설립 합의 및 프랑스 기술자 방한 조사

한·중 문화교류

| 69-375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문화교류과

MF번호 L-7/2/1~22(22p)



1969.7월 정부는 대만(구 자유중국)과의 문화교류 협정 규정에 의거, 양국 간 문화교류 촉진, 특히 유학생 교류, 장학금 지급, 학위 상호인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제의, 대만 측이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와 관련 우리정부는 회의 의제, 장학금 지급현황 등 관계 자료를 수집, 검토함.

- 한·대만 양측은 1965.5.15. 문화교류의 촉진을 위해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1966.2.18.에는 양국 정상 공동성명서를 통해 양국 간 학생, 교수의 교환을 위한 장학금 설치에 합의함.

69-376

Hassan Khaled 레바논 모스렘 교령 방한계획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L-7/3/1~19(19p)

1. 1969.8월 레바논을 방문한 박준규 중동 친선사절단장은 정계 영향력이 큰 Khaled 교령이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므로 차제에 방한 초청을 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Khaled 교령에 대한 방한 초청을 검토하였으나, 주터키대사의 건의로 초청장 발급을 미루고 있던 중 동인의 대만 방문이 취소됨에 따라 정부의 초청 계획이 보류됨.

한·독 협회

| 69-37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L-7/6/1~15(15p)



Wagner 한·독협회 회장은 1969.7.2. 한·독협회에서 한국방문에 대한 귀국보고를 위한 연설을 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효상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1969.5월 방한함.
- 2년 전 “한국인 소환사건”으로 송환된 인사들의 소송 건은 Frank 특사의 방한 이래 잘 조정되어 왔고 박정희 대통령은 물리학자 정규명의 석방을 약속하였으며 국무총리는 강구빈의 가족에 대한 사면을 약속함.
- 한국에는 분단에 따르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 있으므로 북한에 연루된 송환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치를 비판하기 전에 한국의 현실도 알아야 함.
- 경제개발에 매진하는 한국을 돕기 위해 투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독일어가 프랑스어에 밀리는 현실에서 문화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69-378

한·이디오피아 협회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L-7/4/1~45(45p)

1. 1968.12.12. 한국에티오피아협회(회장: 한국진)는 1968.5월 셀라시에 에티오피아 황제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친선을 위한 협회를 설립하기로 하였음을 외무부에 알리고, 사단법인으로서의 설립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함.
2. 이후 서류 미비로 허가가 지연되다가 1969.7.3. 외무부는 사단법인 한국 에티오피아협회에 대해 법인인가증을 발급함.
 - 주 소: 서울시 중구 총무로 1가 25-4
 - 회 장: 한국진
 - 부회장: 양광석
 - 사 업: 문화·교육 교류, 경제교류의 알선, 기술교류의 알선 등

이탈리아의 대외경제 협력 정책

| 69-379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4/1/1~7(7p)



주이탈리아대사는 1969년도 이탈리아의 대외경제협력 정책에 관하여 1969.4.4.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대외원조

- 과거 식민지에 대한 소규모 기술원조를 제외하고는 쌍무원조 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에 주력함.

2. 대외차관

- 외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국영기업체나 민간회사를 통한 차관에 대해 수출진흥책의 일환으로 용자와 보조를 하는 정책을 취함.
- 1969년도 상업차관을 위한 수출신용 보험 및 재정원조는 약 14억달러로 예상

3. 기술원조

- 1960~70년도에 우리 연수생 3명 정도 수용할 계획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담 [경제관계] 합의사항 이행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1/3/1~107(107p)

1968~69년간 외무부는 1968.8.21.~29. 제2차 한·일 정기 각료회담에서 합의된 경제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관계부처에 점검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이행상황 전반

- 1968.11월 경제기획원은 경제분야 이행상황 전반에 관한 점검표를 작성함.
- 1969.2월 주일본대사관은 청구권, 상업 및 협정 차관, 통상관계, 자본 및 기술협력, 현안문제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2. 밀수 방지

- 1968.10월 재무부는 대마도를 거점으로 하는 한국 소형선박의 밀수 방지 문제와 관련, 밀무역 통계 및 일본 정부에 요청할 사항 관련 자료를 제출함.

3. 국내 일본인 상사에 대한 과세

- 1969.6월 재무부는 국내법에 따른 과세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이행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4. 해운협력

- 1969.6월 교통부는 한·일 해운회담 개최(68.11월), 민간 해운회담 전문위원급 간담회 개최(69.2월) 등 이행상황을 통보함.

5. 농수산협력

- 1969.6월 수산청은 수산증식 기술자 초청, 연수생 파견, 어업협력자금 집행현황 등을 통보함.
- 1969.7월 농림부는 농산물 종자 교류를 위한 기술협력위 개최, 지표수 관련 일본 기술자 방한, 농업 용수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채소 절임사업, 인도 돛자리기 합작투자 등 이행상황을 통보

6. 무역불균형 시정

- 상공부는 민간단체 회의를 통한 증용, 공식회담을 통한 요청 등 조치내용을 통보함.

한·뉴질랜드 경제협력

| 69-381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M-14/2/1~22(22p)



1. 외무부는 1968.11.7.~8. 개최된 한·뉴질랜드 통상진흥회담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함.
 - 무역 불균형 시정 노력 등 양국 간 무역증진 방안
 - 육가공 협력, 양피 및 소가죽 가공협력 등 축산분야 합작투자 방안
2. 1969.3월 농림부는 시범낙농 목장 및 육가공 합작투자과 관련한 뉴질랜드와의 협의를 위해 대표단 파견계획을 외무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한·뉴질랜드 공동성명 경제관계 추진계획서를 작성함.
 - 한국 축산업 개발을 위한 합작투자 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뉴측과 교섭 예정
 - 축산 개발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안을 준비하고 기술원조 획득을 위한 교섭을 병행
 - 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개시 예정
 - 콜롬보 플랜에 의한 기술훈련에서 낙농·목축분야 비중 확대 계획

69-382

한·월남 경제협력



생산연도 1968-69

생산과 동남아2과

MF번호 M-14/3/1~285(285p)

1. 군수용역단 처우 및 법적지위에 관한 검토(1968.3월 외무부 방교국)
2. 대월남 경험: 1968년도 실적 및 1969년도 목표(1969.1.26. 주월남대사관 경제협조실)
 - 수출, 용역군납, 건설계약, 기술고용, 경제협력 등 분야별 실적을 검토하고, 대미 교섭 강화, 대월 교섭 강화, 전후 대비태세 강화 등 주요 대책을 검토
3. 대월남 경험 대책: 휴전과 관련하여(1969.2.18. 경제기획원, 주월남대사관)
 - 전후 월남복구 및 자립노력에 대한 지원 및 협력, 기존 한·월 경제협력 강화 등 기본목표를 설정
 - 기존 계약의 보호, 미군군수 후방지원 민간 이관 과정 참여, 전후복구 및 건설 참여, 기술인력 진출 수준 유지, 통상증진, 기술원조 등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상 및 각료회담 개최, 특사파견, 민간업체 참여, 경제인 교류 등 실질 교섭 방안을 수립
4. 대월 경험 현황(1969.6~9월말 현재, 매월 주월남대사관 경험조정관실에서 작성)
 - 1969년도 4천만달러 수출 실적, 180만달러 송금 실적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송금 실적, 수출, 용역 군납, 건설, 기술 고용 등 경험 현황과 월남의 주요 경제사정을 분석

제4차 한·대만(구 중국) 경제각료회담 합의사항 이행

| 69-383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재무부

MF번호 M-16/2/1~45(45p)



1968~69년간 정부 관계부처들은 제4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농수산 분야(농림부)

- 사과, 배 및 오징어 수출현황 점검 및 수출확대 방안 검토
- 대두 수출은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 채소 연구 및 개발센터 참여를 위한 기여금 납부 계획

2. 무역 및 산업 분야(상공부)

- 석유화학 분야 협력 가능 품목 제시
- 주물, 공작기계, 섬유기계 분야에서의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 추진
- 대만 관제 수입 품목 및 수입선 지정 품목의 수입 증대 촉구
- 선박 및 화차 수출, 무연탄 수출을 위한 대만 협조 촉구
- 해외 공동시장 개척을 위한 합판, 철강, 섬유, 비료 분야의 민간 협력 강화

3. 기타 수산, 금융 협력 등을 포함한 합의사항 이행 전반(재무부)

69-384

아시아 노동장관회의, 제2차. New Delhi, 1969.1.28.-2.1.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M-14/4/1~403(403p)

1. 1968.5월 인도 정부는 자국 주최 제2차 아시아 노동장관회의에 대한 참가국 확대를 위해 제1차 회의 참가국인 대만(구 자유중국)을 초청하지 않는 대신, 북한, 월맹, 몽고를 초청할 뜻을 외무성 공한을 통해 밝힘.
 - 인도측은 1966.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역 ILO 대표 회의에서 이러한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2.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북한이 초청될 경우 우리나라는 불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인도 정부, 아시아 지역 ILO 회원국 및 미국, 영국 등 우방국에 대해 북한 참가 저지를 위한 교섭을 전개함.
 - 북한 초청은 1국에 2개의 대표단 초청이며,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침략과 도발로 규탄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
 - 필리핀 및 호주가 가장 적극적 지지 입장이었으며 여타 국가들도 우리 입장에 동조
3. 인도 정부는 당초 동 회의가 국제기구 회의가 아닌 비공식 회의이므로 초청대상은 주최국의 재량이라는 입장을 취했으나, 1968.9월 말 경부터 북한이 참가의사가 없으므로 초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였으며, 1968.12.26. 북한을 참가국에서 제외한 초청장을 우리나라에 보내옴.
 - 초청대상국은 18개 비공산 국가(북한, 월맹, 몽고, 대만 제외)
4. 제2차 아시아 노동장관회의가 1969.1.28.~2.1. 뉴델리에서 개최됨.
 - 우리정부 대표단
 - 이승택 노동청장(수석대표), 최운상 주뉴델리총영사(교체수석), 박일경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고문) 등
 -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기술협력, 아시아의 인력개발, ILO의 역할에 관한 선언문 채택
 - 차기 회의를 1971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동남아 경제개발각료회의, 제4차. Bangkok, 1969.4.3.-5.

| 69-385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4/5/1~135(135p)



일본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제4차 동남아 경제개발 각료회의가 1969.4.3.~5.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참석자

-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월남, 인도네시아의 외무장관 또는 경제 관련 장관
- 캄보디아, ADB, ECAFE, FAO, UNCTAD 등 옵서버 참가

2. 주요 논의사항

- 역내 국가의 경제 상황과 당면 과제에 대해 논의
- 동남아 경제 개발에 대한 일본의 노력에 감사 표시
- 일본은 월남전 전후복구를 위한 원조 검토 의사 표시
- 동남아 어업개발센터 설립 진전 상황 점검
- 메콩강 유역 및 메콩 델타 개발의 중요성 강조
- 무역, 관광 및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개발 센터 설립 제안에 대한 진전 평가
- 1970년 제5차 회의 인도네시아 개최 결정

경제사절단 페루 및 엘살바도르 방문, 1969.2.24.-3.1.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통상진흥과
 MF번호 M-14/6/1~34(34p)

1969.2월 김학렬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페루 및 엘살바도르를 방문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절단은 김학렬 단장, 황호을 외무부 차관보, 심의환 상공부 국장, 배동환 수산청 국장, 최호중 외무부 통상과장, 박필수 상공부 진흥과장 등으로 구성됨.

1. 페루

- 방문기간: 1969.2.24.~26.
- 대통령, 외무부장관, 농무부장관 예방 및 면담, 정부 및 민간 관계관 연석회의
- 균형된 교역의 증진을 위하여 무역협정 체결 및 통상사절단 교환에 합의
- 어업 분야 협력 증진 및 어업 조사단 파견 합의

2. 엘살바도르

- 방문기간: 1969.2.27.~3.1.
- 대통령, 외무부장관, 경제부장관, 경제부차관 예방 및 면담
- 통상 및 경제협력 증진 필요성 공감 및 무역협정 체결 합의
- 우리 통상사절단의 엘살바도르 무역박람회 참가 통보
- 어선 연불수출, 우리나라 어업기지 설치, 어로 시험조업 등 타당성 조사 완료 후 추진 합의

Hoemardani, Soedjono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제담당 수석비서관 방한, 1969.9.27.-10.1.

| 69-38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4/7/1~35(35p)



1. Soedjono Hoemardani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제담당 수석비서관이 1969.9.27.~10.1. 방한함(기업인 2명 수행).
2. 동인은 체한 중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외무차관, 상공차관, 경제과학심의회 사무국장,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면담함.
3. 1969.9.29. 외무차관 면담 시 외무차관은 우리의 남북대치 상황과 북한의 도발상을 설명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인도네시아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동 비서관은 이해를 표시함.

69-388

한국의 대루안다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M-14/9/1~60(60p)

1. 1968.3월 주우간다대사의 겸임국 르완다 방문 시 르완다 외상은 의사 2명 파견을 희망하여 우리 정부도 이를 추진하였으나 1969.6월 르완다 외무성측은 자국의 열악한 주택사정에 비추어 파견 의사에 대한 주거도 한국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 주우간다대사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의사파견은 다음해로 미루고 1969년도에 의료기기를 지원할 것을 건의함.
2. 1969.9월 르완다 정부는 앰불런스 4대 및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정부는 르완다에 대한 연간 무상원조 계획 2만달러의 범위 내에서 앰불런스 4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3. 1969.12월 외무부는 앰불런스 기증을 위해 주우간다대사의 1970.2월 겸임국 출장을 허가함.

월남의 My Thuan교 건설공사 원조요청

| 69-389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국제경제과

MF번호 M-14/10/1~27(27p)

1. 1969.6월 ECAFE 사무국과 메콩위원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My Thuan Bridge Project에 관한 ECAFE 상임대표들을 회의에 소집하고, 월남전 전후복구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된 My Thuan교 건설공사에 대한 국제입찰 현황을 설명하고 총 약 2천만달러의 공사비 중 1천만달러의 월남 정부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에 대한 참가국들의 기부를 요청함.

● 당시 4개 응찰회사 중 우리나라 대림산업이 최저가로 응찰

2. 우리정부는 1969.10.15. 사이공에서 개최된 My Thuan교 건설자금 모금을 위한 주월남 외교사절단 회의에 참석한 주월남대사에게 다음과 같이 훈령함.

● 정부는 메콩강 개발 계획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공 지역 수리개발을 위해 이미 30만달러의 기술 원조를 월남 정부에 제공함.

● 추가적으로 My Thuan교 건설을 위한 원조 제공은 어려움.

● 우리나라 회사가 공사를 담당하는 경우 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간접 지원 예정임.

69-390

한국의 대월남 Mekong지역 개발계획 원조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국제경제과

MF번호 M-14/11/1~27(27p)

1. 메콩강 개발계획에 대한 원조 제공(1968년 외무부 작성 보고서)

- 지리적 특징, 메콩위원회 목적 및 조직, 설립 연혁, 메콩위원회의 활동, 원조 제공 현황 등 수록
- 메콩 개발계획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68.8월 메콩 개발 사업에 대한 ECAFE 사무총장의 원조요청에 대해 재정 형편상 난색 표명
 - 1969.5월 메콩 델타 내 My Thuan교 공사입찰에 우리업체 2개 응찰
 - 고공 지역 농경지 개발을 위한 수리관개 사업을 위한 30만달러 원조 검토 중
- 건의사항
 - 월남전 참전외의 고양, 월남 진출 기반 조성, 현지인들의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메콩강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 필요

2. 1968.12월 메콩강 개발계획 담당 ECAFE 기술책임자는 우리정부에 메콩강 개발계획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였으며, 정부 관계부처들이 이를 검토함.

미국의 잉여농산물(PL480) 지원

| 69-391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4/13/1~153(153p)



본 문서철은 1969년도 한·미 양국간 미 공법 480호(PL480)에 따른 미국 잉여농산물 원조에 관한 실무협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 구매허가(PA) 발급, 원조품목(미곡, 소맥, 소맥분, 옥수수, 원면, 우지 등), 원조품 인도기간, 선적 계획, 인도조건 등

69-392

독일 차관도입



생산연도 1969
 생산과 경제협력과/구주과
 MF번호 M-14/14/1~24(24p)

1. 1969년 초 정부는 이미 계획된 영남화력 발전 2호기 건설에 대한 독일의 상업차관을 재정차관으로 전환하고, 3천만 마르크의 신규 재정차관을 제공하며,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에 대한 독일의 장기 상업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독일 정부에 교섭함.
2. 독일 정부는 영남화력에 대한 상업차관을 재정차관으로 전환하기 어렵고, 종합제철소 건설사업의 경제성이 불확실하므로 상업차관 제공 가능성은 적다고 하면서 1969년도 가용 재정차관 한도 총 7,800만마르크(1969년도 계획분 7천만 및 이월분 800만마르크)에서 자금을 충당할 것을 요청함.

IBRD 차관 도입

| 69-393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4/16/1~81(81p)

1969년도에 정부가 IBRD와 체결한 3건의 차관도입 협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국개발금융공사(KFDC) 제2차 차관 보증협정

- 2천만달러
- 1969.6.26. 협정 체결

2. IDA 직업교육차관 협정

- 1,480만달러
- 1969.6.4. 협정 체결

3. 제2 종합제철 차관 조사단 내한

- 제2 종합제철 건설에 관한 차관 공여 검토를 위해 IBRD 조사단이 1969.10.31.~11.9. 방한

69-394

대벨기에 중앙선 전철화사업 차관도입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5/2/1~15(15p)

1. 1967.7월 정부는 중앙선 전철화 사업을 위한 약 6,300만달러 규모의 차관을 ACEC(유럽차관단: 벨기에,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으로 구성)로부터 도입하며, 이중 약 2,100만달러를 벨기에에서 도입하기로 하고 주벨기에대사를 통해 교섭함.
2. 1969.7월 주벨기에대사는 벨기에 정부가 차관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며 7월말 개최되는 차관 참여국 보험기관 책임자 회의에서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승인이 낙관시 된다고 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대일 상업차관 도입

| 69-395 |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경제기획원

MF번호 M-15/4/1~224(224p)

1967~69년간 한·일 양국의 대일 상업차관 도입에 관한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967년도

- 1967.11월 양국은 어업협력 및 선박도입 자금 1차 사용계획 약 4천만달러에 합의하고 양국간 사용계획 한도 3천만달러를 초과하는 1천만달러는 1968년도 신규 상업차관 2억달러에서 총당하는 방안을 협의

2. 1968년도

- 정부는 어업협력 및 선박도입 차관 3천만달러 중 1,500만달러를 어업협력 자기에 배정하고 참치어선, 어로기기, 트롤어선 등을 구입하기로 결정
- 당인리 화전 건설을 위한 한전과 미츠비시 간 자본재도입 계약을 현금 구매 계약으로 변경
- 1968.3월 한·일 양국은 상업차관 실행 스케줄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
 - 정부는 1968년 8,599만달러의 사업에 대해 수출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일측은 6,000만달러 수준을 주장하여, 각료회담시 까지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
 - 우선 인천화력(2,588만달러) 및 영동화력(1,500만달러)에 대한 조속한 수출허가 발급에 합의
- 1968.10월 일측과의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철도레일(700만달러), 불도저 도입(217만달러) 등 우리측 추가 희망사업을 포함, 1968년도 총 12건 6,714만달러 사용계획에 합의
 - 1969년도 협정차관 사용계획으로 선박도입(1,200만달러), 원양어업(800만달러), 연안어업(600만달러) 등 총 2,600만달러에 합의

3. 1969년도

- 1969.6월 정부는 1969년도 상업차관 사업 중 경인화전(1,400만달러), 폴리에스테르 공장(1,500만달러)에 대한 수출허가를 조속히 발급해 줄 것을 일측에 요청
- 1969년도 상업차관 총 규모는 13개 사업 7,100만달러(1969.9.27. 주일본대사관의 일본 외무성 앞 공한 내용)

69-396

대사우디아라비아 인력진출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M-15/5/1~6(6p)

주터키대사는 1969.6.3.~10.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 Faisal 국왕 및 젓다 상공회의소 소장을 예방하고 양국 간 교역증진, 건설 및 의료 인력 진출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후속 조치를 위하여 KOTRA 또는 해외개발공사 관계관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 협의할 것을 건의함.

한·리비아 의료협력

| 69-39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M-21/25/1~24(24p)



주튀니지대사는 1969.5월 및 6월 튀니지 주재 리비아 대사와의 의견교환 및 황남자 서기관의 리비아 보건성 차관 면담(4.30.)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의료수준 및 의료인력 진출에 관한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우리 의료단을 조속히 파견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69-398

Tahiti 어로기지 설치교섭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12/14/1~14(14p)

1. 1968.10월 한국수산개발공사는 원양어업 세력의 확장과 운영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남태평양 Tahiti에 원양어업기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현 Samoa 기지 중심의 어로는 보유선박의 성능과 어장의 원격성에 비추어 비효율적
2. 1968.11월 주프랑스대사는 프랑스 외무성에 협조를 요청한 바, 프랑스측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Tahiti 총독과 접촉하겠다고 함.

한·일 민간어업합동위원회, 제3차. 서울, 1969.12.16.-17.

| 69-399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부아주과

MF번호 M-15/6/1~66(66p)



1969.12.16.~17.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일 민간어업합동위원회 관련 자료 등은 다음과 같음.

1. 영풍호 어구피해사건 보고(1969.9.16. 수산업협동중앙회)
2. 1969.10월 제5차 한·일 민간어업협의회 훈령(1969.10.18. 수산청)
 - 미해결 어선사고의 조속 해결, 인명피해 보상기준 설정, 어선 간 사고 방지 및 사고처리 대책 등
3. 일본국 어선에 대한 어구 가해선 조사보고(1969.10.21. 수협중앙회 경남지부)
4. 1969년도 제3차 한·일 민간어업합동위원회 안건(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어업위원회)
 - 영풍호 처리상황, 제2 입항환 처리상황, 제1 동림호 처리상황 등
5. 한·일 민간어업합동위원회 훈령(1969.12.13. 수산청)
 - 미해결 어선사고에 대한 일측의 전액 배상 확보
 - 어선과 비어선 간 사고에 대한 일측의 성의 있는 해결 촉구 등

| 69-400 |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제4차. 동경, 1969.6.18.-22.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M-15/7/1~22(22p)

1969.6.18.~22.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6.12.~16. 자원 전문가회의 개최) 참가 대표단에 대한 정부의 훈령은 다음과 같음.

1.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

- 1년 이내에 어업협정의 개정여부가 검토될 것임을 감안, 수역별로 자원의 증감 경향을 검토

2. 어선의 충돌사고 및 처리상황

- 일측의 피해어선 배상 지연으로 우리 어민의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측의 구체적 설명을 요구
- 비어선과의 충돌 피해를 입은 어선에 대한 인도적이고 성의 있는 해결 촉구

3. 협정위반에 대한 동등한 형량이 부과될 세목 제정

- 양국의 형량 비교 검토

4. 해난구조, 긴급피난 협정체결 검토

- 구체적 논의는 정부 간 회의에서 진행

아시아 채소연구개발센터 설립

| 69-401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재무부 경제협력국

MF번호 M-15/8/1~107(107p)

1. 1969.2월 정부는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가 추진한 아시아 채소연구개발센터 설립에 관한 출자문제를 논의할 ADB 이사회에서 동 출자를 지지할 것을 천병규 ADB 이사에게 지시함.
 - 정부는 1968.12.12. 동 센터 설립에 375,000달러를 5년 균등 분할 출자하기로 결정
2. 정부는 우리 출자분에 대한 예산 조치를 위하여 대만 정부에 동 개발센터 설립계획서를 요청 하였으나, 송부가 지연됨에 따라 69년 및 70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는바, 대만 정부는 1969.12월 우리정부가 1970년 초에 반드시 출자해 줄 것을 독촉함.
3. 이에 대해 정부는 1970년 초에 출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제기획원장관 명의의 서한을 채소연구개발센터 소장에게 보내는 방안을 검토함.

69-402

뉴질랜드산 원목도입을 위한 실무회의. 서울, 1969.2.21.-24.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M-15/9/1~38(38p)

1. 뉴질랜드산 원목도입을 위한 실무회의가 1969.2.21.~24. 서울에서 개최됨.

- 동 회의는 1968.10월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공동성명 및 산림청장의 뉴질랜드 방문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최
- 참석자
 - 주성규 산림청 임정국장(수석대표), 이순동 산림청 임정과장, 배종순 산림청 통계과장, 이창수 외무부 통상1과장, 임우동 상공부 수입과장
 - Childs 뉴질랜드 산림부 통상부국장, Alexander 목재상, Watson 주일본 뉴질랜드대사관 참사관

2. 주요 합의사항

- 뉴질랜드는 최소 3년간 매년 10만 입방미터의 원목을 한국에 수출 용의
- 수종은 Raiata Pine
- 가격은 한국을 위해 특별 결정
- 한국측은 수입목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를 정부에 건의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제2차. Sidney, 1969.4.10.-12.

| 69-403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국제경제과

MF번호 M-15/10/1~218(218p)



정부는 1964.4.10.~12.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 황중률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구성

- 대표
 - 황중률 재무부장관(수석대표), 서진수 한국은행 총재(교체수석), 이재설 재무부 재정차관보, 정재석 경제기획원 관리실장, 배수곤 한국은행 이사, 정인용 재무부 국제금융과장
- 고문
 - 천병규 ADB 이사, 김영휘 산업은행 총재, 홍승희 외환은행장
- 전문위원
 - 김창희 재무부 과장, 홍재형 재무부 계장 등

2. 참가 목적

- ADB 적극 참여를 통한 ECAFE 지역 주도적 역할 강화
- ADB 추진 차관사업의 조기 타결 도모
- 대 ADB 신규 대상사업 차관 교섭
- ADB의 재원조달 정책 수립 참여 및 이사 선임 참여

3 대표단 주요활동 계획

- 주호주대사 명의 환영리셉션 개최
- 제6차 한·중·월 3개국 대표회의 참가
- 수석대표의 총회 연설

69-404

IWC(국제소맥위원회) 이사회, 제56-57차. London, 1969.6.24.-26. 및 11.24.-12.1.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15/11/1~20(20p)

1. 1969.6.24.~26.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56차 IWC(국제소맥위원회) 이사회에 주영대사관 박상두 참사관이 참석하였는바,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소맥무역협정 비준현황 점검
- 수입국의 percentage undertaking이 결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80%로 확정
- 1969/70년도 예산을 86,145파운드로 결정
- 집행위원국 및 집행위 의장단 선출

2. 1969.11.24.~12.1.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57차 IWC(국제소맥위원회) 이사회에 주영대사관 박상두 참사관이 참석함.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조치

| 69-405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8/1/1~317(317p)

1.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조치 관련 동향

- 업계 및 의회의 압력에 직면한 미 행정부는 섬유류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입법을 통한 일방적 쿼터 실시 보다 수출국들의 자발적 수출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1970년 만료되는 장기면직물협정(LTA)의 연장도 모직물과 인조섬유에 대하여도 유사한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 이를 위해 상무장관이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가들을 순방하고 미 행정부의 입장을 설명
 - 유럽국가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섬유, 직물, 의류 등을 분리취급 방침 시사

2. 우리정부의 대책

- 1969.2월 정부 내 미국섬유제품 수입제한 대책 협의회(외무부 통상국장 주재)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미국 정부 및 의회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
- 1969.5월 한·미 통상장관 회의 시 섬유류 수출자율규제, 모직물 및 인조섬유에 대한 신규 국제협정 체결에 반대 의사 표명
- 1969.10월 주한 미국대사는 외무부장관에게 의회의 수입제한 입법을 피하기 위해 수출자율규제가 불가피하므로 쌍무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을 조속 개최할 것을 요청
- 1969.12.4.자 우리정부의 한·미 면직물 쌍무협정 교섭안 주요내용
 - LTA 연장에 기본적 반대이나 다수가 찬성하는 경우 미측에 총쿼터량 증량, 제3국과의 동등 대우 및 협의규정 준수, 쿼터 통합·스윙·이월 등에서 유사품목 광범위 통합, 연례회담 개최 등을 요구

3. 한·미 쌍무교섭(1969.12.5.~10. 제네바)

- 정부는 섬유류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쌍무교섭을 위해 김우곤 상공부 상역차관보, 김동휘 주미대사관 참사관, 이상진 외무부 통상2과장, 박필수 상공부 상정과장 등 대표단을 제네바에 파견함.
 - 미측에서 Henry Brodie 주제네바 공사, Stanley Nehmer 상무부 부차관보 등 참석
- 제한대상 품목의 년 수입증가율, 모직물 및 인조섬유에 대한 쿼터 한도 및 기준년도 등에 대한 양국 간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 실패

69-406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대만(구 중국)과 일본의 동향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8/2/1~131(131p)

1969년 미국의 주요 섬유류 수출국가에 대한 수출자유규제 요청과 관련한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일본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대만

- 1969.11월 대만 정부는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제의를 못 받았으나 우리정부와의 공동 보조 가능성에 관심을 표시함.
- 1969.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국과의 쌍무협상에 참가한 대만 수석대표는 우리나라 수석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
 - 미국의 포괄적 쌍무협정 체결 제의 및 기준년도(1968년)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모직물 및 인조섬유 관련 협상은 추후 개최하기로 함.

2. 홍콩

- 1969.10월 홍콩정청은 미국의 포괄적 쌍무협정 체결제의에 대해 교섭에 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나 GATT의 테두리 내에서라면 동정적 고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냄.

3. 일본

- 일본 정부는 미국의 포괄적 쌍무협정 제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특정품목이 미국내 시장을 교란할 경우 피해조사를 거쳐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에 입각하여 대응함.
- 1969.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일 예비 쌍무협상에서 미측은 민감품목에 대한 수출한도(ceiling) 설정, 기타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발동수준(trigger point) 설정, 시장교란 여부의 수입국 주관적 판단 등을 주장하였으나, 일측은 다자차원의 협정체결, 포괄적 규제 반대, 시장교란 여부의 다자차원 결정 등의 입장을 고수함.
- 1969.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쌍무협상에서 미측은 인조섬유, 모직물에 대한 킬타량, 민감품목에 대한 수출한도, 기타품목에 대한 trigger 수준, 이월 및 스윙 등 운용방식, 쌍무협정 기간 등을 포함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일본측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함.

대미통상 전문변호사 고용

| 69-40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8/3/1~36(36p)



1. 1969년 주미국대사관은 한·미 무역관계에 있어서 우리정부 및 민간업계의 이익 보호를 위해 통상전문 변호사를 고용함.

- 성명: Myron Stoler (43세, Reeves, Harrison, Sams & Revercomb 소속 변호사)
- 계약 당사자: 주뉴욕 무역관
- 계약기간: 1969.5.1.~1970.4.30.
- 고용목적: 미국의 식물수입 제한조치와 관련한 자문

2. Stoler 변호사는 1969.6.2.~16. 방한하여 미국의 섬유직물 수입제한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외무부, 상공부, 무역협회, 대한무역공사,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함.

69-408

한·미 상공장관회담, 제3차. 서울, 1969.5.13.-15.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8/5/1~192(192p)

제3차 연례 한·미 상공장관 회담이 1969.5.13.~15. 서울에서 개최되어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 조치 등 양국 간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함.

1. 회담 참석자

- 김정렴 상공부장관, 황호을 외무부 차관보, 김우근 상공부 상역차관보, 김동수 청와대 비서관, 양윤세 경제기획원 투자진흥관, 심의환 상공부 상역국장 등
- Maurice Stans 상무장관, Stanley Nehmer 상무부 자원 부차관보, Lawrence Fox 상무부 국제정책 부차관보, Julius Kats 국무부 자원·식량정책 부차관보 등

2. 주요 협의사항

-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
 - 미측은 미국 내 흑인 근로자 실직 문제, 국제수지 악화, 의회의 보호주의 입법동향 등 섬유제품 수입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 중 쌍무적인 자율규제가 최선책이므로 이를 위한 양국 간 협상을 계속할 것을 희망
 - 우리측은 미국의 수입제한 강화는 한국의 수출 계획 및 경제개발 계획에 차질을 초래 할 것이므로 한국민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이는 국내정치적 영향도 크므로 쌍무적 자율규제를 위한 협상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
- 통상증진
 - 미국 무역상의 한국진출, 한국 내 미국 기계류 및 포장재 전시회 개최, 차별적 선임 철폐, 건설공사 군납계약의 보증제도 완화 등 현안 문제 논의
- 미국의 대한 투자 확대,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미국 표준국과 한국공업연구소 간의 자매결연 문제 등 논의

3. 미국 대표단 주요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외무부장관 예방
- 외무부장관 예방 시 우리측은 한국의 안보 문제 및 경제발전 계획을 설명하고 미국의 지원을 요청

4. Stans 장관은 1969.5.12.~13. 일본을 방문, 오히라 통산상 및 사토 수상 등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는바, 일측은 섬유수입 제한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함.

한·일 무역회담, 제6차. 동경, 1969.8.19.-21.

| 69-409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8/6/1~235(235p)



1. 제6차 한·일 무역회담이 1969.8.19.~21. 동경에서 개최됨.

- 동 회의는 당초 1969.5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1969.8월 개최될 한·일 각료회담에 대한 준비회의 성격으로 개최하는데 양국이 합의하여, 각료회담 준비회의와 한·일 무역협정에 따른 한·일 무역회담을 겸한 회의로 개최됨.

2. 동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석자

- 송광정 외무부 통상국장(수석대표), 심의환 상공부 상역국장, 이응철 전매청 업무국장, 이문수 주일대사관 참사관, 고병우 농림부 개발관 등
- 스노베 외무성 아시아국장, 고바야시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 후지타 특허청 총무부장 등

● 의제

- 양국 간 무역현황 검토, 균형무역 증진문제(1차산품 무역, 보세가공 무역, 개발수출, 관세문제, 수입제한 문제 등), 공업소유권 등 기타사항
- 의제협의 과정에서 일측은 양국 간 통상우호조약 체결문제 포함을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이 반대

● 주요 협의사항

- 양국 간 무역역조 시정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으며, 우리측은 김, 아래레 수입제한 철폐, 엽연초 수입 확대, 10개 관심품목 관세인하, 가공무역 원자재 면세 확대 등을 일측에 요구
- 일측은 역조시정은 장기적 무역확대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

69-410

한·스웨덴 섬유쿼터회담. Stockholm, 1969.3.17.-4.2.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8/7/1~113(113p)

1. 1969.2월 스웨덴 정부는 우리나라의 양말, 재킷, 셔츠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국 간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함.
2. 1969.3.17.~4.2. 스톡홀름에서 한·스웨덴 섬유쿼터 회담이 개최됨.
 - 참석자
 - 이상진 주스웨덴대사관 2등서기관, 김찬동 상공부 상정과장, 전순규 외무부 국제경제과 사무관, 업계 대표 2명
 - Hans Colliander 외무성 통상국 3과장, 상무성 대표 2명, 무역위 대표 1명
 - 주요 합의사항
 - 양말류, 재킷의류, 셔츠에 대한 규제 범위 및 수량 합의
 - 규제 기간: 1969.3.1.~1970.2.28.
 - 규제 방법: 우리측의 자율규제

구주지역 경제담당관회의. Hamburg, 1969.10.6.

| 69-411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N-8/8/1~15(15p)



1969.10.6.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구주지역 경제담당관 회의자료임.

1. 외무부장관 훈시
2. 구주지역 수출진흥 지원센터 제1차회의 KOTRA 사장 인사
3. 구주지역 수출진흥 지원센터 사무국장 환영사
4. 구주지역 수출진흥 지원센터 구성원 일동 결의문

69-412



뉴질랜드 통상사절단 방한, 1969.6.12-18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8/10/1-33(33p)

1. 뉴질랜드 산업계 대표 및 정부기관 대표로 구성된 통상사절단이 우리나라와의 통상증대를 위하여 1969.6.12.~18.간 방한함.

● 사절단 구성

- T. Clark 도자회사 이사(단장), R. Riggott Marley 사 이사, J. Whatnall 오클랜드 제조업협회 서기, A. Watson 주일 대사관 참사관 등 20명

2. 뉴질랜드 통상사절단의 주요일정

- 상공부장관, 서울시장, 외무차관, 무역협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예방
- 신진자동차 방문
- 개별 상담
- 기자회견 등

Moriarty, M. J. 뉴질랜드 상공차관 방한, 1969.6.10.-12.

| 69-413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8/11/1~36(36p)



1. M. J. Moriarty 뉴질랜드 상공차관이 1969.10.10.~12. 방한(보좌관 1인 수행) 하였는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상공부장관, 경제기획원 차관, 외무부 차관, 상공부 차관, 재무부 차관, 농림부 차관 방문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방문

2. 뉴질랜드 상공차관 방한 시 협의된 주요 내용

- 우리측의 시범 낙농목장 설치 요청에 대해, 우선 조사단 파견 및 시범용 암소 50두 제공 의사 표명
- 우리측의 시범 면양농장 설치 요청에 대해, 우선 조사단 파견 및 염소 등 다른 용도 전용 가능성 검토 필요성 제기
- 양국 간 기업인 교환을 위해 뉴질랜드 기업인 방한 권장
- 목재 장기신용 공여에 대해 계속 연구
- 뉴질랜드측은 뉴질랜드 내 한국 어업기지 건설에 대하여 조합 및 노동단체의 반대가 강함을 설명
- 산림개발 사업은 토질 등 여건 조사 후 협의 결정

69-414

미국 항공사의 한국 취항 요청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조약과/통상2과
 MF번호 N-8/13/1~117(117p)

1. 1969.2월 American Airlines 측은 주미국대사관에 동사의 한국 취항을 희망하였으며, 주미국대사는 동사의 조선호텔 투자 등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 정부에 대해 관심을 표해 줄 것을 우리정부에 건의하였는바, 교통부는 한·미 항공운수협정에 의거 한·미 노선 취항사를 미국 정부가 먼저 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2. 1969.5.28. 미국 정부는 Flying Tiger를 서울 취항 항공사로 지정한다는 공식통보를 보내왔으며, 동사는 1969.6.20. 우리 교통부에 정기화물 노선 운항허가를 신청함.
3. 동사의 운항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교통부는 양국 간 항공운수 협정 상 운항 스케줄에 관한 규정이 우리나라에 너무 불리하므로 차제에 협정 개정을 미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외무부의 의견대로 Flying Tiger의 운항허가 건은 별개의 건으로 취급하기로 함.
4. 우리정부는 항공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Flying Tiger의 항공화물 운항 신청 노선 중 홍콩-서울 구간은 한·미 항공운수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노선이므로 이를 제외한 노선으로 조정키로 하고 Flying Tiger와 협의를 거쳐, 1969.11.21. 정기화물 전용노선 허가를 부여함.

일본 만국박람회참가

| 69-415 |



생산연도 1966-69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9/10/1~234(234p)

1970년에 개최되는 일본 만국박람회에 대한 우리정부의 1967~69년간 참가 준비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966.10.9. 우리정부는 동 박람회의 규모 및 성격과 한·일 양국 간의 제반 관계를 감안하여 참가하기로 결정
 - 주일본대사관은 11.14.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
- 1967.7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참가 규모, 예산 등 참가계획 의결
- 1967.8월 전시관 대지 확보를 위한 교섭을 주일본대사에 지시
- 1967.11월 부지계약에 관한 각서교환
- 1968.3월 주관부서를 KOTRA에서 공보부로 이관
- 1968.6월 공보부, 일본 만국박람회 참가준비 위원회 구성
- 1968.11월 주관부서를 공보부에서 상공부로 이관
- 1968.11월 만국박람회 준비에 관한 협의차 일본 통산상 특사 방한
- 1968.12월 상공부, 70년도 일본만국박람회 참가 준비 위원회 규정 고시
- 1969.1.29. 민총식 주일본대사관 공사(만국박람회 한국 정부대표)와 이시시가 다이소 만박협회장 간에 한국 참가계약서 서명

69-416

오스트리아 정세보고



생산연도 1966-69
 생 산 과 구주2과
 MF번호 O-26/3/1~34(34p)

1. 주스위스대사관은 1966.4.20. 인접국 오스트리아의 정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1966.3.6. 실시된 오스트리아 총선거에서 국민당이 제2차대전 후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 오스트리아는 국민당의 승리로 인해 국민당 단독정부 수립이나 또는 국민·사회 양당의 연립정부 수립 이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 옴.
- 오스트리아의 연립정부 체제는 제2차대전 후 20여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1966.4.13. 국민당 단독 정부가 수립됨.
- 국민당 신정부 내각은 1966.4.19. 연방대통령에게 선서를 하였으며, Josef Klaus가 수상으로 취임함.

2. 기타 자료

- 주재국현황(1969.2월,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작성)

미얀마(구 버마) 국내정세

| 69-41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O-26/4/1~7(7p)

1. 주량군총영사관은 1969.9.18. 미얀마(구 버마)혁명위원회 및 정부각료에 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국가원수
 - General Newin, Chairman of the Revolutionary Council of the Union of Burma
 - 외상
 - Colonel Maung Lwi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volutionary Council of the Union of Burma
 - 국민소득
 - \$82,30(1969.6 월 기준)
2. 영자 일간지 Korea Herald는 1969.6.1.자 기사를 통해 미얀마의 국유화가 많은 시련과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도함.

69-418

볼리비아 정세보고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O-26/5/1~10(10p)

1. 외무부는 1969.4.28. 주아르헨티나대사관(볼리비아 겸임)에 대하여 볼리비아의 Bene Barrientos Ortuno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인하여 서거하였다는 4.28.자 UPI 통신보도를 확인, 보고할 것을 지시함.
 -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Barrientos 대통령이 4.27. 수도 La Paz로부터 200마일 떨어진 Cochabamba에서 헬리콥터 사고로 인하여 서거하였으며, Luis Adolfo Siles Salinad 부통령이 동일자로 임시 대통령직에 취임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1969.4.28.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볼리비아 신정부 각료명단과 신정부 성격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볼리비아 외무성으로부터 입수한 신정부 각료명단을 1969.10.31. 외무부에 보고함.

크메르 사태

| 69-419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O-26/6/1~27(27p)

1. Porter 주한 미국대사는 1969.4.11. 최규하 외무장관과의 면담 시 미국·캄보디아간 외교관계 재개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사전에 알려 줌.
 - 캄보디아 문제에 관하여 미국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성명 내용은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the UN Charter, the USA recognizes and respects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neutral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Kingdom of Cambodia within the present frontiers”로 될 것임. 이 문제에 관해서는 태국, 라오스 및 월남과 협의함.
 - 현재 캄보디아에 미국 군인이 억류되어 있는데, 캄보디아는 최근 미국의 이익대표국인 호주를 통하여 이들을 석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함.
 - 캄보디아의 시아누크공은 외국 정부가 캄보디아의 국경을 확인하는 성명을 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약 40여개국에 성명을 냄. 미국과 캄보디아간 국교수립 문제에 관해 아직 구체적 얘기는 없으며, 미국은 위에 말한 성명을 4.15. 발표하고 캄보디아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관찰할 것임.
2. 주미국대사는 1969.4.17. 외무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미국 정부는 4.12. 성명서를 발표하여 캄보디아와의 외교관계 재개를 위한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하였으며,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국가원수도 미국 정부의 성명을 환영하고 국교 재개 필요성을 인정함.
 - 양국간 국교단절이래 시아누크 국가원수는 미국측에 캄보디아 국경선을 인정할 것을 요청해 왔으나, 미국측은 월남 및 태국의 입장 때문에 국경선 인정선언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관측됨.
 - 미 국무성은 시아누크 국가원수의 반응을 환영하면서, 캄보디아와 외교관계 재개를 위한 교섭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
3. Rogers 미 국무장관은 1969.7.2. 기자회견을 통하여 미국과 캄보디아는 베트남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국경문제 분규 때문에 4년간 단절되었던 양국간 외교관계를 대사대리급 외교관계로 재개 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함.

69-420

카메룬 정세보고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26/7/1~15(15p)

주카메룬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주재국의 1969년 주요 정세는 다음과 같음.

1. Ahidjo 대통령이 이끄는 '카메룬 국민동맹'의 제1회 정당대회가 3.10. 대통령 참석 하에 전국 40개 지구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2. Ahidjo 대통령은 라이베리아를 방문하며, 라이베리아 방문에 이어 라이베리아 수도 먼로비아에서 개최되는 나이제리아문제에 관한 OAU 협의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임.
3. Ahidjo 대통령은 5.22. 연방국회에서 카메룬 경제전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연설함.
 - 국가세입은 1960년도 7,200만달러에서 1969년 1억4천만달러로 크게 성장
 - 농공업부문에 있어서도 매년 8~10% 성장
 - 공무원 처우개선도 향상(금년 3월부터 봉급 4%인상 예정)
4. Ahidjo 대통령은 5.24. 가봉을 방문하여 봉고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프리카경제관세동맹(UDEAC)의 기능발휘와 협력증진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5. 카메룬은 5.27. 카메룬 횡단철도 제2구간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1천만달러 규모)을 미국과 체결함.
6. Ahidjo 대통령의 미국방문 결과
 - OAU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유엔총회에서 10.7. 연설을 통해, 남아프리카 등 아프리카에 잔존하고 있는 식민지 종식을 호소함.
 - 10.8. 뉴욕상공회외소 오찬연설을 통해 미국 기업인들의 투자를 환영하고, 외국 정부의 원조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이를 외국인 투자로 대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함.

이집트 정세보고

| 69-421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O-26/10/1-7(7p)



주카이로총영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주재국의 1969년 주요 정세는 다음과 같음.

1. 이집트·동독간 외교관계 수립 움직임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이집트 정부 대변인은 3.26. 이집트가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함.
 - 이집트는 서독과는 외교관계 단절, 동독과는 총영사관을 교환 설치함.
2. 서독은 Alexandria에 총영사관을 개설코자 하였으나 이집트 정부가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집트 정부의 거절 이유는 서독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임.
3. 이집트 관광장관은 이집트를 방문한 서독 상공회의소 회장과 4.30. 회담을 가짐. 동 회담에서는 이집트에 대한 서독 관광객 유치에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하며, 이집트는 서독과 외교관계 단절상태에 있으나 서독과의 경제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69-422

일본 정세보고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동북아주과
 MF번호 O-26/11/1~55(55p)

1. 주일본대사관이 1969.12.27. 실시된 일본 중의원선거 동향 및 일반정세 등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한 주요 내용

- 일본 언론은 오끼나와 반환교섭을 끝낸 사또수상이 1969.12월 국회를 해산하여 총선거를 실시하고, 1970.6월에 미·일안보조약을 자동연장한 후 오끼나와 및 안보조약의 연장을 업적으로 하여 적절한 시기에 수상 지위를 은퇴할 의향을 표명함으로써 자민당 총재 4선을 단념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일본 정부는 1969.12.2. 중의원을 해산하고 12.28.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금번 중의원 해산은 지난 1966.12.27. 해산으로부터 2년11개월만이며 전후 11번째의 총선거가 될 것임.
- 일본 언론은 1969.11.29. 보도를 통해 서독이 핵확산금지조약 서명을 결정함에 따라 동 조약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아직 서명하지 않고 있는 일본 및 오스트리아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고 보도함.
- 일본 언론은 1969.12.18. 보도를 통해 한국은 일본의 중의원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 및 여당은 물론 야당도 사또정권에 대해 신뢰감과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함.

2. 일본의 1969.12.27. 중의원선거 실시 결과에 대하여 외무부가 12.29.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내용

- 일본의 '70년대의 진로를 선택한다.'는 이유로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실시된 금번 선거에서 사또수상이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총의석의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238석을 획득함으로써 절대적 승리를 거둠.
- 자민당의 압도적 의석수 획득은 금번 선거의 쟁점이었던 오끼나와 반환, 미·일 안보조약 연장문제, 아시아 집단안보를 위한 일본의 공약 등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게 된 데 기인 한 것으로 보임.
- 자민당의 대약진에 비해 사회당은 44석을 상실하고 90석만을 획득하였는데, 사회당 후퇴의 원인은 제1야당으로서 정권을 맡길 수 있을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의 제시가 없었다는 데 있음.
-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회복을 주장하는 공명당의 비약적 진출과 공산당 의석 증가로 대중국 접촉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임.

레바논 정세보고

| 69-423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O-26/12/1~5(5p)



1. 주터키대사관(레바논 겸임)은 '라시드 카라미' 신임 레바논 수상이 1969.1.16. 16명으로 구성된 연립내각을 조직하였으며, 카라미 수상이 외상을 겸임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외무부에 1.17. 보고함.
2. 주베이루트대표부의 장동한 1등서기관은 레바논 국회가 1969.12.4. 소집되어 신정부에 대한 정책 질의 후 12.5. 신임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조직에 참여하지 못한 세력으로부터의 반대가 격심하여 국회의 신임 투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1969.12.6. 외무부에 보고함.

69-424

라오스 정세보고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동남아1과
 MF번호 O-26/13/1~12(12p)

라오스 정세에 대하여 재외공관이 1969년 중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뉴욕타임즈지는 Hien 월맹대사가 5.14. 라오스 푸마 수상을 면담하였다고 비엔티안발로 보도함. 뉴욕타임즈지는 Hien 대사의 라오스 방문으로 월맹의 라오스에 대한 태도(월맹은 파테트 라오가 라오스 연정에서 철수한 이후 푸마 정부를 불인정하는 태도를 취함)에 전환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주미국대사관 보고).
2. 푸마 수상은 3.2. 국회에서 신임투표를 받게 되었으나 라오스 언론은 푸마 수상이 무난히 재신임 될 것으로 보도함. 우익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라오스 국회는 최근 푸마 정부의 부패 및 푸마 수상의 연례적인 유럽 방문 등을 공격함(주태국대사관 보고).
3. 푸마 수상은 7.24. 프랑스 뽕삐두 대통령과 파리에서 면담하였으며, 동 면담시 뽕삐두 대통령에게 프랑스가 제네바협정 테두리 내에서 라오스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고 발표함(주프랑스대사관 보고).
4. 일본 아이찌 외상은 10.1. 일본을 방문 중인 푸마 수상에게 '푸마수상의 요청에 따라 코시긴 수상 등 소련 정부 요인들과 접촉하여 라오스 내전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소련측 반응이 상당히 냉정하였다.'고 통보해 줌. 한편, 푸마 수상과 일본 사토수상은 라오스문제 관련 당사자간 회담개최를 희망하는 내용의 서한을 교환함(주일본대사관 보고).
5. 미국을 방문 중인 푸마 수상은 10.7. 닉슨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였으며, 라오스의 중립 및 주권 보장을 위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알려 짐. 미 국무부 대변인은 라오스에 대한 추가 군원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푸마 수상은 닉슨 대통령이 추가군원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함(주미국대사관 보고).
6. 가디언지는 도미노이론의 주요한 약점은 미군이 외국에 주둔함으로써 공산세력의 진출을 방지하게 하는 동시에 그 해당지역에 대한 공산침투를 유발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도함(주영국대사관 보고).

말리 정세보고

| 69-425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이중등과
 MF번호 O-26/14/1~24(24p)

1. 말리정세에 대하여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관이 1969년 중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 국무부는 1968.11월 말리의 쿠데타 이후 정지되었던 미국·말리간 외교관계의 재개를 발표하였다고 함.
 - 말리 군사정권 친선사절단이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하였으며, 말리 사절단 단장은 1968.11월 혁명 후 말리의 사정을 우방국가에 알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라고 언급함.
 - 1969.11월 군사쿠데타 후 최초로 국민해방군사위원회 Tounkara Kissima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말리 친선사절단이 미국을 공식 방문함. 동 사절단에는 Jean Marie Kone 외상도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말리간 관계 호전을 위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됨.
2. 외무부는 말리가 1968.11월 쿠데타 이래 친중국(구 중공) 노선을 지양하고 다소의 우선회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프랑스 및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 대해 우리나라와 말리간 접근 가능성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1969.2.24. 지시하였는바, 공관의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3.4.)
 - 말리 신정부는 말리가 공산권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는 이유로 북한 등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에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안정 등 국내외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아 남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프랑스대사관(3.28.)
 - 말리의 대외정책은 중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정책면에서 전 정권과 달라진 점은 없음. 말리 쿠데타 이후 북한 등의 활동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며, 또한 말리가 대외정책면 에서 우선회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 정권과 다른 정책의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우리나라가 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희박하며 시일을 두고 정세를 관망함이 좋을 것임.

69-426

네덜란드 정세보고



생산연도 1969
 생산과 구주과
 MF번호 O-26/16/1~23(23p)

주네덜란드대사가 주재국에 부임한 이래 관찰한 내용과 주재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1969년에 작성한 '주재국정세 및 한국과의 관계 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네덜란드는 제2차대전 이후 비교적 안정된 정치상황을 유지하는 나라로서, 여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높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4개 정당의 정강이 유사하며, 구주공동시장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이 정치안정의 주요 이유로 지목됨(현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국민의 수가 85% 점유).
2. 네덜란드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하원 우월주의이며, 헌법에 규정된 특정의제에 대해서는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토의함(합동회의 의장은 상원의장).
3. 네덜란드의 경제정책은 전통적 자유주의체제에 입각하고 있으며, 자유주의화 정도는 유럽에서 가장 앞서 있음. 네덜란드는 1964년 이래 현저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통화량 억제 및 재정 긴축정책을 통하여 완만한 경제 억제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의 예산편성은 구조적 표준정책에 따르고 있으며, 국민총소득 증가분에 비례하여 예산규모를 증감하도록 되어 있음.
4. 네덜란드의 우리나라에 대한 기본정책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는 유엔결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정책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Aerial Survey Agreement, KAL의 포켓기 구입협정, 총주비료의 카프로락탐 공장 설치문제 등 양국관계에 갈등 요인이 있었음.
5. 네덜란드는 북한과는 전혀 공식접촉을 갖고 있지 않으나, 북한과의 통상증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음.
6. 우리나라의 대네덜란드 수출은 1965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고, 1969.10월 현재 수출실적은 8백만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면직물, 연초 및 중석 등 광산물로 되어 있음.

파키스탄 정세보고

| 69-42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O-26/17/1~123(123p)

1.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파키스탄의 8개 야당이 1969.1.3. '민주행동위원회'라는 야당연합전선을 구축하고, 1969년 중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파키스탄의 최근 사태에 관해 1969.3.3.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68.10월 중순 학생들이 반정부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대학교령 철폐를 주장하면서 시작된 학생 시위가 전국적 반정부 파업으로 확산되고, 1969.1.23. 군대는 발포를 시작함.
 - 1969.2.21. Ayub 대통령은 1969년 말 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2.26. 야당 지도자들과 원탁회의를 갖고 국가장래문제를 협의함.
 - 폭동의 원인은 등록금 및 후생에 관한 학생들의 불만, 대통령 간접선거를 규정한 헌법 개정문제, 차기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야당의 정치공세, 비상사태하에서의 국민의 기본권 제한, 정부의 부패와 부의 불균형,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 등에 있음.
 - 파키스탄 정세는 유동적이므로 사태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야당이 군소정당으로 분열되어 있어 계속적인 행동통일이 유지될지 의문이며, Ayub 대통령은 후계자를 물색하고 여당을 육성하여 새로운 헌법 하에서 실시될 차기 대통령선거에 대비할 것으로 보임.
3. 외무부는 상기 3.3.자 대통령보고 이후의 파키스탄 사태에 관해 1969.3.15. 대통령에게 추가 보고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생들의 요구에 의하여 공장, 운수시설, 관청 등의 파업이 실시되고 부두노동자 수천명이 파업하였으며 방화, 약탈이 자행됨. 3.13. 개최된 여야 원탁회의는 파키스탄의 정체를 의원내각제로 변경하고, 새로운 총선거를 실시할 것에 합의함.
 - 파키스탄 정치계에는 이슬람과 사회주의에 관한 논쟁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각 정치 세력의 의견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국민여론의 양극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의 정치개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가 고의적으로 혼란을 조장한다고 비난하고 군의 개입과 계엄령 선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함.
4.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Ayub 대통령의 실각에 따라 취임한 야하 칸 대통령은 1969.7.28. 계엄정부의 기본정책과 민정이양 계획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국내질서가 만족스럽게 회복되어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허용할 것이며, 앞으로 1년 내지 1년 반 안으로 선거인명부 및 선거구 정비를 완료함.
 - 정부가 약속한대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각료이사회를 임명할 것임.
 - 헌법은 정부에서 작성하여 국민의 의견을 묻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음.
 - 이슬람과 파키스탄의 이념 및 단결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와 발언은 허용되지 않음.

69-428

태국 정세보고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O-26/18/1~58(58p)

주태국대사관이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1969년 중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타넛 외상은 1969.2.21. 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아시아 공산국가들과 공개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고 발표함. 공산당과의 회담 운운으로 인하여 타넛 외상이 급격한 정책변경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 외상이 과거에 아시아 공산국가들이 침략정책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아시아 평화가 가능하다고 누차 반복한 점에 비추어 태국의 정책전환 의도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됨.
2. 타넛 외상은 최근 지역협력 강화, 아시아지역 공산국 유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음. 발언의 저의는 미국의 아시아 계속 주둔 중용, 융통성 있는 외교정책 과시, 국내의 대정부비판 사전저지 등으로 보임. 동 발언에 군부가 논평치 않는 것으로 보아 군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관찰됨.
3. 태국주재 미국대사 및 파키스탄대사에 의하면 타넛 외상이 금년 유엔총회에서 정식으로 국제 사법재판소 판사로 제청될 것이며, 태국 정부가 각국 정부에 지지요청을 하였다고 함.
4. 미국 닉슨대통령이 1969.7월 태국을 방문하였으며, 주요 방문결과는 다음과 같음.
 - 미국측 요구에 의하여 공동성명서는 생략하였고, 닉슨대통령 체재 중 각종 발표문 및 연설문으로 대체됨.
 - 양국 정상회담 의제는 공동관심사, 월남, 라오스, 중국(구 중공) 문제임.
 - 태국에 대한 외부 침략행위가 있을 경우 미국이 병력지원 하기로 재확인 됨.
 - 미·태 양국은 대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중국이 침략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함.
 - 월남전 종결 후의 태국주둔 미군 감축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재검토하기로 함.

미국 정세보고

| 69-429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1과/북미2과

MF번호 O-26/19/1~41(41p)



본 문서철에는 미국 Nixon 대통령이 69.1.4. 4명의 TV 및 라디오 리포터들과 미국 경제 문제, 베트남 문제, 미국과 소련·중동과의 관계에 관해 대답을 한 내용전문(영문, 총 37페이지)이 수록되어 있음.

69-430

우루과이 정세보고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O-26/20/1-8(8p)

주우루과이대사관이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1969년 중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969.9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은행노조의 취업거부는 우루과이 군대가 은행에 개입함으로써 와해됨. 은행노조는 가두시위 및 총파업 데모를 시도하였으나 경찰과 군대의 출동으로 해산됨.
2. 우루과이 의회는 1969.2.28. 소련과 체결한 통상협정을 비준하였으며, 대통령은 즉시 이에 대한 법령을 공포함. 동 협정에 따라 소련은 2천만달러 상당의 기계 및 시설을 우루과이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음.
3. 우루과이 정부는 1969.8월 이민촉진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함.

월남 정세보고

| 69-431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O-26/21/1~135(135p)

주월남대사관이 주재국의 정세와 관련하여 1969년 중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Nguyen-Van-Thieu 대통령은 장개석 총통의 초청으로 1969.5.30.~6.3.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바,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산측은 월남 정부 및 국회의 해체를 요구함으로써 월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하고 있으며, 월남 국민은 민주적 헌법절차를 통해 자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월남전 해결을 위해서는 공산측의 재침방지에 대한 확고한 보장과 효과적 감시 및 확인 제도가 있어야 함.
 - 중국(구 중공)의 호전적 대외침략 정책은 아시아의 안전과 세계평화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임.
 - ASPAC 회원국 간의 협력강화가 필요함.
2. Thieu 대통령은 1969.10.6.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였는바, 주요 연설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인은 휴전문제를 포함한 어떤 문제에 관해서도 상대방과 토의할 용의가 있으며, 무조건 휴전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 휴전방식에 대해 토의해야함.
 - 월맹과의 연립정부 수립과 월남분할에 대한 토의는 수락하지 않을 것임. 미국 국민의 고통을 극소화 하기 위해 1970년에 미군 전투부대의 대부분을 대체하기로 결심하였으며, 월남군의 현대화정책을 계속 수행할 것임.
 - 국민자위대의 수는 약 22만명으로 강화되었고, 약 35만정의 무기가 분배됨.
 - 경제정책은 자급자족 달성을 목표로 추진되며, 농수산개발에 최우선을 둘 것임.
3. Thieu 대통령의 상기 상하원 연설에 대한 주월남대사관의 평가
 - 광범위한 분야(협상, 월남군 강화, 경제, 교육 등)에 대한 월남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함.
 - 연정문제 및 월남의 영토적 분할은 협상 및 토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백히 함.
 - 휴전문제 토의에 대한 용의 표명은 군사적 승리보다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원칙을 재천명한 것으로 간주 됨.
 - 미군 및 연합군을 점차적으로 월남군으로 대체할 것을 표명함으로써 반전여론과 관련하여 미국입장에 협조함.
 - 군사적 노력과 함께 협상 노력을 지속한다는 종래의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표명함.

69-432

월남문제 기본자료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O-26/22/1~78(78p)

본 문서철에는 외무부 북미2과에서 작성한 ‘월남문제에 관한 기본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1. 베트남 일지, 1954년 제네바협정 요약, 월남 정부 기본 입장
2. 파리평화협상: 미측은 2차 회담, 공산측은 NFL을 포함하여 4차회담이라고 주장
3. 월남분쟁 해결 방안
 - 미국 정부 14개 방안(1966.1.7. 미국무성 발표): 1954년 및 1962년 제네바협정이 동남아 평화의 기반, 전제조건 없는 협상 및 무조건 제의 환영, 월남평화 확보후 미군 철수, 월남 재통일 문제는 월남인의 자유의사로 결정 등
 - 월남 티우 대통령 6개 원칙(1969.4.7.): 월맹은 침략을 중지하고 비무장지대 존중, 월맹군이 철수하면 월남은 연합군 철수 요청, 월맹은 라오스·캄보디아를 기지로 사용하는 일 중지 등
 - 월맹 4개 방안(1965.4.13.): 평화·독립·주권 및 영토보전 인정, 1954년 제네바협정 존중, 월남문제에 관한 외국의 간섭 배제, 외국의 간섭없는 월남의 평화적 재통일
 - NFL 10개 방안(1969.5.8.): 월남내 모든 정치세력과 해외동포를 망라한 과도연정 수립,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대 철수, 과도연정 책임하에 총선을 실시하여 월남인의 정부 수립 등
4. 연합국 주요 정책 천명: 미국·월남 정상회담 선언(1968.2.8. 호놀룰루), 월남 지원국 정상회담 공동성명(1966.10.25. 마닐라), 박정희대통령과 티우대통령의 공동성명(1969.5.30. 서울) 등
5. 문제별 입장: 평화협상 노력, 철군, 연립정부 수립, 총선, 월남 분할문제, 월남 티우 대통령 NLF과의 사적 회담 제의, 포로에 관한 성명, 참전국간 협의
6. 공산측 임시 혁명정부 수립: 수립 경위, 조직 및 성격
7. 월남 국내 정세: Kiem 내각 수립(1969.9.1.), 평정계획, 토지개혁
8. 경제문제: 전후복구사업, 한·월남경제협력

월남전. 전2권 V.1 1969.1-7월

| 69-433 |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동남아2과/북미1과
 MF번호 O-27/1/1~407(407p)



본 문서철에는 1969.1~7월 기간 중 월남전 정세에 관한 외무부의 분석자료, 공관 보고 및 언론보도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1969.1~7월 중 발생한 월남전 관련 주요 사안

- 미국, 월남, 월맹, 베트남 간 제1차 평화회담 본회담(1.25. 파리)
- Thieu 월남 대통령의 6개안 제안(4.7.)
- Laird 미국방장관의 미군감축 3개 원칙 발표(5.3.)
- 베트남의 평화 10원칙 발표(5.8.)
- Nixon 미국대통령의 8개안 제안 연설(5.15.)
- 제3차 참전국 외상회의(5.22.~23. 방콕)
- 한·월남 정상회담(5.28. Thieu 월남 대통령 방한 계기)
- 미국·월남 정상회담(6.8. Midway)
- Nixon 미국대통령의 월남 방문(7.30.)

2. 본 문서철 수록 주요 자료

- 제1차 본회의에서의 양측대표 연설문(1.25. 파리)
 - Lodge 미국대표, 람 월남대표, 루이 월맹대표, Keim NLF대표
- 베트남 문제의 전망과 대책-정치·외교·군사 부문(1969.2월, 외무부 아주국 작성)
- Laird 미국방장관의 TV 회견문(3.24.)
- 철군에 관한 미·월남 양국 공동제안(안)(방콕개최 제3차 참전국 외상회의의 시)
- 베트남의 평화 10원칙 발표문(5.8.)과 이에 대한 월남 외무성의 성명문(5.9.)
- 월남문제에 관한 Nixon 대통령의 연설문(5.15.)
- Nixon-Thieu 공동성명서(6.8. Midway)
- Thieu 대통령의 7.11.자 연설 관련 외무부의 대통령 보고(7.18.)

69-434

월남전. 전2권 V.2 1969.8-12월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동남아2과/북미1과

MF번호 O-27/2/1~379(379p)

본 문서철에는 1969.8~12월 기간 중 월남전 정세에 관한 외무부의 분석자료, 공관 보고 및 언론보도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1969.8~12월 중 발생한 월남전 관련 주요 사안

- 비공식 참전국 외상회의(9.20. 뉴욕)
- Nixon 미국대통령의 연설(11.3.)
- 월남 주둔 필리핀군의 철수 (11.14. 철수결정, 12.12. 철군)
- Nixon 대통령, 월남 주둔 미군 5만명 1970.4.15.까지 철수계획 발표(12.15.)

2. 본 문서철 수록 주요 자료

- 월남군의 전력증강과 현대화를 위한 미국의 지원(69.8.16. 외무부 구미국)
- 박정희 대통령의 US News & World Report와의 회견문(서울)
- 월남군 전력증강 및 현대화에 관한 브리핑 문서
- 월남 전력증강에 관한 보고서(국방부 기획참모부장실)
- Nixon 미국대통령의 연설문(11.3.)
- 11.3.자 Nixon 미국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외무부 논평(11.5.) 및 각국의 반향(11.6.)에 대한 대통령 보고
- Nixon 대통령의 11.3. 연설 분석 및 각국 반향(외무부 정보문화국)
 - 연설요지, 분석, 전망, 한국내 반향, 각국의 반향
- 박정희 대통령의 Porter 주한미국대사 접견록(12.15. 청와대)
- 12.15.자 Nixon 미국대통령의 월남 주둔 미군 5만명 철수계획 발표에 관한 외무부의 대통령 보고 (12.16.)

PRG(월맹임시혁명정부) 수립, 1969.6.8.

| 69-435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O-27/3/1~75(75p)



1. 주월남대사관이 PRG(월맹 임시혁명정부) 수립에 관하여 1969.6월 외무부에 종합적으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산계의 NDPF(민족민주평화세력) 및 NLF(민족해방전선)은 1969.6.6.~8.간 인민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임시혁명정부'(PRG) 수립을 결의함.
- 인민대표회의는 14개항의 기본결의문을 채택(6.8.)하였으며, 기본결의문에는 기본목표, 정부조직, 지방행정, 자문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성격상 '헌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PRG 조직은 대통령 1명, 부통령 3명, 장관 8명, 차관 14명으로 구성함.
- 6.24. 현재 PRG를 승인한 국가는 공산국가 및 공산계 종립국 22개국임.
- PRG 수립 의도는 다음과 같음.
 - 파리 평화협상에서 월남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한다는 기본전략에 따른 것임.
 - 월남정부와의 정치적 협상에서 연립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전 포석으로 간주됨.
 - 국제사회에서 1개의 행정부로 등장하여, 공산제국의 지지와 더불어 월남 국민 중 좌경적 성향의 국민을 포섭하는데 있음.
 - 월남정부와 국민 간을 이간시키려는데 있음.
- Thieu 대통령은 6.11. TV발표를 통하여 종래의 월남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PRG 수립은 NLF의 단순한 술책이라고 논평함.

2. 본 문서철에는 'PRG의 성격과 방향'(1969.7.5. 외무부 아주국 작성)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69-436

남예멘 정세보고



생산연도 1969
 생산과 아중동과
 MF번호 O-27/4/1~12(12p)

본 문서철은 남예멘 정세와 관련하여 외신보도 및 주에티오피아대사관(남예멘 겸임) 보고 등을 수록하고 있음.

1. 남예멘은 1969.6.22. Al-Shaabi 대통령이 사임함에 따라 5인 통령회의를 구성하여 국가를 통치 하도록 하였으며, 5인 통령회의는 아랍제국과의 유대, 사회주의 진영과의 친선,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 지지를 골자로 하는 3개항 정책을 발표함(AFP통신 보도).
2. 미국과 남예멘은 1969.10.25. 국교를 단절하였으며, 미국대사관은 24시간내에 철수함.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남예멘 정부가 소련의 압력에 못이겨 미국과 국교를 단절한 것 같다고 추정함 (주에티오피아대사관 보고).
3. 남예멘 정부는 남예멘에 소재하는 36개 외국기업을 국유화한다고 발표함. 국유화조치 대상은 영국, 프랑스, 미국 계통의 은행, 브리티쉬 페트롤레움, 셸, 모빌, 엑손, 칼텍스 등의 석유회사 들임. 금번 남예멘 정부의 조치는 여타 아랍 강경파 국가와 같이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행해진 것임(외무부 정세보고).

로데시아 [짐바브웨] 독립

| 69-43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O-27/5/1~46(46p)

본 문서철은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독립에 관한 공관보고 및 외무부 정세보고 자료를 수록함.

1. 제17회 영연방 수상회의가 1969.1.7. 영국에서 개최되어 국제정치 정세, 로데시아 문제, 영연방 제국간의 협력 등을 논의하고 1.15. 종료될 예정임(외무부 정세보고).
2. 남아공은 로데시아 문제 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로데시아의 일방적 독립선포로 인한 게릴라 침투현상이 남아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로데시아 문제 해결이 실패하면 남아공이 장기간에 걸쳐 로데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함 (외무부 정세보고).
3. 로데시아 정부는 1969.5.21. 신헌법제정안에 관한 정부백서를 발표함. 동 헌법안은 선거를 통한 흑인참정권을 소득세 납부액에 기준하여 규제하는 것이 특색이며, 로데시아는 1969.6.20. 국민 투표를 통하여 동 헌법안 채택문제 및 로데시아가 공화국으로 발족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임(주영국대사관 보고).
4. 로데시아 정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음 2가지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첫째, 로데시아 Smith 정권의 '소수자 통치'를 위한 인종분리 정책이 다수 지배라는 기본원리에 반하는 전근대적인 정책이라는 점, 둘째 유엔은 이와 같은 정권에 대하여 전면적인 제재조치를 결의하고 있는 점임. 이와 관련하여 월드컵 축구경기를 위하여 방한코자 하는 로데시아 축구단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조치는 1968년 유엔안보리 결의 253-5항에 의거한 조치임 (외무부 자료).
5. 주영국대사관 현시학 공사는 Stanley Rous FIFA회장을 방문하여 상기 로데시아 축구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증발급 거부 조치를 설명하고, 한국, 일본, 호주팀만이 한국에서 예정대로 예선전을 가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주영국대사관 보고).
6. 1969.10.31.자 Korea Times지는 로데시아가 영국과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보도함.

69-438

나미비아 문제



생산연도 1967-69
 생산과 국제연합과
 MF번호 O-33/25/1~120(120p)

1. 나미비아 문제에 관한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에 대하여 주유엔대표부는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1967.4.21. 개막된 제5차 유엔특별총회는 4.24. 총회를 속개하여 서남아프리카 문제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심의함. 동 위원회는 서남아프리카 문제에 관하여 결론을 맺지 못해 다음과 같은 3개의 제안을 총회에 제출함.
 - 5개국 제안(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이집트, 파키스탄): 서남아프리카 이사회를 설치하고 유엔 commissioner가 행정집행 권한을 행사함.
 - 3개국 제안(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서남아프리카 특별대표를 임명하여 서남아프리카 독립을 위한 조건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22차 유엔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 2개국 제안(칠레, 멕시코): 서남아프리카이사회를 설치하고, 동 이사회는 남아공 정부와 접촉하여 서남아프리카 통치권 이양문제를 협의함.
- 1967.5.19. 속개된 총회는 마후교섭을 통하여 아시아, 아프리카그룹이 공동제안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11개국으로 구성되는 서남아프리카이사회 의 이사국을 지역별로 배당함(아프리카 3개국, 아시아, 중남미, 서유럽 및 동유럽 각 2개국).
- 서남아프리카이사회 의 요청에 따라 남아공에 의한 서남아프리카 정치범 37명 재판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1968.2.19.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됨.

2. 나미비아 문제관련 참고사항

- 1884~1914년 독일의 보호령
- 남아공과 접경(1915년)
- 국제연맹 위임에 따라 남아공이 통치(1920년)
- 1945.10월 국제연맹 소멸이후에도 남아공의 지배 계속
- 독립단체 SWAPO(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 결성(1960년)
- 1967.4.21. 제5차 유엔특별총회 개최

공관활동 보고 - 주이스라마바드 총영사관

| 69-439 |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동남아1과
 MF번호 O-27/8/1~17(17p)

주이스라마바드총영사관이 외무부에 제출한 공관활동 보고는 다음과 같음.

1. 주이스라마바드총영사는 1968.12.28. 외교단 모임에서 홍봉주 북한총영사가 접근해와 동인과 푸에블로호 선원석방, 게릴라 남침문제, 통일문제, 양측 총영사관의 인원 등에 관하여 약 20분간 대화를 나눔. 북한총영사는 부드러운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앞으로도 접촉할 것을 요청함. 북한측과의 상봉은 주이스라마바드총영사가 1968.6.1. 부임한 이래 처음임.
2. 주이스라마바드총영사의 부인은 1969.1.22. 파키스탄 여성단체가 주최한 문화행사 참석 시 북한 총영사의 부인이 옆자리에 앉게 되어 남북통일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논쟁을 벌였는바, 북한총영사 부인이 공식석상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3. 주이스라마바드총영사 부인과 유종하 영사 부부가 1969.8.19. 이집트대사 주최 리셉션에서 우연히 북한총영사를 만나 대화함. 유종하 영사는 북한의 미소 외교와 무장공비 남파는 서로 모순된 것임을 지적하고, 북한측이 언론계에 현금 등을 투입하여 한국에 대한 악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을 논박함.

69-440

공관 경제활동 보고 - 카메룬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O-27/9/1~26(26p)

카메룬 경제정세에 관하여 주카메룬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카메룬 신문보도에 의하면, 세계은행은 카메룬 정부의 보증 하에 2개의 야자유 생산회사에 790만 달러의 차관을 공여키로 하였으며, 동 차관의 상환기간은 30년, 이자율은 6.5%라고 함. 이들 회사들은 1967년에도 세계은행으로부터 서부카메룬지역 야자개발을 위해 1,800만달러 상당의 차관을 공여 받은 바 있으며, 1981년부터 연간 26,000톤의 야자유를 생산할 예정임.
2. 1969.7.29. 제2차 Yaoude Convention 서명식이 카메룬 연방의회에서 EEC 6개국 및 아프리카-말가시 18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됨. 아프리카 18개국은 EEC로부터 약 9억1천만달러 상당의 원조(무상원조 7억4천만달러, 특별차관 8천만달러, 유럽은행 차관 9천만달러)를 공여받게 됨.
3. 카메룬은 1969.6.3. 두알라 및 야운데 상수도 확장을 위해 세계은행과 500만달러 상당의 차관 협정을 체결함.
4. 서독정부는 1969.6.8. 야운데 화물역 건설을 위해 카메룬 정부에 120만달러 상당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함.
5. 프랑화 평가절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카메룬 정부는 1969.8.16. 모든 물가를 8.7. 현재 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함.
6. 카메룬 정부는 독립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박람회 개최함. 동 박람회에는 농산물, 산업 생산품을 비롯하여 조각, 그림, 자수품 등 각 지방 특산물 등 5,600여 점이 전시되며, 독립 후 10년여에 걸친 각 산업부문의 발전상도 소개될 예정임.
7. 카메룬 정부는 1969.1.7. 미국 Amerada Petroleum Corporation과 카메룬 석유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석유 개발기간은 25년간이며, 개발예정 지역은 두알라-빅토리아간 대륙붕 지역임.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제정에 따른 재일 교민문제

| 69-441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교민과

MF번호 P-7/3/1~185(185p)

1. 일본 정부는 오래전에 제정된 현행 출입국관리령이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옴.
 - 일본 국회에 제출된 출입국관리법안은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반면, 재입국 허가기간의 연장 등 입국후 체류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재일민단은 출입국관리법안이 재일한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동 법안추진에 반대하면서, 1969.7.16. 대통령 앞 탄원서를 제출하여 우리 정부의 관심을 촉구함.
3. 주일본대사관은 일본 법무성 등과 수차례 접촉하여 재일민단의 입장과 불만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관심을 표명함. 또한 외무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여 재일 한국인사회의 불만과 불안을 설명하고, 문제시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 조치 또는 필요한 해명을 하도록 요청함.
 - 우리정부의 관심표명에 따라 일본 법무성은 민단에 대한 해명을 위해 민단측과 대화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고, 민단측도 일측의 해명에 대해 이해를 보임.
4. 한편, 일본 자민당은 동 법안에 관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1969.7.22.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함. 자민당 수정안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독소조항 부분을 삭제 또는 완화하고 있으나 재일민단은 법안의 완전폐기를 요구함.
 - 영주권 취득자 및 이들 자녀에 대한 적용제외를 부칙에서 명문으로 규정
 - 빈곤자, 나환자, 마약중독자 등의 강제퇴거를 실시하지 않을 것을 명문으로 규정
 - 행정조사에 따르는 진술거부 등의 벌칙을 삭제
5. 자민당 수정안은 중의원 법무위원회가 심의하는 도중 1969.8.5.자로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동 법안은 폐안됨.

69-442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한·일간 법무장관 회담. 동경, 1969.8.19.-20.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1과/교민과

MF번호 P-7/4/1~286(286p)

1. 정부는 한·일 법무장관 회담(1969.8.19. 동경)에 참가하는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 수석대표: 이 호 법무부장관
- 대표: 이선중 법무부 법무실장, 공로명 외무부 교민과장 등 4명
※ 일본측 수석대표는 사이고 기치노스케 법무대신

2. 정부의 대표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훈령함.

-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징용되었다가 일본에 귀환한 한국인 등에 대해 협정영주가 허가되도록 일본측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할 것
- 전후 입국자 및 직계가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령상의 영주가 허가되도록 일본측의 조치를 요청할 것
- 영주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자로서 이미 일본에 상륙하여 상당기간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생활 실태를 감안하여, 특별체류허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것
- 재일 한국인의 일본 재입국에 관하여 1년간의 복수입국허가 부여 등을 요청할 것

3. 동 회담은 1969.8.20. 공동발표문 발표 후 폐회하였는바, 동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협정영주권을 신청한 자가 2회의 외국인 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조사 없이 협정영주를 허가기로 함
- 전후 입국자의 출입국관리령상의 영주허가와 관련하여, 영주허가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 등 신청수속을 간소화하기로 함.
- 협정영주자의 재입국허가에 관해서는 계속 호의적으로 배려기로 함.
- 협정영주자 가족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타당한 고려를 하기로 함.

4. 대표단은 회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함.

- 협정영주권 신청 자격자에 대해 새로운 조사 면제, 일반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협정영주권자에 대한 배려 등은 영주권 신청을 촉진하게 될 것임.
- 협정영주권자의 가족에 대한 일반영주권 허가문제는 시간을 두고 교섭할 사항임.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 (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 69-443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교민과

MF번호 P-7/5/1~45(45p)



1. 이회원 재일한국거류민단 단장은 1969.5.20.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및 대우문제에 관한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는바, 동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정영주권을 신청함에 있어 거주경력을 조사하지 않도록 할 것
 - 대일평화조약 발효일(1952.4.28.) 이전에 입국한 자에게 일본 입국관리령상의 일반영주권을 부여할 것
 - 대일평화조약 발효일부터 한·일조약 서명일(1965.6.22.) 이전에 입국한 자에 대하여 거주권이 부여 되도록 할 것
 - 밀입국자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이상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강제퇴거자를 인수하지 말 것
2. 외무부는 상기 청원과 관련하여 1969.6.4. 및 7.4. 2차에 걸쳐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대책을 보고함.
 - 협정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조사의 완전생략을 일축에 요구하며, 거주력에 관한 진술서 기재방법을 민단에 지도함.
 - 대일평화조약 발효일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는 신청과 동시에 일반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양해사항의 충실한 이행 촉구 등), 주일 각급 공관 및 영주권신청 지도원을 통한 계몽을 실시함.
 - 협정영주권자의 가족으로서 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양을 요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거주권(특별체류 허가)이 부여되도록 교섭하며, 상기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주일본대사관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엄격히 심사함.
 - 협정영주권자 가족의 경우에는 입국시기를 막론하고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하고, 대일평화조약 발효일 이전에 입국한 자는 일본에서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자가 아닌 한 우리측에서 인수하지 않음.

69-444

재일교민 북한 송환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Re-36/26/1~15(15p)

1. 주일본대사관은 북한적십자사가 재일교민의 북한송환을 위한 일측과의 교섭 재개와 관련하여 1969.4.3. 각국에 배포한 대일본 비난 회람(circular)을 입수하여 5.29. 외무부에 송부함.
2. 상기 북한 적십자사의 4.3.자 회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일본적십자사는 1969.3.3. 재일교민의 북한송환 재개 교섭을 위한 회담차 일본에 입국하는 북한측 대표단의 일본 입국시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하여 일본에 입국하는 형식을 취하라는 비합리적인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왔음.
 - 이와 같은 일측의 태도는 일본과 북한간의 양자문제인 재일교민의 북송문제에 제3자를 개입시켜 북송 재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정하려는 배신 행동인바, 일측이 재일교민의 북송을 지속적으로 저지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일측이 져야 할 것임.

재일민단 강화 대책회의. 서울, 1969.8.6.-9.

| 69-445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교민과/동북아1과

MF번호 P-7/7/1~472(472p)

1. 중앙정보부는 1969.2.19. 본국 및 재일동포 간부 합동회의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면서 회의개최 관련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 개최목적

- 재일동포 및 민단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모색

● 참가인원

- 민단 중앙간부 및 산하단체 책임자 15명, 상공회의소 간부 3명, 재일동포 언론인 대표 4명, 동경본부 간부 5명, 오사카 지방본부 5명, 기타 각 현 지방본부 대표 48명

2. 외무부는 재일거류민단 중견간부 본국초청 훈련계획(안)을 수립하고, 1969.4.12. '본국 및 재일 동포 간부합동회의 개최계획'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였으며, 동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개최기간 및 장소

- 1969.8.6.~9. 워커히

● 주요 일정

- 8.7.: 개회식 및 전체회의(의장 진필식 외무부차관), 위원회별 회의(조직, 경제, 교육 및 법적지위 위원회), 의장 주최 오찬,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8.8.: 위원회별 회의, 국무총리 주최 오찬, 전체회의, 경제개발 브리핑, 폐회식 등

● 민단측 참석자

- 이희원 민단 중앙본부 단장 등 83명

● 정부측 참석자

-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문화공보부 등 관계관

● 토의 의제

- 조직관련: 민단에 관한 문제, 교민청 신설, 국회 읍서버 파견, 공관과 민단조직의 질서체계, 민단육성에 관한 문제
- 경제관련: 상공회 육성 문제, 재일동포 재산반입에 따른 특혜, 신용조합 육성 문제
- 교육관련: 주일장학관실의 독립, 재일교육위원회 강화, 한국고등학교 설립, 본국 대학의 일본분교 설치, 교육사업 기금, 동경한국학교 대지 불하 등 대일교섭사항
- 법적지위관련 사항: 협정영주권의 범위, 일반영주권의 범위, 기타 거주권

69-446

재일한인 유골봉환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P-7/10/1~19(19p)

1. 범태평양동지회는 1966.3.18. 보건사회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일본 후생성이 보관하고 있는 한국인 전몰자 유골 2000여주 이외에 ‘사세보’ 후생성창고 등 여러 곳에 총 7,354주의 한국인 유골이 보관되어 있다고 제보함.
 - 외무부는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제보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진전이 없었음. 이에 따라 외무부는 1969.1.31. 범태평양동지회에 대하여 동 회에서 파악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 회에서는 응답이 없었음.
2. 마이니찌신문 1969.8.13.자가 일본 중앙대학 재학 중 학도병으로 출병한 김성남의 예를 들어 한국인 전몰자의 유골송환 문제에 대한 특집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 주일본대사관은 김성남 모친의 유골 송환 요청과 일본 정부의 송환 거부 등 동 기사 내용 상세를 외무부에 보고함.
3. 태평양전쟁한국인전몰자봉환회는 한국인 전몰자 위령제를 1969.10.28. 도쿄에서 개최함.
4. 외무부 동북아과가 1969.11.28. 작성한 ‘한국인 전몰자 유골문제’에 관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2차 세계대전 전 약 242,000명의 한국인이 일본 군인 또는 군속으로 징용되어 약 22,000명이 전몰함. 약 6,000주의 유골이 1948.2.5. 한국으로 봉환되었으나 2,331주(이중 469주는 북한 출신)는 계속 일본 후생성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
 - 우리 정부는 유골 전부를 일괄인수하기 위해 일본측과 교섭하여 왔으나, 일본측은 북한 출신 유골 469주는 일본의 국내적 이유를 들어 일괄하여 인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옴.
 - 우리 정부는 일괄인도라는 방침을 계속 일본에 주장하면서 일괄타결을 모색하고 있음.

재외국민 지도자문위원회

| 69-447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P-7/8/1~47(47p)

1. 외무부는 1969.1.30. 외무부장관 소속 아래 재외국민지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함. 동 안건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1969.2.13. 대통령령 제3765호로 공포되었으며, 재외국민지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능

- 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지도, 보호, 육성에 관하여 외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고 이에 대하여 건의함.

●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외무부장관이 임명함.
- 위원은 정부부처의 차관과 외교, 국제정세 및 재외국민의 실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외무부장관이 위촉함.

● 회의

- 위원회 회의는 외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함.

● 간사

-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장을 두며, 간사장은 외무부 아주국장이 됨.

2. 외무부장관은 1969.3.15. 아래와 같이 재외국민지도자문위원을 임명함.

● 정부요원

- 외무부차관, 법무부차관, 문교부차관, 문화공보부차관, 중앙정보부 차장 등

● 국회의원

- 이원만 의원, 김창욱 의원, 김규남 의원, 김수한 의원, 김상현 의원, 양희수 의원, 이원우 의원, 신용남 의원, 김유택 의원

● 언론계

- 이원경, 홍종인, 김봉기

● 학계 및 기타

- 이한기, 김훈

3. 위원회는 1969.4.23. 제1차 회의, 1969.12.29.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재일동포의 생활안정, 교육문제에 관해 토의함.

69-448

사할린교포 귀환문제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P-7/11/1~91(91p)

1. 박노학 사할린억류귀환한국인회 회장은 1969.1.19. 외무부를 방문하여 사할린거주 동포의 귀환, 체류자격 취득 등에 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2. 주삿포로총영사관은 사할린으로부터 귀환한 한국인 '신송덕'과 면담하여 귀환동기, 여타 사할린 거주 동포의 상황, 사할린의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을 1969.1.14. 외무부에 보고함.
3. 주제네바대사는 1969.5.9.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개로팡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사할린동포 귀환 문제에 관해 협의함. 동 사무총장은 사할린거주 한국인 귀환을 위한 소련과의 교섭에는 신중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사할린교포 중 일본영주를 희망하는 1,500명의 구출문제부터 소련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1,500명중 사할린으로 가기 전에 일본 내에 거주한 인원이 얼마인지 알려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우리 입장을 다음과 같이 주제네바 대표부에 통보함.
 - 대부분의 사할린동포는 제2차대전 전에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징용되어 갔으므로, 사할린으로부터 귀환을 희망하는 동포는 일본 정부의 책임 하에 우선 일본에 올 수 있게 하고, 그 이후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공정한 방법으로 거주지를 선택토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임.
 - ICRC 방식에 의할 경우 대소련 교섭상 1,500명은 일단 일본정착 희망자로 고정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나머지 인원은 논리상 한국귀환 희망자로 분류될 것임. 한국귀환 희망자는 출국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 소련의 비공식입장이기 때문에 ICRC 방식을 택할 경우 한국귀환 희망자의 출국을 봉쇄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ICRC에 설명하고, ICRC가 우리 정부 입장과 같이 사할린동포를 일괄 구출하여 일단 일본에 입국 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람.
4. 외무부 김정태 아주국장은 1969.7.4. 주한 일본대사관 마에다 참사관을 초치하여, 사할린동포 구출을 위하여 일본 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술서 및 사할린억류동포귀환 희망자 명단(국, 영문)을 수교함.
 - 외무부는 동일한 내용의 구술서 및 명단을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하여 ICRC측에도 협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함.

해외근로자[여행자] 월북기도

| 69-449 |

생산연도 1967-69

생 산 과 동북아과

MF번호 P-7/12/1~7(7p)



1. 주일본대사관은 1967.7.27. 도쿄 경시청에 나타나서 복송을 위한 신변보호를 요청한 한국인의 신병을 일측으로부터 인수 받아 복송 요망 동기 등을 조사 후 7.28. 서울 압송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인은 서울 거주 37세의 남성으로 1967.6월 출국하였으며 직업은 프로복싱 코치임.

2. 일본 NHK 방송의 월북 기도자 관련 보도(1969.8월)

- 조총련 간부 4명이 한국인을 은닉 공작원으로 교육하다 체포됨.
- 오사카 경찰본부에 의하면, 1969.1월 사이공으로부터 귀국 도중 북한에 가기를 희망하여 오사카에 밀입국한 후 조총련 지부의 부위원장 집에 은닉되어 있던 한국인(남, 31세)을 출입국관리령 위반으로 체포하여 조사한 결과 조총련 간부들이 공작원으로 교육하고 있음이 판명되었으며, 이들은 한국인 밀항자에게 북한에 가는 것보다 한국에 돌아가 북한을 위해 투쟁하라고 설득하여 공작원 교육 후 한국에 파견하려고 했다고 함.

69-450

일본내의 조선대학 인가문제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P24-1/1(fiche)/1~17(17p)

1. 조선대학교의 정체

- 1956.4.20. 재일 조총련계가 북한의 지시에 따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 500평 규모의 건물을 세우고, 조총련 간부양성과 공산공작원 훈련을 목적으로 설립한 교육기관
- 4년제와 2년제 학부로 구분하며 총 1,000명의 학생과 100명의 교원(학장은 조총련 의장인 한덕수 겸임)이 있는바, 운영경비 전액은 북한으로부터 조달되며, 북한이 조달한 보조금 총액은 미화 1,400만달러임.

2. 인가 경위

- 조선대학교는 1956.4.20. 일본 정부의 인가 없이 개교한 이래 10년간 인가신청을 하지 않고 운영하여 오다가,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여 1966.4.20. 도쿄도지사에게 ‘각종학교’로 정식인가를 신청함.
 - 각종학교의 인가는 양재학원, 요리학원, 미용학원 인가 등과 같은 범주에 속하며 조선대학교에 대한 각종학교 인가 시 특전은 학교시설에 대한 고정재산세 면제, 학생들의 정기통학권 구입 등임.
- 도쿄도는 동 인가신청을 묵살하여 왔으나 1967.6월 사회당 및 공산당의 지원으로 도쿄도지사에게 당선된 미노베 지사가 각종학교의 인가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1969.9.2. 도쿄도 사학 심의회에 조선대학교 인가문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 도쿄도 사학심의회는 1968.4.5. 조선대학 인가 불허의견을 냄. 그러나 미노베 지사는 도쿄도 사학심의회회의 부정적 의견은 물론 일본 국내의 정부, 여당 및 일반여론에 반하여 1968.4.17. 조선대학을 인가하였음을 발표함.

4. 우리정부 및 일본 정부의 조치

- 우리정부는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조선대학교가 인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일축에 제기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를 수차례 외무부에 초치하여 조선대학이 인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는바, 그때마다 일축은 인가 불허 방침을 확인함.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대학교 인가가 발표되자 우리정부와 국민은 물론 일본 각계에서도 반발을 보였으며, 특히 일본 문부상은 “도쿄도지사가 문부성의 입장 및 사학심의회회의 의견에 반하여 조선대학교를 인가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인학교법안’을 통과시켜 조선대학교 인가취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함.
- 일본 문부성은 외국인학교 법안을 1969.1월 의회에 제출예정이었으나 자민당 내의 결속 불충분과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1969.1월 회기 중 제출을 보류함.

재일한인 북한 방문

| 69-451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P25-1/2~2/2(fiche)/1~129(129p)

1. 소위 북한건국 20주년기념식 참석 사절단 명목으로 북한 방문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불허된 재일 조총련계 인사 20명은 1968.8.20.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도쿄 지방법원은 일본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국인은 북한을 방문한 후에도 재입국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1968.10.11. 판결함. 또한, 도쿄 고등재판소도 1968.12.18. 일본 정부의 패소를 판결하여 일본 정부는 동년 12.18. 최고심에 상고함.
 - 일본 법무성은 1968.12.17. 조총련계의 성묘, 가족방문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북한여행을 허가할 방침임을 발표함.
2. 일본 법무성은 1968.12.18. 북한방문 신청자 2,000여명 중 고려자 8명에 대해 북한방문을 허가하기로 하고, 6명에 대한 허가증을 1969.1.18. 발급함.
3. 우리 정부의 조치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의 북한왕래를 허가하는 것을 적극 반대함.
 - 미국방문 후 귀로에 일본을 방문한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1968.12.21. 일본 사또수상을 만나 우리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외무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수차례 초치하여 항의하고 항의각서를 수교함.
 - 우리 정부는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1969.1.18.~29. 일본에 파견하여 사또수상을 비롯한 일본의 고위당국자들과 시정교섭을 시행함.
4. 일본 정부의 반응
 - 일본 정부는 야당의 공세 등 국내사정상 부득이 2,000여명의 신청자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고려자, 무해자(無害者)를 엄선하고 성묘, 가족방문 등 인도적 이유에 한정하여 허가 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8명에 대한 방문허가는 일본 정부가 상고심에서 정치목적을 띤 북한왕래를 금지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취한 조치라는 입장임.
 - 장기영 특사가 1969.1.20. 사또 수상을 방문하여 일본측 조치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북한왕래 금지를 요청한 데 대하여, 일본측은 앞으로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번의 허가를 선례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함.
5. 북한방문을 허가받은 조총련계 인사 6명은 1969.1.22. 일본을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한 후 3.3. 일본으로 귀환함. 우리측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환영대회에 끌려 다니는 등 북한의 정치적 선전에 이용되고,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성묘보다 김일성 주석의 조부 및 부모의 묘부터 성묘함.
6.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1969.6월 최고심에 상고된 북한여행 허가문제 관련 판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판결전망에 대해 다소 낙관적 견해를 표명함.

69-452

중국(구 중공)의 한국어선(제5천강호) 피납사건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P-7/15/1~75(75p)

1. 수산청은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 제5천강호가 1969.2.4. 중국(구 중공) 어선단 8척에 의해 강제 납치된 사건과 관련하여 제5천강호의 승선원 13명과 선체가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교섭해 줄 것을 2.7. 외무부에 요청함.
2. 수산청 요청에 대하여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 주제네바대사는 2.10.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극동부장을 방문, ICRC가 중국측과 접촉하여 선박 및 선원의 조속한 송환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 아주국장은 2.11. 주한 영국대사대리를 초치하여 영국 정부가 중국당국과 접촉하여 선원 및 선박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것을 요청함.
3. 천강호는 2.16. 인천항으로 귀환하였으며, 외무부는 2.18. 천강호 피납 관련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4. 인천경찰서는 천강호 귀국 후 납치경위 등에 관해 조사함(납치 및 석방 경위 조사보고서 첨부).

재일한인 강제퇴거(송환)

| 69-453 |

생산연도 1969
 생산과 재외국민과/교민과/동북아주과
 MF번호 P-7/9/1~7(7p)



1. 도쿄 지방재판소는 1951.4월 일본에 밀입국하였다가 1962.4월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운수길이라는 한국인에 대하여 ‘정치범인 동인에 대해 강제퇴거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법무성에 대해 강제퇴거 결정을 취소하도록 판결함.
2. 도쿄 지방재판소 스키모도 판사는 정치범의 불송환 원칙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관행이며, 처벌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송환하는 것은 본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결정을 취소하도록 판결함.
3. 일본 언론은 운수길의 판결이 소위 정치망명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법무성 측은 도쿄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도함.

69-454

한·일간 현지 사증발급 권한 확대교섭



생산연도 1969
 생산과 동북아주과
 MF번호 P-7/16/1~64(64p)

1. 주일본대사는 1969.3월 일본 바이어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방안의 하나로써 1개월 이상 체류 및 복수비자 발급을 요하는 건에 대하여 현지공관의 발급재량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주일본대사의 건의에 대해 법무부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법무부는 1969.3.6. “한·일 양국간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 사증발급 한계를 정한다는 양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필요시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 이라고 외무부에 회신함.
3. 법무부의 회신과 관련 외무부는 1969.5.2. 주일 각 공관장의 장기체류비자 발급 한계는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복수비자에 대하여는 공용 및 상용비자에 한하여 상호 허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제시하고, 법무부가 1969.5.12. 외무부 방안에 이의 없음을 통보함에 따라 일본측과 교섭을 전개함.
4. 한·일간 교섭을 진행한 결과, 양측은 체류비자 현지발급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발급대상 및 조건에 관해서는 의견을 계속 조정해 나가기로 함.

일본지역 영사관 기부채납

| 69-455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총무과
 MF번호 P-7/18/1~154(154p)

본 문서철에는 일본거주 한인동포 후원회가 우리 정부에 기부채납한 일본지역 4개 영사관 관련 서류(부동산 권리 양도증, 대지 및 건물 등기등본 사본, 건물 평면도 등)가 수록되어 있으며, 4개 영사관은 다음과 같음.

1. 주고오베영사관

- “주고오베영사관 설립위원회”(회장 황공환)는 1969.5.23. 영사관 설치를 위한 토지 127평, 건물 연건평 220평 및 비품을 주고오베영사관에 기부해 옴.
- 외무부는 1968.10.16. 동 건물 및 대지의 체납을 승인하고, 동 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 권리확보를 위한 절차를 취하도록 주고오베영사관에 지시함.

2. 주나고야영사관

- “주나고야영사관 건설위원회”(대표: 장영준 등 5명)는 1968.9.1. 영사관 건물 및 대지를 확장하여 주나고야영사관에 기부해 옴(단위는 평방미터, 대지: 종전 335, 확장 후 403, 본관 건물: 종전 168, 확장 후 294, 부속건물 신축: 176).

3. 주센다이영사관

- “주센다이영사관 동북지협 후원회”는 1968.6.26. 영사관 설치를 위한 대지 300평 및 건물 연건평 45평을 주센다이영사관에 기부해 옴.
- 외무부는 1968.10.16. 동 건물 및 대지의 체납을 승인하고, 동 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 권리확보를 위한 절차를 취하도록 주센다이영사관에 지시함.

4. 주시모노세키영사관

- “주시모노세키영사관 건설위원회”(위원장: 박종)는 1969.9.21. 영사관 설치를 위한 대지 993평방미터, 건물 332 평방미터를 주시모노세키영사관에 기부해 옴.

69-456

주호주대사관 청사매입



생산연도 1962-69
 생산과 기획관리실
 MF번호 P-10/8/1~17(17p)

1. 주호주대사관은 국유재산인 동 대사관 청사 및 토지현황에 관해 1962.9.10. 아래와 같이 외무부 본부에 보고함.

- 대사관 건물 구입 일자
 - 1954.6.16.
- 매입가격
 - 18,700호주파운드(42,075미달러)
 - 소개료·등기료 제외
- 대지/건평
 - 15,109 평방 feet/8,000 평방 feet
- 건물 구조: 지상 2층, 지하 1층

2. 주호주대사관은 1969.4.18. 대사관 청사 매입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 본부에 보고함.

- 위치
 - 55 Mugga Way Red Hill, Canberra
- 대지/건평
 - 530평 / 67평
- 매입가격
 - 45,683호주달러(51,074미달러)

주Islamabad(파키스탄)총영사관 건물 임차

| 69-457 |

생산연도 1968-69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P-7/19/1~27(27p)



1. 주일본 파키스탄대사는 1968.5월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자기 부인 소유의 토지에 신축할 계획인 건물을 주이슬라마바드 한국총영사관에서 장기 임차해 줄 것을 우리측에 제안해 옴.
2. 외무부는 동 건물의 건축 진행상황, 계약조건, 대금지불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1969.5.30.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계약에 서명하기로 함.
 - 임차기간은 3년(동 기간 중 해약 불가능), 매 3년마다 계약 갱신, 최초 3년 이후는 양측의 사전 통보로 해약 가능
 - 임차료는 월 3,700루피

